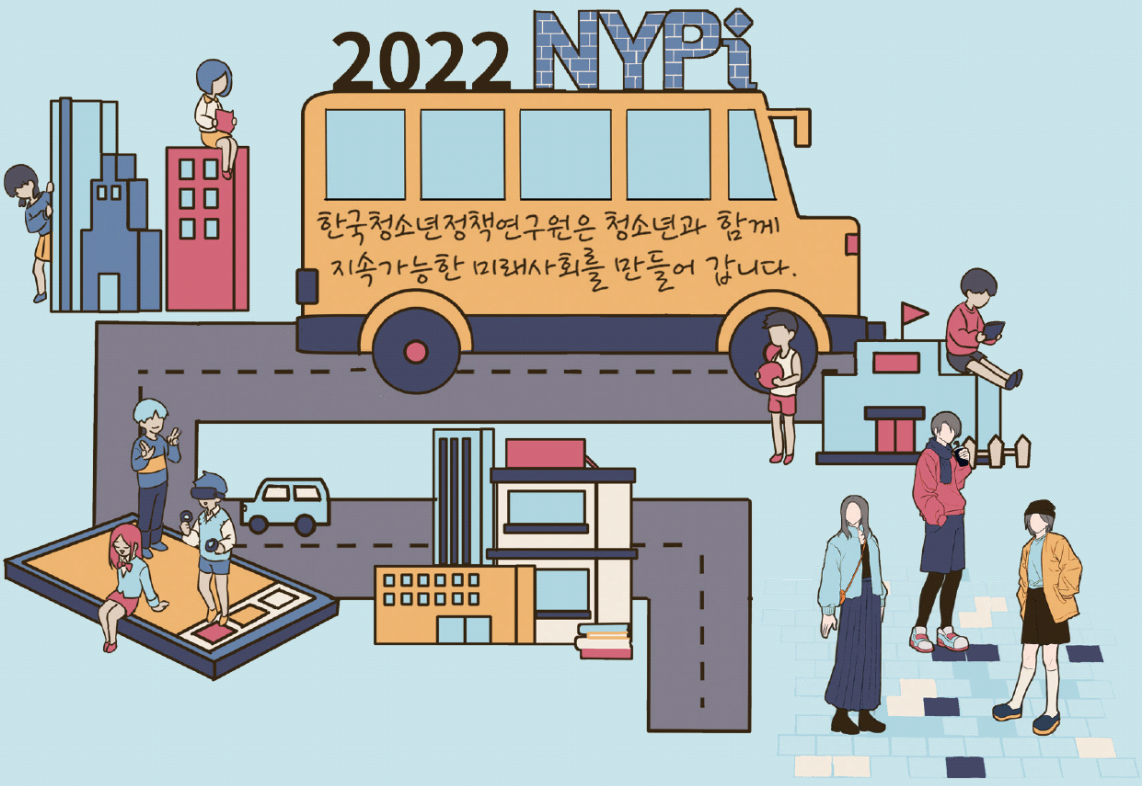
연구보고 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김영지 · 최홍일 · 유성렬 · 이은주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저 자 김영지, 최홍일, 유성렬, 이은주

연 구 진 **연구책임자_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최홍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
이은주(청주교육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_이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 파악
-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 생산

■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 2022년 본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통계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생산
-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권고사항 이행 상황 모니터링 : 2022년 특별주제 '장애아동·청소년의 교육권 - 통합교육 현황과 과제'
- 별권 1(심화분석보고서) : 2021년 인권데이터 활용 심층 분석(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별권 2(기초분석보고서) : 통계청 KOSIS 탑재 통계표 및 조사과정 자료

■ 연구방법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Children's and Youth Rights Survey: CYRS, 매년 생산 승인통계) : 전국의 초4학년부터 고3학년 학생 총 8,854명 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조사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및 조사문항 개선 자문, 제5·6차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성과 의견조사(29명)
- 2022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층 모니터링 : 장애학생 통합교육 담당 교사 11명 면접조사, 특수교육 담당자 783명 설문조사
- 전문가워크숍 및 정부부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생활영역별 인권 존중 정도는 가정(96.4%), 학교(94.6%), 우리나라 전체(82.9%), 사이버 공간(80.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인권의식과 태도에서 아동·청소년의 주체적인 결정 능력(69.5%), 아동·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85.7%), 자치조직 의의(86.0%), 의견표명권(96.3%) 등 긍정적 인식을 보였고, 경제적 이유의 차별금지(97.3%), 양성평등(96.4%), 이주배경주민 교육권(94.5%) 보장 등 차별금지 관련 높은 인식을 나타냄.
- '차별받은' 경험(1년에 1회 이상)은 나이(21.6%)와 외모·신체조건(21.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별(21.3%)과 학업성적(20.6%)에 따른 차별이 많았음. '차별한' 경험은 외모·신체조건(9.9%), 학업성적(8.2%), 나이(8.1%), 성별(7.7%) 순으로 높게 나타남.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 모두 외모·신체조건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학생회 활동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 45.2%, 임원후보 성적 제한기준이 없다 35.3%, 학생회 활동을 위한 예산, 장소, 시간을 보장 받는다 49.0%, 학생회 의견이 존중되며 반영된다 57.0% 등으로 나타남.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응답은 28.5%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율은 80.6%로 전년도 대비 소폭 줄어듦.

-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은 71.7%이며,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 부족(31.7%),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29.6%), 참여활동정보 부족(23.2%),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11.9%), 부모님 반대(1.9%) 등임.
- 사상의 자유는 91.4%가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정 내 종교의 자유는 82.0%,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는 50.8%가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함. 사회문제와 관련한 모임, 카페 가입, SNS 활동 참여 경험은 14.0%이며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는 6.3%로 나타남. 용모검사(19.0%)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복장검사(29.8%)와 소지품 검사(6.9%)는 2022년에 소폭 증가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가족 관계나 가정형편 등 개인(민감)정보(6.4%), 징계사항(11.0%), 시험 성적(13.5%)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폭력 및 학대

- 2020년 조사결과 성적인 피해 경험률은 3.6%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됨. 피해경험은 중, 고등학생 보다 초등학생이 더 많았으며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은 부모님(보호자)이 높게 나타났으나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았음(41.5%).
- 2021년 집계된 아동학대 관련 신고는 총 53,932건으로 2020년 대비 27.6% 증가하였으며, 아동학대 사례는 3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한 수치임. 피해자 연령은 13~15세가 가장 많았으며,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3.7%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서학대가 32.8%로 높게 나타남.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보호대상 아동은 2021년 3,437명으로 최근 다년간 보고된 수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보호아동 발생유형은 빈곤, 실직, 학대, 부모이혼 등의 이유로 발생한 보호아동이 77.4%(2,661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아동 3,437명 중, 63.5%인 2,183명은 시설 입소되어 보호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여전히 많은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함.

- 가정 밖(가출) 청소년의 경우, 전체 대상자 8,592명 중 3.6%가 지난 1년 간 가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0.4% 증가하였음. 가출한 주된 이유는 56.6%가 부모님과의 문제로 응답했으며 가출 후 이용했던 기관은 89.3%가 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1%가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은 2020년 기준 192,545명임. 미충족의료율은 전체 2.8%이며, 치과 미충족의료율은 전체 12.4%로 나타남.
-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7.1%로 전년 대비 0.6% 높아짐. 본 조사 결과 전체 대상자의 33.5%의 학생들이 자살에 대해 가끔 또는 자주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이유로 44.3%가 학업문제라고 응답하였음.
-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10.6%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임. GDP 대비 공적 가족지출 비중은 유럽국가들이 3.0%이상의 지출 수준을 나타냈으며 한국은 1.4%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우리나라의 초등 및 증등교육과정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학급당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구의 경제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사교육의 차등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학교에서의 진로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도 높은 수준이었으나, 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양상이 취업보다는 진학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시설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스마트기기 사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학교가 정상화되어 감에 따라 청소년의 평일 학습시간도 다시 증가함.

● 특별보호조치

-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 및 탈북학생 가운데 중고등학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전체 학생들의 학업중단율보다 높게 나타나 탈북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은 감소하고 있으나, 친구로부터의 차별을 받은 정도가 가장 많았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경험도 11.3%에서 23.7%로 급증하고 있어 다문화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의 수용률이 100%를 초과하는 시설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비율의 지속적 감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대상자 규모의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경험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2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층 모니터링 : 장애아동·청소년 교육권 – 통합교육]

● 통합교육 현황

- 학생과 교사들은 통합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 교사들은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에 대해서는 14.0%가 효과가 미흡하다고 응답함. 장애이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은 경험은 교사 96.2%, 학생 67.3%이며 대체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함.
- 통합교육의 어려움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비장애학생의 학습격차(81.5%)'와 '통합학급을 진행하기에는 과다한 학생수/통합학급 정원 감축(68.2%)' 등임.

- 교사들은 통합교육 환경조성, 교사의 역량, 수업 및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그 중에서 특히 지원요구가 높은 항목은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95.4%)', '장애학생 인권보호 환경 구축(94.5%)', '통합학급 학생 수의 소규모화(91.8%)'임.
- 교사들은 대부분(93.5%)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수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있음(40.4%). 교육부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정다운 학교(통합교육 협력모델)'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도 수업(44.4%), 생활지도(29.1%), 학생평가 및 기록(23.8%)은 협업이 어려운 영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협력이 효과적인 이유는 특수교사(또는 일반교사)의 적극적인 협력태도와 요청이라고 지목한 교사들이 가장 많았음(64.4%).
- '정다운 학교'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과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었음. 협력수업과 통합 활동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참여가 높아지고 자기를 드러낼 기회 또한 많아졌기 때문임. 둘째, 교사들의 통합 역량이 의미 있게 성장하였음. 수업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보편적 학습 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나 교수적 수정(Instructional Adaptation)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업 역량도 높아졌음. 셋째, 통합교육의 의미 재인식 및 학교 전체가 소수자에 대하여 더 포용적으로 변했음.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 활동 및 수업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 이외에도 개별화된 요구가 높은 학생들(예,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합의 의미도 재확인하게 되었음.

● 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 과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권고를 통해 특수학교 중심의 분리 교육을 우려하고 장애학생의 일반학교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고 교육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특히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과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 강화 등을 강조함(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1~42).
- 개선 과제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도입,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학급 당 학생 수 축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 체계 등의 과제를 제안함.

■ 정책제언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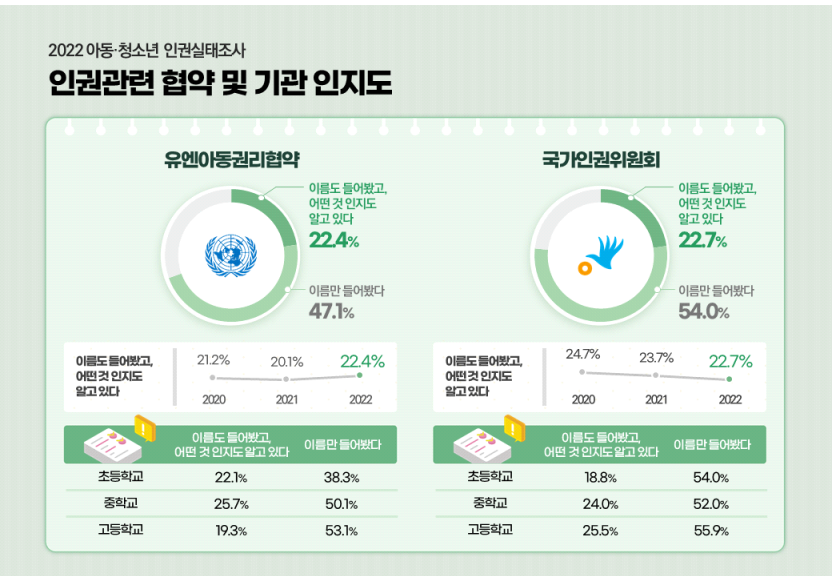
●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한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 국내 이행 노력은 5점 만점에 2.5점으로 나타나 2024년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130여개 권고 이행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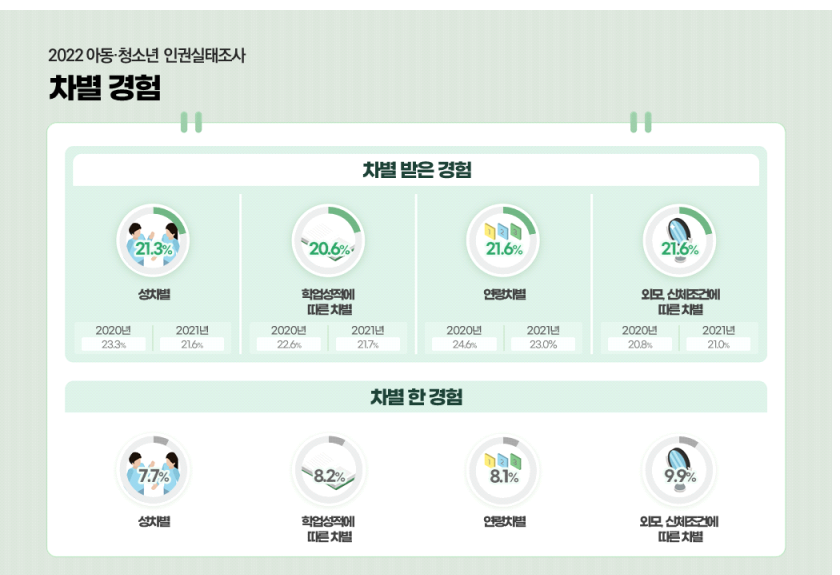
● 2022년에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제5·6차 협약 권고 이행 현황 모니터링, 심층 주제 분석 등을 통해 총 14개 과제를 제안함.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명
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제5·6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강화 및 이행 성과 진단
2. 아동·청소년 통계작성 시스템 체계화
Ⅱ.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학생자치활동 내실화 및 활성화
Ⅲ. 폭력 및 학대
1. 통합적 아동학대 데이터 구축
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적정 배치 및 전문성 강화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활성화
Ⅴ.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1.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도입
2. 장애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심리지원 체제 구축
3. 아동·청소년 자살률 감소 전략
4. 아동·청소년 약물예방교육 현실화
Ⅵ.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사교육 의존도 경감을 위한 조치 시행
2.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 활성화 추진
Ⅶ. 특별보호조치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2.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조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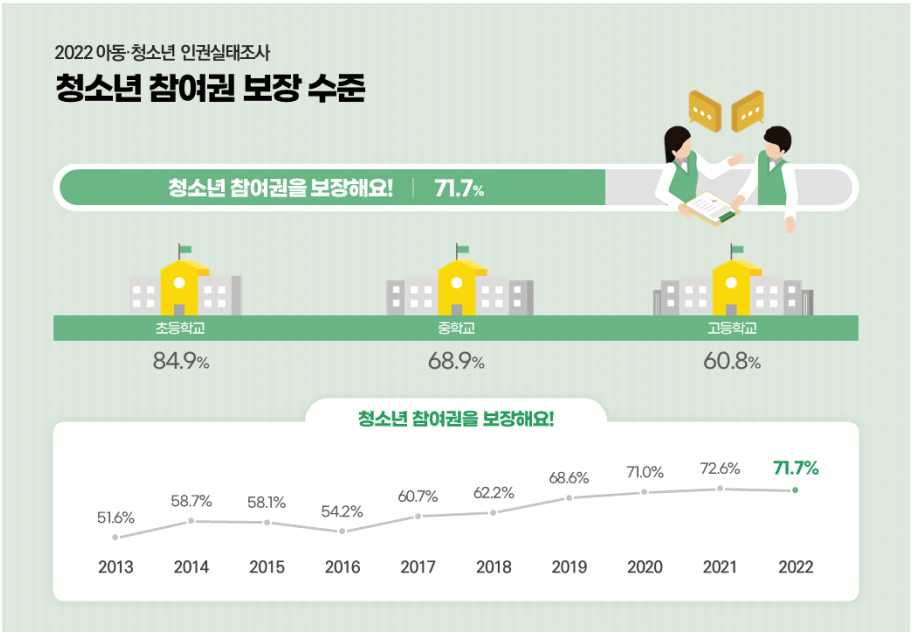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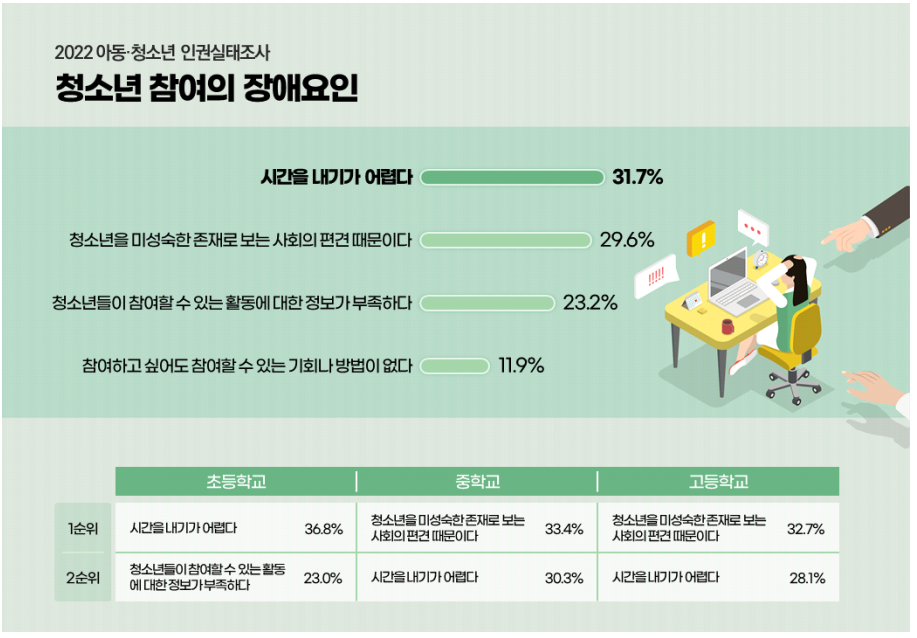
○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 시민적 권리와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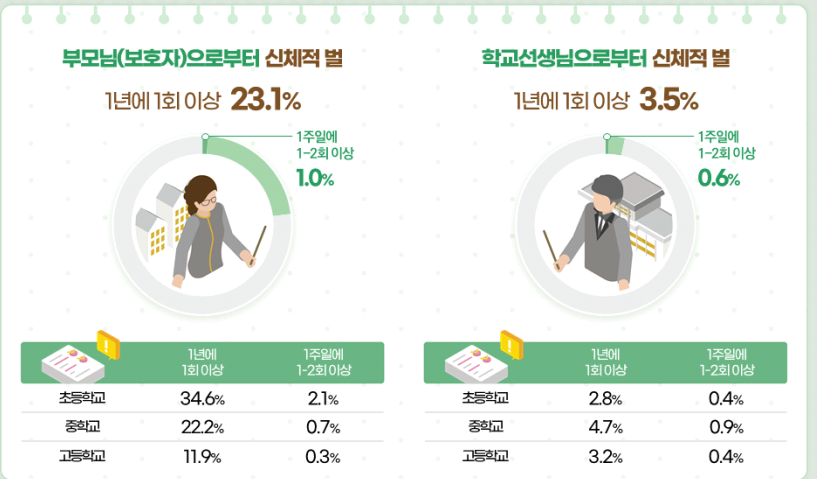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순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36.8%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33.4%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32.7%
2순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23.0%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30.3%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28.1%

○ 폭력 및 학대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체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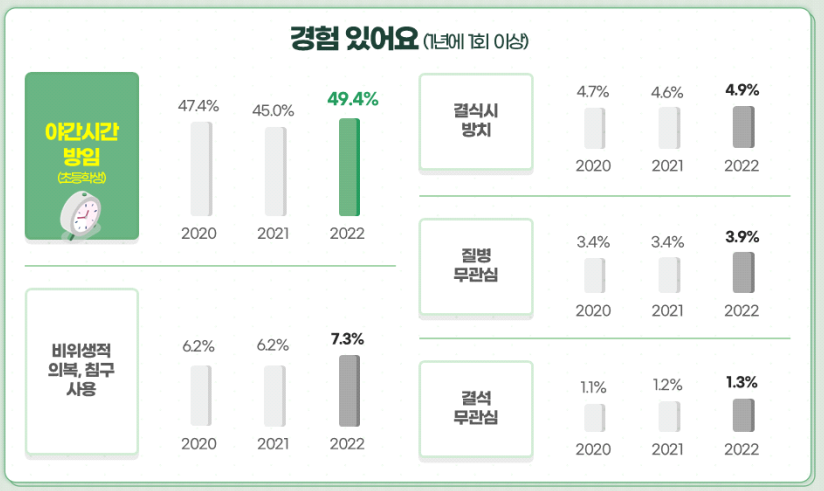


	1년에 1회 이상	1주일에 1-2회 이상
초등학교	34.6%	2.1%
중학교	22.2%	0.7%
고등학교	11.9%	0.3%

	1년에 1회 이상	1주일에 1-2회 이상
초등학교	2.8%	0.4%
중학교	4.7%	0.9%
고등학교	3.2%	0.4%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방임경험 연도별 추이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성적인 피해 경험

성적인 피해 경험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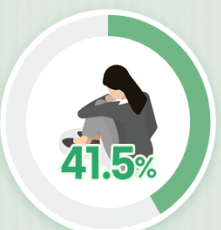


6.0% 2.5% 2.2%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성적인 피해 시 도움을 받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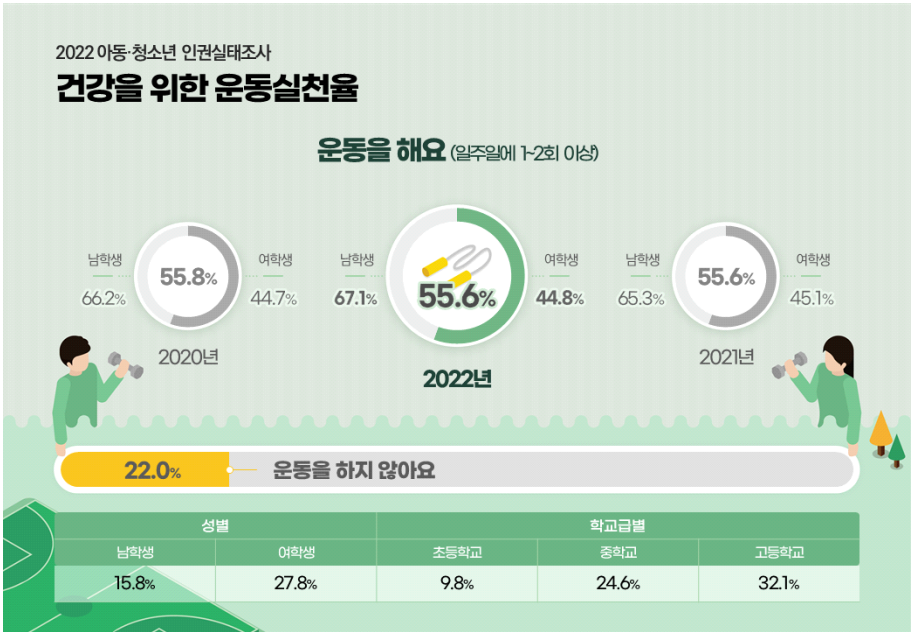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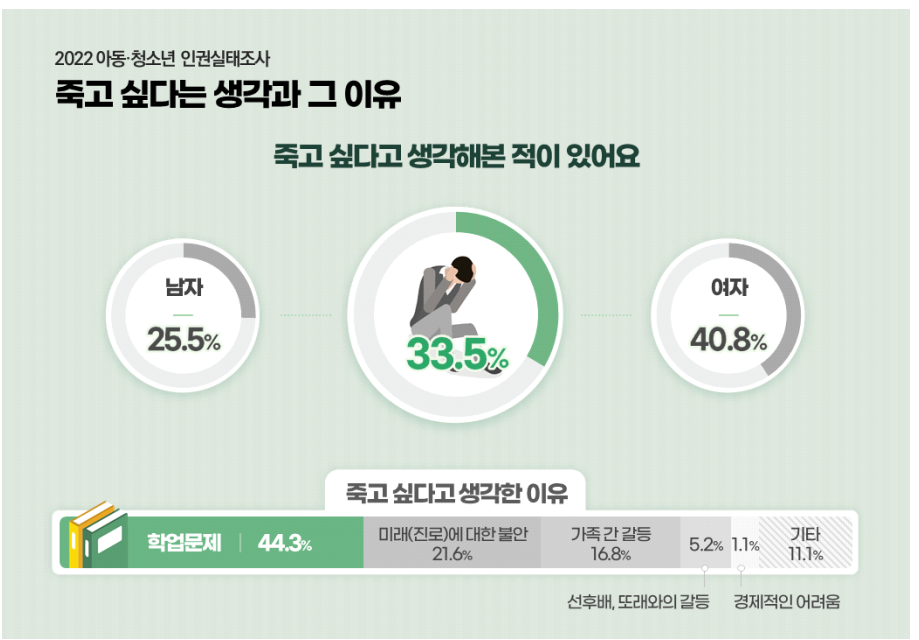




23.9% 65.5% 62.7%

○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건강을 위한 운동실천율
운동을 해요 (일주일에 1-2회 이상)
남학생 66.2%
55.8%
여학생 44.7%
2020년
남학생 67.1%
55.6%
여학생 44.8%
2022년
남학생 65.3%
55.6%
여학생 45.1%
2021년
22.0%
운동을 하지 않아요
성별
남학생 15.8%
여학생 27.8%
학교급별
초등학교 9.8%
중학교 24.6%
고등학교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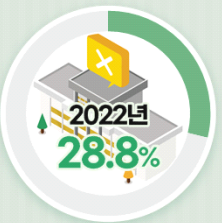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남자
25.5%
33.5%
여자
40.8%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학업문제 44.3%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1.6%
가족 간 갈등 16.8%
5.2%
1.1%
기타 11.1%
선후배, 또래와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22년	21.6%	25.9%	39.2%
2021년	19.2%	22.0%	34.6%
2020년	17.1%	20.5%	32.3%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1순위 귀찮고 아무 것도 하기 싫어서 31.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7.8%	34.2%	31.8%	31.9%	31.2%

2순위 공부가 하기 싫어서 24.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8.1%	27.3%	20.9%	21.9%	15.9%

3순위 성적이 좋지 않아서 13.0%

4순위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11.4%

5순위 괴롭힘을 당해서 8.9%

6순위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4.9%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하루 평균 여가시간 및 공부시간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3시간 미만 **59.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51.6%	58.7%	67.1%	69.8%	56.2%

평일 하루 평균 공부시간

3시간 이상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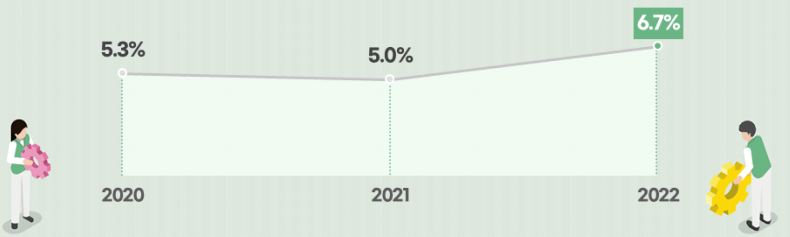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36.4%	41.8%	43.0%	48.7%	20.1%

○ 특별보호조치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아르바이트 경험 추이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전 체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22년	6.7%	2.3%	11.2%	7.3%	27.0%
2021년	5.0%	1.5%	8.3%	4.9%	21.9%
2020년	5.3%	1.1%	9.1%	6.6%	19.6%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어요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어요
12.0%	32.9%	10.0%
중학교 15.5%	중학교 20.0%	중학교 13.9%
고등학교 11.3%	고등학교 35.6%	고등학교 9.3%

차 례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22-일반0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5
   1) 연구내용 ····· 5
   2) 연구방법 ····· 9
3. 연구의 체계도 ····· 11

Ⅱ.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 이행 동향과 인권지표체계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증진 활동 동향 ····· 15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최종견해 이행 현황과 과제 ····· 18
3. 2022 협약 심층모니터링 : 주요 국제협약 심의에서 장애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주요 쟁점 ····· 36
4.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개선 ····· 49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1. 조사개요 및 방법 ····· 63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72
   1) 인권일반 ····· 72
   2) 일반원칙 ····· 95
   3) 소결 ····· 101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 103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 103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14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116
   4) 사생활의 보호 ····· 118
   5) 정보접근권 ····· 121
   6) 소결 ····· 127
4. 폭력 및 학대 ····· 130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 130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 143
   3) 소결 ····· 158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161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 161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청소년 ····· 169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 181
   4) 소결 ····· 186
6.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 188
   1) 장애 ····· 188
   2) 생존 및 발달 ····· 193
   3) 보건서비스 ····· 201
   4)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 211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 245
   6) 소결 ····· 253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257
   1) 교육에의 권리 ····· 257

2) 교육의 목표 ····· 266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 276
4) 소결 ····· 291
8. 특별보호조치 ····· 293
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 293
2) 소년 사법 ····· 308
3) 경제적 착취 ····· 320
4) 성적 착취 ····· 330
5) 소결 ····· 342

Ⅳ. 2022 협약 심층모니터링 : 장애아동·청소년 교육권 – 통합교육 현황과 과제

1. 조사개요 ····· 349
2. 통합교육의 의미와 과제 ····· 355
1) 통합교육의 의미 ····· 355
2) 통합교육의 과제 ····· 357
3) '정다운 학교' 운영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 360
3. 조사결과 ····· 361
1)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 361
2) 통합교육의 어려운 점과 지원 요구 ····· 364
3) '정다운 학교' 운영 성과 ····· 371
4. 소결 및 제언 ····· 387

Ⅴ. 정책 제언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 395
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모니터링 개요 ····· 395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및 협약 이행 분석 시사점 ····· 404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 414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 414
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주요내용 ····· 417

참고문헌 ····· **431**

부 록

1.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초등용·중등용) ····· 461
2. 2022년 특별조사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현황과 지원과제(교사용) ····· 495
3.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 504
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526

국문초록 ····· **545**

Abstract ····· **547**

표 목차

표 Ⅰ-2-1. 본 연구 일환으로 발간된 심화분석보고서 현황 ····· 7
표 Ⅰ-2-2. 2022 협약 심층모니터링 장애아동·청소년 주제 선정 및 모니터링 과정 ····· 8
표 Ⅰ-3-1. 보고서 구성 개요 ····· 11
표 Ⅱ-3-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최종견해 중 장애아동 관련 권고사항 ····· 37
표 Ⅱ-3-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중 장애아동 관련 조문 ····· 43
표 Ⅱ-4-1.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체계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50
표 Ⅱ-4-2.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수정내역 ····· 55
표 Ⅱ-4-3. 정부부처 생산 지표 자료원 협력 현황(2022) ····· 56
표 Ⅱ-4-4.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57
표 Ⅲ-1-1.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 65
표 Ⅲ-1-2.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신규 조사문항 ····· 66
표 Ⅲ-1-3.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수정 및 삭제문항 ···· 67
표 Ⅲ-1-4.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 68
표 Ⅲ-1-5. 2022년「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조사개요 ····· 71
표 Ⅲ-2-1. 아동·청소년 법령 제·개정 현황 ····· 72
표 Ⅲ-2-2.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 (2017~2021년) ····· 75
표 Ⅲ-2-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 77
표 Ⅲ-2-4.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 ····· 80
표 Ⅲ-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 ····· 81
표 Ⅲ-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 82
표 Ⅲ-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 83
표 Ⅲ-2-8. 인권의식 및 태도_아동·청소년의 참여 관련 인식 ····· 85
표 Ⅲ-2-9. 인권의식 및 태도_차별 관련 인식 ····· 88

표 Ⅲ-2-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 91
표 Ⅲ-2-11. 인권교육 경험 여부 ····· 91
표 Ⅲ-2-12.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 ····· 93
표 Ⅲ-2-13.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교급별) ····· 94
표 Ⅲ-2-14.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종합) ····· 96
표 Ⅲ-3-1.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 ····· 103
표 Ⅲ-3-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 105
표 Ⅲ-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 106
표 Ⅲ-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107
표 Ⅲ-3-5.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이행현황 ····· 108
표 Ⅲ-3-6.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2014~2021년) ····· 109
표 Ⅲ-3-7.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2011~2021년) ····· 110
표 Ⅲ-3-8.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 111
표 Ⅲ-3-9. 아동 ·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 ····· 112
표 Ⅲ-3-10.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 ····· 113
표 Ⅲ-3-1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 114
표 Ⅲ-3-12.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 ····· 115
표 Ⅲ-3-13.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 117
표 Ⅲ-3-14.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 119
표 Ⅲ-3-15.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 ····· 120
표 Ⅲ-3-16.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2017~2021년) ····· 122
표 Ⅲ-3-17. 인터넷 이용 목적(2017~2021년) ····· 123
표 Ⅲ-3-18.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2017~2021년) ····· 124
표 Ⅲ-3-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복수응답) ···· 125
표 Ⅲ-3-20.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2012~2020년) ····· 125
표 Ⅲ-3-21. 학생 독서량(2011~2021년) ····· 126
표 Ⅲ-3-22. 디지털 사용 역량 ····· 127
표 Ⅲ-4-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 130
표 Ⅲ-4-2. 체벌 경험여부_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 132
표 Ⅲ-4-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 133
표 Ⅲ-4-4. 체벌 경험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 134
표 Ⅲ-4-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 ····· 136

표 Ⅲ-4-6.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 139
표 Ⅲ-4-7.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6~2020년) ····· 141
표 Ⅲ-4-8.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 142
표 Ⅲ-4-9.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 142
표 Ⅲ-4-10.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2021년) ····· 144
표 Ⅲ-4-11.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판단 결과(2021년) ····· 144
표 Ⅲ-4-12.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2021년) ····· 145
표 Ⅲ-4-13.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 ····· 145
표 Ⅲ-4-14.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146
표 Ⅲ-4-15.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146
표 Ⅲ-4-16.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147
표 Ⅲ-4-17.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 148
표 Ⅲ-4-18.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 149
표 Ⅲ-4-19. 방임_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 151
표 Ⅲ-4-20.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 152
표 Ⅲ-4-21.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 154
표 Ⅲ-4-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006~2021년) ····· 155
표 Ⅲ-4-23.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2015~2021년) ····· 156
표 Ⅲ-4-24. 대상별 서비스 제공 실적 ····· 156
표 Ⅲ-4-25.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상황(2015~2021년) ····· 157
표 Ⅲ-5-1.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2015~2021년) ····· 162
표 Ⅲ-5-2.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5~2021년) ····· 163
표 Ⅲ-5-3.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1)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7~2021년) ····· 164
표 Ⅲ-5-4.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 (2016~2020년) ····· 165
표 Ⅲ-5-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14~2021년) ····· 167

표 Ⅲ-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2021년) …… 167
표 Ⅲ-5-7.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현황(2022년 10월 기준) …… 168
표 Ⅲ-5-8.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 169
표 Ⅲ-5-9. 국내·외 입양인 지원사업 대상 …… 170
표 Ⅲ-5-10.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2015~2021년) …… 172
표 Ⅲ-5-11.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5~2021년) …… 173
표 Ⅲ-5-12.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2014~2020년) …… 173
표 Ⅲ-5-13.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1) 현황(2014~2019년) …… 174
표 Ⅲ-5-14.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보호아동 수(2014~2020년) …… 174
표 Ⅲ-5-15. 가출 여부 …… 175
표 Ⅲ-5-16. 가출한 주된 이유 …… 176
표 Ⅲ-5-17.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 177
표 Ⅲ-5-18.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10~2021년) …… 178
표 Ⅲ-5-19. 가출 후 이용한 기관 …… 179
표 Ⅲ-5-20.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 180
표 Ⅲ-5-21. 2022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 182
표 Ⅲ-5-22.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배점 …… 183
표 Ⅲ-5-23. 아동생활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 184
표 Ⅲ-6-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2013～2022) …… 188
표 Ⅲ-6-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2016~2022년) …… 188
표 Ⅲ-6-3. 장애아전문·통합시설 현황 …… 189
표 Ⅲ-6-4.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2018~2022년) …… 190
표 Ⅲ-6-5.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 191
표 Ⅲ-6-6. 학대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 192
표 Ⅲ-6-7. 학대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 …… 192
표 Ⅲ-6-8. 장애아동 학대유형 …… 193
표 Ⅲ-6-9. 연도별 영아사망률(2016~2021년) …… 194
표 Ⅲ-6-10.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2016~2021년) …… 194
표 Ⅲ-6-11. 사고 사망률(2016~2021년) …… 195
표 Ⅲ-6-12.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2017~2021년) …… 196
표 Ⅲ-6-13.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1)(2017~2021년) …… 197
표 Ⅲ-6-14.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 199
표 Ⅲ-6-15.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 200

표 Ⅲ-6-16. 보건교사 배치현황(2018~2021년) ····· 201
표 Ⅲ-6-17.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율(2015~2021년) ····· 202
표 Ⅲ-6-18.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운영 현황 ····· 203
표 Ⅲ-6-19.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 203
표 Ⅲ-6-20. (연도별) Wee센터 및 Wee클래스, Wee스쿨 설치 현황 ····· 204
표 Ⅲ-6-21.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 204
표 Ⅲ-6-22.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0년) ····· 205
표 Ⅲ-6-23.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충족의료율(2016~2020년) ····· 206
표 Ⅲ-6-24.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충족의료율(2016~2020년) ····· 207
표 Ⅲ-6-25. 흡연율 추이(2017~2021년) ····· 208
표 Ⅲ-6-26. 음주율 추이(2017~2021년) ····· 208
표 Ⅲ-6-27. 평생 약물 경험률(2016~2020년) ····· 209
표 Ⅲ-6-28.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2015~2021년) ····· 210
표 Ⅲ-6-29.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2015~2021년) ····· 210
표 Ⅲ-6-30.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211
표 Ⅲ-6-31.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 213
표 Ⅲ-6-32. 수면 시간 ····· 215
표 Ⅲ-6-33. 수면 부족 여부 ····· 216
표 Ⅲ-6-34.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 218
표 Ⅲ-6-35. 수면이 부족한 이유(복수응답: 1+2순위) ····· 219
표 Ⅲ-6-36.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율(2016~2019년) ····· 220
표 Ⅲ-6-37.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 222
표 Ⅲ-6-38. 자살 생각 여부 ····· 224
표 Ⅲ-6-39. 자살 생각 이유 ····· 225
표 Ⅲ-6-40.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 227
표 Ⅲ-6-41.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 229
표 Ⅲ-6-42.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 230
표 Ⅲ-6-43. 우울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 232
표 Ⅲ-6-44. 행복한 정도 ····· 233
표 Ⅲ-6-45. 행복하지 않은 이유 ····· 235
표 Ⅲ-6-46. 삶의 만족도 ····· 236
표 Ⅲ-6-47.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239
표 Ⅲ-6-48.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240

표 Ⅲ-6-49.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 242
표 Ⅲ-6-50. 자아존중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 243
표 Ⅲ-6-51. 고민거리 대화상대 ····· 245
표 Ⅲ-6-52. 아동빈곤율(2016~2019년) ····· 248
표 Ⅲ-6-5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016~2021년) ····· 249
표 Ⅲ-6-54. 한부모가구 비율(2015~2019년) ····· 249
표 Ⅲ-6-55.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2016~2020년) ····· 250
표 Ⅲ-6-56.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예산(2018~2022년) ····· 251
표 Ⅲ-6-5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2017~2021년) ····· 251
표 Ⅲ-6-58.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현황 및 이용 아동 수 (2016~2020년) ····· 252
표 Ⅲ-6-59. 디딤씨앗통장 저축현황(2016~2020년) ····· 253
표 Ⅲ-7-1.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 257
표 Ⅲ-7-2.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21년) ····· 259
표 Ⅲ-7-3. 학급당 학생 수(2011~2021년) ····· 259
표 Ⅲ-7-4.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국제비교 ····· 260
표 Ⅲ-7-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261
표 Ⅲ-7-6.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262
표 Ⅲ-7-7.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2~2021년) ····· 262
표 Ⅲ-7-8. 학업중단 생각 경험 ····· 263
표 Ⅲ-7-9. 학업중단 생각 이유 ····· 265
표 Ⅲ-7-10.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 267
표 Ⅲ-7-11.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 268
표 Ⅲ-7-12.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 ····· 270
표 Ⅲ-7-1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 271
표 Ⅲ-7-14. 학교 진로활동 참여 현황 및 만족도 ····· 273
표 Ⅲ-7-15. 15~29세 청년 직업교육(훈련) 경험(2018~2022년) ····· 274
표 Ⅲ-7-16.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2017~2021년) ····· 275
표 Ⅲ-7-17.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2020~2021년) ····· 275
표 Ⅲ-7-18.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277
표 Ⅲ-7-19. 전국 시 · 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277
표 Ⅲ-7-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2013~2021년) ····· 278
표 Ⅲ-7-21. 전국 공공체육시설 연도별 현황(2010~2020년) ····· 279

표 Ⅲ-7-22.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 ····· 280
표 Ⅲ-7-23.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 281
표 Ⅲ-7-24.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 283
표 Ⅲ-7-25.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 284
표 Ⅲ-7-26.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 ····· 285
표 Ⅲ-7-27.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복수응답) ····· 286
표 Ⅲ-7-28.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 287
표 Ⅲ-7-29. 평일 여가시간 ····· 288
표 Ⅲ-7-30. 평일 학습 시간 ····· 290
표 Ⅲ-8-1. 아동 · 청소년 난민 현황 ····· 293
표 Ⅲ-8-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 295
표 Ⅲ-8-3.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2017~2020년) ····· 295
표 Ⅲ-8-4.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 296
표 Ⅲ-8-5.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2019~2021년) ····· 297
표 Ⅲ-8-6.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2011~2021년) ····· 298
표 Ⅲ-8-7.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2010~2021년) ····· 298
표 Ⅲ-8-8.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2013~2020년) ····· 299
표 Ⅲ-8-9.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2008~2021년) ····· 300
표 Ⅲ-8-10.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 경험 ····· 301
표 Ⅲ-8-11.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 ····· 302
표 Ⅲ-8-12.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차별 경험(2017~2021년) ····· 303
표 Ⅲ-8-13. 이주아동 구금현황(2015~2021년) ····· 304
표 Ⅲ-8-14.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복수응답) ····· 305
표 Ⅲ-8-15. 다문화가족 자녀의 시설 이용률(복수응답) ····· 306
표 Ⅲ-8-16.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2011~2021년) ····· 308
표 Ⅲ-8-17.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2009~2020년) ····· 309
표 Ⅲ-8-18.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2015~2020년) ····· 310
표 Ⅲ-8-19.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2016~2021년) ····· 311
표 Ⅲ-8-20. 소년수형자 징역형 형기별 인원 현황(2015~2020년) ···· 312
표 Ⅲ-8-21.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2011~2021년) ····· 312
표 Ⅲ-8-22.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20년) ····· 313

표 Ⅲ-8-23.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20년) ····· 314
표 Ⅲ-8-24.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2014~2021년) ····· 316
표 Ⅲ-8-25. 소년보호 항고 · 재항고 사건 수 ····· 316
표 Ⅲ-8-26. 선도프로그램 이수 현황 ····· 317
표 Ⅲ-8-27.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2015~2020년) ····· 318
표 Ⅲ-8-28.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 형태 (2016~2020년) ····· 318
표 Ⅲ-8-29.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2015~2020년) ····· 319
표 Ⅲ-8-3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2015~2020년) ····· 320
표 Ⅲ-8-31.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2010~2020년) ····· 321
표 Ⅲ-8-32.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2018~2021년) ····· 323
표 Ⅲ-8-33. 청소년 실업률 추이(2000~2021년) ····· 324
표 Ⅲ-8-3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326
표 Ⅲ-8-35.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 327
표 Ⅲ-8-36.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과 도움정도 ····· 330
표 Ⅲ-8-37.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 처리 현황 (2012~2020년) ····· 331
표 Ⅲ-8-38. 국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 331
표 Ⅲ-8-39.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2015~2021년) ····· 334
표 Ⅲ-8-40. 성폭력 · 성착취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335
표 Ⅲ-8-41.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실적(2013~2021년) ····· 337
표 Ⅲ-8-42. 성폭력 피해자 성별 · 연령별 상담현황 ····· 338
표 Ⅲ-8-4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2017~2021년) ····· 339
표 Ⅲ-8-4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2017~2021년) ····· 340
표 Ⅲ-8-45.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황(2015~2021년) ····· 340
표 Ⅲ-8-46.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2014~2020년) ····· 341
표 Ⅳ-1-1. 설문조사 질문 내용 ····· 350
표 Ⅳ-1-2. 설문대상에 관한 정보 ····· 352
표 Ⅳ-1-3. FGI 조사 질문 내용 ····· 353
표 Ⅳ-1-4. FGI 참여자 인적 특성 ····· 354
표 Ⅳ-3-1. 학생의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 361
표 Ⅳ-3-2. 장애학생의 차별경험에 관한 인식 ····· 362
표 Ⅳ-3-3. 교사의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 362
표 Ⅳ-3-4. 교사의 통합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 363

표 Ⅳ-3-5. 장애이해교육 참여 경험 ····· 364
표 Ⅳ-3-6. 장애이해교육 도움 정도 ····· 364
표 Ⅳ-3-7. 통합교육의 어려운 점 ····· 365
표 Ⅳ-3-8. 특수교사, 일반교사, 관리자의 통합교육 어려운 점에 대한 인식 차이 ····· 366
표 Ⅳ-3-9. 통합교육 지원 요구 ····· 368
표 Ⅳ-3-10. 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 370
표 Ⅳ-3-11. 통합교육 관련 연수 시간 ····· 370
표 Ⅳ-3-12. 통합교육 관련 연수 도움 정도 ····· 371
표 Ⅳ-3-13. 통합교육 관련 연수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 371
표 Ⅳ-3-14.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교수 필요에 대한 인식 ····· 374
표 Ⅳ-3-15. 교사들의 협업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인식 ····· 375
표 Ⅳ-3-16. 협력을 통해 통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인식 ····· 376
표 Ⅴ-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결과 ····· 396
표 Ⅴ-2-1. 아동 · 청소년인권 정책과제 총괄표 ····· 414

그림 목차

그림 Ⅰ-2-1. 연구내용 구성 ····· 5
그림 Ⅲ-1-1. 표본추출 방법 ····· 71
그림 Ⅲ-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연도별 추이) ····· 78
그림 Ⅲ-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전체 영역 3개년) ····· 79
그림 Ⅲ-2-3.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_전체 영역(연도별 추이) ····· 79
그림 Ⅲ-2-4.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연도별 추이) ····· 80
그림 Ⅲ-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연도별 추이) ····· 81
그림 Ⅲ-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연도별 추이) ····· 82
그림 Ⅲ-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 83
그림 Ⅲ-2-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연도별 추이) ····· 84
그림 Ⅲ-2-9. 인권의식 및 태도_아동·청소년의 참여 관련 인식 (연도별 추이) ····· 86
그림 Ⅲ-2-10.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 87
그림 Ⅲ-2-11.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 87
그림 Ⅲ-2-12. 인권의식 및 태도_차별 관련 인식(연도별 추이) ····· 89
그림 Ⅲ-2-13. 인권의식 및 태도_전체 ····· 90
그림 Ⅲ-2-14. 인권교육 경험(연도별 추이) ····· 92
그림 Ⅲ-2-15. 인권교육 경험 및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 93
그림 Ⅲ-2-16.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연도별 추이) ····· 95
그림 Ⅲ-2-17.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1년에 1회 이상) ····· 97

그림 Ⅲ-2-18. 차별 경험(연도별 추이) ····· 99
그림 Ⅲ-2-19. 차별받은 경험: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 100
그림 Ⅲ-3-1.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연도별 추이) ····· 104
그림 Ⅲ-3-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연도별 추이) ····· 105
그림 Ⅲ-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연도별 추이) ····· 106
그림 Ⅲ-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연도별 추이) ····· 107
그림 Ⅲ-3-5.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연도별 추이) ····· 111
그림 Ⅲ-3-6.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연도별 추이) ····· 112
그림 Ⅲ-3-7.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연도별 추이) ····· 113
그림 Ⅲ-3-8.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 115
그림 Ⅲ-3-9.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 116
그림 Ⅲ-3-10.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연도별 추이) ····· 117
그림 Ⅲ-3-11.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연도별 추이) ····· 118
그림 Ⅲ-3-12.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연도별 추이) ····· 119
그림 Ⅲ-3-13.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연도별 추이) ····· 121
그림 Ⅲ-4-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연도별 추이) ····· 131
그림 Ⅲ-4-2.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 (연도별 추이) ····· 132
그림 Ⅲ-4-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 133
그림 Ⅲ-4-4. 체벌 경험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 135
그림 Ⅲ-4-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 138
그림 Ⅲ-4-6.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 140
그림 Ⅲ-4-7.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 142
그림 Ⅲ-4-8. 최근 1년간 1회 이상 경험한 방임유형별 비율 (초등학생 대상) ····· 147
그림 Ⅲ-4-9.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 (연도별 추이) ····· 149
그림 Ⅲ-4-10.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 150
그림 Ⅲ-4-11. 방임_3)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연도별 추이) ····· 152

그림 Ⅲ-4-12.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 153
그림 Ⅲ-4-13.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 154
그림 Ⅲ-4-14.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 (연도별 추이) ····· 158
그림 Ⅲ-5-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19세) 연도별 추이 ····· 161
그림 Ⅲ-5-2. 방과후학교 교급별 만족도(2016-2021년) ····· 165
그림 Ⅲ-5-3.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연도별 추이) ····· 166
그림 Ⅲ-5-4. 다함께돌봄 이용자 만족도 ····· 168
그림 Ⅲ-5-5.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 169
그림 Ⅲ-5-6.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추이(2012~2021년) ····· 172
그림 Ⅲ-5-7. 가출 여부: 학교급별(연도별 추이) ····· 176
그림 Ⅲ-5-8. 가출 후 이용한 기관: 전체(연도별 추이) ····· 180
그림 Ⅲ-5-9.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연도별 추이) ····· 181
그림 Ⅲ-5-10.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 ····· 185
그림 Ⅲ-5-11.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역할 ····· 185
그림 Ⅲ-6-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연도별 추이) ····· 199
그림 Ⅲ-6-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연도별 추이) ····· 201
그림 Ⅲ-6-3.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연도별 추이) ····· 212
그림 Ⅲ-6-4.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학교급별) ····· 212
그림 Ⅲ-6-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연도별 추이) ····· 214
그림 Ⅲ-6-6. 수면 시간(연도별 추이) ····· 215
그림 Ⅲ-6-7. 수면 부족 여부(연도별 추이) ····· 216
그림 Ⅲ-6-8. 수면이 부족한 이유(전체, 성별) ····· 217
그림 Ⅲ-6-9. 비만도 현황(연도별 추이) ····· 220
그림 Ⅲ-6-10. 인구 십만명 당 10~19세 자살률 ····· 223
그림 Ⅲ-6-11. 자살 생각 여부 ····· 223
그림 Ⅲ-6-12. 자살 생각 여부(연도별 추이) ····· 225
그림 Ⅲ-6-13. 우울정도 항목별 조사결과 ····· 227
그림 Ⅲ-6-14.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 228
그림 Ⅲ-6-15.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 230

그림 Ⅲ-6-16.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연도별 추이) ····· 231
그림 Ⅲ-6-17. 행복한 정도(연도별 추이) ····· 234
그림 Ⅲ-6-18.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성별) ····· 236
그림 Ⅲ-6-19.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 237
그림 Ⅲ-6-20. 자아존중감 항목별 조사결과 ····· 238
그림 Ⅲ-6-21.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 240
그림 Ⅲ-6-22.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 241
그림 Ⅲ-6-23.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연도별 추이) ····· 243
그림 Ⅲ-6-24. 아동빈곤율 국가 간 비교(2018년 기준) ····· 246
그림 Ⅲ-6-25. GDP 대비 공적 가족지출 비중 국가 간 비교 (2018년 기준) ····· 246
그림 Ⅲ-6-26. 국가별 아동빈곤율과 가족지출 간의 관계 ····· 247
그림 Ⅲ-7-1. 학업중단 생각 경험(연도별 추이) ····· 264
그림 Ⅲ-7-2.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 267
그림 Ⅲ-7-3.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연도별 추이) ····· 269
그림 Ⅲ-7-4.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연도별 추이) ····· 270
그림 Ⅲ-7-5.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연도별 추이) ····· 272
그림 Ⅲ-7-6.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 (연도별 추이) ····· 281
그림 Ⅲ-7-7.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수련시설 (연도별 추이) ····· 282
그림 Ⅲ-7-8.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 (연도별 추이) ····· 283
그림 Ⅲ-7-9.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 (연도별 추이) ····· 285
그림 Ⅲ-7-10.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연도별 추이) ····· 286
그림 Ⅲ-7-11. 평일 여가시간(연도별 추이) ····· 289
그림 Ⅲ-7-12. 평일 학습 시간(연도별 추이) ····· 290
그림 Ⅲ-8-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 294
그림 Ⅲ-8-2.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과 이용률의 비교 (복수응답) ····· 307
그림 Ⅲ-8-3.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1년) ····· 309

그림 Ⅲ-8-4.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322
그림 Ⅲ-8-5.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 국제비교 (2015/2020) ····· 325
그림 Ⅲ-8-6.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 327
그림 Ⅲ-8-7. 아르바이트시 청소년의 주요 부당처우 경험률 ····· 328
그림 Ⅲ-8-8.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연도별 추이) ····· 329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기반한 실태조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30여 년간 네 차례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2024년까지 다섯 번째 국제적 모니터링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과정에는 민간단체와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10여건의 대안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정에서 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정부정책이 아동·청소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되는 데 중요한 추동력이 되고 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공적 아동보호체계 강화, 아동권리 전담기구인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가정 내 체벌 금지를 위한 민법 제915조 개정,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 인식 및 정책 개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과 복장 관련 학칙 규정 근거 삭제, 선거와 정당가입 연령 하향화를 통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 입양 등 대안양육제도의 국제적 기준 부합 노력 등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확산되고 변화되기까지 국제협약이 중요한 기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소년사법 분야의 인권 상황 개선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아동·청소년이 인권과 시민권을

1)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과 최홍일 전문연구원이 집필하였다.

가진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바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분야의 예산과 인력 등 자원 부족으로 많은 정책계획들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교정시설 아동·청소년, 수용자 자녀, 미등록 이주아동, 베이비박스 아동, 성 소수자, 장애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취약집단과 정책소외집단의 경우 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부터가 시급한 과제인 주제도 있으며 코로나19 등 재난상황과 기후변화, 미세먼지와 인권, 기업과 인권 등 새로운 인권 이슈가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2021년에 본 연구 일환으로 수행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20.1%, 인권교육 경험률은 48.0%로 낮은 편이며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이 어려운 이유로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면, 운동, 여가, 자살 생각과 학업중단 생각 등으로 본 정신적, 신체적 건강문제에 학업부담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인권상황이 열악한 경향도 발견되었다.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정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3점으로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1).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인권 현황에 대한 체계적·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권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개발하여 매년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정책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 이행 모니터링 과정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정책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22년도 협약 모니터링은 8개의 협약 영역 중에서 모니터링 특별주제로 '장애아동·청소년 교육권'을 선정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2)]

2) 2022년은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해이며,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심의가 진행되는 해로, 장애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올해 연구를 통한 정책적 기여가 높은 주제로 판단되어 관련 부처 정책협의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22 협약 심층 모니터링 주제로 선정하였다(세부내용은 8쪽 연구방법 참고).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의 두 가지 영역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설문조사와 행정통계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모니터링이며, 다른 하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정책 개선 상황 모니터링이다. 두 가지 모니터링 영역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로 작동하는데, 정부의 법·제도·정책은 현재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동시에 아동·청소년 인권수준과 실태는 향후 법·제도·정책 개선의 근거로 작용한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9: 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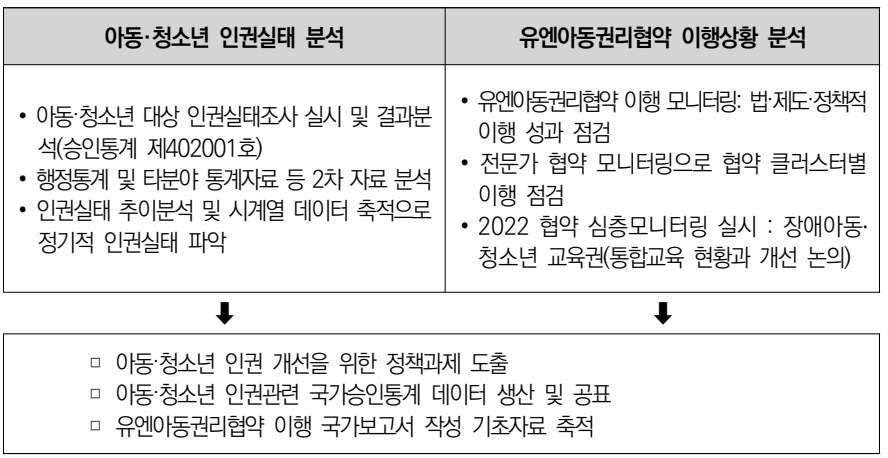


그림 Ⅰ-2- 1. 연구내용 구성

(1) 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2022년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협약 모니터링 기구의 주요 인권 이슈와 활동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및 인권증진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및 일반논평 등 유엔 문서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권고사항 이행 관련 한국정부의 정책 동향과 모니터링 상황, 아동·청소년 분야 민간단체의

인권 활동과 주요 현안 이슈 등을 살펴보았다.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선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기본틀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기준(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CRC/C/58/Rev.3)의 인권영역 구분에 기반하고 있으며, 유엔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지표(Human Rights Indicators, SPO(구조, 과정, 성과지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지표(SDGs) 등을 고려하고 가용 자료원의 발굴 상황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김영지 외, 2021: 8).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7개 대분류, 24개 중분류, 51개 소분류, 115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김영지 외, 2021: 76),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의 변화와 인권동향 등을 파악하여 지표체계 보완사항을 검토하였다. 지표체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등 핵심 이슈, 유엔 인권지표, 지속가능발전(SDGs) 지표, K-SDGs 지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지표항목의 간소화 및 체계화, 지표자료원 추가 발굴, 지표명칭의 명료화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협약모니터링 특별주제인 '장애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대분류 5영역 중 '5-1. 장애' 중분류에 대한 중점 검토·보완을 진행하였다.

(3) 조사도구 보완 및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생산

2021년도 조사 결과 분석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조사도구 보완 필요사항을 검토하되 추이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반복횡단조사로서 의의를 고려하여 조사도구를 보완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지표항목은 115개이며, 그 중 행정통계 및 2차 자료 통계를 통해 생산되는 지표항목은 73개이며 나머지 42개 지표항목은 본 연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상황 변화 파악 및 시계열 데이터 축적을 목적으로 한다(통계청 승인통계 제402001호). 행정통계 및 타 통계자료원을 통해 생산하는 73개 지표 또한 가용 승인통계와 정부부처 생산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한다. 더불어 별권으로 매년 인권연구의 사회적 확산과 데이터의 이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인권관련 영향요인과 인과관계 등을 탐색하는

심화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김영지 외, 2021: 8) 2022년에는 학교인권환경(학생자치활동 중심)과 학업중단 의사에 대한 심화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표 Ⅰ-2-1. 본 연구 일환으로 발간된 심화분석보고서 현황

번호	논문제목	발간년도
1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 결정요인	2013
2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13
3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2014
4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2015
5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6
6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2017
7	청소년의 폭력피해 및 인권존중 경험 유형 및 특성 연구	2019
8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의 인권환경 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0
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연구동향 분석	2020
10	학생의 인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문화 및 환경요인 탐색	2021
11	학교 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2022

(4) 제5·6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 2022 협약 심층모니터링 주제 '장애아동·청소년 교육권-통합교육'[3)]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25개 부처와 관련되는 130여개 권고사항이 제안되었다(〈부록 3, 4〉 참고). 유엔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은 협약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인권 전담 독립 모니터링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4)], 그리고 민간단체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체별 모니터링 작업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 작업 방향에 참고하였다.

2022년에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전체 협약 클러스터 대상 포괄적 모니터링과 더불어 세부 이슈에 대한 심층 검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다는

3) 아동권리협약 심층모니터링은 2019년 제5·6차 권고 이후 2020년부터 주요 인권 환경과 이슈 동향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현황파악 의의가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격년 수행), 2020년에는 학생인권조례 10년을 맞아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상담·구제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주제는 주요 인권 현안을 선정하고 조사결과는 다음 해 정책권고로 이어지므로 인권 모니터링 주제 검토 자료로 의미가 있다.

판단에 따라 '장애아동·청소년 인권'을 심층 모니터링 주제로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학교단위 학생조사로 포괄하지 못한 주제, 현 시기 사회적 이슈화와 정책 개선 논의 가능성(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보고서 심의, 선택의정서 비준 논의,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 수립 시기), 연구조사 가용자원(원내 연계 과제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원내 과제 주제 중복성 배제 등을 고려하였다. 장애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중에서 연구 여건과 주제 중요성, 정책 기여도 등을 충족시키는 중점주제 범위 선정을 위해 관련 이슈 탐색 및 관계 전문가 자문과 정책협의회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22년도에는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표이자 국제협약에서 핵심 이슈로 권고받고 있는 '장애학생 통합교육'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반학교의 특수교사, 일반교사(통합학급 담임교사),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통합교육 모델(정다운 학교) 연구학교 담당자 면접 등을 실시하였다.

표 Ⅰ-2-2. 2022 협약 심층모니터링 장애아동·청소년 주제 선정 및 모니터링 과정

번호	구분	내용	참석자	날짜
1	전문가 자문회의	• 장애 아동 · 청소년 정책 동향 및 중점과제 논의	•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학계 전문가 1인, • 현장 전문가 2인	02.03.
2	전문가 자문회의	• 장애 아동 · 청소년 정책 동향 및 중점과제 논의	• 현장 전문가 3인	02.14.
3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 2022년 협약 심층 모니터링 주제(장애아동청소년) 관련 논의, 교육부 및 교육청 특수교육 관련 정책동향 파악	• 부처 관계자 2인, • 시도교육청 관계자 2인	02.22.
4	민간단체 아동권리 협약 이행 사업 동향 간담회	• 민간단체의 장애아동·청소년 인권 사업 현황 파악	• 현장 전문가 4인	03.31.
5	서면자문	• 모니터링 도구 검토(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협약 모니터링용 특수교사 인식조사)	•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학계, 현장 전문가 16인	04.28~ 05.03
6	전문가 자문회의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국내 동향과 이슈 논의 및 집필 관련 협의	• 현장 전문가 2인	05.23.
7	전문가 자문회의	• 협약모니터링 특수교사 인식조사 설문지 및 장애 분야 인권지표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2차	•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학계 전문가 2인, • 현장 전문가 1인	05.27.

번호	구분	내용	참석자	날짜
8	전문가 자문회의	• 협약모니터링 특수교사 인식조사 설문지 및 장애분야 인권지표 보완 전문가 자문회의 3차	•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학계 전문가 1인	05.27.
9	전문가 자문회의	•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 장애 지표 보완사항 검토	•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학계 전문가 2인, • 현장 전문가 1인	06.27.
10	전문가 간담회	• (1차 : 국가보고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정부 대응 현황과 주요 이슈 • (2차 : 민간보고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심의과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권고사항: 장애아동· 청소년 분야 성과와 과제	•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학계 전문가 1인, • 현장 전문가 2인	08.18.
11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 2022 협약 모니터링 특별주제(장애아동, 청소년 인권) 관련 연구결과 및 정책 현황 공유 및 정책화 방안 논의	• 부처관계자 3인	10.18

(5)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제안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와 현황 및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모니터링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 법·제도 및 정책현황 자료, 각종 행정통계 및 타 분야 통계자료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2) 전문가 의견조사 및 자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보완사항 검토 및 조사도구 수정·보완 관련 자문,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관련 부처별 이행성과 및 제한점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점검,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 개발 관련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노력 정도와 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과 학계 전문가 29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별로 협약이행 노력 정도(5점 척도의 점수 부여)와 점수부여 근거를 기재하도록 하여 정부의 협약 이행 성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 2022 협약 심층모니터링 : 통합교육 담당 교사 면접조사

2022년 협약모니터링 관련 중점주제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현황과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교사 및 관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좀 더 심층적인 내용 수집을 위해 FGI를 진행하였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과정 통합을 위해 운영 중인 정다운 학교 교사(특수교사 및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형태(연구학교, 시범학교), 지역(수도권, 수도권 외), 학교급(초, 중, 고)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구성하여 총 4회 11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4) 설문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115개 지표 항목 중에 42개 지표의 자료원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통계청 승인통계) 결과이다. 설문조사는 전국 초등학생 4~6학년, 중·고등학생 1~3학년 등 총 8,8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학생 설문조사 관련 세부내용은 Ⅲ장 1절 참조).

또한 2022 협약 심층모니터링을 위해 교사대상으로 장애학생 통합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대상 360개교와 정다운 학교 운영 104개교의 관리자, 특수교사, 일반교사(통합학급 담임교사)를 임의표집하여 800명 조사를 목표로 진행한 결과, 최종 78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6) 전문가 워크숍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지표체계 개선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 정책 개발, 협약모니터링 중점주제 '장애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논의,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심층분석 및 보고서 작성 양식 개선과 시사점 논의 등을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점검 및 협약이행 과제 선정 관련 부처와의 정보공유 및 협업 논의, 인권실태 통계자료원 협조 협의, 2022 협약 심층모니터링 세부 주제 선정 논의 및 정책 시사점 도출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3. 연구의 체계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모니터링'이라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연구내용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협약이행을 위한 법·제도·정책 모니터링' 과정과 주요 성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으며 연구 결과물의 구성내용은 〈표 Ⅰ-3-1〉과 같다(김영지 외, 2021: 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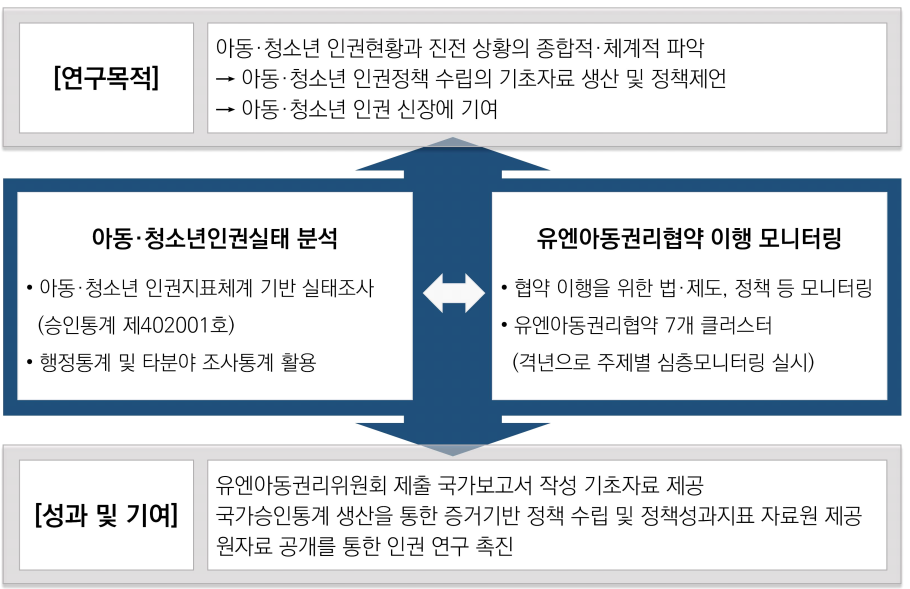


표 Ⅰ-3-1. 보고서 구성 개요

구분	개요
총괄보고서 (연구보고22-일반0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결과를 담은 기본 보고서
심화분석보고서 (연구보고22-일반01-01)	인권 관련 영향요인이나 인과관계 등을 심화분석하여 인권연구의 사회적 확산과 데이터의 이론적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발간하는 소논문 ※ 인권데이터는 본원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통계청 MDIS,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등에서 제공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22-일반01-0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승인통계 402001호) 기초통계자료와 인권지표체계 관련 기본 관리자료 모음집(통계청 KOSIS 탑재 기초통계표, 문항별 시계열 추이그래프, 인권지표 및 설문문항 변경 이력 등)

제2장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 이행 동향과 인권지표체계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증진 활동 동향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최종견해 이행 현황과 과제
3. 2022 협약 심층모니터링 : 주요 국제협약 심의에서 장애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주요 쟁점
4.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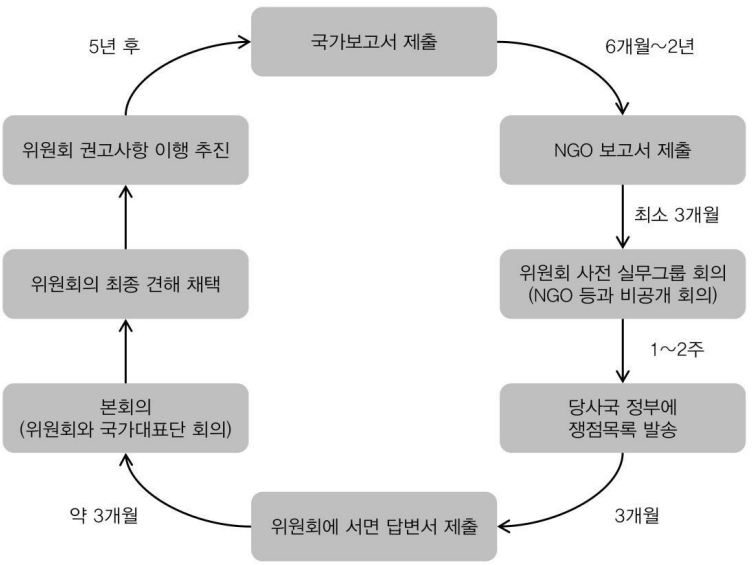
2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 이행 동향과 인권지표체계[5)]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증진 활동 동향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수준의 변화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사국 의무를 가진다. 본 연구는 매년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국제적 모니터링 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파악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분야의 주요 이슈를 인권지표체계 개선과 인권정책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김영지, 황세영,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0: 17-18). 2020~2021년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코로나19 관련 활동과 대책, 아동권리와 대안돌봄 관련 '일반 토론의 날' 논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관련 일반논평 작업 과정과 공표 내용, 자유박탈아동 관련 연구 동향 등을 파악하여 한국의 모니터링 과정에 반영한 바 있다.

2019년에 제5·6차 심의를 받은 한국정부는 2024년 12월 19일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정보를 담은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림 Ⅱ-1-1] 모니터링 과정에서 왼쪽 상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채택 이후 이의 이행을 위해 5년간 노력한 성과와 아동·청소년 인권 진전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의 전 부처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시행 성과 취합·분석과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을 비롯하여 시민사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협력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내 모니터링 작업체계 구축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2장의 1절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이, 2절은 김희진 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가, 3절은 엄선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4절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과 최홍일 전문연구원이 집필하였다.



* 출처 : Theytaz Bergman, L., Fegan, R., Myers, L. (2014). p.4. 보완. 김영지 외, 2017: 31에서 재인용

그림 Ⅱ-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과정

2022년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핵심 인권이슈는 '기후변화'라 할 수 있다.[6] 유엔 특별보고관도 아동권리와 환경을 주제로 전세계의 책무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환경과 아동권리'를 주제로 제26차 일반논평을 작성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12월부터 온라인 자문과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자문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굿네이버스 등 한국의 아동단체도 일반논평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여러 아동·청소년 기관·단체에서 기후변화 주제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반논평 제26호(기후변화)는 광범위한 자문결과에 따라 2022년 11월까지 초안을 마련하여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2023년 2월에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일반논평은 협약 조항의 구체적 이행 방향과 내용을 안내하는 해설서라 할 수 있어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 활동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아동인권기반 접근과 대책 마련에 참고해야 할 것이며, 협약이행 모니터

6) 이하 국제 동향은 유엔최고대표사무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https://www.ohchr.org/en/documents/ general -comments-and-recommendations/draft-general-comment-no-26-childrens-rights-and에서 2022년 10월 14일 인출.

링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소관부처 지정 및 성과 분석 점검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Ⅱ-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2001~2022)

번호(공표일)	일반논평
제1호(2001.4.17)	교육의 목적
제2호(2002.11.15)	아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 국가 인권 기구의 역할
제3호(2003.3.17)	HIV/AIDS와 아동의 권리
제4호(2003.7.21)	아동권리협약 맥락에서의 청소년 건강과 발달
제5호(2003.11.27)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제6호(2005.9.1)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
제7호(2006.9.20)	초기 아동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 (개정본)
제8호(2006.8.21)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제19조, 제28조 제2항, 제37조)
제9호(2007.2.27)	장애 아동의 권리
제10호(2007.4.25)	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
제11호(2009.2.12)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
제12호(2009.7.20)	아동의 피청취권(의견표명권)
제13호(2011.4.18)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
제14호(2013.5.29)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권리(제3조 제1항)
제15호(2013.4.17)	달성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아동의 권리(제24조)
제16호(2013.4.17)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업 영역의 영향에 대한 국가 의무
제17호(2013.4.17)	휴식, 레저, 놀이, 여가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제31조)
제18호(2014.11.14) (2019.5.8. 개정)	유해한 관습에 대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31호) 및 아동권리위원회(18호) 공동 일반논평
제19호(2016.7.20)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제4조)
제20호(2016.12.6)	청소년기 아동의 권리 이행
제21호(2017.6.21)	거리 상황의 아동
제22호(2017.11.16)	국제이주 맥락에서 아동인권 일반원칙 관련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3호) 및 아동권리위원회(22호) 공동 일반논평
제23호(2017.11.16)	국제이주 맥락에서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귀환국에서의 아동인권 관련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4호) 및 아동권리위원회(23호) 공동 일반논평
제24호(2019.9.18)	아동사법 체계에서의 아동권리
제25호(2021.5.2)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제26호(2023 확정)	아동권리와 기후위기 (2022년 11월 초안 발표)

* 출처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TreatyID=5&DocTypeID=11에서 2022년 10월 17일 인출 자료를 표로 구성함.

* 주 : 김영지 외(2020: 22-24) 자료의 공표일과 문서명을 보완 및 현행화하고 제26호를 추가함.

한편 2022년에는 18명의 아동권리위원 중에 2023년 2월에 임기 만료되는 9명의 아동권리위원 후임으로 6명의 연임 위원과 3명의 신규 위원(오만, 아르헨티나, 파나마)이 선출

되었는데, 9명의 위원은 2027년 2월까지 임기가 지속되므로 한국정부의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은 두 개의 협약 선택의정서 발효 20년이 되는 해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인식과 비준 확산을 위한 토론회(3.23),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관련하여 제49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행사 중 아동 징집 종식을 위한 토론회(3.14) 등이 개최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89차 회의 및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장애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3월 21일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CRC-CRPD) 공동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외에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논의에 아동인권 분야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아동인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최종견해 이행 현황과 과제

1) 아동권리협약의 의미와 당사국의 책무

모든 사람의 연령, 국적과 인종·민족, 성별과 성적 지향, 장애, 사회적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인간으로 타고난 존엄성을 존중받기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 원칙은 아동에게 더욱이 중요하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 존재하지만,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성은 매 순간 자신의 권리 주장과 방어, 구제에 더 큰 어려움을 따르게 하기 때문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성인과 다르지 않은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아동의 권리 실현에 요구되는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의사였다는 점에서 더욱이 유의미하다. 대한민국 또한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state party)으로서, 지금껏 4차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7] 보고와 심의를 거쳐왔으며, 현재는 2024년 12월 예정된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기한까지 5·6차 국가보고서에 따른 최종견해를 이행하는 중이다.

7) "이행(implementation)"이란 당사국이 자국 관할권 내에서 아동을 위한 협약상 모든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다. 아동권리협약 제4조는 당사국이 협약에 포함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UNCRC, 2003: para. 1).

특히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3년 차를 맞이하는 해이자,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03.09.)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06.01.)를 치르는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한 때였다. 격변하는 국내 정치환경과 더불어 계속하여 변이하는 감염병 확산, 사상 최악의 폭염과 장마가 연이은 이상기후, 2021년 쿠데타로 정관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의 억압 통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재집권과 여성을 비롯한 인권 탄압 강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분쟁이 지속되는 국제정세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아동의 존재를 거듭 확인하게 하며, 전 세계 모든 아동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해야 할 당사국의 역할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였다.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 최초로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잇는 인권적 가치라 할 수 있다. 가장 작고 낮은, 생존의 어려움을 맞닥뜨리기 쉬운 곳에서 존엄한 삶의 모습이 존중될 때, 사회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가치가 모두에게 가닿을 것이며, 이는 모든 인류 구성원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최종견해는 비단 형식적 문장 해석을 넘어, 아동권리협약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의 방향성을 더한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 인간사회의 확장된 지식과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하며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아동의 일상을 고려할 때, 당사국의 이행 보고에 따른 심의와 최종견해는 협약 이행에 대한 당사국의 지침서와 다름없다.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어떤 현실을 포섭할 수 있으며, 놓치지 말아야 할 이념은 무엇인지 다시금 안내하고, 확장된 지평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된다. 최소 5년을 주기로 보고되어야 할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이 문자 그대로의 권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명실상부한 준거로 기능하고 있는 협약의 위상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2021년 이후로 지속된 대한민국의 제5·6차 최종견해에 따른 이행 경과를 점검하고자 한다. 특히 일반이행조치와 일반원칙에 초점을 두어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구조적 개선 여부,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더불어 확장되는 아동권리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어서 2022년 새 정부 출범 전후로 가시화된 아동정책 동향과 사회적 논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2) 아동을 위한 협약상 모든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시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의 모든 아동에 대한 책무는 '법적 의무'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인권의 이행이 아동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선적 절차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UNCRC, 2003: para. 11). 이를 위해 모든 국내적 법률이 협약에 완전히 일치하고, 협약상의 원칙과 규정들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UNCRC, 2003: para. 1). 특별히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지침을 통해 협약 조문을 9개의 클러스터로 배열하면서, 그 첫 번째로 제4조와 제42조 및 제44조 제6항을 하나로 묶어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일반이행조치)"로 제시하였으며(UNCRC, 2015), 세부 내용에는 유보의 검토, 국제인권문서의 비준, 입법적 조치, 권리의 사법심사 가능성, 행정적 및 기타 조치(협약에 근거한 포괄적인 국가전략의 개발, 아동권리 이행의 조정, 분권화·연방화 및 위임[8], 민영화, 이행 감독 - 아동영향평가의 필요성, 정보수집과 분석 및 지표의 개발, 예산상 아동의 가시화, 훈련 및 역량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 국제협력, 독립적 인권기구), 협약 보급과 인식증진 등이 포함된다(UNCRC, 2003). 협약 이행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입법·사법·행정부의 유기적인 협력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일관된 체계 속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김희진, 김상원, 2020).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생존 및 발달, 아동참여와 견해 존중의 원칙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향유에 약속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이행조치 관련 권고는 매번 반복된 내용이거나 구체적 진전을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쉽사리 배제되는 아동의 존재를 지적하며, 권리의 실현을 위한 공적 책무가 미비한 실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5차례에 걸친 릴레이 포럼을 개최하며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동권리보장원, 2022.09.02.). 포럼을 주최한 관계자들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지금까지 마련되지 못한 이행법률을 갖추고 아동정책에서의 국가 역할을 강화"할 수 있으며(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c), "아동과 성인이 동등한 인격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는 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포부를 밝혔다(아동권리보장원,

8)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권한 이양 및 정부의 위임을 통한 권력의 분권화는 국가 구조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 국가 관할권 내에서의 모든 아동에 대한 의무를 당사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을 감소시키지 않음을 많은 당사국들에게 강조할 필요"를 말한다(UNCRC, 2003: para. 40). 즉, 아동권리협약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마땅히 이행되어야 하며, 범국가 단위에서 일관된 협약 이행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조정은 필수적이다.

2022.09.02.). 5차례의 포럼 중 제5차 포럼의 발제에 제시된 아동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칙(목적, 기본이념, 정의, 부모 등 보호자 및 국가와 사회의 책무, 타 법률과의 관계), 아동정책의 수립 및 시행(아동정책조정위원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평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근거), 아동의 권리 및 보호(아동의 권리[9], 출생 후 신고될 권리, 생애주기별 발달과 발달 지원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환경에 관한 권리, 교육 및 보육에 관한 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쉴 권리와 놀 권리, 아동의 자립, 체벌 및 경제적 착취의 금지 등), 권리구제(아동권리옹호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최승원, 2022).

2008년 10월, 정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합하는 「아동·청소년복지법」(「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정을 시도했던 이후로,[10] 국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아동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거나 논의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발의조차 못 되거나 발의된 이후에도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11] 법률의 실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 분장과 해당 부처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크게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절된 정책조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 관련 부처의 의지와 협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법 제정에 동력을 얻기 어려운 요인이 크다.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법률에 따른 관계기관과 민간단체들의 이해관계도 풀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다.[12]

과거의 논의경과에 비추어, 다시금 정부가 주축이 되어 아동기본법 제정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분명 고무적인 변화라 평가할 수 있다. 2019년 9월, 대한민국의 제5·6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본심의에서 '아동부'와 같은 정부조직 수립 계획

9)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명·생존·발달·보호·참여 및 자립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10) 당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12월 27일 전부의 요구로 철회되었다. 법제처. (2008.10.27.)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 7922&lawCd=2000000126126&lawType=TYPE5&currentPage=4&keyFieId=lmNm&keyWord=%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2008.12.31.) [1803397]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P0R8G1Q2B3A1W1X7G4H8Y5D1M2X6K5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11) 2013년 4월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인권법안」, 2015년 5월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청소년 참정권 보장 활동,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을 목표로 2017년 결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발의에 이르지 못했다(강정은, 2018).

12) 흥사단. (2008.11.11.) [서울흥사단 성명] 아동청소년법률 통합 반대 성명. https://www.yka.or.kr/html/alim/statement.asp?no=10201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2010.02.04.) 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적인 아동정책의 추진의지를 밝히고 아동기본법을 신설하라. http://grouphome.kr/pages/page_88.php?sn=5478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이 있는지 질의가 있었는데, 당시 정부 대표단 단장으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차관이 "현재까지는 아동부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한국 정부 내에, 또 한국의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당분간 아동부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13]라는 답변이 제시되었던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러하다.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이 질의한 전후 맥락을 보았을 때, 해당 질문은 아동을 전담하는 부처 설립을 요구했다기보다는, 국내에서 아동 관련 법과 정책이 분절되는 문제 속에 실효적인 정책조정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묻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다만, "협약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법률, 행정과 법 해석(사법)은 아동권리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도모하는 것이며, 협약의 이행이란 모든 연령대와 모든 상황에 있는 아동의 권리 존중과 보호·실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아동기본법 제정의 핵심목표는 보호대상아동과 같은 협소한 부분에 치중되었던 아동정책의 한계를 넘어, 분산되어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과 관련된 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이행하는 근거법 마련에 있어야 한다. 일관된 체계는 유연한 법 집행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필수요건이며, 권한을 갖춘 책임 있는 당국의 존재는 어디에서나 협약의 이념과 가치를 관철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9). 즉, 아동기본법은 최소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국내법에 따라 그 이상의 연령을 아우르는 모든 아동의 권리 실현에 기초가 되는 조직 기반, 정책조정과 모니터링 체계, 실태조사와 영향평가, 예산, 권리구제를 비롯한 아동권리 이행 제도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미 협약은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며, 협약을 적용하기 위한 구조적 체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적 한계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약과 다름없는, 설령 협약을 구체화하는 아동의 권리 내용을 국내법으로 제정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아동정책 관련 조직체계가 전면 개편되지 않는 한,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협약의 국내법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헌법, 「민법」과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아동의 당사자성과 지위를 가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가려진 아동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아동의 차별을 예방하고, 당사자의 의견에 기반한 권리구제

13) 국제아동인권센터. (2019.09.2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 기록. 국제아동인권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ildrights/221661175709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천하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온 사회가 아동의 존재를 놓치지 않는 시각을 기본값으로 갖춘 변화, 이는 아동기본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만으로 완수될 수 없는 과업이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보건복지부가 릴레이 포럼을 통해 밝힌 아동기본법안의 세부 내용은 여전히 보건복지부 관련 정책에 국한되어 있으며, 여타 관계부처와의 중복된 기능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지 방향성이나 계획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쉽다. 국내법상 명시된 권리 규정은 협약의 국내 이행에 다소간 도움은 될 것이나, 권리침해와 권리구제의 실효적인 근거로 작동하기에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독립 모니터링 기구도 제언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도 확보되지 않는 현재, 범정부 대상으로 기능해야 할 권리구제 절차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진정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을 상기해야 한다. 그 과정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기관은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무엇보다 아동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청취는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기본법 제정 시도가 보여주기식 법 제정에 그치지 않도록, 아동권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법 제정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광범위한 협력과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실천하는 노력과 진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일반원칙으로 제시한 협약 제2조(비차별), 제3조 제1항(아동 최상의 이익), 제6조(생명, 생존 및 발달), 제12조(아동참여와 견해 존중)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UNCRC, 2003: para. 12). 국가의 의무이행은 아동권리에 기반한 관점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아동정책의 개선은 있을지언정, 아동·청소년 권리의 전 영역에서 일반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현저히 미비하다.

(1) 협약 제2조: 비차별

대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지난 2021년 6월 1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10만 명의 국민청원이 성사되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가 차별금지법 관련 청원의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말에 해당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미루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하며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한없이 연기되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1.11.09.). 국회는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변경 등과 연관되어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만 말할 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1.11.09.), 현존하는 차별이나 잠재적인 차별을 확인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필요는 외면하였다. 여전히 아동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의 차별은 손쉽게 가려지고, 법과 정책의 대상에서 누락되며, 자원의 우선적인 배분에서 배제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반복된 장애인 가족의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비마이너, 2022.08.26.), 2022년 역대급 폭우에 반지하 거주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한겨레, 2022.08.10.)은 최악의 위기 속에 수면 위로 드러난 일부 사례일 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해(국가인권위원회, 2022.05.03.), 문화체육관광부가 "차별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는 것(한국일보, 2022.05.03.)도 여전히 아동을 '완전한 인간'이 아닌 '덜 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미숙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 시각을 보여준다. 출생등록과 보육시설, 교육, 보건, 복지, 여가 및 국가지원의 접근 가능성, 학교와 가정환경 등 사회 곳곳에서 만연한 아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략을 시행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14]

(2) 협약 제3조 제1항: 아동 최상의 이익

"폭넓은 아동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확장"하고, "모든 분야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고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하라는 위원회의 제5·6차 권고[15]에서 참고할 수 있듯, 아동 최상의 이익을 점검하는 하나의 척도로 기능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는 2019년과 2020년 시범운영을 거친 뒤,

14) CRC/C/KOR/CO/5-6, para. 1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15) CRC/C/KOR/CO/5-6, para. 18.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2021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제도적 안착을 꾀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12.02.).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정책영향평가 추진, 평가수행 기관별 DB 구축 및 영향평가 관련 자료 통합 관리를 통해 평가수행 기관의 업무 효율성 증대, 나아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사업추진 현황 공유 및 제도 관련 소통창구 운영을 목표로 2021년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온라인 플랫폼 지킴(GCIM: Global Child Impact assessMent system) 시스템[16]이 구축되었으며(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b: 12, 68), 2021년 12월에는 해당 시스템의 기능개선 작업도 완료되어 활용 중이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b: 12). 또한,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본 사업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한 2022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은 보다 명료하게 체계화된 아동정책영향평가 추진체계를 안내하고 있으며, 특화정책과 심화정책을 자체평가의 필수 평가대상으로 실시하도록[17] 하여 자체평가와 전문평가의 연계 및 국가 단위의 일관된 모니터링 자료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아동영향평가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권리적 측면에서의 변화 및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실효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되도록 독려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b). 매뉴얼상 자체평가 및 전문평가 전반에 "아동의견 및 참여"를 강조하여(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b), 아동 최상의 이익 실현에는 아동의 의견청취와 참여가 필수적이며, 협약 제12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동 최상의 이익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곳곳에서 환기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UNCRC, 2013; para. 43). 아동과 관련된 모든 재판절차, 의사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며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18]는 권고는 제3·4차 최종견해에 이어 제5·6차 최종견해에서도 반복된 권고이다. 이러한 아동 최상의 이익은 정부, 국회 및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개념으로(UNCRC, 2003; para. 12), 입법·사법·행정의 전 영역에서 아동권리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기준 마련, 아동권리에 기반한 해석과 적용, 관계자의 아동권리에 기반한 관점과 전문적인 역량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협약의 모든 영역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천하는 변화는 '정답'과 '끝'이 정해져 있을

16)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영향평가 홈페이지. https://child.ncrc.or.kr/

17) 특화정책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를 통해 차별적인 정책개선을 원하는 대상"으로, 해당 연도 아동정책시행계획 특화사업으로 선정 제출한 사업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며, 심화정책이란 "해당 연도 전문평가 대상정책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b: 18).

18) CRC/C/KOR/CO/5-6, para. 18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CRC/C/KOR/CO/3-4, para. 3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수 없지만, 최소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담당자의 인식변화, 그 과정에서 확보되는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결과에 대한 아동과 이해관계자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은 분명 아동 최상의 이익이 모두의 삶에 스며들고, 더 나은 기준으로 마련되며, 그로써 좀 더 향상된 아동권리 이행에 기여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3) 협약 제6조: 생명, 생존 및 발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은 단연코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되고 특화된 국가 대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2011년 이후로 지난 10년간, 청소년(9~24세)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가 계속하여 1위였으며, 자살로 인한 사망률도 꾸준히 증가하던 중 2020년에는 청소년 사망자 수의 50%를 넘는 결과를 보였다(여성가족부, 2022.05.25.). 코로나 첫해에 해당하는 2020년에 자살률이 소폭 감소했다는 결과와 비교할 때(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 직접적이고 중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건의 아동들에게 미친 차별과 편견, 배제와 낙인, 무관심의 타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이주아동을 배제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 2021.07.08.), 외국인에 대한 선별진료를 강요했던 사례(국가인권위원회, 2022), 장애아동의 발달 지원을 위한 의료적·교육적·복지적 개입의 사실상 전면 중단(국가인권위원회, 2020.12.22.), 비대면 수업 중 적정한 교육환경을 위한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비대면 수업을 위한 전자학습기기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상황과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설보호아동의 높아지는 심리적 불안 지수와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문제(국가인권위원회, 2022.07.19.)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등 아동·청소년이 가장 큰 피해자였던 국가재난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뚜렷한 성과없이 마무리되었다(한겨레, 2022.06.16.).

팬데믹 3년을 거치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등교수업은 거의 대부분 정상화되고, 공적 기관도 상시적인 운영을 시작하고 있으나, 단절과 규제를 중심으로 운영된 '방역지침' 하에 놓쳐진 아동·청소년의 2-3년의 공백은 결코 손쉽게 회복할 수 없다. 아동기는 연속적인 발달과정에 누적되는 시간으로, 그들을 둘러싼 가정 및 사회환

경 속에 상호작용의 경험을 더해가며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멈춤'으로 대표되는 갇힌 시간은 아동의 자라날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으며, 갇힌 시간 속에 커질 수밖에 없는 아동·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려를 보듬기 위한 선제적이거나 우선된 노력은 없었다. 아동 자살의 효과적 예방, 아동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의 건강상 피해, 보육·교육환경의 실내 공기질과 유해물질 노출 모니터링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에 대한 제5·6차 권고사항[19]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아동을 가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모습을 확인케 하며,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심화된 아동의 불안정한 삶을 똑바로 직시하고, 지켜내야 할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를 뒷받침한다.

(4) 협약 제12조: 아동 참여와 견해 존중

2017년 발의된 가사소송법안은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법무부는 다시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22년 5월 3일 입법예고하였다(법무부, 2022.05.03.). 해당 전면개정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부모'를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소송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개정방향으로 하여, 부모의 친권남용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하고(안 제28조, 제50조),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에서 모든 연령대의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며(안 제20조),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안 제16조) 등 가사소송 절차 전반에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무부, 2022.05.03.). 「민법」과 「입양특례법」 등에서 아동의 동의나 의견청취 연령을 13세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주제나 조건적인 상황에서 참여의 기회 정도만 제공될 뿐[20]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그 견해에 정당한 비중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협약 제12조의 원칙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현실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개정사항은 그간의 고착화된 틀을 벗어나는 의미있는 변화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영유아는 구어나 문자화된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훨씬 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 생각과 희망을 전달하고 선택한다고 강조하였듯(UNCRC, 2005; para. 14), 어떠한 연령대에 있든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19) CRC/C/KOR/CO/5-6, para. 20.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20) CRC/C/KOR/CO/5-6, para. 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사안에서 그들이 갖는 욕구를 표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반 대중에게도 접근성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는 사법절차에 있어 아동의 당사자성과 필수적 참여 가능성을 인정하는 법률은 아동참여와 의견존중의 실천이 절차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는 관점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아직 국회 논의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협약의 일반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에 협약 제12조도 반영하라는 위원회의 반복된 권고는 제·개정 시도조차 없다. 아동 의견청취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매개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지속되는 다양한 아동참여기구 운영,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만 16세 정당 가입연령 하향 등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동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아우르는 참여와 의견청취 권리의 필수적인 보장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4) 새 정부 출범 전후의 아동정책 동향

(1) 출생등록 제도 개선

2022년 3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의안정보시스템, 2022.03.04.).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을 최초로 밝힌 이후(보건복지부, 2019.05.24.), 3년에 가까운 긴 시간을 거쳐 법안의 형태로 가시화된 것이다. 그동안에도 2021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인천 8세 여아 사망 사건, 제주 세 자매 사건 등이 연이어 드러나며, 제도의 공백 속에 방치된 아동권리 실태를 여실히 알 수 있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전국 아동양육시설 등에 출생미신고 아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입소 당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146명이었으며, 이 중 약 20%가 2021년 3월 조사 당시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나타나, 확인되지 않은 출생미등록 아동은 그 이상일 것으로 능히 짐작할 수 있다(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2022.04.01.).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은 실무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았던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출생신고 제도(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4항)의 한계를 극복하는 적극적 조치이며,[21] 출생의 순간부터 적용되는 공공

21) 권인숙 의원이 2021년 11월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4항이

의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더욱 긴밀한 가족지원을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다만, 발의된 법률안에 따라 출생사실이 통보되려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가 필요한 결과, 이들 번호가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사실상 출생통보 체계에서 배제될 수 있는 한계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된다(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2022.09.16.).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때에도 부모가 자신의 국적국에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는 한 익명출산과 다름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2022년 6월에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하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안') 발의되고(의안정보시스템, 2022.06.08.),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이 법무부의 새정부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법무부, 2022.07.26.)은 나름의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의 인권 보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2] 국적을 기준으로 이원화된 출생등록 체계는 아쉬움이 있지만, 출생등록에 관한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 관계 발생 및 변동 사항을 공시·공증하는 것이며 가족관계등록법상 외국인을 위한 출생등록부를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23]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안 추진은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아동의 누락없는 출생등록 제도 구축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 제정의 조속한 논의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제도와 별개로 법무부가 관할하게 될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부가 출입국사범 단속 등에 오용되지 않으며, 외국인아동에 대한 차별과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신뢰할 만한 제도 구축은 이후로 남겨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2022.09.16.).

앞선 2건의 법안 발의에 더하여, 현행 법체계 하에서 최대한 출생미신고 아동을 발굴·지원하려는 행정의 움직임도 있었다. 정부는 2022년 3월 국무총리(김부겸) 주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을 발표한 이후(국무조정실, 2022.03.31.), 그 후속조치로 2022년 5월 9일부터 "출생미신고자 집중발굴·자진신고 기간"을

시행된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한 사례는 10건에 불과했다. 검찰청은 출생신고 자료를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경향신문, 2022.01.01.).

22) 법률안 제1조, 제2조 참조.

23) 국제아동인권센터. (2019.09.2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 기록. 국제아동인권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ildrights/221661175709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운영하고 있다.[24] 법 개정에 앞서,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의 의무이행을 도모하는 본 계획은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 파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25]을 촉구한 위원회의 권고에도 부합한다. 더욱이 2022년 대선 전후로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처리의안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국회의 입법적 기능이 멈춘 현재,[26] 출생미신고 아동 발굴과 지원을 위한 정책은 아동권리 보장에 미흡한 현행 법제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아동을 포함한 주민복리에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지자체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를 촉진하며, 무엇보다 출생등록에 관계없이 권리 보장에 누락이 없어야 할 아동의 권리(협약 제7조 제2항)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2)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계획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아동권리협약 제27조 제3항은 물론,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제1항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서 강조된 중요한 규정으로(UNCESCR, 1991: para. 3), 모든 개개인은 연령, 경제적 지위, 집단 또는 기타 다른 이와의 관계 또는 신분 및 기타 요인 등과 관계없이 적절한 주거를 누릴 권한이 있다(UNCESCR, 1991: para. 6). 관련하여, 2022년 7월 최종 발표된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를 위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2a: 89).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발표되며(보건복지부, 2021. 08.02.) 국내에서도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 논의가 정책 단위에서 가시화되었지만, 이때에도 장애아동은 성년이 되는 경우에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우선 지원"으로만 언급되고,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등 가정형 보호 우선"이라는 추상적인 과제만 제시했을 뿐이다.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의 우선적인 탈시설

24) 인천 서구청 새소식. (2022.05.30.). 게시글 "출생 미신고아동 집중발굴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main/bbs/bbsMsgDetail.do?msg_seq=26333&bcd=notice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등 각 지자체 공지사항을 통해 대상자 발굴과 출생신고 지원, 사후관리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5) CRC/C/KOR/CO/5-6, para. 2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26)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검색: 상세검색 - "제안대수: 제21대(2020-20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처리결과: 가결" 검색 결과 참조(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Detail.do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정책 추진과 원가정 복귀를 비롯한 가정형 보호 원칙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은 부재했다. 즉,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밝힌 국정과제는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하고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27]을 권고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최종견해가 최초로 등장한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아동생활시설 중 개인양육시설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전체 1,4536명(아동양육시설 10,352명, 아동일시보호시설 315명, 아동보호치료시설 436명, 자립지원시설[28] 253명, 공동생활가정 3,126명, 개인양육시설 54명)[29]인데, 이 중 대규모 장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아동육시설에 보호조치된 비율은 71.22%에 달한다. 보호조치 현황 통계에 나타난 아동의 시설 보호조치 비율도 2021년 63.54%, 2020년 66.19%, 2019년 67.68%로(통계청, 2022), 그간 민간의 대형양육시설을 중심으로 시설보호가 더 쉽게, 더 많이 결정되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협약상 대안양육 중 시설보호는 예외적 수단으로 제시되며(협약 제20조 제3항),[30] "시설양육은 특별히 합당하거나,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아동 개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는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을 고려할 때(UNGA, 2010: 21), 탈시설 정책 수립을 명시적으로 밝힌 국정과제는 단연코 환영할 만하다.

새 정부의 전향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수립과 추진에 얽힌 아동의 입체적인 삶을 아우르는 섬세한 고려가 국정과제 전반에 부재하다는 점은 아쉽다. 보호아동 탈시설 정책은 아동학대 예방 및 가정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아동보호

27) CRC/C/KOR/CO/5-6, para. 32(a).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28)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5호)"로 최소 18세 이상의 청소년이 거주하는 곳이지만,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및 41조에 따라 아동권리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여타 아동복지시설에서도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포함하였다.

29) 보건복지부(2021.09.16.). 2021 아동복지시설 현황(2021.12.31. 기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보건복지부(2021b). 2021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20.12.31.현재).

30) 협약 제20조 제3항은 "이러한 보호(대안양육)는 위탁양육, 이슬람법의 카팔라, 입양, 필요한 경우 적합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을 포함한다. 대안양육을 모색할 때는 아동양육이 계속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아동권리협약 이행 증진을 목적으로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과 더불어, 협약 제20조의 맥락을 고려할 때, 집단생활시설이라는 특성상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존중하기 어려운 시설보호는 아동에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후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안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및 가족지원 서비스가 전제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분리가 필요한 때에도 그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가정 지원과 보호가 우선순위로 제공되어야 한다(UNGA, 2010). 대안양육에 있어 가정형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아동복지법」 제4조). 향후 5년을 바라보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동 최상의 이익에 입각한 계획 수립 및 제도적 정착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물론 시설보호 정책을 전환하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더욱 긴밀하게 논의되어야 할 때이다.

(3)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소외시키는 배제와 차별의 언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앞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이라는 전향적인 계획을 내세운 것과 대조적으로, 아동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하는 기존의 시각을 탈피하지 못한 모순도 함께 나타난다.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대한민국정부, 2022a; 111). 이에 따라 법무부가 구성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는 소년의 재범방지, 소년의 교정교화 및 소년범죄 예방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에 앞서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등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의도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법무부, 2022.06.14.).

그러나 소위 '비행 청소년', '우범소년', '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대부분이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아동, 위기청소년[31] 및 가정 밖 청소년[32]이라는 증거는 다수의 연구자료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 관한 아동사법 제도는 사회 공동의 책임을 돌이켜보며 아동의 회복과 재사회화를 도울 수 있도록 고안된 특별한 형사사법체계이다(UNCRC, 2019).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하는 긍정적 발달을 저해하는 주변인들과 사회환경의 영향을 배제한 채, 아동에게만 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제한하고, 비사법적 조치(다이버전)를 도입하며, 재판절차 전반에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제도적 장비를 갖추라는 협약 제40조 및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도 어떠한 상황에서건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고, 더 나은 발달을 조력하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31)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

3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 · 학대 · 폭력 ·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

제공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UNCRC, 2019).

위와 같은 맥락에서, 63번째 국정과제로 제시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계획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안전한 사회를 저해하는 '범죄자'로만 취급할 뿐, 아동 또한 국민이며 더욱이 국가의 의무이행으로 특별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할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외면하는 문제가 있다. 소년범죄를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와 동일선상에 놓고 엄단의 대상으로만 다룬다는 점에서도 아동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연령과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사법 제도의 의미를 도외시하며, '범죄의 결과'에 상응하는 사법적 강경대응의 필요성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라는 사법적 가치 속에 아동의 특수성은 완전히 잊혀졌는데, 이는 아동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강화하며,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몰각한 대책에 다름없다.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최소한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재판 시작단계부터 아동의 법적 후견인 참여를 보장하고 침해를 보고함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는 경로를 제공·증진할 것,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구조제도를 수립할 것,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할 것, 다이버전 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구금형을 촉진할 것,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하며, 중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 조치를 강화할 것 등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33]는 여전히 유효하다. 즉,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논하기 전에, 실효적인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이 우선하여 확보되어야 하며, 더욱이 소년범죄 대책은 아동의 가정환경 보호와 지원 강화, 포용적인 학교문화 및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맞물려 작동되어야 한다. "아동이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냐"며 개탄하기 전에, 범죄에 연루된 아동의 삶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연민과 공감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가 미처 지키지 못했던 아동의 힘겨운 삶을 위로하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하다.

(4) 더 취약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각계의 논의

그밖에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

33) CRC/C/KOR/CO/5-6, para. 4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정[34]에 따른 맞춤형 증거보전 법제화 추진,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시스템 구축 계획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대한민국정부, 2022a: 112), 2022년 6월에는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재판준비절차, 전문조사관을 통한 증인신문 방식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마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 제안으로 발의되었다(의안정보시스템, 2022.06.29.). 영상진술 특례규정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조사에서도 준용되었기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해당 위헌결정이 아동·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강조되며, 시급한 대안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안 발의 과정은 물론(법무부, 2022.01.05.), 발의 이후로도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미칠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이 국회 및 정부, 시민사회 단위에서 활발하게 검토되는 중이다.[35]

2021년 "국내 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이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22년 2월부터는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다시금 발표되는 진전도 있었다(법무부, 2022.01.20.). 기존의 구제대책은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에 한정하여, 국내에서 태어나지 않은 상당수 이주아동을 배제하며, 해외사례에 비추어 장기체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 등이 지적되면서(국가인권위원회, 2021.07.28.) 보완된 방안이다. 이주아동의 체류권 확보 방안이 마련되는 변화는 반가운 성과이지만, 의무교육 기간을 벗어난 이후로 진학이나 취업 등 분명한 '진로'를 조건으로만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점, 체류허가 신청시 필요한 범칙금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주배경 아동 및 그 가정에게 무리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점, 미성년 자녀에게 체류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부모는 출국 조치가 원칙이며,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만 부모의 한시적 체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점, 무엇보다 국내에서 태어난 상당수 이주아동이 출생미등록 상황에 따른 사실상 무국적자라는 불안정한 지위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점 등은 계속하여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도모하는 법무부 이행계획에 이주아동의 인권

34) 헌재 2021. 12. 23.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35) (사)탁틴내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2022.09.07.).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간담회 자료집. https://m.sc.or.kr/mobile/news/reportView.do?NO=71486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보호도 놓쳐지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필요를 강조한다(법무부, 2022.07.26.).

또한, 2022년 8월 24, 25일에는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제2·3차 심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의견 청취, 지역기반 장애아동 지원, 통합놀이터, 재난시 위기관리, 장애아동학대, 비아동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탈시설, 원가정 지원, 영유아 교육, 놀 권리'까지 다양한 주제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권고가 도출되었다(UNCRPD, 2022). 제1차 최종견해에서 아동 관련 권고가 전혀 없었던 과거에 비추어 고무적인 성과이며, 이번에 받은 권고사항은 2024년 12월 예정된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와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등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촉구하는 강력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권리 보장이 모든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도 알 수 있다.

5) 소결

2019년 이후로 2022년에 이르기까지, 기대를 상회하는 진전도 있지만, 여전히 국가 단위의 변화는 너무도 더디거나, 오히려 퇴행하는 조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아동의 존재조차 읽히지 않았던 더 넓은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시도가 꾸준히 계속되었다는 점은 협약 이행으로 축적된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권의 어느 영역에서건 아동의 동등한 권리주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거쳐온 역사는, 우리 사회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성인이 되면서 잊어버렸던 아동기의 낱낱의 권리들이 아동의 삶 저변에서 아동과 함께 탐색되고 발굴되며, 말해질 필요를 뒷받침한다. 언제, 어디에서건 아동들의 '현재'를 바라보아야 할 관점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것도 협약 이행에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권리는 얼마든지 달라지고, 확장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하나의 목표를 따라가기 위한 기록의 누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인권정책을 시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연도별로 축적된 모니터링 기록과 자료는 계속하여 나아가야 할 인권 이행의 톱니바퀴를 멈추지 않게 하는 윤활유가 되어,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당사국의 책무를 강화하는 강력한 지지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

3. 2022 협약 심층모니터링 : 주요 국제협약 심의에서 장애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주요 쟁점

이 절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심의과정의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제고하고 장애아동·청소년인권 정책의 큰 틀 내에서 정책적 기여와 연구여건에 부합하는 세부 모니터링 주제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36]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의 주요 쟁점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장애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제2조와 제23조이다. 제2조는 당사국이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모든 아동이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향유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의무는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9호에서 장애아동은 가장 취약한 아동집단에 속하며, 이주배경 장애아동, 농촌지역에 사는 장애아동과 같이 여러 요소의 결합에 근거한 복합한 차별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에 취약성은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비차별 조항에 장애를 분명하게 언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히고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6: para. 8). 제23조는 장애아동 관련 핵심조항으로서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최종견해로 제2조, 제23조뿐만 아니라 제19조(아동에 대한 폭력), 제28조(교육권)와 관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권고를 하였고,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고에서도 장애아동을 언급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

36)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권고 이후 격년으로 심층 모니터링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 심층 주제는 정책 환경과 요구를 우선 고려하여 시기적으로 효과적인 정책기여가 가능한 주제를 선정한다. 2022년은 8월에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심의가 있어 최종견해에 대한 부처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2023년부터 시행할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장애아동·청소년 관련 주제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련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관련 부처 협의와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장애아동·청소년의 교육권 – 통합교육 현황과 과제'를 중점 주제로 선정하여 심층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제1장 〈표 Ⅰ-2-2〉 참조).

원회, 2019). 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3-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최종견해 중 장애아동 관련 권고사항

구분		권고사항
B. 일반원칙		
비차별	16-17	(b)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 등)이 동등하게 출생 시 등록되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D. 아동에 대한 폭력		
체벌을 포함한 폭력	26-27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 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F.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장애아동	36	(a)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장애아동을 포용하도록 보장할 것.**
		(b)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
		(c) **모든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기반시설 및 체육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통학 지원,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실시할 것.**
		(d) **장애아동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
G.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교육 및 교육의 목표	41-42	(b) 모든 아동이 출신, 주거지, 사회경제적 및 이주 지위, 이주민으로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할 것. 부정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입학 정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c)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강화할 것.**

구분		권고사항
H. 특별보호조치		
난민 신청 아동 및 난민 아동, 이주 아동	43	(c)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 보건의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여가, 학대 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
매매, 거래, 약취 유인	45	(e) 남자아동, 외국인 아동,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
소년사법 운영	46-47	(n)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적,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 출처: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9) 중 장애아동 관련 내용을 집필자가 표로 재구성함.

(1) 비차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 등)이 동등하게 출생시 등록되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이용,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16-17).

장애아동은 출생시 등록에 있어서 차별이 있지는 않으나 보육시설 이용 및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복지, 여가 및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 접근에 있어서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심의 및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심의과정에서 민간 NGO 보고서에 비중 있게 언급되었고, 최종견해에 반영되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조항에 대한 분석에서 실시하겠다.

(2) 아동에 대한 폭력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6-27).

정부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철폐를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대한민국정부, 2017: para. 83, 90),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에 대응하는 주무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 통계가 별도로 관리되어 통합적인 통계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아동이 장애인거주시설에 배치될 경우 아동학대대응체계나 아동보호체계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원혜옥, 강정은, 마한얼, 김재희, 2021). 2021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마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37] 보건복지부는 서울, 부산, 경기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6개소(권역별 남녀 구분 2개소씩, 정원 각 4명)의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2022년 7월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장애인 중심의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비장애아동 중심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양쪽에 모두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권고에 대한 개선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나,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남녀 각 12명씩만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비장애아동과 분리된 형태로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늘리는 것보다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엄선희, 2022).

(3) 장애아동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제23조와 관련하여 (a)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장애아동을 포용하도록 보장할 것, (b)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 (c) 모든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기반시설 및 체육·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통학 지원,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실시할 것, (d) 장애아동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36).

37) 제59조의13 제2항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5월 12일에 발표한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에서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①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처 간 협조체계 강화, ② 장애 조기발견과 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③ 모든 아동들이 문화·체육·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④ 돌봄·양육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⑤장애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범부처 합동으로 장애아동 정책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교육부, 2021.5.12.) 정책의 추진실적 및 성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권고 (c)와 관련하여 특수교육현장에서 특수교사 및 보조(지원)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장애학생의 신변처리지원을 위한 교내 시설설비와 보조기기, 공간, 물품지원, 인력 지원 등 물리적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제기 되고 있으며[38]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영유아 출생 후 장애 선별과 진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취학하는 과정 안에서 경험하는 가족관계, 의료, 건강 등 다양한 장애영유아에 관련 정책과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고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은 바(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정유나. 2021: 5) 장애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둔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4) 교육 및 교육의 목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 낮은 수준의 학교통합(school integration), 높은 학교 중퇴율을 우려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지배적인 점을 비롯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기회 및 편의제공 부족과 장애아동이 직면한 사회적 낙인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및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하고,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강화할 것을

38) 장애인교육아올다가 진행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중간결과(장애인교육아올다, 2022)에 따르면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교육활동이지만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물리적, 인적 지원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1-42).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9호 66번 문단에서 장애아동 교육의 목표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6).

정부는 국가보고서에서 전체 장애학생 중 평균 70.4%(2011-2016)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고, 통합교육 담당교사 연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통합수업 참여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와 과목별 시·청각 보조 교과서 등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고 밝혔으나(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18), 심의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 정책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심의에서 알도세리 위원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 규범이 주창하는 통합교육이란 단지 장애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3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실질적 통합교육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서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사립학교에서 엘리베이터 또는 특수교사의 부재,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특수학교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되기도 하였는데[40]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통합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권 침해인 동시에 장애인 차별이 되므로 조치가 필요하다.

3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2019.9.20.).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에서 인용함.

40) 2022년 1월 장애 학부모 단체에서 서울교육청의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반대하는 사립학교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관련기사로는 비마이너(2022.1.4.). "장애학생도 집 앞 학교 다니고 싶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01에서 2022년 9월 18일 인출.

(5) 특별보호조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특별보호조치와 관련한 최종견해에서도 장애 또는 장애아동을 언급하였다.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에 관한 조항에서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 보건의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여가, 학대 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을 권고하였고(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3), 매매, 거래, 약취유인에 관한 조항에서 남자아동, 외국인 아동,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5). 소년사법운영과 관련한 조항에서는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적,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6-47).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9호 8번 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장애아동은 가장 취약한 아동집단에 속하는데, 장애와 다른 취약한 요소의 결합으로 복합적인 차별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 취약성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6) 당사국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41]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의 주요 쟁점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여러 개의 조항에서 장애아동에 대하여 명시하면서 당사국에게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협약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장애아동이 특별히 '아동'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와 자유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되는 조약의 국문 정식 명칭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인데 이하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으로 약칭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다.

표 II-3-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중 장애아동 관련 조문

	내용
전문	러.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약속한 책무를 상기하며,
제3조 일반원칙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제4조 일반의무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혼인, 가족, 부모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식능력을 유지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약속한다. 5. 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확대가족 내에서 대체 보살핌을 제공하고,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24조 교육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출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중 장애아동 관련 조문을 집필자가 표로 재구성함.
United Nations(UN) (200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S/61/106).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문번역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22년 10월 11일 인출.

2014년에 진행된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심의가 다소 한정적인 주제로 다루어졌다. 제23조와 관련하여 미혼모를 포함한 장애아동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고(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14; para. 44), 제24조와 관련하여 통합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는 것과 일반학교에 입학한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장애와 관련된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하면서 (a) 현행 통합교육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시행할 것, (b) 접근 가능한 학교 환경의 제공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하고 적합하게 수정된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특히 교실내 보조공학기기 및 지원 제공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통합교육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 (c) 일반학교의 교사와 관리자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연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14; para. 45-46). 장애아동과 관련된 제7조에 대한 권고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2022년 8월 24일과 25일 진행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우려하고 권고하였다. 2022년 9월에 발표된 최종견해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7조와 관련하여 장애아동의 의견청취, 지역 사회 생활, 놀 권리 보장 등을 권고하였고 그 외에도 교육권, 학대와 폭력, 탈시설, 원가정 보호 등과 관련하여 장애아동을 언급하며 권고하였다. 국가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여 민간 NGO 보고서에서 장애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다루었고, 이 부분이 심의에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42]

제2·3차 심의에서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3]

42) 이번 심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변호사 그룹은 NGO 연대의 민간보고서를 지원하면서 장애아동과 장애이주민에 초점을 맞추어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장애아동과 관련하여 학대피해 장애아동, 탈시설, 교육권, 놀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은 UN Treaty Body Database에서 'Duroo-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et al'라는 제목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RPD%2fCSS%2fKOR%2f49538&Lang=en에서 2022년 9월 18일 인출.

43) 최종견해는 UN Treaty Body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2fC%2fKOR%2fCO%2f2-3&Lang=en에서 2022년 9월 18일 인출.

(1) 장애아동(제7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a) 장애아동과 상담하고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부재, (b) 장애아동을 위한 일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c) 단지 0.03%의 놀이터만이 접근 가능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고 그들의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놀 권리가 침해 당하는 점을 우려하면서 (a) 장애아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견해를 구성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견해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동의 발달하는 능력을 존중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 (b)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 개발하여, 가정생활과 지역사회생활을 포함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 (c) 놀이터가 장애아동에 대해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para. 15-16).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특별히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놀 권리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사회의 놀이터가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 장애아동에게 친화적이지 않고, 장애아동의 놀이공간이 비장애아동의 놀이공간과 분리되어 있다는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모든 아동을 포용하는 놀이터의 확산을 위해 안전기준의 다양화, 모든 놀이터의 접근에 있어서 물리적 장벽의 제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엄선희, 2019).

(2)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제16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에 비해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은 점과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및 관련 진정사항에 대한 정보 및 통계 데이터의 제한된 가용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시설 내외의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 및 시행하고 효과적인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분리된 통계를 수집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para. 35-36).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2019년 제5·6차 심의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권고를 하였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이번 심의에서도 장애아동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언급되었다. 앞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내용에서 서술하였듯이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에 대응하는 주무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 통계가 별도로 관리되어 통합적인 통계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아동이 장애인거주시설에 배치될 경우 아동학대대응체계나 아동보호체계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원혜옥 외, 2021) 관련 법과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

(3)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제19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에 대한 미약한 이행, 특히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지적 혹은, 그리고 심리사회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의 부족을 우려하면서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para. 41-42).

시민사회에서는 꾸준히 정부의 시설 수용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가 차원의 아동 중심 탈시설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정선욱, 2022)[44],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제5·6차 최종견해에서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는데(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32), 이번 심의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아동에 대하여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한 것이다. 장애아동 최상의 이익의 관점에서 탈시설 전략의 수립 및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44) 아동 탈시설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주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한국아동복지학회, 아동탈시설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 장혜영이 공동주최한 아동 탈시설 국회 토론회(2022. 1. 27.) 자료집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4)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제23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 장애가 있는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 부족을 우려하면서 장애인 가족이 가족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para. 47-48). 이는 「유엔 아동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원가정 지원 원칙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주장(정선욱, 2022)과 맥락을 같이 한다.

(5) 교육(제24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a)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지하며, 특수학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여전히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는 자폐, 지적, 심리사회적 또는 중복 장애아동의 수가 증가하는 점. (b) 점자·수어·접근 가능한 교수양식 교육을 받은 교직원의 부족한 인원과 포용적 교육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및 역량에 대한 교사의 교육 훈련 수준, (c) 유치원 이외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이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우려하면서, (a) 교육 요구 사항 및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교육을 포용하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및 비 교육 인력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 (b) 장애학생에게 포괄적인 디지털 액세스와 같은 대안적이고 접근 가능한 보조기구 및 학습자료, 읽기 쉬운 자료, 의사소통 보조장치, 보조 및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의사소통 방법과 수단을 제공할 것, (c) 보건복지부 산하 분리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para. 49-50).

정부는 보완보고서에서 특수학교 추가설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각각의 요구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대한민국정부, 2022b: para. 133-134).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9호에서 밝혔듯이 통합교육은 장애아동 교육의 목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교육의 목표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우려할만하다.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특수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것보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의 역량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6).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2008년부터 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면서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와 달리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만 될 뿐 국가의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지적해왔다. 국가가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우려하고 권고를 하였으므로 모든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소결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에서는 '아동'과 '장애'라는 이중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취약성의 결합으로 인하여 장애아동은 중첩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동의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살펴본 것과 같이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와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장애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다양하게 지적되었고 최종견해에 반영되었다. 특히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피해 예방, 회복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이 미흡한 점, 통합교육 환경의 미비로 인하여 장애아동이 일반교육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 등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는바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려면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장애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의 보장이 담겨야 한다.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서 장애아동의 최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4.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개선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45]

본 연구는 제1기 및 제2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인권지표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면서 진행되는 연구로, 현재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제2기에 해당하는 2013년 전면개편 지표체계를 기본틀로 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2013년과 2015년 유엔 인권지표 연구 시사점 반영, 2015년 유엔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3) 변화에 따른 대분류 영역 보완, 유엔인권지표, 유엔 SDGs 지표 논의 등을 반영하고, 세부지표 항목과 통계자료원 발굴 및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 원리는 1차적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인권영역과 하위내용(협약조항)을 각각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로 적용하고, 다음 단계로 지표체계로서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중분류 단위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명칭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25-26).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보고서 구성 주요 목차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 영역 구성으로 연결되는 형태이다.

유엔 국가보고서 지침을 기반으로 한 〈표 Ⅱ-4-1〉의 내용에 매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발표되는 일반논평 내용을 참고하여 지표 개선의 시사점을 얻고 있다. 2022년에는 광범위한 자문과정을 통해 일반논평 제26호(기후변화와 아동권리) 초안이 발표되었다(최종안은 2023년 공표 예정). 기후변화는 삶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므로 '일반원칙'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원칙에 포함시켰다. 새로운 인권이슈는 지표 개선과정 뿐만 아니라 협약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소관부처 지정 및 성과 분석 점검에도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45) 본 연구는 연속과제로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가 개발되어온 과정과 지표의 기본틀은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이 부분은 선행 보고서의 해당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제시하고(김영지 외, 2019: 36; 김영지 외, 2020: 34) 2022년도에 공표된 일반논평 등 새롭게 검토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표 II-4-1.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체계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1.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협약 4, 42, 44(6)조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당사국의 협약이행의무(제4조) - 유보조항, 입법, 국가행동계획, 담당조직, 예산 배분, 국제협력, 독립적 인권기구,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동권리와 기업(재계) 2) 협약 홍보(제42조) - 협약 및 선택의정서 홍보 및 인권교육, 권고사항 홍보 3) 국가보고서 활용(제44조 6항)
		• 아동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독립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일반논평 제2호, 2002) •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일반 조치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일반논평 제5호, 2003) •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의 영향에 대한 국가의무(일반논평 제16호, 2013) •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일반논평 제19호, 2016) • 청소년기 아동의 권리 이행(일반논평 제20호, 2016)
2. 아동의 정의 : 협약 1조		1)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제1조) - 만 18세 미만 아동 관련 보호와 권리 관련 연령(남·여아 혼인 최소 연령 포함)
		• 아동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권리(일반논평 제14호, 2013) • 아동 의견표명권(일반논평 제12호, 2009)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3. 일반 원칙 : 협약 2, 3, 6, 12조		1)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 성, 장애, 소수인종, 원주민 아동 권리보장 조치 등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 - 입법, 행정, 사법결정 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이행 현황 3)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 사형제도, 아동의 사망과 불법 살해, 자살예방 및 유아살해 퇴치, 기타 생명·생존·발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4) 아동 견해 존중(의견표명)의 권리(제12조) - 입법, 행정, 사법 결정 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이행 현황
		• 기후변화에 특별한 초점을 둔 환경과 아동권리(일반논평 제26, 2022년 초안 발표)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협약 7, 8, 13-17조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이름과 국적(제7조) 2)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 3) 표현의 자유와 정보 공유(제13조) 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5)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6) 사생활의 보호(제16조)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7) 정보접근권 및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제17조) 8)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일반논평 제25호, 2021)
5. 아동에 대한 폭력 : 협약 19, 24(3), 28(2), 34, 37(a), 39조	3. 폭력 및 학대	1) 아동학대와 유기(제19조) 2) 유해한 전통관습 폐지(제24조 3항) 3)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제34조) 4)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5)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6) 아동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 유무
		•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8호, 2006) •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13호, 2011) • 유해한 관습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31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일반논평 제18호, 2014)
6.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협약 5, 9-11, 18(1,2), 20, 21, 25, 27(4)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아동의 성장하는 능력에 맞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지도(제5조) 2) 부모의 공동 책임, 부모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제18조) 3)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4) 가족의 재결합(제10조) 5) 아동 양육비 확보(제27조 4항) 6)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제20조) 7)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제25조) 8) 입양(제21조) 9)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제11조) 10)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 이행(일반논평 제7호, 2005. 수정 2006) • 아동 대안양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
7.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협약 6, 18(3), 23, 24, 26, 27(1-3), 33조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1) 장애아동(제23조) 2) 생존 및 발달(제6조) 3) 건강 및 보건서비스(제24조) 4)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증진 및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 치료 노력 5) 청소년의 생식보건과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 조치 6) 약물남용 보호조치(제33조) 7) 사회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제26조, 제18조 3항) 8) 기본적 의식주를 포함, 적절한 생활수준(제27조 1~3항)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 HIV/AIDS와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3호, 2002) • 아동권리협약 맥락에서 청소년 건강과 발달(일반논평 제4호, 2003) • 장애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9호, 2007) • 달성 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아동의 권리(제15호, 2013)
8.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협약 28-31조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직업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제28조) 2) 교육의 목적, 교육의 질(제29조) 3) 원주민, 소수집단 아동의 문화권(제30조) 4) 인권교육과 시민교육 5) 휴식, 놀이, 여가, 오락 및 문화예술활동(제31조)
		• 교육의 목적(일반논평 제1호, 2001) • 유년기 아동권리의 이행(일반논평 제7호, 2005. 수정 2006) • 장애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9호, 2007)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 휴식, 레저, 놀이, 여가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제17호, 2013)
9. 특별보호 조치 : 협약 22, 30, 32~36, 37(b-d), 38-40조	7. 특별보호 조치	1) 난민아동(제22조), 망명신청을 한 부모 없는 아동, 이주에 의해 영향을 받은 아동 2)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제30조) 3)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 4) 착취상황하의 아동과 그들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제32조) -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 불법 생산 및 거래에서 아동이용(제33조) -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제34조) -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제35조) - 기타형태의 착취(제36조) 5) 법에 저촉된 아동, 아동 피해자, 범죄 목격 아동과 청소년사법 - 소년사법 운영(제40조), 특수법원의 존재, 형법적 책임에 대한 최소 연령 적용 여부 - 구속, 수감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구금 최소화 및 법적 및 기타 지원 신속 제공 조치(제37조 나~라) -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에 기반한 대안처벌 유무(제37조 가) -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관여하는 모든 전문가 대상 사법처리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청소년 사법 분야 훈련활동 6)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를 비롯한 무력분쟁 하의 아동(제38조)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일반논평 제6호, 2005) • 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10호, 2007)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 거리의 아동(일반논평 제21호, 2017) • 이주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22호, 제23호, 201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공동) • 아동사법 체계에서의 아동권리(일반논평 제24호, 2019)
10.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	1) 선택의정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2)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 - 제2조와 제3조의 형법 포함 여부, 치외법권 행사 여부 3) 선택의정서 위반에 대한 법인의 책임 수립 4) 선택의정서 위반의 유해 효과 인식 증진 및 예방 5) 선택의정서 위반으로 인한 아동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조치 및 보상 절차 6) 선택의정서 위반 관행 목격아동과 피해아동 보호 조치 7) 선택의정서 위반 예방, 감시, 조사, 기소, 처벌 관련 국제협력 8) 선택의정서 위반에 따른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사회복귀, 본국 송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조치
11.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	1) 선택의정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2) 군대 징집 최소연령 3) 자원입대 최소연령 4)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권 행사 여부 5) 아동의 적대행위 가담 여부 6) 적대행위에 모집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조치 7) 아동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 중 무력분쟁 영향 아동 식별절차 및 이들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회복 지원 8) 적대행위에 모집되어 전쟁 범죄로 기소된 아동 유무

* 출처 : 김영지 외(201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pp.37-40 표에 2021년에는 제25호(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최종안이 발표되어 추가하였고, 2022년에는 제26호(기후변화와 아동권리) 초안이 발표되어 추가함(2023년 최종안 공표 예정). 기후변화는 삶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므로 '일반원칙'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원칙에 포함시킴.
* 원자료: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5).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 내용을 표로 구성하고 매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일반논평을 추가함.

2)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보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보완작업은 전반적인 검토와 영역별 집중검토를 병행해 왔다. 2022년에는 협약 심층모니터링 주제인 장애 분야 지표항목과 자료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전반적인 지표 검토도 병행하였다.

먼저 2022년 집중 검토 영역인 '5-1. 장애' 중분류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행 교육부 특수교육 분야 지표항목 중심에서 복지 분야 지표항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지표체계 간소화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현행 지표항목의 자료원을 보완 발굴하고 신규 지표항목은 '5-1-1-4. 학대피해 장애아동 수'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5-1-1-2' 지표항목의 경우 기존에는 통합교육 현황만 살펴보았던 것에서 보육 현황을 추가하여 '5-1-1-2.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보육비율'로 명칭을 보완하고 보육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원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현황을 추가하였다. 자료원 보완 지표항목은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지표항목으로, 우리사회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지표로 논의된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을 자료원으로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그 외 장애아동·청소년 조기발견율, 돌봄, 활동지원, 치료 관련 예산 지출 등의 의견도 제안되었다. 지표화를 위해서는 매년 생산되는 공신력있는 통계치가 필요하므로 가용 자료원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병행할 예정이다.

전체 지표체계 보완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삭제 지표로는 1영역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은 일반적 현황으로 지표로서의 의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였다. '2-4-2-1.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정도' 지표항목의 하위 자료원 중 시의성을 고려, '교육비 미납 정보'를 삭제하고 '가족관계 및 가정형편 등 민감 정보' 조사항목을 신규 추가하였다. 7영역 특별보호조치의 '7-2-3-1. 사회내 처분 청소년 수'와 '7-2-3-2. 조건부 기소유예비율' 지표항목의 경우 두 항목 모두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 성격을 가지므로 분리하기보다 회복적 프로그램 성격의 대체 지표를 더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의견에 따라 두 항목을 통합하고 '7-2-3-1.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 참여자 수' 지표항목을 신규 개발하였다. 추가적인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가정법원의 화해권고제도 현황이 의미가 있다는 자문의견도 제안되었으나 가용 자료원 검토가 필요하다. 그 외 용어 수정사항으로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중분류의 하위 지표 용어 중 기존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수정하였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

표 II-4-2.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수정내역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 항목 변경내역		
			2021년		2022년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1-1-1-2.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 기존 1-1-1-2. 인권기구조직 삭제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정도 (교육비 미납,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	2-4-2-1.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 (**가족관계 및 가정형편 등 민감 정보,** 징계처분 내용, 시험성적) ※ 지표항목의 세부 자료원 수정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 (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 보호(지원)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 자료원 보완 :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추가
			5-1-1-2.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5-1-1-2. 장애아동 통합교육·**보육**비율 ※ 지표항목 보완 : 보육현황 추가 ※ 자료원 보완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시설 수' 추가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5-1-1-4. 학대피해 장애아동 수 ※ 신규 지표항목
7. 특별 보호 조치	7-2. 소년 사법	7-2-3. 회복적 프로그램 (다이버전) 운영	7-2-3-1. 사회내 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수	⇨	**7-2-3-1.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 참여자 수** ※ 신규 지표항목
			7-2-3-2. 조건부 기소유예비율		7-2-3-2. 사회 내 처우 청소년 수 ※ 기존 7-2-3-1 항목과 7-2-3-2 항목 통합 ※ 자료원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건부기소유예

2021년에 집중 검토한 특별보호조치 영역의 지표항목과 복지 영역 중에 가용 자료원이 부족한 자료 수집을 위해 소관 정부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내부 행정자료 지원을 받아 결과를 정리하였다. 2021년에는 7개 지표 항목에 대해, 2022년에는 1개 지표항목이 추가되어 8개 지표 항목에 대해 협조를 받고 있다. 관련 자료 생산 기관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등이다.

표 Ⅱ-4-3. 정부부처 생산 지표 자료원 협력 현황(2022)

지표 항목	내 용	자료원 및 생산기관
5-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 5-3-1-2.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설치현황 5-3-1-3.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	표 Ⅲ-6-18.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7-1-2-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구금 현황	표 Ⅲ-8-13. 이주아동 구금 현황 (2015~2021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7-2-2-1.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표 Ⅲ-8-21.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2011~2021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7-2-2-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	표 Ⅲ-8-22.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20년) 표 Ⅲ-8-23.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 (2015~2020년)	
7-4-2-1.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도	표 Ⅲ-8-45.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황 (2015~2021)	여성가족부 아동권리과
7-4-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표 Ⅲ-8-39.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2015~2021년)	대검찰청 형사4과

* 주: 2022년 '7-4-2-1.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도' 지표항목 추가

3)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최종 수정된 2022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7개 대분류, 24개 중분류, 51개 소분류, 115개 지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15개 지표 항목 중 행정통계 및 2차 자료 통계를 통해 생산되는 지표 항목은 73개이고, 본 연구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설문조사로 생산되는 지표 항목은 42개이다. 지표항목 개수는 2021년도와 동일하지만 세부 변경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2개 지표항목이 삭제되고(통합 1개 포함) 2개의 신규 지표항목(5-1-1-4, 7-2-3-1)이 추가된 것이다.

대분류 영역별 지표항목 개수를 살펴보면, 제1영역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은 10개 지표 항목, 제2영역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16개, 제3영역 '폭력 및 학대' 11개, 제4영역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1개, 제5영역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29개, 제6영역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13개, 제7영역 '특별보호조치' 25개 등이다.

표 II-4-4.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1-1-1-2.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1-1-2. 인권에 대한 인식	1-1-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실시 현황
			1-1-3-2. 인권교육 경험(경험유무, 장소, 도움정도)*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받은 경험*
			1-2-1-2. 차별해 본 경험*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정도	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2-1-2-2.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2-1-2-3.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1-3-3.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방해 이유*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정도*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2-1.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가정, 학교)*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경험여부, 피해경험)*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1.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정도(*가족관계 및 가정형편 등 민감 정보*,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2-5. 정보접근권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 경험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제17조)	2-5-2. 미디어 리터러시	2-5-2-1. 매체이용 교육 경험
			2-5-2-2. 미디어 역량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가정(부모)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3-1-1-2.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3-1-1-3.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3-1-1-4.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3-1-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3-1-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3-1-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1-1. 아동학대 사례건수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3-2-1-3. 가정 내 방임 정도*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3-2-2-2.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4-1-2-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4-2-1-2. 입양 사후관리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보호대상아동 현황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4-2-3.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정 밖* 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4-2-3-2. *가정 밖* 청소년 보호시설 수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기관 및 만족도*
	4-3.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제25조)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호 서비스 모니터링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5-1-1-2. 장애아동 통합교육·*보육*비율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5-1-1-4. 학대피해 장애아동 수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5-2-1-2. 사고 사망률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율
			5-2-2-2.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5-3. 보건서비스	5-3-1. 보건 서비스	5-3-1-1. 보건교사 배치율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제24조)	인프라 구축 현황	5-3-1-2.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현황
			5-3-1-3.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5-3-3-2. 음주율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신체적 건강	5-4-1-1. 주관적 건강평가*
			5-4-1-2. 운동 실천율*
			5-4-1-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5-4-1-4.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5-4-2. 정신적 건강	5-4-2-1. 자살 생각과 그 이유*
			5-4-2-2. 우울감*
			5-4-2-3.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5-4-2-4. 삶의 만족도*
			5-4-2-5. 자아존중감*
			5-4-2-6. 고민거리 대화상대*
	5-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5-5-1-1.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빈곤율 포함)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6-1-1-2. 교원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6-1-1-3. 학생 1인당 사교육비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6-1-2-2. 학업중단 생각과 이유*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6-2-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6-2-1-1. 학교생활 만족도*(친구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 즐거움)
		6-2-2. 진로·직업교육	6-2-2-1. 진로교육 현황
			6-2-2-2. 직업교육 현황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6-3-1. 여가·문화·활동 인프라 및 이용만족도	6-3-1-1. 청소년 여가·문화·활동시설 수*
			6-3-1-2.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만족도*
		6-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6-3-2-2.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6-3-2-3. 하루 평균 학습시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7. 특별 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수	7-1-1-1. 아동·청소년 난민 수
			7-1-1-2. 탈북 난민 아동·청소년 수
			7-1-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수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
			7-1-2-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구금 현황
		7-1-3.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이용률
	7-2. 소년 사법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	7-2-1-1.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설 수용인원수
			7-2-1-2.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
		7-2-2. 인권친화적 사법환경	7-2-2-1.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7-2-2-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7-2-2-4.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
		7-2-3. 회복적 프로그램 (다이버전) 운영	*7-2-3-1.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 참여자 수*
			7-2-3-2. 사회 내 처우 청소년 수
	7-3. 경제적 착취	7-3-1. 청소년노동조건 수준	7-3-1-1.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7-3-1-2.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
			7-3-1-3. 청소년 실업률 추이
		7-3-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력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7-3-2-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
	7-4. 성적 착취	7-4-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	7-4-1-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7-4-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7-4-2.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도	7-4-2-1.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현황
			7-4-2-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 출처: 연구진 작성

* 주: 기울임과 밑줄 표시 부분은 2022년도 수정된 내용임.

제3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1. 조사개요 및 방법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4. 폭력 및 학대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6.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8. 특별보호조치

3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46)]

1. 조사개요 및 방법

1) 조사목적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01호)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국내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처한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반복횡단조사로서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는 연속과제이므로 주요 조사개요는 매년 유사하게 진행된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행정자료와 함께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115개 지표 항목 제시에 활용된다. 세부적으로 115개 지표 항목 중 73개 지표 항목은 행정자료 및 타분야 통계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조사 결과는 나머지 42개 지표 항목의 결과 제시에 활용된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조사계획에서부터 조사방법, 결과물 공표 등 모든 과정에 있어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통계품질진단(정기·자체)을 거쳐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매년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 조사 과정 및 산출된 결과물 활용에 대한 생명윤리를 준수하고 있다.

본 조사는 반복 횡단조사로서 다년 간 축적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지표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여 확인된 지표의 변화 양상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결과는 보고서 발간을 통한 기초통계를 공표뿐만 아니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통계 데이터를 공표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특히 활용 가능성이

46) 3장 1절 조사개요는 김영지 선임연구위원과 최홍일 전문연구원이, 2절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과 3절 시민적 권리 2-1. 중분류는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이, 3절 시민적 권리 2-2.부터 2-5. 중분류까지, 4절 폭력 및 학대, 5절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6절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은 최홍일 전문연구원이, 7절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과 8절 특별보호조치 영역은 유성렬 교수가 집필하였다.

높은 원 데이터(Microdata)는 연구원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학생, 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들의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활용되어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 조사대상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 초, 중, 고등학교 학생(교육통계연보 기준)이며 조사시점 당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응답자 특성[47]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8,854명의 사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응답자 특성은 다음의 〈표 Ⅲ-1-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남학생은 48.3%(4,277명)이었으며 여학생은 51.7%(4,577명)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초등학생은 33.8%(2,994명)이었으며 중학생 역시 33.8%(2,996명)로 같은 비율이었다. 고등학생은 32.3%(2,864명)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유형의 경우 고등학생 2,864명 중 일반계고가 80.3%(2,300명)로 많았고 나머지 19.7%(564명)는 특성화계고 학생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들이 거주 지역 규모는 대도시 37.7%(3,338명), 중소도시 47.2%(4,179명), 읍면지역 15.1%(1,337명)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양부모가정의 응답자가 88.5%(7,80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응답자 8.4%(737명), 기타가정 응답자 2.0%(178명), 조손가정 응답자 1.1%(100명)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의 학업성적은 중위권 학생이 42.0%(3,6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위권 37.2%(3,262명), 하위권 20.9%(1,831명)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위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7)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계고등학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일반계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상 특성화고를 제외한 '일반고, 특수목적고 일부(외고, 과학고 등), 자율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고'보다 더 큰 범위이므로 '일반계고'로 통칭하였다. '특성화계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91조)에서 말하는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고 중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포괄하여 직업계고 성격의 학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87). 향후 '특성화계고'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의 직업반까지 포괄하는 설계를 통해 '직업계고'로의 명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8.2%(5,10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위권 33.8%(2,969명), 하위권 8.0%(702명)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Ⅲ-1-1.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8,854**	**100.0**
성별	남학생	4,277	48.3
	여학생	4,577	51.7
학교급	초등학교	2,994	33.8
	중학교	2,996	33.8
	고등학교	2,864	32.3
고교유형	일반계고	2,300	80.3
	특성화계고	564	19.7
지역규모	대도시	3,338	37.7
	중소도시	4,179	47.2
	읍면지역	1,337	15.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800	88.5
	한부모가정	737	8.4
	조손가정	100	1.1
	기타	178	2.0
학업성적	상	3,262	37.2
	중	3,684	42.0
	하	1,831	20.9
경제적 수준	상	5,104	58.2
	중	2,969	33.8
	하	702	8.0

3) 조사내용

(1) 조사도구 보완 과정

2022년도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생산되는 조사 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조사 내용 현실화를 위하여 2021년도에 조사된 항목들에 대한 검토, 수정, 보완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2년 조사지를 확정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설문지 문항과 조사 결과, 사회 변화 및 새로운 정책 관련 이슈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표체계 및 문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면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행정자료들의 지속 사용 가능 여부와 이를 제외한 항목의 조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행정자료 우선활용 판단을 의뢰하여 조사 항목에 있어 활용 가능한 행정

자료가 없음을 회신 받았다. 이후 수정·보완 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심의를 신청 및 완료 하였으며, 그 결과 설문 내용, 과정, 대상자 처리 등의 과정에 있어 특정할 만한 윤리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IRB 승인번호: NYPI-202205-HR-고유-005).

(2) 조사항목 수정 및 보완 내역

① 신규 조사문항 추가

사회 환경 변화 및 2022년 본 연구의 협약모니터링 특별주제(장애아동·청소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시의성이 부족한 교육비 미납정보 문항을 삭제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 중 가족관계와 가정형편 등과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 문항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2022년 특별주제인 장애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장애이해교육 경험 여부와 그 도움 정도, 그리고 장애와 통합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상자들의 인식 조사 문항을 추가하였다(2022년 한시적 문항).

표 Ⅲ-1-2.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신규 조사문항

조사항목	문항번호		사유
	초등용	중·고등용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항목 추가(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민감 개인정보)	문2(2)	문4(2)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관련 민감 개인정보의 보호 현황 파악을 위하여 조사 문항 추가
장애이해교육 여부 문항 추가	문32	문40	2022년 국제협약 모니터링 특별주제인 '장애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장애이해교육 문항 추가 (2022년 한시 문항)
장애이해교육의 도움정도 문항 추가	문32-1	문40-1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문항 추가	문33	문41	
조사 대상자의 다문화 가정 여부	배경문항 4	배경문항 4	대상자 특성에 따른 문항 응답 결과 비교
조사 대상자의 장애 여부	배경문항 5	배경문항 5	대상자 특성에 따른 문항 응답 결과 비교, 2022년 국제협약 모니터링 특별주제인 '장애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추가 분석

또한 전문가 자문 결과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배경질문으로 장애 여부와 다문화 가정 여부를 묻는 질문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의미가 있다고 논의되어 2개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② 수정 및 삭제 조사문항

조사대상자의 문항 인지 오류를 최소화하고 변화된 제도 환경을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 및 삭제하였다. 먼저 아르바이트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9가지 부당처우 경험을 묻는 문항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 여부 문항을 다른 문항과의 일관성 유지 및 인지오류 최소화를 위하여 긍정형에서 부정적 상황을 파악하는 질문으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사안과 관련하여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 납부 정보의 경우 고교무상교육 확대로 시의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하여 문항을 삭제하였다.

표 Ⅲ-1-3.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수정 및 삭제문항

구분	조사항목	문항번호		사유
		초등용	중·고등용	
수정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③ 근로계약서 관련 문항)	-	문27-1(9)	아르바이트 경험 시 부당처우 항목 중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긍정형 질문을 다른 문항들과 일관되도록 부정형 질문으로 변경하여 문항에 대한 인지 오류 최소화
삭제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항 삭제(등록금 미납여부)	문2(2)	문4(2)	고교무상교육의 확대에 따라 교육비 미납 여부에 대한 공개 사례를 묻는 문항의 시의성이 낮아짐에 따라 문항 삭제

(3)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앞서 서술한 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설문조사 내용은 〈표 Ⅲ-1-4〉와 같다. 설문 문항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기반하여 제작된 설문지를 통해 인권 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과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개 영역별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분석과 함께 행정통계 및 지표 관련 2차 자료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파악하였다.

표 Ⅲ-1-4.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26(1~3)	34(1~3)
		인권 존중정도(가정, 학교, 사회, 사이버공간)	27(1~4)	35(1~4)
		인권 의식 및 태도 (결정능력, 사회참여, 자치조직, 표현의 자유, 차별-경제적 이유, 성별, 민족/인종)	28(1~7)	36(1~7)
		인권교육 경험	29	37
		인권교육 받은 기관	29-1	37-1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인식, 태도, 행동)	29-2(1~3)	37-2(1~3)
		*장애이해교육 경험**	*32*	*40*
		*장애이해교육의 도움 정도**	*32-1*	*40-1*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33(1~4)*	*41(1~4)*
	일반원칙	차별 피해 경험 (성별, 학력, 연령, 외모,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인종)	30(1~10)	38(1~10)
		차별 가해 경험 (성별, 학력, 연령, 외모,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인종)	31(1~10)	39(1~1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의견 표명권	의사결정시 보호자의 태도 (가정사, 진학, 진로, 학습)	1(1~2)	1(1~4)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자율성, 자격조건, 활동여건, 의견반영)	-	2(1~4)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3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2(1)	4(1)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3	5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4	6
		참여 장애 이유	5	7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	8(2)
		종교의 자유 보장수준(학교)	-	9, 9-1
		종교의 자유 보장수준(가정)	-	8(1)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결사·집회 경험률	-	10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	10-1
	사생활의 보호	학교에서의 사생활 보호	-	11(1~3)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가족관계 및 가정형편 등 민감 정보 공개, 징계처분 내용 공개, 시험성적 공개)	*2(2~3)*	*4(2~4)*
3. 폭력 및 학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체벌, 모욕적인 말·욕설)	6(1~2)	12(1~2)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체벌, 모욕적인 말·욕설)	6(3~4)	12(3~4)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욕설, 구타, 따돌림, 금품갈취, 성추행, 강제 심부름)	7(1~6)	13(1~6)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 경험률	8(1~5)	14(1~5)
		성적 피해 경험률 및 도움 제공자	20, 20-1	28, 28-1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가정 내 방임 유형 및 정도 (야간시간 방임, 비위생적 의복·침구사용, 질병 무관심, 결식시 방치, 결석 무관심)	9(1~5)	15(1~5)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가출 경험 여부	10	16
		가출 이유	10-1	16-1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및 이용 만족도	-	16-2, 3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생존 및 발달	거주지역의 안전수준 (범죄, 교통사고)	11(1~2)	17(1~2)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12	18
		운동 실천율	13	19
		수면시간	14	20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수면부족 여부	15	21
		수면부족 이유	15-1	21-1
		자살에 대한 생각	-	22
		자살 생각 이유	-	22-1
		우울감	16(1~3)	23(1~3)
		자아존중감	16(4~6)	23(4~6)
		행복도	17	24
		행복하지 않은 이유	17-1	24-1
		삶의 만족도	18	25
		고민거리 대화상대	19	26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	학업중단 생각 여부	21	29
		학업중단 생각 이유	21-1	29-1
	교육의 목표	학교생활 만족도 (친구 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 즐거움)	22(1~4)	30(1~4)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	23	31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만족도	23-1	31-1
		하루평균 여가활동 시간	24	32
		하루평균 학습시간	25	33
7. 특별보호조치	경제적 착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아르바이트 경험, 부당처우 경험 - *근로계약서*)	-	27, 27-1(1-9)
배경문항	출생년도, 가족구성, 부모님 학력, *다문화 가정 여부, 장애 여부,*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 2022년 수정사항 기울기 및 밑줄 표시 (* 표시된 장애관련 추가 문항은 2022년도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특별주제를 위한 2022년도 한시적 문항임.

4) 조사방법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021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층: 학교구분, 집락: 학교/학급)을 통해 총 9,000명을 목표 표본 수로 정하고 표본을 추출하였다.



* 출처: 한국리서치(2022).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결과보고 자료.

* 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매년 동일한 표본추출 과정을 수행함.

그림 Ⅲ-1-1. 표본추출 방법

조사를 위해 먼저 대상 학교를 표집 후 협조공문과 조사안내문을 먼저 발송하여 조사수락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학교에서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대체표본을 섭외하였다. 또한 COVID-19가 지속되고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면접조사 비율은 30% 내외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중 총 357개 학교에서 8,854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표 Ⅲ-1-5〉).

표 Ⅲ-1-5. 2022년「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조사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전국의 초(4~6학년) · 중(1~3학년) · 고등학교(1~3학년) 학생
표집틀	2021년 교육통계연보
표본 수	9,000여 명 → 8,854명 최종 조사완료(목표치의 98.4%)
추출학교 수	전국 17개 시·도 354개교 중 357개교 완료
표집방법	층화다단계집락표집
조사시기	2022년 5월~7월
조사방법	학교 방문 집단 면접 조사 및 우편조사 병행(자기기입식 응답)
실사기관	㈜한국리서치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48]

1) 인권일반

(1) 인권 인프라 구축 정도

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제도[49]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국내법이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법령 검토 및 제·개정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주요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표 Ⅲ-2-1〉과 같다. 안전, 참여, 폭력·학대, 보육, 보건·복지, 교육 등과 관련된 18건 정도의 제·개정 사안 중에(동일 사안 법령은 1건 산정) 교육관련 법령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화, 보호종료아동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대안교육, 원격교육 등 교육 관련 4개의 신규 법령이 제정되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교폭력 가해 기록 기준 강화와 같이 법 적용 효과를 지켜봐야 할 사안도 있다.

표 Ⅲ-2-1. 아동·청소년 법령 제·개정 현황

법령명	제·개정일	주요 내용	영역
공직선거법	개정 2022.1.18. 시행 2022.1.18.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정치적 권리와 참여 보장	②참여
	시행 2022.4.1.	•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 소음규제기준 마련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1.12.28. 시행 2022.6.29.	•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시설 디자인 시 감염예방 기법 우선 적용 •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조치	①생존(안전)

48) Ⅲ장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표Ⅱ-3-4〉)'에 따라 지표 항목별 결과를 제시하는 장이다. 지표체계의 대분류(보고서의 '절' 단위)-중분류('1) 단위')-소분류('(1)' 단위)-지표 항목('①' 단위) 체계로 지표결과를 기술하였다. 본 과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추이를 살펴보는 연속과제로, 과거 인용된 행정통계나 타분야 통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게 되므로 출처 표기 시 연도별 누적이 많아질 경우는 일부 자료 성격에 따라 전년도 인권보고서를 포괄적인 출처로 제시하거나 각 연도 자료명을 대표로 제시하고, 신규로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추가로 기재하였다(김영지 외, 2020: 170; 김영지 외, 2021: 93). 모든 변수를 포함한 전체 통계결과표와 전체 조사기간에 대한 추이그래프는 「202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22-일반01-02)」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본 총괄보고서에서 〈별권 표/그림〉을 참고하라는 안내 문구에서 '별권'은 기초분석보고서를 말한다.

49) 법률 제·개정 자료는 2022년 8월 30일~9월 30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검색하여 법령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검토대상 법률 제·개정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이며 일부 해당 기간 이전 개정 후 해당 기간에 시행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법령명	제·개정일	주요 내용	영역
		•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지원 근거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21.7.20. 시행 2022.7.21.	• 국가수준의 교육개혁 전담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 설치·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	⑥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2.5.9. 시행 2022.7.21.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지명 방법,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국민참여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⑥교육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2021.9.24. 시행 2022.3.25.	•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 • 기초학력보장위원회 구성 및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학습지원대상 조기 발견 및 진단을 위한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및 대상 선정과 지원, 담당 교원 지정 등	⑥교육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2022.3.25. 시행 2022.3.25.	• 기초학력 보장 및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초학력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진단검사 실시 방법, 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담당교원 연수 등 법률 위임 사항 규정	⑥교육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2021.1.12. 시행 2022.1.13.	•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하여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담보가 어려웠으므로 이의 설차운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	⑥교육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2.1.11. 시행 2022.1.13.	• 대안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등록기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등 구성·운영, 대안교육기관 교원 자격 등 법률 위임 사항 규정	⑥교육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2021.9.24. 시행 2022.3.25.	• 원격교육은 등교·대면수업 중심의 공교육 체계를 변화시키고 미래사회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나 법적 기준이 불충분하여 체계적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이의 법적 기반 마련	⑥교육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 2022.3.25. 시행 2022.3.25.	•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 원격교육 운영 기준, 원격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원격교육 데이터 이용 범위 등 법률 위임 사항 규정	⑥교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1.12.21. 시행 2022.6.22.	•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 예방과 방지 관련 홍보영상 제작·송출 규정 마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⑤복지(장애)
	개정 2022.6.10. 시행 2024.6.11.	•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 대상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으로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아동복지법	개정 2021.12.21. 시행 2021.12.21.	• 시의성 있는 아동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개정 후 최초 조사는 2023년 실시)	⑤복지
	시행 2022.6.22.	• 만18세 보호종료아동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 가능,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자립지원전담기관 관련 규정 마련	
		•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학대로 규정, 중앙행정기관장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의무화, 일정 소득 이하 학대피해아동 가족 상담·치료 실비 지원 근거 마련 등	③학대

법령명	제·개정일	주요 내용	영역
아동수당법	개정 2021.12.14. 시행 2022.1.1.	• 현행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서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만 2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	⑤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 2021.12.21. 시행 2022.6.22.	• 영유아 시간제보육서비스 및 보육 정보 수집·제공·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지정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과 체계성 제고	④보육
	개정 2022.6.10. 시행 2022.12.11.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및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2021.12.28. 시행 2021.12.28.	• 특수교육대상자 '보조인력'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에 중복장애를 포함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의 2/1 범위에서 조정 가능	⑥교육 (장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 2022.6.28. 시행 2022.6.29.	• 중복장애학생 선정기준, 중복장애학생 배치학급에 대한 교원 배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⑥교육 (장애)
정당법	개정 2022.1.21. 시행 2022.1.21.	• 현행법 상 18세인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 18세 미만인 자가 입당 신청 시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②참여
청소년 보호법	개정 2021.12.7. 시행 2022.1.1.	• 매체환경 변화에 따라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규정 삭제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 지원	⑤보건 (건강)
초·중등교육법	개정 2021.9.24. 시행 2022.3.1.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 다만 심의사항에서 제7호·8호(교장 공모, 초빙교사 추천)는 제외하고, 제1호(학칙 제·개정)에 대해서는 자문함.	⑥교육
	시행 2022.3.25.	• 고등학교 학점제 시행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22.8.30. 시행 2022.8.30.	•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추가하도록 함 • 교육복지문화 사업 대상을 학습부진아 밀집학교에서 '학생'으로 명시. 학습부진아 등 진단·상담·치유·학습 등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교육부 장관 고시.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⑥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2022.9.23. 시행 2023.3.1.	• 학교생활기록 관리 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자 조치사항 중 8호(전학)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간 보존	③폭력
학교보건법	개정 2021.9.24. 시행 2022.3.25.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지정 및 지역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⑤보건 (건강)
	개정 2021.12.28. 시행 2022.6.29.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 공기 질 측정 장비 정기 점검 횟수를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 • 보건교육에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과 도박 중독 예방 내용 추가	

* 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별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진 재구성(법령명 기준 가나다 순)
2) 영역 : ①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② 시민적 권리와 자유, ③ 폭력 및 학대, ④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⑤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⑥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⑦ 특별보호조치

②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의 하나인 아동·청소년 예산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정부는 GDP 대비 아동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그 전에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국가 예산의 합의된 범위와 산출기준 및 공식 통계가 부재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 예산' 자료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처 정책사업명을 중심으로 관련성을 판단하여 해당 예산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다(김영지 외, 2021: 99-100).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6년에 발표한 공공예산에 대한 일반논평 제19호는 명확한 예산 분류체계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배정과 실제 지출이 예산 원칙과 관련하여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506: para. 84). 정부예산관리 시스템에서 아동·청소년 예산을 분리해 내고 산출식을 표준화하여 공식예산 규모 추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김영지 외, 2021: 527).

접근 가능 자료 범위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의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을 합산하여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 비율을 산출한 결과 2021년 아동·청소년 예산 비율은 3.2%로 2020년 3.6% 대비 0.4% 감소하였다(〈표 Ⅲ-2-2〉).

표 Ⅲ-2-2.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7~2021년)

(단위 :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가 전체 예산(A)		275,010,413,607	301,417,202,896	331,777,014,900	356,568,644,000	380,850,870,030
아동·청소년예산	유아·초중등교육	47,149,425,794	53,716,467,248	59,401,432,000	60,324,475,000	58,428,301,000
	소년사법	22,371,000	23,967,000	23,864,000	27,043,000	27,407,000
	아동복지	245,178,000	899,377,000	2,385,469,000	2,541,321,000	2,526,208,000
	보육	5,373,451,000	5,505,231,000	5,689,214,000	5,872,783,000	5,959,703,000
	(아동폭력예방)	11,773,000	12,251,000	99,909,000	122,217,000	126,724,000
	청소년	87,169,000	77,353,000			
	소계(B)	52,889,367,794	60,234,646,248	67,558,216,000	68,888,339,000	67,068,343,000
(B)/(A)*100(%)		19.2	20.0	20.3	19.3	17.6
아동청소년 인구(명)		8,480,447	8,176,335	7,964,880	7,710,946	7,483,944
1인당 지출비용(천원)		6,237	7,367	8,487	8,945	8,962
GDP(국내총생산)		1,730.4조원	1,782.3조원	1,919.9조원	1,933.2조원	2,071.6조원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 비율(%)		3.1	3.4	3.5	3.6	3.2

*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2017-2020). 나라살림예산.
  기획재정부(2021-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사이트(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index)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 아동 · 청소년 예산 산출식: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예산」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051항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소년사법 예산: 1632항 소년보호) + (아동복지 예산: 1300항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2539항 아동수당 지원) + (보육 예산: 3100항 보육지원강화) + (청소년 예산: 2200항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 2136항 아동·여성안전정책지원 + 2137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지원)
* 전체 국가 예산(A)은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임.
* 2019년부터 '청소년' 예산에 여성가족부의 '아동폭력예방' 예산을 통합하여 산출함.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예산 일부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아동수당 예산은 2018년도부터 포함됨.
* 인구 출처: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SelectStatsBoxDiv 에서 2022년 10월 5일 인출. 아동 · 청소년 인구는 2022년 8월 기준 수치로, 2022년 최종 아동 · 청소년 인구수는 2023년에 업데이트됨.)
* 2021년 예산 및 아동 · 청소년 인구는 최종 공지된 예산과 인구수(2021.12. 기준)로 업데이트하여 재산출되었음.
* GDP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에서 2022년 10월 5일 인출. 2022년도 GDP는 2023년에 발표됨.
* GDP 대비 아동 · 청소년 예산 비율(%) 산출식: 아동 · 청소년 예산(총계)/GDP×100
* 최근 년도 예산자료에 제시된 기준으로 이전년도 예산수치를 수정함.

(2) 인권에 대한 인식

①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인권에 대한 인식' 지표(소분류)를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지표항목은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로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모른다' 30.5%, '이름만 들어봤다' 47.1%로 나타났고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22.4%였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모른다' 51.8%, '이름만 들어봤다' 40.1%,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는 8.0%로 나타났다.[50] 국가인권위원회를 모르는 아동·청소년은 23.3%, 이름만 들어본 경우는 54.0%였으며,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22.7%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남학생인 경우, 학교급은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지역규모는 대도시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여학생인 경우, 그리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표 Ⅲ-2-3〉).

50)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교육청은 경기도(2010년), 광주광역시(2011년), 서울특별시(2012년), 전라북도(2013년), 충청남도(2020년), 제주도(2021년), 인천광역시(2021년) 등 7개 지역이다(김영지 외, 2021: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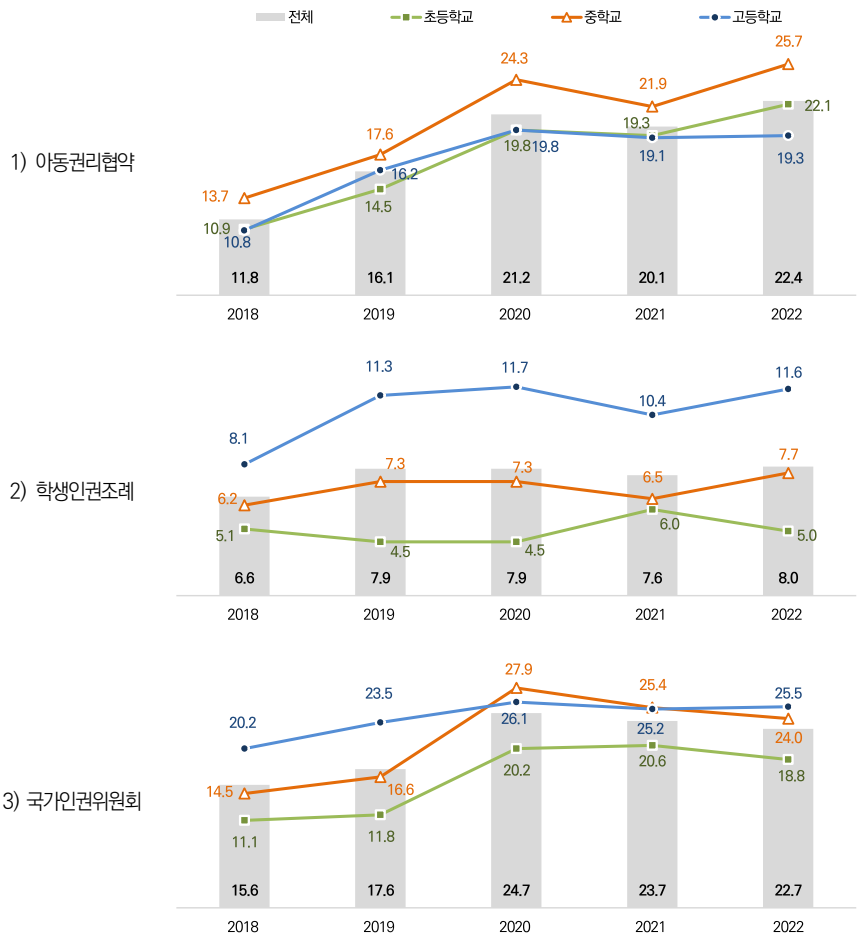
표 Ⅲ-2-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전체		30.5	47.1	22.4	100.0(8,824)	
	성별	남학생	33.3	44.1	22.6	100.0(4,260)	36.820***
		여학생	27.9	49.9	22.2	100.0(4,564)	
	학교급	초등학교	39.6	38.3	22.1	100.0(2,985)	230.176***
		중학교	24.2	50.1	25.7	100.0(2,980)	
		고등학교	27.6	53.1	19.3	100.0(2,859)	
	지역규모	대도시	28.1	47.3	24.7	100.0(3,328)	24.137***
		중소도시	31.6	47.2	21.3	100.0(4,163)	
		읍면지역	33.3	46.2	20.4	100.0(1,333)	
2) 학생인권조례	전체		51.8	40.1	8.0	100.0(8,813)	
	성별	남학생	53.5	38.5	8.0	100.0(4,256)	10.136**
		여학생	50.2	41.7	8.1	100.0(4,557)	
	학교급	초등학교	62.1	32.9	5.0	100.0(2,978)	302.154***
		중학교	52.8	39.5	7.7	100.0(2,977)	
		고등학교	40.1	48.3	11.6	100.0(2,858)	
	지역규모	대도시	55.7	38.1	6.2	100.0(3,325)	46.042***
		중소도시	48.9	41.9	9.3	100.0(4,158)	
		읍면지역	51.4	39.7	8.9	100.0(1,330)	
3) 국가인권위원회	전체		23.3	54.0	22.7	100.0(8,809)	
	성별	남학생	26.3	51.6	22.1	100.0(4,255)	41.276***
		여학생	20.5	56.2	23.3	100.0(4,554)	
	학교급	초등학교	27.2	54.0	18.8	100.0(2,977)	84.483***
		중학교	23.9	52.0	24.0	100.0(2,975)	
		고등학교	18.6	55.9	25.5	100.0(2,857)	
	지역규모	대도시	22.6	54.7	22.7	100.0(3,323)	4.948
		중소도시	23.5	54.2	22.4	100.0(4,158)	
		읍면지역	24.6	51.4	24.0	100.0(1,329)	

*p<.05, **p<.01, ***p<.001

인권 관련 협약과 기관 인지도의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2018년 11.8%에서 상승 추세이다가 2021년에 소폭 감소한 후 2022년에는 22.4%로 다시 상승하였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2021년도에 소폭 감소했다가 2022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초등학생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2020년까지 상승했다가 2021년과 2022년에는 소폭 하락하였는데 2022년에 고등학생의 인지도는 전년 대비 미세하게 높아졌다([그림 Ⅲ-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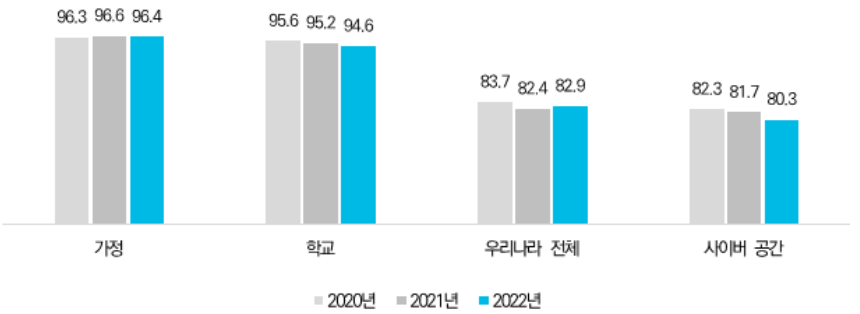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Ⅲ-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연도별 추이)

②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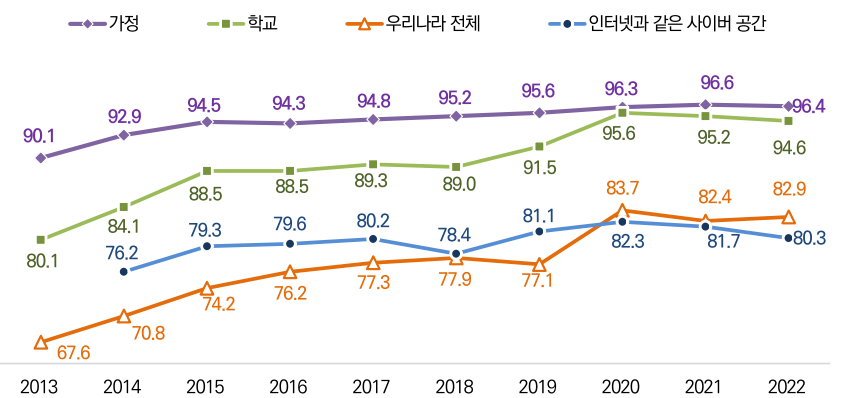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 공간 등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정(96.4%), 학교(94.6%), 우리나라 전체(82.9%), 사이버 공간(80.3%)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학교, 사이버 공간에서 인권 존중 정도는 전년도 대비 낮아진 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인권 존중 정도는 전년도 대비 높아졌다([그림 Ⅲ-2-2]). 10년 전 대비 전 영역에서 인권 존중 정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2020년

도에 학교와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Ⅲ-2-3]).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전체 영역 3개년)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2-3.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_전체 영역(연도별 추이)

가.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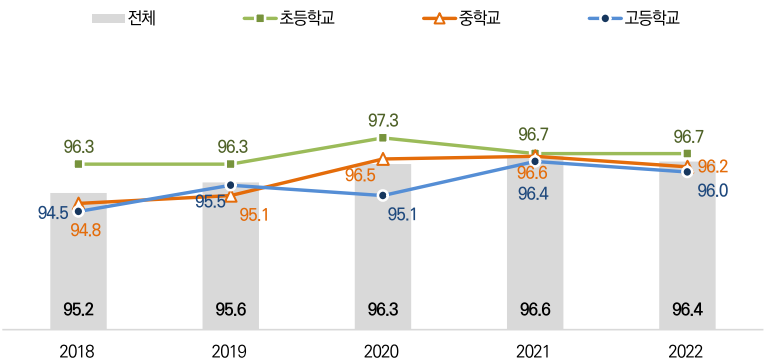
가정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96.4%(존중받는 편 38.3%, 매우 존중 58.1%)로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인 경우, 학교급이 낮을 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인권 존중 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표 Ⅲ-2-4〉).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도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도에 미세하게 감소하였다([그림 Ⅲ-2-4]).

표 Ⅲ-2-4.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54(0.59)	0.6	3.1	38.3	58.1	100.0(8,827)	
성별	남학생	3.56(0.58)	0.6	2.8	36.5	60.1	100.0(4,261)	15.103**
	여학생	3.52(0.59)	0.5	3.4	39.9	56.2	100.0(4,566)	
학교급	초등학교	3.59(0.57)	0.4	2.8	33.6	63.1	100.0(2,982)	60.831***
	중학교	3.52(0.58)	0.3	3.5	40.2	56.0	100.0(2,983)	
	고등학교	3.50(0.61)	1.0	3.0	41.1	54.9	100.0(2,862)	
경제적 수준	상	3.63(0.55)	0.4	2.2	31.6	65.8	100.0(5,091)	380.030***
	중	3.46(0.59)	0.5	3.6	45.7	50.2	100.0(2,959)	
	하	3.24(0.68)	2.2	7.2	54.7	35.9	100.0(701)	

**p < .01, ***p < .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2-4.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연도별 추이)

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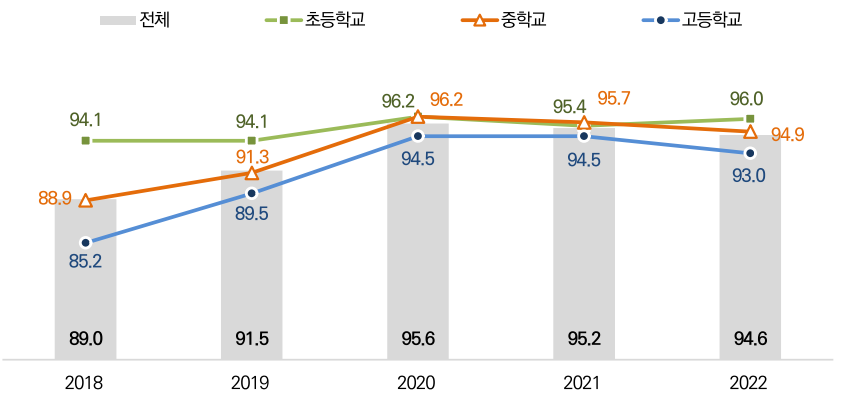
학교에서의 인권존중도는 94.6%(존중받는 편 55.5%, 매우 존중 39.1%)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평균값을 보면 여학생인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인권 존중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표 Ⅲ-2-5〉).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은 2018년 89.0%에서 2020년 95.6%로 상승한 이후 2021년부터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다([그림 Ⅲ-2-5]).

표 Ⅲ-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33(0.60)	0.8	4.5	55.5	39.1	100.0(8,819)	
성별	남학생	3.33(0.63)	1.2	5.0	53.1	40.7	100.0(4,257)	29.122***
	여학생	3.33(0.58)	0.5	4.1	57.7	37.7	100.0(4,561)	
학교급	초등학교	3.39(0.58)	0.5	3.5	52.7	43.3	100.0(2,977)	72.701***
	중학교	3.33(0.58)	0.4	4.8	56.8	38.1	100.0(2,979)	
	고등학교	3.27(0.64)	1.6	5.4	57.1	35.9	100.0(2,862)	
경제적 수준	상	3.38(0.60)	0.8	4.1	51.9	43.2	100.0(5,086)	114.889***
	중	3.29(0.58)	0.7	4.5	60.2	34.6	100.0(2,955)	
	하	3.17(0.64)	1.7	8.1	61.5	28.7	100.0(701)	

*p 〈 .05, **p 〈 .01, ***p 〈 .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연도별 추이)

다. 우리나라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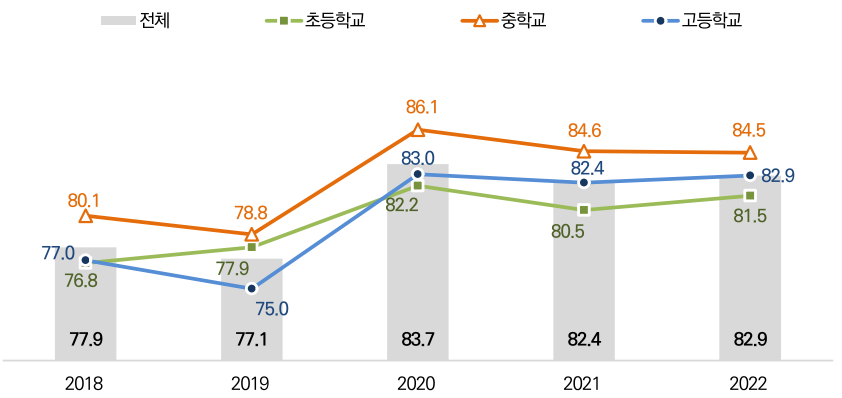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체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82.9%(존중받는 편 59.3%, 매우 존중 23.6%)였다. 여학생인 경우, 학교급 중에서는 중학생이,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Ⅲ-2-6〉). 최근 5년간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2018년 77.9%에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부터 초등학생의 응답률이 중고등학생보다 낮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Ⅲ-2-6]).

표 Ⅲ-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04(0.70)	3.0	14.0	59.3	23.6	100.0(8,802)	
성별	남학생	3.03(0.75)	4.1	14.4	55.8	25.7	100.0(4,249)	62.993***
	여학생	3.04(0.66)	2.1	13.6	62.7	21.7	100.0(4,553)	
학교급	초등학교	3.04(0.74)	3.5	14.9	55.1	26.4	100.0(2,963)	38.258***
	중학교	3.05(0.68)	2.8	12.8	61.5	23.0	100.0(2,979)	
	고등학교	3.01(0.69)	2.8	14.2	61.5	21.4	100.0(2,860)	
경제적 수준	상	3.09(0.70)	2.7	12.3	58.5	26.5	100.0(5,080)	98.852***
	중	2.99(0.70)	3.1	15.4	60.7	20.8	100.0(2,947)	
	하	2.84(0.73)	5.2	19.9	60.1	14.7	100.0(7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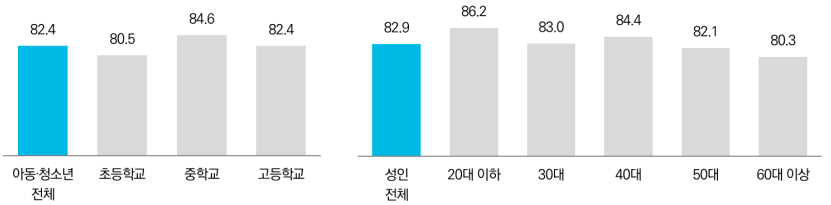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연도별 추이)

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인대상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19년부터 공통문항을 개발하여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인권 인식을 비교하고자 하였다.[51]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은 82.4%가, 성인의 경우 82.9%가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하여 성인이 아동·청소년보다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Ⅲ-2-7]).

51) 두 개의 공통문항(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인식, 사회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인식을 비교하고 있으며,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 인권교육 경험, 차별 경험 등 세 개의 유사 문항에 대해서도 응답률을 비교하였는데, 유사문항의 경우 질문 문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출처: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준, 정병은, 장미혜, 김대훈, 이수현 (2021).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주: 1)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2)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유치조사, 온라인조사 병행)로 실시되었으며, 최종 응답한 사례 수는 17,593명임.
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익년 1월 공표,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익년 6월에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당해에 데이터 비교가 어려우므로 전년도인 2021년도 결과로 작성함.

그림 Ⅲ-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라. 사이버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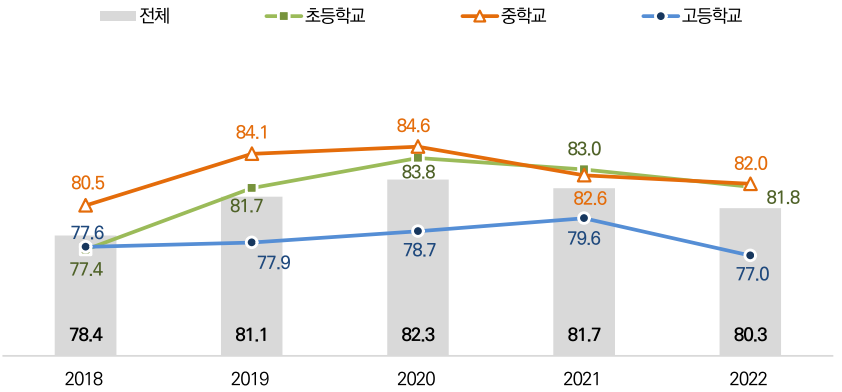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해 80.3%(존중받는 편 57.7%, 매우 존중 22.6%)가 존중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여학생인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인권 존중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표 Ⅲ-2-7〉).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78.4%에서 상승하다가 2021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도 대비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다른 교급에 비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Ⅲ-2-8]).

표 Ⅲ-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2.97(0.77)	5.5	14.2	57.7	22.6	100.0(8,796)	
성별	남학생	2.94(0.81)	7.0	14.9	54.9	23.3	100.0(4,249)	48.312***
	여학생	3.00(0.72)	4.1	13.5	60.3	22.1	100.0(4,547)	
학교급	초등학교	3.03(0.79)	6.0	12.1	55.1	26.7	100.0(2,958)	83.448***
	중학교	3.00(0.72)	3.9	14.1	60.1	21.9	100.0(2,979)	
	고등학교	2.90(0.78)	6.5	16.5	57.8	19.2	100.0(2,860)	
경제적 수준	상	3.03(0.75)	4.8	12.8	57.3	25.1	100.0(5,070)	116.626***
	중	2.94(0.75)	5.5	14.9	59.5	20.1	100.0(2,950)	
	하	2.72(0.86)	11.3	20.5	52.8	15.4	100.0(701)	

*p<.05, **p<.01, ***p<.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2-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연도별 추이)

③ 인권의식 및 태도

지표항목 '인권의식과 태도'는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의사결정 능력, 사회참여 필요성, 자치조직 의의 등 참여 관련 인식을 묻는 문항 3개, 표현의 자유 1개, 차별 관련 인식(경제적 수준, 성별, 민족) 3개 등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결정능력에 대해 69.5%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성인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부정적 질문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값을 합산),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85.7%(그런 편 54.4%, 매우 31.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86.0%(그런 편 60.5%, 매우 25.5%)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3개 문항 모두에서 남학생보다 인권 인식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주체적 결정능력과 사회참여 필요성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높은 인식을 보였고, 자치조직 의의에 대해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은 인식을 보였다(〈표 Ⅲ-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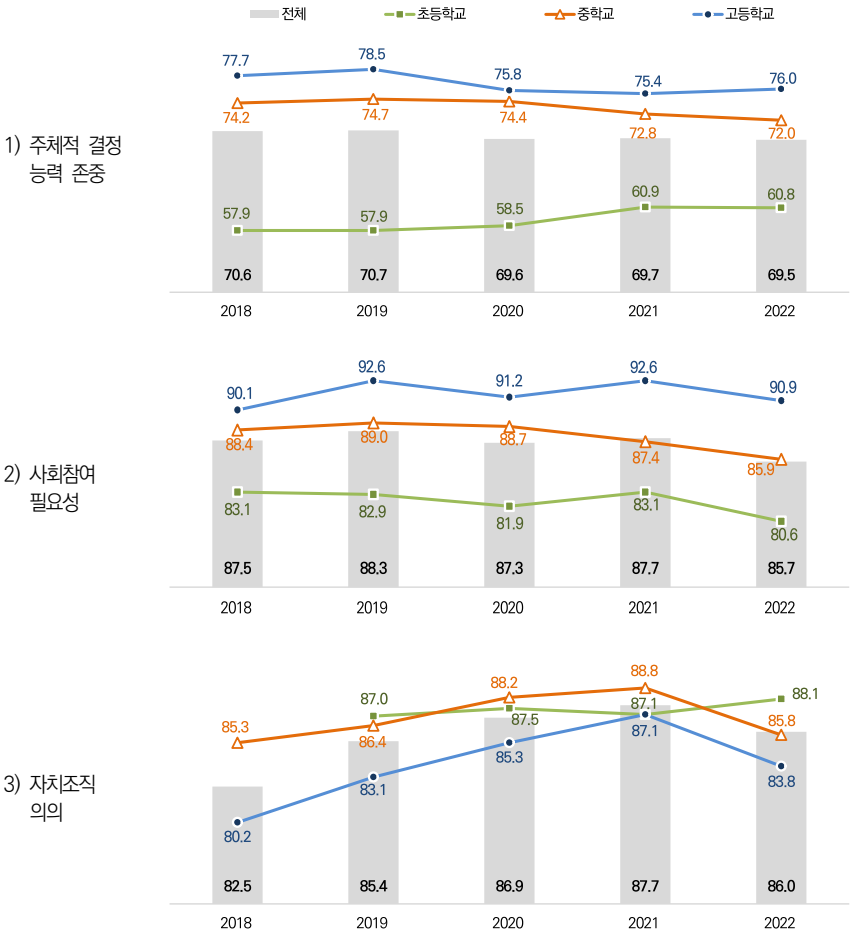
표 Ⅲ-2-8. 인권의식 및 태도_아동·청소년의 참여 관련 인식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주체적 결정 능력 부족 (*부정적 질문)	전체		2.09(0.82)	25.3	44.2	26.5	4.0	100.0(8,822)	
	성별	남학생	2.15(0.84)	24.0	42.3	28.5	5.2	100.0(4,258)	50.039***
		여학생	2.04(0.79)	26.5	45.9	24.6	3.0	100.0(4,564)	
	학교급	초등학교	2.25(0.86)	21.0	39.8	32.5	6.7	100.0(2,981)	208.013***
		중학교	2.04(0.79)	26.8	45.2	25.2	2.8	100.0(2,980)	
		고등학교	1.98(0.77)	28.3	47.7	21.4	2.6	100.0(2,861)	
2) 사회참여 필요성	전체		3.14(0.73)	3.1	11.2	54.4	31.3	100.0(8,814)	
	성별	남학생	3.08(0.76)	4.0	13.4	53.5	29.0	100.0(4,255)	73.972***
		여학생	3.20(0.69)	2.2	9.1	55.2	33.4	100.0(4,559)	
	학교급	초등학교	3.07(0.80)	4.5	14.9	49.4	31.2	100.0(2,973)	157.288***
		중학교	3.12(0.69)	2.3	11.8	57.5	28.4	100.0(2,980)	
		고등학교	3.23(0.68)	2.5	6.6	56.4	34.5	100.0(2,861)	
3) 자치조직 의의	전체		3.08(0.70)	3.3	10.8	60.5	25.5	100.0(8,810)	
	성별	남학생	3.04(0.73)	4.3	12.0	59.3	24.4	100.0(4,251)	43.558***
		여학생	3.12(0.66)	2.3	9.7	61.6	26.4	100.0(4,559)	
	학교급	초등학교	3.16(0.69)	2.6	9.3	57.1	31.0	100.0(2,974)	84.901***
		중학교	3.05(0.68)	3.1	11.1	63.3	22.5	100.0(2,975)	
		고등학교	3.02(0.72)	4.2	12.1	61.0	22.8	100.0(2,86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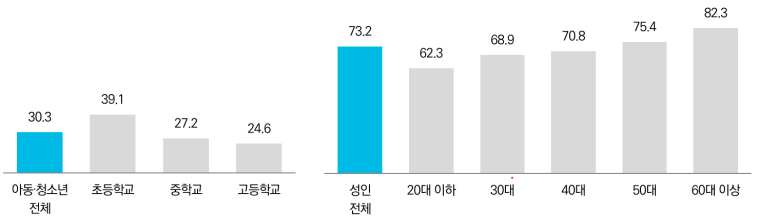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결정능력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의 추이를 보면, 최근 5년간 70% 내외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69.5%로 미세한 차이지만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아동·청소년이 사회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87%~88%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2년에 85.7%로 감소하였다. 아동·청소년 자치조직 의의는 2018년 82.5%에서 2021년에 87.7%까지 상승하다가 2022년에는 86.0%로 소폭 줄어들었는데, 전년도 대비 응답률의 경우 학교급 중에서 초등학생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Ⅲ-2-9]).



* 주: 1) 첫 번째 문항은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 능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응답률(부정형 질문이므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합계)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문항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자치조직 의의 문항에 대한 초등학생 조사는 2019년부터 포함됨.

그림 Ⅲ-2-9. 인권의식 및 태도_아동·청소년의 참여 관련 인식(연도별 추이)

'아동·청소년은 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성인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 아동·청소년 30.3%, 성인 73.2%가 동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결정 능력에 대해 성인이 더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성인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아동·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60대 이상 82.3%)([그림 Ⅲ-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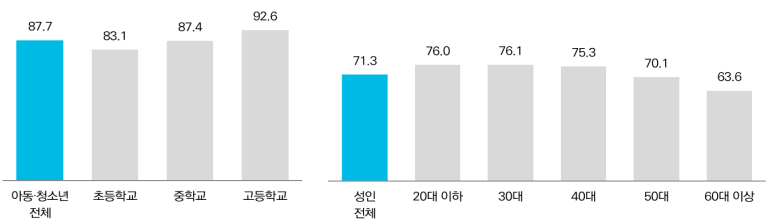


* 출처: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준 외(2021)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주: 1)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하는 편이다'의 합계(단위: %)
2)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유치조사, 온라인조사 병행)로 실시되었으며, 최종 응답한 사례 수는 17,593명임.
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익년 1월 공표,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익년 6월에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당해에 데이터 비교가 어려우므로 전년도인 2021년도 결과로 작성함.

그림 Ⅲ-2-10.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 아동·청소년은 87.7%, 성인은 71.3%가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성인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Ⅲ-2-11]).



* 출처: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준 외(2021)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유치조사, 온라인조사 병행)로 실시되었으며, 최종 응답한 사례 수는 17,593명임.
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익년 1월 공표,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익년 6월에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당해에 데이터 비교가 어려우므로 전년도인 2021년도 결과로 작성함.

그림 Ⅲ-2-11.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96.3%(그런 편이다 35.0%, 매우 그렇다 61.3%)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 97.3%(그런 편 20.3%, 매우 77.0%)가,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96.4%(그런 편 23.5%, 매우 72.9%)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94.5%(그런 편 32.0%, 매우 62.5%)의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였다. 네 개 문항 모두 학교급이 낮을수록 응답 평균값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표 Ⅲ-2-9〉).

표 Ⅲ-2-9. 인권의식 및 태도_차별 관련 인식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의견표명권	전체		3.57(0.60)	1.1	2.6	35.0	61.3	100.0(8,791)	
	학교급	초등학교	3.65(0.59)	0.9	3.1	25.9	70.0	100.0(2,970)	182.563***
		중학교	3.54(0.57)	0.7	2.0	39.5	57.9	100.0(2,968)	
		고등학교	3.50(0.63)	1.6	2.8	39.9	55.7	100.0(2,854)	
2) 경제적 이유 차별금지	전체		3.73(0.55)	1.3	1.4	20.3	77.0	100.0(8,806)	
	학교급	초등학교	3.81(0.53)	1.7	1.3	11.6	85.5	100.0(2,972)	220.019***
		중학교	3.71(0.53)	0.8	1.3	24.2	73.6	100.0(2,975)	
		고등학교	3.67(0.58)	1.5	1.5	25.2	71.8	100.0(2,859)	
3) 양성평등	전체		3.68(0.58)	1.2	2.4	23.5	72.9	100.0(8,807)	
	성별	남학생	3.61(0.66)	2.1	3.3	26.4	68.2	100.0(4,253)	129.620***
		여학생	3.75(0.50)	0.4	1.6	20.8	77.2	100.0(4,554)	
	학교급	초등학교	3.79(0.50)	0.9	1.6	15.2	82.4	100.0(2,975)	228.388***
		중학교	3.65(0.58)	0.8	2.8	27.0	69.4	100.0(2,972)	
		고등학교	3.60(0.65)	2.1	2.9	28.4	66.6	100.0(2,860)	
4) 이주배경주민 교육권	전체		3.55(0.65)	1.8	3.7	32.0	62.5	100.0(8,809)	
	학교급	초등학교	3.66(0.64)	1.9	3.4	21.7	73.0	100.0(2,976)	263.632***
		중학교	3.54(0.62)	1.0	3.6	35.4	60.0	100.0(2,973)	
		고등학교	3.45(0.69)	2.5	4.2	39.1	54.3	100.0(2,860)	

*p<.05, **p<.01, ***p<.001

누구나 의견표명권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8년 95.8%에서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2022년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그렇다' 응답률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고등학생의 응답률은 감소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2018년 97.2%에서 2022년 97.3%로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97.6%보다는 감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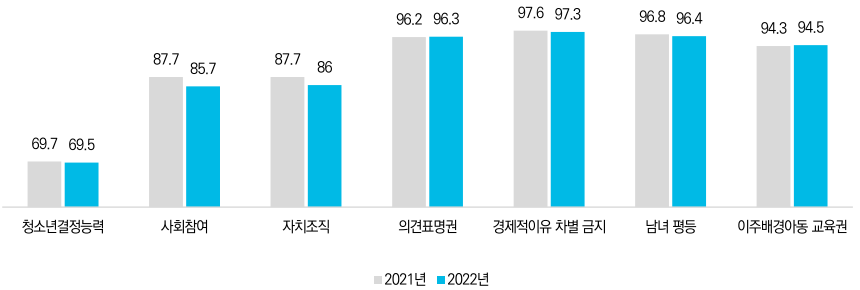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경제적 이유로 인한 차별 문항에 대한 초등학생 조사는 2019년부터 포함됨.

그림 Ⅲ-2-12. 인권의식 및 태도_차별 관련 인식(연도별 추이)

양성평등 의식은 최근 5년 동안 96% 전후반대의 수치를 보였고 중·고등학생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초등학생은 전년도 대비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양성평등 의식의 성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은 98.0%로 전년도 97.9%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남학생은 94.6%로 전년도 95.7%보다 하락하였다([별권 그림 Ⅵ-1-14-1]). 이주배경 주민의 교육권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약 93~94% 내외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8년 대비 초등학생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Ⅲ-2-12]).

'인권 의식 및 태도' 지표 항목을 구성하는 7개 문항의 '그렇다' 값(역문항인 청소년 결정 능력의 경우 '그렇지 않다'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능력에 대해 70%에 가까운 응답률을, 아동·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과 자치조직 의의에 대해 80% 후반대의 응답률을, 의견표명권과 비차별 인식의 경우 90% 중·후반대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그림 Ⅲ-2-13]).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2-13. 인권의식 및 태도_전체

(3) 인권교육

① 인권교육 실시 현황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은 학교 교과과정(교과, 범교과 학습주제, 창의적 체험활동) 상의 인권교육부터 지역 기관·단체의 다양한 인권활동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며, 대상 면에서도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성인들이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의 대상이다(교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경찰 및 사법 관계자 등). 인권교육 실시 현황 자료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등 교원, 행정분야 국가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국회 등의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영역별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전반에 대해 종합적 현황을 파악하는 공적 통계치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교육 수치를 분리해낼 수는

없지만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권교육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유일한 통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간보고서 현황자료를 참고하고 있다(김영지 외, 2021: 126).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에 전문교육과정 운영 257회, 방문 프로그램 322회, 사이버 인권교육 1,677회, 인권특강 1,012회, 플랫폼공동 활용교육 1,339회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을 총 4,607회, 351,463명에게 실시하였다(<표 Ⅲ-2-10>). 학교 인권교육으로는 7개 권역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인권리더십과정(8회, 161명),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사 인권교육(1회 12명), 학교 인권역량과정으로 교육청 학생인권 담당 공무원 인권교육(5회 90명) 등을 실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2.4: 284-289).

표 Ⅲ-2-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계		교육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나라배움터) 플랫폼공동 활용교육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7	4,447	249,428	494	28,916	533	10,974	915	79,799	1,968	101,482	537	28,257
2018	5,189	344,562	427	19,957	484	8,542	1,133	166,183	2,116	106,189	1,029	43,691
2019	6,282	445,807	330	12,527	556	10,694	1,363	261,505	2,699	107,372	1,334	53,709
2020	3,443	362,459	150	5,011	163	2,700	1,131	220,392	733	29,846	1,266	104,510
2021	4,607	351,463	257	6,279	322	4,332	1,677	205,738	1,012	33,669	1,339	101,445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22.4). 2021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p.285.

② 인권교육 경험

최근 1년간 인권교육 경험률(학교, 학교 밖 기관 등)은 50.7%였으며, 여학생(54.0%)이 남학생(47.2%)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63.8%, 중 45.9%, 고 42.3%),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58.6%, 중 47.9%, 하 42.3%) 인권교육 경험이 많다고 응답하였다(<표 Ⅲ-2-11>).

표 Ⅲ-2-11. 인권교육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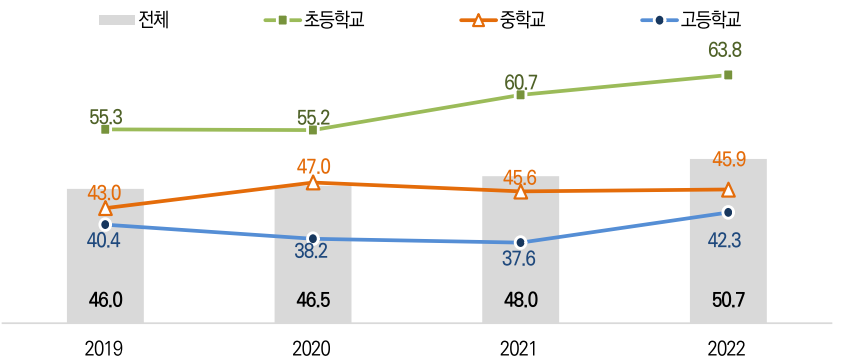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50.7	49.3	100.0(8,743)	
성별	남학생	47.2	52.8	100.0(4,204)	39.920***
	여학생	54.0	46.0	100.0(4,539)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63.8	36.2	100.0(2,924)	308.094***
	중학교	45.9	54.1	100.0(2,963)	
	고등학교	42.3	57.7	100.0(2,855)	
학업성적	상	58.6	41.4	100.0(3,231)	142.484***
	중	47.9	52.1	100.0(3,638)	
	하	42.3	57.7	100.0(1,802)	

*p<.05, **p<.01, ***p<.001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률 추이를 보면, 2019년 46.0%에서 2022년 50.7%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2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모든 학교급의 인권교육 경험률이 증가하였는데, 고등학생(4.7%)과 초등학생(3.1%)의 증가폭이 큰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Ⅲ-2-14]).



* 주: 1) '있다' 응답값(단위: %)
2) 2019년부터 '횟수' → '경험유무'로 척도 변경됨.

그림 Ⅲ-2-14. 인권교육 경험(연도별 추이)

인권교육을 어디에서 받았는지에 대해 사회나 도덕 등 학교 교과수업시간이 73.7%로 가장 많았고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35.8%),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사회단체 등)(11.4%), 기타(1.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84.1%, 중 76.4%, 고 54.4%) 교과수업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교과수업시간과 동일하게 54.4%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계고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특성화계고는 교과수업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표 Ⅲ-2-12〉). 전년도 대비 2022년 응답률 변화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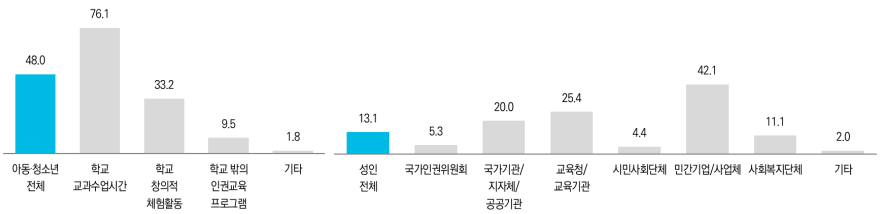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 교과수업시간은 줄어들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늘어났는데 중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별권 그림 Ⅵ-1-17]).

표 Ⅲ-2-12.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

(단위 : %, 명)

구분		학교 교과 수업시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타	전체(N)
전체		73.7	35.8	11.4	1.9	100.0(4,401)
학교급	초등학교	84.1	25.0	12.5	3.1	100.0(1,855)
	중학교	76.4	34.2	11.9	1.2	100.0(1,352)
	고등학교	54.4	54.4	9.2	0.9	100.0(1,194)
고교 유형	일반계고	52.8	57.3	9.2	0.8	100.0(977)
	특성화계고	61.5	41.5	9.2	1.5	100.0(216)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인권교육 경험 차이를 살펴보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은 아동·청소년 48.0%, 성인의 경우 13.1%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받은 곳은 아동·청소년은 학교 교과수업시간(76.1%)이 가장 많고, 성인은 민간기업/사업체 교육(42.1%), 교육청/교육기관(25.4%) 순으로 많았다([그림 Ⅲ-2-15]).



* 출처: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준 외(2021)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주: 1)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유치조사, 온라인조사 병행)로 실시되었으며, 최종 응답한 사례 수는 17,593명임.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익년 1월 공표,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익년 6월에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당해에 데이터 비교가 어려우므로 전년도인 2021년도 결과로 작성함.

그림 Ⅲ-2-15. 인권교육 경험 및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인권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인권교육 목표별(지식, 태도, 실천)로 도움이 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인권교육이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91.6%(그런 편 61.4%, 매우 30.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도 91.6%(그런 편 52.1%, 매우 39.5%)이었으며,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86.5%(그런 편 53.5%, 매우 33.0%)로 나타났다. 세 가지 문항 모두 학교급이 낮을수록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게 나타났다. 인권교육은 '지식(91.6%) = 태도(91.6%) 〉 실천(86.5%)' 순으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Ⅲ-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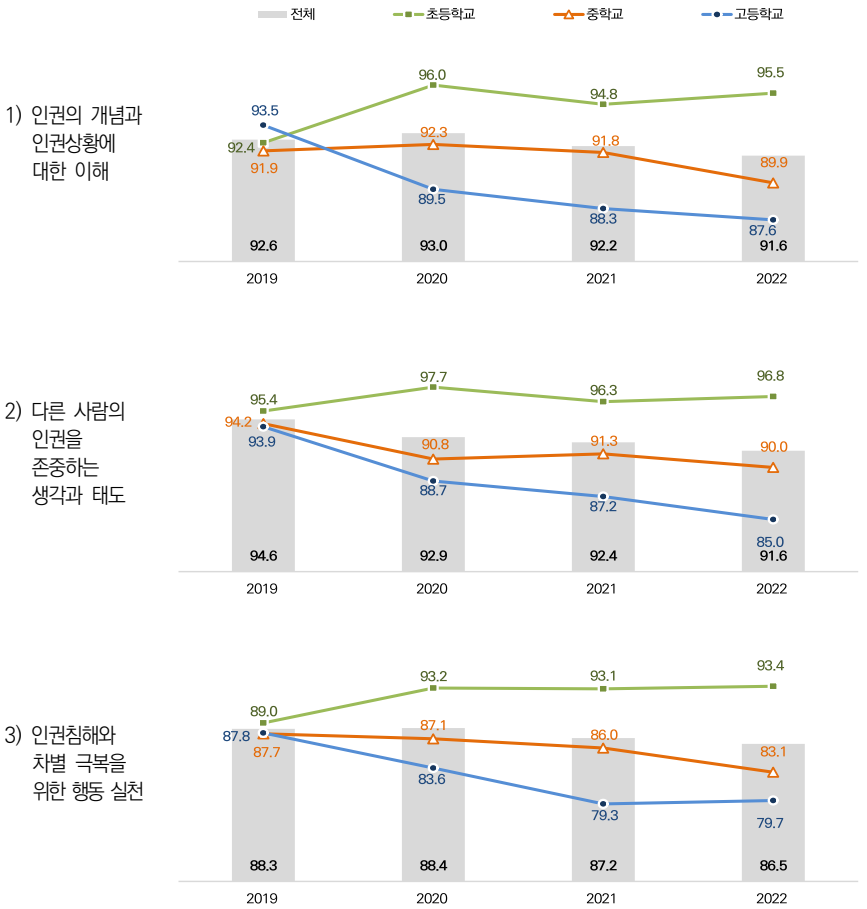
표 Ⅲ-2-13.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교급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N)	χ^2
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전체	3.20(0.65)	2.3	6.0	61.4	30.2	100.0(4,398)	
	초등학교	3.35(0.59)	0.9	3.6	55.6	39.9	100.0(1,852)	183.373***
	중학교	3.11(0.66)	3.3	6.8	65.7	24.2	100.0(1,352)	
	고등학교	3.06(0.66)	3.3	9.0	65.7	21.9	100.0(1,193)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전체	3.29(0.68)	2.2	6.2	52.1	39.5	100.0(4,394)	
	초등학교	3.51(0.58)	0.6	2.5	41.9	54.9	100.0(1,852)	394.721***
	중학교	3.19(0.69)	3.1	6.8	57.9	32.1	100.0(1,351)	
	고등학교	3.05(0.71)	3.7	11.3	61.1	23.9	100.0(1,191)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전체	3.16(0.73)	3.1	10.4	53.5	33.0	100.0(4,393)	
	초등학교	3.37(0.66)	1.6	5.1	47.6	45.8	100.0(1,851)	303.651***
	중학교	3.06(0.74)	3.8	13.1	56.8	26.3	100.0(1,351)	
	고등학교	2.96(0.74)	4.6	15.7	59.1	20.6	100.0(1,191)	

***p 〈 .001.

인권교육의 세 가지 목표별 도움 정도에 대한 응답률 변화를 살펴보면 지식, 태도, 실천 영역 모두 2021년 대비 2022년 응답률이 소폭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세 가지 목표 모두 긍정적 응답률이 소폭 증가하였고, 중학생은 세 가지 영역 모두 소폭 하락하였으며, 고등학생은 지식과 태도에 대한 응답률은 줄어든 반면, 실천 면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미세하게 증가였다([그림 Ⅲ-2-16]).



*주: 1) '도움이 되는 편이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 응답값의 합계(단위: %)
2) 2019년부터 하위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함.

그림 Ⅲ-2-16.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연도별 추이)

2) 일반원칙

(1) 차별 경험률

차별 경험은 성, 학업성적, 나이, 외모 및 신체조건,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 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 10가지 차별유형에 대해 최근 1년간 차별받은 경험(차별 피해)과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차별 가해)을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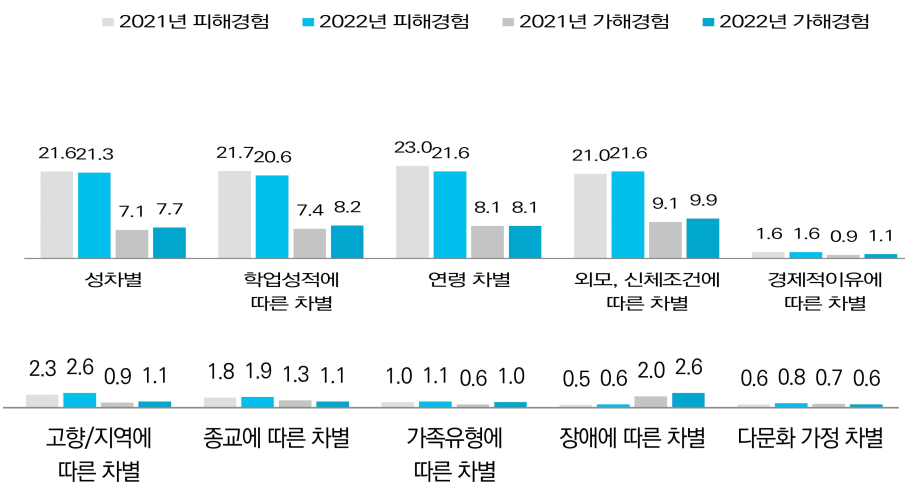
표 Ⅲ-2-14.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종합)

(단위 : %)

차별사유	차별 피해 경험				차별 가해 경험			
	1년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1주일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1주일에 1회 이상
1) 성별	21.3	5.6	2.3	0.8	7.7	1.8	0.7	0.4
2) 학업성적	20.6	7.7	3.3	1.1	8.2	2.4	0.9	0.4
3) 나이	21.6	6.4	2.6	0.7	8.1	2.3	0.9	0.5
4) 외모·신체조건	21.6	8.3	4.1	1.8	9.9	2.9	1.5	0.6
5) 경제적 이유	1.6	0.6	0.3	0.2	1.1	0.5	0.2	0.1
6) 고향/지역	2.6	1.1	0.6	0.4	1.1	0.5	0.3	0.2
7) 종교	1.9	0.6	0.3	0.2	1.1	0.4	0.2	0.1
8) 가족유형	1.1	0.5	0.3	0.1	1.0	0.4	0.2	0.2
9) 장애	0.6	0.3	0.1	0.1	2.6	0.8	0.4	0.2
10) 다문화가정	0.8	0.4	0.2	0.1	0.6	0.2	0.1	0.1

* 주: 1) '1년에 1회 이상' 값은 '① 1년에 1~2회 정도', '② 2~3개월에 1~2회 정도', '③ 한 달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1~2회 정도' 등 전체 선택지 응답률의 합산 값이며, '3개월에 1회 이상' 값은 ②, ③, ④번 선택지의 합산 값, '한 달에 1회 이상' 값은 ③, ④번 선택지의 합산 값임.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은 나이(21.6%)와 외모·신체조건(21.6%)이 동일한 수치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별(21.3%)과 학업성적(20.6%)에 따른 차별경험이 20% 정도로 많게 나타났으며, 고향·지역(2.6%), 종교(1.9%), 경제적 이유(1.6%), 가족유형(1.1%)에 따른 차별 경험이 그 뒤를 이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외모·신체조건(9.9%), 학업성적(8.2%), 나이(8.1%), 성별(7.7%), 장애(2.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한 경험은 모두 1.1%의 응답률을 보였다. '차별받은' 경험은 외모·신체조건과 나이(각 21.6%)에 따른 차별 경험이,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도 외모·신체조건(9.9%)에 따른 차별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1주일에 1회 이상 일상적 차별 피해 및 가해를 경험한 비율도 외모·신체조건이 가장 높았다(피해 1.8%, 가해 0.6%)(〈표 Ⅲ-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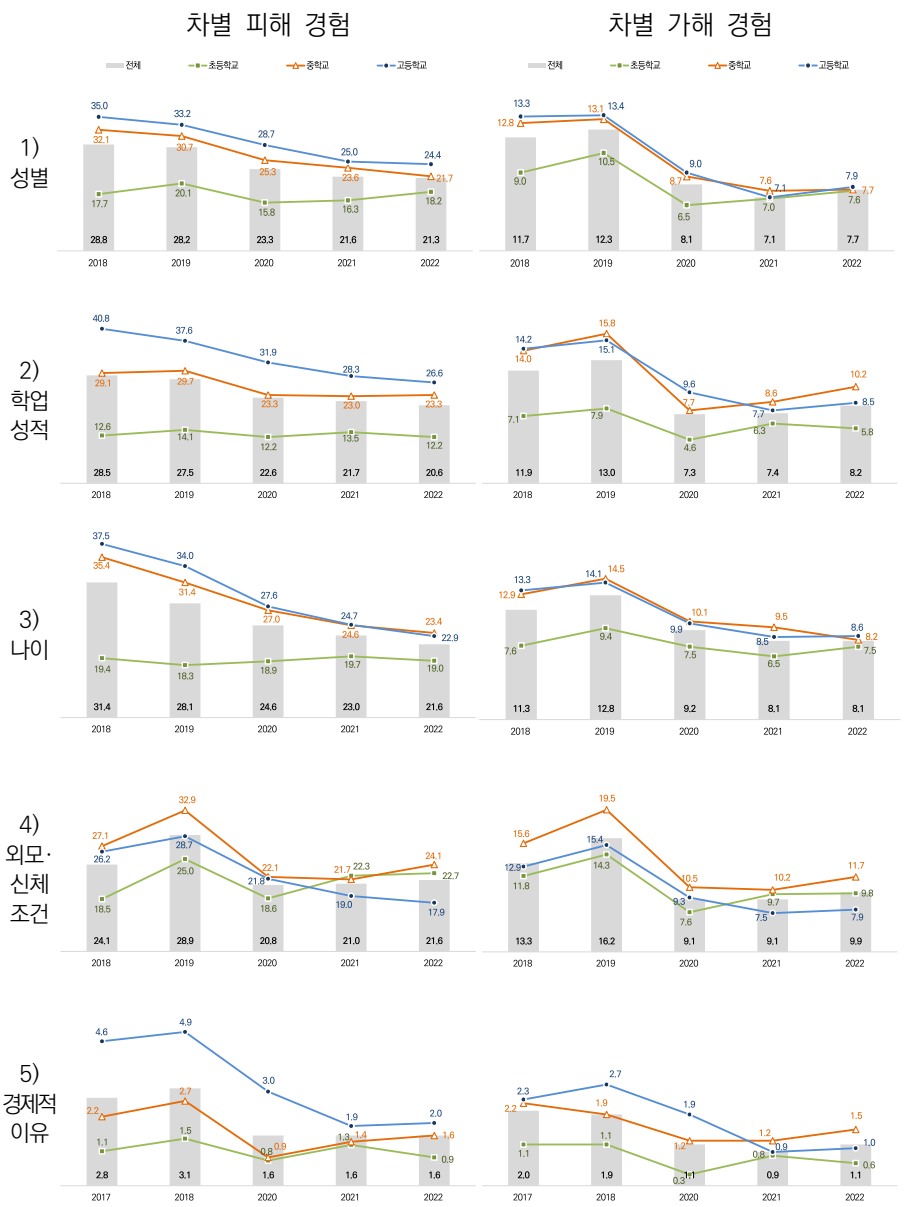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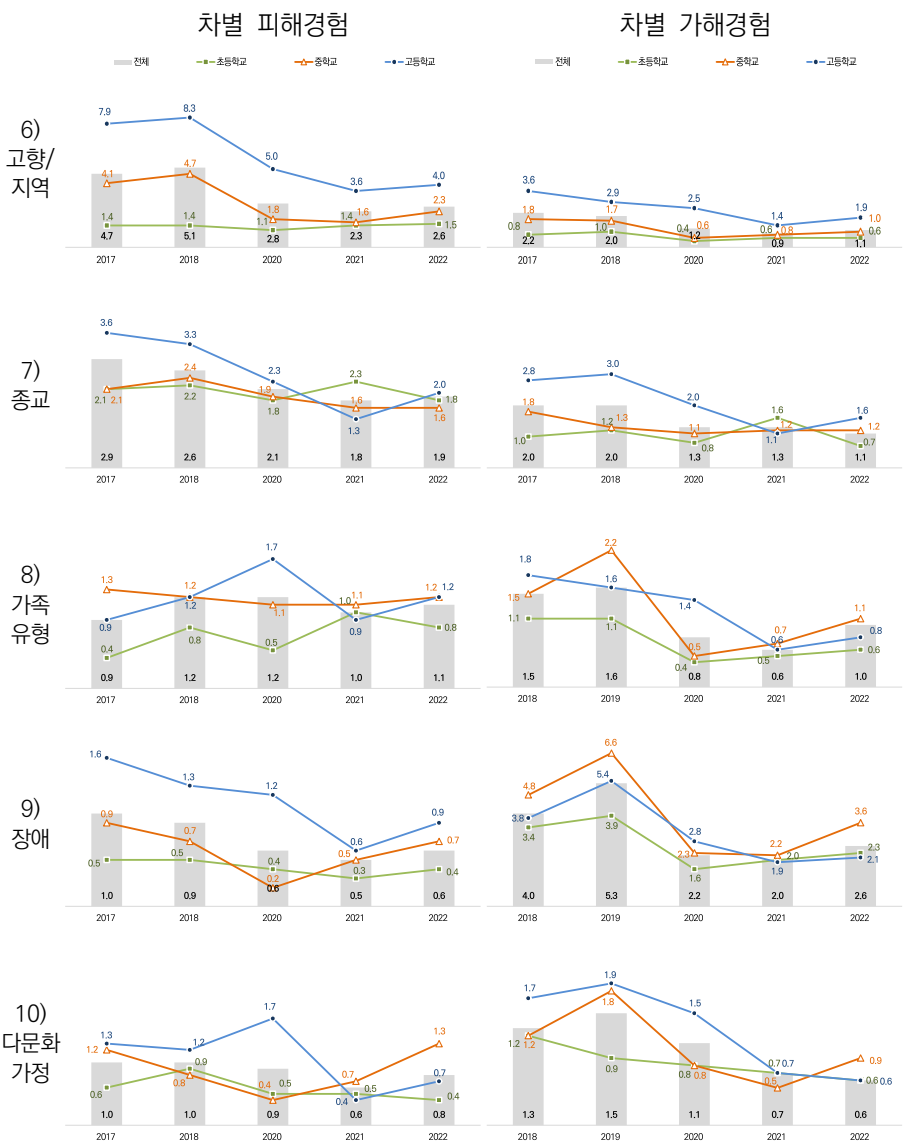
그림 Ⅲ-2-17.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차별받은' 경험과 '차별한' 경험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차별받은' 경험이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에 비해 많게는 3배 가까이 많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년도에 비해 차별 피해와 가해 경험 모두 '외모·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 증가하였고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Ⅲ-2-17]).

성별, 학업성적, 나이, 외모·신체조건,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 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 10가지 차별 경험의 추이를 살펴보면, 차별받은 경험은 5년 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전년도 대비 외모·신체조건, 고향·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한 차별은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도 5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전년도 대비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어, 2020년과 2021년도의 낮은 수치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으나 추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Ⅲ-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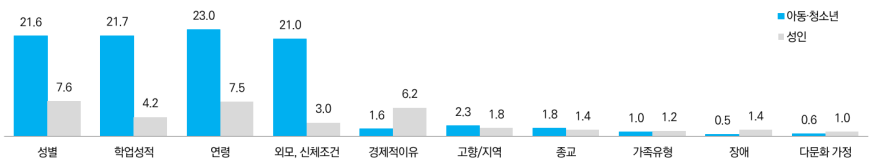
* 주 :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주: 1)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2) 차별 피해 경험 중에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 6개 문항과 차별 가해 경험 중에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등 3개 문항은 2019년 제외되었다가 2020년부터 다시 포함됨.

그림 Ⅲ-2-18. 차별 경험(연도별 추이)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차별받은 경험률을 비교해 보면, 성차별(아동·청소년 21.6%, 성인 7.6%), 연령차별(아동·청소년 23.0%, 성인 7.5%),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아동·청소년 21.0%, 성인 3.0%) 등은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성인에 비해 3배에서 많게는 7배 가량 많게 나타났다. 경제적 이유, 가족 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여부 등에 따른 차별 경험은 성인이 아동·청소년보다 미세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Ⅲ-2-19]).



* 출처: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준 외(2021)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주: 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 국가인권실태조사: '있다' 응답값(단위: %)
2)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유치조사, 온라인조사 병행)로 실시되었으며, 최종 응답한 사례 수는 17,593명임.
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익년 1월 공표,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익년 6월에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당해에 데이터 비교가 어려우므로 전년도인 2021년도 결과로 작성함.
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과 '국가인권실태조사'의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의 개념은 다르므로 단순 비교할 수 없음 유의.

그림 Ⅲ-2-19. 차별받은 경험: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①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아동 관련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이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정에서 아동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를 위해 아동의 권리향유에 미치는 법안과 정책안, 예산안 등의 영향을 예측하고 실제 영향을 평가하는 '아동권리영향평가'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326-335).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2019년부터 자체평가와 전문평가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자체평가는 지자체 담당자가 해당 법령·자치법규·계획·사업 대상으로 점검표를

작성·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컨설팅이 실시된다. 전문평가는 현안 등 부처별 주요 아동정책 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문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자체평가 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100개 지자체가 238건의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에는 140개 지자체가 509건의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여 참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났다. 2022년도 전문평가는 방송콘텐츠 심의정책, 재난관리정책, 건강형평정책, 여가·놀이·문화정책 등 4개 분야 정책에 대해 진행 중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매뉴얼과 작성사례집 발간 및 담당자 교육, 사업공유회 등을 통해 사업제도화 및 확산 작업을 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내부자료, 2022). 2021년 자체평가 추진결과, 개선 제안의견을 '불수용'한 경우가 12개 지자체에 27건이 있어 반영계획 수립 및 개선의견 수용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평가절차와 대상, 지원체계 등의 면에서 제도 안착 과제들이 있다(김선숙, 김시아, 김아래미, 안현미, 2022).

한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아동영향평가 시행 여부가 친화도시 인증 10가지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지역 수준에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 10월 17일 기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78개이며, 35개 지역이 인증 추진 중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지역은 2021년 9월 기준 57개에서 2022년 10월 현재 78개로 21개 지역이 늘어났다.[52]

3) 소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 영역은 아동권리협약 상 일반이행조치와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지표항목은 '인권인프라' 지표에 법·제도, 예산(2개), '인권인식' 지표에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인권 존중 정도, 인권의식 및 태도(3개), '인권교육' 지표에 인권교육 실시 현황과 인권교육 경험(2개), '차별 경험률' 지표에 차별받은 경험과 차별해 본 경험(2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정도' 지표에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1개) 등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제·개정과 관련하여 안전, 참여, 폭력·학대, 보육, 보건·복지, 교육 분야 18개 정도의 제·개정 사안 중에 교육관련 법령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화, 보호종료아동 지원 확대 등의 개정과 국가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 대안교육, 원격교육 등 신규 법령 제정이 이루어졌다. 2021년도 GDP 대비 아동·청

5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지도.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에서 2022년 10월 17일 인출.

소년 예산 비율은 3.2%로 전년 대비 0.4%p 감소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22.4%), 학생인권조례(8.0%), 국가인권위원회(22.7%) 등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편인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소폭 상승한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소폭 감소하였다. 생활영역별 인권 존중 정도는 가정(96.4%), 학교(94.6%), 우리나라 전체(82.9%), 사이버 공간(8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인권존중도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이나 전년도 대비 응답률은 우리나라 전체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미세하게 낮아졌다.

인권의식 및 태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결정 능력(69.5%), 아동·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85.7%), 자치조직의 의의(86.0%)에 긍정적 인식을 보였고, 의견표명권(96.3%), 경제적 이유의 차별금지(97.3%), 양성평등(96.4%), 이주배경주민 교육권(94.5%) 보장 등 차별금지 관련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의견표명권과 이주배경주민 교육권 관련 인식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아동·청소년 참여관련 3개 문항과 경제적 이유의 차별금지와 양성평등 인식 등 대부분 문항은 소폭 하락하였다.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50.7%로 전년도 48.0%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인권교육을 받은 곳은 학교 교과수업시간이 73.7%,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35.8%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인권교육의 목표별 도움정도는 '지식(91.6%) = 태도(91.6%) 〉 실천(86.5%)' 순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은 나이(21.6%)와 외모·신체조건(21.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별(21.3%)과 학업성적(20.6%)에 따른 차별이 많았다. '차별한' 경험은 외모·신체조건(9.9%), 학업성적(8.2%), 나이(8.1%), 성별(7.7%), 장애(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 모두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실현을 위한 아동정책영향평가는 2019년과 202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전문평가와 자체평가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140개 지자체가 자체평가에 참여하였다.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의 지표결과를 보면,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인권인식과 주관적 인권존중도는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비대면 시기에 줄어든 차별 경험률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확산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①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중분류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 정도를 파악한다. 먼저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로 가정 중대사, 진학, 진로(직업), 학업 등의 결정 시 의견 존중정도를 알아보았다.

가정 중대사 결정 시 자녀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경우는 90.3%, 상급학교 진학 시 자녀가 원하는 학교를 존중하는 경우는 93.8%, 진로(직업) 결정 시 존중정도는 94.1%, 공부시간이나 방법 결정 시 존중정도는 90.5% 등으로 전체적으로 9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정 중대사, 진학, 학업 결정 시 존중정도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았고, 진로(직업) 결정 시 존중정도는 초 〉 고 〉 중학교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Ⅲ-3-1〉). 모든 문항에서 전년도 대비 의견 존중정도가 미세하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Ⅲ-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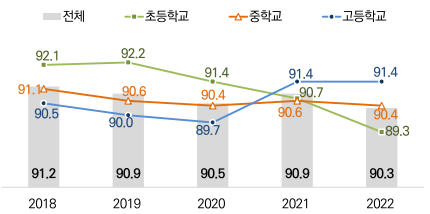
표 Ⅲ-3-1.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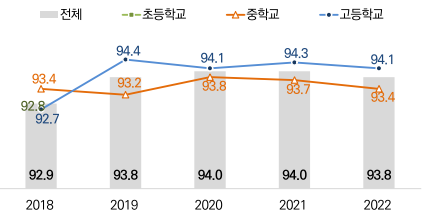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집안의 중대사 결정	전체	3.33(0.68)	1.4	8.3	46.7	43.6	100.0(8,830)	
	초등학교	3.29(0.69)	1.4	9.3	47.9	41.4	100.0(2,987)	23.960**
	중학교	3.32(0.68)	1.3	8.3	47.7	42.7	100.0(2,985)	
	고등학교	3.37(0.68)	1.3	7.3	44.4	47.0	100.0(2,858)	
2) 상급 학교 결정	전체	3.48(0.65)	1.1	5.2	38.0	55.8	100.0(5,839)	
	중학교	3.45(0.65)	1.0	5.6	40.4	53.0	100.0(2,982)	19.905***
	고등학교	3.52(0.64)	1.2	4.8	35.4	58.7	100.0(2,857)	
3) 진로(직업) 결정	전체	3.53(0.64)	1.0	4.8	34.8	59.3	100.0(8,781)	
	초등학교	3.56(0.62)	0.7	4.7	32.9	61.7	100.0(2,942)	29.081***
	중학교	3.48(0.65)	1.0	5.4	37.7	55.8	100.0(2,984)	
	고등학교	3.54(0.64)	1.3	4.3	33.8	60.6	100.0(2,855)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4) 공부시간·방법 결정	전체	3.38(0.70)	1.8	7.8	41.0	49.5	100.0(5,821)	
	중학교	3.31(0.73)	2.1	9.7	43.7	44.6	100.0(2,969)	72.246***
	고등학교	3.46(0.67)	1.4	5.8	38.2	54.6	100.0(2,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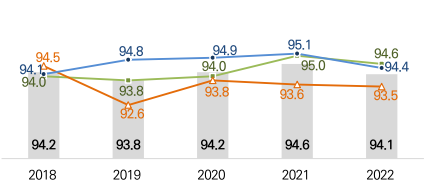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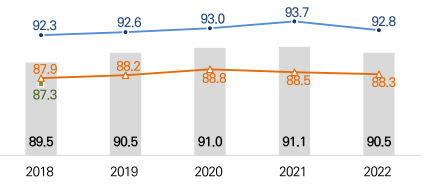
1) 집안의 중대사 결정



2) 상급학교 결정



3) 진로(직업) 결정



4) 공부시간·방법 결정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2019년 조사부터 상급학교 결정과 공부시간 결정 문항은 초등 설문지에서 제외됨

그림 Ⅲ-3-1.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연도별 추이)

(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①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학생회 활동의 자율성 정도를 보여주는 네 가지 문항(자치권, 임원 자격기준, 활동지원, 의견반영)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 45.2%, 임원후보 성적 제한기준이 없다 35.3%, 학생회 활동을 위한 예산, 장소, 시간을 보장 받는다 49.0%, 학생회 의견이 존중되며 반영된다 57.0% 등으로 나타났다. 자치권과 임원 후보자격에서 고등학생이 자율권을 보장받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활동지원과 의견반영은 중학생이 보장받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모든 문항에서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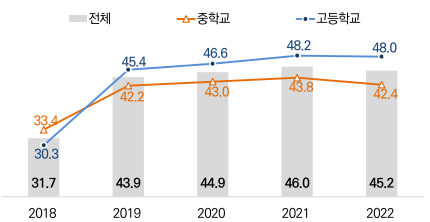
모르겠다'는 응답이 40% 내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Ⅲ-3-2〉). 전년도 대비 학생회활동 예산· 장소·시간을 보장받는다는 응답률만 미세하게 늘어났고, 나머지 세 개 문항 응답률은 소폭 하락하였다([그림 Ⅲ-3-2]).

표 Ⅲ-3-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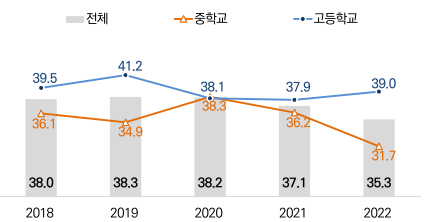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1) 교사·교장의 간섭없이 활동(자치권)	전체	8.4	45.2	46.4	100.0(5,823)	
	중학교	7.5	42.4	50.1	100.0(2,971)	34.199***
	고등학교	9.4	48.0	42.6	100.0(2,852)	
2) 임원후보 성적기준 있음(*역문항)	전체	35.3	25.9	38.8	100.0(5,821)	
	중학교	31.7	27.0	41.3	100.0(2,972)	34.351***
	고등학교	39.0	24.7	36.2	100.0(2,849)	
3) 예산·장소·시간 보장	전체	3.1	49.0	47.9	100.0(5,807)	
	중학교	2.2	49.6	48.2	100.0(2,965)	17.933***
	고등학교	4.1	48.4	47.5	100.0(2,842)	
4)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전체	4.6	57.0	38.5	100.0(5,815)	
	중학교	3.3	61.1	35.6	100.0(2,968)	50.844***
	고등학교	5.8	52.7	41.5	100.0(2,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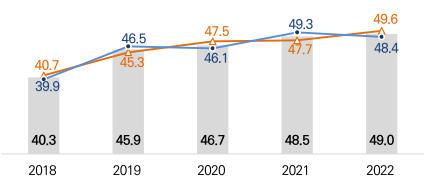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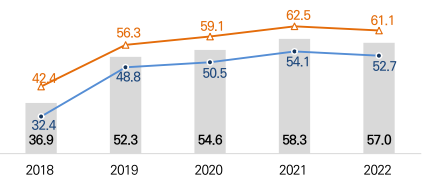
1) 자치권 보장



2) 임원후보 성적제한 없음



3) 예산, 장소, 시간 보장



4)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 주: 1) 1, 3, 4번 그래프는 '그렇다'의 응답값(단위: %)
2) 2번 그래프는 '아니다' 응답값(부정적 질문이므로 '아니다' 값을 반영하여 성적제한이 없음을 나타냄.)

그림 Ⅲ-3-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연도별 추이)

②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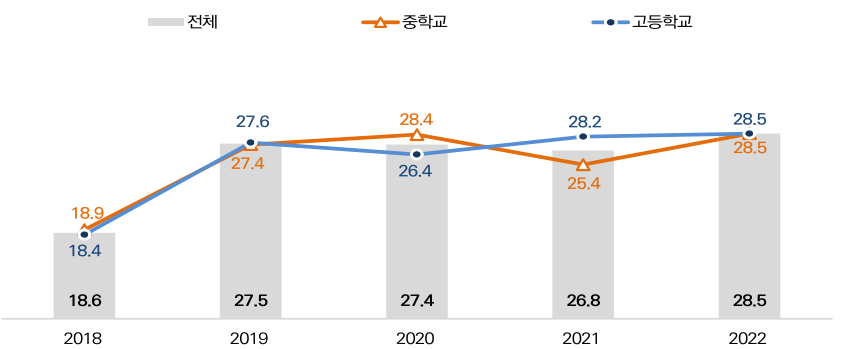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28.5%, 참여할 수 있지만 발언권은 없다 5.5%, 참여할 수 없다 5.4%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0.6%로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33.3%)이 남학생(23.2%)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표 Ⅲ-3-3〉). 최근 5년 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19년에 크게 상승하여 27.5% 응답률을 보인 이래 27% 내외의 수치를 유지하다가 2022년에 28.5%로 상승하였다([그림 Ⅲ-3-3]).

표 Ⅲ-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단위 : %(명))

구분		참여할 수 없다	참여가능, 발언권 없음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5.4	5.5	28.5	60.6	100.0(5,482)	
성별	남학생	6.1	5.8	23.2	64.9	100.0(2,594)	68.576***
	여학생	4.8	5.2	33.3	56.7	100.0(2,888)	
학교급	중학교	4.9	5.9	28.5	60.7	100.0(2,786)	4.790
	고등학교	6.0	5.1	28.5	60.5	100.0(2,696)	

*p<.05, **p<.01, ***p<.001



* 주: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Ⅲ-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연도별 추이)

③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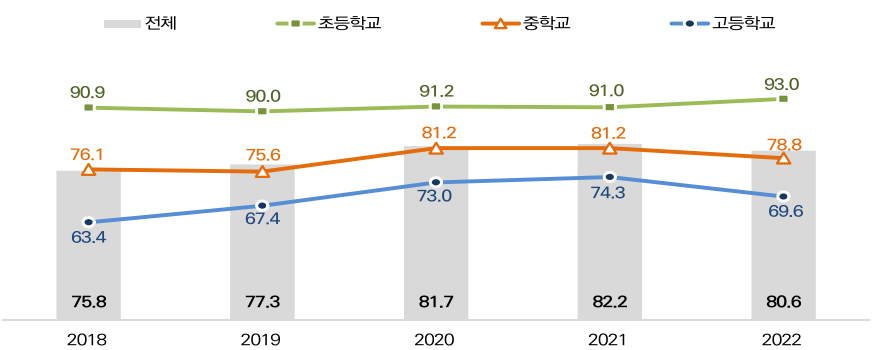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0.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Ⅲ-3-4〉).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학생 참여도가 2021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에 소폭 감소하였다. 전년도 대비 학교급별 상황을 보면, 초등학생은 소폭 상승한 데 비해 중·고등학생은 소폭 감소하였다([그림 Ⅲ-3-4]).

표 Ⅲ-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0(0.76)	4.6	14.8	56.5	24.1	100.0(8,795)	
성별	남학생	3.00(0.77)	5.3	13.8	56.5	24.4	100.0(4,234)	13.221**
	여학생	3.00(0.74)	4.0	15.7	56.5	23.8	100.0(4,560)	
학교급	초등학교	3.33(0.65)	1.5	5.5	51.3	41.7	100.0(2,977)	
	중학교	2.91(0.73)	5.0	16.3	61.2	17.6	100.0(2,973)	1,038.834***
	고등학교	2.75(0.77)	7.5	23.0	57.1	12.5	100.0(2,844)	

*p<.05, **p<.01, ***p<.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연도별 추이)

(3) 사회에서의 참여정도

① 아동 · 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 정도

사회참여 지표의 첫 번째 지표항목은 '아동·청소년 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정도'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관련 행정통계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아동분야 정책참여기구인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정책 당사자인 아동이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채택한 정책제안 결의문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소관부처는 이행현황과 정책반영을 검토하여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보고하게 된다. 2022년에는 '아동 참여권 증진'을 주제로 제19회 아동총회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2021년 제18회 아동총회 결의문 관련 정책 14건의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13건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으로 정책이행률이 9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행 중 8건, 수용 2건, 일부수용 3건, 장기검토 1건)(〈표 Ⅲ-3-5〉).

표 Ⅲ-3-5.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이행현황

분야	결의문 내용	이행현황
발달권	• 하교 후 방임된 아동들을 위해 돌봄교실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시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세요.	시행중
	•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중심의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가 가능한 네트워크 앱을 만들어주세요.	시행중
	• 교원평가를 교원 각각의 능력과 인성의 두 영역별로 실시하여 주시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과목당 특정 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법으로 제정해 주세요.	일부수용
	• 부족한 진로 프로그램과 진로 탐색 기간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학년제는 1년만 유지*하되,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을 초5~중3으로 확대 실시해 주세요. (* 중1 아동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운영 중)	시행중
보호권 (유해 매체)	• 유해매체 교육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유해약물 교육을 확대해주세요.	시행중
	• 아동·청소년의 방송예술 활동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해 주세요.	시행중
	•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소비하는 법을 가르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 강사가 교육하는 것을 의무화해 주세요.	시행중
보호권 (환경 보호)	• 환경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시설을 늘리고, 아동들에게 환경 교육 방향에 대해 직접 설문하며 이론 수업뿐 아니라 체험 활동의 비중도 늘려주세요.	수용
	• 아동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지역사회에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시해 주세요.	시행중

분야	결의문 내용	이행현황
	•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친환경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상가에 환경마크가 붙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실시하고, 환경마크가 붙은 제품을 위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주세요.	일부수용
보호권 (안전)	•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영상 및 사진을 최신화하여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해주세요.	수용
	•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14세 이상 19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작은 야외 쉼터를 학원이나 상가거리에 설치해주세요.	일부수용
	• 건강가정센터와 직장 내에서 정서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주세요.	장기검토
	• 아동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도시 계획을 수립/개선해주시고 대형차량(건설기계, 화물차 등)이 스쿨존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시행중

* 출처: 보건복지부(2022.8.9.). 보도자료 : 세상을 바꾸는 아동의 목소리 –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 개최(8.9-8.11.).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집행, 평가과정에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를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 보장을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한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17개 시·도의 청소년과 전문가 토론과 활동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a: 118-122).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역별로 10~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현재 약 4,100여 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21년 현재 331개소에서 지역별로 10~20명 내외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표 Ⅲ-3-6〉).

표 Ⅲ-3-6.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현황(2014~2021년)

(단위 : 개(%))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청소년참여위원회	197 (81.1)	204 (84.0)	216 (88.9)	221 (90.9)	230 (94.7)	239 (98.4)	239 (98.4)	240 (98.8)
청소년운영위원회	305	305	305	305	305	305	331	331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p.119-120. 재구성.

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율 = 위원회수/전국 지자체 수*100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500여 명이 참여하여 예비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청소년쉼터 지원 강화 등 5개 분야 30개 과제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정부가 28개의 과제를 수용하여 정책반영률이 93.3%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2a: 119-120)(〈표 Ⅲ-3-7〉).

표 Ⅲ-3-7.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2011~2021년)

연도	의제	수용률(%)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4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0.3)
2015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 양성 등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87.0)
2016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7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4개 수용 (80.0)
2018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 청소년 참정권 확대 등 3개 분야 22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90.9)
2019	• 인권, 양성평등, 학교밖청소년 지원, 안전, 경제활동 - 청소년 기초 노동 지원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28개 과제 제안	25개 수용 (89.9)
2020	•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 - '자립' 정책영역의 취업, 정보, 보호, 경제 등 5개 분야 33개 과제 제안	32개 수용 (96.9)
2021	• 시작점이 같은 청소년, 각자의 기회에서 빛나다 - 청소년쉼터 지원 강화 등 5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3.3)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p.121-122.

②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정책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활동 경험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0%만이 알고 있었고, 그 중에 1.9%가 참여기구 활동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알고 있으나 경험 없음 9.1%). 52.7%의 아동·청소년은 정책참여기구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여학생(11.4%)인 경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12.6%), 고등학생(10.5%), 중학생(10.1%) 순으로 많게 나타났고 참여경험은

고등학생(2.4%)이 가장 많았다. 대도시일수록 참여기구 인지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대도시 10.3%, 중소도시 11.4%, 읍면 11.9%)(〈표 Ⅲ-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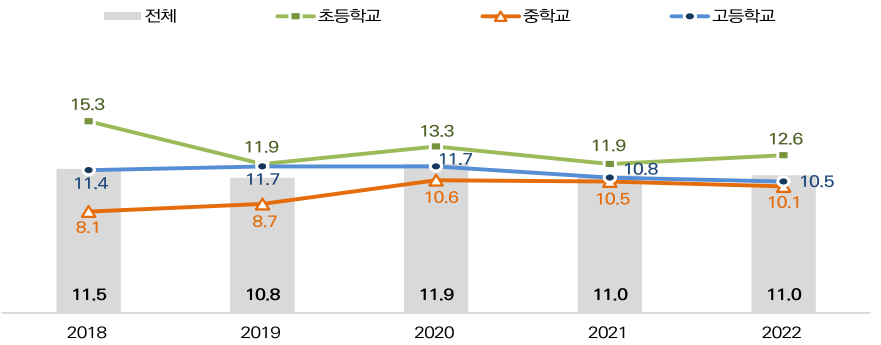
표 Ⅲ-3-8.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알고 있다 합계	전체(N)	χ^2
전체		52.7	36.2	9.1	1.9	11.0	100.0(8,782)	
성별	남학생	56.2	33.1	9.0	1.7	10.7	100.0(4,230)	43.879***
	여학생	49.5	39.1	9.2	2.2	11.4	100.0(4,552)	
학교급	초등학교	50.4	37.0	10.7	1.9	12.6	100.0(2,962)	28.482***
	중학교	52.7	37.3	8.5	1.6	10.1	100.0(2,975)	
	고등학교	55.2	34.3	8.1	2.4	10.5	100.0(2,846)	
지역 규모	대도시	52.8	36.9	9.0	1.3	10.3	100.0(3,309)	22.941**
	중소도시	52.9	35.7	9.4	2.0	11.4	100.0(4,144)	
	읍면지역	51.8	36.4	8.5	3.4	11.9	100.0(1,330)	

*p<.05, **p<.01, ***p<.001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는 11% 내외를 유지하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인지도는 감소한 반면 초등학생은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5년간 추이를 보면 2018년에 8.1%로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중학생이 2022년에 10.1%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Ⅲ-3-5]).



* 주: 1)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 않았다'와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의 합계(단위: %)
2) 2016년부터 전체값에 초등학생 응답이 포함됨.

그림 Ⅲ-3-5.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연도별 추이)

③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방해 이유

가. 참여권 보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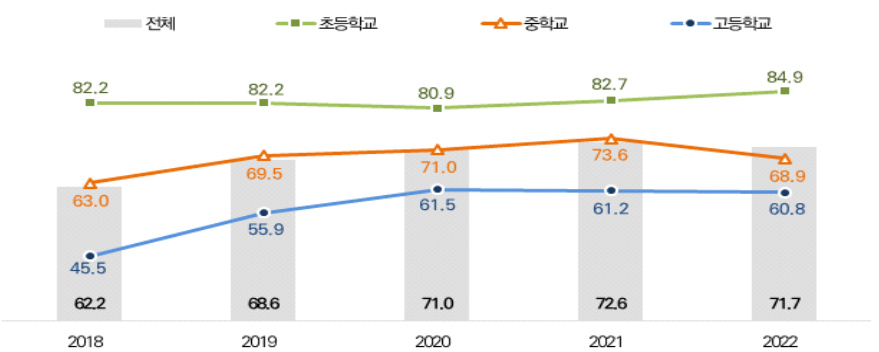
‘우리사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당사자 의견을 듣고 참여권을 보장하는지’에 대해 71.7%가 보장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72.5%)이 여학생(71.0%)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생 84.9%, 중학생 68.9%, 고등학생 60.8%) 긍정적 응답이 많게 나타났다(〈표 Ⅲ-3-9〉). 최근 5년간 응답추이를 보면 2018년 62.2%부터 2021년 72.6%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22년 71.7%로 소폭 감소하였다. 전년도 대비 긍정적 응답이 초등학생은 늘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줄어들었다([그림 Ⅲ-3-6]).

표 Ⅲ-3-9. 아동 ·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6(0.79)	5.2	23.1	51.8	19.9	100.0(8,806)	
성별	남학생	2.86(0.79)	5.9	21.6	53.0	19.5	100.0(4,244)	19.675***
	여학생	2.87(0.78)	4.5	24.5	50.7	20.3	100.0(4,561)	
학교급	초등학교	3.11(0.70)	2.4	12.7	56.7	28.2	100.0(2,976)	518.901***
	중학교	2.81(0.77)	4.9	26.2	51.7	17.2	100.0(2,977)	
	고등학교	2.67(0.82)	8.4	30.8	46.7	14.1	100.0(2,852)	

*p<.05, **p<.01, ***p<.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3-6.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연도별 추이)

나. 참여의 방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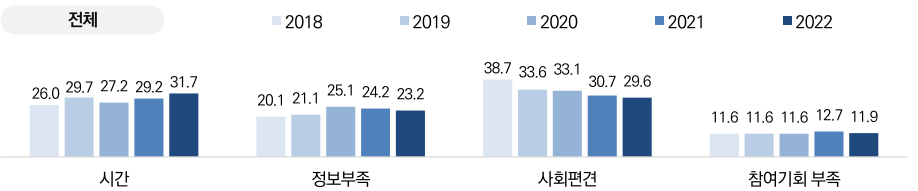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시간 부족(31.7%),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29.6%), 참여활동정보 부족(23.2%),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11.9%), 부모님 반대(1.9%), 학교에서 못하게 함(1.7%)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시간 부족과 부모님· 학교 반대에,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정보 부족, 사회의 편견, 참여기회나 방법 부족에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학교급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1순위 시간 부족, 2순위 정보 부족,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1순위 사회의 편견, 2순위 시간 부족으로 초등학생의 시간 부족 응답(36.8%)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표 Ⅲ-3-10>).

표 Ⅲ-3-10.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

(단위 : %(명))

구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부모님 (보호자) 반대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 부족	전체(N)	χ^2
전체		31.7	23.2	1.9	1.7	29.6	11.9	100.0(8,522)	
성별	남학생	36.0	21.1	2.0	2.3	27.3	11.3	100.0(4,099)	100.330***
	여학생	27.6	25.1	1.9	1.0	31.7	12.5	100.0(4,423)	
학교급	초등학교	36.8	23.0	3.3	0.9	22.4	13.6	100.0(2,733)	185.642***
	중학교	30.3	22.0	1.7	1.6	33.4	11.1	100.0(2,964)	
	고등학교	28.1	24.6	0.9	2.4	32.7	11.3	100.0(2,825)	

*p<.05, **p<.01, ***p<.001



* 주: 단위: %

그림 Ⅲ-3-7.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연도별 추이)

최근 5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편견을 꼽는 응답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시간 부족 이유가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그림 Ⅲ-3-7]).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①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당한 간섭 없이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91.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3.33(표준편차=.68)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91.1% 여학생 91.6%의 차이를 보였으며 학교급에 있어서는 중학생 90.5%, 고등학생 92.2%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생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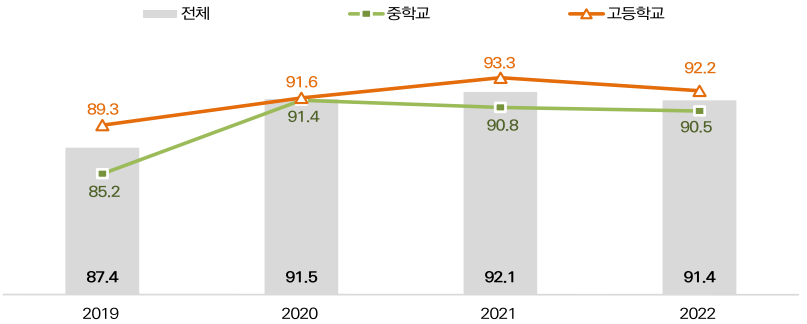
표 Ⅲ-3-1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33(0.68)	1.7	7.0	48.2	43.2	100.0(5,805)	
성별	남학생	3.33(0.70)	2.4	6.5	46.9	44.2	100.0(2,784)	21.469***
	여학생	3.33(0.65)	1.0	7.4	49.4	42.2	100.0(3,021)	
학교급	중학교	3.29(0.69)	2.1	7.4	49.4	41.1	100.0(2,968)	16.788**
	고등학교	3.36(0.66)	1.2	6.5	46.9	45.3	100.0(2,837)	

*p<.05, **p<.01, ***p<.00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22년도 전체 평균은 91.4%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이지만 2019년 87.4%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3-8.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2) 종교 자유 보장 정도

①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가정, 학교)

조사 대상자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보장 받는 종교의 자유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 형제와 관계 없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적으로 82.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중학생의 경우는 79.3%, 고등학생의 경우는 84.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한편 학교에서 종교행사 참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50.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절반 정도만 학교 종교행사 참여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차이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 31.8%, 고등학생의 경우 54.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중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 수준이 고등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Ⅲ-3-12.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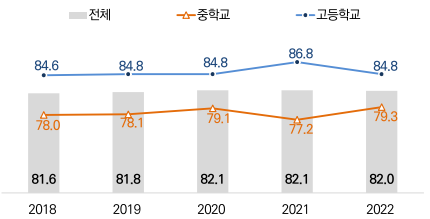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부모·형제와 관계없이 종교선택	전체	3.21(0.86)	5.4	12.6	37.3	44.7	100.0(5,813)	
	중학교	3.14(0.89)	6.7	14.0	38.2	41.1	100.0(2,969)	47.073***
	고등학교	3.29(0.82)	4.1	11.1	36.3	48.5	100.0(2,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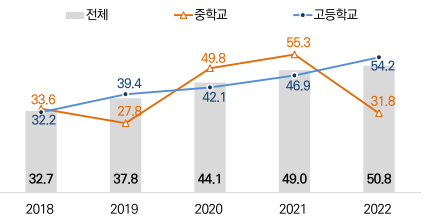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2)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 참여	전체	2.46(1.10)	26.4	22.8	29.5	21.3	100.0(606)	
	중학교	1.95(1.12)	50.4	17.8	17.8	14.0	100.0(91)	32.561***
	고등학교	2.55(1.07)	22.1	23.7	31.6	22.6	100.0(515)	

* 주: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 참여' 문항은 종교재단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p 〈 .01, ***p 〈 .001.

가정과 학교에서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응답의 연도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는 매년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보이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학교에서의 종교에 대한 자유 보장 수준은 고등학생의 경우 매년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고, 중학생의 경우는 비교적 큰 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



1)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2)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2017년부터 전체 값에 중·고등학교 응답값만 포함됨.
3)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 참여' 문항은 종교재단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그림 Ⅲ-3-9.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 결사·집회 경험률

① 결사·집회 경험률(경험 여부, 피해 경험)

중·고등학생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회문제와 관련한 참여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문제 관련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SNS 활동에 대해서 14.0%가 가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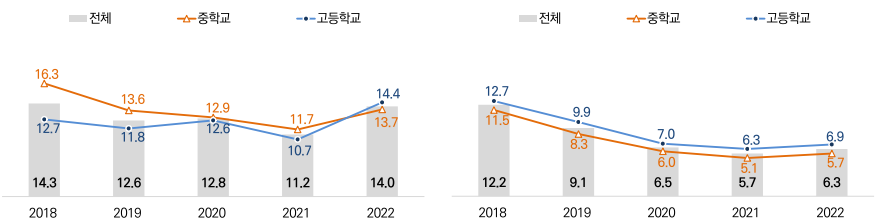
또는 자주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급별로 중학생은 13.7%, 고등학생은 14.4%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급 간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문제와 관련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등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자의 6.3%가 가끔 또는 자주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중학교 5.7%, 고등학교 6.9%로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3-13.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N)	χ^2
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	전체	1.65(0.82)	52.7	33.2	10.0	4.0	100.0(5,750)	
	중학교	1.65(0.82)	53.0	33.3	9.4	4.3	100.0(2,945)	2.745
	고등학교	1.66(0.82)	52.5	33.2	10.6	3.8	100.0(2,805)	
2) 거리 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전체	1.45(0.64)	62.6	31.2	5.4	0.9	100.0(5,709)	
	중학교	1.43(0.63)	63.0	31.3	4.8	0.9	100.0(2,913)	3.881
	고등학교	1.46(0.65)	62.2	31.0	6.0	0.9	100.0(2,795)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경험의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모임,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의 경우 2018년 14.3%에서 2021년까지 소폭의 수준으로 감소하다 2022년에는 증가세를 보였다.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활동의 경우도 2018년 12.2%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2년에 소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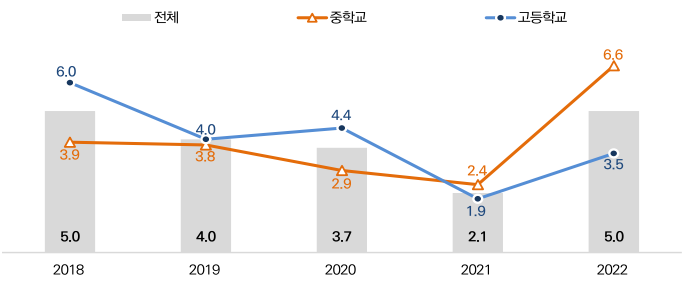


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　　2)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 주: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3-10.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연도별 추이)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경고 및 훈계 2.4%, 징계 1.3%, 상담 0.9%, 기타 0.4% 등 5.0%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율의 5년간 추이를 보면 2018년 5.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주: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11.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연도별 추이)

4) 사생활의 보호

(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①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중·고등학생 응답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를 경험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용모검사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19.0%가 1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교급별 차이를 보인다. 중학생의 경우 14.6%가 검사를 받았으며 고등학생은 23.7%가 검사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복장검사는 전체의 29.8%가 연 1회 이상의 검사를 경험하였으며 이 역시 교급간 차이를 보이는데, 중학생 23.7%, 고등학생 36.3%로 고등학생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지품 검사의 경우는 용모와 복장 검사에 비해 경험률이 낮게 응답되었는데, 전체 대상자의 6.9%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유의미한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중학생의 경우 5.9%, 고등학생의 경우 7.9%가 검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든 검사 경험에 있어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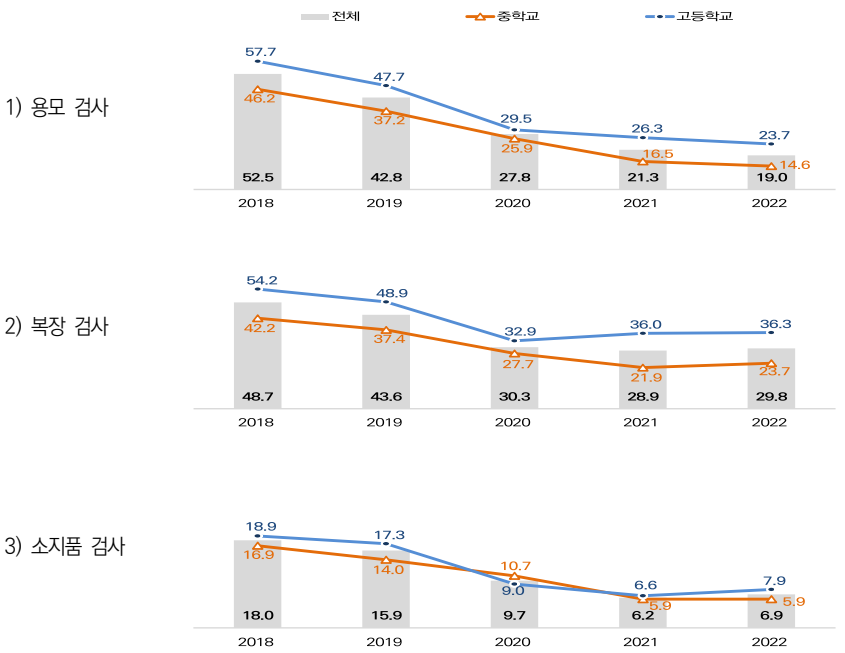
표 Ⅲ-3-14.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1) 용모 검사	전체	80.9	9.0	2.9	3.0	4.1	19.0	100.0(5,840)	
	중학교	85.4	7.9	2.1	2.0	2.6	14.6	100.0(2,983)	92.540***
	고등학교	76.2	10.1	3.8	4.1	5.7	23.7	100.0(2,858)	
2) 복장 검사	전체	70.1	11.4	4.5	4.6	9.3	29.8	100.0(5,838)	
	중학교	76.3	10.0	3.6	3.7	6.4	23.7	100.0(2,982)	122.515***
	고등학교	63.7	12.8	5.5	5.6	12.4	36.3	100.0(2,856)	
3) 소지품 검사	전체	93.1	4.3	1.1	0.7	0.8	6.9	100.0(5,837)	
	중학교	94.1	4.5	0.6	0.4	0.4	5.9	100.0(2,979)	31.742***
	고등학교	92.2	4.1	1.6	1.0	1.2	7.9	100.0(2,858)	

***$p < .001$.

위 결과에 따른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용모검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복장검사와 소지품 검사는 2018년 이후 감소하다 2022년 소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12.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연도별 추이)

(2) 학생 정보 보호 정도

①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민감정보,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학교에서 개인 정보가 어떤 수준에서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 동의 없이 가족관계나 가정형편 등 개인(민감)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6.4%로 나타났고 교급별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3.7%, 중학생 7.2%, 고등학생 8.5%로 고등학생의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징계를 받은 사항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자의 11.0%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는데, 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9.2%, 중학생11.9%, 고등학생 12.1%로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개인 시험 성적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자의 13.5%가 공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급별로 보면 중학생 11.4%, 고등학생 15.7%로 고등학생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15.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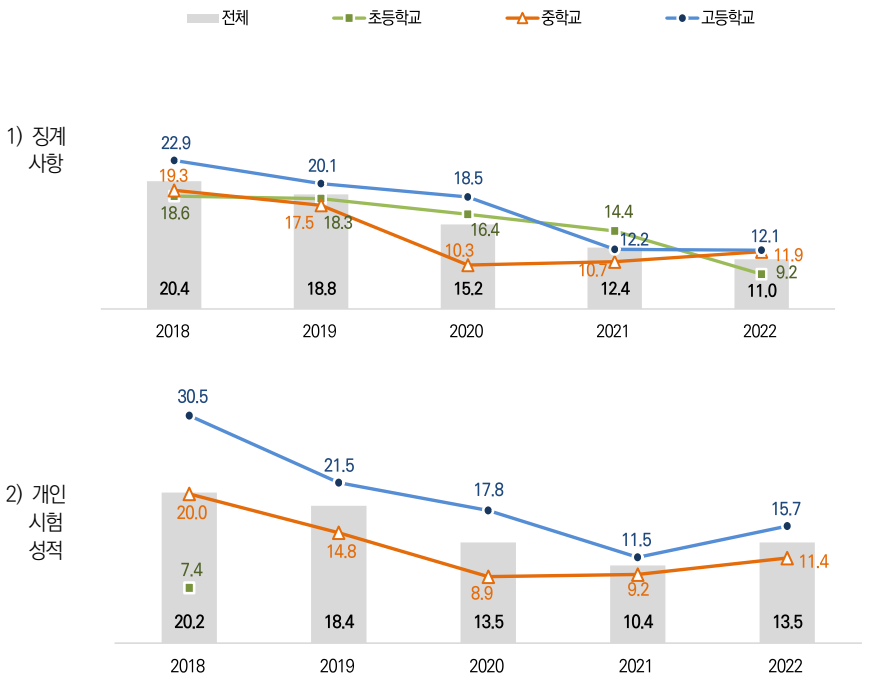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개인 (민감) 정보	전체	1.41(0.67)	67.6	26.0	4.3	2.1	100.0(8,772)	
	초등학교	1.26(0.57)	79.6	16.8	2.2	1.5	100.0(2,972)	
	중학교	1.45(0.70)	64.6	28.2	4.7	2.5	100.0(2,968)	325.007***
	고등학교	1.53(0.72)	58.3	33.2	6.1	2.4	100.0(2,832)	
2) 징계 사항	전체	1.63(0.73)	50.0	39.0	9.1	1.9	100.0(8,717)	
	초등학교	1.50(0.70)	61.0	29.8	7.6	1.6	100.0(2,934)	
	중학교	1.70(0.73)	44.2	44.0	9.6	2.3	100.0(2,949)	218.054***
	고등학교	1.69(0.73)	44.6	43.3	10.2	1.9	100.0(2,833)	
3) 개인 시험 성적	전체	1.67(0.78)	49.4	37.1	10.6	2.9	100.0(5,780)	
	중학교	1.61(0.74)	52.9	35.7	9.3	2.1	100.0(2,952)	41.043***
	고등학교	1.74(0.81)	45.7	38.6	12.0	3.7	100.0(2,828)	

***$p < .001$.

* 주: 개인(민감) 정보 공개 경험 문항은 2022년부터 신규 추가됨.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응답의 연도별 비교를 살펴보면, 개인의 징계사항 정보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시험 성적에 대한 정보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응답률은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감소하였지만 2022년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시험성적 공개 문항은 2019년부터 초등문항에서 제외됨.
3) 2022년부터 교육비 미납 공개여부는 삭제하고 개인(민감)정보 공개 문항을 신규 추가함.

그림 Ⅲ-3-13.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연도별 추이)

5) 정보접근권[53]

(1) 매체 접근율

① 매체 이용률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이유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

53) '2-5. 정보접근권' 중분류의 4개의 지표항목 중 '2-5-1-2. 유해매체 이용 경험'과 '2-5-2-1. 매체이용 교육 경험'과 '2-5-1-1. 매체이용률'의 일부 자료원(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은 승인통계인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원으로 삼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격년 주기 생산 자료로 2022년도 조사결과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동일 통계표에 대한 반복 기술을 생략하고 2023년도 보고서에서 추후 공표될 자료원을 활용하여 지표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9세의 경우 86.2%가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다른 연령층과 다르게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13.0%로 높게 나타났다. 10대와 20대의 경우 대부분 하루에 1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대부분으로 조사되었는데, 10대의 경우 98.8%, 20대의 경우 99.8%로 거의 모든 대상자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평균 이용시간의 경우 3~9세는 11.1시간, 10대의 경우 24.9시간, 20대 30.4시간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연도별 추세를 비교해보면, 3~9세의 경우 2017년 1일 1회 이상 사용자가 73.1%에서 2021년 86.2%로 증가했으며 주 평균 이용시간 역시 7.2시간에서 11.1시간으로 증가하였다. 나머지 연령대의 경우 모두 10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주 1회 이상이라고 응답해오고 있으며 주 평균 이용시간은 2017년 10대는 16.9시간에서 2021년 24.9시간으로 8시간 증가, 20대는 2017년 23.6시간에서 30.4시간으로 약 6시간 정도 증가하였다.

표 Ⅲ-3-16.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2017~2021년)

(단위 : %, 시간)

구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 평균 이용시간
2017	3~9세	73.1	15.2	11.0	0.7	7.2
	10대	98.1	0.9	1.0	-	16.9
	20대	100.0	-	0.0	-	23.6
2018	3~9세	75.5	16.2	7.6	0.7	8.9
	10대	98.1	1.2	0.7	-	17.8
	20대	99.9	0.1	0.0	-	24.2
2019	3~9세	82.3	15.2	2.5	0.0	9.3
	10대	96.9	2.6	0.5	0.0	17.6
	20대	98.6	0.9	0.4	0.0	24.3
2020	3~9세	85.6	13.2	1.1	0.1	12.5
	10대	98.5	1.5	0.0	0.0	27.6
	20대	99.3	0.6	0.14	0.0	29.5
2021	3~9세	86.2	13.0	0.7	0.0	11.1
	10대	98.8	1.1	0.0	0.0	24.9
	20대	99.8	0.2	0.0	0.0	30.4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a~2019a). 2017-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a).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76-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a).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114-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a).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114-115.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인터넷 이용 목적에 관해 조사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3~9세의 경우는 여가활동이 9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홈페이지 운영 등이 87.0%, 커뮤니케이션 71.5%, 자료 및 정보획득 54.9%, 교육 및 학습 56.2%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10대의 경우 홈페이지 운영과 직업 및 직장, 기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100% 수준의 응답이 조사되었다. 20대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획득, 홈페이지 운영, 기타 항목에서 100% 수준의 응답이 나왔으며 그 외에도 교육 및 학습 77.9%, 직업 및 직장 55.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17. 인터넷 이용 목적(2017~2021년)

(단위 : %)

구분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획득	홈페이지 등 운영	교육·학습	직업·직장	기타
2017	3~9세	42.2	97.7	31.5	5.6	42.9	-	-
	10대	97.1	98.9	92.6	53.8	73.6	7.8	-
	20대	100.0	99.4	100.0	78.2	64.3	51.3	-
2018	3~9세	46.4	97.0	37.5	12.2	51.6	-	0.4
	10대	98.2	99.5	95.6	70.1	83.8	7.7	30.5
	20대	100.0	99.7	100.0	90.9	65.5	59.8	93.4
2019	3~9세	48.9	96.1	36.0	10.3	50.0	0.0	3.4
	10대	98.6	99.5	96.0	69.9	83.5	8.9	27.3
	20대	100.0	99.7	100.0	91.8	70.2	60.8	91.0
2020	3~9세	53.1	89.3	43.1	18.6	48.5	2.4	3.1
	10대	98.5	99.1	95.2	64.8	99.9	9.4	37.7
	20대	99.9	99.8	100.0	87.4	82.6	51.5	96.2
2021	3~9세	71.5	91.2	54.9	87.0	56.2	1.1	3.8
	10대	99.8	100.0	99.9	47.4	99.9	9.4	71.8
	20대	100.0	100.0	100.0	99.8	77.9	55.2	99.9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a~2019a). 2017-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a).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a).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a).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19.

* 주: 1) 복수응답 결과.
2) '기타'항목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추가됨.

조사대상자들의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 3~9세는 7시간~14시간 미만이 2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시간~7시간

미만 22.1%, 1시간~3시간 미만 20.0% 14시간~21시간 미만 15.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7시간~14시간 미만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14시간~21시간 미만 25.5%, 21시간~35시간 미만 19.0%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20대는 14~21시간 미만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연령대와 차이를 보였으며 그 뒤로 21시간~35시간 미만 29.0%, 7시간~14시간 미만 2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평균 35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는 3~9세 4.2%, 10대 4.8%, 20대 5.2%로 적지 않은 수준을 보였다. 주 평균 이용시간은 3~9세가 9.7시간으로 가장 낮았고 10대 13.6시간, 20대 16.3시간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용시간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Ⅲ-3-18.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2017~2021년)

(단위 : %, 시간)

연도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3시간 미만	3시간~7시간 미만	7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21시간 미만	21시간~35시간 미만	35시간 이상	주평균 (시간)
2017	3~9세	9.7	19.1	30.5	31.6	6.7	1.8	0.6	5.7
	10대	1.1	5.2	16.3	42.4	22.4	11.0	1.6	10.9
	20대	0.0	1.1	7.4	38.1	31.1	18.6	3.7	14.3
2018	3~9세	7.9	17.8	22.3	35.8	12.1	3.7	0.4	7.2
	10대	1.2	4.9	14.4	34.6	29.9	13.3	1.8	12.0
	20대	0.3	1.4	7.4	33.3	32.2	21.6	3.8	14.8
2019	3~9세	15.6	17.4	26.1	29.1	8.7	2.6	0.5	5.8
	10대	3.8	6.2	12.8	35.8	25.3	13.9	2.3	11.7
	20대	2.2	3.1	6.7	32.8	30.0	19.8	5.4	14.9
2020	3~9세	9.2	15.6	24.9	33.5	11.8	4.5	0.5	7.1
	10대	1.5	5.3	9.8	35.9	26.5	15.5	5.5	13.6
	20대	0.4	2.9	7.0	32.1	27.0	21.4	9.2	16.2
2021	3~9세	6.0	20.0	22.1	28.2	15.5	4.0	4.2	9.7
	10대	0.8	6.8	9.5	33.6	25.5	19.0	4.8	13.6
	20대	0.2	2.8	5.5	23.7	33.6	29.0	5.2	16.3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b~2019b). 2017-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b).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b).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b).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44.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증가와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 이용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 과의존위험군은 전체 대상자의 37.0%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초등학생

31.6%, 중학생 41.0%, 고등학생 36.4%로 모든 교급에서 과의존위험군의 비중이 낮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비교에서도 2019년 이후 과의존위험군은 30.2%에서 37.0%로 7%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과의존위험군 37.0% 외에도 고위험군 5.7%, 잠재적위험군 31.3% 등으로 전체 대상자의 70% 이상이 위험군에 속해 있다. 위험군 사용자들의 주 이용 콘텐츠를 살펴보면, 영화 및 TV 등 동영상 이용 98.5%, 게임 96.7, 메신저 96.5%, 학업 및 업무용 검색 96.0%, 관심사 검색 92.2%, 음악 91.0% 등 대부분 모든 항목을 높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3-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복수응답)

(단위 : %)

	과의존 위험군 (10-19세)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주이용 콘텐츠							
				메신저	영화 TV 동영상	학업 업무용 검색	게임	관심사 (취미) 검색	음악	상품/ 서비스 정보 검색	필수 교육
2019	30.2	3.8	26.4	97.3	97.5	93.9	93.1	91.0	88.5	79.0	-
2020	35.8	5.0	30.8	98.3	98.2	96.6	95.6	95.2	91.1	85.1	84.1
2021	37.0	5.7	31.3	96.5	98.5	96.0	96.7	92.2	91.0	83.5	86.6
초등학생	31.6	5.0	26.6	81.0	96.1	91.8	97.7	75.4	80.4	59.3	82.1
중 학 생	41.0	6.5	34.5	98.8	97.7	98.6	95.4	96.5	94.6	87.0	87.2
고등학생	36.4	5.7	30.7	97.7	98.7	100.0	96.2	94.4	92.2	93.3	86.1

* 출처: 여성가족부(2022.05.25.). 보도자료: 2022 청소년 통계. p.34.
* 원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c).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주: 1)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 능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
2)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상위 콘텐츠를 제시함.

정보 접근권과 관련하여 독서와 관련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치·운영 중인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의 수를 살펴보면, 2020년 일반 공공도서관은 전국에 1,068개관이 운영 중이며,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104개관이 운영 중에 있다. 연도별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20.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2012~2020년)

(단위 : 개관)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 공공도서관	745	780	842	889	918	947	997	1,033	1,068
어린이도서관	83	85	88	89	92	95	99	101	104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b). 2018년도(20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1.
문화체육관광부(2019b). 2019년도(2018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4.
문화체육관광부(2020c). 2020년도('19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4.
문화체육관광부(2021d). 2021년('20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4.

아동·청소년의 독서량을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북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이책의 경우 2021년에 초등학생 51.7권, 중학생 14.8권, 고등학생 7.5권으로 학년이 높아지며 독서량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종이책 독서량은 2011년 15.4권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전자책의 경우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11.8권, 중학생 8.0권, 고등학생 4.9권으로 이 역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독서량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디오북은 조등학생 3.1권, 중학생 0.7권, 고등학생 0.2권으로 다른 종류에 비해 비중이 높지 않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Ⅲ-3-21. 학생 독서량(2011~2021년)

(단위 : 권)

종류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구분 \ 연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19	2021
초등학교 4~6학년	45.0	65.1	70.8	67.1	69.8	51.7	3.6	8.6	8.1	8.7	9.1	11.8	7.8	3.1
중학교	14.4	22.0	19.4	18.5	20.1	14.8	5.3	7.8	5.8	5.4	4.5	8.0	0.4	0.7
고등학교	15.4	9.8	8.9	8.8	8.8	7.5	2.5	5.2	4.0	3.7	3.2	4.9	0.3	0.2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c).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pp.76-80.

* 주: 1) 전체 응답자(비독서자 포함) 기준 지난 1년 간 평균 독서량
2) 오디오북 조사는 2019년 신규 추가

(2)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교육을 통해 획득되는 지식, 기술, 태도와 같은 역량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정의하며, 미디어 리터러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안에 민주시민교육의 한 요소로 포함되었다(배상률, 2021).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나마 미디어 리터러시 실태를 볼 수 있는 공식 통계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의 디지털 사용 역량 조사 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① 미디어 역량

디지털 사용 역량을 살펴보면, 온라인 상에서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 검색(초 73.4%, 중 84.9%, 고 91.6%), 온라인 상에서 획득한 정보가 신뢰할만한 정보인지 판단(초 50.9%, 중 74.1%, 고 83.5%), 온라인 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 및 참여(초 41.0%, 중 59.0%, 고 73.0%),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이슈 파악(초 39.8%, 중 50.0%, 고 62.0%), 온라인 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학업·직업 관련 활동(초 57.4%, 중 65.9%, 고 72.1%),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초 28.9%, 중 44.4%, 고 52.9%) 등 학교급이 높을수록 관련 역량 및 가능, 참여 정도가 높았다. 만 10~19세 청소년의 경우 정보와 컨텐츠 검색 능력(83.7%)에 비해 비판적 수용 및 활용 능력(신뢰정보 판단 70.6%, 사회문제 인식·참여 58.4%)이 낮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식(51.2%)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비판적 수용 및 활용 능력 응답률은 전년도 대비 소폭 낮아졌다.

표 Ⅲ-3-22. 디지털 사용 역량

(단위 : %)

매체 종류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를 잘 찾을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획득한 정보가 신뢰할만한지 판단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이슈를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학업·직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2020	전체	20.2	79.8	27.3	72.7	37.0	63.0	40.3	59.7	44.2	55.8	65.5	34.5
	청소년(만 10~19세)	18.3	81.7	30.3	69.7	39.7	60.3	41.4	58.6	33.2	66.8	63.0	37.0
	초등학교	27.9	72.1	45.2	54.8	56.4	43.6	56.3	43.7	40.7	59.3	73.8	26.2
	중학교	17.5	82.5	28.5	71.5	36.7	63.3	39.4	60.6	32.1	67.9	67.0	33.0
	고등학교	11.8	88.2	20.4	79.6	29.7	70.3	32.0	68.0	29.0	71.0	52.8	47.2
2021	전체	21.4	78.6	29.4	70.6	37.5	62.5	46.4	53.6	47.0	53.0	59.0	41.0
	청소년(만 10~19세)	16.3	83.7	29.8	70.2	41.6	58.4	48.8	51.2	34.5	65.5	57.4	42.6
	초등학교	26.6	73.4	49.1	50.9	59.0	41.0	60.2	39.8	42.6	57.4	71.1	28.9
	중학교	15.1	84.9	25.9	74.1	41.0	59.0	50.0	50.0	34.1	65.9	55.6	44.4
	고등학교	8.4	91.6	16.5	83.5	27.0	73.0	38.0	62.0	27.9	72.1	47.1	52.9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c).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91.

* 주: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가구방문조사로 실시되며 통계표의 '전체'값은 성인을 포함한 조사대상 전체 응답값임.

6) 소결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분류 영역은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 5개의 중분류와 10개 지표(소분류), 총 16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된다.

가정에서 의사결정 시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는 가정 중대사 90.3%, 진학 93.8%, 진로(직업) 94.1%, 공부시간이나 방법 90.5% 등 존중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생회 활동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 45.2%, 임원후보 성적 제한기준이 없다 35.3%, 학생회 활동을 위한 예산, 장소, 시간을 보장 받는다 49.0%, 학생회 의견이 존중되며 반영된다 57.0% 등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0% 내외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응답은 28.5%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율은 80.6%로 전년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 및 정책 반영도를 보면, 2021년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의 14개 정책과제 이행현황은 9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시행 중 8건, 수용 2건, 일부수용 3건, 장기검토 1건),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은 28개 과제 수용으로 93.3%의 수용율을 보였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는 11.0%로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은 71.7%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에 전년도(72.6%)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 부족(31.7%),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29.6%), 참여활동정보 부족(23.2%),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11.9%), 부모님 반대(1.9%) 등으로 시간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장 정도는 전체 대상자의 91.4%가 보장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학교급에 따라 소폭의 차이를 보였다. 가정과 학교에서 보장 받는 종교의 자유는 가정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82.0%, 학교의 경우 50.8%가 종교의 자유에 대해 보장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는 특히 중학생 응답률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참여활동의 경험은 전체 대상자의 14.0%가 모임이나 인터넷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고, 6.3%는 거리 집회나 문화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이다. 사회문제 관련 활동 참여로 인한 학교 상담, 경고, 징계 등의 피해도 5.0%로 전년도 대비 늘어났다.

사생활보호와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용모검사 경험률은 19.0%, 복장검사는 29.8%, 소지품검사는 6.9%로 복장검사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용모검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에 있어서 개인(민감)정보 공개는 전체의 6.4%, 징계 사항 정보 공개는 11.0%, 시험 성적에 대한 개인 정보 공개는 13.5%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징계사항 공개는 감소, 시험성적 공개는 증가하였다.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인터넷 이용 빈도는 3~9세의 86.2%, 10대의 98.8%, 20대의 99.8%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였으며 주 평균 이용시간은 3~9세 11.1시간, 10대 24.9시간, 20대 30.4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이용목적은 3~9세는 여가활동이 91.2%로 가장 높았으며 10대와 20대의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획득, 홈페이지 운영, 교육학습 등의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3~9세 9.7시간, 10대 13.6시간, 20대 16.3시간으로 모든 연령의 스마트폰 평균 이용시간이 2017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조사결과 초등학생의 31.6%, 중학생의 41.0%, 고등학생의 36.4%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며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의 수는 2020년 기준, 일반 1,068개관, 어린이 104개관으로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독서량의 경우 전체적으로 종이책 독서량이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 51.7권, 중학생 14.8권, 고등학생 7.5권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디지털 사용 역량을 살펴보면, 만 10~19세 청소년은 정보와 컨텐츠 검색 능력(83.7%)은 높지만 이에 비해 비판적 수용 및 활용 능력(신뢰정보 판단 70.6%, 사회문제 인식·참여 58.4%)이 낮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식(51.2%)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비판적 수용 및 활용 능력 응답률은 전년도 대비 소폭 낮아졌다.

전반적으로 시민적 권리 수준은 조금씩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학교 자치활동과 정책결정 참여, 사생활 보호 등 아동·청소년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폭력 및 학대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1) 청소년폭력 경험률

①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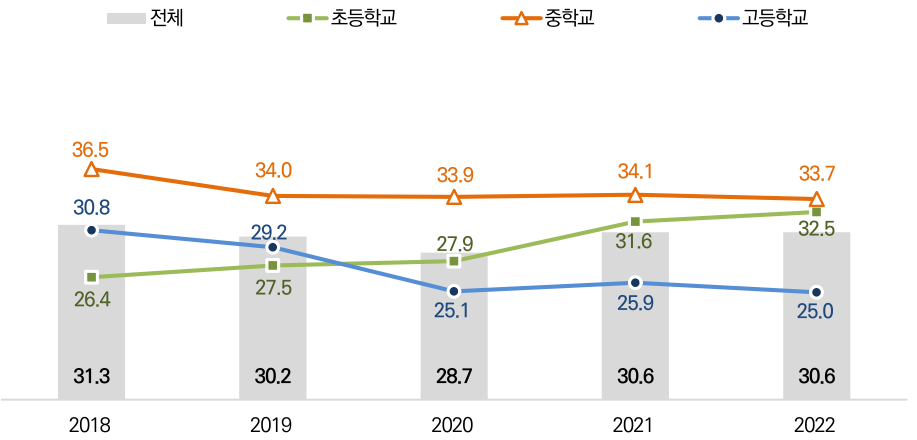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받는 폭력 피해 중, 욕설 또는 모욕적인 언행 등 언어적 폭력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인 8,818명의 30.6%가 연 1~2회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급과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 32.5%, 중학생 33.7%, 고등학생 25.0%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욕설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 경제적 수준이 상과 중인 집단은 각각 29.5%와 29.6%로 조사된 반면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의 경우는 41.3%로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표 Ⅲ-4-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69.5	15.0	6.1	5.1	4.4	100.0(8,818)	
성별	남학생	69.9	14.6	6.0	5.2	4.3	100.0(4,249)	1.631
	여학생	69.1	15.4	6.2	4.9	4.4	100.0(4,569)	
학교급	초등학교	67.4	16.5	5.9	5.2	4.9	100.0(2,971)	68.683***
	중학교	66.2	16.0	7.1	5.7	4.9	100.0(2,985)	
	고등학교	75.1	12.3	5.2	4.2	3.3	100.0(2,862)	
경제적 수준	상	70.5	15.3	6.1	4.5	3.6	100.0(5,076)	118.436***
	중	70.4	14.7	5.8	5.2	3.9	100.0(2,962)	
	하	58.7	14.9	7.0	7.8	11.5	100.0(702)	

*p 〈 .05,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4-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그림 Ⅲ-4-1]을 통해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의 피해율에 대한 다년간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18년 31.3%에서 2020년 28.7%로 감소하다 2021년부터 다시 상승하여 2022년 30.6%의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4-2〉는 가정에서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의 피해 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 8,820명의 23.1%가 연 1~2회 이상의 신체적 체벌로부터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 24.5%, 여학생 21.7%로 남학생의 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 34.6%, 중학교 22.2%, 고등학생 11.9%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상과 하 집단에 비해 중인 집단의 피해율이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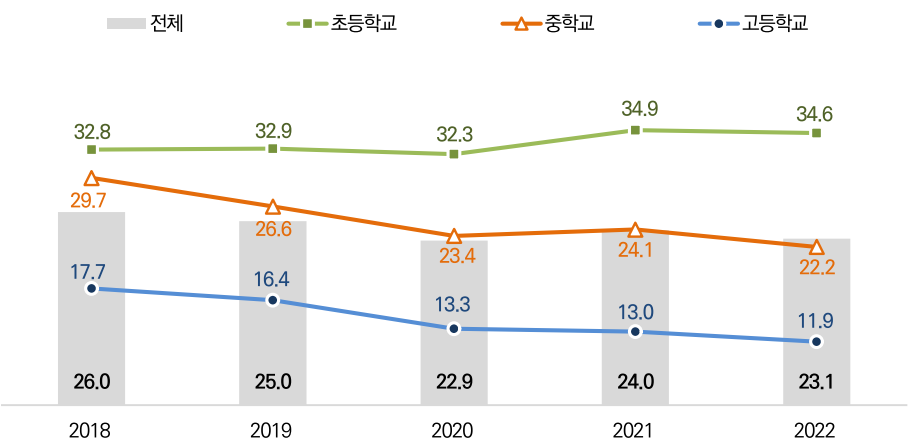
표 Ⅲ-4-2. 체벌 경험여부_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77.0	15.1	4.6	2.4	1.0	100.0(8,820)	
성별	남학생	75.6	15.7	4.8	2.7	1.3	100.0(4,255)	12.877*
	여학생	78.3	14.5	4.4	2.0	0.8	100.0(4,566)	
학교급	초등학교	65.5	21.4	7.3	3.8	2.1	100.0(2,976)	441.796***
	중학교	77.7	15.1	4.2	2.2	0.7	100.0(2,983)	
	고등학교	88.1	8.4	2.2	1.0	0.3	100.0(2,862)	
경제적 수준	상	75.9	15.8	5.2	2.2	1.0	100.0(5,081)	41.925***
	중	79.4	14.0	3.7	2.0	0.9	100.0(2,961)	
	하	75.2	14.3	3.9	4.8	1.8	100.0(700)	

*p 〈 .05,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Ⅲ-4-2]는 가정에서 부모님 또는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여부에 대한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8년 26.0%에서 2020년 22.9%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1년 소폭 상승하였지만, 2022년 23.1%로 다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4-2.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②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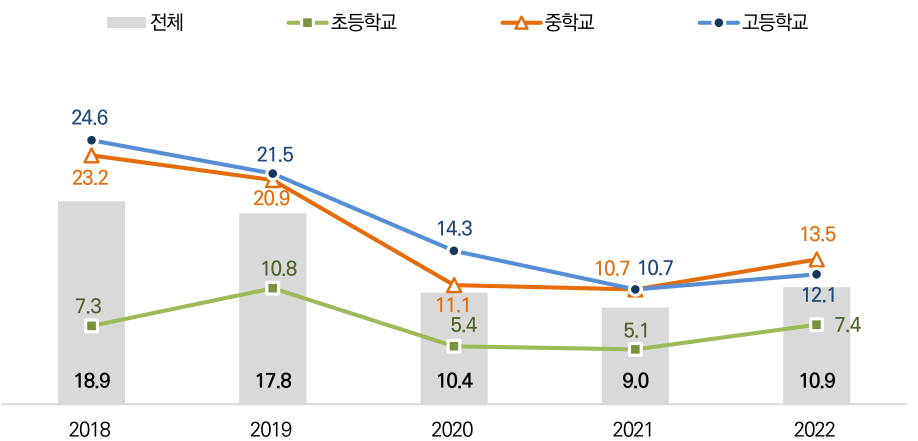
학교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 또는 욕설로부터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8,800명의 응답자 중 10.9%가 연 1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성별의 경우 남학생(12.8%)이 여학생(9.3%)보다 경험이 많았으며 중학생(13.5%)과 고등학생(12.1%)이 초등학생(7.4%)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3>).

표 Ⅲ-4-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9.0	6.5	1.9	1.4	1.1	100.0(8,800)	
성별	남학생	87.1	6.7	2.5	2.0	1.6	100.0(4,242)	60.237***
	여학생	90.8	6.4	1.3	0.9	0.7	100.0(4,559)	
학교급	초등학교	92.5	4.6	1.0	0.9	0.9	100.0(2,964)	62.882***
	중학교	86.6	7.7	2.4	1.9	1.5	100.0(2,976)	
	고등학교	88.0	7.4	2.2	1.4	1.1	100.0(2,860)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4-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그림 Ⅲ-4-3]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받는 모욕적인 말 또는 욕설 피해 경험의 추이를 알 수 있다. 2018년 18.9%에서 2021년 9.0%로 지속해서 감소하였으나 2022년 다시 10.9%로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4-4. 체벌 경험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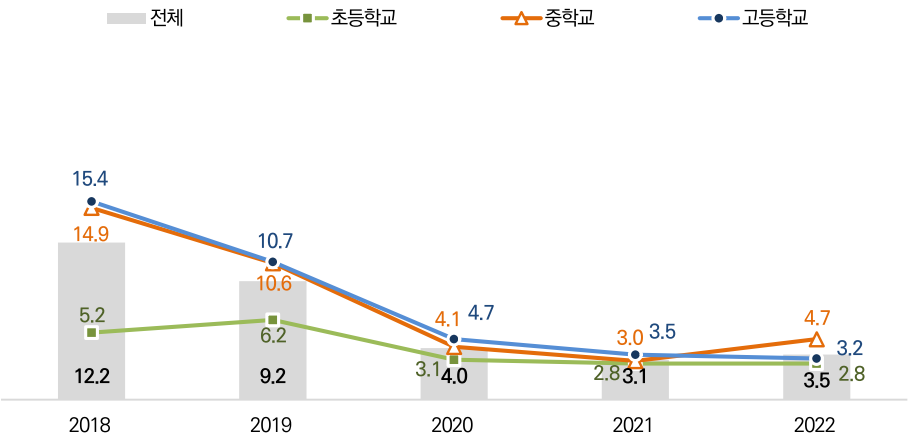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6.5	1.7	0.6	0.6	0.6	100.0(8,799)	
성별	남학생	94.8	2.4	1.0	1.1	0.7	100.0(4,245)	78.633***
	여학생	98.1	1.0	0.3	0.2	0.4	100.0(4,554)	
학교급	초등학교	97.3	1.4	0.5	0.5	0.4	100.0(2,961)	27.231**
	중학교	95.3	1.9	0.9	1.0	0.9	100.0(2,977)	
	고등학교	96.9	1.8	0.6	0.4	0.4	100.0(2,861)	

*p 〈 .05,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여부와 빈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Ⅲ-4-4〉와 같다. 전체 8,799명의 응답자 중 3.5%가 일 년에 1회 이상 신체적 체벌을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1주일에 1~2회 이상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응답자는 0.6%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여학생(1.9%)에 비하여 남학생(5.2%)이 신체적 체벌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학교급에서는 중학생(4.7%)이 가장 많은 경험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4-4]는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경험한 신체적 벌(체벌)의 경험률에 대한 추이 그래프이다. 본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신체적 체벌 경험률은 2018년 이후 감소해오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2021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4-4. 체벌 경험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③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표 Ⅲ-4-5〉는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포함하여 따돌림, 빼앗김, 성희롱, 강제 심부름 등과 같은 폭력의 피해 여부와 빈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욕설 및 모욕(15.1%), 폭행 및 구타(7.6%), 따돌림(4.8%), 성적인 희롱 및 추행(3.6%), 강제로 빼앗김(2.2%), 강제적인 심부름(1.7%) 순으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먼저 욕설 및 모욕의 경우 전체 8,835명의 응답자 중 15.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11.8%)보다 남학생(18.6)이 더 경험이 많았으며 초등학생(22.9%), 중학생(14.8%), 고등학생(7.3%) 순으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폭행, 구타와 같은 신체적 폭력의 경우 전체적으로 7.6%의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이 역시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학생(4.7%)보다 남학생(11.0%)이 더 많이 피해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18.7%)이 더 많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에 있어서 전체 8,820명의 응답자 중 4.8%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교급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초등학생(9.4%)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피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 물건 등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2%가 일 년에 1회 이상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학교급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생(3.5%)의 경우 중학생(2.0%)과 고등학생(1.3%)보다 높은 경험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적인 희롱, 놀림, 추행에 대한 피해경험 여부 및 빈도에 있어서 전체 대상자의 3.6%가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성별,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4.6%)이 여학생(2.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에 있어서 중학생(4.2%), 초등학생(4.1%), 고등학생(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강제적인 심부름의 경우 전체의 1.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1.2%)보다 남학생(2.1%)이,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2.7%)이 더 높은 피해를 보고하였다.

표 Ⅲ-4-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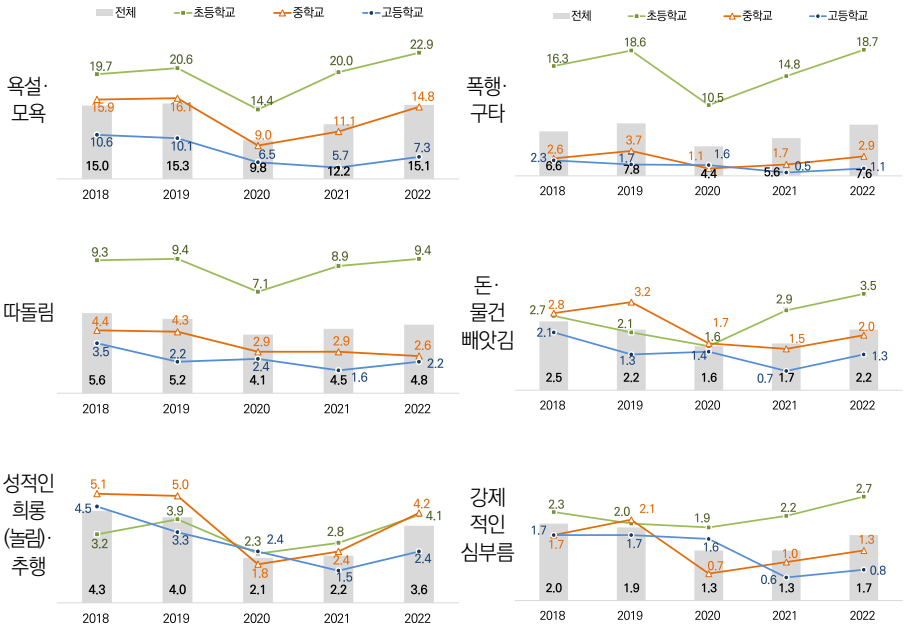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욕설·모욕	전체		84.9	8.5	2.5	1.9	2.2	100.0(8,835)	
	성별	남학생	81.4	9.5	3.1	2.5	3.5	100.0(4,265)	105.532***
		여학생	88.1	7.5	2.0	1.3	1.0	100.0(4,570)	
	학교급	초등학교	77.1	12.7	4.1	2.8	3.3	100.0(2,985)	
		중학교	85.2	8.0	2.2	2.0	2.6	100.0(2,987)	283.963***
		고등학교	92.7	4.6	1.2	0.8	0.7	100.0(2,863)	
폭행·구타	전체		92.3	3.9	1.1	1.0	1.6	100.0(8,826)	
	성별	남학생	89.1	5.5	1.6	1.5	2.4	100.0(4,259)	119.990***
		여학생	95.3	2.5	0.7	0.5	1.0	100.0(4,567)	
	학교급	초등학교	81.3	9.8	2.7	2.5	3.7	100.0(2,982)	
		중학교	97.1	1.3	0.3	0.3	1.0	100.0(2,984)	788.004***
		고등학교	98.9	0.5	0.4	0.1	0.1	100.0(2,860)	
따돌림	전체		95.2	3.2	0.7	0.4	0.5	100.0(8,820)	
	성별	남학생	95.4	2.9	0.9	0.4	0.5	100.0(4,257)	10.912*
		여학생	95.1	3.6	0.4	0.4	0.5	100.0(4,563)	
	학교급	초등학교	90.6	6.4	1.3	0.7	1.0	100.0(2,977)	
		중학교	97.3	1.9	0.3	0.2	0.2	100.0(2,985)	214.673***
		고등학교	97.9	1.3	0.4	0.3	0.2	100.0(2,859)	
돈·물건 빼앗김	전체		97.7	1.3	0.3	0.3	0.3	100.0(8,823)	
	성별	남학생	97.3	1.5	0.5	0.4	0.4	100.0(4,258)	8.396
		여학생	98.1	1.2	0.2	0.3	0.2	100.0(4,565)	
	학교급	초등학교	96.5	2.1	0.3	0.5	0.6	100.0(2,984)	
		중학교	98.1	1.0	0.4	0.3	0.3	100.0(2,981)	43.772***
		고등학교	98.7	0.9	0.3	0.1	0.0	100.0(2,858)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성적인 희롱(놀림)·추행	전체		96.4	2.0	0.6	0.4	0.6	100.0(8,824)	
	성별	남학생	95.4	2.2	0.8	0.7	0.9	100.0(4,259)	42.649***
		여학생	97.4	1.8	0.3	0.2	0.3	100.0(4,565)	
	학교급	초등학교	96.0	2.8	0.4	0.3	0.6	100.0(2,983)	32.699***
		중학교	95.8	2.0	0.7	0.7	0.8	100.0(2,983)	
		고등학교	97.6	1.2	0.6	0.3	0.3	100.0(2,859)	
강제적인 심부름	전체		98.4	1.0	0.3	0.2	0.2	100.0(8,826)	
	성별	남학생	97.9	1.1	0.5	0.3	0.2	100.0(4,260)	18.551**
		여학생	98.8	0.9	0.1	0.1	0.1	100.0(4,567)	
	학교급	초등학교	97.3	1.7	0.4	0.4	0.2	100.0(2,985)	41.711***
		중학교	98.7	0.8	0.2	0.1	0.2	100.0(2,982)	
		고등학교	99.2	0.4	0.3	0.1	0.0	100.0(2,859)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Ⅲ-4-5]는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의 피해 받은 다양한 폭력 경험의 다년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욕설 및 모욕의 경우 2018년 15.0%에서 2020년 9.8%까지 감소해오다 2021년 12.2%로 상승하여 2022년 현재 15.1%로 상승하여 다시 2018년 수준에 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폭행 및 구타의 경우 2019년 7.8%에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7.6%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돌림은 2018년 5.6%에서 안정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제로 빼앗김의 경우 전체적으로 낮은 경험률을 보이는데, 201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2년 다시 2.2%로 조사되어 피해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적인 희롱과 추행은 2018년 4.3% 이후로 점차 낮아져 2021년 2.2%의 피해율을 보였으나 2022년 3.6%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강제적인 심부름의 경우 역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 1.7%로 2019년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4-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④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표 Ⅲ-4-6〉은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의 피해를 경험한 여부와 빈도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욕설 및 모욕 18.8%, 사생활침해 4.5%, 성희롱 3.6%, 협박 3.1%, 따돌림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욕설 및 모욕의 경우 성별과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16.2%)에 비해 남학생(21.4%)이 더 높은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에 있어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22.4%)과 초등학생(20.8%)의 피해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협박의 경우 역시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3.8%)이 여학생(2.4%)에 비해 피해율이 높았고, 초등학생(4.0%)과 중학생(3.1%)이 고등학생에 비해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희롱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만 발견되었는데, 남학생(4.0%)이 여학생(3.2%)보다 높은 피해율을 보고하였다.

사생활침해 부분에서는 성별보다 학교급에서 보이는 차이가 더욱 두드려졌는데, 중학생(5.5%), 초등학생(4.5%), 고등학생(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따돌림의 경우 학교급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며 초등학생(3.1%)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하여 높은 피해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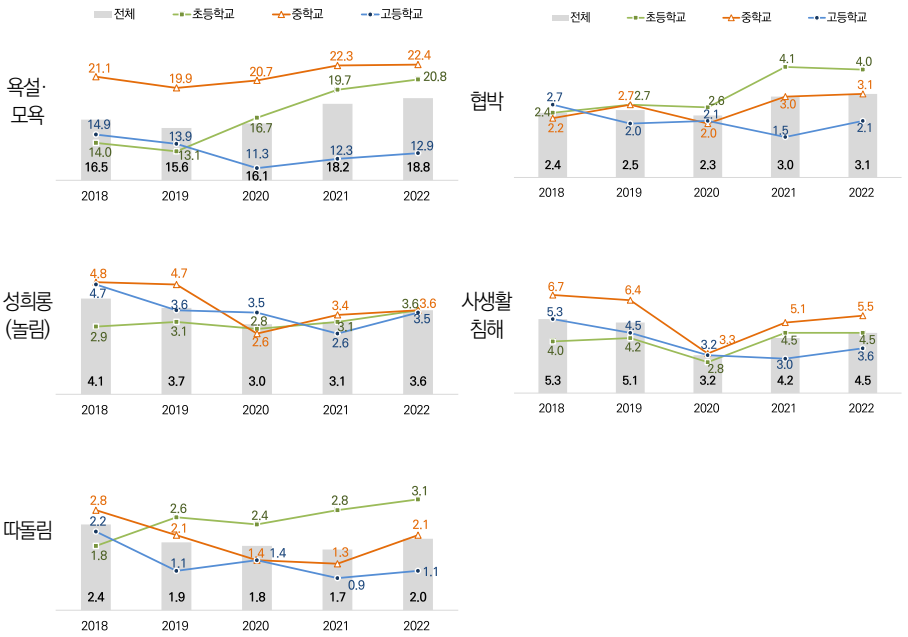
표 Ⅲ-4-6.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욕설·모욕	전체		81.2	9.5	3.4	2.4	3.5	100.0(8,837)	
	성별	남학생	78.6	9.1	4.0	3.1	5.2	100.0(4,267)	109.912***
		여학생	83.7	9.9	2.8	1.7	1.8	100.0(4,570)	
	학교급	초등학교	79.2	11.4	4.0	2.2	3.2	100.0(2,988)	115.769***
		중학교	77.7	10.4	4.1	3.1	4.8	100.0(2,987)	
		고등학교	87.1	6.6	2.0	1.9	2.4	100.0(2,863)	
협박	전체		97.0	2.0	0.4	0.3	0.4	100.0(8,834)	
	성별	남학생	96.2	2.2	0.6	0.4	0.6	100.0(4,265)	25.245***
		여학생	97.6	1.7	0.3	0.3	0.1	100.0(4,569)	
	학교급	초등학교	96.0	2.9	0.5	0.3	0.3	100.0(2,987)	30.263***
		중학교	96.9	1.9	0.5	0.3	0.4	100.0(2,986)	
		고등학교	97.9	1.1	0.2	0.4	0.4	100.0(2,862)	
성희롱(놀림)	전체		96.4	1.7	0.8	0.6	0.5	100.0(8,831)	
	성별	남학생	96.0	1.6	0.9	0.7	0.8	100.0(4,261)	19.465**
		여학생	96.8	1.8	0.7	0.5	0.2	100.0(4,570)	
	학교급	초등학교	96.3	1.7	0.7	0.7	0.5	100.0(2,983)	2.734
		중학교	96.3	1.7	0.9	0.5	0.5	100.0(2,985)	
		고등학교	96.6	1.8	0.8	0.5	0.4	100.0(2,863)	
사생활침해	전체		95.5	3.1	0.7	0.4	0.3	100.0(8,829)	
	성별	남학생	95.2	3.1	0.7	0.6	0.4	100.0(4,261)	9.624*
		여학생	95.7	3.1	0.8	0.3	0.1	100.0(4,568)	
	학교급	초등학교	95.5	3.3	0.4	0.4	0.4	100.0(2,982)	20.478**
		중학교	94.6	3.6	1.0	0.6	0.3	100.0(2,985)	
		고등학교	96.3	2.4	0.8	0.3	0.1	100.0(2,862)	
따돌림	전체		97.9	1.3	0.2	0.2	0.3	100.0(8,832)	
	성별	남학생	97.8	1.3	0.2	0.2	0.5	100.0(4,263)	7.205
		여학생	98.0	1.4	0.1	0.2	0.2	100.0(4,569)	
	학교급	초등학교	96.9	2.0	0.3	0.3	0.5	100.0(2,983)	30.124***
		중학교	98.0	1.3	0.2	0.2	0.4	100.0(2,986)	
		고등학교	98.9	0.6	0.1	0.3	0.1	100.0(2,863)	

*p 〈 .05,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4-6.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그림 Ⅲ-4-6]은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에 대한 다년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욕설 및 모욕의 경우 전반적으로 2018년 16.5%에서 감소하다 2021년 18.2%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고, 2022년에는 18.8%로 계속해서 피해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박의 경우 최근 2%대 중반의 피해율을 보이다 2021년 3.0%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3.1%를 이어가고 있다. 성희롱의 경우는 2018년 4.1%에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3.6%로 소폭 상승하였다. 사생활침해는 2018년 5.3%에서 2021년 4.2%까지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4.5%로 일정수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의 경우 2018년 이후로 감소하여 1%대의 피해율을 보였으나 2022년 2.0%로 다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과 관련된 지표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비율과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① 성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인구비율

〈표 Ⅲ-4-7〉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료에서 피해자의 연령을 13세 미만과 13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2016년부터 매년 유사한 수준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총 28,28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 중 13세 미만은 1,155명(4.1%)으로 2019년 1,375명에 비해 220명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4-7.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6~2020년)

(단위 : 건(%))

구분 / 연도	계	13세 미만	13세 이상
2016	27,056(100)	1,229(4.5)	25,827(95.5)
2017	30,099(100)	1,261(4.2)	28,838(95.8)
2018	29,244(100)	1,278(4.4)	27,966(95.6)
2019	29,676(100)	1,375(4.6)	28,301(95.4)
2020	28,289(100)	1,155(4.1)	27,134(95.9)

* 출처: 법무연수원(2022). 2021 범죄백서. p.195.

*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년도.
2) 성별, 연령 미상은 제외.

②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의 결과는 표 〈표 Ⅲ-4-8〉과 같다. 전체 8,699명의 응답자 중 3.6%가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2.5%, 고등학교 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4-8.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3.6	96.4	100.0(8,699)	
성별	남학생	4.0	96.0	100.0(4,176)	3.505
	여학생	3.2	96.8	100.0(4,523)	
학교급	초등학교	6.0	94.0	100.0(2,894)	76.383***
	중학교	2.5	97.5	100.0(2,953)	
	고등학교	2.2	97.8	100.0(2,851)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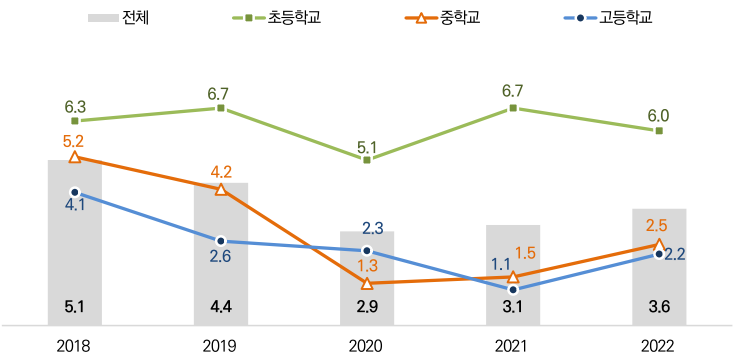


그림 Ⅲ-4-7.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그림 Ⅲ-4-7]을 통해 다년간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 2018년 5.1%에서 2020년 2.9%, 2021년 3.1%로 감소하였지만 2022년에는 3.6%로 소폭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4-9.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단위 : %(명))

구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친구	선·후배	부모님(보호자)	형제·자매	선생님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경찰	기타	전체(N)
전체		41.5	16.4	2.0	28.5	1.9	7.9	0.0	0.8	1.1	100.0(308)
성별	남학생	39.8	13.8	1.6	32.1	2.6	7.9	0.0	1.2	1.1	100.0(164)
	여학생	43.3	19.5	2.4	24.4	1.1	7.9	0.0	0.3	1.1	100.0(144)

구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친구	선·후배	부모님 (보호자)	형제·자매	선생님	전문 상담가 (상담 전화 등)	경찰	기타	전체(N)
학교급	초등학교	23.9	17.8	1.2	45.1	3.3	6.2	0.0	0.6	1.9	100.0(173)
	중학교	65.5	13.8	5.4	5.3	0.0	8.7	0.0	1.4	0.0	100.0(72)
	고등학교	62.7	15.8	0.0	9.1	0.0	11.6	0.0	0.8	0.0	100.0(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5	16.9	2.0	28.7	1.5	8.9	0.0	0.4	1.2	100.0(242)
	한부모가정	60.0	11.5	0.0	8.8	6.8	6.6	0.0	4.6	1.5	100.0(33)
	조손가정	45.2	5.6	8.5	40.8	0.0	0.0	0.0	0.0	0.0	100.0(15)
	기타	17.9	28.7	0.0	51.0	0.0	2.4	0.0	0.0	0.0	100.0(18)

* 주: 2017년도 조사부터는 전년도 보기 문항 중 '선배'가 '선 · 후배'로 수정되었으며, '인터넷'이 제외되었음.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Ⅲ-4-9〉에 제시된 결과와 같다. 응답자의 가장 많은 41.5%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8.5%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에게 도움을 받았다.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 응답자는 16.4%였으며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응답자는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성별과 학교급, 가족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모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부모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으며 친구의 도움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45.1%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중 · 고등학생의 경우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가 각각 65.5%와 6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부모님과 선생님보다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유형의 경우 한부모가정에 속한 응답자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응답이 6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11.5%)의 도움을 받았다. 한편 조손가정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부모님(보호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40.8%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① 아동학대 사례 건수

2021년 집계된 아동학대 관련 신고접수는 총 53,932건으로 2020년 42,251건 대비 27.6% 증가한 수치이다(보건복지부, 2022a). 세부적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52,083건

(9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상담 1,077건(2.0%), 동일신고 768건(1.4%), 해외발생 사례 4건(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10.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2021년)

(단위 : 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 신고	일반 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52,083 (96.6)	768 (1.4)	1,077 (2.0)	4 (0.0)	53,932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2a).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8.

2021년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접수된 신고 총 53,932건에 대한 사례판단 결과는 다음 〈표 Ⅲ-4-11〉과 같다. 먼저 26.8%인 13,945건이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533건(1.0%)은 조사 진행 중으로 전체 신고 건의 72.2%(37,605건)가 아동학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Ⅲ-4-11.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판단 결과(2021년)

(단위 : 건(%))

아동학대사례[1)]	일반사례[2)]	조사진행중사례	계
37,605 (72.2)	13,945 (26.8)	533 (1.0)	52,083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2a).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13.

* 주: 1)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및 진술로 인해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된 사례
2) 학대 의심사례로 신고접수 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례

아동학대로 판단된 37,605건(27,416명)의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성별 및 연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Ⅲ-4-12〉와 같다. 먼저 피해 아동의 성별을 보면, 남아는 전체 사례건수의 50.4%(50.8%/명)였으며 여아는 49.6%(49.2%/명)로 남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전체 학대사례 중 13세~15세가 23.1%(24.3%/명) 가장 많았으며 10세~12세도 23.0%(23.5%/명)로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그 뒤로 7세~9세가 19.2%(18.8%/명), 4세~6세 12.7%(11.9%/명), 3세 이하 11.6%(10.1%/명), 16세~17세 10.3%(11.5%/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4-12.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2021년)

(단위 : 건, 명(%))

구분		건수(비율)	명수(비율)
성별	남아	18,952(50.4)	13,940(50.8)
	여아	18,653(49.6)	13,476(49.2)
연령별	3세 이하	4,378(11.6)	2,749(10.1)
	4세 ~ 6세	4,776(12.7)	3,249(11.9)
	7세 ~ 9세	7,219(19.2)	5,154(18.8)
	10세 ~ 12세	8,657(23.0)	6,445(23.5)
	13세 ~ 15세	8,693(23.1)	6,657(24.3)
	16세 ~ 17세	3,882(10.3)	3,162(11.5)
계		37,605(100.0)	27,416(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2a).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16~17의 내용을 재구성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2017년 22,367건에서 학대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까지 30,905건으로 보고되었으며 2021년에는 37,605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21.7%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Ⅲ-4-13.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

(단위 : 건(%))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아동학대사례수 (증가율)	22,367 (19.6)	24,604 (10.0)	30,045 (22.0)	30,905 (2.9)	37,605 (21.7)

* 출처: 보건복지부(2022a).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53.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를 포함하는 부모의 경우 전체 학대 행위자의 83.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친부모가 80.7%로 가장 많았으며 계부모 2.8%, 양부모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은 전체 학대 행위자 비중에서 4.0%로 나타났으며 그 중 친조부모가 1.5%로 가장 많았다. 부모와 친인척 이외의 영역에서는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9.6%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리양육자 중에서는 유치원 및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중·고 교원에 의한 학대가 2.9%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4-14.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구분	부모				친인척					총계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소계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소계	
명 (%)	30,324 (80.7)	1,042 (2.8)	120 (0.3)	31,486 (83.7)	576 (1.5)	276 (0.8)	435 (1.2)	230 (0.6)	1,517 (4.0)	36,605 (100.0)

구분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
	부모 동거인	유치원/ 보육 교직원	초중고 교원	학원/ 교습소 종사자	아동복 지시설 종사자	기타 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종사자	위탁 부모	베이비 시터	소계	이웃, 낯선 사람	
명 (%)	403 (1.1)	1,361 (3.6)	1,089 (2.9)	319 (0.8)	217 (0.6)	93 (0.2)	58 (0.2)	23 (0.0)	46 (0.1)	3,609 (9.6)	658 (1.7)	365 (0.9)

* 출처: 보건복지부(2022a).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20~21.

②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아동학대 사례의 유형별 빈도와 비중은 다음과 같다. 전체 학대 건수 37,605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복학대로 42.6%(16,026건)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정서학대가 32.8%(12,351건)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신체학대 15.4%, 방임 7.4%, 성학대 1.7%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4-15.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건수(%)	5,780 (15.4)	12,351 (32.8)	655 (1.7)	2,793 (7.4)	16,026 (42.6)	37,605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2a).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20~21.

아동학대 유형의 연도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다. 빈도가 가장 높은 중복학대의 경우, 2017년 48.6%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이다, 2021년 42.6%로 소폭의 감소된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정서학대의 경우 2017년 21.1%였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21년 32.8%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신체학대의 경우 2017년 14.7%에서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지속하여 2021년에는 15.4%로 조사되었다. 방임은 2017년 12.5%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지만 점차 감소하여 2021년 7.4%로 조사되었으며 성학대 역시 2017년 3.1%

에서 2021년 1.7%로 감소하였다.

표 Ⅲ-4-16.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2017	3,285(14.7)	4,728(21.1)	692(3.1)	2,787(12.5)	10,875(48.6)	22,367(100.0)
2018	3,436(14.0)	5,862(23.8)	910(3.7)	2,604(10.6)	11,792(47.9)	24,604(100.0)
2019	4,179(13.9)	7,622(25.4)	883(2.9)	2,885(9.6)	14,476(48.2)	30,045(100.0)
2020	3,807(12.3)	8,732(28.3)	695(2.2)	2,737(8.9)	14,934(48.3)	30,905(100.0)
2021	5,780(15.4)	12,351(32.8)	655(1.7)	2,793(7.4)	16,026(42.6)	37,605(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128-129,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26.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3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a).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p.31.
보건복지부(2022a).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23.

③ 가정 내 방임 정도

전제 대상자의 가정 내 방임 정도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자 중 초등학생 4~6학년을 중심으로 방임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야간시간까지 보호자 없이 초등학생 혼자 있었던 경험에 대해 49.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비위생적인 의복을 입거나 그러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7.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본인이 아파도 보호자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그냥 두었던 경험이 3.2%, 식사를 하지 못해도 보호자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경험이 4.5%, 학교에 가지 않아도 보호자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경우가 1.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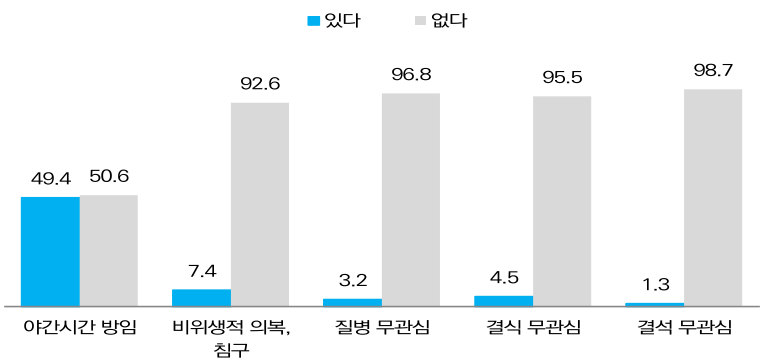


그림 Ⅲ-4-8. 최근 1년간 1회 이상 경험한 방임유형별 비율(초등학생 대상)

방임 내용에 따른 결과를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성적, 경제적 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야간시간 방임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52.5%가 연 1회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이 49.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중학교 57.7%, 고등학교 50.2%의 경험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있어서는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각각 51.5%, 54.5%인데 비하여 한부모가정의 경우 63.5%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모두 상에서 하집단으로 갈수록 야간 방임의 경험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변인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4-17.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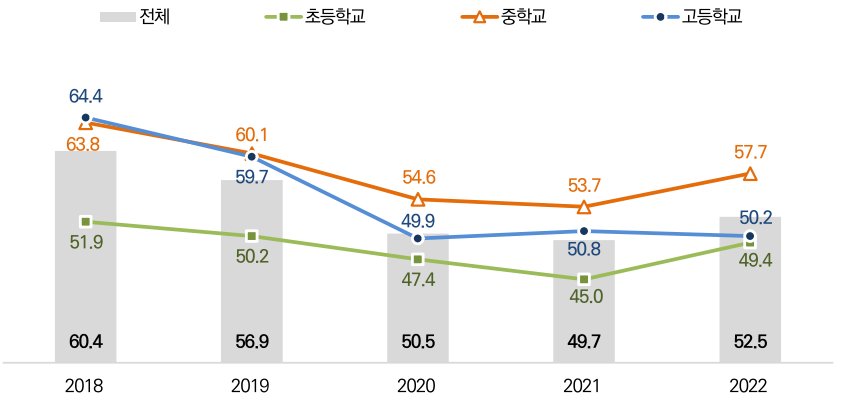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47.5	31.4	10.2	6.5	4.4	100.0(8,831)	
성별	남학생	46.9	30.9	10.9	6.6	4.8	100.0(4,265)	7.224
	여학생	48.2	31.8	9.6	6.4	4.1	100.0(4,567)	
학교급	초등학교	50.5	29.8	8.9	5.7	5.0	100.0(2,986)	60.834***
	중학교	42.4	34.8	11.3	7.4	4.2	100.0(2,985)	
	고등학교	49.8	29.4	10.4	6.4	4.0	100.0(2,86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8.4	32.0	9.9	6.0	3.6	100.0(7,780)	185.577***
	한부모가정	36.5	26.1	14.1	11.5	11.8	100.0(735)	
	조손가정	45.5	30.0	11.3	5.0	8.2	100.0(100)	
	기타	55.4	25.7	7.6	5.2	6.0	100.0(177)	
학업 성적	상	51.0	30.6	9.2	5.5	3.7	100.0(3,257)	64.580***
	중	47.2	31.7	10.7	6.6	3.8	100.0(3,671)	
	하	42.1	32.0	11.2	7.9	6.7	100.0(1,827)	
경제적 수준	상	49.3	31.4	9.6	6.0	3.7	100.0(5,088)	53.984***
	중	45.8	31.0	11.5	7.0	4.7	100.0(2,964)	
	하	41.9	32.7	9.3	7.8	8.3	100.0(702)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야간방임 경험률에 대한 다년 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8년 60%대의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 40%대의 경험률을 보였지만 2022년 다시 52.5%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급별로 고등학생을 제외한 초, 중학생 교급에서 모두 경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4-9.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연도별 추이)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 경험에 대해 질문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7.3%의 응답자들이 일 년에 1회 이상 그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8.8%, 여학생은 5.8%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있어서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비해 조손가정에 속한 응답자들의 경험률이 11.6%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의 경우 하 집단에 속할 경우 경험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Ⅲ-4-18.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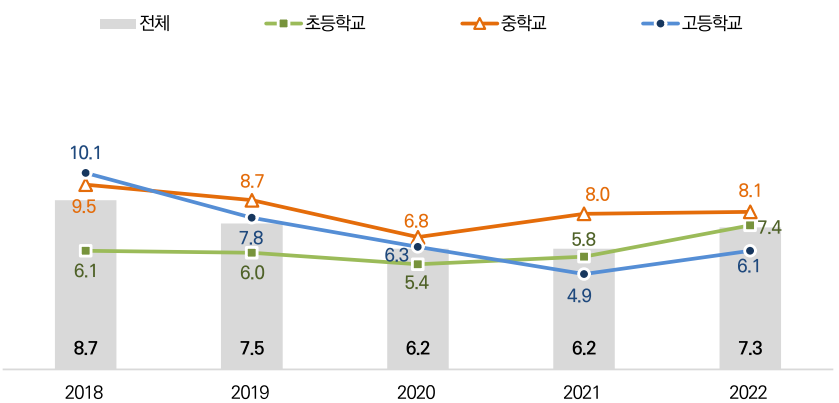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2.8	4.7	1.0	0.8	0.8	100.0(8,829)	
성별	남학생	91.1	5.4	1.2	1.1	1.1	100.0(4,261)	35.703***
	여학생	94.2	4.0	0.8	0.5	0.5	100.0(4,568)	
학교급	초등학교	92.6	5.1	0.9	0.6	0.8	100.0(2,984)	12.985
	중학교	91.9	5.1	1.1	0.9	1.0	100.0(2,983)	
	고등학교	93.8	3.8	0.9	0.8	0.6	100.0(2,862)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2.9	4.6	1.0	0.8	0.7	100.0(7,778)	26.611**
	한부모가정	92.2	5.2	0.8	0.4	1.4	100.0(735)	
	조손가정	88.4	4.2	3.5	2.0	1.9	100.0(100)	
	기타	91.2	7.4	0.0	0.1	1.3	100.0(177)	
학업 성적	상	93.7	4.1	0.8	0.6	0.8	100.0(3,256)	28.806***
	중	93.2	4.2	0.9	0.9	0.9	100.0(3,671)	
	하	90.3	6.7	1.4	0.9	0.7	100.0(1,825)	
경제적 수준	상	93.6	4.5	0.7	0.6	0.6	100.0(5,085)	35.182***
	중	92.4	4.5	1.2	1.0	0.9	100.0(2,964)	
	하	88.6	6.5	2.2	1.2	1.6	100.0(702)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 경험의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경험률은 2018년 8.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22년의 경우 7.3%로 조사되어 다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4-10.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조사 대상자가 몸이 아파도 부모님(보호자)이 그냥 내버려둔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가 연 1회 이상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의 방임 경험률(3.4%)은 여학생의 경험률(4.6%)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유형의 경우 양부모가정(3.6%)과 조손가정(3.7%)에 비해 한부모가정(5.9%)의 방임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 또는 중에 속한 응답자 보다 하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의 경험률이 각각 7.0%와 11.3%로 더 높게 분석되었다.

표 Ⅲ-4-19. 방임_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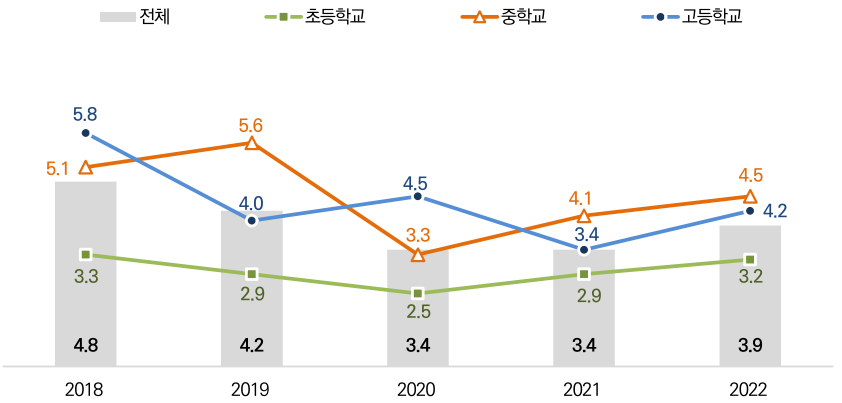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6.0	2.7	0.6	0.4	0.2	100.0(8,832)	
성별	남학생	96.6	2.1	0.7	0.3	0.3	100.0(4,266)	16.465**
	여학생	95.5	3.4	0.6	0.4	0.2	100.0(4,567)	
학교급	초등학교	96.8	2.3	0.3	0.4	0.2	100.0(2,987)	8.672
	중학교	95.6	3.0	0.9	0.3	0.3	100.0(2,983)	
	고등학교	95.8	2.8	0.8	0.4	0.2	100.0(2,8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3	2.6	0.5	0.3	0.2	100.0(7,781)	46.344***
	한부모가정	94.2	3.8	1.2	0.6	0.3	100.0(735)	
	조손가정	96.1	0.7	1.7	0.1	1.2	100.0(100)	
	기타	91.7	4.2	1.6	1.0	1.5	100.0(177)	
학업 성적	상	97.1	1.8	0.7	0.3	0.2	100.0(3,256)	48.267***
	중	96.6	2.6	0.4	0.2	0.2	100.0(3,672)	
	하	93.1	4.7	1.1	0.8	0.4	100.0(1,827)	
경제적 수준	상	97.2	2.0	0.5	0.2	0.2	100.0(5,088)	116.921***
	중	95.8	2.8	0.8	0.4	0.2	100.0(2,964)	
	하	88.7	8.0	1.3	1.4	0.6	100.0(702)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아픈 상태에서 방임되었던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18년 4.8%였던 방임률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2년 3.9%의 방임률을 보이며 다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4-11. 방임_3)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연도별 추이)

조사 대상자에게 식사를 못 해도 부모님(보호자)이 신경쓰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가 연 1회 이상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가족유형의 경우 양부모가정(4.7%)이 가장 낮은 경험률을 보였으며 조손가정(7.6%)과 한부모가정(7.8%)의 방임률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 또는 중에 속한 응답자 보다 하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의 경험률이 각각 6.9%와 12.4%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4-20.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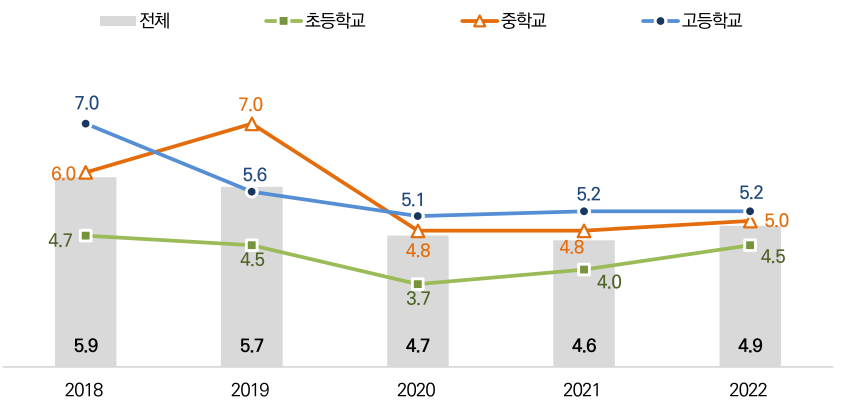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5.1	3.0	0.7	0.6	0.6	100.0(8,831)	
성별	남학생	95.3	2.8	0.8	0.5	0.7	100.0(4,264)	3.822
	여학생	94.9	3.2	0.7	0.7	0.5	100.0(4,566)	
학교급	초등학교	95.4	3.0	0.7	0.5	0.3	100.0(2,986)	7.398
	중학교	95.0	3.1	0.7	0.5	0.7	100.0(2,982)	
	고등학교	94.8	2.9	0.8	0.7	0.8	100.0(2,862)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4	2.9	0.7	0.5	0.6	100.0(7,779)	36.815***
	한부모가정	92.2	4.4	1.2	1.2	1.0	100.0(735)	
	조손가정	92.4	1.4	1.9	2.6	1.7	100.0(100)	
	기타	92.8	4.7	0.6	1.0	0.9	100.0(177)	
학업 성적	상	95.9	2.5	0.7	0.5	0.5	100.0(3,257)	26.496**
	중	95.4	2.9	0.7	0.4	0.7	100.0(3,672)	
	하	93.1	4.1	0.9	1.1	0.8	100.0(1,824)	
경제적 수준	상	96.3	2.3	0.5	0.4	0.5	100.0(5,089)	113.957***
	중	94.9	3.2	0.9	0.5	0.5	100.0(2,961)	
	하	87.6	6.7	1.6	2.3	1.8	100.0(702)	

*p 〈 .05,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결식방임 경험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5.9%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2년의 방임률은 4.9%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4-12.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학교를 결석했음에도 부모님(보호자)이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1.3%가 연 1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와

같은 수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가족유형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양부모가정의 경우 1.0%, 한부모가정 2.4%, 조손가정 7.5%로 조사되어 조손가정에 속한 응답자들의 방임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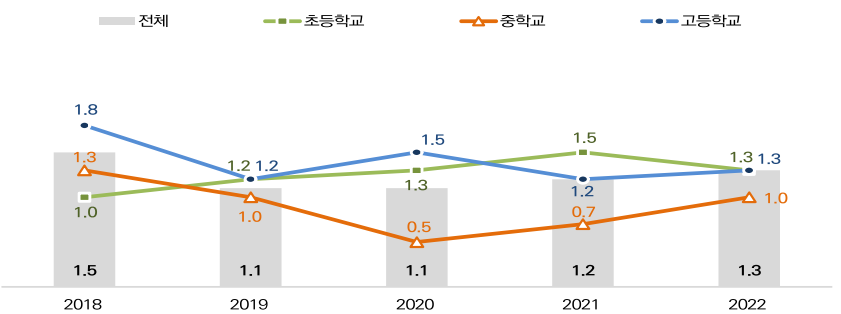
표 Ⅲ-4-21.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8.8	0.7	0.2	0.2	0.2	100.0(8,829)	
성별	남학생	98.5	0.6	0.3	0.2	0.3	100.0(4,262)	17.093**
	여학생	99.0	0.7	0.1	0.1	0.0	100.0(4,568)	
학교급	초등학교	98.8	0.9	0.1	0.1	0.2	100.0(2,983)	12.173
	중학교	99.0	0.5	0.2	0.1	0.2	100.0(2,984)	
	고등학교	98.6	0.6	0.3	0.3	0.1	100.0(2,8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9.0	0.6	0.1	0.2	0.1	100.0(7,779)	73.241***
	한부모가정	97.6	1.0	0.7	0.3	0.4	100.0(733)	
	조손가정	92.5	5.0	1.2	0.1	1.2	100.0(100)	
	기타	96.3	2.1	0.0	0.7	0.9	100.0(177)	
학업 성적	상	98.8	0.7	0.1	0.3	0.1	100.0(3,254)	18.289*
	중	98.9	0.5	0.3	0.1	0.1	100.0(3,671)	
	하	98.4	0.9	0.1	0.2	0.4	100.0(1,827)	
경제적 수준	상	98.8	0.7	0.2	0.1	0.2	100.0(5,088)	38.581***
	중	99.2	0.3	0.3	0.2	0.0	100.0(2,962)	
	하	96.9	1.9	0.1	0.5	0.6	100.0(700)	

*p < .05,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결석에 대한 방임률의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18년 1.5%의 방임률은 이후 계속해서 1% 초반대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역시 1.3%로 전년도의 방임률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4-13.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2) 학대 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①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6년 42개소였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77개소로 일정수준의 확대를 보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06년 5,202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에는 37,605건으로 약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 1개 기관당 평균 담당 사례수가 123.9건에서 2021년 488.4건으로 증가하여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대 사례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과 기관 증설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Ⅲ-4-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06~2021년)

(단위: 건, 개소)

구분	아동학대 사례 건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	구분	아동학대 사례 건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
2006	5,202	42	123.9	2014	10,027	51	196.6
2007	5,581	43	129.8	2015	11,715	56	209.2
2008	5,578	43	129.7	2016	18,700	59	316.9
2009	5,685	44	129.2	2017	22,367	60	372.8
2010	5,657	44	128.6	2018	24,604	62	396.8
2011	6,058	44	137.7	2019	30,045	67	448.4
2012	6,403	46	139.2	2020	30,905	71	435.3
2013	6,796	50	135.9	2021	37,605	77	488.4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21.
보건복지부(2022a).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53.

② 서비스 제공 정도와 조치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과 학대 행위자에게 상담, 의료, 심리치료, 가족기능강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피해 아동에게는 791,58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학대 행위자에게는 437,644건, 학대 피해 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게는 183,756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면 2015년 총 766,786건이었고 이후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1년에는 1,412,987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표 Ⅲ-4-23.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2015~2021년)

(단위: 건)

구분	서비스 건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피해아동	492,415	640,378	501,465	461,891	555,312	651,619	791,587
학대 행위자	131,836	193,633	196,458	206,419	259,967	335,818	437,644
부모 또는 가족	142,535	194,931	186,923	137,127	144,634	165,586	183,756
계	766,786	1,028,942	884,846	805,437	956,913	1,153,023	1,412,987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2018). 2015~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4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48.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a).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p.48.
보건복지부(2022a).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40.

202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피해 아동, 가해 행위자,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한 대상별 서비스 제공 실적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피해아동에게는 가장 많은 791,58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가해 행위자에게 437,644건, 부모 및 가족에게 183,75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 상담 서비스가 534,413건으로 가장 제공되었으며, 그 밖에도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71,350건), 심리치료지원 서비스(63,966건), 사건처리지원 서비스(54,433건) 등이 많이 제공되었다. 가해 행위자의 경우 상담서비스 322,281건, 심리치료지원 서비스 30,108건, 사건처리지원 서비스 29,857건, 행위자 수탁 프로그램 26,574건 등으로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었다. 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는 상담서비스 141,365건,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20,108건, 심리치료지원 서비스 10,533건 등의 순으로 제공되었다.

표 Ⅲ-4-24. 대상별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회, %)

구분	아동		행위자		부모 및 가족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상담	534,413	67.5	322,281	73.6	141,365	76.9
의료지원	5,080	0.6	1,283	0.3	388	0.2
심리치료지원	63,966	8.1	30,108	6.9	10,533	5.7
가족기능 강화	71,350	9.0	19,764	4.5	20,108	10.9
학습 및 보호지원	21,374	2.7	2,011	0.5	723	0.4
사건처리지원	54,433	6.9	29,857	6.8	2,472	1.3
행위자 수탁프로그램	590	0.1	26,574	6.1	332	0.2

구분	아동		행위자		부모 및 가족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피해아동 수탁프로그램	1,665	0.2	512	0.1	67	0.0
기타	38,716	4.9	5,254	1.2	7,768	4.2
계	791,587	100.0	437,644	100.0	183,756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2a).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41.

2021년도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총 37,605건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 중 84.6%는 원가정보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1.8%는 기관 또는 위탁가정 등으로 분리보호 되었으며 2.7%는 분리보호 이후 가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0.9%는 기타 사항으로 소년원 입소, 가출 등으로 인한 행방불명이 포함되며 전체 피해 아동의 0.1%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경우 전년도 0.3%에 비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지만 낮은 비율일지라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로 피해로 인한 사망 사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표 Ⅲ-4-25.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상황(2015~2021년)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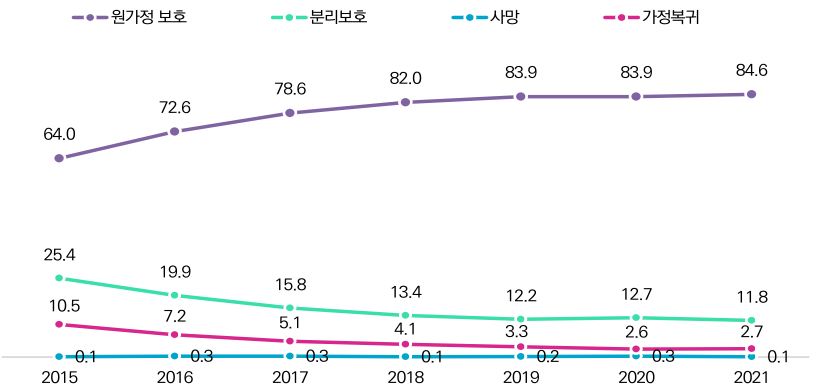
연도	원가정 보호	분리 보호	사망	기타*	가정복귀**	계
2015	11,305(64.0)	4,485(25.4)	26(0.1)	-	1,846(10.5)	17,662(100.0)
2016	13,573(72.6)	3,730(19.9)	50(0.3)	-	1,347(7.2)	18,700(100.0)
2017	17,589(78.6)	3,527(15.8)	58(0.3)	54(0.2)	1,139(5.1)	22,367(100.0)
2018	20,164(82.0)	3,287(13.4)	32(0.1)	101(0.4)	1,020(4.1)	24,604(100.0)
2019	25,206(83.9)	3,669(12.2)	60(0.2)	121(0.4)	989(3.3)	30,045(100.0)
2020	25,916(83.9)	3,926(12.7)	90(0.3)	175(0.6)	798(2.6)	30,905(100.0)
2021	31,804(84.6)	4,439(11.8)	44(0.1)	320(0.9)	998(2.7)	37,605(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2018). 2015~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35.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a).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p.35.
보건복지부(2022a).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27.

* 주: 소년원 입소,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주: 2022년부터 가정복귀 인원은 분리보호에 포함하여 산정

피해아동 보호 현황에 대한 다년간 추이는 다음과 같다. 원가정 보호는 2015년 64.0%에서 2021년 84.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분리 보호는 2020년 일시적 증가를 보였지만 2021년 최근 들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대 피해아동 사망의 경우

2015년 26명에서 2021년 44명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아동 사망에 대해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 주: 본 그림은 〈표 Ⅲ-4-25〉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단위: %).

그림 Ⅲ-4-14.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연도별 추이)

3) 소결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세부지표들 중 본 장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부모(보호자), 교사,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학교와 가정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경험한 폭력에 대한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성적 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경험 여부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30.6%가 연 1회 이상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생(33.7%)이 초등학생(32.5%)과 고등학생(25.0%)에 비하여 경험률이 높았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사례는 23.1%에 달했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신체적 체벌 경험률이 높았다. 가정에서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의 경험률의 연도별 추이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

교사로부터의 언어적·신체적 체벌의 경우 역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2022년에도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적 폭력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10.9%가 경험하였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초등·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3.5%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였고, 중학생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신체적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여전이 신체적 폭력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언어적 폭력이 학생들에게는 신체적 폭력과 다름없는 고통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하게 관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은 욕설 및 모욕(15.1%), 폭행 및 구타(7.6%), 따돌림(4.8%), 성적인 희롱 및 추행(3.6%), 강제로 빼앗김(2.2%), 강제적인 심부름(1.7%) 순으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친구, 선후배로부터 경험하는 폭력은 연도별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2022년에는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수치를 보였는데 이에 대한 요인 분석과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은 전체적으로 욕설 및 모욕 18.8%, 사생활침해 4.5%, 성희롱 3.6%, 협박 3.1%, 따돌림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은 2021년 또는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욕설 및 모욕의 경우 2021년부터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혐오(표현)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여진다.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매년 유사한 수준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총 28,28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 중 13세 미만은 1,155명(4.1%)으로 2019년 1,375명에 비해 220명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3.6%가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가장 많은 41.5%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8.5%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에게 도움을 받았다. 여전히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다는 점은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보여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과 보완이 필요하다.

본 장의 두 번째 인권지표인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학대 및 방임 관련 문항 결과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2021년 집계된 아동학

대 관련 신고접수는 2020년 42,251건 대비 27.6% 증가하여 총 53,932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72.2%(37,605건)가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다. 이는 전년(30,905건) 대비 21.7% 증가한 것이다. 피해 아동의 성별을 보면, 남아는 전체 사례건수의 50.4%(50.8%/명)였으며 여아는 49.6%(49.2%/명)로 남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전체 학대 사례건수 중 13세~15세가 23.1%(24.3%/명) 가장 많았으며 10세~12세도 23.0%(23.5%/명)로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학대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를 포함하는 부모인 경우가 전체 학대 행위자의 83.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친인척 4.0%, 대리양육자 9.6% 등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계속해서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42.6%(16,026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정서학대가 32.8%(12,351건)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신체학대 15.4%, 방임 7.4%, 성학대 1.7% 순으로 분석되었다.

방임의 경우 야간시간 방임은 52.5%,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경험 7.3%, 질병에 대한 방임 3.9%, 결식에 대한 방임 4.9%, 결석에 대한 방임 1.3%로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대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과 관련하여 먼저 아동학대 사례 건수와 보호기관의 수를 보면 2022년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77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전년 대비 21.7% 증가한 것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기관의 수는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 아동, 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 학대 행위자에게 제공한 상담, 의료, 심리치료, 가족기능강화 등의 서비스는 피해 아동 791,587건, 학대 행위자 437,644건, 학대 피해 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 183,756건으로 나타났다. 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심리치료지원, 가족기능 강화, 사건처리 지원 등의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었다. 피해아동 보호 현황의 경우 총 37,605건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 중 84.6%는 원가정보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8%는 기관 또는 위탁가정 등으로 분리보호 되었다. 그 중 2.7%는 분리보호 이후 가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피해 아동의 0.1%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경우 전년도 0.3%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낮은 비율일지라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로 피해로 인한 사망 사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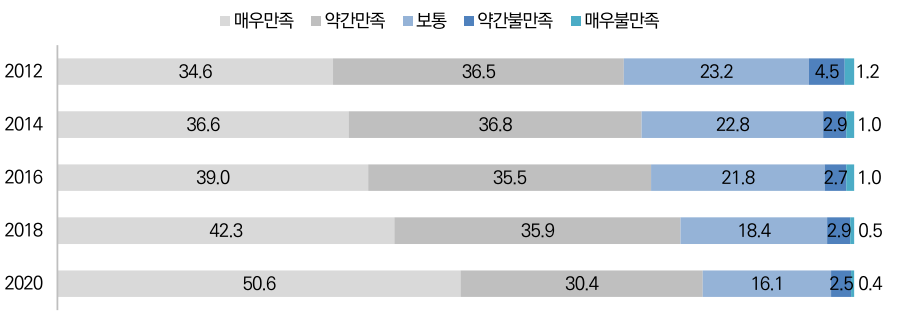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1) 부모와의 관계

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관련하여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며 그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은 발달과업의 완수와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발달산물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만족도는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통계청 사회조사는 2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는데, 전체 조사대상자 중 만13~19세 아동·청소년이 응답한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조사 당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50.6%,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은 30.4%로 전체 응답자의 81%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추이를 봤을 때 2012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만족도 결과는 최근 결과 중 가장 높은 만족도임을 알 수 있다.



* 출처: 통계청(2012, 2014, 2016, 2018, 2020). 2012-2020 사회조사.

* 주: 단위: %

그림 Ⅲ-5-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19세) 연도별 추이

(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① 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설립주체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과 재원 아동의 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33,246개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데, 보육시설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가정형 어린이집이 13,891개소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10,603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5,437개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285개소, 직장어린이집 1,248개소 등의 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재원 아동의 수 역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2021년 재원 아동 수는 1,184,716명으로 전년 1,244,396명에 비해 약 6만여 명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설립주체별로 보면, 민간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535,4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공립이 268,967명, 가정형 어린이집 208,842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1.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2015~2021년)

(단위 : 개소, 명)

구분·연도 \ 설립주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 (개소)	2015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42,517
	2016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41,084
	2017	3,157	1,392	771	14,045	19,656	164	1,053	40,238
	2018	3,602	1,377	748	13,518	18,651	164	1,111	39,171
	2019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37,371
	2020	4,958	1,316	671	11,510	15,529	152	1,216	35,352
	2021	5,437	1,285	640	10,603	13,891	142	1,248	33,246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명)	2015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1,452,813
	2016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1,451,215
	2017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80	58,454	1,450,243
	2018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1,415,742
	2019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1,365,085
	2020	253,251	78,322	34,066	578,196	230,444	3,716	66,401	1,244,396
	2021	268,967	72,085	30,998	535,428	208,842	3,465	64,931	1,184,716

* 출처: 보건복지부(2022b). 2021 보육통계. pp.2-3.

〈표 Ⅲ-5-2〉는 어린이집 정원 및 현원에 대한 정보와 정원 대비 현원의 이용률을 제시하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는데, 2015년 81.1%였던 이용률은 2017년 82.6%까지 증가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2021년에는 76.1%로 감소하였다. 이를 운영 주체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인 9.8%p, 법인·단체 9.5%p, 가정 8.8%p, 부모협동 8.5%p, 국공립 6.6%p, 민간 5.8%p, 직장 5.3%p의 순으로 이용률에 차이가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이용률은 국공립이 8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정 80.4%, 민간 74.8%, 부모협동 74.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5-2.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5~2021년)

(단위 : 명, %)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15	정원	188,661	135,741	60,509	942,103	399,649	4,913	59,245	1,790,821
	현원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1,452,813
	이용률	87.9	73.5	77.4	79.4	86.1	84.0	75.6	81.1
2016	정원	197,365	134,189	58,511	927,517	374,907	5,052	69,683	1,767,224
	현원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1,451,215
	이용률	89.1	73.9	77.5	80.4	87.6	83.9	75.1	82.1
2017	정원	209,727	131,820	56,514	915,855	360,397	5,506	76,784	1,756,603
	현원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80	58,454	1,450,243
	이용률	89.1	73.4	76.8	80.6	89.2	83.2	76.1	82.6
2018	정원	230,508	128,810	54,900	886,818	344,412	5,451	81,425	1,732,324
	현원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1,415,742
	이용률	87.1	72.0	75.2	80.2	87.9	80.0	76.9	81.7
2019	정원	269,500	124,040	51,736	832,749	318,092	5,297	85,459	1,686,873
	현원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1,365,085
	이용률	86.1	70.0	74.5	79.7	85.9	77.8	77.3	80.9
2020	정원	302,378	119,289	48,839	772,536	290,123	4,958	90,137	1,628,260
	현원	253,251	78,322	34,066	578,196	230,444	3,716	66,401	1,244,396
	이용률	83.8	65.7	69.8	74.8	79.4	74.9	73.7	76.4
2021	정원	326,210	113,294	46,084	715,671	259,901	4,636	91,700	1,557,496
	현원	268,967	72,085	30,998	535,428	208,842	3,465	64,931	1,184,716
	이용률	82.5	63.6	67.3	74.8	80.4	74.7	70.8	76.1

* 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통계. pp.3-5, 보건복지부(2018). 2018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9). 2019 보육통계. p.17. 보건복지부(2020). 2020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22b). 2021 보육통계. p.5

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가. 방과후학교 이용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정규수업이 종료 된 이후 학생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도 전체 참여율은 28.9%이며 이는 2020년 9.5%의 참여율을 크게 웃돌지만 코로나 19 이전의 참여율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참여율 35.3%, 중학교 15.3%, 고등학교 29.8%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264,442개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는데 2018년과 비교하면 약 10만 개가량 차이가 난다. 전체 프로그램을 교과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과 50%(132,010개)와 특기적성 50%(132,321개)로 나뉜다.

표 Ⅲ-5-3.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1]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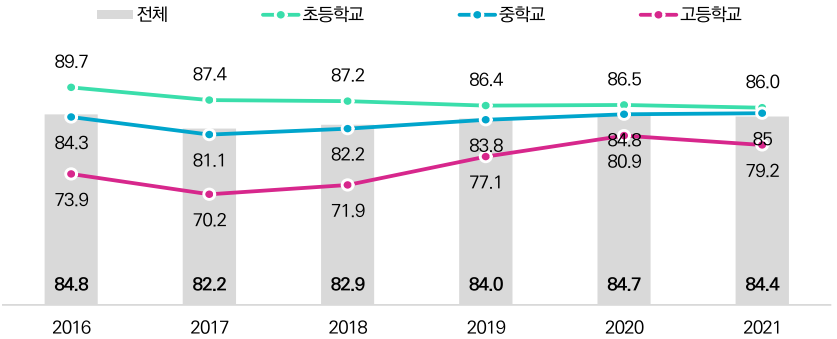
(단위 : %, 만원, 개)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교과(%)	특기적성(%)	계
	참여율[2]	비용[3]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2017	60.4	2.2	37.2	0.3	59.8	1.3	54.6	2.2	210,488(50.0)	210,487(50.0)	420,975
2018	59.3	2.1	32.1	0.3	52.6	1.1	51.0	1.4	167,907(46.1)	196,192(53.9)	364,099
2019	58.7	2.2	27.4	0.2	47.7	1.0	48.4	1.4	147,416(43.8)	188,971(56.2)	336,387
2020	10.9	0.1	4.2	0.0	12.0	0.2	9.5	0.1	69,656(43.1)	89,068(56.9)	158,725
2021	35.3	1.1	15.3	0.1	29.8	0.5	28.9	0.7	132,010(50.0)	132,321(50.0)	264,442

* 출처: 통계청(2018.3.15). 보도자료: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9.
통계청(2019.3.12). 보도자료: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9.
통계청(2020.3.11). 보도자료: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26.
통계청(2022.3.11). 보도자료: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9.
통계청 KOSIS (2017~2021) 학교급별 방과후 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비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501&vw_cd=MT_ZTITLE&list_id=H1_10_00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2년 10월 16일 인출.
교육부(2021b). 2021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 주: 1) 방과후 초등 돌봄 프로그램, 특기·적성관련 프로그램, 교과 관련 프로그램 포함
2) 참여율은 무상과 유상 합친 비율
3)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금액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교급별 만족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년 84.8점이었던 전체 만족도는 소폭의 감소와 증가를 거쳐 2021년 84.4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교급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초등학교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만족도와 같은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 출처: 교육부(2019).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2, 교육부(2021b). 2021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 주: 단위: 점

그림 Ⅲ-5-2. 방과후학교 교급별 만족도(2016-2021년)

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또 다른 방과후 돌봄 및 학습 프로그램 제공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보호 및 문화체험, 학습 프로그램, 급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전국에 4,008개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106,510명이다. 구체적으로 미취학 아동 1,900명, 초등학생 저학년 40,199명, 고학년 43,492명, 중학생 17,207명, 고등학생 3,578명, 탈학생 134명이 이용 중이다. 연도별로 이용인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초등학생 이용자가 가장 많이 유지되고 있다.

표 Ⅲ-5-4.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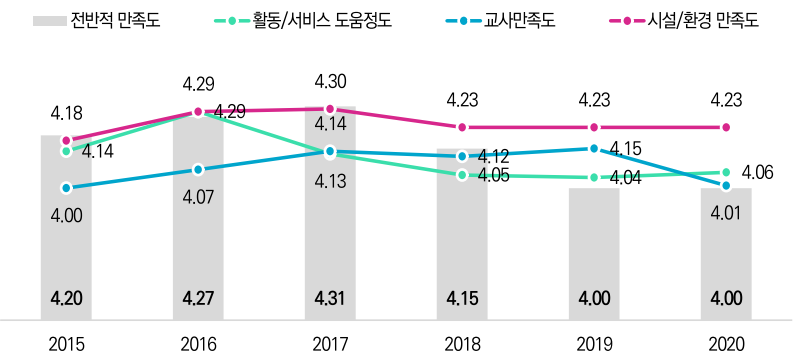
(단위 : 개소, 명)

구분	센터 개소수	연 인원							
		합계	미취학	초등		중학생	고등학생	탈학생	기타[주]
				저학년	고학년				
2016	4,104	106,668	1,872	41,750	40,390	18,156	4,377	123	-
2017	4,189	108,578	1,111	41,970	42,736	17,563	4,185	117	896
2018	4,138	109,610	1,798	43,438	44,063	16,321	3,902	88	-
2019	4,081	108,971	2,146	44,094	43,681	15,531	3,443	76	-
2020	4,008	106,510	1,900	40,199	43,492	17,207	3,578	134	

* 출처: 보건복지부(2021f).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2020년 12월말 기준). p.42-43.

* 주: 1) 2004년 탈학교/기타, 2005년 탈학교, 2009년부터 기타는 별도 조사되지 않음.
2) 이용 아동 연 인원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분석 불가능 시설 136개소 제외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센터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도 만족도 결과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2020년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2020년도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0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인 2019년도와 같은 수준이지만 2015년도와 비교하였을 경우 소폭 하락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만족도는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였으며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김희진, 임희진, 정윤미(202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p.206, pp.270-277.

* 주: 5점 만점 기준 평균값 수치(단위: 점)
주: 2021년도 만족도 조사는 비공개 자료로 지정되어 공개하지 않음(아동권리보장원)

그림 Ⅲ-5-3.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연도별 추이)

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돌봄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충학습, 상담, 급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가정 사교육비 및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a).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33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 인원은 13,145명으로 집계되었다. 개소수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용인원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5-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14~2021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개소	인원	구분	개소	인원
2014	200	8,091	2018	260	10,742
2015	244	9,490	2019	280	11,584
2016	250	9,745	2020	304	12,095
2017	250	9,773	2021	332	13,145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20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에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부터 만족도 평가 영역과 내용이 변경되었다. 먼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만족도의 경우 평균 4.06점(표준편차=.66)으로 100점 만점 환산 시 81.2점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은 평균 4.02(표준편차=.68)이며 100점 환산 점수는 80.4점이다. 개인생활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평균 4.18(표준편차=.73)이고 100점 환산점수는 83.6점이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4.09점(표준편차=.63)으로 81.8점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표 Ⅲ-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2021년)

(단위 :점)

구분 / 만족도 영역	평균	표준편차	100점 만점 환산점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만족도	4.06	0.66	81.2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4.02	0.68	80.4
개인생활지원에 대한 생각	4.18	0.73	83.6
전체	4.09	0.63	81.8

* 출처: 서정아, 조아미(2021)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주: 2021년부터 만족도 측정 내용과 구성이 변경되어 2021년 만족도 수치 단독 제시함.

라. 다함께돌봄 운영 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등학생 대상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 사업을 시행중이다(보건복지부, 2022c). 2017년 10개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 2022년 10월 기준 전국 785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서울(220개소)과 경기(206개소)에 가장 많은 센터가 운영 중이며, 그 밖에 부산 48개소, 충남 34개소, 강원 32개소 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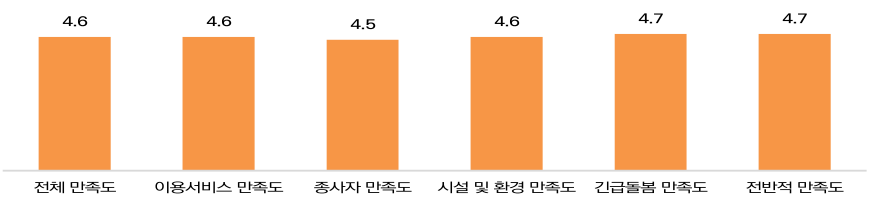
표 Ⅲ-5-7.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현황(2022년 10월 기준)

(단위 : 개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	220	48	4	22	19	15	25	6	206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	32	28	34	32	23	44	23	4	785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dadol.or.kr/board/center)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대상 아동의 보호자를 통해 조사 하였는데, 2021년도 만족도의 경우,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5점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인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이용서비스 만족도가 4.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는 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가장 높은 만족도의 수준에 비하여 크게 낮지 않았다.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2021). 2021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 다함께돌봄 소식지. p.21. 그림을 그래프로 재구성

* 주: 단위: 점
주: 2021년 11월 기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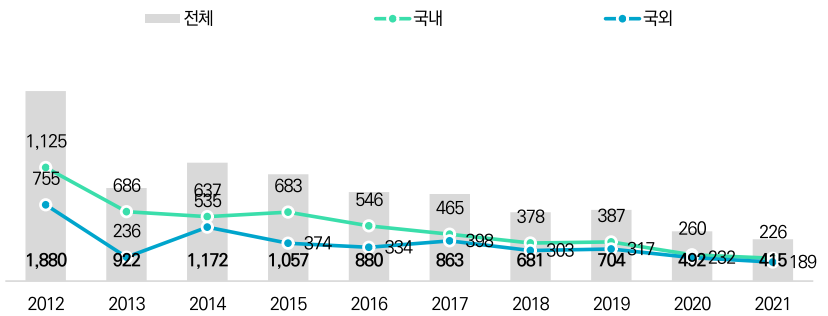
그림 Ⅲ-5-4. 다함께돌봄 이용자 만족도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청소년

(1) 입양률

① 국내·외 입양 현황과 추이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입양은 양부모 자격 강화 및 가정법원 입양 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c).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입양 현황에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에 전체 입양된 아동의 수는 총 415명이며 그 중 국내는 54.5%인 226명이었고, 나머지 45.5%인 189명은 국외로 입양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국내입양은 감소하고 국외 입양은 증가한 수치이다. 2007년부터 국내입양우선추진제를 시행하여 입양 의뢰 후 5개월간은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c) 국내 입양의 감소와 국외 입양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보건복지부(2012-2021).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2-202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및 재구성.

* 주: 단위: 명

그림 Ⅲ-5-5.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표 Ⅲ-5-8.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단위 : 명(%))

연도	계	국내	국외	연도	계	국내	국외
~2010	238,105	74,409 (31.3)	163,696 (68.7)	2018	681	378 (55.5)	303 (44.4)
2015	1,057	683 (64.6)	374 (35.4)	2019	704	387 (55.0)	317 (45.0)

연도	계	국내	국외	연도	계	국내	국외
2016	880	546 (62.0)	334 (38.0)	2020	492	260 (52.8)	232 (47.2)
2017	863	465 (53.9)	398 (46.1)	2021	415	226 (54.5)	189 (45.5)

* 출처: 보건복지부(2010-2021).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0-202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및 재구성.

② 입양 사후관리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입양 이후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양부모와 입양아동 간 상호작용 모니터링, 양육정보 제공, 수시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22a). 입양 성립 직후부터 6개월 간 4회 이상의 대면상담 및 가정방문 실시, 이후 6개월 간 2회 추가 상담 및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나도록 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2a).

입양 후 사후관리 관련 가정조사보고서에는 아동의 키, 몸무게, 예방접종 사항, 근육발달 등 입양아동의 신체발달 사항과 인지정서 발달 사항(언어능력, 사회적 발달 등), 형제관계, 또래관계 등 아동 관련 사항과 함께, 양부모와 아동과의 관계 상태, 양부모의 심리·정서 상태, 양육환경 등과 같은 양부모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c).

입양 후 입양아동의 보호, 적응을 위해 담당자에 의한 사후관리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적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 사업으로 전환되어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형태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입양가족 교육 및 심리상담지원,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고위험 위기 입양가정 지원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5-9〉와 같다.

표 Ⅲ-5-9. 국내·외 입양인 지원사업 대상

대상	구분	내용
국외 현지 입양인 및 가족 (재외공관 경유)	한국 문화 체험	한국음식, 명절, 전통음악, 태권도 등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입양인 및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해외 거주 국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모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현지 사회 적응력 제고
	한국어 교육	한국어 습득을 통한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지원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을 돕기 위한 단체 지원

대상	구분	내용
국내 단체 (국외 입양인)	모국방문	연고지 방문 및 문화체험 등 입양인의 목구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한 사업
	모국어연수	한국어 습득을 통한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사업
	모국생활지원	한국에 중장기 체류를 원하는 국외입양인의 안정적 적응을 돕는 사업(한국 국적회복, 취업, 법률 및 재정관련 안내, 사회서비스 등)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관련 테마를 활용하여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
	방문입양인 일시 거주 지원	모국 체류를 희망하는 입양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
	기타 행사지원 등	국외입양인 관련 국제행사 등 지원 사업
국내 단체 (국내 입양인)	입양가족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입양가족 간 유대감 형성 및 양육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입양가정에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연장아 등 특수욕구 입양가족 지원	연장아동(만 1세 이상 아동) 등 특수욕구가 있는 입양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국내입양인 및 입양 가족 간 지역별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상호지지를 돕기 위한 사업
	고위험 위기 입양가정 지원	국내 입양가정 중 상호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 대상 지원 사업(사례관리 등)
	기타 행사지원	기타 국내입양인 관련 행사 지원 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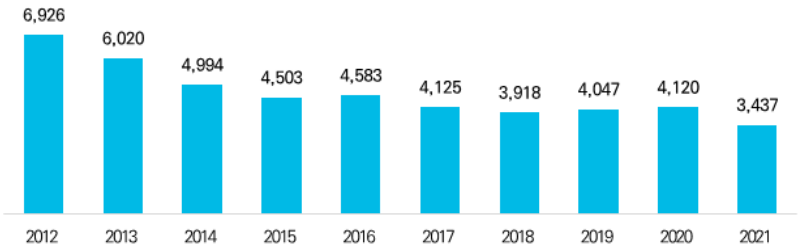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c). 2021 입양실무매뉴얼. p.84, 아동권리보장원 웹사이트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177&bbsId=1014&nttSn=2680&cataGori=da06&tabName=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2) 대안양육 비율

① 보호대상아동 현황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자가 없거나 그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아동을 말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b). 빈곤, 실직, 학대 등으로 인한 경우나 비행 또는 가출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떨어진 경우, 유기, 미아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호아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3,437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최근 다년간 보고된 수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6,926명이었던 보호아동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출처: 보건복지부(2021a) 2021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연도별)

* 주: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사례는 제외(단위: 명)

그림 Ⅲ-5-6.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추이(2012~2021년)

보호아동 통계를 발생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보호아동 3,437명 중, 빈곤, 실직, 학대, 부모이혼 등의 이유로 발생한 보호아동이 77.4%(2,661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혼부모 및 혼외자로 인한 발생이 10.6%(366명), 비행 또는 가출 시도로 인해 발생된 경우가 8.5%(293명), 유기 3.4%(117명) 등의 순으로 발생되었다.

표 Ⅲ-5-10.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2015~2021년)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503	4,583	4,125	3,918	4,047	4,120	3,437
빈곤·실직·학대[1]	2,866 (63.6)	3,139 (68.5)	2,778 (67.3)	2,726 (69.6)	2,865 (70.8)	3,006 (73.0)	2,661 (77.4)
비행·가출[2]	360 (8.0)	314 (6.9)	227 (5.5)	231 (5.9)	473 (11.7)	468 (11.4)	293 (8.5)
미혼부모·혼외자	930 (20.7)	855 (18.7)	847 (20.5)	623 (15.9)	464 (11.5)	466 (11.3)	366 (10.6)
유기	321 (7.1)	264 (5.8)	261 (6.3)	320 (8.2)	237 (5.9)	169 (4.1)	117 (3.4)
미아	26 (0.6)	11 (0.2)	12 (0.3)	18 (0.5)	8 (0.2)	11 (0.3)	0 (-)

* 출처: 보건복지부(2021e).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통계청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 주: 1) 학대, 빈곤,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 포함
2) 비행, 가출, 부랑 포함

보호유형별 보호대상 아동 현황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1년 발생한 보호아동 3,437명 중, 63.5%인 2,183명은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가정 등 시설입소

되어 보호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4.3%인 1,179명은 가정위탁을 통해 가정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2%는 입양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Ⅲ-5-11.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5~2021년)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503	4,583	4,125	3,918	4,047	4,120	3,437
시설보호[1)]	2,682 (59.6)	2,887 (63.0)	2,421 (58.7)	2,449 (62.5)	2,739 (67.7)	2,739 (66.5)	2,183 (63.5)
가정위탁	1,582 (35.1)	1,022 (22.3)	994 (24.1)	937 (23.9)	1,003 (24.8)	1,199 (29.1)	1,179 (34.3)
입양[2)]	239 (5.3)	243 (5.3)	285 (6.9)	174 (4.4)	104 (2.6)	104 (2.5)	75 (2.2)
소년소녀가정	0 (0.0)	6 (0.1)	2 (0.0)	1 (0.0)	5 (0.1)	5 (0.1)	0 (0.0)

* 출처: 보건복지부(2021a) 2021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연도별)
* 원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주: 1)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포함됨.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의 입양(사인간의 입양)은 미포함

②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 · 청소년 비율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 대안적 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등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2020년 전체 9,923명이 위탁되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65.9%인 6,542명은 친·외조부모의 대리양육을 통해 위탁되었다. 그리고 24.7%인 2,447명은 친인척을 통해 위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9.4%인 934명은 일반인의 가정에 위탁된 것을 알 수 있다. 연도에 따른 각 유형별 수치는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 가정에 의해서 위탁되는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5-12.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2014~2020년)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14,385	13,728	12,896	11,983	11,141	10,384	9,923
대리양육 위탁아동	9,550 (66.4)	9,127 (66.5)	8,578 (66.5)	7,950 (66.3)	7,426 (66.7)	6,905 (66.5)	6,542 (65.9)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친인척 위탁아동	3,816 (26.5)	3,556 (25.9)	3,348 (26.0)	3,100 (25.9)	2,801 (25.1)	2,572 (24.8)	2,447 (24.7)
일반 위탁아동	1,019 (7.1)	1,045 (7.6)	970 (7.5)	933 (7.8)	914 (8.2)	907 (8.7)	934 (9.4)

* 출처: 보건복지부(2014-2020).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014~202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_N005&conn_path=I2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그 외에 가정복귀, 입양, 가정위탁이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지설에 입소하게 되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전체 시설 수는 281개소이며 11,665명의 아동이 입소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 수의 경우 2018년 대비 2개소가 증가한 것이며 입소아동의 경우 528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표 Ⅲ-5-13.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1] 현황(2014~2019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설 수	278	281	281	280	279	281
현재 입소아동[2]	14,630	14,001	13,689	12,789	12,193	11,665

* 출처: 보건복지부(2020d).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401121&conn_path=I2에서 2021년 10월 12일 인출.
원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 주: 1)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전국의 아동복지시설로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
2) 현재 입소아동: 기아, 사생아, 미아, 비행·가출·부랑아, 빈곤·실직·가정, 전입 등으로 시설에 입소된 아동으로 퇴소아동을 제외한 연말 현재 수용아동 수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보호아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12월 기준 전국 59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3,126명의 아동·청소년이 이용 중에 있다. 이용인원 중 1,688명은 남자, 1,440명은 여자 아동·청소년으로 전체적인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3천명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14.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보호아동 수(2014~2020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시설 수		476	480	510	533	558	578	595
이용 인원	계	2,588	2,636	2,758	2,811	2,872	2,949	3,126
	남	1,351	1,364	1,444	1,477	1,547	1,602	1,686
	여	1,237	1,272	1,314	1,334	1,325	1,347	1,440

* 출처: 김영지 외(2017).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7. p.215.
보건복지부(2018a).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7.12.31.기준). p.1.
보건복지부(2019a). 2019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8.12.31.기준). p.1.
보건복지부(2020a). 2020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9.12.31.현재). p.1
보건복지부(2021b). 2021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20.12.31.현재). p.1

(3) 가정 밖(가출)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① 가정 밖(가출) 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1년 간 가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 8,592명 중 3.6%가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가출 여부에 대한 응답 빈도는 가족유형과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유형에 있어서 한부모 가정 응답자의 가출 경험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손 가정 응답자는 5.0%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양부모 가정의 응답자는 3.3%로 가장 낮았다. 학업성적의 경우 하위권의 경우가 5.6%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에서도 하위권 응답자가 6.2%로 가장 높게 응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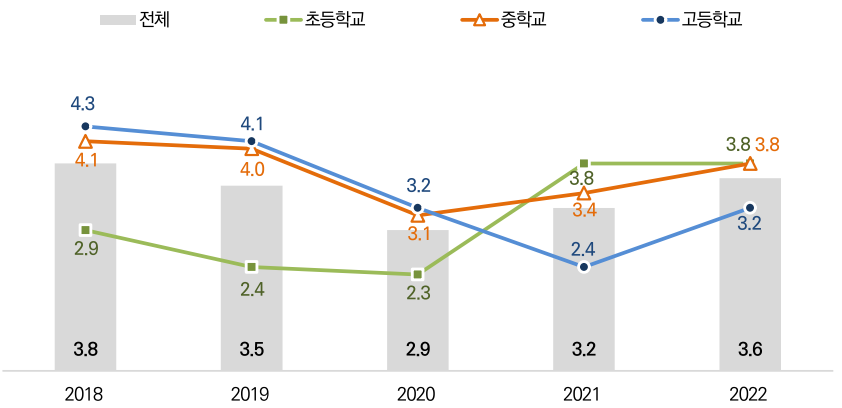
표 Ⅲ-5-15. 가출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출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없다	전체(N)	χ^2
전체		3.6	96.4	100.0(8,592)	
성별	남학생	3.8	96.2	100.0(4,112)	0.790
	여학생	3.4	96.6	100.0(4,480)	
학교급	초등학교	3.8	96.2	100.0(2,832)	2.330
	중학교	3.8	96.2	100.0(2,930)	
	고등학교	3.2	96.8	100.0(2,83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	96.7	100.0(7,588)	24.048***
	한부모가정	6.2	93.8	100.0(711)	
	조손가정	5.0	95.0	100.0(97)	
	기타	7.9	92.1	100.0(157)	
학업 성적	상	3.4	96.6	100.0(3,187)	29.345***
	중	2.7	97.3	100.0(3,558)	
	하	5.6	94.4	100.0(1,775)	
경제적 수준	상	3.2	96.8	100.0(4,957)	14.720**
	중	3.6	96.4	100.0(2,877)	
	하	6.2	93.8	100.0(684)	

**p <.01, ***p < .001.

가출 경험에 대한 응답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은 3.6%로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1년 이후 초등학생의 가출 경험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이 관찰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중, 고등학생과 달리 가출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21년과 2022년 중, 고등학생의 경험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원인 분석이 요구된다.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Ⅲ-5-7. 가출 여부: 학교급별(연도별 추이)

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출한 주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인 301명의 응답자 중, 56.6%는 부모님과의 문제로 응답했으며 21.7%는 학업문제, 8.9%는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외에 다른 요인들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가출을 경험한 학생들의 과반수는 부모님과의 문제로 인해 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5-16. 가출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문제 때문에	부모님과의 문제	학교 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기타	전체(N)	χ^2
전체		21.7	56.6	3.7	1.6	8.9	7.5	100.0(301)	
성별	남학생	22.8	54.6	3.7	2.7	8.8	7.4	100.0(154)	2.136
	여학생	20.5	58.7	3.7	0.5	9.0	7.6	100.0(146)	

구분		학업문제 때문에	부모님 과의 문제	학교 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기타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27.5	49.5	6.1	1.7	4.3	10.9	100.0(102)	16.614
	중학교	17.6	62.1	2.4	0.0	11.3	6.7	100.0(110)	
	고등학교	20.0	58.0	2.7	3.5	11.2	4.5	100.0(8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2.0	57.8	3.0	1.2	8.8	7.2	100.0(240)	22.980
	한부모가정	12.2	60.9	4.3	4.8	9.7	8.2	100.0(42)	
	조손가정	39.3	0.0	25.9	0.0	0.0	34.8	100.0(5)	
	기타	33.6	45.9	8.4	0.0	12.1	0.0	100.0(12)	
학업 성적	상	22.4	56.4	6.3	1.7	5.7	7.5	100.0(104)	10.650
	중	19.3	54.3	2.8	1.2	10.6	11.9	100.0(94)	
	하	23.3	57.9	2.0	2.0	11.2	3.6	100.0(97)	
경제적 수준	상	22.9	55.4	5.1	1.9	7.9	6.8	100.0(154)	8.831
	중	20.2	55.2	3.3	1.9	8.4	10.9	100.0(101)	
	하	20.2	62.8	0.0	0.0	14.7	2.3	100.0(41)	

*$p < .05$.

② 가정 밖(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가 있으며 그 현황과 역할, 이용대상 등은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으로 일시쉼터는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4시간 이상~7일 이내 일시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가정 밖(가출)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들도 이용 가능하며 일시쉼터는 가정 밖(가출) 청소년 발견, 보호, 상담, 먹거리 지원 등의 기능을 한다. 단기쉼터는 전국 63개소가 운영 중이며 3개월 이내 단기보호지만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기쉼터는 도심에 위치하며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진 문제 해결을 통해 가정 및 사회복귀를 돕는다. 중장기 쉼터는 39개소가 운영 중이며 3년 이내 이용 가능하며 필요 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중장기 쉼터의 목적은 장기간 보호와 사회기술 훈련, 진로지원 등을 통한 자립지원이다.

표 Ⅲ-5-17.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일시쉼터(32개소)	단기쉼터(63개소)	중장기쉼터(39개소)
기 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3년 이내 중장기보호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이용대상	가정 밖·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기 능	• 가정 밖 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결	• 가정 밖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및 예방활동 •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보호 서비

구분	일시쉼터(32개소)	단기쉼터(63개소)	중장기쉼터(39개소)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제공 •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전문기관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스 제공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198.

표 Ⅲ-5-18.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10~2021년)

(단위 : 개소, 백만 원, 명)

구분 / 연도	쉼터 수				예산	입소 청소년 수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총계		
2010	10	49	24	83	5,874	9,350
2011	10	48	25	83	6,262	11,657
2012	13	49	30	92	7,287	11,764
2013	21	50	32	103	8,137	15,242
2014	22	50	37	109	8,710	24,079
2015	26	52	41	119	10,002	25,012
2016	28	51	40	119	12,666	30,329
2017	30	53	40	123	13,565	31,197
2018	30	62	38	130	15,570	32,109
2019	31	63	40	134	18,970	32,402
2020	32	61	40	133	19,385	20,401
2021	32	63	36	134	19,556	-

*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p.160-162의 내용과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p.190-192의 내용,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p.199-201의 내용, 여성가족부(2020c).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98.의 내용, 여성가족부(202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75.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2021년부터 사업명칭 변경 :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청소년쉼터는 2010년 일시 10개소, 단기 49개소, 중장기 24개소 총 83개소에서 2021년 일시 32개소, 단기 63개소, 중장기 36개소 총 134개소로 확장하고 있으며 예산과 입소 청소년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예산의 경우 2010년 5,874백만 원에서 2021년 19,556백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입소 청소년의 수는 2010년 9,350명에서

2020년 20,401명으로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③ 가출 시 서비스 이용 기관 및 만족도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출 후 이용했던 기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194명 중 89.3%는 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기관 이용에 대한 가장 높은 응답은 청소년쉼터로 6.1%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센터) 2.0%, 청소년전화 1388 1.3%, 청소년 상담 기관 0.9% 순으로 응답되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의 이용률이 낮은 것, 가출해서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 모두 기관의 역할, 홍보 방법 등 보완할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5-19. 가출 후 이용한 기관

(단위 : %)

구분		이용해 본 적 없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 기관	청소년 수련관 (센터)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체(N)	χ^2
전체		89.3	6.1	0.9	2.0	1.3	0.4	100.0(194)	
성별	남학생	82.5	10.4	1.8	4.1	1.2	0.0	100.0(94)	14.076*
	여학생	95.8	2.0	0.0	0.0	1.4	0.8	100.0(100)	
학교급	중학교	92.3	5.8	0.9	1.0	0.0	0.0	100.0(107)	6.714
	고등학교	85.7	6.4	0.9	3.2	2.9	0.9	100.0(87)	
고교 유형	일반계고	88.2	6.8	0.0	3.7	0.0	1.3	100.0(61)	10.011
	특성화계고	79.9	5.4	2.9	2.2	9.7	0.0	100.0(26)	
지역 규모	대도시	88.4	7.3	0.0	3.3	0.0	1.1	100.0(73)	10.226
	중소도시	89.8	5.4	1.8	0.4	2.6	0.0	100.0(98)	
	읍면지역	90.4	4.9	0.0	4.7	0.0	0.0	100.0(23)	

가출 후 이용한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중, 이용한 기관이 없다는 응답과 기타 응답을 제외하고 나머지 응답에 대한 연도별 비교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가출 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응답되는 청소년 쉼터의 경우 10년에 걸쳐 증감과 감소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청소년 상담기관의 경우 2014년 높은

수준의 이용률을 보였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수련관(센터)과 청소년 전화의 경우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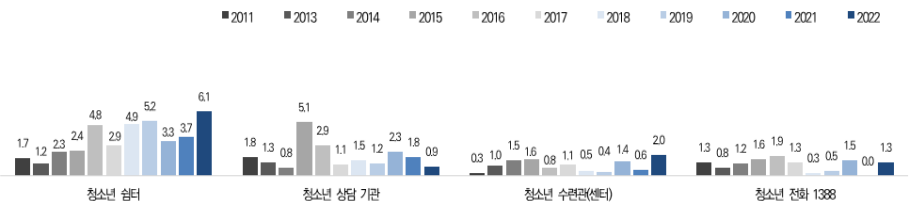


그림 Ⅲ-5-8. 가출 후 이용한 기관: 전체(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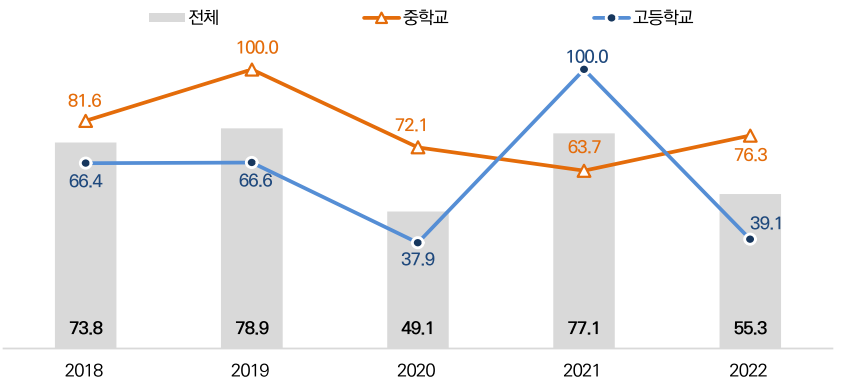
가정 밖 청소년이 가출 후 이용해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55.3%는 만족하는 편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44.7%는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5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은 하였으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6%로 높게 나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성별, 학교급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5-20.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단위 :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2.45(1.17)	31.6	13.1	33.9	21.4	100.0(22)	
성별	남학생	2.63(1.10)	22.0	16.2	38.8	22.9	100.0(18)	3.079
	여학생	1.71(1.33)	72.0	0.0	13.3	14.7	100.0(4)	
학교급	중학교	3.07(1.07)	12.5	11.2	33.5	42.8	100.0(10)	5.295
	고등학교	1.98(1.04)	46.3	14.6	34.1	5.0	100.0(12)	
고교 유형	일반계고	2.02(1.08)	40.8	25.3	25.3	8.6	100.0(7)	2.438
	특성화계고	1.92(1.11)	53.8	0.0	46.2	0.0	100.0(5)	
지역 규모	대도시	2.41(1.24)	38.2	0.0	44.6	17.2	100.0(8)	4.287
	중소도시	2.50(1.13)	25.9	18.1	36.4	19.6	100.0(10)	
	읍면지역	2.41(1.51)	32.4	30.9	0.0	36.7	100.0(3)	

가출 후 이용한 기관에 대한 만족도의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22년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5.3%였으며 중학생의 경우 76.3%, 고등학생의 경우 39.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족도에 대한 응답 분석의 경우, 응답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락폭이 연도별로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 주: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9.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연도별 추이)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1) 양육·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① 양육·보호 서비스 모니터링

가.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 27조의2(시설의 평가)에 의거, 3년 주기로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2022).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질적 수준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2019년에 이어 2022년 평가가 5~8월 진행되며 확인평가는 9월에 진행된다(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2022). 그 결과는 2023년에 발표된다. 따라서 2022년 보고서에서는 2022년에 평가지표를 제시한다. 2022년 아동복지시설 평가표는 다음과 같다.

전체 지표는 A.시설 및 환경, B.재정 및 조직운영 C.프로그램 및 서비스, D.아동의 권리, E.지역사회관계, F.시설운영 전반 총 6개 지표로 구성되며 각 지표에 세부 평가지표가 포함된다.

표 Ⅲ-5-21. 2022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2022년도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10점)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전체공통)안전관리
	A3. (전체공통)응급상황 및 화재예방 안전체계 구축
	A4. 기본시설의 적절성 및 충분성
	A5. 식품보관 위생상태
B. 재정 및 조직 운영 (25점)	B1. (전체공통)사업비
	B2. (전체공통)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B3.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B4. (전체공통)사회적가치 실현기업 구매 금액(배점)
	B5. (전체공통)직원충원율
	B6.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B7. (전체공통)직원교육 활동비 및 내·외부교육 참여시간
	B8.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B9. (전체공통)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 부장)의 전문성
	B10. (전체공통)직원교육
	B11. (전체공통)직원복지
	B12. (전체공통)직원의 권리 및 안전보장(배점)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점)	C1.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C2. 초기적응 프로그램
	C3.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C4. 퇴소지원 프로그램
	C5. 일지 및 입·퇴소 관련 기록
	C6. 개별서비스 사정의 체계성
	C7. 개별서비스 수행의 전문성
	C8.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 조사
	C9. 건강한 식사지원
	C10. 가족·연고자 연계 서비스
	C11. 초등생 이상 아동 멘토-멘티 결연 실적
	C12. 특성화 사업 Ⅰ, Ⅱ
	C13. 자립지원 및 자립준비의 적절성

2022년도 평가지표	
D. 아동의 권리 (15점)	D1. (전체공통)비밀보장
	D2. (전체공통)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D3. (전체공통)고충처리
	D4. (생활공통)서비스 정보제공
	D5. (생활공통)서비스과정 참여 및 자기 결정권
	D6. 인권진정함 설치·운영
	D7. 아동의 인권보호
	D8.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E. 지역사회 관계 (10점)	E1.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E2.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E3. (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E4. 지역사회 연계
	E5. 지역사회 연계
F. 시설운영 전반 (5점)	F1. (전체공통)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수준(시설장 인터뷰)
	F2. (전체공통)서비스 질적 수준(직원 인터뷰)
	F3. (전체공통)자체평가의 정확성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2). 2022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 지침. p.28~30.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의 배점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배점 되었고, 다음으로 재정 및 조직운영 25점, 아동의 권리 15점, 시설 및 환경과 지역사회 관계 10점, 시설 운영 전반에 5점이 배점되었다.

표 Ⅲ-5-22.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배점

2022년도 평가영역별 배점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A. 시설 및 환경	10
B. 재정 및 조직운영	25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D. 아동의 권리	15
E. 지역사회 관계	10
F. 시설운영전반	5
총계	100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2). 2022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 지침.p. 27.

2019년 아동복지시설의 평가 결과에서는, 총 285개 시설 중 A등급 193개소(67.7%), B등급 61개소(21.4%), C등급 15개소(5.3%), D등급 5개소(1.8%), F등급 11개소(3.9%)로 나타나 평가결과가 미흡(D, F)인 기관은 5.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등급의 경우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평가결과 미흡(D, F등급)은 시설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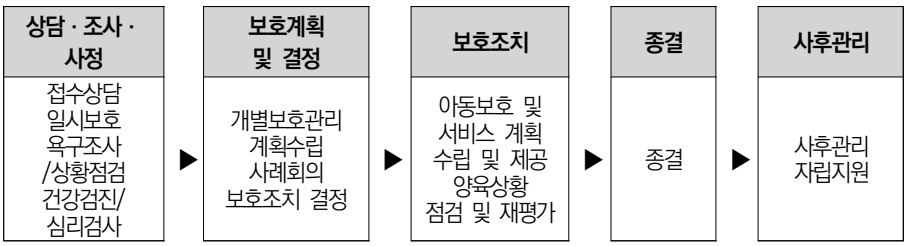
표 Ⅲ-5-23. 아동생활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연도	시설 수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아동권리	지역사회 관계
2010	266	88.4	94.8	83.5	85.6	88.6	94.0	88.8
2013	275	90.0	95.0	88.2	85.1	92.0	95.4	85.0
2016	281	89.6	94.8	86.7	85.1	91.5	92.0	86.2
2019	285	88.8	92.2	81.2	83.7	93.0	90.1	87.6
2019 세부결과	A : 193개소 / B : 61개소 / C : 15개소 / D : 5개소 / F : 11개소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2017.2.15). 보도자료: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2020.3.31.). 보도자료: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1,258개소)평가 발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0).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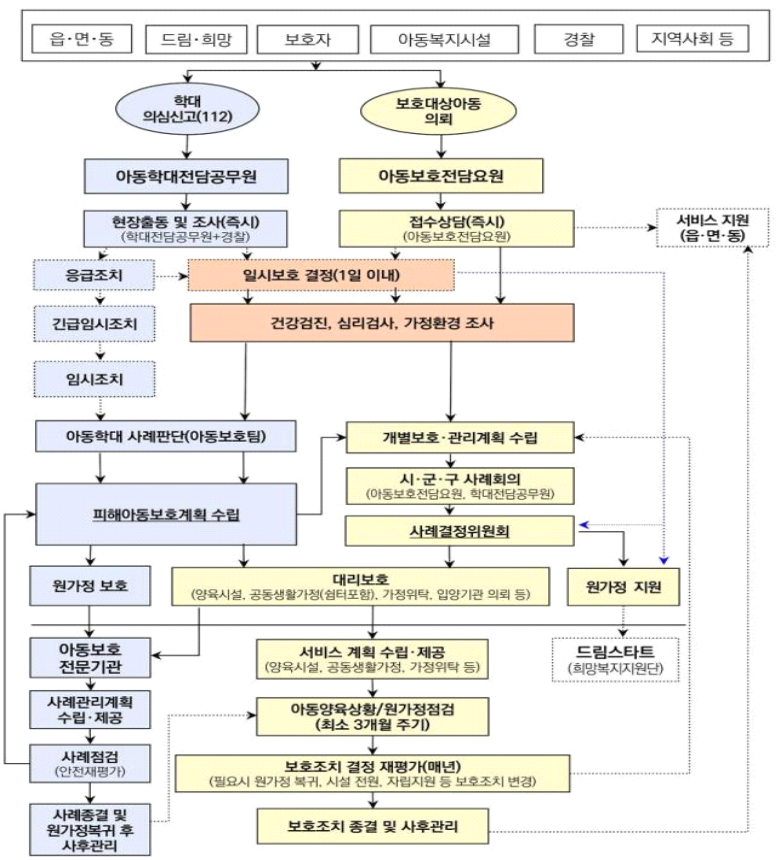
나. 아동보호체계

「아동복지법」 제4조에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해야 하며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a). 따라서 국가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a).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고 전담요원을 활용한 공적 보호체계가 다음과 같이 마련되었다. 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는 다음의 절차에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고, 조사하고, 보호하고, 종결 및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b).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16.

그림 Ⅲ-5-10.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a).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63.

그림 Ⅲ-5-11.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역할

4) 소결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네 번째 대분류는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이다. 첫 번째 중분류인 '부모의 지도와 책임'의 지표는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회조사 결과 중 '부모와의 관계'를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13~19세 응답자가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 50.6%, 약간만족 30.4%로 전체 응답자의 81%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에서 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현황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33,246개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데, 보육시설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가정형 어린이집이 13,891개소로 가장 많았다. 2021년 재원 아동 수는 1,184,716명이었으며 민간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535,4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이용률은 2021 기준 국공립이 8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영역을 보면, 2021년도 전체 참여율은 28.9%이며 초등학교 35.3%, 중학교 15.3%, 고등학교 29.8%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은 전체 264,442개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교과 50%(132,010개)와 특기적성 50%(132,321개)). 전체 만족도는 84.4점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0년 기준 전국에 4,008개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106,510명이다. 구체적으로 미취학 아동 1,900명, 초등학생 저학년 40,199명, 고학년 43,492명, 중학생 17,207명, 고등학생 3,578명, 탈학생 134명이 이용 중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21년 기준으로 전국 33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 인원은 13,14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적인 만족도는 4.09점(표준편차=.63)으로 81.8점에 해당한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 사업은 2022년 10월 기준 서울(220개소)과 경기(206개소) 등 전국 785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7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영역 첫 지표로 입양률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에 전체 입양된 아동의 수는 총 415명(국내 54.5%(226명) / 국외 45.5%(189명))으로 집계되었다.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입양 이후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양부모와 입양아동 간 상호작용 모니터링, 양육정보 제공, 수시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22a). 입양 후 입양아동의 보호, 적응을 위해 담당자에 의한 사후관리 외에도 민간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적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입양가족 교육 및 심리상담지원,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고위험 위기 입양가정 지원 등이 있다. 다음으로 '4-2-2. 대안양육 비율'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보호아동은 2021년 3,437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보호아동 3,437명 중, 빈곤, 실직, 학대, 부모이혼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경우가 77.4%(2,661명)로 가장 많았다. 3,437명 중 63.5%인 2,183명은 시설에 입소되어 보호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4.3%인 1,179명은 가정위탁, 나머지 2.2%는 입양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안적 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2020년 전체 9,923명이 위탁되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65.9%인 6,542명은 친·외조부모의 대리양육을 통해 위탁되었다.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보호아동 현황은 2020년 12월 기준 전국 59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3,126명의 아동·청소년이 이용 중에 있다. 가정 밖(가출) 청소년 관련 지표는 다음과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 8,592명 중 3.6%가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는데 가출한 주된 이유는 56.6%가 부모님과의 문제로 응답했으며 21.7%는 학업문제, 8.9%는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가정 밖(가출) 청소년들이 가출 후 이용할 수 있는 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가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일시쉼터는 32개소, 단기쉼터는 전국 63개소, 중장기 쉼터는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가출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출 후 이용했던 기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 89.3%는 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응답자는 6.1%에 불과했다.

'4-3.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영역에서는 아동생활시설 평가 위주로 지표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아동생활시설평가는 3년 주기로 진행된다. 2022년 평가가 5~8월 진행 되었으며 그 결과는 2023년에 발표된다. 전체 지표는 A.시설 및 환경, B.재정 및 조직운영 C.프로그램 및 서비스, D.아동의 권리, E.지역사회관계, F.시설운영 전반 총 6개 지표로 구성되면 각 지표에 세부 평가지표가 포함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등급의 경우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평가결과 미흡(D, F등급)은 시설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2022). 아동의 보호체계의 경우 정부에서는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였고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공적 보호체계가 마련되었다.

6.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1) 장애

(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①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사 수

특수교육 현황에 대한 지표 제시에 앞서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은 1.8%로 전년도인 2021년 1.7%에 비해 0.1%p 증가하였으며 2013년 1.2%에 비해서는 0.6%p 증가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표에서 보듯,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6-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2013~2022)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율(%)	1.2	1.2	1.3	1.3	1.4	1.4	1.5	1.6	1.7	1.8

* 출처: 교육부(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3.

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활용하여 수집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특수학교의 수는 192개로 전년 대비 5개교 증가하였다.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12,712학급으로 전년대비 670학급 증가한 수치이다. 교원수는 24,962명으로 2021년 23,494명 대비 1,468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전체 103,695명으로 전년대비 5,541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10만 명을 넘어섰다. 세부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상자는 증가하였으며 장애영아, 고등학교, 전공과 대상자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Ⅲ-6-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2016~2022년)

(단위: 교, 학급, 명)

연도	특수 학교 수	특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수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2016	170	10,065	656	5,186	33,770	19,793	23,943	4,602	87,950	18,772
2017	173	10,325	549	5,437	35,505	19,218	23,655	4,989	89,353	19,327

연도	특수 학교 수	특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수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2018	175	10,676	582	5,630	38,031	18,788	22,584	5,165	90,780	20,039
2019	177	11,105	532	5,989	41,091	18,462	21,502	5,382	92,958	20,773
2020	182	11,661	439	6,536	43,205	19,140	20,655	5,445	95,420	22,145
2021(A)	187	12,042	369	7,197	44,814	20,212	20,169	5,393	98,154	23,494
2022(B)	192	12,712	359	8,248	48,448	21,462	19,867	5,311	103,695	24,962
B-A	5	670	-10	1,051	3,634	1,250	-302	-82	5,541	1,468

* 출처: 교육부(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5.

②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보육비율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비장애 영유아와 함께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이자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같은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어린이집에서 보육 받을 수 있는 장애아 통합보육(한국보육진흥원, 2018)을 운영하는 장애아전문·통합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장애아전문·통합시설은 장애아전문시설과 장애아통합시설로 나뉘는데, 장애아전문시설의 경우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미취학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이며,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 및 정원의 20%이내에서 장애아 종일반을 편성 및 운영하거나 또는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통계청 e나라지표. 장애아전문, 통합 어린이집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5#quick_02.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2021년 기준 장애아전문시설은 178개소, 장애아동통합시설은 1,317개소가 운영 중이다. 2012년에 비교하여 장애아전문시설은 10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장애아통합시설의 경우 481개소가 증가하였다.

표 Ⅲ-6-3. 장애아전문·통합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07	1,039	1,046	1,074	1,088	1,124	1,177	1,276	1,388	1,495
장애아전문시설	171	172	174	175	177	178	177	176	177	178
장애아통합시설	836	867	872	899	911	946	1,000	1,100	1,211	1,317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장애아전문, 통합 어린이집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5#quick_02: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 원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22년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103,695명 중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은 27.2%(28,233명)이었으며 72.8%인 75,462명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되었다. 세부적으로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57,948명(55.9%)이었으며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17,514명(16.9%)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성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교육 대상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특수학교 배치자는 2018년 29.0%에서 2022년 27.2%로 줄어들고, 일반학교 배치자는 2018년 71.0%에서 2022년 72.8%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배치율은 2018년 17.2%에서 2022년 16.9%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6-4.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2018~2022년)

(단위 : 명(%))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소계	
2018	26,337(29.0)	48,848(53.8)	15,595(17.2)	64,443(71.0)	90,780(100.0)
2019	26,459(28.4)	50,812(54.7)	15,687(16.9)	66,499(71.5)	92,958(100.0)
2020	26,615(27.9)	52,744(55.3)	16,061(16.8)	68,805(72.1)	95,420(100.0)
2021	27,288(27.8)	54,266(55.3)	16,600(16.9)	70,866(72.2)	98,154(100.0)
2022	28,233(27.2)	57,948(55.9)	17,514(16.9)	75,462(72.8)	103,695(100.0)

* 출처: 교육부(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6., p. 21.

③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일반학급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졸업 및 진학률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2년 기준 특수학교 졸업자 2,167명 중 60.3%는 상급학교로 진학했으며 2.7%는 취업, 37.0%는 비진학 및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졸업자의 경우 전체 3,497명 중 51.3%가 진학, 16.0%가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일반학급 졸업자의 경우는 전체 1,098명 중 63.6%가 진학하고, 4.8%가 취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 6,762명 중 진학 56.2%, 취업 9.9%, 비진학 및 미취업 33.9%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취업률과 비진학·미취업은 감소하고 진학률만 증가한 수치이다.

표 Ⅲ-6-5.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단위 : %(명))

연도	구분	졸업자(명)	진학률(명)	취업률(명)	비진학·미취업(명)
2018	특수학교	2,454	53.8 (1,321)	4.0 (97)	42.2 (1,036)
	특수학급	4,101	40.6 (1,667)	20.1 (824)	39.3 (1,610)
	일반학급	1,256	54.1 (680)	6.8 (85)	39.1 (491)
	계	7,811	47.0 (3,668)	12.9 (1,006)	40.2 (3,137)
2019	특수학교	2,447	55.7 (1,364)	2.6 (64)	41.6 (1,019)
	특수학급	3,952	43.2 (1,707)	18.2 (718)	38.6 (1,527)
	일반학급	1,328	55.8 (741)	5.2 (69)	39.0 (518)
	계	7,727	49.3 (3,812)	11.0 (851)	39.7 (3064)
2020	특수학교	2,386	57.3 (1,366)	6.3 (64)	36.4 (956)
	특수학급	3,796	44.9 (1,705)	34.2 (716)	20.9 (1,375)
	일반학급	1,157	57.4 (664)	13.2 (65)	29.4 (428)
	계	7,339	50.9 (3,735)	23.4 (845)	25.7 (2,759)
2021	특수학교	2,108	58.6 (1,235)	2.9 (61)	38.5 (812)
	특수학급	3,614	49.5 (1,789)	17.0 (617)	33.4 (1,208)
	일반학급	1,105	63.0 (696)	4.9 (54)	32.1 (355)
	계	6,827	54.5 (3,720)	10.7 (732)	34.8 (2,375)
2022	특수학교	2,167	60.3 (1,307)	2.7 (59)	37.0 (801)
	특수학급	3,497	51.3 (1,795)	16.0 (559)	32.7 (1,143)
	일반학급	1,098	63.6 (698)	4.8 (53)	31.6 (347)
	계	6,762	56.2 (3,800)	9.9 (671)	33.9 (2,291)

* 출처: 교육부(2018, 2019, 2020, 2021a, 2022). 2018~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9.

④ 장애 아동·청소년 학대 현황

비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또한 가정, 시설 등 장애아동이 속한 곳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2)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는 322건 이었으며 그 중 166건이 학대 사례, 37건은 잠재위험 사례로 판정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4.8% 증가한 수치이다(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성별과 연령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남자 장애 아동의 경우 전체 학대 피해 사례 166건 중 63.9%이고 여자 장애 아동은 36.1%로 남자 장애 아동의 피해 사례가 더 많았으며 연령별로 보면 10~12세가 26.5%, 13~15세 25.9%, 7~9세 19.9%, 16~17세 17.5%, 3~6세 9.0%, 0~2세 1.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6-6. 학대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구 분	0~2세		3~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계	
남	1	0.6	12	7.2	22	13.3	24	14.5	29	17.5	18	10.8	106	63.9
여	1	0.6	3	1.8	11	6.6	20	12.0	14	8.4	11	6.6	60	36.1
계	2	1.2	15	9.0	33	19.9	44	26.5	43	25.9	29	17.5	166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2). 2021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p.170.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유형의 경우 전체 166명의 학대피해 아동 중 지적장애가 6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폐성장애 16.3%, 미등록 7.8%, 뇌병변장애 5.4%, 청각장애 3.6%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살펴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비율이 97.4%,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은 2.6%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대부분은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7. 학대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

(단위: 건/%)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1	0.6
뇌병변장애	9	5.4
시각장애	1	0.6
청각장애	6	3.6
지적장애	109	65.7
자폐성장애	27	16.3
미등록	13	7.8
계	166	100.0

장애정도	건수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149	97.4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경증장애인)	4	2.6
계	153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2). 2021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p.171~172.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유형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아동이 가장 많이 당한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로 전체 대상자의 4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복 학대 22.3%, 정서적 학대 13.9%, 성적 학대 12.0%, 방임 7.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8. 장애아동 학대유형

(단위: 건/%)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73	44.0
정서적 학대	23	13.9
성적 학대	23	12.0
경제적 착취	-	-
유기	-	-
방임	13	7.8
중복 학대	37	22.3
계	166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2). 2021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p.179.

2) 생존 및 발달

(1) 사망률

① 영아 · 아동 · 청소년 사망률

2021년 전체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당 2.4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아의 경우 2.6% 여아의 경우 2.2%로 남아의 영아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영아 사망률을 생후 27일 기준으로 나누는 신생아 사망률과 신생아 후기 사망률로 나누는데 출생 후 27일 이내에 사망한 신생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당 1.3명(남아 1.3명/여아 1.2명)이었으며 신생아 후기 사망률은 1.2명(남아 1.3명/여아 1.0명)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영아 사망률은 2016년 3.1명에서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6-9. 연도별 영아사망률(2016~2021년)

(단위 : 명/1,000명 당)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신생아 사망률	1.7	1.4	1.6	1.7	1.3	1.5	1.8	1.4	1.6	1.6	1.5	1.5	1.4	1.1	1.3	1.3	1.2	1.3
신생아 후기사망률	1.3	1.1	1.2	1.4	1.1	1.3	1.3	1.1	1.2	1.4	1.0	1.2	1.4	1.0	1.2	1.3	1.0	1.2
영아 사망률	3.1	2.6	2.8	3.1	2.5	2.8	3.2	2.5	2.8	3.0	2.4	2.7	2.8	2.2	2.5	2.6	2.2	2.4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영아사망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8&vw_cd=MT_ZTITLE&list_id=F_27&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2&path=%252Fcommon%252Fmeta_onedepth.jsp에서 2022년 10월 11일 인출.
* 원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01054호).

* 주: 1) 영아사망률: (당해연도 0세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2) 통계청으로 통합된 이후 첫 조사(2012년 실시, 2009~2011년 대상) 이후 매년 작성

0세부터 24세까지의 사망률은 다음과 같다. 0세의 경우 10만 명당 241.2명, 1세~4세 11.2명, 5~9세 6.0명, 10~14세 10.1명, 15~19세 22.4명, 20~24세 35.8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 0세의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24세, 15~19세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Ⅲ-6-10.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2016~2021년)

(단위: 명/10만 명당 사망자 수)

연령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0세	1,154	282.1	1,000	270.5	931	280.7	822	268.3	674	240.6	626	241.2
1~4세	278	15.2	261	14.7	220	13.0	233	14.5	185	12.5	151	11.2
5~9세	205	8.7	210	8.9	177	7.6	178	7.7	142	6.2	136	6.0
10~14세	193	8.0	197	8.4	221	9.5	184	8.0	203	8.8	237	10.1
15~19세	718	22.5	626	20.6	620	21.6	610	22.4	563	22.1	536	22.4
20~24세	1,131	32.0	1,087	31.1	1,144	33.3	1,126	33.6	1,118	34.2	1,138	35.8

* 출처: 통계청 KOSIS(2016~2021).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2년 10월 11일 인출.

*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② 사고 사망률

사고에 의한 아동·청소년 사망률 집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0세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1.2명, 1~4세 4.1명, 5~9세 1.8명, 10~14세 4.7명, 15~19세 15.4명, 20~24세 25.9명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 20~24세가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0세, 15~19세 등의 순으로 높은 사고 사망률을 보였다.

표 Ⅲ-6-11. 사고 사망률(2016~2021년)

(단위 : 명/10만 명당)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0세	15.2	14.9	12.7	16.6	20.0	21.2
1~4세	4.1	4.7	4.0	4.7	3.5	4.1
5~9세	2.7	3.3	2.4	2.9	2.4	1.8
10~14세	3.0	3.1	3.7	3.4	3.7	4.7
15~19세	14.5	13.1	13.9	14.4	15.6	15.4
20~24세	21.6	20.5	22.6	23.6	24.8	25.9

* 출처: 통계청 KOSIS(2016~2021).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2년 10월 11일 인출.

*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 사망원인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분류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에 대한 집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 운수사고의 경우 20~24가 10만 명당 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락사고는 0세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익사사고의 경우 0세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사고는 5~9세가 0.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독사고는 20~24세가 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살은 20~24세가 20.4명, 15세~19세 11.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타살은 0세가 5.4명, 1~4세가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12.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2017~2021년)

(단위 : 명/10만 명당)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2017	0세	0.5	0.8	0.3	-	-	-	4.6
	1~4세	1.5	0.8	0.6	-	0.1	-	1.0
	5~9세	1.2	0.3	0.3	0.2	-	0.0	0.9
	10~14세	0.7	0.1	0.2	0.1	0.0	1.5	0.1
	15~19세	4.3	0.4	0.5	0.2	0.1	7.2	0.1
	20~24세	4.6	0.5	0.5	0.0	0.3	13.3	0.3
2018	0세	0.3	0.9	0.3	-	-	-	2.7
	1~4세	0.9	1.1	0.4	-	0.1	-	0.9
	5~9세	1.0	0.2	0.2	0.2	0.1	0.0	0.6
	10~14세	0.6	0.1	0.2	0.1	0.0	2.1	0.1
	15~19세	3.6	0.2	0.5	0.1	0.2	8.7	0.1
	20~24세	4.5	0.4	0.4	0.2	0.3	15.3	0.4
2019	0세	1.0	1.0	0.7	-	-	-	4.9
	1~4세	1.2	0.6	0.6	0.1	-	-	1.0
	5~9세	0.9	0.3	0.3	0.0	0.0	0.1	0.9
	10~14세	0.4	0.3	0.3	-	-	2.1	0.4
	15~19세	3.0	0.4	0.6	0.1	0.1	8.5	0.3
	20~24세	3.9	0.3	0.2	0.1	0.2	17.8	0.4
2020	0세	0.4	1.4	0.4	-	-	-	6.1
	1~4세	0.6	0.9	0.5	0.3	0.1	-	0.7
	5~9세	0.7	0.3	0.2	0.3	-	0.1	0.6
	10~14세	0.2	0.3	0.2	0.2	0.1	2.1	0.3
	15~19세	3.7	0.2	0.5	0.0	0.1	10.4	0.2
	20~24세	3.0	0.3	0.4	-	0.1	19.6	0.6
2021	0세	0.8	1.5	1.5	-	-	-	5.4
	1~4세	0.6	1.0	0.4	0.1	0.1	-	1.3
	5~9세	0.6	0.2	0.2	0.2	-	0.0	0.4
	10~14세	0.5	0.1	0.2	0.1	-	3.2	0.3
	15~19세	3.2	0.2	0.5	-	0.1	11.0	0.1
	20~24세	3.4	0.5	0.4	0.0	0.2	20.4	0.3

* 출처: 통계청 KOSIS(2017~2021).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2년 10월 11일 인출(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서 2레벨 선택).

*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2)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밭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3) 추락 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2) 안전에 대한 인식률

① 범죄 피해율

2021년 강력범죄, 절도, 폭력 등 다양한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피해 받은 수치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한 만 20세 이하 청소년의 수는 총 9,027,614명이며 이 중 0.9%인 84,610명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남자 아동·청소년은 4,649,020명 중 1.0%인 45,624명이었으며 여자 아동·청소년은 4,378,594명의 0.9%인 38,986명이었다. 범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지능범죄의 피해자가 12,1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폭력범죄가 11,152명, 기타범죄 8,116명, 교통범죄 7,168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지능범죄 10,341명, 기타범죄 8,906명, 폭력범죄 5,275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전체 범죄 피해율은 0.9%~1.1% 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13.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1](2017~2021년)

(단위 : 건, %)

구분		남자 아동·청소년		여자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전체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2017	강력범죄[2]	627	8.0	7,237	92.0	7,864	100.0
	절도	10,532	72.1	4,277	27.9	14,609	100.0
	폭력범죄[3]	18,691	71.0	7,607	29.0	26,244	100.0
	지능범죄[4]	12,066	62.8	7,149	37.2	19,215	100.0
	풍속범죄	113	4.8	2,229	95.2	2,342	100.0
	교통범죄	13,643	68.8	6,198	31.2	19,841	100.0
	기타범죄	4,244	45.0	5,121	55.0	9,381	100.0
	계	59,916	60.1	39,818	39.9	99,496	100.0
	피해율	59,916/5,383,235(1.1)		39,818/5,027,343(0.8)		99,496/10,410,578(1.0)	
2018	강력범죄	643	9.1	6,422	90.9	7,065	100.0
	절도	8,772	70.6	3,650	29.4	12,422	100.0
	폭력범죄	17,310	69.4	7,640	30.6	24,950	100.0
	지능범죄	13,996	64.9	7,582	35.1	21,578	100.0
	풍속범죄	121	5.3	2,159	94.7	2,280	100.0
	교통범죄	11,733	66.1	6,016	33.9	17,749	100.0
	기타범죄	4,101	43.2	5,395	56.8	9,496	100.0
	계	56,676	59.3	38,864	40.7	95,540	100.0
	피해율	56,676/5,204,957(1.1)		38,864/4,868,419(0.8)		95,540/10,073,376(0.9)	
2019	강력범죄	607	8.8	6,290	91.2	6,897	100.0
	절도	8,905	70.4	3,749	29.6	12,654	100.0
	폭력범죄	15,902	68.1	7,450	31.9	23,352	100.0
	지능범죄	15,554	63.8	8,828	36.2	24,382	100.0
	풍속범죄	124	5.1	2,299	94.9	2,422	100.0
	교통범죄	10,976	65.2	5,855	34.8	16,801	100.0

구분		남자 아동·청소년		여자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전체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기타범죄	4,864	44.8	5,993	55.2	10,857	100.0
	계	56,932	58.4	40,464	41.6	97,365	100.0
	피해율	56,932/5,029,754(1.1)		40,464/4,715,205(0.9)		97,365/9,744,959(1.0)	
2020	강력범죄	478	8.1	5,400	91.9	5,878	100.0
	절도	7,060	72.2	2,717	27.8	9,777	100.0
	폭력범죄	13,481	68.3	6,262	31.7	19,743	100.0
	지능범죄	17,428	58.0	12,609	42.0	30,037	100.0
	풍속범죄	141	5.1	2,619	94.9	2,760	100.0
	교통범죄	9,352	66.9	4,628	33.1	13,980	100.0
	기타범죄	5,551	45.5	6,645	54.5	12,196	100.0
	계	53,491	56.7	40,880	43.3	94,371	100.0
	피해율	53,491/4,847,451(1.1)		40,880/4,554,063(0.9)		94,371/9,401,514(1.0)	
2021	강력범죄	437	7.7	5,206	92.3	5,643	100.0
	절도	5,705	71.3	2,302	28.7	8,007	100.0
	폭력범죄	11,152	67.9	5,275	32.1	16,427	100.0
	지능범죄	12,175	54.1	10,341	45.9	22,516	100.0
	풍속범죄	421	11.7	3,168	88.3	3,589	100.0
	교통범죄	7,618	66.8	3,788	33.1	11,406	100.0
	기타범죄	8,116	47.7	8,906	52.3	17,022	100.0
	계	45,624	53.9	38,986	46.1	84,610	100.0
	피해율	45,624/4,649,020(1.0)		38,986/4,378,594(0.9)		84,610/9,027,614(0.9)	

* 출처: 경찰청(2017~2019). 2017~2019 경찰범죄통계.
경찰청(2020). 2020 경찰범죄통계. pp.466-467.
경찰청(2021). 2021 경찰범죄통계. pp.474-47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에서 2021년 9월 12일 인출.

* 주: 1) 피해율: 전체, 성별에 따른 전체 피해 건수/해당연도 만 20세 이하 인구*100
(피해자 연령: 만 나이를 적용하여 산정)
2) 강력범죄: 살인미·기수, 강도, 강간 등
3) 폭력범죄: 상해, 폭행, 협박 등
4) 지능범죄: 통화, 문서·인장, 사기, 횡령 등
5) 전체인구: 2021년 20세 이하 청소년 총 9,027,614명(남:4,649,020명/여:4,378,594명)

②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응답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 수준과 관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8,820명 중 85.9%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4.1%는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안전하다고 느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보다는 초등학생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에 비해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 응답자의 경우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다고 인식했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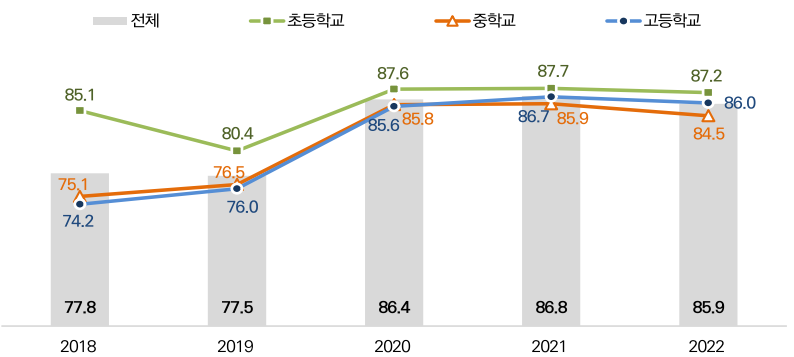
표 Ⅲ-6-14.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5(0.73)	3.1	11.0	53.6	32.3	100.0(8,820)	
성별	남학생	3.26(0.75)	3.6	8.3	47.2	40.9	100.0(4,254)	311.685***
	여학생	3.05(0.70)	2.7	13.5	59.5	24.3	100.0(4,566)	
학교급	초등학교	3.23(0.75)	3.3	9.6	48.0	39.2	100.0(2,987)	106.621***
	중학교	3.10(0.72)	2.9	12.7	56.4	28.1	100.0(2,980)	
	고등학교	3.12(0.72)	3.2	10.7	56.4	29.6	100.0(2,853)	
지역 규모	대도시	3.17(0.74)	3.1	10.7	52.1	34.2	100.0(3,329)	11.099
	중소도시	3.13(0.73)	3.2	11.3	54.9	30.6	100.0(4,157)	
	읍면지역	3.16(0.73)	3.1	10.8	53.1	33.0	100.0(1,33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6(0.72)	2.9	10.6	53.9	32.6	100.0(7,779)	64.637***
	한부모가정	3.03(0.74)	3.9	14.2	56.5	25.4	100.0(731)	
	조손가정	3.15(0.91)	6.9	13.7	36.5	42.8	100.0(100)	
	기타	3.12(0.93)	8.1	12.8	37.8	41.3	100.0(172)	
경제적 수준	상	3.23(0.72)	2.7	9.4	50.5	37.4	100.0(5,089)	213.773***
	중	3.08(0.71)	3.2	11.3	59.2	26.2	100.0(2,954)	
	하	2.90(0.78)	5.1	20.6	53.6	20.7	100.0(699)	

**p < .01, ***p < .001.

지역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22년은 85.9%가 안전하다고 인식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2020년 큰 폭으로 상승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연도별 추이)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범죄에 이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79.8%가 안전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평균은 2.98(표준편차=0.73)점으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 학교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안전하다고 인식했으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있어서 양부모가정의 응답자가 한부모, 조손가정의 응답자에 비해 안전하게 인식했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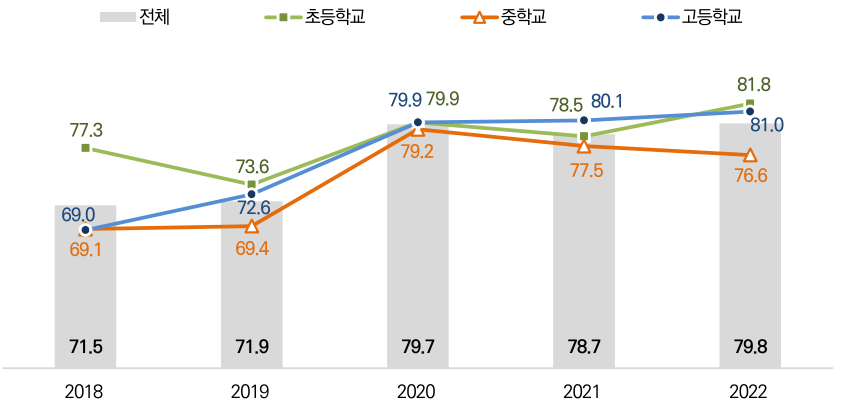
표 Ⅲ-6-15.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8(0.73)	3.7	16.5	58.3	21.5	100.0(8,778)	
성별	남학생	3.04(0.75)	4.2	13.8	56.2	25.8	100.0(4,228)	119.187***
	여학생	2.92(0.70)	3.3	19.0	60.3	17.4	100.0(4,550)	
학교급	초등학교	3.03(0.74)	3.8	14.3	56.8	25.0	100.0(2,961)	62.977***
	중학교	2.91(0.72)	3.9	19.5	58.5	18.1	100.0(2,974)	
	고등학교	2.99(0.71)	3.4	15.6	59.7	21.3	100.0(2,844)	
지역 규모	대도시	2.99(0.74)	3.7	16.8	56.1	23.4	100.0(3,312)	19.306**
	중소도시	2.96(0.71)	3.6	16.7	60.0	19.7	100.0(4,139)	
	읍면지역	2.99(0.73)	4.1	15.1	58.7	22.1	100.0(1,32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8(0.72)	3.4	16.2	59.0	21.4	100.0(7,744)	57.207***
	한부모가정	2.86(0.76)	5.3	20.4	56.9	17.4	100.0(726)	
	조손가정	2.92(0.92)	10.2	15.4	46.5	27.8	100.0(100)	
	기타	3.05(0.88)	6.6	15.9	43.3	34.2	100.0(170)	
경제적 수준	상	3.03(0.72)	3.2	15.1	57.0	24.7	100.0(5,068)	115.635***
	중	2.92(0.70)	3.9	17.1	61.9	17.1	100.0(2,939)	
	하	2.79(0.79)	6.8	23.0	54.3	15.9	100.0(695)	

***$p < .001$.

지역사회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식에 대한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22년 조사결과 안전한 편이라고 응답한 79.8%의 수치는 최근 5년 간 조사결과 중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전년에 비해 1.1%p 상승한 값이다.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 인식 역시 2020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를 유지 중에 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연도별 추이)

3) 보건서비스

(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① 보건교사 배치율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학교 내 보건교사의 배치는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실제 보건교사 배치율은 모든 학교를 포괄하지 않는다. 2021년 기준 전체 11,964개의 초, 중, 고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8,839명으로 배치율은 73.9%에 그친다. 교급별로 초등학교 78.2%, 중학교 64.7%, 고등학교 74.8%, 특수학교 80.7%이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보건이 더욱 중요성을 더 해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보건교사 배치 증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표 Ⅲ-6-16. 보건교사 배치현황(2018~2021년)

(단위 : 개교,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2018	학교 수	6,064	3,214	2,358	175	11,811
	교사 수 (배치율)	4,343 (71.6)	1,770 (55.0)	1,683 (71.3)	140 (80.0)	7,936 (67.1)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2019	학교 수	6,087	3,214	2,356	177	11,657
	교사 수 (배치율)	4470 (73.4)	1,859 (57.8)	1,706 (72.4)	143 (80.8)	8,035 (69.1)
2020	학교 수	6,120	3,223	2,367	182	11,892
	교사 수 (배치율)	4,562 (74.5)	1,972 (61.2)	1,701 (71.9)	146 (80.2)	8,381 (70.5)
2021	학교 수	6,157	3,245	2,375	187	11,964
	교사 수 (배치율)	4,814 (78.2)	2,098 (64.7)	1,776 (74.8)	151 (80.7)	8,839 (73.9)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c). 2021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1&publSeq=2&menuSeq=0&itemCode=02#에서 10월 11일 인출.(각 학교급별 직위별 교원수(2)에서 발췌).

표 Ⅲ-6-17.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율(2015~2021년)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건교사 배치율	63.9	64.3	64.5	67.1	69.1	70.5	73.9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c). 2021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1&publSeq=2&menuSeq=0&itemCode=02#에서 10월 11일 인출.

②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 현황

아동·청소년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전문 응급센터 포함),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에 따라 수익성, 공공성, 지역별 공급 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2022년은 전년도와 변화 없이 전국 10개의 진료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소아에 특화된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구, 부산 등 총 8곳이 운영 중이며 소아응급실은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야간시간 및 휴일까지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은 현재 35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다.

표 Ⅲ-6-18.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의료기관 유형	운영 현황	개소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서울(4), 대전(1), 대구(1), 광주(1), 강원(1), 전북(1), 경남(1)	10
소아전문 응급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 서울(3), 인천(1), 경기(1), 충남(1), 대구(1), 부산(1) 소아전용응급실 : 울산(1), 경기(1)	8(2)
달빛 어린이병원	서울(4), 경기(8), 인천(1), 대전(3), 부산(3), 대구(2), 강원(1), 충남(1), 충북(2), 전북(2), 경남(5), 제주(2)	35

* 출처: 보건복지부(2022h) 내부자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현황.
보건복지부(2022g). 내부자료: 소아전문응급센터 사업 설명자료.
달빛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jsessionid=E637543A5301B29307DE6C3234DB57F8.egenlb?infoDiv=03에서 2022년 10월 11일 인출.

③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과 연계되는 Wee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청소년 안전망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접근성 높고, 청소년 문화에 맞춘 상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여성가족부, 2022a) 전국 94.3%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어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대전(50.0%), 강원(73.7%) 등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한 설립 방안이 필요하다.

표 Ⅲ-6-19.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21	24	15	8	9	5	2	5	-	32	13	12	15	14	22	22	21	2
계	238	25	16	9	10	6	3	6	1	33	14	13	16	15	23	23	22	3
설치율	94.3	96.2	94.1	100	81.8	100	50.0	83.3	100	100	73.7	100	100	100	100	95.8	100	100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238.

나. Wee프로젝트 운영 현황

학교, 지역사회 등에 설치되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위기학생 안전망인 Wee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Wee클래스는 2021년 8월 기준 8,059개소가 운영 중이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Wee센터는 일반형 204개소, 가정형 21개소, 병원형 13개소가 운영 중이다. Wee스쿨은 15개교가 있어 전년도에 비해 총 435개소가 확충되었다.

표 Ⅲ-6-20. (연도별) Wee센터 및 Wee클래스, Wee스쿨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Wee클래스		6,624	6,965	7,230	7,631	8,059
Wee센터	일반형	215	215	218	204	206
	가정형	15	19	19	19	21
	병원형	5	5	9	10	13
Wee스쿨		13	13	14	15	15
계		6,872	7,217	7,490	7,879	8,314

* 출처: Wee 웹사이트.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2에서 2022년 10월 11일 인출.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전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 기초)와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다. 아동·청소년 역시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11월 기준으로 광역정신보건센터 16개소, 기초정신보건센터 2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자살예방지원센터는 전국 6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이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국 50개 지역에서 운영 중에 있다.

표 Ⅲ-6-21.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신건강	광역	16	1	1	1	1	1	1	1	0	1	1	1	1	1	1	1	1	1
	기초	244	5	16	8	10	5	5	5	1	37	18	14	16	14	21	24	20	2
	계	260	6	17	9	11	6	6	6	1	38	19	15	17	15	22	25	21	3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살 예방센터	6	2	0	0	1	0	0	0	0	3	0	0	0	0	0	0	0	0
중독관리 통합지원	50	3	3	2	5	5	3	2	0	8	3	1	2	2	2	2	5	2

* 출처: 통계청 KOSIS.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01&conn_path=I2에서 2022년 11월 11일 인출.

(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①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0세~19세 아동·청소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8년 228,982명에서 2020년 192,545명으로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Ⅲ-6-22.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0년)

(단위 : 명)

구분	0세	1~4세	5~9세	10~14세	15~19세	합계
2018	2,886	20,206	43,927	60,811	101,152	228,982
2019	2,458	18,156	41,556	56,468	89,678	208,316
2020	2,133	16,338	38,948	55,629	79,497	192,545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2018 의료급여통계. pp.20-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 2019 의료급여통계. pp.20-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 2020 의료급여통계. pp.16-17.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은 최근 1년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비율을 의미한다. 전체기준으로 2.8%이며, 2016년 4.0%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다.

세부적으로 연령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미충족의료율을 살펴보면, 연령에서는 15~18세가 미충족의료율이 6.0%로 가장 높다. 15~18세는 매년 가장 높은 미충족의료율 수치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미충족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상위 계층에서도 미충족의료율이 높은 사례가 보인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미충족의료율은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출생률

감소와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표 Ⅲ-6-23.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충족의료율(2016~2020년)

(단위 : 명, %)

구분		연령					소득수준			
		전체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하	중하	중상	상
2016	N	1667	522	593	254	298	402	423	416	420
	분율 (표준오차)	4.0 (0.6)	1.5 (0.6)	2.8 (0.8)	6.4 (1.7)	6.3 (1.6)	5.4 (1.5)	3.9 (1.0)	2.6 (0.9)	4.2 (1.4)
2017	N	1,507	429	559	232	287	295	308	305	297
	분율 (표준오차)	2.6 (0.5)	2.7 (1.0)	0.3 (0.1)	3.1 (1.1)	5.0 (1.5)	3.5 (1.3)	2.5 (1.2)	2.6 (1.0)	1.1 (0.8)
2018	N	1,371	414	511	206	240	267	289	271	276
	분율 (표준오차)	3.1 (0.6)	1.7 (0.7)	2.3 (0.9)	3.4 (1.4)	5.5 (1.6)	1.4 (0.8)	3.1 (1.1)	3.5 (1.3)	4.5 (1.7)
2019	N	1,391	355	566	216	254	270	289	281	266
	분율 (표준오차)	1.8 (0.5)	0.1 (0.1)	0.9 (0.4)	2.1 (0.9)	4.6 (1.8)	1.7 (0.7)	3.2 (1.3)	0.7 (0.5)	0.4 (0.3)
2020	N	1,128	292	433	201	202	227	225	225	227
	분율 (표준오차)	2.8 (0.7)	1.4 (0.8)**	1.8 (0.7)*	2.3 (1.6)**	6.0 (2.2)*	5.1 (1.9)*	1.4 (1.1)**	0.7 (0.5)**	2.9 (1.5)**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2017). 2014-2016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2020). 2017-2019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질병관리청(2022). 2020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는 25-50%, **는 50% 이상.

치과진료과목 미충족의료율은 병의원 미치료율과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되며, 치과진료과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2020년 치과 미충족의료율은 12.4%로 병의원 미충족의료율보다 매우 높다. 2016년에는 7.7%이며, 2020년에는 12.4%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미충족의료율이 높은 분율을 보인다. 그중에서도 15~18세의 미충족의료율이 15.1%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하'집단이 17.1%로 가장 높다. 해당 소득수준은 2016년부터 일관되게 가장 높은 미충족의료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6-24.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충족의료율(2016~2020년)

(단위 : 명, %)

구분		연령					소득수준			
		전체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하	중하	중상	상
2016	N	1666	522	592	254	298	401	424	415	420
	분율 (표준오차)	7.7 (0.8)	8.3 (1.3)	5.8 (1.2)	6.9 (1.9)	9.7 (1.9)	11.0 (2.1)	6.8 (1.6)	6.9 (1.5)	5.8 1.2)
2017	N	1,509	430	560	232	287	295	308	305	297
	분율 (표준오차)	7.8 (0.9)	7.8 (1.6)	6.0 (1.2)	5.3 (1.8)	11.1 (2.2)	13.2 (2.6)	6.8 (1.5)	7.3 (1.6)	6.2 (2.2)
2018	N	1,104	291	473	161	179	214	234	214	215
	분율 (표준오차)	9.4 (1.3)	9.4 (2.0)	5.4 (1.4)	11.1 (2.5)	15.0 (3.1)	13.2 (2.3)	10.1 (2.6)	9.2 (2.5)	8.7 (2.5)
2019	N	1,089	259	511	156	163	202	223	237	216
	분율 (표준오차)	9.3 (1.0)	10.8 (2.2)	7.1 (1.5)	7.1 (2.0)	13.7 (2.8)	16.9 (3.3)	8.9 (2.1)	6.2 (1.9)	5.9 (1.8)
2020	N	907	205	397	158	147	177	181	190	181
	분율 (표준오차)	12.4 (1.4)	13.2 (2.9)	10.4 (2.0)	12.7 (2.8)	15.1 (2.9)	17.1 (3.5)	10.9 (2.4)	6.0 (3.1)	7.5 (2.3)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2017). 2014-2016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2020). 2017-2019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질병관리청(2022). 2020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는 25-50%, **는 50% 이상.

(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① 흡연율

2021년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제시된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 고생 전체 흡연율은 4.5%이고 고3의 흡연율이 8.8%로 가장 높다. 2020년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전염성 질환의 확산에 따라 또래집단간 교류가 축소되면서 나타난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중학생보다 높으며, 고등학생 중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Ⅲ-6-25. 흡연율 추이(2017~2021년)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7	6.4	3.0	9.2	0.7	3.2	4.9	7.0	9.7	10.9
2018	6.7	3.0	9.8	0.8	3.2	4.9	7.7	9.4	12.0
2019	6.7	3.2	9.9	1.0	3.5	5.0	8.3	10.0	11.4
2020	4.4	1.7	7.1	0.7	1.6	3.0	4.8	7.2	9.2
2021	4.5	1.9	7.2	0.8	1.8	3.0	5.4	7.3	8.8

* 출처: 교육부, 질병관리청(2022).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37

* 주: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② 음주율

2021년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제시된 중·고등학생의 음주율은 2020년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2021년에도 그 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 음주율은 10.7%이며 고3의 음주율이 1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주율의 감소 역시 전염성 질환의 확산에 따라 또래간 교류가 축소되면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만 흡연율보다 음주율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술에 대해 관대한 사회문화가 한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실제로도 제 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주류 구매용이성의 비중을 보면, 고등학생은 79.6%(21년), 중학생은 48.5%(21년)로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었다(교육부, 질병관리청, 2022). 연령별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음주율이 높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Ⅲ-6-26. 음주율 추이(2017~2021년)

(단위: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7	16.1	7.6	23.0	4.2	7.7	11.0	16.5	25.1	26.9
2018	16.9	8.5	24.2	4.1	8.1	12.8	18.1	24.7	28.6
2019	15.0	7.6	21.8	3.9	7.4	11.2	17.1	22.8	25.3
2020	10.7	5.4	15.9	3.7	4.9	7.8	10.9	15.8	20.9
2021	10.7	5.6	16.0	3.4	5.4	8.2	12.1	16.4	19.3

* 출처: 교육부, 질병관리청(2022).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37

* 주: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③ 기타 약물 사용률

치료목적을 제외한 습관적 약물 또는 물질 사용은 2021년에도 시행되었지만, 비공개로 되어 있어 2020년까지 수치를 제시하였다. 2020년 경험률은 0.8%이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0.8%, 여학생이 0.7%였다. 연도별로는 2016년의 0.5%에 비해 2020년은 0.8%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6-27. 평생 약물 경험률(2016~2020년)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남학생	0.5	0.8	0.6	0.5	0.8
여학생	0.3	0.4	0.4	0.5	0.7
전 체	0.5	0.6	0.5	0.5	0.8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2017). 제12차(2016년)~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2019). 제14차(2018년)~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2021).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 주: 1) 평생 기분의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 빼기 등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본드를 비롯하여, 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가래약, 신경안정제 등을 먹거나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2) 20년 조사부터 '평생 약물사용 경험' 문항을 '습관적 약물사용 경험'으로 변경.

④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율은 조사주기가 3년으로서 2018년 이후 2021년이 3년 조사주기이다.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을 2018년과 비교하면 2021년은 크게 낮아진 결과가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흡연예방교육 경험율은 72.5%에서 63.2%로 약 9%가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의 경험률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생은 전학년에서 50%대의 경험률을 보이며, 중학생의 72~68%와는 큰 격차가 발생하였다. 흡연예방교육도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진행되지 않은 결과인지, 해당 교육이 실시횟수가 감소한 것인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표 Ⅲ-6-28.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2015~2021년)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5	59.6	65.7	54.2	64.0	67.5	65.5	57.6	59.8	45.5
2016	65.3	71.4	60.2	72.5	71.4	70.5	64.6	64.5	51.5
2017	70.7	77.2	65.4	77.8	78.0	75.7	67.5	70.0	58.8
2018	72.5	79.1	66.7	80.5	79.6	77.3	70.6	70.3	60.4
2021	63.2	70.2	55.9	72.4	69.8	68.4	59.2	58.6	50.3

* 출처: 교육부, 질병관리청(2022).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55

* 주: 1)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음주예방교육도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2021년의 수치를 제시하였다. 2021년의 음주예방교육은 평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험률로 나타났다. 전체를 대상으로 33.0%에 불과했으며, 중학생은 37.2%, 고등학생은 28.7%였다. 연도별로는 일부 연령에서 증가한 수치이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경험률은 청소년들이 약물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험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6-29.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2015~2021년)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5	34.6	42.8	27.3	45.5	44.4	39.4	32.9	29.7	19.7
2016	38.8	46.8	32.2	49.3	47.4	44.1	36.5	35.3	24.7
2017	41.2	49.3	34.5	50.5	50.1	47.2	37.8	37.7	28.3
2018	42.0	48.8	36.1	51.4	48.3	46.9	41.0	39.4	29.2
2021	33.0	37.2	28.7	40.4	36.1	35.0	30.1	29.2	26.8

* 출처: 교육부, 질병관리청(2022).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83

* 주: 1)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술(알코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4)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1) 신체적 건강

① 주관적 건강평가

조사 대상자에게 본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8,820명의 응답자 중 85.6%는 스스로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 평점은 3.14(표준편차=.68)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으며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 보다는 초등학생이 더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 한부모 가정의 응답자 보다는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응답자가 더 건강하다고 인식했으며 경제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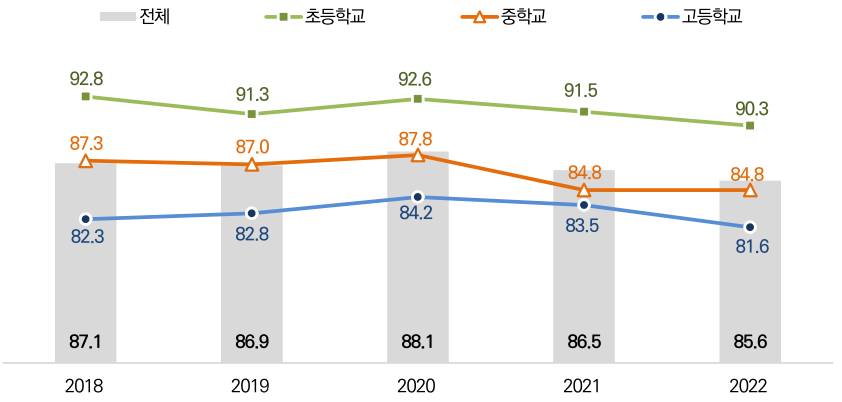
표 Ⅲ-6-30.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	χ^2
전체		3.14(0.68)	1.2	13.1	55.8	29.8	100.0(8,820)	
성별	남학생	3.17(0.70)	1.6	12.5	53.3	32.6	100.0(4,256)	41.066***
	여학생	3.12(0.66)	0.9	13.7	58.2	27.3	100.0(4,564)	
학교급	초등학교	3.27(0.65)	0.7	9.0	52.5	37.8	100.0(2,985)	194.870***
	중학교	3.10(0.68)	1.7	13.5	57.5	27.3	100.0(2,981)	
	고등학교	3.04(0.68)	1.4	17.0	57.5	24.1	100.0(2,8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5(0.67)	1.0	12.8	56.1	30.1	100.0(7,780)	51.875***
	한부모가정	3.03(0.73)	2.8	17.0	55.1	25.1	100.0(730)	
	조손가정	3.16(0.81)	4.9	10.9	47.4	36.8	100.0(99)	
	기타	3.17(0.75)	3.1	11.4	50.9	34.6	100.0(173)	
경제적 수준	상	3.24(0.66)	0.9	9.7	53.6	35.8	100.0(5,087)	369.719***
	중	3.05(0.67)	1.3	15.8	59.2	23.6	100.0(2,956)	
	하	2.79(0.71)	3.7	26.2	57.2	12.8	100.0(699)	

***p 〈 .001.

주관적 건강 인식에 대한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18년부터 조금씩 상승하던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식은 2020년을 기점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중학생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2년의 수치는 전년에 비하여 0.9%p 감소한 수치이다.



* 주: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3.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연도별 추이)

② 운동 실천율

건강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31.4%가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일주일에 1~2회 정도가 24.2%, 한 달에 1~2회 정도가 22.4%로 응답되었으며 그 외에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2.0%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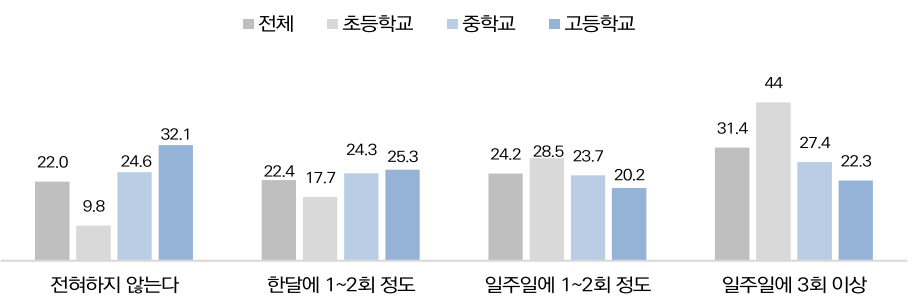


그림 Ⅲ-6-4.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학교급별)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주 3회 이상 운동을 자주 했으며, 학교급에 있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갈수록 주 3회 운동 횟수가 많았다. 고교유형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특성화계고 학생이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운동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에서는 조손가정의 운동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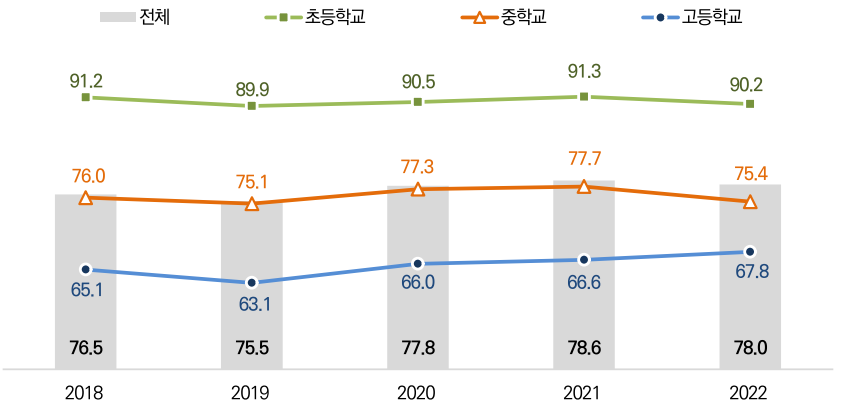
표 Ⅲ-6-31.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2.0	22.4	24.2	31.4	100.0(8,814)	
성별	남학생	15.8	17.0	24.7	42.4	100.0(4,249)	570.905***
	여학생	27.8	27.4	23.7	21.1	100.0(4,565)	
학교급	초등학교	9.8	17.7	28.5	44.0	100.0(2,982)	672.754***
	중학교	24.6	24.3	23.7	27.4	100.0(2,975)	
	고등학교	32.1	25.3	20.2	22.3	100.0(2,857)	
고교 유형	일반계고	33.2	25.4	20.1	21.3	100.0(2,294)	10.224*
	특성화계고	27.6	25.1	20.7	26.6	100.0(56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2.1	22.5	24.4	31.0	100.0(7,776)	28.046**
	한부모가정	23.3	23.5	23.2	29.9	100.0(728)	
	조손가정	16.0	19.5	17.3	47.2	100.0(100)	
	기타	17.3	15.2	24.0	43.5	100.0(172)	
학업 성적	상	18.4	19.4	26.3	36.0	100.0(3,250)	150.907***
	중	21.9	24.9	25.0	28.2	100.0(3,668)	
	하	29.0	23.0	18.7	29.2	100.0(1,820)	
경제적 수준	상	18.1	20.6	26.3	35.0	100.0(5,083)	183.689***
	중	27.3	24.7	21.5	26.5	100.0(2,954)	
	하	28.9	26.3	20.0	24.9	100.0(699)	

**p < .01, ***p < .001.

앞서 분석 된 결과 중 일주일에 1~2회 이상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도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폭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교급 간 차이 역시 유사한 간격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등학생의 운동량은 지속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했으며 2022년에는 고등학생의 운동 횟수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 '전혀 하지 않는다'와 '한 달에 1~2회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6-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연도별 추이)

③ 수면시간과 수면 부족 이유

응답자들의 수면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대상자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7.2시간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년과 동일하다. 세부적으로 8시간 이상~9시간미만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시간 이상~8시간미만이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6시간 이상 7시간미만 18.4%, 9시간 이상 16.6%, 5시간미만 8.9%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 학교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평균 수면시간이 많았으며 초등학교(평균 8.6시간)에서 고등학교(평균 5.9시간)로 갈수록 평균 수면시간이 줄어들었다. 일반계고에 비해 특성화계고의 수면시간이 더 많았으며 가족유형에 있어서는 조손가정 7.8시간, 양부모가정 7.2시간 한부모가정 7.0시간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 낮을수록 수면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6-32. 수면 시간

(단위 : %(명))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평균	전체(N)	χ^2
전체		8.9	14.5	18.4	20.5	21.1	16.6	7.2	100.0(8,594)	
성별	남학생	6.9	12.1	18.1	21.5	23.4	18.0	7.3	100.0(4,150)	105.257***
	여학생	10.8	16.8	18.7	19.6	18.9	15.2	7.0	100.0(4,444)	
학교급	초등학교	0.5	1.5	3.9	15.5	37.0	41.6	8.6	100.0(2,921)	4861.062***
	중학교	5.6	12.6	24.8	30.8	20.4	5.9	7.0	100.0(2,907)	
	고등학교	21.3	30.3	27.0	15.0	4.9	1.5	5.9	100.0(2,767)	
고교 유형	일반계고	22.7	31.3	26.6	13.7	4.5	1.2	5.8	100.0(2,222)	34.793***
	특성화계고	15.8	26.3	28.5	20.2	6.9	2.3	6.1	100.0(54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1	14.5	18.3	20.3	21.2	16.5	7.2	100.0(7,597)	93.964***
	한부모가정	9.1	16.8	22.1	22.1	18.6	11.4	7.0	100.0(703)	
	조손가정	5.5	8.5	10.1	24.1	24.4	27.4	7.8	100.0(93)	
	기타	1.5	11.8	11.5	19.3	19.7	36.2	8.0	100.0(165)	
학업 성적	상	5.9	10.3	17.1	19.6	24.8	22.4	7.5	100.0(3,187)	431.618***
	중	9.1	15.7	17.2	20.5	21.5	16.1	7.2	100.0(3,584)	
	하	14.3	20.0	23.2	22.2	13.2	7.2	6.5	100.0(1,754)	
경제적 성적	상	7.5	12.2	16.2	19.5	24.0	20.6	7.4	100.0(4,975)	299.686***
	중	9.8	17.7	21.4	22.3	17.6	11.2	6.9	100.0(2,874)	
	하	15.5	18.0	22.7	20.3	13.5	10.0	6.6	100.0(673)	

***$p < .001$.

수면시간 조사 결과에 대한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7.2~7.3시간의 수면시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교급별에 따른 수면시간의 차이 또한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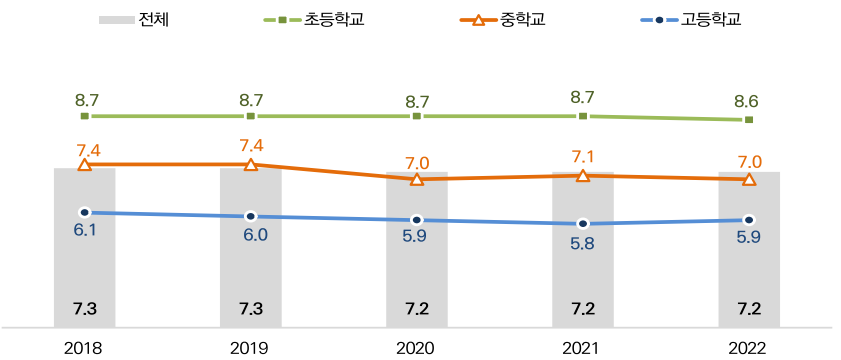


그림 Ⅲ-6-6. 수면 시간(연도별 추이)

앞서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수면시간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54.4%는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에 있어서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학생가 고등학생은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라서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수면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중, 하로 갈수록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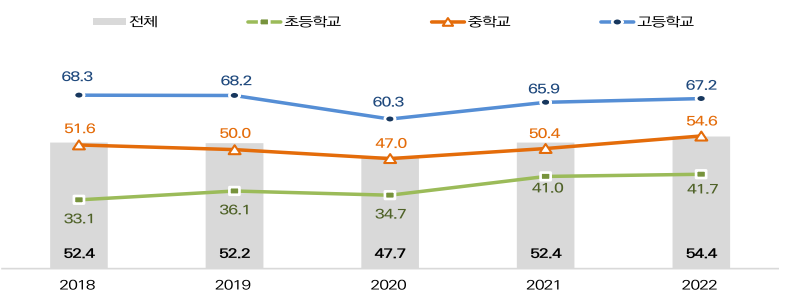
표 Ⅲ-6-33. 수면 부족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χ^2
전체		54.4	45.6	100.0(8,746)	
성별	남학생	49.6	50.4	100.0(4,220)	73.326***
	여학생	58.8	41.2	100.0(4,526)	
학교급	초등학교	41.7	58.3	100.0(2,935)	377.548***
	중학교	54.6	45.4	100.0(2,963)	
	고등학교	67.2	32.8	100.0(2,847)	
학업성적	상	49.7	50.3	100.0(3,229)	99.737***
	중	53.7	46.3	100.0(3,635)	
	하	64.2	35.8	100.0(1,810)	

***$p < .001$.

수면부족 응답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 간 결과를 보면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2.4%에서 54.4%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주: 수면부족에 '예'라고 응답한 값(단위: %)

그림 Ⅲ-6-7. 수면 부족 여부(연도별 추이)

수면이 부족한 이유에 대한 응답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학원과외, 가정학습 등의 이유로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는데, 남학생의 경우 게임과 학원과외, 가정학습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가정학습과 학원과외로 인한 수면부족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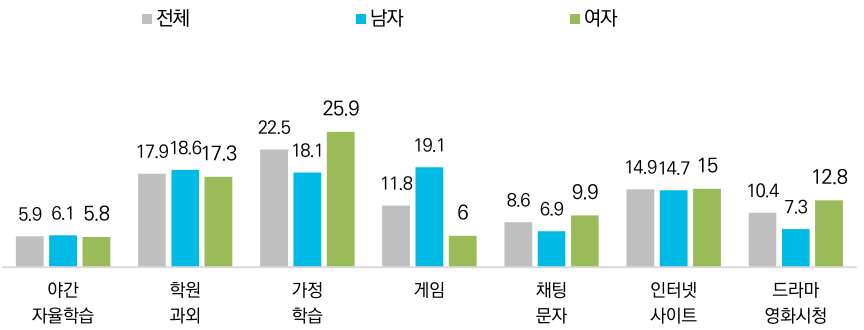


그림 Ⅲ-6-8. 수면이 부족한 이유(전체, 성별)

수면부족의 이유는 성별, 학교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의 경우 게임이 가장 큰 이유로 응답되었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가정학습으로 인한 수면부족이 가장 많았다.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은 학원, 과외로 인한 이유가 가장 높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가정학습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고교유형의 경우 일반계고는 가정학습이, 특성화계고는 가정학습과 인터넷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있어서 양부모가정 응답자는 가정학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한부모가정 응답자는 게임, 조손가정 응답자는 학원, 과외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학업성적을 보면, 상과 중집단은 가정학습이 가장 높았고 하집단은 인터넷 이용이 가장 높았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모두 가정학습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응답률에 차이가 있었고 2순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은 학원, 과외였으며 중과 하 집단은 인터넷 이용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6-34.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 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χ^2
전체		5.9	17.9	22.5	11.8	8.6	14.9	10.4	8.2	100.0(4,492)	
성별	남학생	6.1	18.6	18.1	19.1	6.9	14.7	7.3	9.1	100.0(1,960)	239.550***
	여학생	5.8	17.3	25.9	6.0	9.9	15.0	12.8	7.3	100.0(2,532)	
학교급	초등학교	0.0	24.3	22.0	19.7	4.1	10.4	5.6	13.9	100.0(1,206)	504.749***
	중학교	4.7	14.4	19.8	11.2	12.9	18.7	13.0	5.3	100.0(1,518)	
	고등학교	11.0	16.5	25.0	6.8	8.0	14.7	11.4	6.6	100.0(1,768)	
고교 유형	일반계고	11.2	17.4	26.8	6.4	6.6	14.4	11.7	5.4	100.0(1,441)	55.396***
	특성화계고	10.1	12.1	16.9	8.6	14.2	15.8	10.4	11.9	100.0(32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0	18.2	23.7	11.2	8.3	15.1	10.0	7.5	100.0(3,968)	109.101***
	한부모가정	6.1	11.3	12.6	16.2	11.3	15.0	15.1	12.4	100.0(388)	
	조손가정	0.0	25.9	14.1	17.4	10.4	1.7	13.1	17.3	100.0(47)	
	기타	3.0	28.6	13.3	13.3	9.0	8.3	6.1	18.4	100.0(72)	
학업 성적	상	6.4	21.8	30.2	9.7	5.1	12.3	6.7	7.7	100.0(1,531)	226.066***
	중	5.6	17.8	21.5	11.9	8.8	15.5	11.1	7.9	100.0(1,843)	
	하	5.8	12.5	13.4	14.1	13.1	17.5	14.5	9.0	100.0(1,088)	
경제적 수준	상	4.7	21.4	24.3	11.5	8.0	12.9	9.0	8.2	100.0(2,419)	111.631***
	중	7.3	14.6	21.1	11.4	8.6	17.4	12.4	7.3	100.0(1,599)	
	하	8.1	9.6	18.1	13.9	11.8	16.2	11.5	10.8	100.0(436)	

***p < .001.

수면부족에 대한 이유를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정학습에 대한 응답률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원 및 과외와 인터넷 이용이 32.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 뒤로 드라마 및 영화 시청 24.3%, 채팅 및 문자 20.5%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게임과 가정학습, 여학생은 가정학습과 인터넷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가정학습, 중학생은 인터넷 이용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족유형에 있어서 양부모 가정은 가정학습, 한부모가정은 인터넷 이용, 조손가정은 학원 및 과외가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서 상집다과 중집단은 가정학습, 하집단은 인터넷 이용이 높았다.

표 Ⅲ-6-35. 수면이 부족한 이유(복수응답: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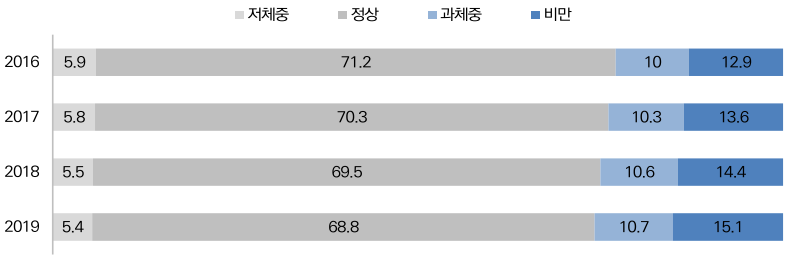
(단위 :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전체		8.2	32.3	40.4	23.9	20.5	32.3	24.3	12.0	100.0(4,492)
성별	남학생	8.4	31.6	35.1	36.6	16.5	31.5	19.6	13.5	100.0(1,960)
	여학생	8.0	32.8	44.4	14.1	23.6	32.9	27.9	10.8	100.0(2,532)
학교급	초등학교	0.0	36.1	46.5	33.3	14.0	21.4	20.4	20.1	100.0(1,206)
	중학교	6.6	30.1	33.4	25.7	27.8	37.8	25.8	8.2	100.0(1,518)
	고등학교	15.1	31.5	42.1	15.9	18.7	35.1	25.6	9.7	100.0(1,768)
고교 유형	일반계고	15.3	34.2	44.3	15.0	16.9	36.3	24.9	7.5	100.0(1,441)
	특성화계고	14.3	19.8	32.6	20.0	27.1	29.6	28.5	18.7	100.0(32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3	33.3	42.0	22.7	20.4	32.3	23.7	11.2	100.0(3,968)
	한부모가정	7.5	21.4	26.9	34.4	21.3	35.3	32.3	16.8	100.0(388)
	조손가정	4.6	33.9	31.4	29.2	25.4	23.9	19.5	19.3	100.0(47)
	기타	3.0	34.6	31.1	26.9	21.4	27.6	17.1	25.4	100.0(72)
학업 성적	상	9.2	39.2	52.2	20.8	15.7	26.2	18.9	11.8	100.0(1,531)
	중	7.4	30.9	40.2	23.7	20.2	34.1	26.1	11.3	100.0(1,843)
	하	8.1	25.0	24.2	28.4	28.0	37.8	28.9	13.2	100.0(1,088)
경제적 수준	상	6.6	36.7	44.0	22.4	20.0	29.1	22.9	12.1	100.0(2,419)
	중	9.9	28.6	37.4	24.1	21.1	35.7	26.8	10.8	100.0(1,599)
	하	10.5	21.0	31.7	31.0	21.9	37.2	23.3	14.7	100.0(436)

④ 아동·청소년의 질병 유형

가. 비만율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학생건강검사 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대표적 건강 지표인 비만율을 제시하였다.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에 2019년도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저체중 5.4%, 정상 68.8%, 과체중 10.7%, 비만 15.1%로 나타났으며 도표를 통해 비만과 과체중인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교육부(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p.9 재편집.
교육부(2018.3.15). 보도자료: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9.
교육부(2019.3.26). 보도자료: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15.
교육부(2020.7.23). 보도자료: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10.

* 주: 1) 본 그림은 〈표 Ⅲ-6-35〉의 일부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단위: %).
2) 2020년 검사는 COVID-19로 인하여 조사율이 높지 않아 결과발표 여부가 논의 중임.

그림 Ⅲ-6-9. 비만도 현황(연도별 추이)

국내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을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과체중인 초등학생은 남학생 11.5%, 여학생 10.7%였으며 중학생은 남학생 11.3%, 여학생 10.1%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에서는 남학생이 9.9%, 여학생 10.0%로 여학생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만의 경우, 초등학생은 남학생 16.6%, 여학생 10.6%, 중학생은 남학생 17.2%, 여학생 12.5%, 고등학생은 남학생 19.7%, 여학생 16.1%로 전체 교급에서 남학생이 더 높은 비만율을 보였지만 성별 간 격차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6-36.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율(2016~2019년)

(단위 : %)

연도/구분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2016	전체		5.9	71.2	10.0	12.9
	초등학생	남학생	5.9	69.5	10.9	13.8
		여학생	6.6	75.5	9.0	8.8
	중학생	남학생	6.2	68.3	10.3	15.2
		여학생	5.0	74.3	10.1	10.6
	고등학생	남학생	6.8	67.0	9.9	16.3
		여학생	4.2	71.9	10.0	13.9
2017	전체		5.8	70.3	10.3	13.6
	초등학생	남학생	5.4	69.9	10.8	14.0
		여학생	6.8	73.1	10.2	9.9

연도/구분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중학생	남학생	5.9	68.7	10.6	14.8
		여학생	5.1	74.5	9.4	11.0
	고등학생	남학생	6.6	64.8	10.4	18.1
		여학생	4.8	70.3	9.9	15.1
2018	전체		5.5	69.5	10.6	14.4
	초등학생	남학생	4.9	68.3	11.3	15.5
		여학생	6.0	72.9	10.2	10.9
	중학생	남학생	5.7	67.6	10.6	16.0
		여학생	4.8	72.9	9.9	12.4
	고등학생	남학생	6.3	64.6	10.7	18.4
		여학생	5.2	69.7	10.4	14.7
2019	전체		5.4	68.8	10.7	15.1
	초등학생	남학생	5.1	66.8	11.5	16.6
		여학생	5.8	72.9	10.7	10.6
	중학생	남학생	5.3	66.2	11.3	17.2
		여학생	4.9	72.4	10.1	12.5
	고등학생	남학생	6.0	64.3	9.9	19.7
		여학생	5.4	68.6	10.0	16.1

* 출처: 교육부(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p.9 재편집.
교육부(2018.3.15). 보도자료: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9.
교육부(2019.3.26). 보도자료: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15.
교육부(2020.7.23). 보도자료: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10.

* 주: 1) 체질량지수(BMI, kg/m2) 기준 비만율 : 저체중군, 5백분위수 미만 / 정상, 5백분위수 이상 85백분위수 이하 / 과체중군, 85백분위수 초과 95백분위수 미만 / 비만군, 95백분위수 이상
2) 2017년 개정된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적용하여 분석
3) 2020년 검사는 COVID-19로 인하여 조사율이 높지 않아 결과발표 여부를 논의 중임.

나. 그 외 질환별 유병률

그 외 질환으로서 국민건강통계에서 조사한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주의력 결핍장애에 대한 유병률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천식의 경우 전체 유병률은 1~11세 1.5%, 12~18세 3.4%였으며 12~18세 남자 청소년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은 1~11세 22.7%, 12~18세 27.3%로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2~18세 남자청소년이 유병률 33.8%로 가장 높았다. 아토피 피부염은 전체 유병률이 1~11세 11.9%, 12~18세 11.7% 이었으며 남자 청소년의 유병률이 1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의력 결핍장애는 전체 유병률이 1~11세 0.2%, 12~18세 1.6% 였고 이 역시 남자청소년의 유병률이 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6-37.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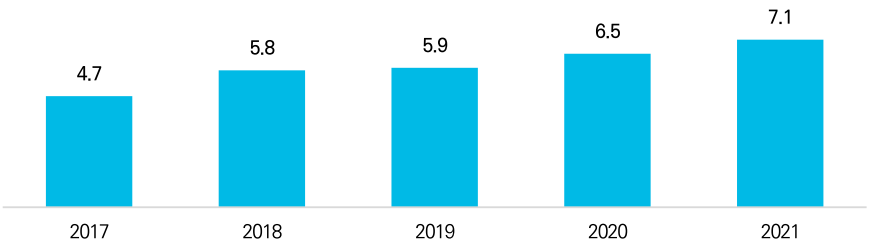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8	천식	1-11세	3.7(1.0)	471	0.9(0.4)	458	2.3(0.5)	929
		12-18세	3.1(1.3)	247	2.5(1.2)	227	2.8(0.9)	474
	알레르기비염	1-11세	21.3(2.7)	471	17.4(2.5)	458	19.4(2.0)	929
		12-18세	25.5(3.0)	247	19.1(3.3)	227	22.4(2.2)	474
	아토피피부염	1-11세	12.1(1.8)	471	9.0(1.8)	458	10.6(1.3)	929
		12-18세	14.7(2.9)	247	18.8(2.8)	227	16.7(2.2)	474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0.5(0.3)	471	0.0(-)	458	0.3(0.2)	929
		12-18세	3.8(1.5)	247	1.3(0.8)	227	2.6(0.9)	474
2019	천식	1-11세	4.2(1.2)	474	1.5(0.7)	451	2.9(0.7)	925
		12-18세	3.3(1.3)	256	2.0(0.9)	231	2.7(0.8)	487
	알레르기비염	1-11세	27.4(2.6)	474	20.8(2.4)	451	24.2(2.1)	925
		12-18세	33.4(3.7)	256	23.4(3.5)	231	28.7(2.9)	487
	아토피피부염	1-11세	11.4(1.8)	474	12.0(1.9)	451	11.7(1.5)	925
		12-18세	14.7(2.7)	256	16.5(3.0)	231	15.5(2.0)	487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1.0(0.5)	474	0.2(0.2)	451	0.6(0.3)	925
		12-18세	0.7(0.7)	256	0.8(0.6)	231	0.7(0.5)	487
2020	천식	1-11세	2.1(0.6)	385	0.9(0.5)	358	1.5(0.5)	743
		12-18세	5.0(1.4)	246	1.6(0.9)	185	3.4(0.9)	431
	알레르기비염	1-11세	29.7(3.2)	385	18.7(2.4)	358	22.7(2.1)	743
		12-18세	33.8(3.6)	246	19.4(2.6)	185	27.3(2.4)	431
	아토피피부염	1-11세	11.6(1.9)	385	12.2(1.9)	358	11.9(1.4)	743
		12-18세	14.4(2.5)	246	8.4(2.3)	185	11.7(1.6)	431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0.4(0.3)	385	0.0(-)	358	0.2(0.1)	743
		12-18세	2.4(1.0)	246	0.6(0.6)	185	1.6(0.6)	431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표번호 24-2. 소아청소년질환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20). 2019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표번호 24-2. 소아청소년질환별)
질병관리청(2022). 2020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표번호 22-1. 소아청소년질환별)

(2) 정신적 건강

① 자살 생각과 그 이유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사망원인 통계를 통해 국내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21년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최근 5년간의 조사결과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4.7%였던 자살률은 2020년 6.5%까지 증가했으며 2021년 7.1%까지 증가하였다.



* 출처: 통계청(2019.9.24). 보도자료: 2018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2020.9.22). 보도자료: 2019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2021.9.28.). 보도자료: 2020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 (2022.9.27.). 보도자료: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18.

* 주: 단위: %

그림 Ⅲ-6-10. 인구 십만명 당 10~19세 자살률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중,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33.5%의 학생들이 자살에 대해 가끔 또는 자주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급별로 중학교 33.1%, 고등학교 33.9%가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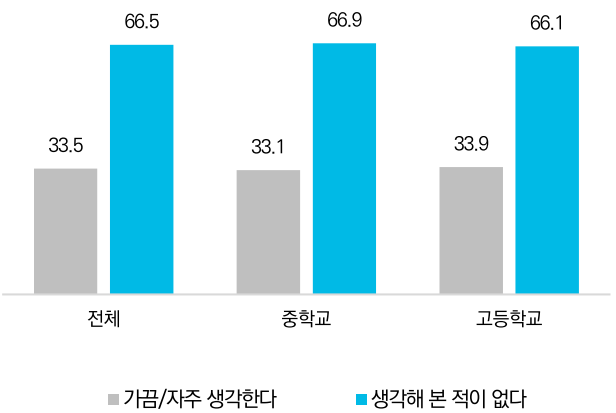


그림 Ⅲ-6-11. 자살 생각 여부

위 결과를 성별, 가족유형 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22.2%가 가끔, 3.3%가 자주 생각한다고 한 반면 여학생은 33.2%가 가끔, 7.6%가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해 여학생

의 자살 생각 여부와 빈도는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났는데, 각각의 수준이 상집단에서 하집단으로 갈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과 빈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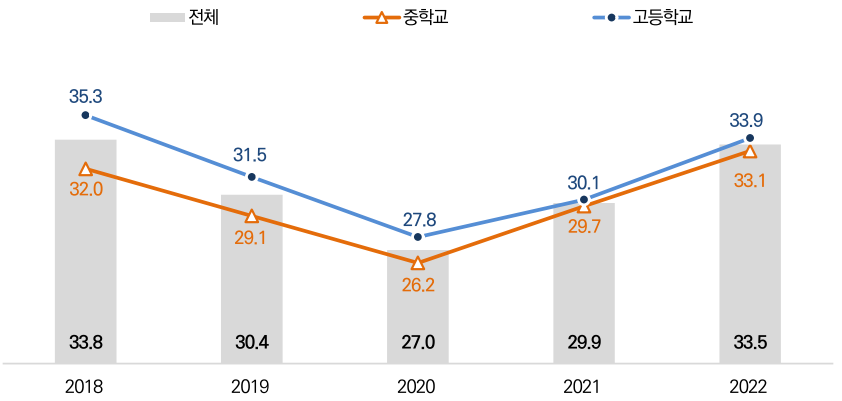
표 Ⅲ-6-38. 자살 생각 여부

(단위 : %(명))

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전체(N)	χ^2
전체		66.5	27.9	5.6	100.0(5,780)	
성별	남학생	74.4	22.2	3.3	100.0(2,776)	159.906***
	여학생	59.2	33.2	7.6	100.0(3,004)	
학교급	중학교	66.9	27.9	5.2	100.0(2,943)	1.933
	고등학교	66.1	27.9	6.0	100.0(2,837)	
고교 유형	일반계고	66.0	27.6	6.4	100.0(2,276)	3.857
	특성화계고	66.5	29.2	4.3	100.0(56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6.8	27.7	5.4	100.0(5,087)	11.545
	한부모가정	64.0	28.1	7.9	100.0(559)	
	조손가정	66.4	32.0	1.7	100.0(42)	
	기타	62.6	35.6	1.8	100.0(74)	
학업 성적	상	72.8	22.9	4.3	100.0(1,676)	75.888***
	중	67.3	27.7	5.0	100.0(2,477)	
	하	58.8	33.5	7.7	100.0(1,569)	
경제적 수준	상	69.7	26.2	4.2	100.0(2,924)	94.075***
	중	66.4	28.0	5.6	100.0(2,216)	
	하	52.3	35.4	12.2	100.0(580)	

*p < .05, **p < .01, ***p < .001.

자살생각 여부와 빈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도에 33.8%였던 수치는 2020년 27.0%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2년 33.5%까지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살생각의 증가에 대응하여 자살생각 원인에 대한 연구와 감소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 주: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12. 자살 생각 여부(연도별 추이)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가장 많은 44.3%는 학업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1.6%, 가족 간의 갈등 16.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 학업성적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급의 경우 중, 고등학생 모두 학업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중학생의 경우 가족 간의 갈등(21.5%)이었으며 고등학생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감(26.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적의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학업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았지만 성적이 낮을수록 미래(진로)에 대한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도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문제가 주 원인이지만, 수준이 낮을수록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Ⅲ-6-39. 자살 생각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 문제 (학업 부담, 성적 등)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학교 폭력 등)	경제적 어려움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기타	전체(N)	χ^2
전체		44.3	16.8	5.2	1.1	21.6	11.1	100.0(1,871)	
성별	남학생	42.3	17.1	4.9	1.6	20.7	13.4	100.0(684)	11.624
	여학생	45.5	16.6	5.3	0.8	22.1	9.7	100.0(1,187)	

구분		학업 문제 (학업 부담, 성적 등)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학교 폭력 등)	경제적 어려움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기타	전체(N)	χ^2
학교급	중학교	43.0	21.5	6.9	1.4	16.8	10.4	100.0(939)	58.329***
	고등학교	45.6	12.0	3.5	0.7	26.4	11.8	100.0(933)	
고교 유형	일반계고	48.0	12.6	2.8	0.4	25.7	10.6	100.0(754)	24.275***
	특성화계고	35.7	9.7	6.6	2.0	29.3	16.7	100.0(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6.1	16.1	5.2	1.0	21.0	10.6	100.0(1,631)	22.970
	한부모가정	31.9	21.0	5.5	0.9	26.1	14.6	100.0(196)	
	조손가정	25.1	15.9	9.2	0.0	24.4	25.6	100.0(13)	
	기타	41.8	18.6	3.4	5.4	23.8	7.1	100.0(26)	
학업 성적	상	48.5	18.8	4.4	0.5	14.3	13.4	100.0(442)	48.188***
	중	46.9	15.0	5.3	1.8	22.8	8.2	100.0(790)	
	하	37.8	17.7	5.4	0.5	25.6	13.0	100.0(619)	
경제적 수준	상	48.5	17.1	4.6	0.7	18.5	10.7	100.0(852)	82.016***
	중	44.9	14.2	5.2	0.2	24.8	10.7	100.0(728)	
	하	28.9	23.3	6.5	4.7	23.5	13.0	100.0(267)	

***p 〈 .001.

* 주: 2017년도 조사부터는 전년도 보기문항 중 '학교 성적'이 '학업문제'로 수정되었으며,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보기문항이 새로 추가됨.

② 우울감

조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우울 정도를 파악하였다. 우울 정도는 세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는데,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유 없이 외로웠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에 대해서 '그런 편이다' 27.3%, '매우 그렇다' 6.8%로 34.1%가 아무 이유 없이 외롭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문항인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30.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 문항인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31.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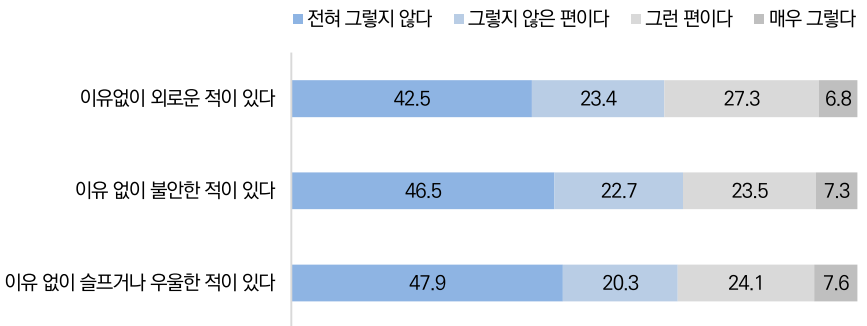


그림 Ⅲ-6-13. 우울정도 항목별 조사결과

우울 정도에 대해 묻는 첫 번째 문항인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의 응답 결과는 성별, 학교급 등의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평균 1.80)에 비해 여학생(평균 2.16)이 더욱 이유 없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가족유형에서는 양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의 응답자보다 한부모 가정의 응답자가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 집단에서 하 집단으로 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6-40.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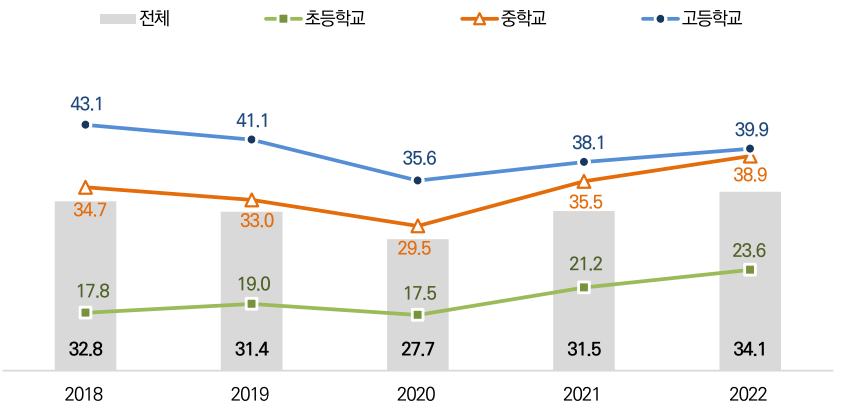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8(0.98)	42.5	23.4	27.3	6.8	100.0(8,801)	
성별	남학생	1.80(0.94)	51.5	22.3	21.3	4.9	100.0(4,248)	309.111***
	여학생	2.16(0.99)	34.2	24.5	32.9	8.5	100.0(4,553)	
학교급	초등학교	1.76(0.94)	53.6	22.8	18.0	5.6	100.0(2,981)	286.395***
	중학교	2.08(0.99)	37.8	23.3	31.8	7.1	100.0(2,974)	
	고등학교	2.12(0.99)	35.8	24.2	32.2	7.7	100.0(2,84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7(0.98)	42.8	23.7	26.9	6.6	100.0(7,764)	38.910***
	한부모가정	2.15(1.00)	35.3	22.8	33.5	8.4	100.0(727)	
	조손가정	1.97(1.01)	45.1	19.9	27.8	7.2	100.0(100)	
	기타	1.83(1.04)	55.0	16.3	19.8	8.9	100.0(173)	
학업 성적	상	1.86(0.97)	48.9	23.0	21.9	6.2	100.0(3,248)	200.407***
	중	1.97(0.96)	41.7	25.1	27.5	5.7	100.0(3,667)	
	하	2.23(1.02)	33.0	20.8	36.3	9.9	100.0(1,81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경제적 수준	상	1.88(0.96)	47.3	23.4	23.6	5.7	100.0(5,078)	207.083***
	중	2.07(0.99)	38.1	24.2	30.3	7.4	100.0(2,948)	
	하	2.38(1.01)	27.5	19.5	40.9	12.2	100.0(697)	

***p 〈 .001.

이유 없이 외로웠던 경험에 대한 응답결과의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20년 27.7%로 감소했던 수치는 2년 연속 증가하여 2022년 34.1%의 수치를 보였는데, 34.1%는 최근 5년 간 관찰값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교급 중에서 특히 중학생의 증가율이 눈에 띄는데, 2020년 29.5%에서 2021년 38.9%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14.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두 번째 우울 정도를 묻는 문항인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응답 평균은 1.92(표준편차=.99)로 분석되었다. 30.8%가 그렇다고 응답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더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교급에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있어서는 한부모 가정의 응답자가 가장 불안감을 많이 느꼈으며 다음으로 양부모,

조손 가정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아질수록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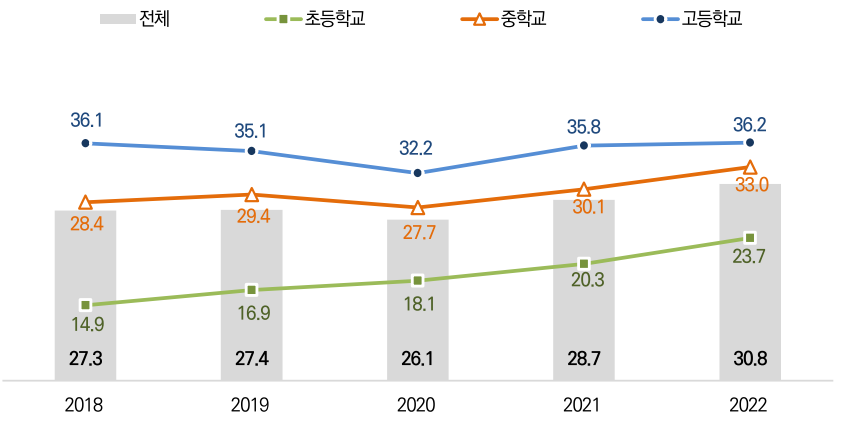
표 Ⅲ-6-41.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2(0.99)	46.5	22.7	23.5	7.3	100.0(8,804)	
성별	남학생	1.73(0.92)	55.3	21.2	18.7	4.7	100.0(4,246)	304.142***
	여학생	2.09(1.02)	38.2	24.0	28.0	9.8	100.0(4,558)	
학교급	초등학교	1.74(0.96)	56.3	20.0	17.2	6.5	100.0(2,980)	196.537***
	중학교	1.97(0.98)	42.4	24.7	26.0	7.0	100.0(2,973)	
	고등학교	2.04(1.01)	40.5	23.3	27.5	8.7	100.0(2,85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1(0.99)	46.7	22.6	23.6	7.1	100.0(7,763)	20.172*
	한부모가정	1.99(1.00)	42.2	25.4	23.8	8.6	100.0(730)	
	조손가정	1.86(1.00)	50.9	19.4	22.7	7.0	100.0(100)	
	기타	1.93(1.10)	51.4	16.6	19.2	12.8	100.0(173)	
학업 성적	상	1.81(0.97)	51.6	22.3	19.8	6.4	100.0(3,247)	142.873***
	중	1.90(0.97)	46.7	23.2	23.7	6.4	100.0(3,673)	
	하	2.15(1.04)	37.1	22.3	29.6	11.0	100.0(1,809)	
경제적 수준	상	1.82(0.97)	51.3	21.8	20.7	6.2	100.0(5,080)	175.159***
	중	2.00(1.00)	42.1	23.8	26.3	7.8	100.0(2,950)	
	하	2.28(1.05)	31.2	23.3	31.5	14.1	100.0(696)	

**p 〈 .01, ***p 〈 .001.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문항의 응답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본 추이는 다음과 같다. 본 문항 역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2020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2년 30.8%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눈에 띄는 결과는 중, 고등학생의 경우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2018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15.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우울 정도를 확인하는 마지막 질문인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점은 1.91(표준편차=1.01)로 나타났으며 그 수준은 성별, 학교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의 경우 평균 1.67(표준편차=.92), 여학생의 경우 평균 2.14(표준편차=1.04)로 분석되었다. 초등학생은 중, 고등학생에 비해 슬프거나 우울한 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 고등학생은 평균 2점대의 수치를 보였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1.67(표준편차=.9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유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한부모 가정의 응답자가 우울한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의 경우 그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슬프거나 우울한 정서적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6-42.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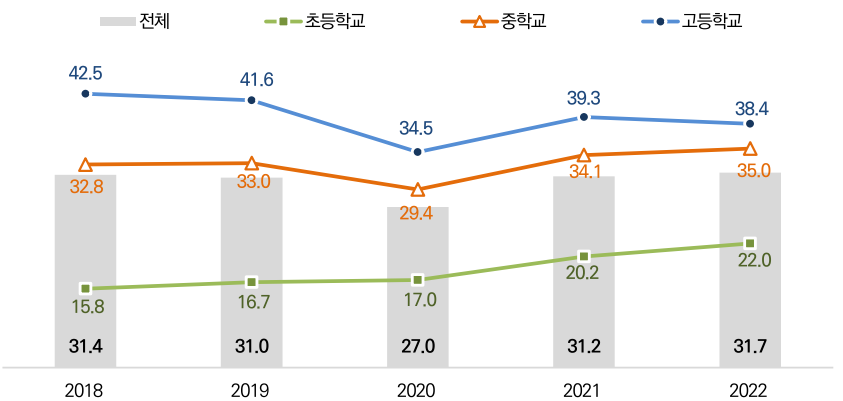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1(1.01)	47.9	20.3	24.1	7.6	100.0(8,782)	
성별	남학생	1.67(0.92)	59.4	18.8	17.4	4.5	100.0(4,233)	491.989***
	여학생	2.14(1.04)	37.3	21.8	30.4	10.6	100.0(4,549)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1.67(0.94)	60.5	17.5	16.5	5.5	100.0(2,963)	314.212***
	중학교	2.00(1.01)	43.1	21.8	27.4	7.6	100.0(2,971)	
	고등학교	2.08(1.04)	39.8	21.7	28.5	9.9	100.0(2,84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0(1.00)	48.3	20.3	24.0	7.4	100.0(7,748)	21.164*
	한부모가정	2.05(1.04)	41.3	22.0	26.8	9.9	100.0(725)	
	조손가정	1.92(1.03)	48.1	19.9	23.5	8.4	100.0(100)	
	기타	1.81(1.03)	55.8	15.8	19.9	8.5	100.0(172)	
학업 성적	상	1.77(0.97)	54.9	19.7	19.1	6.4	100.0(3,239)	217.232***
	중	1.91(0.98)	46.6	22.1	25.0	6.4	100.0(3,662)	
	하	2.17(1.08)	38.4	18.2	31.1	12.4	100.0(1,806)	
경제적 수준	상	1.80(0.97)	53.2	19.8	20.8	6.1	100.0(5,063)	242.136***
	중	2.00(1.01)	43.1	21.8	26.9	8.2	100.0(2,947)	
	하	2.37(1.08)	30.6	17.9	35.5	16.0	100.0(695)	

*p 〈 .05, **p 〈 .01, ***p 〈 .001.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의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수치는 2020년 최저치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본 문항 결과 역시 최근 5년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교급별로 봤을 때, 2018년 42.5%였던 경험률은 2022년 38.4%로 감소하였으나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모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감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16.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우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세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등에 따른 평균비교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 평균 1.73(표준편차=.01), 여학생 평균 2.13(표준편차=.01)로 여학생의 우울감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t값 -21.385(p<.001)로 유의미하였다.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 평균 1.72(표준편차=.92), 중학생 2.02(표준편차=.90), 고등학생 평균 2.08(표준편차=.93)로 고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이들 간의 차이는 F값 137.337(p<.001)로 유의미하였다. 가족유형에서는 양부모 가정 1.93(표준편차=.90), 한부모 가정 2.06(표준편차=.90), 조손 가정 1.92(표준편차=.90)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F값 5.327(p<.01)로 유의미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가정 간 차이는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간의 차이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적의 경우 상집단 1.82(표준편차=.87), 중집단 1.92(표준편차=.88), 하집단 2.18(표준편차=.95)로 하집단의 우울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F값 99.225(p<.001)로 유의미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상집단 1.83(표준편차=.87), 중집단 2.02(표준편차=.91), 하집단 2.34(표준편차=.97)로 하집단이 상대적으로 큰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F값 119.403(p<.001)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Ⅲ-6-43. 우울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단위 : 명, 점)

구분		전체(*N*)	우울감		
			M	*SD*	*t*/*F*(Scheffé)
전체		8811	1.94	.90	
성별	남학생	4250	1.73	.01	-21.385***
	여학생	4561	2.13	.01	
학교급	초등학교[a]	2985	1.72	.83	137.334*** c>b>a
	중학교[b]	2976	2.02	.90	
	고등학교[c]	2850	2.08	.9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a]	7770	1.93	.90	5.327** b>a
	한부모가정[b]	730	2.06	.90	
	조손가정[c]	100	1.92	.90	
	기타[d]	173	1.86	.93	
학업 성적	상[a]	3205	1.82	.87	99.225*** c>b>a
	중[b]	3646	1.92	.88	
	하[c]	1887	2.18	.95	
경제적 수준	상[a]	5101	1.83	.87	119.403*** c>b>a
	중[b]	2937	2.02	.91	
	하[c]	696	2.34	.97	

**p < .001, ***p < .001.

③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8,615명의 응답자 중 82.9%는 행복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4점 만점 중 3.08(표준편차=.69)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있어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 보다는 초등학생이 행복하다고 느꼈으며,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 보다는 양부모 가정이 응답자들이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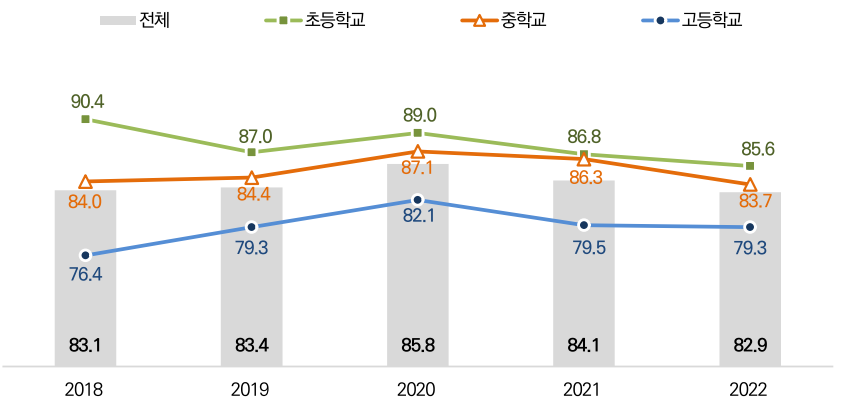
표 Ⅲ-6-44. 행복한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전체(N)	χ^2
전체		3.08(0.69)	1.6	15.5	56.2	26.7	100.0(8,615)	
성별	남학생	3.13(0.70)	1.8	13.3	54.4	30.4	100.0(4,124)	72.226***
	여학생	3.03(0.68)	1.5	17.4	57.9	23.2	100.0(4,491)	
학교급	초등학교	3.22(0.72)	1.4	13.1	47.6	38.0	100.0(2,829)	310.233***
	중학교	3.06(0.66)	1.3	15.0	60.0	23.7	100.0(2,945)	
	고등학교	2.96(0.68)	2.3	18.4	60.8	18.5	100.0(2,84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9(0.69)	1.5	14.8	56.8	26.8	100.0(7,620)	40.562***
	한부모가정	2.97(0.73)	2.3	20.9	53.8	23.0	100.0(707)	
	조손가정	2.99(0.81)	3.6	22.0	46.0	28.5	100.0(95)	
	기타	3.09(0.80)	2.6	19.9	43.3	34.2	100.0(155)	
학업 성적	상	3.21(0.69)	1.4	11.7	51.9	35.0	100.0(3,185)	321.970***
	중	3.07(0.66)	1.5	14.2	60.2	24.1	100.0(3,583)	
	하	2.87(0.71)	2.5	25.0	55.6	17.0	100.0(1,774)	
경제적 수준	상	3.19(0.68)	1.1	12.1	53.7	33.0	100.0(4,969)	434.271***
	중	2.99(0.67)	1.8	17.5	61.0	19.8	100.0(2,886)	
	하	2.68(0.72)	5.1	31.8	53.0	10.1	100.0(687)	

***p 〈 .001.

위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들은 2020년 85.8%로 가장 높은 행복도를 보였으며 이후로 감소하여 2022년 약 3%p 감소하여 82.9%의 수치를 보였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22년 증가하였지만 초등학생은 90.4%에서 85.6%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주: '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17. 행복한 정도(연도별 추이)

앞 선 문항에서,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1,397명의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3.2%가 학업문제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18.0%의 응답자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8.4%,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7.7%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업문제와 미래(진로)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부분은 유사하지만 그 다음에 있어서 남학생은 가정, 친구 문제 순이었다. 한편 여학생들은 외모 문제가 3순위로 높게 응답되었다. 학교급에 있어서도 모든 교급이 학업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미래(진로)에 대한 문제와 가정 문제가 2순위로 분석되었다. 중학생의 경우는 미래(진로)에 이어 외모 문제가 3순위로 높게 응답되었으며 고등학생은 기타 문제가 3순위로 응답되었다. 가족유형의 경우 학업문제가 가장 많이 응답되기는 했지만 양부모 가정의 경우 45.6%인데 반해 한부모 가정은 29.2%, 조손

가정은 21.0%에 머무는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적에 있어서 모든 집단이 2순위로 미래(진로) 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특히 중위권 집단의 응답이 20.4%로 상위권 집단(13.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중, 상위권 집단의 경우 학업문제가 40%대 중반 수준이지만 하위권의 경우 31.4%로 큰 간극을 보였으며, 가정 문제도 13.8%로 높게 응답 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표 Ⅲ-6-45. 행복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 문제 (학업 부담, 성적 등)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타	전체(N)	χ^2
전체		43.2	8.4	7.7	1.9	9.1	18.0	11.6	100.0(1,397)	
성별	남학생	45.4	7.8	6.3	2.3	5.7	19.9	12.5	100.0(594)	22.865**
	여학생	41.6	8.9	8.8	1.6	11.7	16.6	11.0	100.0(803)	
학교급	초등학교	38.5	13.0	10.4	1.8	11.4	13.1	11.8	100.0(390)	71.198***
	중학교	43.8	8.5	9.6	2.8	10.5	14.4	10.6	100.0(458)	
	고등학교	46.1	5.1	4.2	1.2	6.5	24.4	12.5	100.0(54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5.6	7.3	7.9	1.5	8.7	17.8	11.1	100.0(1,179)	47.995**
	한부모가정	29.2	13.6	5.5	5.0	11.6	20.6	14.4	100.0(155)	
	조손가정	21.0	11.8	14.5	0.0	17.2	13.6	21.8	100.0(24)	
	기타	40.2	17.4	8.1	2.2	5.9	17.0	9.2	100.0(34)	
학업 성적	상	46.4	7.7	8.2	1.3	9.4	13.6	13.3	100.0(395)	25.094*
	중	44.5	8.4	8.6	2.1	8.0	20.4	7.9	100.0(533)	
	하	38.8	9.1	6.3	2.1	10.4	18.9	14.3	100.0(463)	
경제적 수준	상	44.8	7.2	8.1	0.3	10.6	17.9	11.3	100.0(618)	68.198***
	중	46.7	7.5	6.3	1.6	6.8	17.9	13.2	100.0(529)	
	하	31.4	13.8	10.1	6.5	10.8	18.6	8.9	100.0(244)	

***p < .001.

④ 삶의 만족도

현재 응답자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전체 평균은 6.9점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 남학생의 만족도는 평균 7.2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감소한 수준이며, 여학생의 만족도는 전년과 동일한 6.6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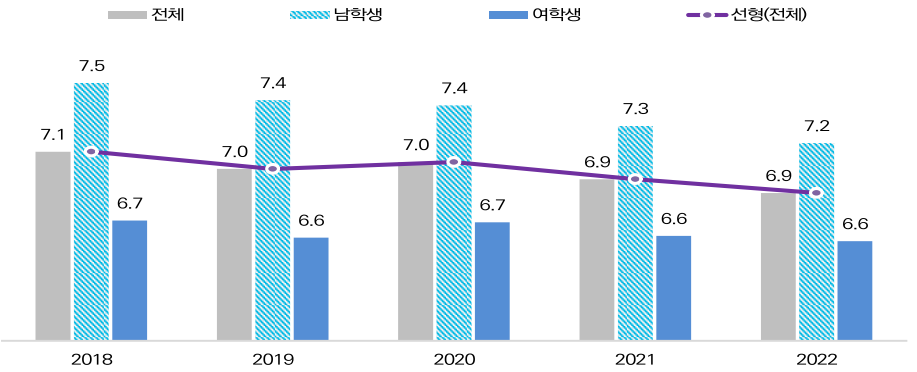


그림 Ⅲ-6-18.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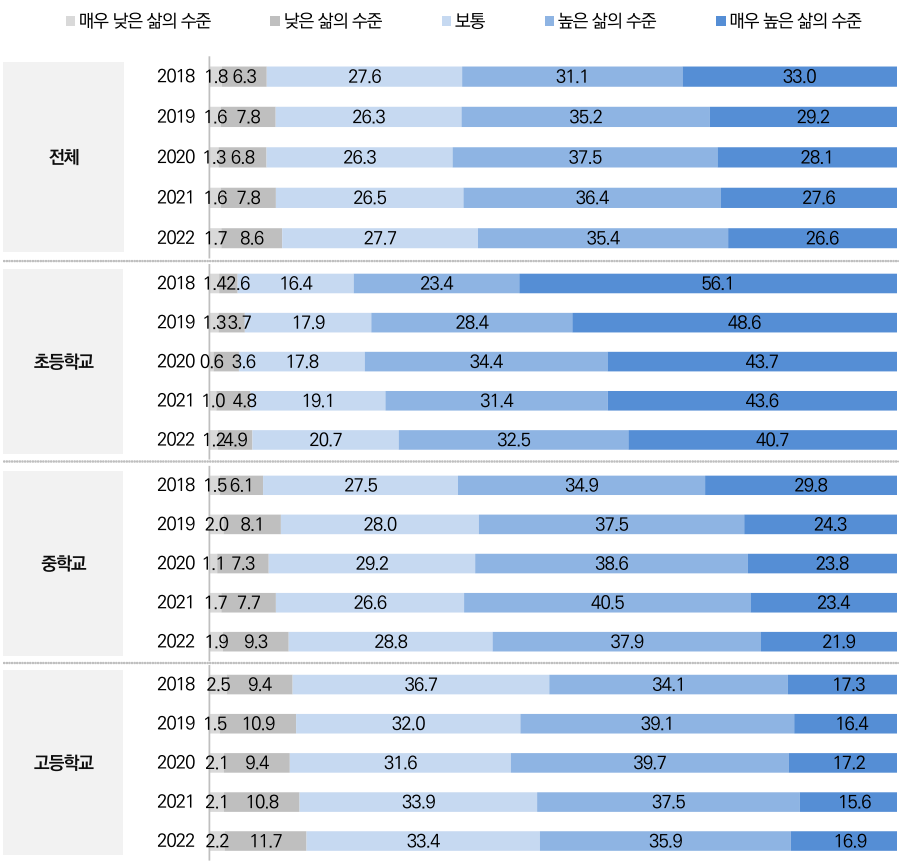
각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은 6.9점으로 분석되었는데, 남학생이 경우 7.2점인데 반해 여학생은 6.6점으로 나타나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에 있어는 초등학생이 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학생 6.7점, 고등학생 6.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는 양부모 가정의 응답자(6.9점)와 한부모 가정의 응답자(6.4)간의 차이만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의 경우 하위원에서 중위권으로 갈수록,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갈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Ⅲ-6-46. 삶의 만족도

구분		전체(*N*)	*M*	*SD*	*t*/*F*(Scheffé)
전체		8766	6.9	2.33	
성별	남학생	4434	7.2	2.26	247.561***
	여학생	4329	6.6	2.35	
학교급	초등학교[a]	2963	7.6	2.23	224.153*** a>b>c
	중학교[b]	2957	6.7	2.28	
	고등학교[c]	2845	6.3	2.3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a]	7727	6.9	2.31	11.449*** a>b
	한부모가정[b]	725	6.4	2.39	
	조손가정[c]	100	6.9	2.63	
	기타[d]	174	6.7	2.58	
학업 성적	상[a]	3238	7.5	2.17	299.765*** a>b>c
	중[b]	3648	6.8	2.21	
	하[c]	1804	5.8	2.46	

구분		전체(N)	M	SD	t/F(Scheffé)
경제적 수준	상[a]	5066	7.4	2.17	368.685*** a>b>c
	중[b]	2928	6.3	2.29	
	하[c]	694	5.4	2.48	

***$p < .001$.



* 주: 1) 매우 낮은 삶의 수준: ⓪, ① 낮은 삶의 수준: ②, ③ 보통: ④, ⑤, ⑥
높은 삶의 수준 ⑦, ⑧ 매우 높은 삶의 수준 ⑨, ⑩
2) 본 그림은 최창욱 외(2018)의 [그림 Ⅳ-110]에 2019~2021년도 자료를 추가하여 재작성 하였음.
3) 위의 그래프에는 지면상 삶의 만족도 수준의 '매우 낮음'과 '낮음' 수치를 합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Ⅲ-6-19.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삶의 만족도 응답결과에 대한 교급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위와 같다. 전체와 초등학생의 경우 높은 삶의 수준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우 높은 삶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매우 낮은 삶의 수준이 낮은 폭이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자아존중감

본인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세 문항을 통해 응답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였다.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75.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0.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68.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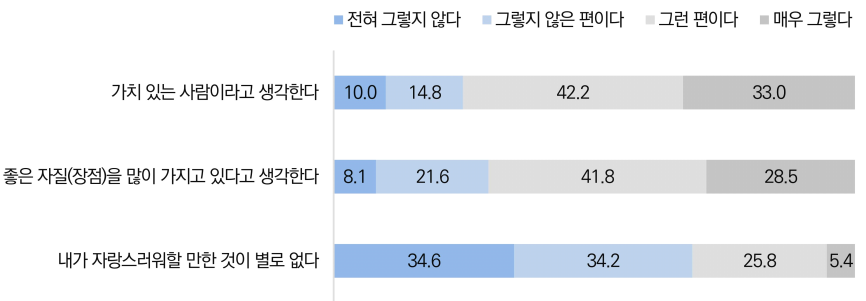


그림 Ⅲ-6-20. 자아존중감 항목별 조사결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첫 번째 자아존중감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8,778명의 응답자 중 75.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문항 평균은 2.98(표준편차=.94)로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성별, 학교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평균 3.00(표준편차=.97)로 여학생 평균 2.97(표준편차=.91)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 2.97(표준편차=1.03), 고등학생 2.98(표준편차=.90), 중학생 3.00(표준편차=.88)으로 중, 고, 초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이할 점은 초등학생의 경우 본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4.3%로 나타나 다른 교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유형에 있어서 양부모 가정의 응답자가 평균 3.00(표준편차=.93)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 가정 2.91(표준편차=.91), 조손 가정 2.65(표준편차=1.06) 순으로 집계되었다. 성적과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위권일수록 높은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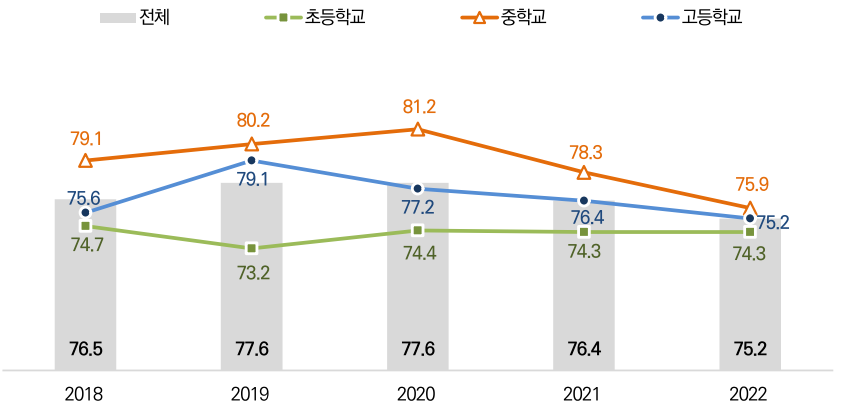
표 Ⅲ-6-47.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8(0.94)	10.0	14.8	42.2	33.0	100.0(8,778)	
성별	남학생	3.00(0.97)	11.6	12.4	40.7	35.3	100.0(4,229)	71.068***
	여학생	2.97(0.91)	8.5	17.1	43.6	30.8	100.0(4,549)	
학교급	초등학교	2.97(1.03)	14.3	11.3	37.6	36.7	100.0(2,962)	160.979***
	중학교	3.00(0.88)	7.2	16.9	44.9	31.0	100.0(2,969)	
	고등학교	2.98(0.90)	8.6	16.2	44.1	31.1	100.0(2,84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0(0.93)	9.6	14.7	41.9	33.8	100.0(7,742)	59.595***
	한부모가정	2.91(0.91)	10.2	15.8	46.4	27.6	100.0(726)	
	조손가정	2.65(1.06)	21.3	15.2	41.0	22.5	100.0(99)	
	기타	2.64(1.08)	21.7	17.3	36.1	24.9	100.0(173)	
학업 성적	상	3.18(0.92)	8.4	9.9	37.1	44.5	100.0(3,244)	431.631***
	중	2.93(0.91)	10.2	14.7	47.0	28.1	100.0(3,655)	
	하	2.73(0.95)	12.6	23.8	41.3	22.3	100.0(1,804)	
경제적 수준	상	3.06(0.95)	10.4	11.5	40.1	38.0	100.0(5,068)	221.570***
	중	2.90(0.91)	9.5	17.9	45.3	27.3	100.0(2,940)	
	하	2.75(0.90)	10.2	25.3	43.8	20.7	100.0(693)	

***$p < .001$.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의 연도별 추이는 다음가 같다. 2018년에 비해 초등학생은 0.3%p, 중학생 3.2%p, 고등학생 0.4%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이할 점은 중학생의 응답 수준은 다른 교급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점점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이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21.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두 번째 문항인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의 요인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은 평균 2.94(표준편차=.93)로 평균 2.88(표준편차=.88)인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교가 평균 3.03(표준편차=.89)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2.87(표준편차=.91), 중학교 2.83(표준편차=.90)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유형에서 양부모 가정 응답자의 평균이 2.92(표준편차=.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부모 가정 2.82(표준편차=.90), 조손 가정 2.68(표준편차=1.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하위집단에서 상위집단으로 갈수록 평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Ⅲ-6-48.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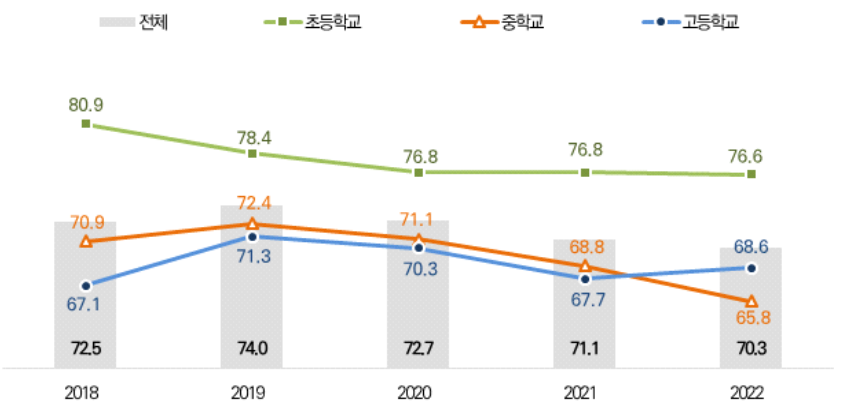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1(0.90)	8.1	21.6	41.8	28.5	100.0(8,753)	
성별	남학생	2.94(0.93)	9.3	18.6	41.0	31.1	100.0(4,218)	69.397***
	여학생	2.88(0.88)	6.9	24.4	42.5	26.1	100.0(4,535)	
학교급	초등학교	3.03(0.89)	7.7	15.7	43.0	33.6	100.0(2,934)	124.456***
	중학교	2.83(0.90)	7.9	26.3	40.7	25.1	100.0(2,969)	
	고등학교	2.87(0.91)	8.6	22.8	41.7	26.9	100.0(2,85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2(0.90)	7.7	21.4	41.9	29.0	100.0(7,722)	39.365***
	한부모가정	2.82(0.90)	8.4	25.7	41.7	24.3	100.0(722)	
	조손가정	2.68(1.03)	17.4	21.5	36.9	24.1	100.0(100)	
	기타	2.82(1.02)	15.7	15.2	40.6	28.5	100.0(171)	
학업 성적	상	3.16(0.86)	5.7	13.1	40.9	40.2	100.0(3,224)	621.488***
	중	2.85(0.86)	7.4	23.2	46.3	23.1	100.0(3,650)	
	하	2.58(0.94)	13.7	33.4	34.4	18.5	100.0(1,805)	
경제적 수준	상	3.03(0.89)	7.0	17.0	41.7	34.3	100.0(5,046)	299.030***
	중	2.77(0.89)	9.0	26.5	42.8	21.7	100.0(2,934)	
	하	2.58(0.90)	12.1	33.5	38.5	15.8	100.0(695)	

***$p < .001$.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의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특이한 점은,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두 집단 모두 2021년까지 간극을 좁혀가며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2년 조사 결과 고등학생의 자존감이 중학생을 앞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초등학생의 자존감은 다른 교급에 비해 높지만, 매년 하락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22.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자아존중감의 마지막 문항인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문항의 응답결과와 변인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은 2.02(표준편차=.91)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1.93(표준편차=.88), 여학생 2.11(표준편차=.92)로 분석되어 여학생이 더욱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있어 중학생이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초등학생이 가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유형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응답자가 장점이 부족하다고 가장 많이 느꼈으며 양부모 가정이 응답자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그 수준이 낮을수록 자랑스러워할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6-49.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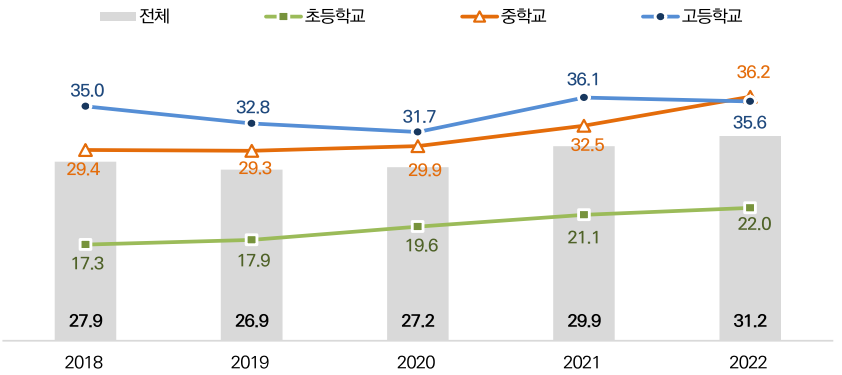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02(0.91)	34.6	34.2	25.8	5.4	100.0(8,796)	
성별	남학생	1.93(0.88)	38.5	34.9	22.1	4.5	100.0(4,242)	93.506***
	여학생	2.11(0.92)	30.9	33.6	29.2	6.3	100.0(4,553)	
학교급	초등학교	1.83(0.87)	43.7	34.3	17.5	4.5	100.0(2,971)	238.291***
	중학교	2.13(0.91)	29.2	34.6	30.1	6.1	100.0(2,974)	
	고등학교	2.11(0.91)	30.6	33.8	29.9	5.7	100.0(2,8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01(0.90)	35.0	34.4	25.5	5.1	100.0(7,754)	38.608***
	한부모가정	2.17(0.93)	28.9	32.7	31.1	7.3	100.0(730)	
	조손가정	2.06(0.94)	32.2	38.8	20.1	8.9	100.0(100)	
	기타	2.08(1.02)	37.2	28.8	23.0	11.0	100.0(173)	
학업 성적	상	1.75(0.83)	46.4	35.2	15.0	3.4	100.0(3,239)	678.545***
	중	2.08(0.87)	29.9	36.8	29.0	4.3	100.0(3,670)	
	하	2.38(0.96)	23.1	27.2	38.3	11.4	100.0(1,812)	
경제적 수준	상	1.88(0.87)	40.4	35.4	20.3	3.9	100.0(5,075)	344.782***
	중	2.18(0.92)	28.2	32.9	31.9	7.0	100.0(2,947)	
	하	2.39(0.93)	20.3	30.3	38.9	10.4	100.0(696)	

***p 〈 .001.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문항에 대한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8년 17.3%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22.0%로 약 5%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학생의 경우도 계속 증가하여 2022년에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오던 고등학생의 수치를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23.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연도별 추이)

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체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은 2.99(표준편차=.86)로 분석되었다. 남학생은 평균 3.05(표준편차=.88)로 여학생 평균 2.94(표준편차=.84)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평균은 각각 2.94였으며 초등학교 평균은 3.09(표준편차=.82)로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유형에 있어서 양부모 가정의 응답자 평균이 3.00(표준편차=.84)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부모 가정 평균 2.91(표준편차=.94), 조손 가정 평균 2.76(표준편차=.73)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위권 각각 평균 3.23(표준편차=.80)과 3.10(표준편차=.82)이었으며 중, 하위권은 2점대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표 Ⅲ-6-50. 자아존중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단위 : 명, 점)

구분		전체(*N*)	자아존중감		
			M	*SD*	*t*/*F*(Scheffé)
전체		8854	2.99	.86	
성별	남학생	4277	3.05	.88	5.919***
	여학생	4577	2.94	.84	

구분		전체(*N*)	자아존중감		
			M	*SD*	*t*/*F*(Scheffé)
학교급	초등학교[a]	2994	3.09	.82	29.520*** a>b, a>c
	중학교[b]	2996	2.94	.91	
	고등학교[c]	2864	2.94	.9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a]	7800	3.00	.84	5.138** a>c
	한부모가정[b]	737	2.91	.94	
	조손가정[c]	100	2.76	.73	
	기타[d]	178	2.94	1.21	
학업 성적	상[a]	3262	3.23	.80	241.772*** a>b>c
	중[b]	3684	2.92	.77	
	하[c]	1831	2.71	1.02	
경제적 수준	상[a]	5104	3.10	.82	111.908*** a>b>c
	중[b]	2969	2.87	.88	
	하[c]	702	2.70	.93	

**p < .01, ***p < .001.

⑥ 고민거리 대화상대

본인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누구와 대화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 8,549명 중 가장 많은 38.2%는 어머니와 대화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35.1%가 친구와 대화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대화상대가 없다는 응답도 13.0%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를 성별, 학교급 등에 따라 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 40.0%, 친구 31.5%, 없다 12.5% 순으로 응답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친구 38.4%, 어머니 36.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 간 차이를 보였다. 학교급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생은 어머니 48.7%, 친구 25.4%로 응답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친구가 38.8%와 41.4%로 어머니와 대화하는 경우보다 친구와 대화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의 경우 양부모 가정의 응답자는 어머니 39.3%, 친구 34.8%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 응답자의 경우 친구와 대화하는 경우가 각각 38.8%와 39.1%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학업성적에 있어서는 상위권 집단의 경우 어머니가 45.8%로 가장 많았지만 하위권 집단은 친구가 41.7%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위권 집단만 어머니가 42.4%로 가장 많았으며 중, 하위권 집단에서는 친구가 36.8%, 37.9%로 높게 응답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6-51. 고민거리 대화상대

(단위 : %(명))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담임 선생님	학교 상담 선생님	친구	이웃/친척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선생님	기타	전체 (N)	χ^2
전체		13.0	4.5	38.2	5.5	0.5	0.6	35.1	0.9	0.3	1.3	100.0(8,549)	
성별	남학생	12.5	7.4	40.0	4.7	0.7	0.6	31.5	0.8	0.3	1.5	100.0(4,108)	197.203***
	여학생	13.5	1.8	36.5	6.2	0.4	0.6	38.4	1.0	0.3	1.1	100.0(4,441)	
학교급	초등학교	10.4	4.9	48.7	5.7	0.6	0.7	25.4	1.3	0.3	1.9	100.0(2,897)	314.101***
	중학교	15.5	4.5	33.3	4.6	0.4	0.7	38.8	0.7	0.4	1.0	100.0(2,889)	
	고등학교	13.2	4.2	32.3	6.2	0.5	0.4	41.4	0.5	0.3	1.0	100.0(2,76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2.7	4.2	39.3	5.6	0.5	0.5	34.8	0.8	0.3	1.3	100.0(7,549)	111.324***
	한부모가정	15.6	7.7	28.6	5.0	0.5	1.6	38.8	1.4	0.4	0.5	100.0(699)	
	조손가정	13.6	2.3	33.2	2.8	1.2	1.0	39.1	3.1	1.5	2.3	100.0(99)	
	기타	15.2	5.3	33.2	5.5	0.9	0.7	31.4	1.9	0.0	5.8	100.0(167)	
학업 성적	상	10.5	4.9	45.8	4.7	0.4	0.4	30.4	1.1	0.3	1.4	100.0(3,171)	275.109***
	중	12.1	4.6	37.9	5.9	0.4	0.6	36.1	0.8	0.4	1.2	100.0(3,560)	
	하	19.6	3.7	24.8	5.9	1.0	0.9	41.7	0.6	0.3	1.5	100.0(1,749)	
경제적 수준	상	9.7	5.2	42.4	5.3	0.6	0.5	33.7	1.0	0.3	1.3	100.0(4,921)	257.712***
	중	15.8	3.7	34.4	5.7	0.5	0.7	36.8	0.7	0.1	1.5	100.0(2,883)	
	하	26.1	3.0	23.5	6.3	0.3	0.6	37.9	0.6	0.9	0.8	100.0(673)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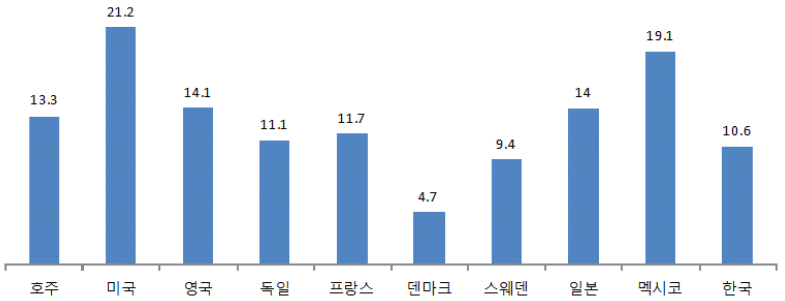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1) 아동 · 청소년복지 예산

① 아동 · 청소년복지예산 국가 간 비교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을 파악을 위하여 국가 간 비교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8년을 중심으로 제시된 OECD 주요국가의 아동빈곤율(child poverty rate)은 국가별로 차이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OECD 국가별 아동빈곤율을 백분율(%) 기준으로 높은 국가(10%이상), 낮은 국가(5%이하), 중간국가(5~10%)로 구분하면, 낮은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국가복지가 발달된 나라들이다. 반면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미국, 영국으로 각각 21.2%, 14.1%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었고, 시장복지가 발달한 나라들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10.6%[54]로 높은 수준이지만, 제시된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로 복지가 발달된 북유럽 국가들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다(여유진, 2018).

54)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OECD에 제시된 수치가 아닌 사회보장위원회의 2019년 상대적 아동빈곤율을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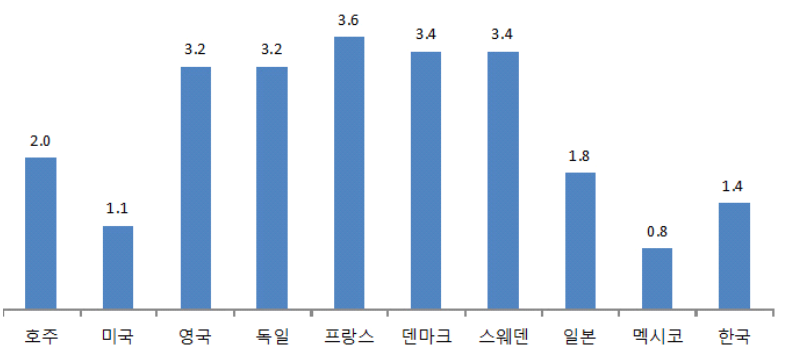


* 출처: OECD. stat.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rate. https://stats.oecd.org.2022년 10월 10일 인출.
사회보장위원회(202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그림2-20 상대적 아동빈곤율

* 주: 1) 단위: %
2) 국가별로 연도가 상이함. 영국,스웨덴, 한국은 2019년, 덴마크와 미국은 2017년 수치임.
3)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OECD 자료가 아니며, 동일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활용하였음.

그림 Ⅲ-6-24. 아동빈곤율 국가 간 비교(2018년 기준)

아동빈곤과 관련한 GDP대비 공적 가족지출 비중을 비교하였다. 공적 가족지출은 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다수의 유럽 내 국가들이 3.0%이상의 지출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 1.4%로 제시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보여진다. 한국에 비해 낮은 공적지출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1.1%), 멕시코(0.8%) 정도이다(여유진, 2018; 이윤경, 2021).



* 출처: OECD. stat. Family database. Total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families as a % of GDP
https://stats.oecd.org/ 에서 2022년 10월 1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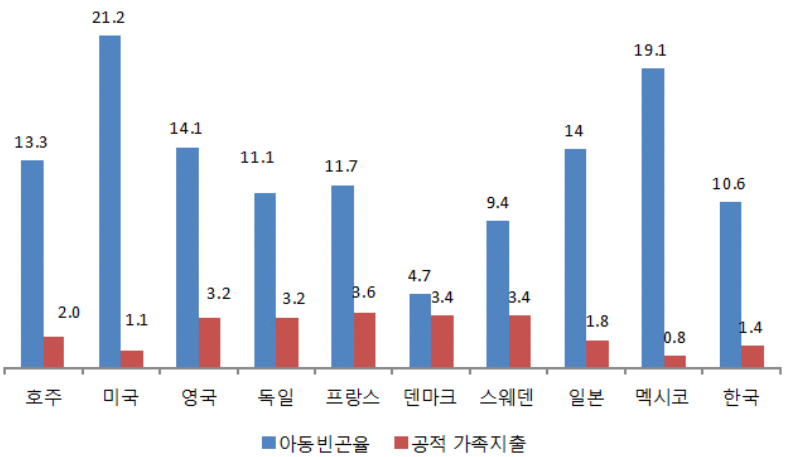
* 주: 1) 단위: %
2) OECD에서 제시한 자료 중 한국, 멕시코, 호주는 2018년 자료이며, 다른 국가들은 2017년이 최신임.

그림 Ⅲ-6-25. GDP 대비 공적 가족지출 비중 국가 간 비교(2018년 기준)

가족 관련 공적지출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및 가족관련 돌봄 등에 지출이며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이윤경, 2021). 공적지출과 아동빈곤율 간 부적관계(류연규, 백승호, 2011)를 확인하기 위해 OECD의 가족공적지출 비중과 아동빈곤율을 한 그림에 제시하였다.

가족공적지출이 높고, 아동빈곤율이 낮은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등이며 미국, 호주, 일본 등은 가족공적지출은 낮고,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로 보여진다. 특이한 것은 한국으로 가족공적지출이 적은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아동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한국의 2배 가까운 공적 가족지출을 하고 있지만, 아동빈곤율은 높다.

따라서 가족공적지출과 아동빈곤율 간의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에 따라 발견되는 아동빈곤율의 차이 역시 유사한 영향력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 주: 1) 지출과 정책효과 간 시간차이는 고려하지 않음(단위: %).
2) [그림 Ⅲ-6-24]와 [그림 Ⅲ-6-25]의 수치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Ⅲ-6-26. 국가별 아동빈곤율과 가족지출 간의 관계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수준

① 취약계층 아동 현황(빈곤율 포함)

가. 아동빈곤율

아래 표는 우리나라의 상대적 아동빈곤율(중위소득대비 50%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2016년 15.5%에서 2019년 12.1%로 감소하였고,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2016년 15.2%에서 2019년 10.6%로 급격히 완화되고 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 아동빈곤율의 감소폭보다 가처분소득 기준에 따른 아동빈곤율 감소폭이 더 큰 것을 고려하면, 아동수당제도 도입 등 아동관련 지원정책의 확대와 도입효과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Ⅲ-6-52. 아동빈곤율(2016~2019년)

(단위 : %)

구분	중위소득 50%기준 상대적 아동빈곤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16	15.5	15.2	15.2
2017	14.5	13.9	14.2
2018	13.1	12.3	12.3
2019	12.1	10.8	10.6

* 출처: 여유진, 허은솔, 이원진(2021). 2021 빈곤통계연보 〈표 3-11〉 아동빈곤율(중위소득지출) p.53.

* 주: 1) 빈곤율을 조사하는 원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2016년 변경되었다.
2) 시장소득은 시장(노동, 금융,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연금·정부지원금등 공적이전소득임.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0~9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의 수는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9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12.3%로 많으며, 시간에 따라 급격한 감소와 증가를 보이고 있다. 10~19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16년 약 34만 명에서 2019년 22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0~9세의 수급자의 낮은 변화율을 고려했을 때, 10~19세 수급자가 보이는 급격한 변화율에 대한 요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6-5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016~2021년)

(단위 : 명, %)

연도	0~4세	5~9세	10~19세	수급자 전체
2016	21,988	73,282	343,420	1,539,539
	1.4	4.8	11.2	100.0
2017	19,886	65,139	301,851	1,491,650
	1.3	4.4	10.1	100.0
2018	21,744	64,948	281,224	1,653,781
	1.3	3.9	8.5	100.0
2019	31,570	101,611	222,850	1,792,012
	1.8	5.7	12.4	100.0
2020	27,383	75,857	273,719	2,046,213
	1.3	3.7	13.4	100.0
2021	27473	79313	278,053	2,268,852
	1.2	3.5	12.3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2f).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주: 수급자 전체는 시설수급자(2016년도 91,075명)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전체를 말함. 2019년의 구분은 영유아기 0~5세), 학령기(6-11세), 청소년기(12-19세)로 구분되어, 본 표에서 영유아기는 0~4세, 학령기는 5~9세, 청소년기는 10~19세에 기입함.

아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원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분포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한부모가족 저소득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구수는 2015년 2,052천 가구에서 2019년 2,061천 가구로 미세하게 늘어났다. 전체 한부모 가구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비율은 2019년 8.9%이며, 조사기간 동안 9% 수준에서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2015년에 비해 2019년 1/3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Ⅲ-6-54. 한부모가구 비율(2015~2019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한부모 가구수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소계
2015	2,052(100)	192(9.4)	131(6.4)	323(15.7)
2016	1,995(100)	188(9.4)	62(3.1)	250(12.5)
2017	2,000(100)	181(9.1)	57(2.9)	238(11.9)
2018	2,031(100)	184(9.1)	56(2.8)	240(11.8)
2019	2,061(100)	183(8.9)	51(2.5)	234(11.4)

* 출처: 사회보장위원회(202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p.47.

* 주: 1)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부모가족'을 의미함

조사 기간 내 한부모가족의 가구유형은 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가구로 구분된다. 통계자료와 같이 한부모가구는 대부분 모자가족으로 볼 수 있다. 모자가족은 2016년 77.3%에서 2020년 79.1%까지 증가하였다. 부자가족은 2016년 22.2%에서 2020년 20.5%로 감소하였다.

표 Ⅲ-6-55.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2016~2020년)

(단위 : 세대, 명, %)

구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16	수	187,841	468,414	145,258	362,674	41,627	103,966	956	2,311
	비율	100.0		77.3		22.2		0.5	
2017	수	181,023	449,469	141,207	350,674	38,880	96,575	936	2,220
	비율	100.0		78.0		21.5		0.5	
2018	수	182,731	452,341	142,830	353,658	38,979	96,522	922	2,161
	비율	100.0		78.2		21.3		0.5	
2019	수	182,606	453,045	143,740	356,895	37,969	94,064	897	2,086
	비율	100.0		78.7		20.8		0.5	
2020	수	184,006	457,236	145,482	361,998	37,660	93,234	864	2,004
	비율	100.0		79.1		20.5		0.4	

* 출처: 여성가족부(2022d).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4.

* 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 포함)

②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가.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지원

요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지원 수준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관련 예산안을 조사하였다. 관련 예산을 보면 시설 내 보호관련 예산을 크게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은 39,426백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2,680백만 원이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2018년의 19,132백만 원에 비교하여 2배 증가하였다. 가정위탁지원은 2022년 7,99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8년과 비교해도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세부 예산안으로는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전문아동보호비 및 아동용품구입비,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등이며, 예산비중이 높은 것은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다(보건복지부, 2022d, 2022e).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158,000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400백만 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액은 지역아동센터 수 증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예산으로 판단된다.

2022년에 크게 감소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은 보호대상아동이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예산이다. 2022년에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표 Ⅲ-6-56.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예산(2018~2022년)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 연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18	19,132	1,021	1,285	122,600 (4,124개소, 월 516만원)
2019	21,163	3,218	1,500	126,000 (4,135개소, 월 529만원)
2020	22,793	3,028	1,044	142,900 (4,148개소, 월 569만원)
2021	26,746	3,164	940	148,600 (4,169개소, 월 619만원)
2022	39,426	1,276	7,995	158,000 (4,261개소, 월 644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2018b).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8). 2018 기금사업활동.
보건복지부(2019b).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복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bokgwon.go.kr/fund/02_01.jsp에서 2021년 10월 14일 인출.
보건복지부(2020b).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7.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일반회계). p.428
보건복지부(2021c).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0, 84.
보건복지부(2021d).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p. 128, 133.
보건복지부(2022d).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1, 85.
보건복지부(2022e).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p. 443.452

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취약계층 학생에게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22a). 2017년 1,806개교에서 2021년에는 3,475개교 까지 확장되었다.

표 Ⅲ-6-5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2017~2021년)

구분	대상지역	학교 수[1](초·중·고)	지원액(교부금/대응투자)
2017	개별학교	1,806교	1,352억
2018	개별학교	3,573교 (사업학교 1,720교, 연계학교 1,853교)	1,426억
2019	개별학교	3,578교 (사업학교 1,749교 연계학교 1,829교)	1,392억

구분	대상지역	학교 수[1](초·중·고)	지원액(교부금/대응투자)
2020	개별학교	3,690개교 (사업학교 1,762교 연계학교 1,928교)	1,377억
2021	개별학교	3,475개교	-

*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8, 2019b, 2020a). 2017~2020 청소년백서. p.375.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387 재인용(*원출처: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2021). 2021년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및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현황 조사 결과. p.11.)

* 주: 1) 유치원 원아를 제외한 초·중·고등학생에 한함.

다.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 16개 설치지역에서 시작하여 2015년부터 229개 시·군·구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대상도 2008년 9천명에서 2020년 16만 명까지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2a). 최근 5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사업지역과 지원대상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은 2020년에는 일부 삭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58.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현황 및 이용 아동 수(2016~2020년)

(단위 : 억원, 명, 가구)

구분	시·군·구 (사업실시 단위)	사업예산(억원)	아동 수(명)	가구 수(가구)
2016	229	658	134,853	86,681
2017	229	668	144,289	93,298
2018	229	668	150,052	97,739
2019	229	677	156,439	102,459
2020	229	551	160,501	105,730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214

라.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사업은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모는 것이다. 따라서 디딤씨앗통장은 '학자금', '취업훈련', '주거마련'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2a).

지원아동 수는 최근인 2020년에 소폭 감소하였지만, 월평균 적립금, 월평균 매칭금, 적립금 누계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액이 2020년부터 5만원까지 가능해지면서 2020년의 월평균 매칭금과 월평균 적립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59. 디딤씨앗통장 저축현황(2016~2020년)

구분	지원아동수(명)	월평균 적립금(원)	월평균 매칭금(원)	적립금 누계(억원)
2016	70,417	39196	26,485	2,715
2017	71,457	42416	31,224	3,257
2018	81,412	46970	32,538	3,880
2019	80,770	52515	33,688	4,570
2020	74,685	65013	39,632	5,397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218.

* 주: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제외.

6) 소결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다섯 번째 대분류인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지표는 장애와 생존, 보건, 신체 및 정신 건강, 사회보장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중분류 첫 번째 지표인 장애의 경우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지표 제시하였다. 먼저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은 2022년도에 1.8%로 나타났으며 2022년 특수학교의 수는 192개로 전년 대비 5개교 증가하였다.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12,712학급으로 전년대비 670학급 증가한 수치이다. 교원수는 24,962명으로 2021년 23,494명 대비 1,468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전체 103,695명으로 전년대비 5,541명 증가하였다. 통합교육의 경우 2022년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103,695명 중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은 27.2%였으며 72.8%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55.9%)과 일반학급(16.9%)에 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완전한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일반학급(통합학급) 배치율은 2018년 17.2%에서 2022년 16.9%로 줄어들었다. 진학 및 취업률의 경우 2022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 6,762명 중 진학 56.2%, 취업 9.9%, 비진학 및 미취업 33.9%로 집계되었다.

생존 및 발달과 관련하여 2021년 전체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당 2.4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0세부터 24세까지의 사망률은 0세의 경우 10만 명당 241.2명, 1세~4세 11.2명, 5~9세 6.0명, 10~14세 10.1명, 15~19세 22.4명, 20~24세 35.8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고에 의한 아동·청소년 사망률 집계 결과는 0세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1.2명, 1~4세 4.1명, 5~9세 1.8명, 10~14세 4.7명, 15~19세 15.4명, 20~24세 25.9명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에 대한 집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

년 운수사고의 경우 20~24세가 10만 명당 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락사고는 0세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 영역의 경우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2021년 만 20세 이하 청소년의 총 9,027,614명 중 0.9%인 84,610명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남자 아동·청소년은 4,649,020명 중 1.0%인 45,624명이었으며 여자 아동·청소년은 4,378,594명의 0.9%인 38,986명이었다. 지역사회 내 안전과 관련하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85.9%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자 중 79.8%가 안전한 편이라고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지표 제시이다. 먼저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11,964개의 초, 중, 고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73.9%에 그친다. 교급별로 초등학교 78.2%, 중학교 64.7%, 고등학교 74.8%, 특수학교 80.7%이다.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운영 현황은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10개소, 소아전문 응급센터가 10개소(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8개소, 소아전용응급실 2개소)가 운영 중이다.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전국에 94.3% 설치되어 있으며 Wee프로젝트가 8,059개소(Wee클래스, Wee센터 등)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광역 16개소, 기초 244개소가 있으며 그 외에 자살예방지원센터 6곳,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보건 서비스 이용률의 경우 아동·청소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8년 22만 명에서 2020년 19만 명으로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은 최근 1년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비율을 의미한다. 전체기준으로 2.8%이며, 치과 미충족의료율은 12.4%로 병의원 미충족의료율보다 매우 높다. 2021년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제시된 중·고등학생의 흡연율과 음주율을 보면 중, 고생 전체 흡연율은 4.5%이고 고3의 흡연율이 8.8%로 가장 높다. 음주율의 경우 전체 음주율은 10.7%이고 고3의 음주율이 19.3%로 가장 높다.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을 2018년과 비교하면 2021년은 크게 낮아진 결과가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흡연예방교육 경험율은 72.5%에서 63.2%로 약 9%가 감소하였다. 음주예방교육은 평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험률로 나타났다. 전체를 대상으로 33.0%에 불과했으며, 중학생은 37.2%, 고등학생은 28.7%였다.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지표에서 첫 번째로 신체적 건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에게 본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8,820명의 응답자 중 85.6%는 스스로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31.4%가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일주일에 1~2회 정도가 24.2%, 한 달에 1~2회 정도가 22.4%로 응답되었으며 그 외에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2.0%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수면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대상자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7.2시간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부적으로 8시간 이상~9시간 미만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1.1%로 가장 많았다. 수면시간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54.4%는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수면이 부족한 이유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학원과외, 가정학습 등의 이유로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는데, 남학생의 경우 게임과 학원과외, 가정학습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가정학습과 학원과외로 인한 수면부족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2019년, 과체중인 초등학생은 남학생 11.5%, 여학생 10.7%였으며 중학생은 남학생 11.3%, 여학생 10.1%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에서는 남학생이 9.9%, 여학생 10.0%로 여학생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신적 건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최근 5년간의 조사결과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4.7%였던 자살률은 2020년 6.5%까지 증가했으며 2021년 7.1%까지 증가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중,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33.5%의 학생들이 자살에 대해 가끔 또는 자주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급별로 중학교 33.1%, 고등학교 33.9%가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제 대상자의 가장 많은 44.3%는 학업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1.6%, 가족 간의 갈등 16.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우울은 남학생 평균 1.73(표준편차=.01), 여학생 평균 2.13(표준편차=.01)로 여학생의 우울감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t값 -21.385($p<.001$)로 유의미하였다. 행복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전체 8,615명의 응답자 중 82.9%는 행복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4점 만점 중 3.08(표준편차=.69)점으로 나타났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1,397명의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3.2%가 학업문제 때문이

라고 답했으며 18.0%의 응답자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의 경우 2022년 전체 평균은 6.9점으로 분석되었으며 남학생의 만족도는 평균 7.2점, 여학생의 만족도는 전년과 동일한 6.6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전체 평균은 2.99(표준편차=.86)로 분석되었으며 남학생은 평균 3.05(표준편차=.88)로 여학생 평균 2.94(표준편차=.84)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인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누구와 대화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 8,549명 중 가장 많은 38.2%는 어머니와 대화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35.1%가 친구와 대화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대화상대가 없다는 응답도 13.0%에 달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10.6%로 제시된 높은 수준이지만,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보여진다. 아동빈곤과 관련한 GDP대비 공적 가족지출 비중은 유럽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다수의 유럽 내 국가들이 3.0%이상의 지출 수준을 나타낸 반면 한국은 1.4%로 제시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보여진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수준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0~4세와 5~9세 학령전기의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와 3.5%로 낮았으나 10~19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2.3%로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 수는 2015년 2,052천가구에서 2019년 2,061천가구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족은 2016년 77.3%에서 2020년 79.1%까지 증가하였다. 부자가족은 2016년 22.2%에서 2020년 20.5%로 감소하였다.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을 살펴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은 39,426백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2,680백만 원이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2018년의 19,132백만 원에 비교하여 2배 증가하였다. 가정위탁지원은 2022년 7,99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158,000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400백만 원 증가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17년 1,806개교에서 2021년에는 3,475개교 까지 확장되었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은 2020년 기준 226개소에 이용자는 16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사업의 지원아동수는 2020년에 소폭 감소하여 74,685명이며 적립누계액은 5,397억원으로 나타났다.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교육에의 권리

(1) 교육기회 보장 정도

①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대한민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과 비교해 보면 (〈표 III-7-1〉), 2018년 우리나라 초등교육과정의 공교육비 비율은 30%로 OECD 평균인 21%보다 9%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중등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이 35%인 반면 OECD의 경우에는 25%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초중고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을 의미하는 고등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고등교육과정의 공교육비 비율은 27%인 반면, OECD 국가들의 평균 공교육비 비율은 37%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공교육비 투입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이후 OECD와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및 그 비율의 차이는 매우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1.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단위 : ppp, %)

구 분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2000 (2003)	한국	3,155	21	4,069	27	6,118	40
	OECD 평균	4,381	19	5,957	25	9,571	42
2005 (2008)	한국	4,691	22	6,645	31	7,606	36
	OECD 평균	6,252	21	7,804	26	11,512	40
2010 (2013)	한국	7,453	26	8,911	31	9,998	35
	OECD 평균	7,974	23	9,014	26	13,528	41
2015 (2018)	한국	11,047	31	12,202	35	10,109	29
	OECD 평균	8,631	22	10,010	25	15,656	38

구 분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2016 (2019)	한국	11,029	30	12,370	33	10,486	28
	OECD 평균	8,470	21	9,968	25	15,556	38
2017 (2020)	한국	11,702	29	13,579	33	10,633	26
	OECD 평균	9,090	21	10,547	24	16,327	36
2018 (2021)	한국	12,535	30	14,978	35	11,290	27
	OECD 평균	9,550	21	11,192	25	17,065	37

* 출처: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p.34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a). 2021 간추린 교육통계. p.54.
* 원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각 년도.

* 주: 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산출식: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산출기준 변경
– 기존 산출식: {(경상지출+자본적 지출)/학생 수}/PPP
– 신규 산출식: {(교육기관 직접 지출)/학생 수}/PPP
2) 과정별 포함 학제는 일러두기 참조
3) 「OECD 교육지표 2019」부터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이 공교육비에서 제외됨(고등교육단계는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제외)
4) 「OECD 교육지표 2017」부터 교육단계 구분 없는 프로그램의 지출액을 각 교육단계에 포함하여 공교육비 산출
–'10년(회계연도) 한국 자료는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KEDI에서 산출한 수치임
5) 한국 1인당 GDP(회계연도 기준)는 '00년 US$ 15,186, '05년 US$ 21,342, '10년 US$ 28,829, '16년 US$ 37,143, '17년 US$ 41,001, '18년 US$ 42,487
6) 한국 PPP환율(회계연도 기준)은 '00년 $1당 731.19원, '05년 $1당 788.92원, '10년 $1당 823.67원, '16년 $1당 862.55원, '17년 $1당 871.70원, '18년 $1당 865.72원

②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2021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특목고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7.9명으로 가장 작았으며, 자율고가 1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래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유치원은 14.6명에서 10.9명으로, 초등학교는 17.3명에서 14.0명으로, 중학교는 17.3명에서 11.9명으로, 고등학교는 14.8명에서 9.9명으로 감소하였고, 감소폭은 중학교의 경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2.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21년)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유치원		14.6	14.5	14.3	13.4	13.4	13.3	12.9	12.3	11.9	11.4	10.9
초등학교		17.3	16.3	15.3	14.9	14.9	14.6	14.5	14.5	14.6	14.2	14.0
중학교		17.3	16.7	16.0	15.2	14.3	13.3	12.7	12.1	11.7	11.8	11.9
고등학교	전체	14.8	14.4	14.2	13.7	13.2	12.9	12.4	11.5	10.6	10.1	9.9
	일반고	15.8	15.4	15.2	14.6	14.1	13.7	13.1	12.1	11.1	10.7	10.5
	특목고	11.0	10.3	10.0	9.7	9.3	9.1	8.9	8.6	8.3	8.0	7.9
	특성화고	12.5	12.1	12.0	11.6	11.4	11.0	10.6	9.8	9.1	8.4	8.0
	자율고	15.2	14.6	14.3	13.9	13.7	13.5	13.2	12.4	11.5	11.1	11.2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a). 2021 간추린 교육통계. p.16.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교원 1인당 학생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6에서 2022년 9월 15일 인출.

* 주: 1)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생수 / 교원수
2) 유치원~고등학교 교원은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휴직 교원 포함. 퇴직 교원 및 강사는 제외

한 학급에 몇 명의 학생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학급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표 III-7-3〉), 2021년 유치원은 16.1명,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1.5명, 중학교는 25.4명, 고등학교는 23.0명으로 25명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1년 이해 학급당 학생 수도 앞서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학생 연령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Ⅲ-7-3. 학급당 학생 수(2011~2021년)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유치원		20.9	21.6	21.5	19.7	20.0	19.7	19.0	17.9	17.0	16.7	16.1
초등학교		25.2	24.3	23.2	22.8	22.6	22.4	22.3	22.3	22.2	21.8	21.5
중학교		33.0	32.4	31.7	30.5	28.9	27.4	26.4	25.7	25.1	25.2	25.4
고등학교	전체	33.1	32.5	31.9	30.9	30.3	29.3	28.2	26.2	24.5	23.4	23.0
	일반고	34.7	34.2	33.6	32.4	31.3	30.6	29.3	27.1	25.2	24.2	23.9
	특목고	28.4	26.7	25.8	25.0	24.4	24.0	24.7	23.1	22.8	22.3	22.0
	특성화고	28.5	28.0	27.6	26.9	26.4	25.7	23.7	23.0	21.3	19.8	18.9
	자율고	33.5	32.3	31.5	30.7	30.3	30.2	29.6	28.1	26.5	25.5	25.7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a). 2021 간추린 교육통계. p.15.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344.

* 주: 학급당 학생수=학생수/학급수 (학급수는 인가학급 기준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의 평균 수준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III-7-4〉), 먼저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초등학교 과정은 우리나라가 16.5명인 반면 OECD 국가의 평균이 14.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의 경우에도 각각 13.5명, 13.0명으로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았으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12.2명, OECD가 13.0명으로 오히려 OECD 국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모두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OECD 국가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OECD 국가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감소폭은 우리나라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감소가 학령인구의 감소와 관계가 있으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Ⅲ-7-4.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국제비교

(단위 : 명)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2000	한국	32.1	21.5	20.9	36.5	38.5
(2002)	OECD 평균	17.7	15.0	13.9	21.9	23.6
2005	한국	28.0	20.8	16.0	32.6	35.7
(2007)	OECD 평균	16.7	13.7	13.0	21.5	24.1
2010	한국	21.1	19.7	16.5	27.5	34.7
(2012)	OECD 평균	15.9	13.7	13.8	21.2	23.4
2015	한국	16.8	15.7	14.1	23.4	30.0
(2017)	OECD 평균	15.2	13.0	13.1	21.1	23.3
2016	한국	16.5	14.7	13.8	23.2	28.4
(2018)	OECD 평균	15.0	12.7	13.0	21.3	22.9
2017	한국	16.4	14.0	13.2	23.1	27.4
(2019)	OECD 평균	15.2	13.3	13.4	21.2	22.9
2018	한국	16.5	13.5	12.2	23.1	26.7
(2020)	OECD 평균	14.6	13.0	13.0	21.1	23.3
2019	한국	16.6	13.0	11.4	23.0	26.1
(2021)	OECD 평균	14.5	13.1	13.0	21.1	23.3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a). 2021 간추린 교육통계. p.51.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p.345.
* 원자료: OECD(해당 발표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주: 1) 교사는 수업담당교사(교장·교감, 영양·사서·보건·전문상담교사 제외)만 대상
2) 구분 연도는 학년도, ( )안의 연도는 EAG(Education at a Glance)자료 발표년도
3) 과정별 포함 학제는 일러두기 참조

③ 학생 1인당 사교육비

2021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수준을 살펴보면(〈표 III-7-5〉), 우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월평균 36만 7천원을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되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2만 8천원이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41만 9천원을 사교육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사교육비 산출 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을 제외한 경우를 살펴보면, 2021년 초등학교는 40만원으로 전년대비 18.5%가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는 64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이후의 사교육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출한 경우 초등학교는 2021년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중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변화폭은 크지 않으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

구 분	전체 학생				참여 학생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9	32.1	29.0	33.8	36.5	42.9	34.7	47.4	59.9
2020	30.2	23.5	34.2	39.6	45.0	33.8	50.8	64.3
2021	36.7	32.8	39.2	41.9	48.5	40.0	53.5	64.9
증감률	21.5	39.4	14.6	6.0	8.0	18.5	5.5	1.0

* 출처: 통계청(2022.3.11). 보도자료: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8.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을 살펴보면(〈표 III-7-6〉),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하는 사교육비 액수가 증가하였음은 물론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사교육비 금액과 참여율이 모든 가구 소득급간에서 이전 급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양상은 2019년 이래 2021년까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교육이 가구의 경제수준을 밀접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교육의 효과를 경험하는 정도가 가구의 경제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Ⅲ-7-6.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p)

구 분	사교육비				참여율			
	2019	2020	2021	증감률	2019	2020	2021	전년 차
전체	32.1	30.2	36.7	21.5	74.8	67.1	75.5	8.4
200만원 미만	10.4	10.3	11.6	12.8	47.0	40.4	46.6	6.3
200~300만원 미만	17.0	15.8	18.0	14.1	60.4	51.1	57.6	6.5
300~400만원 미만	23.4	20.4	25.3	24.1	70.7	60.9	70.0	9.1
400~500만원 미만	30.0	26.9	33.2	23.6	78.0	68.4	77.2	8.7
500~600만원 미만	35.4	32.5	38.1	17.1	79.8	72.5	80.3	7.9
600~700만원 미만	40.4	37.2	44.4	19.2	83.6	75.2	83.5	8.3
700~800만원 미만	46.4	44.1	48.6	10.3	87.0	80.2	84.9	4.7
800만원 이상	53.9	52.6	59.3	12.8	85.1	80.8	86.0	5.2

* 출처: 통계청(2022.3.11). 보도자료: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5.

* 주: 가구소득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의 월 평균 소득 포함

(2) 학교 부적응률

① 학업중단율

2021년의 학업중단율 현황을 살펴보면(〈표 III-7-7〉), 장기결석자와 더불어 취학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포함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각각 0.6%와 0.5%로 낮은 수준임에 비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이래 학업중단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중학교의 학업중단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12년의 1.8%와 2020년의 1.1%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2020년의 전체 학업중단율인 0.6%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등교하지 않은 기간이 길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 등교 기간이 증가한 2021년에는 학업중단율이 0.8%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감으로써 학교 등교 여부가 학업중단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Ⅲ-7-7.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2~2021년)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초등학교	0.6	0.6	0.5	0.5	0.6	0.6	0.7	0.7	0.4	0.6
중학교	0.9	0.8	0.7	0.6	0.6	0.7	0.7	0.8	0.5	0.5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고등학교	1.8	1.6	1.4	1.3	1.4	1.5	1.6	1.7	1.1	1.5
계 (학업중단자)	1.0 (68,188)	0.9 (60,568)	0.8 (51,906)	0.8 (47,070)	0.8 (47,663)	0.9 (50,057)	0.9 (52,539)	1.0 (52,261)	0.6 (32,027)	0.8 (42,755)

* 출처: 교육부(2022.8.30.). 2022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4.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231&pWise=main&pWiseMain=C3에서 2022년 8월 31일 인출.

* 주: 1) 학업 중단율(%) = 학업 중단자 수 / 학생 수 * 100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 중단자로 봄
3)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② 학업중단 생각과 이유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학업중단을 생각한 경험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8%가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8. 학업중단 생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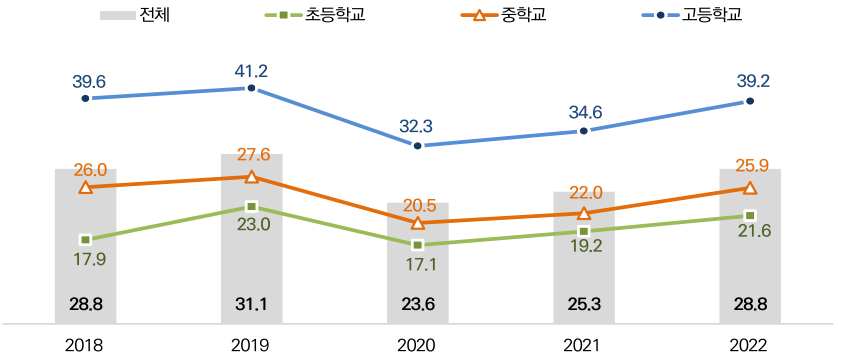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28.8	71.2	100.0(8,735)	
성별	남학생	24.1	75.9	100.0(4,199)	87.076***
	여학생	33.2	66.8	100.0(4,536)	
학교급	초등학교	21.6	78.4	100.0(2,917)	237.716***
	중학교	25.9	74.1	100.0(2,969)	
	고등학교	39.2	60.8	100.0(2,848)	
고교 유형	일반계고	40.3	59.7	100.0(2,288)	5.428*
	특성화계고	34.9	65.1	100.0(560)	
학업 성적	상	21.0	79.0	100.0(3,220)	364.369***
	중	26.9	73.1	100.0(3,634)	
	하	46.1	53.9	100.0(1,808)	
경제적 수준	상	25.3	74.7	100.0(5,043)	122.562***
	중	30.9	69.1	100.0(2,923)	
	하	44.7	55.3	100.0(693)	

*p 〈.05, **p 〈.01, ***p 〈.001
* 주: 초등학생 문항은 2013년도부터 추가되었음.

학업중단 생각을 해본 경험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을 한 학생의 수가 더 많았으며 일반계고등학생이 특성화계고등학생보다 학업중단 생각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도 학업중단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Ⅲ-7-1. 학업중단 생각 경험(연도별 추이)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경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20년에 상당한 감소를 보인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2년에는 2018년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업중단과 관련한 생각이 감소하였으나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마찬가지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학업중단을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표 III-7-9〉),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2,465명 가운데 31.5%는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을 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4.6%의 응답자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학업중단을 생각했었다고 응답하였다. 즉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학생들 가운데 56.1%는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 두는 생각을 해 보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성적이 좋지 않아서', 또는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학업중단을 생각해 보았다고 응답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생각한 중요한 이유로 학업과 더불어 자신의 삶에 대한 무기력, 그리고 성적 등이 핵심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 양상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학교급의

경우 다소 특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괴롭힘을 당해서' 학업중단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로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공부하기 싫어서 학업중단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비율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초등학생의 경우 괴롭힘 등과 같은 학교폭력이 학업중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유형에 따라 학업중단 생각 이유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 모두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지만, 일반계고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특성화계고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특성화계고에서는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가 다른 이유들에 비해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됨으로써 학교유형에 따라 학업중단을 생각하는 이유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중단을 생각한 이유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2018년에는 18.4% 수준이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31.5%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변화 양상은 모든 학교급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했다는 응답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9. 학업중단 생각 이유

(단위 : %(명))

구분		괴롭힘을 당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기타	전체 (N)
전체		8.9	13.0	3.1	0.3	24.6	4.9	11.4	31.5	2.3	100.0 (2,465)
성별	남학생	7.7	10.7	4.2	0.2	26.8	5.4	12.5	30.7	1.9	100.0 (989)
	여학생	9.7	14.5	2.4	0.3	23.2	4.6	10.7	32.1	2.6	100.0 (1,476)
학교급	초등학교	20.1	8.3	5.0	0.2	28.1	1.6	6.4	27.8	2.5	100.0 (618)
	중학교	7.2	11.1	3.4	0.3	27.3	5.5	9.6	34.2	1.4	100.0 (755)

구분		괴롭힘을 당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기타	전체 (N)
	고등학교	3.7	16.9	1.7	0.3	20.9	6.4	15.5	31.8	2.9	100.0 (1,092)
고교유형	일반계고	3.1	18.6	1.5	0.4	21.9	5.3	15.1	31.9	2.2	100.0 (899)
	특성화계고	6.3	8.9	2.8	0.0	15.9	11.5	17.4	31.2	6.0	100.0 (193)

* 주: 항목은 2016년부터 추가되었으며, 2019년 조사부터 1개 선택으로 변경됨(2018년까지는 우선순위별로 3개 선택).

2) 교육의 목표

(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①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나는 수업시간이 재밌다', '나는 학교가는 것이 즐겁다'의 4개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표 III-7-10〉), 먼저 학교에서의 교우관계를 나타내는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의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4.5%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학교에서의 친구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에 더 높게 나온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에게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의 친구관계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친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92.7%인데 비해 중학생은 94.5%, 고등학생은 96.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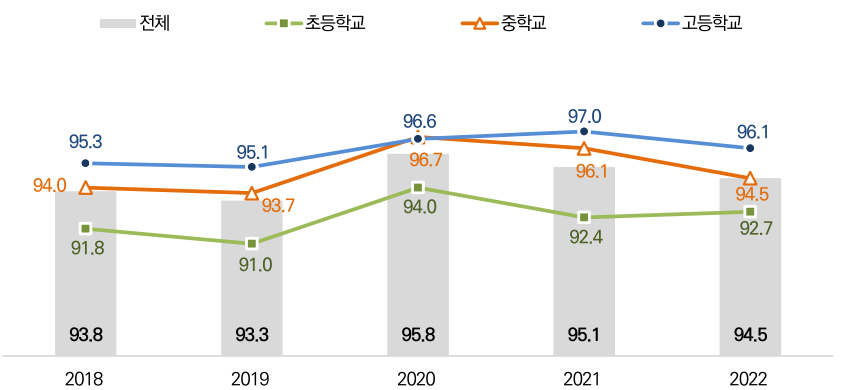
표 Ⅲ-7-10.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30(0.60)	0.9	4.7	57.6	36.9	100.0(8,799)	
성별	남학생	3.26(0.62)	1.4	5.3	59.3	34.0	100.0(4,243)	49.763***
	여학생	3.35(0.58)	0.4	4.1	56.0	39.5	100.0(4,556)	
학교급	초등학교	3.27(0.62)	1.2	6.1	57.1	35.6	100.0(2,970)	53.730***
	중학교	3.29(0.58)	0.6	4.9	59.7	34.8	100.0(2,985)	
	고등학교	3.35(0.59)	0.9	3.0	55.8	40.3	100.0(2,845)	

*p 〈.05, **p 〈.01, ***p 〈.001

(〈그림 III-7-2〉)은 학교에서의 친구들에 대한 평가정도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 학교 친구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18년 이후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2년 조사에는 2021년의 95.1%에 비해 다소 낮은 94.5%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2021년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7-2.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정도를 살펴보면(표 III-7-11), 전체 8,796명의 응답자 가운데 95.4%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한다고 응답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학교 교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사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5.1%, 여학생은 4.2%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 교사에 대한 인식 정도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학교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정도는 초등학생이 97.4%, 중학생이 95.2%, 고등학생이 93.5%로 초등학생에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초등학생들 가운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8.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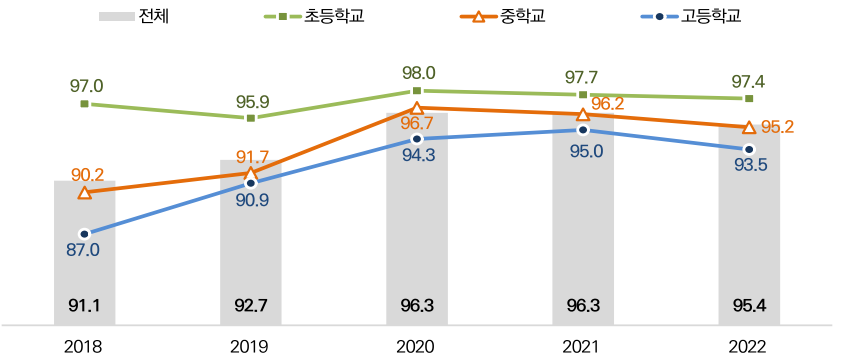
표 III-7-11.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45(0.62)	1.2	3.4	44.4	51.0	100.0(8,796)	
성별	남학생	3.45(0.64)	1.5	3.6	43.7	51.3	100.0(4,239)	7.166
	여학생	3.46(0.61)	0.9	3.3	45.0	50.8	100.0(4,557)	
학교급	초등학교	3.65(0.56)	0.7	1.9	29.2	68.2	100.0(2,970)	558.189***
	중학교	3.39(0.61)	1.0	3.8	50.1	45.1	100.0(2,983)	
	고등학교	3.31(0.64)	1.8	4.6	54.2	39.3	100.0(2,844)	

*p <.05, **p <.01, ***p <.001

선생님이 학생을 존중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2년에는 2021년의 96.3%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97%를 전후하여 큰 변화가 없었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7-3.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연도별 추이)

〈표 III-3-12〉에는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제시되어 있는데, 우선 전체 응답자의 72.3%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약 3/4 정도는 학교 수업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수업시간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인식한 비율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72.4%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나,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은 81.0%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은 70.2%, 고등학생은 6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본인의 학업성적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상위집단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수업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81.8%인 반면, 하위집단에서는 52.6%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학업성적에 따라 학교수업을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가정의 경제상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자신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76%가 수업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58.6%가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학교 수업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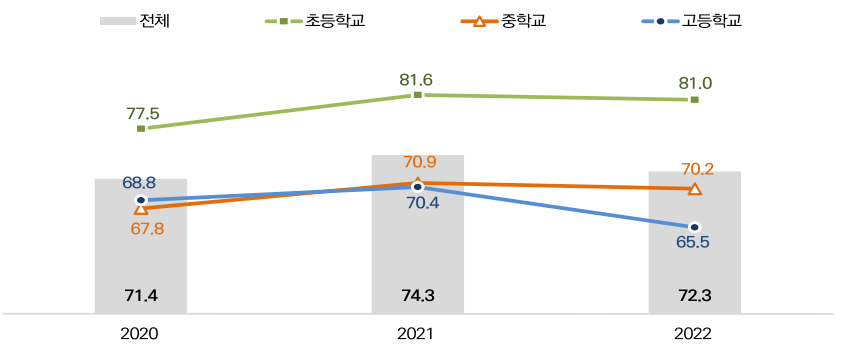
표 Ⅲ-7-12.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1(0.83)	5.9	21.8	47.9	24.4	100.0(8,797)	
성별	남학생	2.92(0.86)	6.8	20.9	45.8	26.6	100.0(4,241)	38.567***
	여학생	2.90(0.80)	5.0	22.7	50.0	22.4	100.0(4,556)	
학교급	초등학교	3.08(0.77)	3.5	15.5	50.3	30.7	100.0(2,970)	225.325***
	중학교	2.86(0.83)	6.1	23.7	48.1	22.1	100.0(2,983)	
	고등학교	2.77(0.86)	8.2	26.4	45.3	20.2	100.0(2,844)	
학업 성적	상	3.13(0.78)	3.4	14.8	47.5	34.3	100.0(3,249)	699.429***
	중	2.91(0.77)	4.4	21.8	52.6	21.2	100.0(3,659)	
	하	2.53(0.88)	13.2	34.2	39.3	13.3	100.0(1,814)	
경제적 수준	상	3.00(0.82)	5.0	19.0	47.3	28.7	100.0(5,073)	181.878***
	중	2.82(0.82)	6.5	24.1	49.9	19.4	100.0(2,952)	
	하	2.64(0.84)	8.8	32.7	43.9	14.7	100.0(695)	

*p 〈.05, **p 〈.01, ***p 〈.001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71.4%, 2021년에는 74.3%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2022년에는 72.3%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2021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2022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2021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약 5.1%p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수업의 변화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7-4.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연도별 추이)

마지막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3.4%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약 3/4 정도는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72.2%, 여학생은 74.5%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학교 가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가는 것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학교급별 차이는 앞서 학교가 재미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학업성적에 대한 인식에 따른 학교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에 가고 싶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업성적이 낮다고 생각한 집단의 경우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업성적이 학교에서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22.2%인데 비해,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43.6%가 부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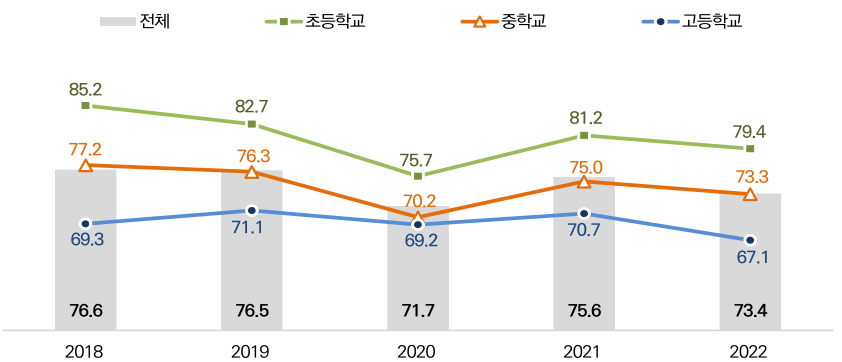
표 Ⅲ-7-1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4(0.87)	7.1	19.5	45.3	28.1	100.0(8,801)	
성별	남학생	2.93(0.88)	7.4	20.4	43.9	28.3	100.0(4,241)	8.232*
	여학생	2.96(0.86)	6.8	18.7	46.6	27.9	100.0(4,560)	
학교급	초등학교	3.10(0.84)	5.2	15.3	43.8	35.6	100.0(2,973)	189.047***
	중학교	2.93(0.85)	6.8	19.9	47.2	26.1	100.0(2,985)	
	고등학교	2.80(0.89)	9.4	23.5	44.8	22.3	100.0(2,843)	
학업 성적	상	3.14(0.82)	4.5	13.9	44.3	37.3	100.0(3,250)	446.075***
	중	2.92(0.84)	6.4	20.2	48.3	25.2	100.0(3,662)	
	하	2.63(0.92)	13.2	28.1	41.0	17.6	100.0(1,815)	
경제적 수준	상	3.05(0.85)	5.9	16.3	44.8	32.9	100.0(5,076)	238.940***
	중	2.84(0.86)	8.1	22.0	47.3	22.6	100.0(2,952)	
	하	2.62(0.90)	11.9	31.7	39.3	17.1	100.0(695)	

*p 〈.05, **p 〈.01, ***p 〈.001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지에 대한 응답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2020년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2021년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이후 2020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22년의 응답결과는 2019년이나 2021년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시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7-5.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연도별 추이)

(2) 진로·직업교육

① 진로교육 현황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한 교육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에서의 진로활동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 중 진로탐색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5%로 가장 높았으며, 진로와 관련한 심리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76.4%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 외 진로체험, 창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 진로 상담 등의 활동 등이 학교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진로활동 참여 비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로체험, 진로상담과 창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 참여 경험은 중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진로체험과 진로상담은 고등학생의 참여율이, 창업가 정신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은 초등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진로활동의 참여율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아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초등학생들이 3.98점을 보여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3.77점과 3.76점으로 초등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14. 학교 진로활동 참여 현황 및 만족도

(단위 : %, 점)

구분	학교 진로활동 참여 비율							진로활동 만족도 (평균)
	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 심리검사	진로 체험	진로 상담	진로 동아리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	
초등학교	83.5	-	76.4	60.8	38.6	-	48.6	3.98
중학교	87.0	90.0	84.5	80.7	58.0	73.7	36.8	3.77
고등학교	85.6	81.2	84.4	87.4	63.2	53.5	30.4	3.76

* 출처: 김민경, 권효원, 김나라, 박나실, 방혜진, 안유진(2021).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1). pp.86-91.

* 주: 1) 본 조사에는 초등학생 6학년 6,851명, 중학생 3학년 8,605명, 고등학생 2학년 7,911명 등 총 23,367명이 참여함.
2) 만족도 문항의 응답 범위는 1점(매우 불만족)~5점(매우 만족)임.

② 직업교육 현황

가. 직업교육 경험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소년 및 청년의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2022년 총 8,595천명의 청년 중 17%가 직업교육 혹은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남자 대상 중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4.5%였고 여자는 19.5%로 남자보다 약 5%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직업교육(훈련) 경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대상 가운데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18년의 18.8%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 이외의 시설 등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실제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보다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7-15. 15~29세 청년 직업교육(훈련) 경험(2018~2022년)

(단위 : 천명, %)

구분	청년 인구	경험 비율	남자	여자
2018	9,157	18.8	16.3	21.3
2019	9,073	18.0	15.4	20.6
2020	8,934	18.2	15.8	20.6
2021	8,799	17.9	15.4	20.5
2022	8,595	17.0	14.5	19.5

* 출처 : 통계청(2018~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34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2년 8월 24일 인출.
통계청(2022.7.19). 보도자료: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p.10.

* 주: 학교 교육 외에 학원이나 훈련 기관 및 시설 등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

나.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의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보면(〈표 III-7-16〉), 2021년 전체 졸업자 70,802명 중 47.8%에 해당하는 33,859명이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26.1%에 해당하는 18,492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진학자 중에는 전문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전체 졸업자 중 31.5%인 반면,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전체 졸업자 중 16.3%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 중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취업, 4년제 대학 진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의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2017년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이 50%에 달하였으나, 이후 취업자 비율은 2021년에 26.1%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학 진학자의 비율은 2017년 32.8%에서 2021년에 47.8%로 증가함으로써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양상이 취업보다는 진학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의 취업자 수의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악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Ⅲ-7-16.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2017~2021년)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총계 (A)	진학자(B)							취업자	입대자	기타
		소계	국내진학				국외진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각종학교	전문대학	대학			
2017	96,022	31,466	21,934	6	8,937	400	79	110	48,001	429	16,126
2018	91,886	33,072	23,556	7	9,160	187	65	97	37,995	489	20,330
2019	90,116	38,321	27,139	8	10,845	139	36	154	27,904	701	23,190
2020	81,190	36,412	25,508	14	10,875	4	0	11	20,885	1,189	22,704
2021	70,802	33,859	22,290	0	11,557	0	7	5	18,492	1,295	17,156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b). 2021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 후 상황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5493&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A 2022년 8월 25일 인출.

* 주: 1) 조사 기준일
  - 졸업자: 해당년도 2월 기준 졸업자
  - 진학자: 2010년까지 해당년도 2월 기준, 2011년부터 해당년도 4월 1일 기준
  2) 고등학교 유형은 2011년 변경되었으나, 졸업자는 2014년부터 발생되어 2013년까지는 변경 전 학제로 졸업자를 표기함
  - 2010년까지: 일반계고/전문계고
  - 2011년부터: 일반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대안,특성화고 포함)/자율고
  3) 기타에는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 무직 및 미상, 제외인정자, 미취업자가 포함됨
  4) 진학자 학교 구분
  - 2020년까지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자는 국내(전문대학/교육대학/대학/각종학교), 국외(전문대학/대학)으로 조사함
  · 국내 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포함
  - 2021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자는 국내(전문대학, 대학), 국외(전문대학/대학)으로 조사함.
  · 전문대학 : 전문대학(2,3,4년제), 기능대학, 전공대학, 사내대학(전문대학 과정) 포함
  · 대학 :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대학과정), 사내대학(대학과정) 포함
  5) 2020년부터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교육통계조사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졸업 후 상황은 매년 12월에 업데이트함
  6) 2009년~2010년 교육통계연보에는 진학자에 특수학교 전공과가 포함됨. 본 자료에서는 자료의 일관성을 위하여 특수학교 전공과는 진학자에서 제외됨

표 Ⅲ-7-17.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2020~2021년)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현황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 취업자	진학자 (진학률)	진학자 현황	
			보험 가입자	해외 취업자	농림 어업 종사자					전문대학	대학
2020	89,998	24,938 (27.8)	24,858	-	80	1,585	970	24,290	38,215 (42.5)	27,169	11,046
2021	78,994	22,583 (55.4)	22,492	-	91	1,809	862	18,211	35,529 (45.0)	23,751	11,778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0). 직업계고 취업통계. https://kess.kedi.re.kr/stats/intro?menuCd=0112&survSeq=2020&itemCode=01#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d). 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세부 분석 자료. p.1, p,3.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0918&topic=에서 2022년 8월 25일 인출.

* 주: 1) 조사기준일 : 2021년 4월 1일
2) 조사학교수 : 2018학년도 입학생 없는 5개교 포함(특성화고 4개교, 일반고직업반 1개교)
3) 졸업자 : 2021년 1월 및 2월 졸업자
4) 취업자 : 보험가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5) 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직장)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6)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 100
7)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자) × 100
※ 해외취업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등록된 해외취업자에 한하여 연계한 값

2021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보면(〈표 III-7-17〉), 전체 졸업자 78,994명 가운데 취업자는 28.6%인 22,583명이었으며, 45%에 해당하는 35,529명이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졸업자 대비 취업자의 비율은 2020년의 27.8%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주에 제시된 취업률 산식을 적용하면 취업률은 2020년의 27.8%에서 2021년에 55.4%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1) 여가·문화·활동 인프라 및 이용 만족도

① 청소년 여가 · 문화 · 활동 시설 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에 제시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현재 총 813개의 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76.4%에 해당하는 621개는 공공시설이며. 191개가 민간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대부분이 공공시설인 반면,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의 경우 공공시설보다 민간시설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개소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운영을 중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7-18.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2019	전 체	814	188	289	171	38	114	14
2020	전 체	799	191	294	159	32	108	15
	공 공	601	190	290	62	18	27	14
	민 간	198	1	4	97	14	81	1
2021	전 체	813	195	314	154	33	103	14
	공 공	621	193	310	62	19	25	12
	민 간	191	2	4	92	14	78	1

* 출처: 여성가족부(2020.3.31.).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9.12.31.기준).
여성가족부(2021.3.2.).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20.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91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여성가족부(2022.3.7.). 2021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21.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2년 8월 25일 인출.

청소년수련시설의 전국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8월 현재 총 825개 시설 가운데 청소년문화의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의 순으로 개소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지역에 825개 시설 중 20.4%에 해당하는 16개의 시설이 경기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과 경남, 서울, 경북, 전남, 전북의 순으로 시설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경남과 경북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19. 전국 시 · 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825	197	322	156	33	103	14
서울	72	32	25	3	0	4	8
부산	24	8	11	3	1	1	0
대구	19	5	8	2	0	2	2
인천	22	9	7	2	0	4	0
광주	16	5	9	1	0	0	1
대전	14	4	8	2	0	0	0
울산	13	4	7	1	1	0	0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세종	5	2	3	0	0	0	0
경기	168	37	76	32	8	14	1
강원	76	16	33	13	3	10	1
충북	44	7	15	17	1	4	0
충남	49	11	15	13	3	7	0
전북	57	11	22	13	3	7	1
전남	58	9	23	13	5	8	0
경북	62	16	18	13	2	13	0
경남	76	18	18	24	4	12	0
제주	50	3	24	4	2	17	0

* 출처: 청소년수련시설포털(2022.8.26.). 시설현황 통계, 지역별 현황(2022년 8월 26일 기준). 청소년수련시설포털 웹사이트 http://youthnet.or.kr/?page_id=80&page=2에서 2022년 8월 26일 인출.

전국에 설치된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 총 3,087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공공도서관이 1,172개로 전체 시설 중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의 순으로 개소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수는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1년까지 약 38%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공공도서관은 2013년의 828개소에서 2021년에 1,172개소로 344개소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박물관은 160개소, 미술관은 100개소, 문예회관은 48개소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문화기반시설은 상당히 확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7-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2013~2021년)

(단위 : 개소)

구분	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 문화센터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2013	2,182	-	828	740	171	-	214	229	-
2014	2,375	1	865	754	190	-	220	229	116
2015	2,519	1	930	809	202	-	232	229	116
2016	2,595	1	978	826	219	-	229	228	114
2017	2,657	1	1,010	853	229	-	236	228	100
2018	2,749	1	1,042	873	251	-	251	231	100
2019	2,825	3	1,096	881	258	-	255	231	101
2020	3,017	3	1,134	897	267	129	256	230	101
2021	3,087	4	1,172	900	271	147	262	230	101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b).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19.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453&pDataCD=0417000000&pType=에서 2021년 9월 14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2021b).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19.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563&pDataCD=0417000000&pType=02에서 2022년 8월 26일 인출.

* 주: 1)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의 집('14~), 생활문화센터('20~)를 통계에 포함
2) 2019년부터 국립도서관(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2개관, 2021년부터 국립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1개관을 통계에 포함

문화기반시설과 아울러 전국의 공공체육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전국의 공공체육시설 수는 31,554개로 국민 1인당 체육시설의 면적이 4.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간이운동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7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특정 스포츠를 위한 시설보다는 종합적인 목적을 지닌 시설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이후의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1년까지 108%나 증가하였으며, 1인당 체육시설의 면적도 3.12㎡에서 4.59㎡로 약 47%나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간이운동장의 개소 수가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다른 유형의 시설 수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21. 전국 공공체육시설 연도별 현황(2010~2020년)

(단위 : 개소, ㎡)

구분	공공체육시설 수						1인당 체육시설 면적
	계	축구장	체육관	간이운동장	테니스장	기타	
2010	15,137	618	639	11,458	549	1,783	3.12
2011	16,127	649	681	12,194	565	2,038	3.29
2012	17,157	718	738	12,855	598	2,248	3.31
2013	19,398	801	819	14,536	660	2,582	3.57
2014	21,317	852	875	16,046	696	2,848	3.81
2015	22,662	886	905	17,111	718	3,042	3.89
2016	24,303	928	955	18,394	740	3,286	4.05
2017	26,927	984	1,010	20,602	772	3,559	4.28
2018	28,578	1,019	1,066	21,847	797	3,849	4.45
2019	30,185	1,040	1,139	22,866	818	4,322	4.51
2020	31,554	1,064	1,194	23,834	832	4,630	4.59

* 출처: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p.364.
통계청 e-나라지표(2021).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51&board_cd=INDX_001에서 2022년 8월 25일 인출.
* 원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020년말 기준)

여가문화활동 등을 위한 기반의 확충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실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이용 여부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관련 시설의 이용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우선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한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일년에 1~2회 정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3%, 2~3개월에 1~2회 정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6%였으며, 이보다 더 자주 이용한 비율은 20.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응답자들의 공공도서관 이용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 이용 정도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의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조금 더 높았으며(남자 61.6%, 여자 7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가장 높았고(78.8%),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용 경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하면서 학업성적에 대한 부담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7-22.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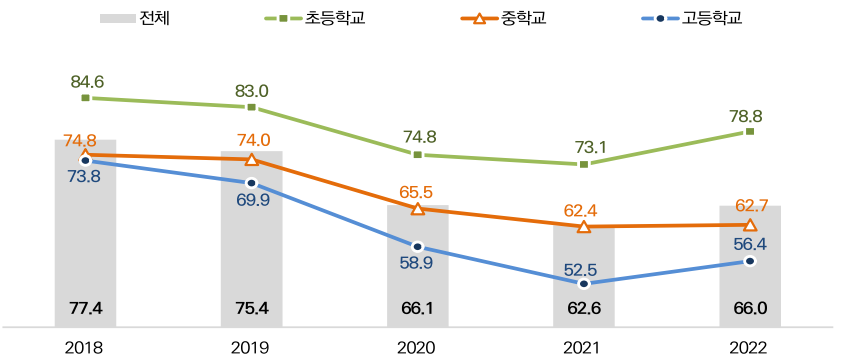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33.9	29.3	16.6	11.3	8.8	100.0(8,716)	
성별	남학생	38.4	27.3	15.2	10.5	8.6	100.0(4,190)	71.938***
	여학생	29.8	31.2	17.9	12.0	9.0	100.0(4,526)	
학교급	초등학교	21.1	29.9	18.4	14.9	15.6	100.0(2,903)	531.278***
	중학교	37.3	29.5	16.1	10.5	6.6	100.0(2,971)	
	고등학교	43.5	28.6	15.3	8.3	4.2	100.0(2,842)	

*p <.05, **p <.01, ***p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에 77.4%가 1년에 한 번 이상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6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의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 제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개선됨에 따라 2022년의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학교급별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7-6.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연도별 추이)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2021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1년에 한 번 이상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5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들의 이용 정도가 다소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의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용 경험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2018년의 42.8%에서 조금씩 감소하다가 2020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19.9%로 2021년의 이용 경험 정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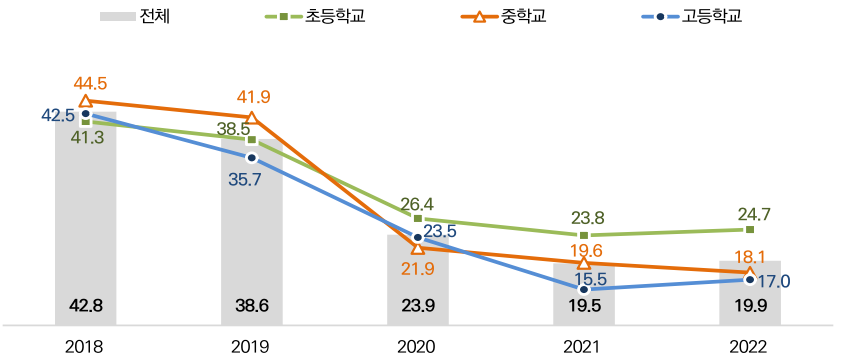
표 Ⅲ-7-23.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0.1	12.9	3.1	2.1	1.8	100.0(8,623)	
성별	남학생	80.5	11.8	3.6	2.1	2.0	100.0(4,143)	16.040**
	여학생	79.7	13.9	2.7	2.0	1.6	100.0(4,481)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75.3	14.3	4.2	2.7	3.5	100.0(2,847)	126.317***
	중학교	81.9	11.7	2.6	2.4	1.4	100.0(2,946)	
	고등학교	83.0	12.7	2.6	1.1	0.6	100.0(2,831)	

*p 〈.05, **p 〈.01, ***p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7-7.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수련시설(연도별 추이)

체육시설 이용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표 Ⅲ-7-24〉), 전체 응답자 가운데 62.8%가 1년에 한 번 이상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경험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한 달에 1회 이상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5.3%로 4명 중 1명 정도는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육시설 이용은 여자 청소년(59.5%)보다는 남자 청소년(66.7%)들의 이용 정도가 높았으며, 학교급로는 앞서 공공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이용 경험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년에 한 번 이상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78.2%인 반면, 중학생은 61.5%, 고등학생은 49%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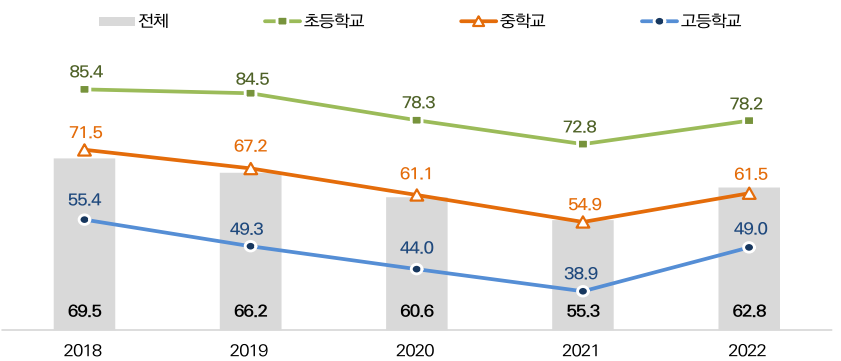
체육시설 이용 경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는 다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 추세는 학교급별 이용 경험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Ⅲ-7-24.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37.1	24.8	12.7	10.1	15.2	100.0(8,644)	
성별	남학생	33.4	20.0	12.6	12.1	22.0	100.0(4,154)	379.345***
	여학생	40.5	29.3	12.9	8.3	8.9	100.0(4,489)	
학교급	초등학교	21.8	26.6	14.0	12.2	25.4	100.0(2,866)	691.523***
	중학교	38.6	25.6	13.6	9.6	12.7	100.0(2,949)	
	고등학교	51.0	22.3	10.6	8.5	7.6	100.0(2,828)	

*p 〈.05, **p 〈.01, ***p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7-8.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연도별 추이)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이용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2022년 전체 응답자 가운데 1년에 한 번 이상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9%로 앞서 언급한 3개 시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공간 이용과 관련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70.5%)들보다는 여자 청소년(78.9%)들의 이용 정도가 다소 높았으며, 초등학생(81.4%)의 이용 정도가 중학생(71.0%)이나 고등학생(72.5%)에 비해 가장 높았으나, 앞의 3개 시설에서 나타난 양상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은 학업성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학업성적이 높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인 반면, 자신의 성적이 낮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이 비율은 65.3%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실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앞서의 시설 이용과 달리 문화예술공간 이용을 위해서는 다소의 경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도 일련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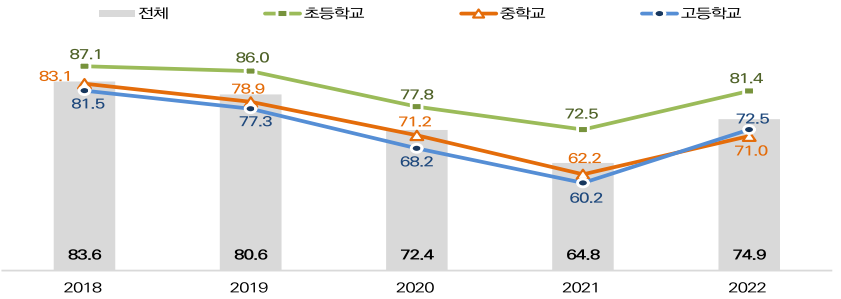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3개 시설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바,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2021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상황이 각종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7-25.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5.1	34.4	25.4	12.9	2.2	100.0(8,670)	
성별	남학생	29.5	31.5	23.4	13.2	2.4	100.0(4,163)	95.245***
	여학생	21.0	37.0	27.2	12.7	2.0	100.0(4,508)	
학교급	초등학교	18.6	43.3	23.4	11.9	2.8	100.0(2,877)	206.473***
	중학교	29.0	31.7	25.4	12.0	1.9	100.0(2,962)	
	고등학교	27.5	28.1	27.4	14.9	2.1	100.0(2,832)	
학업 성적	상	19.0	36.1	27.6	14.8	2.5	100.0(3,196)	158.090***
	중	25.6	35.1	24.9	12.4	2.0	100.0(3,609)	
	하	34.7	30.2	22.0	10.9	2.2	100.0(1,794)	

*p <.05, **p <.01, ***p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7-9.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연도별 추이)

② 청소년 여가 · 문화 · 활동 시설 이용 만족도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5.9%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 만족도의 분포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초등학생들 가운데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6%인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22.8%와 19.6%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이와는 반대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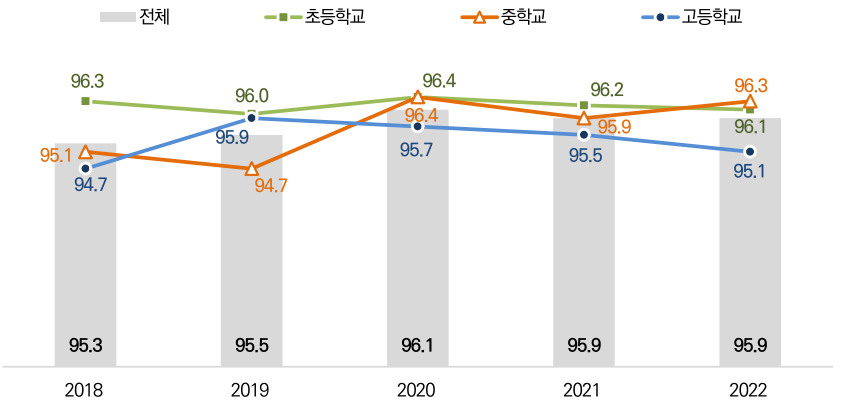
시설 이용 만족도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95% 정도를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급간 변화 추이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7-26.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3.23(0.53)	0.6	3.6	68.0	27.9	100.0(7,510)	
성별	남학생	3.23(0.56)	0.8	4.5	65.9	28.8	100.0(3,510)	29.229***
	여학생	3.24(0.51)	0.3	2.8	69.9	27.0	100.0(4,000)	
학교급	초등학교	3.35(0.57)	0.5	3.3	56.5	39.6	100.0(2,702)	
	중학교	3.19(0.50)	0.6	3.1	73.5	22.8	100.0(2,471)	304.070***
	고등학교	3.14(0.49)	0.6	4.4	75.5	19.6	100.0(2,337)	

*p <.05, **p <.01, ***p <.001



* 주: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7-10.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연도별 추이)

(2)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 정도

①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국민여가활동조사를 통해 나타난 여가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5세부터 19세까지의 집단의 경우 취미나 오락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6.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포츠 참여가 38.4%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문화예술 관람이나 참여, 스포츠 참여, 관광 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응답 양상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이후의 여가활동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취미·오락 및 스포츠 참여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9년 이후 문화예술 관람이나 참여, 스포츠 관람 등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27.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복수응답)

(단위 : %)

구분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취미·오락	사회 및 기타
2018	전체	5.8	5.9	2.0	44.0	1.6	27.6	13.1
	15-19세	13.7	9.0	3.3	30.2	0.2	38.5	5.1
2019	전체	6.5	4.9	1.8	36.1	2.5	30.8	17.5
	15-19세	13.1	9.6	1.0	30.6	-	35.0	10.9

구분		문화 · 예술 관람	문화 · 예술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취미 · 오락	사회 및 기타
2020	전체	2.1	4.1	1.4	44.3	2.7	33.4	12.0
	15-19세	2.6	8.0	1.8	33.1	0.2	49.8	4.5
2021	전체	1.5	4.2	1.3	42.6	4.0	35.8	10.5
	15-19세	4.9	6.6	1.2	38.4	0.2	46.1	2.5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19a).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20a).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21a).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 주: 1) 2019년, 2020년 모두 만 15세 이상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2019년 10,060명, 2020년 10,088명으로(조사지역: 전국 17개 시 · 도), 그 가운데 청소년은 2019년 661명, 2020년 619명으로 연령은 15~19세임.
2) 사회 및 기타 활동은 봉사활동, 친구만남 등 사회공헌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함.
3) 지속적 여가활동이란 휴식활동을 제외한 여가활동 중 일/주/월/년 단위로 지속적(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을 의미함.

국민여가활동조사를 통해 나타난 하루 여가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2021년 15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이 평일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3.4시간으로 전체 집단의 3.8시간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휴일 여가활동 시간은 5.8시간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마트기기 활용시간은 평일과 휴일 모두 청소년집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스마트기기 사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 시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평일과 주말의 여가활동 시간은 전체집단과 청소년집단에서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도 두 집단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가활동에서도 스마트기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7-28.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단위 : 시간)

년도	구분	평일		휴일	
		여가활동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여가활동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2018	전체	3.3	1.3	5.3	1.8
	15-19세	2.8	1.9	5.1	2.8
2019	전체	3.5	1.3	5.4	1.6
	15-19세	3.0	1.9	5.5	2.6

년도	구분	평일		휴일	
		여가활동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여가활동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2020	전체	3.7	2.0	5.6	2.3
	15-19세	3.3	2.8	5.8	3.6
2021	전체	3.8	1.9	5.8	2.3
	15-19세	3.4	2.6	5.8	3.4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p.44.
문화체육관광부(2019a).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p.44.
문화체육관광부(2020a).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p.45.
문화체육관광부(2021a).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p.45.

* 주: 1) 2019년, 2020년 모두 만 15세 이상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2019년 10,060명, 2020년 10,088명으로(조사지역: 전국 17개 시 · 도), 그 가운데 청소년은 2019년 661명, 2020년 619명으로 연령은 15~19세임.
2) 스마트기기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뜻함.

②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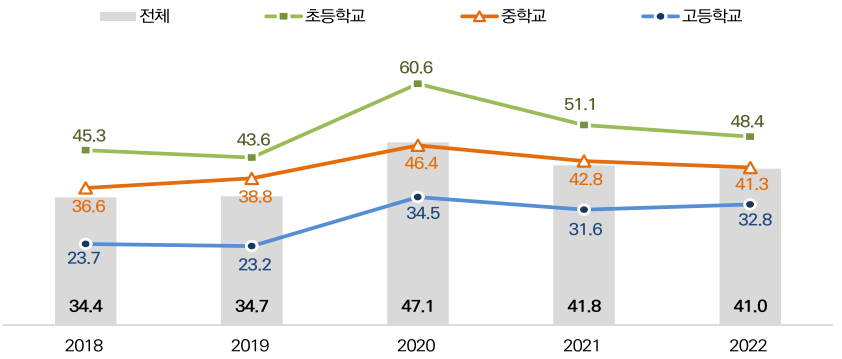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여가활동을 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평일을 기준으로 하루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을 여가활동에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가장 높았으며, 3시간 이상을 여가활동에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급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평일에 3시간 이상을 여가활동에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은 48.4%, 중학생은 41.3%, 고등학생은 32.8%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학업에 대한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7-29. 평일 여가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11.4	23.5	24.1	17.2	10.0	13.8	100.0(8,783)	
성별	남학생	11.1	24.2	24.1	16.6	9.5	14.6	100.0(4,232)	9.457
	여학생	11.7	22.9	24.1	17.8	10.4	13.1	100.0(4,551)	
학교급	초등학교	12.4	18.0	21.2	17.4	13.3	17.7	100.0(2,951)	258.124***
	중학교	8.1	24.4	26.2	19.1	8.8	13.4	100.0(2,977)	
	고등학교	13.9	28.3	24.9	15.0	7.7	10.1	100.0(2,855)	
고교 유형	일반계고	14.5	30.3	25.0	14.0	7.4	8.8	100.0(2,293)	49.826***
	특성화계고	11.5	20.1	24.6	19.3	8.7	15.7	100.0(562)	

*p <.05, **p <.01, ***p <.001



* 주: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Ⅲ-7-11. 평일 여가시간(연도별 추이)

평일 여가활동에 3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별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2020년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게 됨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가하였고, 다시 학교가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여가시간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학교급별 변화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③ 하루 평균 학습 시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평일에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하루 3시간 이상을 학습에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였으며,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을 학습에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에 있어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하루 3시간 이상을 학습에 사용한다고 응답한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38.2%인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42.3%로 여자청소년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습시간이 하루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36.4%, 중학생은 41.8%, 고등학생은 43.0%로 상급학교일수록 학습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학습시간이 하루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7%로 특성화계고의 20.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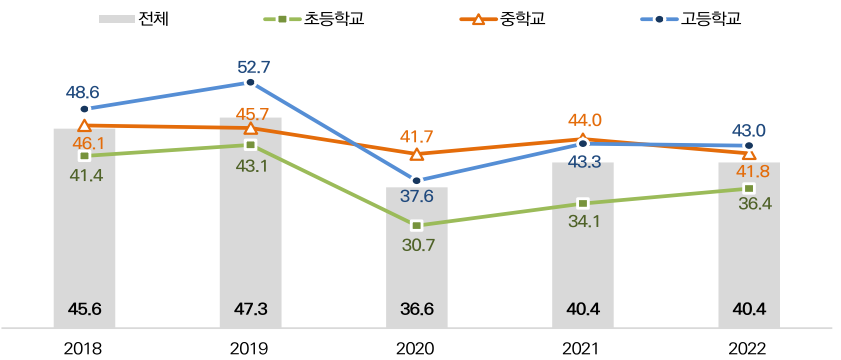
표 Ⅲ-7-30. 평일 학습 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17.2	19.4	23.1	18.1	11.1	6.8	4.4	100.0(8,807)	
성별	남학생	19.1	19.8	23.0	16.7	10.5	6.0	5.0	100.0(4,251)	40.554***
	여학생	15.4	19.0	23.2	19.3	11.7	7.4	3.9	100.0(4,556)	
학교급	초등학교	16.0	22.8	24.8	15.2	10.7	6.1	4.4	100.0(2,974)	97.673***
	중학교	15.5	19.1	23.7	20.2	10.9	6.4	4.3	100.0(2,979)	
	고등학교	20.2	16.2	20.7	18.8	11.7	7.8	4.7	100.0(2,854)	
고교 유형	일반계고	14.5	15.1	21.9	20.5	13.3	9.3	5.6	100.0(2,292)	299.659***
	특성화계고	43.5	20.7	15.7	11.9	5.2	1.9	1.1	100.0(562)	

*p 〈.05, **p 〈.01, ***p 〈.001

평일 학습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2020년에 상당히 감소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변화 양상은 초·중·고의 학교급별 학습시간의 변화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 주: '3~4시간', '4~5시간', '5~6시간', '6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Ⅲ-7-12. 평일 학습 시간(연도별 추이)

4) 소결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서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기회 보장정도, 교육의 목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중심으로 현 상황을 점검하였다.

우선 교육기회 보장 정도와 관련하여 초등 및 중등교육과정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경우 OECD 주요 국가의 평균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경우 전년 대비 2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하는 사교육비 액수가 증가하였음은 물론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이 가구의 경제수준을 밀접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사교육의 효과를 경험하는 정도가 가구의 경제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의 등교수업이 제한되었던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학교 등교일수의 증가에 따라 학업중단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의사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업중단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친구, 교사와 관계에 대해 전체 응답자들의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학교수업 및 학교 전반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학교에서의 진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교육의 현황과 관련하여 2017년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이 50%에 달하였으나, 이후 취업자 비율은 2021년에 26.1%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대학 진학자의 비율은 2017년 32.8%에서 2021년에 47.8%로 증가함으로써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양상이 취업보다는 진학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의 취업자 수의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악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들이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의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공간,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 정도에 비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경험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하루 여가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2021년 15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이 평일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3.4시간으로 전체 집단의 3.8시간보다 약간 적었으나, 2018년 이후 평일과 주말의 여가활동 시간은 청소년집단에서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마트기기 활용시간은 평일과 휴일 모두 청소년집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스마트기기 사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학업에 대한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평일에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하루 3시간 이상을 학습에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였으며,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을 학습에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일 학습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2020년에 상당히 감소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학습시간의 변화 양상은 코로나19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 특별보호조치

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인구 수

① 아동 · 청소년 난민 수

먼저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규모와 관련하여 아동 · 청소년 난민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난민 신청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은 188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40명으로 전체 인정자 중 5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경우가 전체 30명 중 36.6%인 11명이었으며, 18세 미만 대상자 중 불인정이나 철회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 청소년 난민 현황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난민 신청자 수는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전체 난민 신청자 중 아동 · 청소년 비율은 2015년의 5.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1년에 8.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인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아동 · 청소년의 난민 인정자 수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난민 인정자 중 아동 ·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의 39.7%에서 2022년에는 5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경우도 전체 허가자의 수는 2018년 이후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아동 · 청소년의 비율은 2018년의 7.8%에서 2021년에는 36.6%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1. 아동 · 청소년 난민 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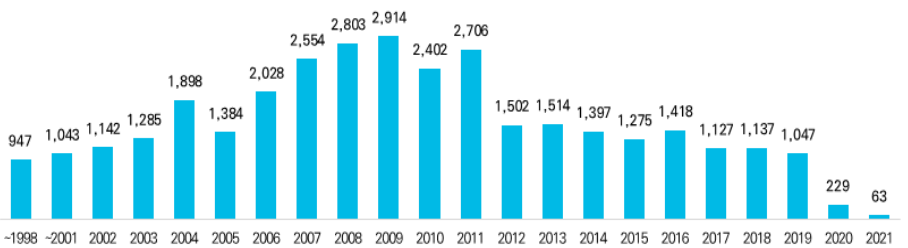
구분	신 청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 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2003 이전	9	3.6	251	0	0.0	14	0	0.0	13	0	0.0	41	3	7.3	41
2005	9	2.2	410	0	0.0	9	3	23.1	13	0	0.0	76	1	3.2	31

구분	신 청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 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2010	30	7.1	423	6	12.8	47	5	14.3	35	4	1.3	310	2	2.8	71
2015	315	5.5	5,711	40	38.1	105	52	26.8	194	-	-	3,976	-	-	280
2016	342	4.5	7,541	47	48	98	114	46.3	246	-	-	4,978	-	-	731
2017	357	3.6	9,942	48	39.7	121	102	32.1	318	-	-	5,582	-	-	1,200
2018	556	3.4	16,173	61	42.4	144	38	7.4	514	-	-	3,221	-	-	2,029
2019	459	3.0	15,451	37	46.8	79	41	17.7	232	-	-	5,287	-	-	4,139
2020	279	4.2	6,684	36	52.2	69	20	12.9	155	-	-	6,542	-	-	5,930
2021	188	8.0	2,341	40	55.6	72	11	36.6	30	-	-	5,920	-	-	3,694

* 출처: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2014).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 총괄보고서. p.529.
법무부(2015.12).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33.
법무부(2021). 2020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96-107.
법무부(2022). 2021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104, p.107, p.110,

② 탈북 난민 아동 · 청소년 수

(〈그림 Ⅲ-8-1〉)은 연도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9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에는 매우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간 이동이 대부분 제한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출처: 통일부(2022.3). 2022 통일백서. p.287.

* 주: 단위: 명

그림 Ⅲ-8-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표 III-8-2〉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입국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북한이탈 후 입국한 19세 이하의 아동 · 청소년은 5,108명으로 전체 탈북 입국자 33,804명 중 1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남성 탈북 입국자 9,469명 중 19세 이하는 2,356명으로 24.9%인 반면, 여성의 경우 전체 여성 탈북 입국자 24,335명 가운데 2,752명이 19세 이하로서 1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51	1,705	2,623	2,157	1,395	586	352	9,469
여	646	2,106	6,967	7,554	4,607	1,460	995	24,335
합계	1,297	3,811	9,590	9,711	6,002	2,046	1,347	33,804

* 출처: 통일부(2022.6).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2022.6월 기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22년 8월 26일 인출.

* 주: 2022년 6월 말 기준. 입국당시 연령 기준이며,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있는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있음.

③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 수

행정안전부의 2020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총 275,99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귀화 및 외국 국적을 지닌 자녀는 14,344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의 5.2%였고, 국내 출생 자녀는 261,646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의 9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3.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2017~2020년)

(단위 : 명, %)

구분	합계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국내 출생 자녀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7	222,455	113,686	108,769	10,153	4,825	5,328	212,302	108,861	103,441
2018	237,506	121,278	116,228	11,361	5,441	5,920	226,145	115,837	110,308
2019	264,626	135,110	129,516	12,660	6,026	6,634	251,966	129,084	122,882
2020	275,990	140,750	135,240	14,344	6,846	7,498	261,646	133,904	127,742

* 출처: 행정안전부(2019.11).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18년 11월 1일 기준). p.75.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행정안전부(2020.11).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19년 11월 1일 기준). p.71.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행정안전부(2021.1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0년 11월 1일 기준). p.73.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GrK7W-FqVupq+xriLgQUMwRY.node5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8648에서 2022년 8월 26일 인출.

* 주: 1) 외국인주민 자녀는 미성년자만 집계한 것임.
2) 전체 외국인주민 유형에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및 한국국적취득자로 분류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III-8-4〉), 미취학아동은 115,579명으로 전체 275,990명 중 41.9%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이 107,286명, 중학생이 53,125명으로 각각 38.9%, 1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의 경우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비율은 각각 25.6%, 37.9%, 36.5%로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국내 출생 자녀의 경우는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비율이 각각 42.8%, 38.9%, 18.3%로 미취학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 중 미취학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보다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Ⅲ-8-4.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별		합계		귀화 및 외국 국적		국내 출생	
		N	구성비	N	구성비	N	구성비
계		275,990	100	14,344	100	261,646	100
소계		115,579	41.9	3,666	25.6	111,913	42.8
미취학 아동	0세	15,149	5.5	42	0.3	15,107	5.8
	1세	16,560	6.0	167	1.2	16,393	6.3
	2세	16,035	5.8	421	2.9	15,614	6.0
	3세	16,377	5.9	561	3.9	15,816	6.0
	4세	17,116	6.2	812	5.7	16,304	6.2
	5세	17,181	6.2	794	5.5	16,387	6.3
	6세	17,161	6.2	869	6.1	16,292	6.2
소계		107,286	38.9	5,437	37.9	101,849	38.9
초등학생	7세	17,318	6.3	864	6.0	16,454	6.3
	8세	18,409	6.7	894	6.2	17,515	6.7
	9세	18,789	6.8	854	6.0	17,935	6.9
	10세	18,515	6.7	837	5.8	17,678	6.8
	11세	17,501	6.3	956	6.7	16,545	6.3
	12세	16,754	6.1	1,032	7.2	15,722	6.0
소계		53,125	19.2	5,241	36.5	47,884	18.3
중고생	13세	14,892	5.4	933	6.5	13,959	5.3
	14세	10,848	3.9	925	6.4	9,923	3.8
	15세	8,705	3.2	915	6.4	7,790	3.0
	16세	7,192	2.6	903	6.3	6,289	2.4
	17세	5,903	2.1	813	5.7	5,090	1.9
	18세	5,585	2.0	752	5.2	4,833	1.8

* 출처: 행정안전부(2021.1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0년 11월 1일 기준). p.76.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GrK7W-FqVupq+xriLgQUMwRY.node5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8648에서 2022년 8월 26일 인출.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교육부의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나타난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60,058명으로 이 가운데 국내출생이 122,0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외국인 가정이 28,536명, 중도입국 가정이 9,4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가 111.430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 가운데 69.6%를 차지하였으며, 중학교는 21.2%, 고등학교는 9.1%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의 75.8%에서 2021년에는 69.6%로 감소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은 각각 15.8%에서 21.2%로, 8.4%에서 9.1%로 증가함으로써 점차 상급학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5.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2019~2021년)

(단위 : 명, %)

구분	2019				2020				2021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국내출생	83,620	15,906	8,543	108,069	85,101	19,556	9,117	113,774	86,410	25,430	10,255	122,095
중도입국	5,163	2,153	1,381	8,697	5,088	2,488	1,575	9,151	4,969	2,801	1,657	9,427
외국인 가정	15,175	3,688	1,596	20,459	17,581	4,791	2,081	24,453	20,051	5,817	2,668	28,536
계	103,958	21,747	11,520	137,225	107,770	26,835	12,773	147,378	111,430	34,048	14,580	160,058
비율	75.8	15.8	8.4	100	73.1	18.2	8.6	100	69.6	21.2	9.1	100

* 출처: 교육부(2022.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5.
* 원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주: 1) 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2) 국제결혼가정 자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됨
2-1) 국내 출생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2-2)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3)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4)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 국적에 따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전체 학생 수는 6,986,853명에서 5,332,044명으로 1,654,809명이 감소하였으나, 다문화 학생은 38,678명에서 160,058명으로 121,380명이 증가함으로써 2011년에는 3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0.55%에서

3.0%로 증가하였다.

표 Ⅲ-8-6.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2011~2021년)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다문화 학생 수(A)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137,225	147,378	160,058
전체 학생 수(B)	6,986,853	6,732,071	6,489,349	6,294,148	6,097,297	5,890,949	5,733,132	5,592,792	5,461,614	5,355,832	5,332,044
다문화 학생 비율 (A/B*100)	0.55	0.70	0.86	1.08	1.35	1.68	1.91	2.19	2.51	2.75	3.00

* 출처: 교육부(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7.
교육부(2021.2).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5.
교육부(2022.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5.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p.386.

* 주: 2013년도 이후의 수치는 가장 최근 자료에 제시된 수치를 참고하였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0)의 2020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0년 4월 기준 탈북학생 수는 1,143명으로 이 가운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9.2%, 26.7%, 24.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의 탈북학생 수는 2,287명으로 학교급별 비율은 초등학생이 28.6%, 중학생이 32.4%, 고등학생이 32.3%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수치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각 년도별 탈북학생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8-7.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2010~2021년)

(단위 : 명, (%))

구분	학교 유형				합계
	초	중	고	기타학교*	
2010.4	562(49.2)	305(26.7)	276(24.1)	-	1,143
2011.4	773(54.5)	297(21.0)	347(24.5)	-	1,417
2012.4	1,020(60.7)	288(17.1)	373(22.2)	-	1,681
2013.4	1,204(60.4)	351(17.6)	437(21.9)	-	1,992
2014.4	1,159(57.3)	478(23.6)	385(19.0)	-	2,022
2015.4	1,224(49.5)	824(33.3)	427(17.3)	-	2,475

구분	학교 유형				합계
	초	중	고	기타학교*	
2016.4	1,143(45.4)	773(30.7)	601(23.9)	-	2,517
2017.4	1,027(40.5)	726(28.6)	785(30.9)	-	2,538
2018.4	932(36.7)	682(26.9)	751(29.6)	173(6.8)	2,538
2019.4	877(34.6)	738(29.2)	752(29.7)	164(6.5)	2,531
2020.4	741(30.4)	782(32.1)	738(30.3)	176(7.2)	2,437
2021.4	654(28.6)	740(32.4)	739(32.3)	176(6.7)	2,287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0). 2020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2020년 4월 기준).https://www.hub4u.or.kr/usr/portal/board/146/commonBbsDetail.do?p_pageno=2&p_listscale=10&p_bbs_id=146&p_srch_type=p_srch_pst_title_cntnt&p_pst_id=1398&p_srch_text=에서 2022년 9월 15일 인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1). 2021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2021년 4월 기준). https://www.hub4u.or.kr/webmdl/sub4uStudentStatus/menuHtmlDetail.do에서 2022년 8월 27일 인출.
* 원자료: 교육부(2021). 2021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21.4 기준). 전일제 대안교육시설 현황은 통일부 자료임 ('20.9 기준)

* 주: 기타학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 · 고등학교 등을 말함.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67%로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율은 0.23%로 전체 학생의 0.38%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2017년에 1.17%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율도 2017년의 0.3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 및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다소 개선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Ⅲ-8-8.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2013~2020년)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0.93(0.53)	0.83(0.45)	0.77(0.41)	0.81(0.43)	0.87(0.47)	0.94(0.50)	0.96(0.51)	0.60(0.38)
다문화	1.03(0.38)	1.01(0.38)	0.85(0.29)	0.88(0.29)	1.17(0.32)	1.03(0.27)	0.95(0.28)	0.67(0.23)

* 출처: 교육부(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2.
교육부(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4.
교육부(2021.2).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5.
교육부(2022.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5.

* 주: 괄호 안은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질병, 유학, 해외출국 제외)

(〈표 III-8-9〉)는 탈북청소년들의 학업중단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 4월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가 0.5%, 중학교가 1.2%, 고등학교가 1.9%로 나타났다. 2021년의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해당 수치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표 III-7-7〉)의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와 비교해 볼 때 전체 학업중단율보다는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하여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Ⅲ-8-9.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2008~2021년)

(단위 : 명, %)

구 분		초	중	고	계
2008	2007.4. 재학생 수	341	232	114	687
	학업중단자 수	12	30	32	74
	학업중단율	3.5	12.9	28.1	10.8
2017	2016.4. 재학생 수	1,143	773	601	2,517
	학업중단자 수	11	14	26	51
	학업중단율	1.0	1.8	4.3	2.0
2018	2017.4. 재학생 수	1,026	697	661	2,384
	학업중단자 수	7	20	32	59
	학업중단율	0.7	2.9	4.8	2.5
2019	2018.4. 재학생 수	932	682	751	2,365
	학업중단자 수	13	22	35	70
	학업중단율	1.4	3.2	4.7	3.0
2020	2019.4. 재학생 수	877	738	752	2,367
	학업중단자 수	13	20	36	69
	학업중단율	1.5	2.7	4.8	2.9
2021	2020.4. 재학생 수	741	782	738	2,261
	학업중단자 수	4	9	14	27
	학업중단율	0.5	1.2	1.9	1.2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1). 2021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2021년 4월 기준). https://www.hub4u.or.kr/usr/portal/board/146/commonBbsDetail.do?p_pageno=1&p_listscale=10&p_bbs_id=146&p_srch_type=p_srch_pst_title_cntnt&p_pst_id=1471&p_srch_text=에서 2022년 8월 27일 인출.

* 주: 1) 학업중단율 =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총수 /전년 재학생 총수) × 100
2) '17년 이전: 전년도 재학생 수 및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수에 기타학교를 포함하여 산출
'18년 이후: 유초중등교육통계 학업중단율 산출 방법* 준용
3) 재학생 및 학업중단자에 기타학교(각종학교, 공민학교 등) 학생 제외

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여성가족부, 2022b)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에 있어 성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연령별 차별경험은 18-24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차별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비해 학교에 다니는 경우 차별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나 학교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경우와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 차별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외국인이라는 인식이 차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8-10.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전체(2012)		13.8	86.2	100.0(66,536)
전체(2015)		6.9	93.1	100.0(82,476)
전체(2018)		9.2	90.8	100.0(94,524)
전체(2021)		2.1	97.9	100.0(127,849)
성별	여성	2.2	97.8	100.0
	남성	2.0	98.0	100.0
연령	9-11세	2.4	97.6	100.0
	12-14세	2.0	98.0	100.0
	15-17세	2.3	97.7	100.0
	18-24세	1.1	98.9	100.0
재학여부	학교에 다님(재학, 휴학 등)	2.2	97.8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졸업, 중퇴 등)	1.2	98.8	100.0
성장배경	국내에서만 성장	2.0	98.0	100.0
	외국 거주 경험	2.5	97.5	100.0
	외국에서 주로 성장	5.3	94.7	100.0
한국 국적 여부	한국 국적 있음	2.1	97.9	100.0
	한국 국적 없음	4.7	95.3	100.0
외국계 부모의 성별	외국계 부+한국계 모	3.2	96.8	100.0
	한국계 부+외국계 모	2.6	97.4	100.0
	외국계 부모	3.8	96.2	100.0
다문화가구 유형	결혼이민자	2.2	97.8	100.0
	기타귀화자	1.2	98.8	100.0
거주지역	동부	2.1	97.9	100.0
	읍면부	2.1	97.9	100.0

구분		있다	없다	합계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7	99.3	100.0
	100~200만원 미만	2.4	97.6	100.0
	200~300만원 미만	1.5	98.5	100.0
	300~400만원 미만	2.8	97.2	100.0
	400~500만원 미만	2.0	98.0	100.0
	500만원 이상	2.7	97.3	100.0

*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629.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377, p.462.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81.
여성가족부(2022b).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728-729.

* 주: 1) 3년마다 가구조사로 실시되는 조사로, 9~24세 자녀 대상으로 지난 1년 간의 차별 경험을 질문한 결과임. 응답자 사례 수는 가중치가 적용된 수치임.
2) 성별부터 가구소득까지의 결과는 2022년 조사결과임.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주체로는 2021년 조사에서는 친구로부터 차별을 당한 경우가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23.7%, 선생님이 20.2%, 이웃이 1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가까이서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친구로부터의 차별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다문화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8년 조사에서는 선생님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비율이 9.1%에 불과했으나, 2021년 조사에서 그 비율이 20.2%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그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경험도 11.3%에서 23.7%로 급증하고 있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Ⅲ-8-11.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

(단위 : %, 점)

구분		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고용주 직장동료	모르는 사람
2015		77.9	16.0	8.8	22.8	-	32.3
2018	차별한 사람(%)	64.0	9.1	6.8	12.8	28.1	11.3
	차별정도(점)	2.51	1.40	1.34	1.54	1.79	1.41
2021	차별한 사람(%)	69.2	20.2	10.4	18.7	4.4	23.7
	차별정도(점)	2.59	1.67	1.34	1.55	1.27	1.58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83-584.
여성가족부(2022b).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730-7331.

* 주: 1) '고용주 직장동료'는 2015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2) 차별정도는 1~4점 척도로 값이 클수록 차별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22)의 202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15~19세 응답자의 4.9%가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체 연령집단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15~19세 응답자 중 6% 이상이 차별이나 무시를 당했다고 응답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해당 비율이 5%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이나 무시 정도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8-12.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차별 경험(2017~2021년)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차별/무시당한 경험		차별/무시당한 경험		차별/무시당한 경험		차별/무시당한 경험		차별/무시당한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5~19세	7.9	92.1	6.0	94.0	8.8	91.2	4.1	95.9	4.9	95.1
20대	17.4	82.6	16.6	83.4	15.1	84.9	13.2	86.8	11.8	88.2
30대	24.2	75.8	20.4	79.6	16.9	83.1	16.6	83.4	15.3	84.7
40대	26.2	73.8	25.0	75.0	19.4	80.6	21.4	78.6	16.8	83.2
50대	27.8	72.2	21.2	78.8	18.3	81.7	21.4	78.6	22.1	77.9
60대 이상	17.1	82.9	10.9	89.1	14.7	85.3	15.6	84.4	12.3	87.7

*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2022). 202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181-182. https://www.koreahana.or.kr/home/kor/promotionData/information/researchData/index.do?ptSignature=QnrvtOekxiPkIgsn74dfsSedjLSUYFR60gbfDUsymjQ%3D&menuPos=110에서 2022년 8월 27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지난 1년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당한 경험(2017~202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7&tblId=DT_43701N_194&vw_cd=MT_ZTITLE&list_id=D2_437001_00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21년 8월 21일 인출.

* 주: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년 조사

③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구금 현황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이주배경 아동의 구금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5명, 청주외국인보호소에 2명,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에 1명으로 총 8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의 34명에서 2018년에 53명, 2019년에 57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12명, 2021년에는 8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13. 이주아동 구금현황(2015~2021년)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화성외국인보호소	25	24	24	24	32	8	5
청주외국인보호소	7	13	8	25	19	2	2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	4	3	4	6	2	1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5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2021.8.26.).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2022.9.23.).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이용률

여성가족부(2022b)의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에 포함된 모든 지원 시설에 대한 인지율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2015년 조사와 2018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 내 방과후 교실과 공부방·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는 90%를 상회하였으며, 청소년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인지율은 80% 이상,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여성 응답자가 남성보다 조금 더 높았으며, 응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보다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지원 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경우보다는 국내에서 성장한 경우 시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한국국적이 있는 경우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14.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복수응답)

(단위: %)

구분		학교 내 방과 후 교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시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사회 복지관	고용 센터	꿈드림 센터*	레인보우 스쿨	다문화 예비 학교	다문화 대안 학교
전체(2015)		84.7	70.2	59.9	62.2	53.4	33.5	-	18.3	19.5	20.4
전체(2018)		95.1	84.6	71.6	69.9	60.5	40.2	36.4	31.2	31.7	32.2
전체(2021)		97.5	93.5	85.3	82.2	74.2	60.8	57.1	54.4	54.0	54.8
성별	여성	98.0	93.9	86.5	83.0	73.9	58.6	55.2	52.7	52.8	53.3
	남성	97.1	93.1	84.1	81.5	74.4	62.9	58.9	56.0	55.1	56.3
연령	9~11세	97.9	92.1	80.1	76.4	66.0	49.3	46.8	44.4	44.4	44.1
	12~14세	96.8	93.4	83.6	81.5	75.7	59.0	56.4	53.6	51.7	54.0
	15~17세	97.9	95.6	94.1	90.6	76.6	69.2	65.6	58.5	59.0	60.5
	18~24세	97.4	95.8	94.8	92.4	91.4	89.2	82.5	80.6	81.1	81.7
재학 여부	학교에 다님	97.5	93.2	84.4	81.2	72.6	58.2	54.6	51.8	51.3	52.2
	학교에 다니지 않음	98.0	96.6	95.4	94.2	93.2	92.3	87.2	86.6	86.4	87.0
성장 배경	국내에서만 성장	97.7	93.8	85.3	82.0	73.8	60.1	56.5	53.9	54.1	54.2
	외국 거주 경험	96.9	91.6	87.4	85.1	80.0	72.8	67.6	64.4	52.9	65.4
	외국에서 주로 성장	93.3	88.2	77.4	82.7	72.4	55.4	51.5	49.3	51.6	52.1
한국 국적	있음	97.6	93.6	85.5	82.3	74.2	60.8	57.1	54.5	54.0	54.9
	없음	90.9	83.8	70.4	79.1	73.7	57.2	53.8	51.7	51.6	53.2
외국계 부모 성별	외국계 부+ 한국계 모	93.8	89.0	77.4	76.4	68.1	58.5	51.0	48.7	50.1	51.2
	한국계 부+ 외국계 모	97.6	92.1	82.1	80.1	72.2	57.5	52.1	48.9	49.1	49.3
	외국계 부모	95.2	93.8	81.7	80.0	73.9	62.7	55.6	51.8	52.5	52.4
다문화 가구 유형	결혼이민자	97.5	93.3	84.4	80.8	72.6	59.0	54.6	51.7	51.1	52.1
	기타귀화자	97.4	94.4	90.6	90.5	83.3	71.2	71.6	70.3	70.8	70.8
거주 지역	동부	97.5	93.7	86.1	83.0	76.6	65.0	60.6	58.8	58.1	59.2
	읍면부	97.5	92.9	83.4	80.5	68.4	50.9	48.9	44.1	44.3	44.5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99.4	97.6	96.3	90.2	82.4	55.5	55.8	48.9	49.4	49.8
	100~200만원 미만	97.9	96.4	84.4	81.3	76.6	66.2	63.8	62.0	62.7	62.7
	200~300만원 미만	97.0	92.2	85.9	85.2	73.3	62.5	59.7	58.5	58.8	58.9
	300~400만원 미만	97.6	92.5	84.2	79.6	73.8	62.1	56.3	53.6	50.5	53.5
	400~500만원 미만	96.6	92.7	84.0	80.2	71.4	53.4	50.0	46.6	46.6	46.6
	500만원 이상	97.7	92.8	81.9	79.9	72.0	61.7	55.7	52.7	52.7	54.0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p.591-596.
여성가족부(2022b).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739-740.

* 주: *는 2015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다문화가족 자녀의 시설 이용률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에 비해 2018년의 이용율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공부방·지역아동센터·방과후아카데미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2021년 이용율은 2018년에 보고된 이용율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운영의 제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부방·지역아동센터·방과후아카데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기능을 수행한 관계로 이용률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위 집단별로 시설 이용률을 살펴보면, 학교 내 방과후 교실, 사회복지관, 고용센터를 이용한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 내 방과후교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12~17세 연령집단의 공부방·지역아동센터·방과후아카데미 및 청소년시설 이용률이 높았고, 사회복지관이나 고용센터 이용률은 18세 이상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전반적인 시설 이용률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시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Ⅲ-8-15. 다문화가족 자녀의 시설 이용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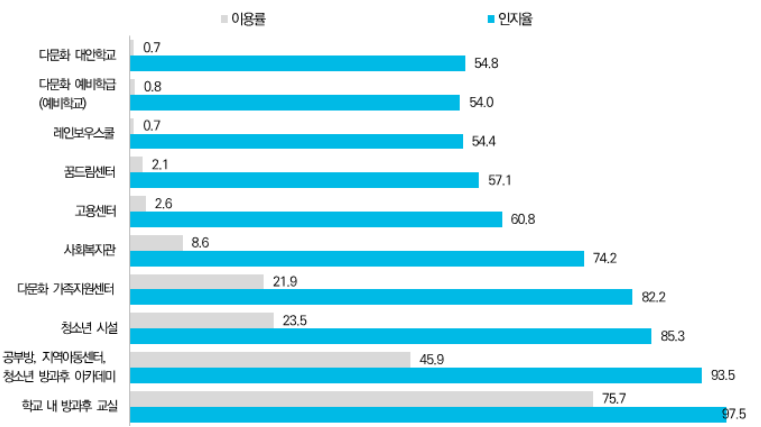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학교 내 방과 후 교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시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사회 복지관	고용 센터	꿈드림 센터*	레인보우 스쿨	다문화 예비 학교	다문화 대안 학교
전체(2015)		61.1	31.4	19.0	20.3	10.9	3.4	-	1.4	1.9	1.5
전체(2018)		80.0	42.8	25.6	26.3	12.4	2.1	4.3	0.7	1.3	1.2
전체(2021)		75.7	45.9	23.5	21.9	8.6	2.6	2.1	0.7	0.8	0.7
성별	여성	78.7	44.4	23.3	21.7	10.6	4.2	1.7	0.6	0.6	0.5
	남성	72.8	47.3	23.7	22.0	6.7	1.2	2.4	0.7	1.1	0.9
연령	9~11세	81.1	47.7	19.2	26.6	7.8	0.6	1.5	0.5	0.6	0.6
	12~14세	78.4	52.5	25.1	24.1	7.1	1.0	2.6	0.8	1.1	0.8
	15~17세	72.2	43.4	33.1	17.3	7.6	1.8	2.6	0.8	0.8	0.6
	18~24세	57.9	29.1	23.2	8.2	14.9	12.9	2.0	0.5	0.9	0.9
재학 여부	학교에 다님	76.1	47.1	23.2	23.3	7.4	1.0	2.1	0.7	0.8	0.7
	학교에 다니지 않음	70.5	31.6	27.2	5.2	22.9	22.5	1.5	0.3	0.6	0.9
성장 배경	국내에서만 성장	75.7	45.1	22.8	22.2	8.7	2.7	1.9	0.5	0.7	0.5
	외국 거주 경험	80.9	60.3	37.4	14.3	6.5	0.9	3.3	1.1	0.7	1.0
	외국에서 주로 성장	63.0	40.8	14.4	28.9	9.7	4.8	4.7	3.6	5.3	6.1

구분		학교 내 방과 후 교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시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사회 복지관	고용 센터	꿈드림 센터*	레인보우 스쿨	다문화 예비 학교	다문화 대안 학교
한국 국적	있음	75.9	46.0	23.7	21.9	8.6	2.6	2.1	0.6	0.8	0.7
	없음	57.5	34.1	6.9	22.1	8.9	3.5	0.3	0.9	2.3	3.2
외국계 부모 성별	외국계 부+ 한국계 모	61.5	30.3	15.7	8.3	4.2	1.3	1.9	0.8	1.3	1.6
	한국계 부+ 외국계 모	81.4	47.3	21.8	26.9	8.8	1.4	2.8	0.8	1.1	0.8
	외국계 부모	74.8	44.3	19.4	22.0	13.5	2.9	4.2	2.4	2.3	2.5
다문화 가구 유형	결혼이민자	77.8	47.2	23.8	23.2	7.8	1.3	2.3	0.7	0.9	0.8
	기타귀화자	63.5	38.2	22.1	14.4	12.9	10.5	0.7	0.5	0.5	0.4
거주 지역	동부	71.4	43.1	20.0	15.9	9.3	3.4	1.8	0.6	0.8	0.7
	읍면부	85.9	52.5	31.8	36.0	6.8	0.8	2.9	0.7	0.7	0.6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92.4	70.5	56.9	28.1	11.3	0.7	1.8	0.4	0.4	0.4
	100~200만원 미만	80.3	45.7	25.5	17.9	15.4	10.7	2.5	0.7	0.8	0.7
	200~300만원 미만	62.8	40.1	17.1	18.8	7.0	0.9	1.3	0.5	0.6	0.5
	300~400만원 미만	75.1	44.7	17.9	22.6	6.8	1.2	2.4	0.5	0.8	0.6
	400~500만원 미만	81.5	49.2	26.4	29.1	7.6	1.3	2.6	0.8	0.9	0.8
	500만원 이상	78.4	40.3	19.2	18.4	6.5	1.9	2.0	1.1	1.2	1.3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p.591-596.
여성가족부(2022b).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743-744.

* 주: *는 2015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출처: 여성가족부(2022b).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739-740, 743-744.

* 주: 위 출처의 내용을 연구진이 그래프로 도식화함(단위: %).

그림 Ⅲ-8-2.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과 이용률의 비교(복수응답)

2) 소년 사법

(1) 자유박탈 아동 · 청소년 현황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설 수용 인원수

2021년 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되거나 위탁, 및 임시퇴원 취소나 유치 등으로 새로 입원한 인원은 모두 5,237명으로 이 가운데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인원은 1,361명으로 전체 신수용인원의 26%이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인원은 3,876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066명이며, 이 가운데 782명이 보호소년이고 284명이 위탁소년이다.

표 Ⅲ-8-16.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2011~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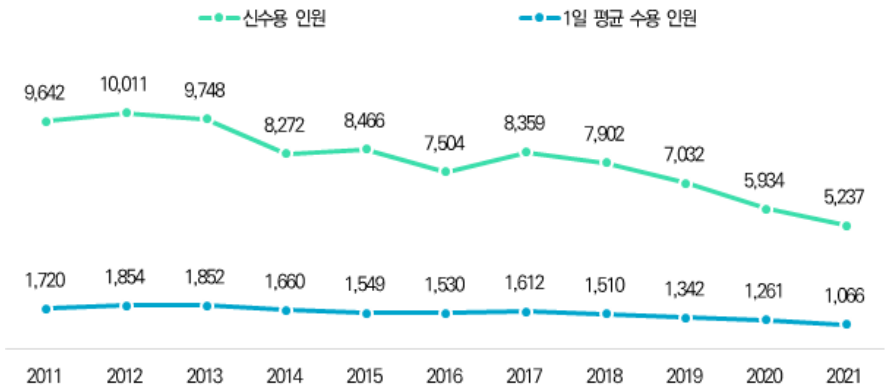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수용인원	계	9,642	10,011	9,748	8,272	8,466	7,504	8,359	7,902	7,032	5,934	5,237
	보호소년	2,960	3,429	3,037	2,363	2,288	2,096	2,450	2,199	2,077	1,637	1,361
	위탁소년	6,682	6,582	6,711	5,909	6,178	5,408	5,909	5,703	4,955	4,297	3,876
1일평균 수용인원	계	1,720	1,854	1,852	1,660	1,549	1,530	1,612	1,510	1,342	1,261	1,066
	보호소년	1,264	1,390	1,380	1,236	1,112	1,132	1,168	1,079	946	927	782
	위탁소년	456	464	472	422	437	398	444	431	396	334	284

* 출처: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p.396.
통계청(각 연도). e-나라지표.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738&board_cd=INDX_001에서 2022년 8월 27일 인출.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주: 1) 보호소년: 법원으로부터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 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2) 위탁소년: 법원으로부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제1항제3호에 따라 비행의 원인과 자질을 규명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3) 신수용인원: 당해연도 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의해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 또는 위탁된 인원과 임시퇴원 취소, 유치 등으로 새로 입원한 인원
4) 일일평균수용인원: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치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현황의 최근 10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신수용인원의 경우 201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21년의 신수용인원 규모는 2012년의 절반 수준에까지 줄어들었으며, 1일 평균 수용인원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21년도에는 인원이 가장 많았던 2012년에 비해 78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통계청(각 연도). e-나라지표.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738&board_cd=INDX_001에서 2022년 8월 27일 인출.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주: 단위: 명

그림 Ⅲ-8-3.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1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소년원에 수용된 인원은 총 1,54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개월 미만 처분을 받은 경우가 42.2%인 652명으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이상인 경우가 25.5%인 3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의 2009년 이후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소년원 수용인원은 2012년에 3,3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2020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개월 미만 처분을 받아 수용된 경우는 2012년의 1.680명에서 2020년에 11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나, 3개월 미만 처분을 받은 경우는 2012년의 125명에서 2020년에는 23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2개월 이상 수용된 경우는 2012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6개월 미만 및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처분을 받아 수용된 경우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Ⅲ-8-17.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2009~2020년)

(단위 : 명, 월)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672	2,755	2,716	3,399	3,005	2,531	2,171	2,138	2,275	2,328	1,943	1,546
1월 미만	1,221	1,356	1,370	1,680	1,348	969	883	773	902	830	16	11
3월 미만	98	86	76	125	96	80	62	62	47	64	705	232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월 미만	590	653	649	796	894	769	670	676	777	773	535	652
6월 이상 12월 미만	262	177	160	209	232	208	181	189	179	214	300	257
12월 이상	501	483	461	589	435	505	375	438	370	447	387	394
평균 수용기간	5.71	4.61	4.66	4.66	4.90	5.18	4.80	5.35	4.85	5.10	5.6	6.9

* 출처: 법무부(2019). 2018 법무연감. p.595.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520.
* 원자료: 법무부(2021). 법무연감.

②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

(〈표 III-8-18〉)의 청소년범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 18세 이상이 16,097명으로 전체 인원의 25.0%로 가장 많았으며, 16세와 17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1.1%,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범죄의 경우 16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67.4% 수준이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인원은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의 9.9%에서 2020년에는 14.1%로 증가한 반면, 16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79.7%에서 67.4%로 감소함에 따라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I-8-18.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2015~2020년)

(단위 : 명(%))

구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15	71,035 (100.0)	64 (0.1)	7 (0.0)	14,387 (20.3)	17,624 (24.8)	18,231 (25.7)	20,722 (29.2)
2016	76,000 (100.0)	84 (0.1)	7,530 (9.9)	13,789 (18.1)	17,589 (23.1)	17,607 (23.2)	19,401 (25.5)
2017	72,759 (100.0)	93 (0.1)	7,703 (10.6)	12,376 (17.0)	16,391 (22.5)	17,358 (23.9)	18,838 (25.9)
2018	66,142 (100.0)	-	8,321 (12.6)	11,595 (17.5)	13,306 (20.1)	15,513 (23.5)	17,407 (26.3)
2019	66,247 (100.0)	-	9,053 (13.7)	11,730 (17.7)	13,548 (20.5)	14,338 (21.6)	17,578 (26.5)
2020	64,480 (100.0)	-	9,124 (14.1)	11,956 (18.5)	13,578 (21.1)	13,725 (21.3)	16,097 (25.0)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478.
* 원자료: 대검찰청(2012~2021). 범죄분석.

* 주: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시행으로 소년범죄 연령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됨.
2018년 이후 14세 미만은 통계에서 제외.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인원을 살펴보면, 2021년 전체 142명 가운데 기타를 제외하고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가 2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절도, 강도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이후부터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기타의 죄명인 경우가 24.7%에서 4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년수형자의 죄명이 다양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강간 등 성범죄와 절도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폭력·상해의 경우는 2016년에는 전체 소년수형자의 18.0%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4.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19.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2016~2021년)

(단위 : 명(%))

구분	계	절도	사기·횡령	폭력·상해	강간 등	강도 등	살인	과실범	기타
2016	150(100)	23(15.3)	2(1.3)	27(18.0)	35(23.3)	19(12.7)	5(3.3)	2(1.3)	37(24.7)
2017	130(100)	27(20.8)	9(6.9)	5(3.8)	44(33.8)	11(8.5)	5(3.8)	0(0.0)	29(22.3)
2018	105(100)	17(16.2)	12(11.4)	3(2.9)	24(22.9)	5(4.8)	4(3.8)	1(1.0)	39(37.1)
2019	116(100)	10(8.6)	9(7.8)	11(9.5)	26(22.4)	14(12.1)	3(2.6)	4(3.4)	39(33.6)
2020	115(100)	21(18.3)	8(7.0)	13(11.3)	21(18.3)	13(11.3)	1(0.9)	1(0.9)	37(32.2)
2021	142(100)	26(18.3)	6(4.2)	7(4.9)	31(21.9)	11(7.8)	1(0.7)	2(1.4)	58(40.8)

* 출처: 법무부(2022.7). 2022 교정통계연보. p.75.

* 주: 1) 소년수형자가 수용된 전체 교정기관 통계. 각 년도.
2) 폭력은 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

징역형을 받은 소년수형자의 형기별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은 3년 미만을 받은 경우가 전체 115명 가운데 47.8%인 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미만을 받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35.7%인 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기별 인원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이래 매년 3년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5년 미만인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 규모는 다소 등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10년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가 2015년에 9.2%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13.1%로 약 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년수형자의 경우 10년 미만의 장기 복역자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8-20. 소년수형자 징역형 형기별 인원 현황(2015~2020년)

(단위 : 명(%))

구분	계	6월 미만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무기
2015	130 (100)	1 (0.8)	11 (8.5)	56 (43.1)	48 (37.0)	12 (9.2)	2 (1.4)	-	-
2016	149 (100)	1 (0.7)	8 (5.4)	69 (46.3)	56 (37.6)	13 (8.7)	2 (1.3)	-	-
2017	130 (100)	-	7 (5.4)	67 (51.5)	46 (35.4)	9 (6.9)	-	1 (0.8)	-
2018	105 (100)	1 (1.0)	2 (1.9)	55 (52.3)	33 (31.4)	13 (12.4)	-	1 (1.0)	-
2019	116 (100)	-	4 (3.4)	45 (38.8)	45 (38.8)	21 (18.1)	-	1 (0.9)	-
2020	115 (100)	2 (1.7)	2 (1.7)	55 (47.8)	41 (35.7)	15 (13.1)	-	-	-

* 출처: 법무연수원(2022). 2021 범죄백서. p.639.

* 주: 1) 소년수형자가 수용된 전체 교정기관 통계, 각 년도.
2) 부정기형은 단기형을 기준(금고형 선고자 제외).

(2) 인권친화적 사법 환경

①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인권친화적 사법 환경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의 하나인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를 살펴보면, 2021년에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은 횟수가 2,71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기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나, 이것이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덜 받은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소년보호사건의 발생 규모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8-21.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2011~2021년)

(단위: 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선보조인	3,762	4,096	4,606	4,101	4,408	4,359	4,756	3,960	3,305	3,174	2,711

* 출처: 대한민국정부(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p.115. 부록 통계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2.9.26.).
* 원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 주: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

②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은 각 사법시설의 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인원의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소년사법시설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지표이다. 먼저 2020년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수용률은 모두 10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은 정원 대비 100%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소년분류심사원 수용현황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인원 및 수용률은 2018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수용률이 115.4%로 수용 정원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 소년원의 경우에는 2019년까지 수용률이 100%를 초과하였다가 2020년에 90%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 이후의 평균 수용률은 118.2%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특히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소년분류심사원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Ⅲ-8-22.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20년)

(단위 : 명(%))

분류심사원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서울소년 분류심사원 / 정원 170명	219 (128.8)	178 (104.7)	207 (121.8)	212 (124.7)	192 (112.9)	170 (100)	196.3 (115.4)
부산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70명	95 (135.7)	87 (124.3)	88 (125.7)	82 (117.1)	82 (117.1)	63 (90.0)	82.8 (118.2)
대구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50명	33 (66.0)	38 (76.0)	37 (74.0)	31 (62.0)	31 (62.0)	21 (42.0)	31.8 (63.6)
광주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50명	45 (90.0)	41 (82.0)	53 (106.0)	45 (90.0)	33 (66.0)	29 (58.0)	41 (82.0)

분류심사원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대전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40명	31 (77.5)	42 (105.0)	39 (97.5)	44 (110.0)	37 (92.5)	36 (90.0)	38.1 (95.2)
춘천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30명	10 (33.3)	10 (33.3)	17 (56.7)	14 (46.7)	16 (53.3)	11 (55.0)	13 (65.0)
제주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10명	4 (40.0)	2 (20.0)	3 (30.0)	3 (30.0)	5 (50.0)	4 (40.0)	3.5 (35.0)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33-3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2.9.26.).
* 원자료: 법무부 내부자료(소년보호시설 정원 대비 수용 현황)

* 주: '평균값'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현황에 대한 평균값임.

전국 소년원의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소년원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이 100%를 초과한 시설은 서울, 광주, 안양의 소년원이었으며, 부산과 대구의 소년원은 95% 수준이었고,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소년원의 수용률도 모두 8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이후 2020년까지의 평균 수용률을 살펴보면, 전주와 청주의 소년원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소년원 수용률의 개선은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소년범죄 발생의 예방을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Ⅲ-8-23.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20년)

(단위 : 명(%))

소년원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고봉중고등학교 (서울소년원) / 정원 170명	236 (157.3)	234 (156.0)	246 (164.0)	204 (136.0)	172 (101.2)	206 (121.1)	216.3 (127.2)
오륜정보산업학교 (부산소년원) / 정원 90명	119 (119.0)	139 (139.0)	125 (125.0)	111 (111.0)	86 (95.6)	86 (95.5)	111 (123.3)
읍내정보통신학교 (대구소년원) / 정원 90명	130 (144.4)	141 (156.7)	137 (152.2)	114 (126.7)	94 (104.4)	86 (95.5)	117 (130.0)

소년원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고룡정보산업학교 (광주소년원) / 정원 120명	94 (78.3)	104 (86.7)	135 (112.5)	108 (90.0)	95 (79.2)	104 (104)	106.6 (106.6)
송천중고등학교 (전주소년원 / 정원 130명	108 (77.1)	92 (65.7)	81 (57.9)	91 (65.0)	102 (78.5)	103 (79.2)	96.1 (73.9)
대산학교 (대전소년원) / 정원 80명	115 (115.0)	98 (98.0)	122 (122.0)	121 (121.0)	84 (105.0)	69 (86.2)	101.5 (126.8)
미평여자학교 (청주소년원) / 정원 80명	45 (50.0)	45 (50.0)	45 (50.0)	85 (94.4)	85 (106.3)	66 (82.5)	61.8 (77.2)
정심여자중고등학교 (안양소년원) / 정원 80명	141 (176.3)	147 (183.8)	127 (158.8)	109 (136.3)	103 (128.8)	103 (128.8)	121.6 (152.0)
한길정보통신학교 (제주소년원) / 정원 40명	31 (77.5)	43 (107.5)	43 (107.5)	33 (82.5)	33 (82.5)	25 (83.3)	34.6 (115.3)
신촌정보통신학교 (춘천소년원) / 정원 120명	93 (93.0)	89 (89.0)	107 (107.0)	103 (103.0)	92 (76.7)	79 (87.8)	93.8 (104.2)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p.34-3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2.9.26.).
* 원자료: 법무부 내부자료(소년보호시설 정원 대비 수용 현황)

* 주: '평균값'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현황에 대한 평균값임.

③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2021년의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가 4,5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4년 이후 해당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7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직무유기,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사유로 고소·고발 사례가 719건이었고, 청원이 558건, 행정심판이 44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고발은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원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4년 이후 소년교도소 처우불복 유형의 변화 양상은 국가인원위원회 진정 건수 증가. 청원 건수 감소, 헌법소원 증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다소 변화는 있으나 전체 규모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고소·고발은 2019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24.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2014~2021년)

(단위 : 건)

구분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 ·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2014	903	369	61	614	3,745	27
2015	957	552	74	733	3,790	23
2016	797	347	56	698	3,716	38
2017	744	437	70	783	4,528	70
2018	772	310	86	855	4,322	32
2019	558	509	91	916	4,211	29
2020	593	630	60	867	4,124	54
2021	558	443	61	719	4,522	58

* 출처: 법무부(2022.7). 2022 교정통계연보. pp.124-131.

* 주: 1) 주요 고소·고발 사유: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2) 주요 행정심판 청구 내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 등
3) 주요 행정소송 청구 사유: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징벌처분무효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등
4) 주요 헌법소원 청구 내역: 징벌처분, 직원고소사건 처리 결과(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불복, 보호장비 사용 등

④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

소년보호사건의 항고 및 재항고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수는 모두 204건이었으며, 항고 건수 가운데 기각된 경우가 1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용(환송)된 경우는 26건이었으나, 재항고 경우는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처리와 관련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항고 접수 건수는 최근 3년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처리된 사건 가운데 기각 건수의 비율은 최근 3년간 각각 80.2%, 79.1%, 78.4%로 나타나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인용(환송) 건수의 비율은 2021년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25. 소년보호 항고 · 재항고 사건 수

(단위 : 건)

연도	구분	접수	처리				
			합계	인용(환송)	기각	취하	기타
2019	항고	271	232	26	186	18	2
	재항고	13	13	-	12	1	-
2020	항고	221	239	25	189	22	3
	재항고	22	26	1	24	1	-
2021	항고	189	195	26	152	16	1
	재항고	15	16	-	16	-	-

* 출처: 법원행정처(2020). 2020 사법연감. p.1075.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p.1099.
법원행정처(2022). 2022 사법연감. p.1181.

(3) 회복적 프로그램(다이버전) 운영

①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 참여자 수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선도를 실시함으로써 재범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은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랑의 교실, 병원(신경정신의학과)을 활용하여 선도하는 치유 선도프로그램, 경찰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찰 선도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경찰청, 2022.6: 65).

경찰의 선도프로그램 이수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 20,411명이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는데, 이는 당해 연도에 검거된 54,138명의 범죄소년 가운데 37.7%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집단상담·미술치료 등을 진행하는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 이수자가 14,1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회복적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찰 선도프로그램 이수자는 6,216명, 신경정신과 의사 및 임상 심리사 등이 진행하는 지기통제·인관관계 형성 프로그램인 치유 선도프로그램 이수자는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 프로그램 이수 현황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참가인원은 2019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당해연도 소년범죄 검거인원 대비 참가율은 37% 전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가 규모의 감소에 따라 사랑의 교실 및 치유 선도프로그램 참가 인원도 감소하였으나, 경찰 선도프로그램의 경우 감소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26. 선도프로그램 이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참가 인원	참여율 (%)	사랑의 교실					치유 선도프로그램					경찰 선도프로그램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소계	초	중	고	기타
2019	25,940	39.2	18,929	485	7,389	9,793	1,262	196	6	122	59	9	6,815	330	3,102	3,089	294
2020	23,464	36.3	15,243	337	5,959	7,952	995	56	4	31	21	0	8,165	431	3,144	4,088	502
2021	20,411	37.7	14,174	507	5,670	6,965	1,032	21	1	12	8	0	6,216	227	2,286	3,380	323

* 출처: 경찰청(2022.6).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 p.67.

② 사회 내 처우 청소년 수

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인원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 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원호를 받게 하거나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를 하게 하거나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형사정책 수단이다(여성가족부, 2022a:528-529).

2020년 전체 보호관찰 인원은 227,020명으로 이 가운데 소년보호관찰 인원은 39,291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1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년보호관찰 인원은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보호관찰인원 중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의 26.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8.7%p 감소한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27.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2015~2020년)

(단위 : 명, %)

구분	전체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비율
2015	199,713	51,978	26.0
2016	227,141	49,687	21.9
2017	240,073	47,493	20.0
2018	227,733	45,364	19.9
2019	223,072	40,587	18.2
2020	227,020	39,291	17.3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530.
* 원자료: 법무부(2012~2021). 법무연감.

표 Ⅲ-8-28.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 형태(2016~2020년)

(단위 : 명)

구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2016	7,616	4,973	2,643	5,587	3,999	1,588
2017	8,321	5,465	2,856	6,139	4,446	1,693
2018	7,845	5,111	2,734	5,952	4,151	1,801
2019	6,787	4,359	2,428	5,182	3,355	1,827
2020	6,292	4,004	2,288	6,724	4,143	2,581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533.
* 원자료: 법무부(2020~2021). 범무연감.

청소년 대상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2020년에는 6,292명이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사회봉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2016년의 7,616건에 비하면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강의, 체험학습 등을 포함하는 수강명령의 경우 2020년 6,724명이 수강명령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5,587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연도별 변화를 비교하면,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2017년 이후 매년 점점 그 숫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강명령의 경우는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통상의 기소유예를 결정함에 있어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제도이다(여성가족부, 2022a: 495). 2020년의 전체 소년사건 처리인원 가운데 15,592명에 대해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으며, 그 가운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된 경우는 1,315명 건으로 전체 기소유예 중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소유예 결정 가운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0년에 전년 수준의 절반 정도인 8.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추세가 발생된 범죄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검찰의 소년사건에 대한 대응 기조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Ⅲ-8-29.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2015~2020년)

(단위 : 명, %)

구분	소년사건 처리인원 (A)	기소유예 (B)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C)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비율 (C/B×100)
2015	88,733	28,333	3,413	12.0
2016	82,277	26,558	3,409	12.8
2017	84,030	25,416	3,495	13.8
2018	75,150	20,237	3,031	15.0
2019	75,197	19,157	3,000	15.0
2020	72,344	15,952	1,315	8.2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496.
* 원자료: 대검찰청(2012-2021). 범죄분석.

보호관찰소의 선도위탁제도는 선도보호위원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 업무를 관장하는 제도로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한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선도교육·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선도대상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과 접촉할 수 있고, 선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비 보조, 취학 및 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여성가족부, 2022a: 499).

2020년의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선도 대상자는 998명이었으며, 재범 등으로 인해 위탁이 취소된 경우는 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이후 선도대상자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Ⅲ-8-3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2015~2020년)

(단위 : 명)

구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제	취소
2015	354,370	5,184	4,052	3,098	353
2016	368,001	4,419	2,776	2,087	253
2017	325,215	4,371	2,549	1,679	205
2018	266,032	2,519	2,011	1,162	112
2019	226,842	1,845	1,373	905	100
2020	206,374	998	977	455	73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499.
* 원자료: 대검찰청(2012-2021), 검찰연감.

3) 경제적 착취

(1) 청소년 노동조건 수준

①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2020년의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 수 및 근로시간 수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일수는 20.7일이었으며, 근로시간 수는 163.6시간이었고, 남자의 근로일수는 20.7일이고 근로시간이 169.5시간인데 비해 여자의 근로일수는 이보다 약간 많은 20.8일이었고 근로시간은 남자보다 적은 15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의 월평균 근로일 수는 12.9일이고 근로시간 수는 81.6시간인 반면, 20세부터 24세까지의 경우

에는 근로일 수가 18.2일, 근로시간 수가 135.7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세부터 24세까지의 집단에서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 수 및 근로시간 수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5~19세 집단의 경우 근로일 수 및 근로시간 수 모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24세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2020년에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31.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2010~2020년)

(단위 : 일,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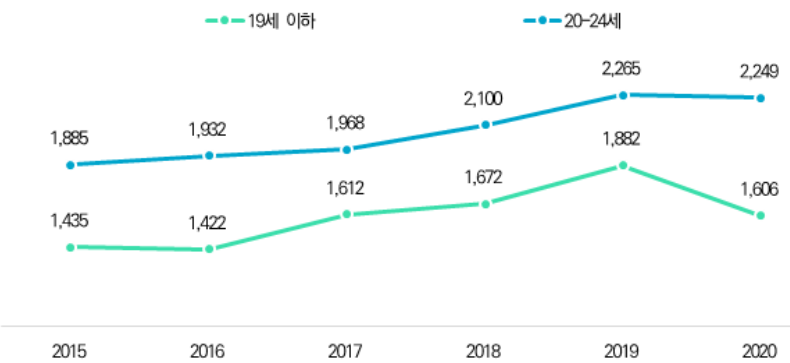
구분		전 체		남 자		여 자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2010	전 체	22.2	187.0	22.1	190.6	22.3	181.1
	15-19세	18.1	135.5	18.5	143.8	17.8	129.8
	20-24세	21.4	174.5	20.9	178.0	21.6	172.6
2015	전 체	21.6	173.5	21.7	179.2	21.4	165.0
	15-19세	15.0	102.3	15.4	109.0	14.5	96.4
	20-24세	19.9	152.6	19.8	154.9	20.0	151.2
2016	전 체	21.0	171.1	21.0	176.5	20.9	163.1
	15-19세	15.1	105.4	15.8	114.6	14.5	97.0
	20-24세	19.3	151.5	19.1	153.0	19.5	150.4
2017	전 체	20.8	168.5	20.9	174.3	20.6	160.1
	15-19세	14.5	103.4	15.1	112.3	14.0	96.4
	20-24세	18.9	146.0	18.8	148.0	18.9	144.6
2018	전 체	19.5	156.4	19.6	161.8	19.4	148.6
	15-19세	13.8	94.9	14.5	102.6	13.2	88.7
	20-24세	17.7	136.6	17.8	141.2	17.7	133.5
2019	전 체	19.2	152.4	19.2	157.9	19.1	144.6
	15-19세	13.3	89.0	13.5	91.9	13.2	86.4
	20-24세	17.3	130.8	17.4	133.5	17.2	129.0
2020	전 체	20.7	163.6	20.7	169.5	20.8	155.0
	15-19세	12.9	81.6	13.1	87.0	12.7	77.5
	20-24세	18.2	135.7	18.5	143.2	18.0	130.7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440-441.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주: 1) 근로일수 = 소정실근로일수 + 휴일실근로일수.
2) 근로시간 = 소정실근로시간 + 초과실근로시간.
3) 이전 년도의 수치는 최근 자료의 결과값으로 수정하였음.

②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2020년의 월 임금 총액은 15~19세 집단은 1,606천원이었으며, 20~24세 집단은 2,24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 수준은 2015년 이후 두 집단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15~19세 집단에서 전년에 비해 약 27만원 정도가 감소하였고, 20~24세 집단에서는 전년에 비해 1만 6천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는 최저임금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의 감소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의 위축의 영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XIV.
* 원자료: 고용노동부(2021). 202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 주: 임금수준은 월 임금 총액을 의미함(단위: 천원).

그림 Ⅲ-8-4.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 총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19,806원이었으며, 19세 이하의 경우는 10,651원, 20~29세 집단의 경우는 14,38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11,746원과 10,359원으로 그 차이는 1,389원이었으며, 20~29세 집단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3,632원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차이는 19세 이하 근로자 집단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모든 연령집단에 걸쳐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2019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감소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Ⅲ-8-32.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2018~2021년)

(단위 : 원(%))

구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2018	2019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전체	19,522	20,573	19,316	19,806	21,203	22,193	20,731	21,230	14,492 (68.3)	15,472 (69.7)	15,015 (72.4)	15,482 (72.9)
19세 이하	9,820	10,506	10,149	10,651	11,479	12,461	11,631	11,746	9,215 (80.3)	9,754 (78.3)	9,808 (84.3)	10,359 (88.2)
20~29세	14,177	15,139	14,078	14,382	15,374	16,353	15,155	15,593	11,472 (74.6)	12,342 (75.5)	11,749 (77.5)	11,907 (76.4)
30~39세	20,530	21,451	19,708	20,185	21,387	22,250	20,343	20,803	15,823 (74.0)	16,834 (75.7)	16,029 (78.8)	16,593 (79.8)
40~49세	22,730	23,750	22,278	22,699	24,093	25,057	23,337	23,674	16,771 (69.6)	17,430 (69.6)	17,079 (73.2)	17,765 (75.0)
50~59세	21,043	22,410	21,312	21,952	22,802	24,069	22,845	23,395	16,064 (70.4)	17,213 (71.5)	16,777 (73.4)	17,425 (74.5)
60세 이상	15,552	16,760	16,419	17,073	17,521	18,421	17,920	18,703	13,425 (76.6)	14,819 (80.4)	14,647 (81.7)	15,105 (80.8)

* 출처: 고용노동부(2019.4).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고용노동부(2020.4).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고용노동부(2021.5). 2020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고용노동부(2022.5).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 주: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③ 청소년 실업률 추이

청소년 실업률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15~24세 집단의 실업률은 8.5%로서 남자는 9.6%, 여자는 이보다 1.8%p 낮은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연령범위를 다소 좁혀 15~19세까지의 실업률은 8.7%였으며, 해당 연령대의 남자와 여자 실업률은 각각 9.7%,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실업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5~24세 집단의 경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15~19세

집단의 경우에는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추이는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8-33. 청소년 실업률 추이(2000~2021년)

(단위 :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계	계	4.4	3.7	3.7	3.6	4.0	3.7
	15~19세	14.5	12.3	11.9	10.6	8.7	8.7
	15~24세	10.8	10.2	9.7	10.5	10.5	8.5
남자	계	5.0	4.0	4.0	3.6	3.9	3.6
	15~19세	15.2	13.0	15.1	10.4	10.8	9.7
	15~24세	13.5	12.1	11.1	11.3	11.1	9.6
여자	계	3.6	3.4	3.3	3.5	4.0	3.8
	15~19세	13.8	11.7	9.6	10.7	7.1	8.0
	15~24세	9.1	8.9	8.9	10.0	10.1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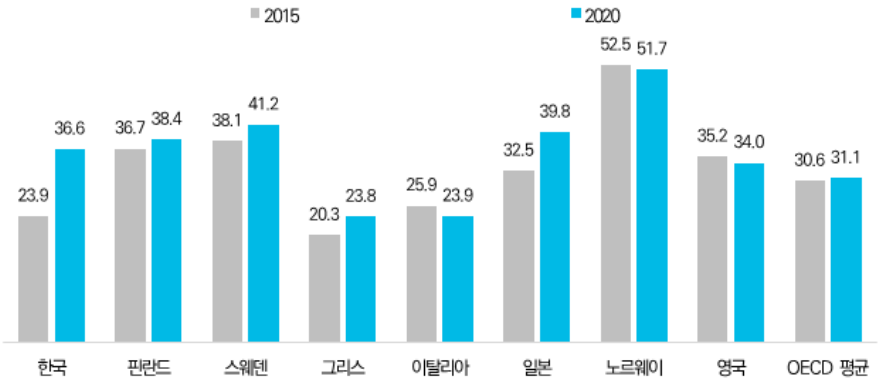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에서 2022년 8월 29일 인출.

*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기본 연령급간의 청소년 연령(15~19세)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9~24세)을 고려한 연령급간(15~24세) 두 가지를 제시함.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력

①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그림 III-8-5]는 OECD 주요 국가의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청소년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청소년 비율은 36.6%로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핀란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우리나라는 무려 12.7%p가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본에서 7.3%p가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에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VII.
* 원자료 : OECD(2021). Labour Market Statistics.

* 주: 단위: %

그림 Ⅲ-8-5.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 국제비교(2015/2020)

②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표 III-8-34〉에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본 문항에 응답한 5,815명 가운데 6.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8.2%)이 여학생의 경우(5.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차이에 있어서도 중학생(2.3%)보다는 고등학생의 경우(11.2%) 아르바이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의 규모에 있어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다른 유형의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Ⅲ-8-3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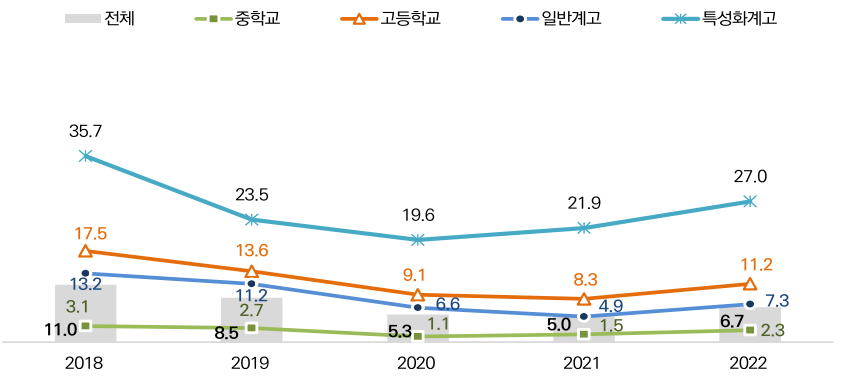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6.7	93.3	100.0(5,815)	
성별	남학생	8.2	91.8	100.0(2,799)	21.130***
	여학생	5.2	94.8	100.0(3,016)	
학교급	중학교	2.3	97.7	100.0(2,962)	185.613***
	고등학교	11.2	88.8	100.0(2,853)	
고교 유형	일반계고	7.3	92.7	100.0(2,290)	175.434***
	특성화계고	27.0	73.0	100.0(563)	
지역 규모	대도시	6.0	94.0	100.0(2,243)	5.032
	중소도시	7.5	92.5	100.0(2,760)	
	읍면지역	6.0	94.0	100.0(81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8	94.2	100.0(5,114)	50.663***
	한부모가정	12.4	87.6	100.0(558)	
	조손가정	17.2	82.8	100.0(44)	
	기타	14.7	85.3	100.0(79)	
학업 성적	상	4.1	95.9	100.0(1,681)	40.846***
	중	6.4	93.6	100.0(2,491)	
	하	9.6	90.4	100.0(1,584)	
경제적 수준	상	5.3	94.7	100.0(2,940)	24.023***
	중	7.2	92.8	100.0(2,230)	
	하	10.5	89.5	100.0(586)	

*p<.05, **p<.01, ***p<.001

아르바이트 경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 6.7%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위축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개선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험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22년의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385명의 청소년들 가운데 적어도 1회 이상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2.9%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3명 중 1명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Ⅲ-8-6.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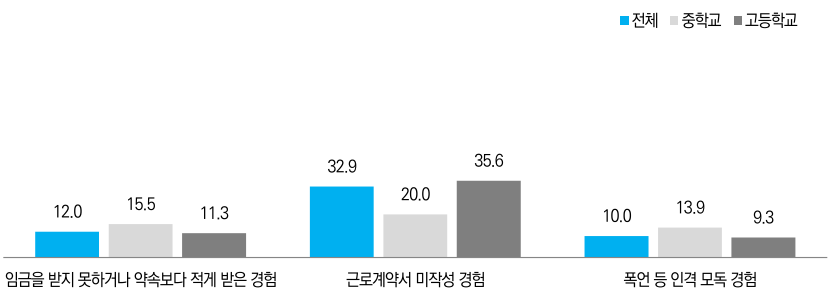
또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3%,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2% 수준이었으며, 부당한 해고, 불결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 폭언 등이 인격모독,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은 경험도 10% 내외 수준이어서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타나 폭행, 성적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3%, 4.3%로 나타나 일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35.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88.0	10.4	1.6	100.0(385)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85.6	10.5	3.8	100.0(385)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67.1	26.2	6.7	100.0(385)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91.6	6.8	1.6	100.0(38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89.7	7.8	2.4	100.0(385)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89.9	6.9	3.1	100.0(385)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96.7	2.5	0.8	100.0(385)
성적 피해(성희롱 · 성추행)를 경험했다	95.7	3.2	1.1	100.0(383)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90.1	5.7	4.2	100.0(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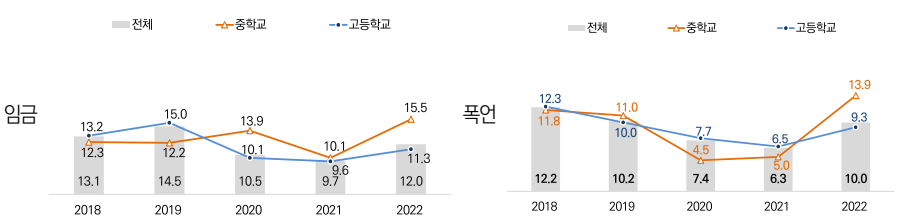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부당경험의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약속보다 작게 받은 경험과 폭언 등의 인격모독 경험의 경우에는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험률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 대상자의 32.9%가 1회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중학생의 경우 20.0%, 고등학생의 경우 35.6%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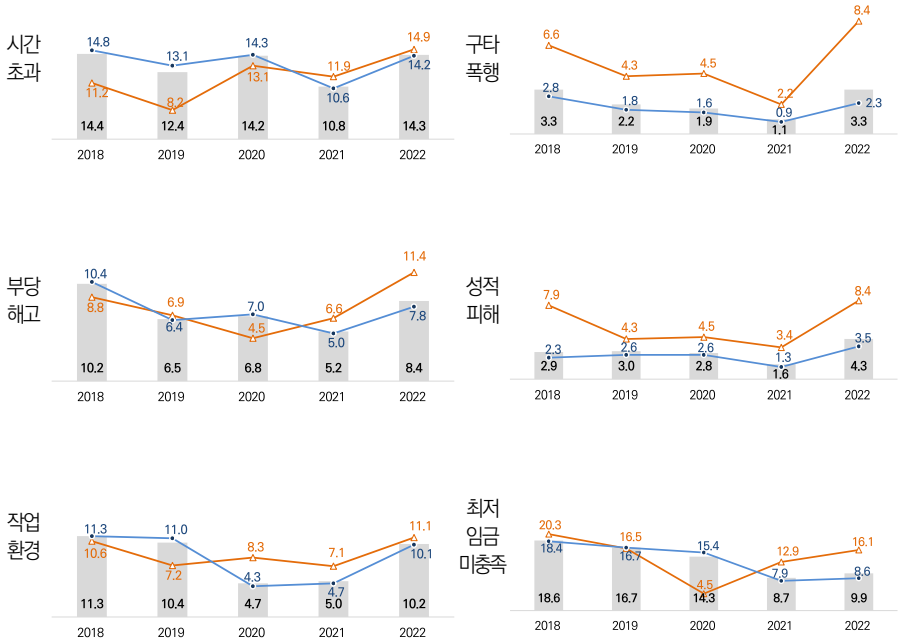


* 주: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8-7. 아르바이트시 청소년의 주요 부당처우 경험률

[그림 III-8-8]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험을 한 정도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9개 항목 모두에 걸쳐 2022년의 발생 비율은 2021년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증가함에 따라 아르바이트 시의 부당경험 비율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의 부당경험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년 동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시 겪은 부당경험의 감소가 실제 노동현장에서의 관행이 변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참여 기회의 감소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이며,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 주: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단 근로계약서 작성문항은 2021년까지는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로 조사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로 변경 조사하여 추이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그래프를 제시하지 않음.

그림 Ⅲ-8-8.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연도별 추이)

③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당한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물론 청소년들도 노동현장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나타난 2020년의 노동인권교육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2020년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2%로 2018년에 비해 14.1%p나 증가하였으며, 교육을 받은 장소로 학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다소 높았으며, 특히 특성화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65.1%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로 학교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이나 전문교육기관에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36.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과 도움정도

(단위 : %)

구분		교육받은 적 있음	교육받은 곳(복수응답)				교육이 도움됨
			학교	공공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	
전체	2018	36.1	33.8	8.5	8.1	3.2	71.9
	2020	50.2	49.1	9.4	8.2	4.8	-
중학교	2018	28.9	26.0	7.9	9.1	3.0	74.3
	2020	44.5	43.2	8.5	7.9	3.9	-
고등학교	2018	42.0	40.3	8.9	7.2	3.4	70.6
	2020	55.5	54.6	10.3	8.4	5.7	-
ㄴ일반계고	2018	39.1	37.6	7.2	6.2	2.8	69.8
	2020	53.5	52.7	9.3	7.8	5.1	-
ㄴ특성화고	2018	55.5	53.6	17.4	11.9	6.5	73.0
	2020	65.1	64.1	15.4	11.7	8.6	-

* 출처: 여성가족부(2020b).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297.

* 주: 1) '교육이 도움된다'는 값은 최근 1년 동안 근로권익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 질문한 결과임.
2) 2020년도에는 근로권익교육 도움 정도를 교육장소를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여 전체 값을 기입하지 않음.

4) 성적 착취

(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

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착취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한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총 4,932명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으로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 기소된 경우는 접수자 대비 36.9%인 1,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현황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래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된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소된 경우도 1,800명 전후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37.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 처리 현황(2012~2020년)

(단위 : 명)

구 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12	4,261	4,186	1,501	390	1,228	1,067
2013	4,526	4,525	1,851	153	1,301	1,220
2014	4,626	4,688	1,882	14	1,430	1,362
2015	4,516	4,505	1,744	0	1,419	1,342
2016	4,615	4,585	1,702	2	1,461	1,420
2017	4,767	4,659	1,720	24	1,460	1,455
2018	4,585	4,513	1,731	19	1,404	1,359
2019	4,468	4,521	1,642	21	1,468	1,390
2020	4,932	4,487	1,799	23	1,174	1,491

* 출처: 대검찰청(2018.10). 2018 검찰연감. p.410.
대검찰청(2019.10). 2019 검찰연감. p.378.
대검찰청(2020.10). 2020 검찰연감. p.350.
대검찰청(2021.10). 2021 검찰연감. p.373.

* 주: 1) 산출죄명: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2)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3) 기소인원은 당해기간에 공판기소인원과 약식기소인원을 합한 인원이며, 불기소인원은 당해기간에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인원을 합한 인원임. (기소인원과 불기소인원에 대한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2)

②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표 Ⅲ-8-38〉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형법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량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기존의 법령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Ⅲ-8-38. 국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법령	조문	성범죄 내용	형량
형법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	강간(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등 상해 · 치상(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령	조문	성범죄 내용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 대상으로 강간(제7조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 대상으로 유사강간(제7조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 대상으로 강제추행(제7조3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제7조)	강간(제7조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제7조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제7조3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비, 음모(제7조의2)(신설 20.6.2)	3년 이하 징역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제8조)	간음 혹은 간음하게 하는 경우 (제8조1항)(개정 2020. 5. 19.)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 또는 추행하게 하는 경우 (제8조2항)(개정 2021. 3. 2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강간 등 상해 · 치상 (제9조)	강간 등 상해 · 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 · 치사 (제10조)	강간 등 살인 · 치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 (제11조)	제작수입수출(제11조1항) (개정 2020. 6. 2.)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목적판매 · 배포 · 전시(제11조2항) (개정 2020. 6. 2.)	5년 이상의 징역
		전시 · 상영(제11조3항) (개정 2020. 6. 2.)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제11조5항) (개정 2020. 6. 2.)	1년 이상의 징역
		알선행위(제11조4항) (개정 2020. 6. 2.)	3년 이상의 징역
	아동 · 청소년 매매행위 (제12조)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음란물 제작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 청소년을 매매 혹은 국외이송, 국외거주 아동 · 청소년을 국내 이송(제12조 1항) (개정 2020. 6. 2.)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3조)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3조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조문	성범죄 내용	형량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 청소년을 유인 혹은 성을 팔도록 권유(제13조2항)(개정 2021. 3. 2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 아동 · 청소년을 대상 [(제13조3항)(신설 2020.5.19)	해당 죄에 대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4조)	폭행 · 협박 · 선불금 · 업무고용 등으로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제14조1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의 강요행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 약속(제14조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제14조3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제공, 범죄사용사실을 알면서 자금 · 토지 · 건물 제공, 알선 및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제15조1항)(개정 2021. 3. 23)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업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 · 강요, 장소제공, 알선정보 제공(제15조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 · 강요(제15조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5조의 2) (신설 2021. 3. 23)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 유발, 유인 · 권유 (제15조의2, 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인 아동 · 청소년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 유발, 유인 · 권유 (제15조의2, 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16조)	폭행 ·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 강요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출처: 법제처(2022b).「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 에서 2022년 8월 30일 인출.
법제처(2022c).「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 에서 2022년 8월 30일 인출.
법제처(2022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 에서 2022년 8월 30일 인출.

* 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5.19. 개정, 2020.11.20.시행) 주요 개정 내역
가. 피해아동 · 청소년에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6호).

나. 대상아동 · 청소년의 정의 규정과 대상아동 · 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7호,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다. 장애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제13조제3항 신설).
라.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 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제20조제3항제1호).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38조).
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표 III-8-39〉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의 구속률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2021년의 구속률은 9.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별로는 청주지검의 구속률이 13.6%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동부지검은 2.4%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15년 이후의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각 연도별로 다소 증감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2022년의 구속률이 201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전반적인 구속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서부지검 및 부산지검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39.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2015~2021년)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4.4	12.5	11.9	10.9	9.3	10.5	9.3
서울중앙지검	11.5	12.5	11.2	10.4	6.0	9.2	5.2
서울동부지검	9.1	11.6	11.5	9.1	5.2	10.3	2.4
서울남부지검	9.2	9.3	6.7	9.9	3.8	10.5	4.8
서울북부지검	11.2	5.6	9.9	8.6	7.5	9.2	9.2
서울서부지검	3.3	7.7	9.1	6.0	3.6	15.2	6.5
의정부지검	16.1	7.6	9.2	10.2	6.0	5.6	9.4
청주지검	21.3	9.8	12.0	10.3	19.8	6.0	13.6
창원지검	25.5	18.7	12.5	14.8	9.2	8.8	7.8
부산지검	5.7	10.6	10.7	6.8	5.0	8.9	8.4

* 출처: 김진애 국회의원(2020.10.19.). 보도자료: 미성년자 ·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구속률 급감.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space406&logNo=222119760258&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2021.8.26.).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2022.9.29.).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 주: 1) 관련 죄명(2021년 이전)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추행)

2) 관련 죄명(2021년~) :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 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준강간등, 위계등간음·추행, 성착취물제작 배포·소지등),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추행)

3) 2021년 전후 관련 죄명의 차이 및 구속률 차이 산식(구속/처분계*100)에 포함되는 산정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구속률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변화율은 산정하지 않음.

(2) 성범죄 피해 아동 · 청소년 지원 정도

① 성범죄 피해 아동 · 청소년 보호 및 지원 현황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감당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는 아동 ·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 III-8-40〉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16개 유형의 지원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상담소 168개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4개소, 해바라기센터 39개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39개소,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2개소, 대안교육 위탁기관 2개소,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1개소, 자활지원센터 12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30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33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9개소, 가정폭력상담소 213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5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8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354호, 청소년성문화센터 5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Ⅲ-8-40. 성폭력 · 성착취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구분	시설별	시설수	대상	보호기간(최대)	비고
1	성폭력피해 상담소	168	성폭력 피해자		이용시설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공동생활)	34	성폭력 피해여성	• 일반(1년+1년 6월) • 장애인(2년+회복 시) • 특별지원(18세+2년) • 자립지원(2년+2년)	생활시설
3	해바라기센터	39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피해자		이용시설

구분	시설별	시설수	대상	보호기간(최대)	비고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일반 · 청소년)	39	성매매피해자 등	• 일반(1년+1년 6월) • 청소년(19세가 될 때까지+2년)	생활시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2	성매매피해자 등	• 2년+2년	생활시설
6	대안교육 위탁기관	2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 1년(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이용시설
7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 3개월(수사 · 소송진행 중인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생활시설
8	자활지원센터	12	성매매피해자 등		이용시설
9	성매매피해상담소	30	성매매피해자 등		이용시설
1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33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 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 2년 이내	생활시설
11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9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 피해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		이용시설
12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213 (46)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 · 성폭력 등 피해자)		이용시설
1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5	가정폭력피해여성과 아동	• 6월(+3월 2회) ※ 장기시설: 2년 이내	생활시설
1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8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 피해자		이용시설
15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354호	가정 · 성폭력 피해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	• 2년(+2년)	생활시설
16	청소년성문화센터	57	유아 · 초 · 중 · 고생 부모 등 전국민		이용시설

* 출처: 여성가족부(2022c). 2022 여성 ·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25.

* 주: 1) 2021년 12월 기준
2) 해바라기센터 1개소 신규 설치('18.하반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형 보호시설 1개소 신규 설치('18.하반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20호 추가 지원('19.상반기~), 통합상담소 10개소 추가 지원('19.1월~), 일반상담소 15개소 추가 지원('19.1월~)

가.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현황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 283,916건의 성폭력 피해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피해상담 건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의 상담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 연계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심리·정서적 지원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지원 건수의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정보제공이나 전학 지원 등의 기타 범주를 제외하고 수사

및 법적 지원이 17% 수준이며, 의료지원과 시설입소 연계는 전체 지원 내용의 각각 8%와 5%를 차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담건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지원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8-41.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실적(2013~2021년)

(단위 : 개소수, 건,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성폭력 피해 상담소	개소수		169	154	159	167	167	170	168	169	163
	상담건수		145,446	146,750	158,188	158,029	180,572	241,343	276,122	258,410	283,916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심리, 정서적 지원	건	48,473	46,414	57,469	65,178	68,352	92,293	77,925	75,797	87,157
		%	54	51	57	57	56	58	53	50	50
	수사, 법적 지원	건	15,921	15,944	14,760	16,614	15,736	20,795	22,331	30,387	30,556
		%	18	18	15	15	13	13	15	20	17
	의료 지원	건	5,227	5,652	5,760	6,326	6,304	8,290	8,473	9,904	14,111
		%	6	6	6	6	5	5	6	7	8
	시설입소 연계	건	2,076	890	1,199	1,747	3,317	4,371	7,063	6,874	8,809
		%	2	1	1	2	3	3	5	5	5
	기타	건	17,569	21,684	21,749	24,114	29,130	34,579	32,519	30,259	35,115
		%	20	24	22	21	24	22	22	20	20
	합계	건	89,208	90,584	100,937	113,979	122,839	160,328	148,311	153,221	175,74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1에서 2022년 8월 29일 인출.
* 원자료: 여성가족부 (각 연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 주: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 시설입소 연계: 보호시설,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3) 기타: 정보제공,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전학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별 및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93.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도 5.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가운데 20세 이상의 성인이 대상인 경우가 전체 여성 대상 상담의 61.3%였으며, 8세~19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상담비율도 2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전체 상담의 26.4%로 전체 상담 대상자 4명 가운데 1명은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표 Ⅲ-8-42. 성폭력 피해자 성별 ·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구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4세-19세)	어린이 (8세-13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5 (0.9)	329 (61.3)	70 (13.0)	52 (9.7)	14 (2.6)	32 (6.0)	502 (93.5)
남	-	23 (4.3)	2 (0.4)	3 (0.6)	-	-	28 (5.2)
기타	-	-	-	-	-	-	-
총계	5 (0.9)	355 (66.1)	72 (13.4)	56 (10.4)	14 (2.6)	35 (6.5)	537 (100)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22.3).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p.4. https://www.sisters.or.kr/consult/stat/6214에서 2022년 8월 29일 인출.

* 주: 1) 성별이 '미상'인 값은 제외함.
2) 2021년 상담통계 기준

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인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 전체 256명이 입소하였고, 이 가운데 13~18세 이하가 전체 입소자의 38.7%인 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9~24세 이하가 28.5%인 73명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3세~24세 연령대의 입소자 비율이 67.2%로 전체 입소자의 2/3에 해당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25세~64세 이하의 비율이 41.4%로 가장 높았으나 13~24세 입소자 비율은 55.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현황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이래 각 연도별 전체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소 현황은 2022년의 입소 현황에서 나타난 양상이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8-4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2017~2021년)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5세 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2017	전체	285	1	15	123	77	69	0
		100.0	0.4	5.3	43.2	27.0	24.2	0
	장애인	173	0	3	54	60	56	0
		100.0	0	1.7	31.2	34.7	32.4	0
2018	전체	284	2	14	123	71	73	1
		100.0	0.7	4.9	43.3	25.0	25.7	0.4
	장애인	164	0	4	48	51	60	1
		100.0	0	2.4	29.3	31.1	36.6	0.6
2019	전체	287	1	15	125	71	74	1
		100.0	0.3	5.2	43.6	24.8	25.8	0.3
	장애인	168	0	6	47	52	60	3
		100.0	0	3.6	28.0	31.0	35.6	1.8
2020	전체	295	1	16	114	88	66	10
		100.0	0.3	5.4	38.6	29.8	22.4	3.4
	장애인	166	0	4	46	48	59	9
		100.0	0.0	2.4	27.7	28.9	35.5	5.4
2021	전체	256	0	14	99	73	70	0
		100.0	0.0	5.5	38.7	28.5	27.3	0.0
	장애인	145	0	5	39	41	60	0
		100.0	0.0	3.4	26.9	28.3	41.4	0.0

* 출처: 여성가족부(2022.4). 2021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4.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에서 2022년 8월 29일 인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전체 143,263건의 지원실적 가운데, 심리·정서 지원이 44.7%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의료지원, 학교문제 지원, 자립지원, 수사·법적 지원이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상은 2017년 이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4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2017~2021년)

(단위 : 건, %)

연도	계	심리 · 정서 지원	수사 · 법적 지원	의료 지원	학교문제 (전학)지원	자립 지원	기타
2017	98,954	48,237	1,201	8,844	8,259	10,930	21,483
	100.0	48.7	1.2	8.9	8.3	11.0	21.7
2018	120,675	62,831	1,314	8,911	10,813	17,005	19,801
	100.0	52.1	1.1	7.4	9.0	14.1	16.4
2019	141,719	66,514	1,284	13,898	11,907	20,928	27,188
	100.0	46.9	0.9	9.8	8.4	14.8	19.2
2020	158,991	70,484	1,260	17,500	15,623	19,470	34,654
	100.0	44.3	0.8	11.0	9.8	12.2	21.8
2021	143,263	64,044	2,013	19,647	16,865	14,064	26,630
	100.0	44.7	1.4	13.7	11.8	9.8	18.6

* 출처: 여성가족부(2022.4). 2021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6.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에서 2022년 8월 29일 인출.

다.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2021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상담을 제공한 건수가 92,7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소이용 및 자활 지원인원이 각각 922명과 8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실적도 17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지원 현황에서 나타난 지원 내용별 지원 실적의 분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매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45.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황(2015~2021년)

(단위 : 개, 명,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담소	26	28	29	29	30	30	30
지원시설	40	39	39	40	40	40	40
자활지원센터	10	11	12	12	12	12	12
상담건수	65,607	64,198	60,322	65,241	61,554	88,672	92,742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입소이용인원	1,284	1,217	1,154	1,173	1,274	1,011	922
자활지원인원	829	910	929	883	920	922	832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	-	-	-	-	17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2 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2 에서 2022년 10월 5일 인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내부자료(2022.10.05.). 아동청소년지원센터 현황.
* 원자료: 여성가족부 내부행정자료(시설 및 상담소가 위치한 17개 광역지자체의 보고를 통해 취득).

* 주: 1) 누적 개념이 아니라 각 년도의 1년간 실적을 나타냄.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는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숙식, 의료, 법률지원, 직업훈련지원, 진학지원과 함께 심리치료 및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시설"이 있으며 그 중 "청소년 지원시설"은 전국 14개소 운영 중.
3)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생활시설로 분류되며, 이용시설인 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21년부터 개설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②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범죄피해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형사절차상 독자적인 권리실현이 불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최소한의 법률적 부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법무연수원, 2021: 202). 이러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19,201건, 해바라기 센터가 5,723건, 상담소 등에서 38건과 검사가 1,140건 등 총 26,102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99.6%에 해당하는 26,007건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었다. 접수 건수 대비 국선변호사 지정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이후 99%를 초과하고 있어 신청된 건에 대해 거의 모두 국선변호사가 지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중요한 인권보호 제도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Ⅲ-8-46.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2014~2020년)

(단위 : 건수(%))

연도	합계		신청기관										
			경찰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검사	
	접수	지정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지정
2014	14,310	13,363 (93.4)	6,334	5,959	375	7,149	6,578	571	223	222	1	604	604

연도	합계		신청기관										
			경찰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검사	
	접수	지정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지정
2015	16,138	16,106 (99.8)	8,807	8,778	29	6,481	6,479	2	64	63	1	786	786
2016	19,394	19,336 (99.7)	12,170	12,116	54	6,298	6,295	3	37	37	-	889	888
2017	20,048	19,903 (99.2)	12,220	12,077	143	6,872	6,871	1	62	61	1	894	894
2018	22,859	22,755 (99.5)	14,940	14,866	74	7,011	6,981	30	52	52	-	856	856
2019	25,685	25,459 (99.1)	17,702	17,499	203	7,024	7,002	22	39	38	1	920	920
2020	26,102	26,007 (99.6)	19,201	19,107	93	5,723	5,722	1	38	38	0	1,140	1,140

* 출처: 법무연수원(2020). 2019 범죄백서. p.199.
법무연수원(2021). 2020 범죄백서. p.203..
법무연수원(2022). 2021 범죄백서. p.203.
* 원자료: 법무부 인권국 여성 · 아동인권과 통계. 각 연도.

* 주: 1) '12. 3. 16.「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입.
2) '13. 6. 1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지원 대상이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
3) '14. 9. 2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
4) '20. 11. 2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 선정, 지원 가능.

5) 소결

특별보호조치 영역에서의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소년 사법, 경제적 착취 및 성적 착취를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였다. 우선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동 · 청소년 난민 신청자 수 및 인정자 수는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간 이동이 대부분 제한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탈 후 입국한 19세 이하의 아동 · 청소년은 5,108명으로 전체 탈북 입국자 33,804명 중 15.1% 수준이었다.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11월 1일 기준 총275,990명으로 이 가운데 귀화 및 외국 국적을 지닌 자녀는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의 5.2%였고, 국내 출생 자녀는 9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 중 미취학아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보다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우선 2021년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가 111.430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 가운데 69.6%를 차지하였으며, 중학교는 21.2%, 고등학교는 9.1%였으며, 점차 상급학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간 동안 0.55%에서 3.0%로 증가하였다. 탈북학생의 경우에도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 및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탈북학생의 경우 전체 학업중단율보다는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하여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 정도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비해 학교에 다니는 경우 차별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학교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경우와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 차별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외국인이라는 인식이 차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주체는 모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가까이서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친구로부터의 차별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다문화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경험도 11.3%에서 23.7%로 급증하고 있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시설과 관련하여 학교 내 방과후 교실과 공부방·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는 90%를 상회하였으며, 청소년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인지율은 80% 이상,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인지하고 있고,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 사법과 관련하여 우선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의 신수용인원 규모 및 1일 평균 수용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년원의 수용기간별 인원의 경우 1개월 미만 처분을 받아 수용된 경우는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나, 3개월 미만 처분을 받은

경우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인원은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의 9.9%에서 2020년에는 14.1%로 증가한 반면, 16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79.7%에서 67.4%로 감소함에 따라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징역형을 받은 소년수형자의 형기별 인원의 경우 2015년 이래 10년 미만의 장기 복역자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과 관련하여 서울과 부산 소재 시설의 평균 수용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어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소년원의 경우에도 2015년 이후 2020년까지의 평균 수용률을 살펴보면, 전주와 청주의 소년원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회복적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년보호관찰인원 및 전체보호관찰인원 대비 소년보호관찰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2019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규모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 집행 정도는 2017년의 6,139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유예 결정 가운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0년에 전년 수준의 절반 정도인 8.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감소 추세가 발생된 범죄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검찰의 소년사건에 대한 대응 기조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호관찰소의 선도위탁의 경우도 2017년 이후 선도대상자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단계에서의 선도프로그램으로 사랑이 교실, 치유 선도프로그램, 경찰 선도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는 바, 전체 참가인원은 2019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당해연도 소년범죄 검거인원 대비 참가율은 37% 전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착취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15~19세 집단의 경우 근로일 수 및 근로시간 수 모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임금 수준은 2015년 이후 두 집단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15~19세 집단에서 전년에 비해 약 27만원 정도가 감소하였고, 20~24세 집단에서는 전년에 비해 1만 6천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의 2020년의 감소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위축됨에 따른 근로시간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력과 관련하여 우선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은 2020년 36.6%로 OECD 주요 국가 중 다섯 번째 수준이었으나, 2015년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에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정도는 6.7% 수준이었으며, 이는 2021년보다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2.9%,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3%,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2% 수준이었으며, 부당한 해고, 불결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 폭언 등이 인격모독,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은 경험도 10% 내외 수준이어서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증가함에 따라 아르바이트 시의 부당경험 비율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의 부당경험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년 동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시 겪은 부당경험의 감소가 실제 노동현장에서의 관행이 변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참여 기회의 감소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이며,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별로 나아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2%로 2018년에 비해 14.1%p나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절반 정도는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관련하여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은 2021년 9.3% 수준이었으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유형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 283,916건의 성폭력 피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 가운데 심리·정서적 지원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지원

건수의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피해 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전체 상담의 26.4%로 전체 상담 대상자 4명 가운데 1명은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입소 현황의 경우 2021년에 13~18세 이하가 전체 입소자의 38.7%인 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9~24세 이하가 28.5%인 73명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3세~24세 연령대의 입소자 비율이 67.2%로 전체 입소자의 2/3에 해당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건수 대비 지정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이후 99%를 초과하고 있어 신청된 건에 대해 거의 모두 국선변호사가 지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중요한 인권보호 제도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제4장 2022 협약 심층모니터링 : 장애아동·청소년 교육권 - 통합교육 현황과 과제

1. 조사개요
2. 통합교육의 의미와 과제
3. 조사결과
4. 소결 및 제언

4

2022 협약 심층모니터링 : 장애아동·청소년 교육권 – 통합교육 현황과 과제[55]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방법

2021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에서 장애아동 영역의 협약이행 과제로 통합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경주를 제시한 바 있다(김영지 외, 2021). 본 연구의 Ⅱ장에서 국제협약 상 장애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을 살펴보았듯이 장애아동·청소년 인권 이슈는 매우 방대하나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 심의와 이행계획 수립,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 정책환경을 고려하고, 광범위한 자문과정을 통해 장애아동·청소년 교육권의 세부주제로 장애아동 사회통합의 핵심 과제인 '통합교육'을 심층모니터링 주제로 선정하였다.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70% 이상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고 또 약 17%는 전일제 통합학급에 배치되고 있는 실정에서(〈표 Ⅲ-6-4〉) 2022년 현재 통합교육 현황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합교육 현황과 과제를 집중 조사하는 것이다. 이 조사를 위해 설정한 조사내용은 첫째, 학생과 교사들의 장애와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사들이 생각하는 통합교육의 어려운 점과 지원 요구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다운 학교'[56]의 운영 성과는 어떠한가 이다.

55) 이 장은 이은주 교수(청주교육대학교)가 집필하였다.

56) 교육부에서 '정다운 학교' 운영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교육청에 따라 '통합교육선도학교' '통합교육중점학교'등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정다운 학교'로 통칭하였다.

위의 조사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는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수집되었다. 첫째는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학생 대상 설문지에 '장애 및 통합교육'과 관련된 6개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6문항의 내용은 장애이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경험 및 도움 정도 2문항과 장애와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4문항을 포함하였다. 둘째, 교사 대상의 장애 및 통합교육에 관한 설문지를 별도로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셋째, '정다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초·중·고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11명을 3~4명의 그룹으로 나누어 FGI를 실시하였다. 교사대상 설문조사와 '정다운 학교' 재직 교사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문 조사[57]

교사대상 설문지는 '통합교육의 현황과 과제' 조사 목적에 따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발되었다. 개발된 설문지는 배경정보, 통합교육 현황, 통합교육의 어려운 점, 통합교육의 지원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배경정보는 인구학적 정보를 포함하여 교직경력, 통합학급 담당 경력, 교원자격증, 직책 등과 '정다운 학교' 재직 여부를 포함하였다. 둘째, 통합교육 현황과 관련된 문항은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특수교사, 일반교사의 공동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통합교육의 어려운 점은 장애와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교사 관계 역량, 통합교육 지원문제,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 역량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통합교육의 과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합교육 환경조성, 교사역량 지원, 수업 및 학교 생활 지원과 관련된 질문이 있다. 설문지의 자세한 질문 내용은 아래 〈표 Ⅳ-1-1〉과 같다. 설문의 분석은 기술통계와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Ⅳ-1-1. 설문조사 질문 내용

범주	내용	질문
배경	인구학적 배경	• 성, 연령
	학교 관련 배경	• 재직 중인 학교 급, 교사자격 유형 및 직책, 교직 근무경력
	통합교육과	• 통합학급 담임 경력, 통합유형

57) 설문조사 결과 전체 통계표는 「202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22-일반01-02)」 부록 1.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본 Ⅳ장에서 〈별권 부록표〉를 참고하라는 안내에서 '별권'은 기초분석보고서를 말한다.

범주	내용	질문
	정다운 학교 배경	• 정다운 학교 재직여부, 정다운 학교에서 협력수업 참여 여부 • 협력수업 경력, 특수학급 근무 기간
통합교육 현황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 교육권 보장, 학업성취, 사회성향상, 사회적 통합에 통합교육의 기여 • 장애 및 통합교육 실행에 대한 인식
	연수 경험	• 연수 유형, 연수 시간, 연수 효과, 연수가 도움 되지 않은 이유
	특수-일반교사 협업관련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협업이 어려운 영역 • 효과적인 협력 경험
통합교육 어려운 점	통합교육 인식	• 장애에 대한 인식, 장애·비장애학생 관계, 관리자의 무관심
	교사 관계 역량	• 교사의 전문성 부족, 교사간의 소통 문제, 교사간의 불명확한 업무 범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
	통합교육 지원	• 통합학급 학생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인력부족, 편의 시설 문제
	학생관련 등	• 특수교육대상자의 부족한 학습 능력, 특수교육대상자의 의사소통 문제, 기타
통합교육 지원 과제	통합교육 환경조성	• 통합교육 인식 전환, 입주위주의 풍토, 장애학생 인권보호 환경 • 학급 당 학생수 조정, 학부모 대상 연수
	교사역량 지원	• 교사 통합교육역량 지원 연수 강화, 매뉴얼, 우수사례 보급 • 수업나눔, 학습공동체, 수석교사 등을 통한 수업 지원 • 교수 학습자료 개발 지원
	수업 및 학교생활 지원	• 통합교육 지원 기구 역할, 통합교육 지원인력 증원, 중도중복학생 지원,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시설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기타	기타	• 통합교육 발전을 위한 자유의견

* 주 : '장애에 대한 인식' 문항의 경우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문항에 동일한 문항(4문항)을 포함시킴(2022년 한시 특별주제 문항).

교사대상의 설문 참여자는 783명이었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65.7%, 중학교 교사가 23.4%, 고등학교 교사가 10.3%였고, 특수교사가 39.5%, 일반교사가 28.5%, 관리자가 32.1% 포함되어 있었다. 일반교사 중 통합학급 담임 경력이 없는 교사가 11.8%였고 5년 이상 담임경력이 있는 교사도 23.0%나 되었다. 전일제 통합학급 담임 경력이 있는 교사도 101명(45.3%)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전체 설문참여자 중 교육부 정책 과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다운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151명(19.3%)이었고, 그 중에서 협력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 62명도 설문에 참여하였다. 특수교사 309명 중 특수학급에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29.8%(92명), 15년 이상이 22.4%(69명)이었다(〈표 Ⅳ-1-2〉 참조).

표 Ⅳ-1-2. 설문대상에 관한 정보

(단위 : %(명))

구 분		비율(사례수)	전체(N)
전 체			100.0(783)
성별	남자	32.1(251)	100.0(783)
	여자	67.9(532)	
연령	20대	11.2(88)	100.0(783)
	30대	26.6(208)	
	40대	24.1(189)	
	50대	32.8(257)	
	60대 이상	5.2(41)	
학교급	초등학교	63.5(497)	100.0(783)
	중학교	23.4(183)	
	고등학교	13.2(103)	
직책	특수교사	39.5(309)	100.0(783)
	일반교사	28.5(223)	
	관리자	32.1(251)	
교직근무 경력	5년 미만	14.7(115)	100.0(783)
	5~10년 미만	18.0(141)	
	10~15년 미만	12.1(95)	
	15~20년 미만	10.1(79)	
	20년 이상	45.1(353)	
통합학급 담임경력	없음	11.8(56)	100.0(474)
	1년 미만	9.3(44)	
	1~3년 미만	31.4(149)	
	3~5년 미만	24.5(116)	
	5년 이상	23.0(109)	
담당 학생 배치 형태	특수학급	54.7(122)	100.0(223)
	일반학급	27.4(61)	
	모두	17.9(40)	
정다운 학교 운영 여부	운영	19.3(151)	100.0(783)
	미운영	80.7(632)	
협력수업 참여 여부	참여	65.3(62)	100.0(95)
	미참여	34.7(33)	
협력수업 참여 경력	경험 없음	426(89.9)	100.0(474)
	1년 미만	31(6.5)	
	1년 이상~2년 미만	10(2.1)	
	2년 이상	7(1.4)	
특수학급 근무기간	5년 미만	29.8(92)	100.0(309)
	5~10년 미만	29.1(90)	
	10~15년 미만	18.8(58)	
	15년 이상	22.4(69)	

(2) FGI(Focus Group Interview)

FGI 조사는 '정다운 학교'에 근무하면서 실제 협력교수에 참여하고 있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FGI는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공동협력 및 협력수업을 지원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이며 현재 '정다운 학교'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통합교육의 현황도 좀 더 심도있게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더 나아가서 통합교육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FGI는 질문지를 가지고 구조화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FGI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다운 학교' 운영 유형 및 신청 배경 둘째, '정다운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 셋째,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형태, 협력수업 운영 여부, 넷째, '정다운 학교' 운영 효과 다섯째, 통합교육 일반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표 IV-1-3〉에 자세한 질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FGI는 전국에서 교사들이 참여했으므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특수교사만으로 이루어진 면담도 있었고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참여한 면담도 있었다. 대략 한 회차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녹화하고 전사하였다. FGI의 분석은 전사를 읽어보면서 주제를 도출하고 주제에 따라 면담자료가 배치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루어졌다.

표 Ⅳ-1-3. FGI 조사 질문 내용

범주	내용	질문
배경	1) 교사직책 및 통합교육 형태	• 직책 : 일반교사 / 특수교사 • 학교유형 1 : 정다운 학교 / 더공감교실 / 통합교육 중점학교 등 • 학교유형 2 : 연구학교 여부
	2) 정다운 학교 신청 배경	• 정다운 학교 신청 배경, 이유 • 정다운 학교 신청 주체(관리자, 특수교사, 일반교사 등)
운영 전반	1) 운영 담당자 (주체)	• 정다운 학교 운영 담당자(주체)는 누구인가?
	2) 내용	• 정다운 학교 주제/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선정하였는가? • 정다운 학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3) 운영 전반	• 정다운 학교 사업예산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가? • 정다운 학교의 어려움과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범주	내용	질문
협력	1) 협력 내용 및 역할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2) 협력을 위한 개선안	• 협력이 어려운 영역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영역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교사 간의 파트너십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효과성	1) 효과성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 정도 및 사회성 향상 정도 • 통합학급 운영 역량에 도움이 되는가?
	2) 인식변화	• 통합교육에 대한 학교교직원의 변화 정도(인식, 지원 등) • 장애 및 비장애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및 반응
어려운 점과 개선 사항	1) 통합교육의 어려움	• 통합교육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 • 정다운 학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 개선사항	• 정다운 학교 운영에 있어 현재 가장 필요한 자원과 지원은? • 정다운 학교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FGI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표 Ⅳ-1-4〉). 특수교사가 7명, 일반교사가 5명 참여하였고 학교 급은 초 6명, 중 2명, 고 3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지역은 서울이 가장 많았고, 충북, 경기, 경남, 부산, 대구, 강원을 포함하고 있었다.

표 Ⅳ-1-4. FGI 참여자 인적 특성

회차	참석자	연령	성별	지역	소속*	교사자격	비고
1회차 (2022.08.05.)	교사 A	만 39세	남	충북	고등학교	특수교사	운영학교
	교사 B	만 38세	남	경기	고등학교	특수교사	운영학교
2회차 (2022.08.12.)	교사 C	만 37세	여	경남	초등학교	특수교사	연구학교
	교사 D	만 51세	여	서울	초등학교	특수교사	운영학교
	교사 E	만 34세	남	대구	초등학교	특수교사	연구학교
3회차 (2022.08.22)	교사 F	만 41세	여	강원	초등학교	일반교사	연구학교
	교사 G	만 36세	남	강원	초등학교	일반교사	연구학교
	교사 H	만 38세	남	부산	초등학교	일반교사	연구학교
4회차 (2022.09.05.)	교사 I	만 51세	여	서울	고등학교	특수교사	운영학교
	교사 J	만 39세	여	서울	중학교	특수교사	운영학교
	교사 K	만 37세	여	서울	중학교	일반교사	운영학교

* 주: 면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급만 표시

2. 통합교육의 의미와 과제

1) 통합교육의 의미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통합교육에 관한 정의 및 실행 방법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특수교육법 제 2조 ⑥항에서는 통합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21조 ②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③항에서도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명시한 통합교육의 정의와 실행 방법을 통해 통합교육의 의미를 해석하면 첫째,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했으며 둘째,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 받을 때 필요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셋째, 무엇보다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책무성을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1) 장애학생 교육기회의 확대

통합교육은 일차적으로는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의 입학을 보장한다는 것은 장애학생도 근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당연히 장애학생의 취학률을 증가시켰다. 1994년 이후 통합교육이 시행되면서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중 일반학교 재학생의 증가 비율이 특수학교 재학생의 증가 비율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통계를살펴보면 특수학급의 수는 1998년[58] 3,728개에서 2007년 5,753개가 되고 2021년 현재 12,042에 달한다. 1998년 특수학급 학생수는 25,031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54,266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에 반해 특수학교 학생수는 1998년 23,487명에서 2021년 27,027명으로 작은 폭의 상승만 기록하고 있다(교육부, 1998; 교육부, 2021a). 물론 2021년에는

58) 1998년부터 교육부는 특수교육 관련 통계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전일제 통합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59]도 16,6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실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1998년에 비해서 약 2.8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1998년 교육부의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는 일반학급에 완전히 통합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이 당시는 완전 통합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확대가 장애학생의 취학률 증가와 일대일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장애학생의 취학률의 증가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의 개별화된 요구의 수용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 다닌다는 의미는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전부 혹은 일부 참여한다는 것이다. 일반학교의 교육과정 안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보장하려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건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등 물리적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와 관련된 개별화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광범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급과 수업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가 통합교육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다각도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들이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의 질을 조금씩 높이고 있다. 국가는 통합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더하여 일반교육과정이나 학교 성적 관리 지침 등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명시함으로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분리된 특수한 영역이 아니라 보편 교육시스템 안으로 포함시키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예를 들어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부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에서 충실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특수 학급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가이드도 일반교육과정 총론에 포함시키고 있다(교육과정평가원,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포함시켰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교육과정평가원, 2015).

59) 일반학교에 통합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급에 일정 시간을 머무르는 학생과 특수학급으로 가지 않고 일반학교에서만 있는 학생으로 통계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통계상 특수학급은 특수학급에 일정시간 참여하는 학생이고 일반학급으로 표시되는 학생은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다.

2014년 「교육부 훈령 제 29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조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명시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평가 과정 및 결과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학생이나 뇌병변장애학생에게는 평가 시간을 연장해 주어야 하며 청각장애학생은 듣기 평가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대안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하는 것 등이 이 훈령에 포함된 내용이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행정규칙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 훈령이며 이는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평가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통합교육을 통해 일반교육과정 안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포함시키려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져 왔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일반학급에 배치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지만 일반학급에 존재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가 가시화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의 질을 제고시킨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외에도 개별화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더 잘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끈 측면이 있다.

McLeskey et al.(2014)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첫째, 학교는 다양한 요구의 학생들에게 더 잘 부합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둘째, 교사는 효과적인 지원 제공을 위해 협력하고 셋째, 학생은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교육받고 넷째, 학생들은 함께 생활하며 교육받고 다섯째, 학생들은 모든 학급에서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대접 받으며, 마지막으로 학생은 개별적인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 받으며 가치 있는 교육적 성취를 이룬다라고 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통합교육은 다양성에 대한 수용을 높이기 때문에 비단 특수교육대상학생뿐 아니라 개별화된 요구가 있는 학생 모두에게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통합교육의 과제

통합교육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 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었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는 학교 생활과 수업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러므로 통합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그리고 통합학급의 수업에 얼마나 의미 있게 참여하는가이다.

결국 이것은 교사들이 학급생활과 수업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얼마나 잘 통합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교사들의 통합학급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은 많은 연구에서 다루고 있다(김봉세, 2019; 김은영, 2017; 박준태, 민천식, 김용욱, 이태형, 2020; 서선진, 박경옥, 2019).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시도가 현재 통합교육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통합교육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첫째,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업무환경 및 교육환경의 문제 둘째, 교사 개인의 준비나 역량 부족의 문제 셋째, 학생 및 학부모의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련된 문제 등을 포괄하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통합교육의 중요한 과제다.

우선 업무환경과 교육환경의 문제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의 부족(김혜리, 백유미, 2017), 장애의 요구를 고려한 질 높은 교수-학습자료의 부족(강옥려, 손일지, 2021)과 비특수교육대상학생 중심의 학교 분위기와 학급 환경(김은경, 이숙정, 2018; 이현주, 박은혜, 2018; 정효철, 전혜인, 2021) 등을 의미한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3차 개정 시 통합교육이 명시된지 거의 3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통합교육 인프라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통합에 필요한 특수교사 일반교사의 공동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운 과다한 업무량과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불분명한 업무 범위도(강윤아, 신현기, 2019; 정운선, 2017; 황현주, 김효정, 2022) 지속적으로 소환되는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 개인의 역량과 관련된 문제도 통합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중요하게 성찰해야 하는 내용이다. 교사들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학습지도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김봉세, 2019; 박미혜, 권순우, 2019; 박준태, 민천식, 김용욱, 이태형, 2020; 오연희, 김라경, 2018),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수업에 대한 지식 및 전략 부재(김은경, 이숙정, 2018; 정동영, 박윤아, 2020; 정효철, 전혜인, 2021), 수업 준비 시간 및 에너지의 부족(김순희, 이은주, 2020; 김혜리, 백유미, 2017; 황유정, 이동성, 2021) 등이라고 밝혀졌다.

특히 일반교사들은 장애 특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은데, 장애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고 교사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역량을 습득하고 교사가 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장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장애의 특성에 적합한 지도 역량을 갖추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김경열(2020)의 연구에서는 장애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한 일반교사의 사례가 등장하며 장애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 통합학급 일반교사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은 일반교사들이 특수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것이다. 통합교육 대상자 중 약 70% 이상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양쪽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에서 어떤 내용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통합학급에서의 수업에 의미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급에서 참여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정효철, 전혜인, 2021). 서선진, 박경옥(2019)의 연구에서는 통합학급 교사가 특수학급에서 배우는 내용을 연계하여 통합학급의 수업과 평가에 활용했을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참여가 의미 있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와 경험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세 번째 과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장애와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통합학급에서 비장애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급으로의 일정시간 분리, 특별한 행동 등으로 학급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박미혜, 권순우, 2019). 아마도 현재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왔다갔다 하는 통합교육 모델이 가지고 온 가장 큰 문제이지만 통합교육의 다른 대안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통합학급에서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학급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대상자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소속감과 관련된 문제보다 약간 더 심각한 문제는 통합학급에서 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때 비장애학생이나 학부모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로 인한 요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원이 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박준태 외, 2020) 장애를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3) ‘정다운 학교’ 운영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통합교육을 실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는 2019년부터 ‘정다운 학교’라는 정책연구학교를 추진하였다(교육부, 2020). ‘정다운 학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담겨있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에 근거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정다운 학교’는 일반학교의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조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적응력 신장 및 교육권 강화를 목적으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15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전국적으로 10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17개 유치원, 54개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1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다운 학교’는 학교급이나 지역이나 학교의 통합교육에 대한 정서적 수용도, 통합교육을 위한 문화적 토대 등 다양한 학교 맥락에 따라 운영 내용이 다르며, 통합학급 협력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도 있고 통합 동아리나 통합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도 있다. 지역교육청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수업 모델을 개발하여 실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는 등 예산부터 인력까지 일정정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다운 학교’ 운영 결과를 분석한 연구도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연구는 ‘정다운 학교’의 협력수업 경험 (강승모 외, 2021; 양옥수, 2018; 전연주, 강영심, 옥혜숙, 2022)과 광범위한 통합교육경험을 다룬(이대식, 김광백, 정가희, 2022) 것이다. 연구들은 ‘정다운 학교’에서의 통합교육 경험은 교사들의 통합교육 인식이나 실행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으며 동시에 통합교육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정다운 학교’가 통합교육 내실화를 높이기 위해 협력수업을 실행하는 학교에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배치해 준 것이 큰 의미가 있었음을 연구들이 밝혀내고 있다.

통합교육 내실화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매우 절박한 문제다(이대식, 김광백, 정가희, 2022).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데 수업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없거나 비장애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외된다면 통합교육의 근본적 의미부터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들이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어느 정도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지를 탐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조사결과

1)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는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학생과 교사 공통으로 3문항, 학생과 교사의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1문항씩 더 질문하였다. 그리고 교사 설문지는 통합교육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이나 학업 성취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관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설문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학생과 교사 모두 장애와 통합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의 응답이 약간 차이가 있었다.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부분의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이해교육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교사는 경험이 있었지만 학생의 32.7%는 참여한 적이 없었다.

(1) 학생들의 인식

〈표 Ⅳ-3-1〉에 학생들의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학생응답자의 97.5%는 '누구나 장애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데 약간이라도 동의하고 있으며 약 2.5%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약 2.5%의 응답자들은 장애가 보편적 문제라기보다는 특정한 개인의 문제라고 인식함을 유추할 수 있다.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데 통합교육과 관련된 3개의 문항 중에 '장애학생과 어울리는 것이 편안함'의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다.

표 Ⅳ-3-1. 학생의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동의 하는 편이다 ㉰	매우 동의 한다 ㉱	㉮+㉯	㉰+㉱	전체 (N)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3.62 (0.57)	0.9	1.6	32.1	65.4	2.5	97.5	100.0 (8,731)
장애학생이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3.44 (0.68)	1.7	5.7	39.5	53.0	7.4	92.5	100.0 (8,717)
장애·비장애학생 함께 수업듣고 활동할 수 있음	3.50 (0.66)	1.5	5.1	35.0	58.5	6.6	93.5	100.0 (8,716)
장애학생과 어울리는 것이 편안함	3.28 (0.77)	2.6	11.8	40.8	44.7	14.4	85.5	100.0 (8,716)

* 주: 〈별권 표 III-1-42〉부터 〈별권 표 III-1-45〉 참조

다음 〈표 Ⅳ-3-2〉는 장애학생의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장애학생 중 19.8%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에서 8.8%는 한 달에 1~2회 이상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일상적으로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학생들의 장애와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는 약간 괴리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Ⅳ-3-2. 장애학생의 차별경험에 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 (N)
장애학생	73 (80.2)	7 (7.7)	3 (3.3)	2 (2.2)	6 (6.6)	91 (100.0)

* 주: 설문지 배경문항 5번에서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을 응답한 값

(2) 교사들의 인식

〈표 Ⅳ-3-3〉는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정리한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은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도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 수업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가 상대적으로 낮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다른 문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표 Ⅳ-3-3. 교사의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 한다 ㉰	매우 동의 한다 ㉱	㉮+㉯	㉰+㉱	전체 (N)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3.79 (0.41)	0.0	0.1	21.1	78.8	0.1	99.9	100.0 (783)
장애학생이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3.63 (0.53)	0.0	2.4	31.8	65.8	2.4	97.6	100.0 (783)
장애·비장애학생 함께 수업듣고 활동할 수 있음	3.54 (0.62)	0.3	5.7	33.6	60.4	6.0	94.0	100.0 (783)
장애학생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함	3.58 (0.58)	0.0	4.6	33.2	62.2	4.6	95.4	100.0 (783)

* 주: 〈별권 부록표 1-45〉부터 〈별권 부록표 1-49〉 참조

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설문조사를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학업 성취, 사회성 향성, 사회적 통합에 대한 통합교육의 기여를 질문하였는데 흥미롭게도 〈표 IV-3-3〉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이다. 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 성취에 대한 통합교육의 기여에 대해서 14.0%(전혀 1.9%, 도움안되는 편 12.1%)가 통합교육이 효과가 미흡하다고 대답하였다.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한다는 거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적 성취에 대해서 회의하는 교사도 일부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Ⅳ-3-4〉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Ⅳ-3-4. 교사의 통합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N)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3.29 (0.63)	0.6	7.3	54.3	37.8	100.0 (78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 성취	3.15 (0.70)	**1.9**	**12.1**	54.5	31.4	100.0 (78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성 향상	3.35 (0.61)	0.3	6.4	51.9	41.5	100.0 (78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적 통합	3.27 (0.61)	0.4	7.9	56.2	35.5	100.0 (783)

* 주: 〈별권 부록표 1-1〉부터 〈별권 부록표 1-4〉까지 참조

(3) 장애이해교육 효과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장애이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참여 경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응답자의 93.6%는 장애이해교육이 도움이 된다(도움 안됨 6.3%)고 생각한 반면에 학생은 83.7%만 도움이 된다(도움 안됨 16.3%)고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장애이해교육의 참여와 도움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학생들의 장애와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것이다(〈표 IV-3-5〉, 〈표 IV-3-6〉).

표 Ⅳ-3-5. 장애이해교육 참여 경험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학생	67.3	32.7	100.0(8,747)
교사	96.2	3.8	100.0(783)

* 주: 학생 부분은 〈별권 표 Ⅲ-1-40〉, 교사 부분은 〈별권 부록표 1-22〉 참조

표 Ⅳ-3-6. 장애이해교육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도움이 되는 편이다 ㉰	매우 도움이 된다 ㉱	㉮+㉯	㉰+㉱	전체 (N)
학생	3.06 (0.74)	4.2	12.1	57.6	26.1	16.3	**83.7**	100.0 (5,831)
교사	3.18 (0.55)	0.6	5.7	68.2	25.4	6.3	**93.6**	100.0 (783)

* 주: 학생 부분은 〈별권 표 Ⅲ-1-41〉, 교사 부분은 〈별권 부록표 1-24〉 참조

2) 통합교육의 어려운 점과 지원 요구

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의 실행에서의 어려운 점과 지원요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통합교육의 어려운 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교사관계 및 역량, 통합교육 지원, 학생관련의 4개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통합교육 지원요구는 통합교육 환경조성, 교사역량 지원, 수업 및 학교생활 지원의 3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그 항목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며 지원요구가 높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통합교육 인식, 문화와 관련된 요인 보다는 수업, 생활지도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부응하는 것이고, 모든 영역에서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1) 통합교육의 어려운 점

〈표 IV-3-7〉를 보면 통합교육 운영 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문항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학습격차’(81.5%)이고, 그 다음으로 ‘통합교육을 진행하기에 과다한 학생수’(68.2%)이다. 상대적으로 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교사관계 및 역량 영역인데 특히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와의 소통 및 협업 기회 부족’과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71.5%, 72.2%이다.

표 Ⅳ-3-7. 통합교육의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통합교육 인식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장애에 대한 인식의 문제	2.41 (0.83)	14.8	36.4	41.6	7.2	100.0 (783)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과의 관계 (괴리감, 소외, 따돌림)	2.46 (0.85)	14.0	35.6	40.5	9.8	100.0 (783)
	관리자의 무관심 또는 비협조적 태도	1.68 (0.76)	47.6	39.0	11.0	2.4	100.0 (783)
	학부모의 갈등 및 민원	2.18 (0.89)	24.0	41.8	26.2	8.0	100.0 (783)
교사 관계 및 역량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전문성 부족	2.05 (0.78)	**25.7**	**46.5**	25.2	2.7	100.0 (783)
	통합교사와 특수교사와 소통 및 협업 기회 부족	2.04 (0.85)	**29.4**	**42.1**	23.9	4.6	100.0 (783)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불명확한 업무 범위	1.97 (0.85)	32.3	43.0	19.5	5.1	100.0 (783)
	특수교육대상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평가 학습 방법 지원	2.41 (0.90)	17.6	33.8	38.2	10.3	100.0 (783)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장애특성, 도전행동 등)	2.31 (0.85)	18.8	38.1	36.3	6.9	100.0 (783)
통합교육 지원	통합교육을 진행하기에는 과다한 학생수/통합학급 정원 감축	2.86 (0.93)	9.6	22.2	**40.9**	**27.3**	100.0 (783)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NEIS, 수업시수 등 장애학생 고려 어려움)	2.71 (0.89)	10.6	26.7	44.1	18.6	100.0 (783)
	통합교육에 필요한 인력부족 (통합교육 지원교사 등)	2.66 (0.92)	11.6	30.4	38.4	19.5	100.0 (783)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의료 및 편의 시설 부족	2.41 (0.89)	15.1	41.5	30.8	12.6	100.0 (783)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학생 관련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간의 성적 및 학습능력 격차	3.09 (0.80)	4.5	14.0	**49.3**	**32.2**	100.0 (783)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의사소통	2.79 (0.78)	6.0	25.2	52.5	16.3	100.0 (783)
기타	기타	3.53 (0.64)	1.7	2.6	37.1	58.6	100.0 (116)

* 주: 〈별권 부록표 1-6〉부터 〈별권 부록표 1-21〉까지 참조

〈표 Ⅳ-3-8〉를 보면 통합교육의 어려운 점과 관련하여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교사 자격유형과 직책에 따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통합교육에 필요한 인력 부족'과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학습능력 격차'는 모든 응답자가 어렵다고 느껴서 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문항들을 자세히 보면 거의 모든 문항에 대하여 관리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으며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는 문항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합교사와 특수교사의 소통 및 협업 기회 부족'에 대하여 특수교사는 평균 2.28인 반면에 일반교사의 평균은 1.75이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불명확한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특수교사의 평균은 2.21인데 일반교사는 1.77정도이다. 즉 이 두 영역에서는 특수교사가 일반교사에 비해 더 어렵다고 느낀다.

일반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비장애학생 간의 학습능력 격차(평균=3.14)' 로 전체 일반교사 응답자의 81.6%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교사 직책별로 통합교육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와 책무가 다르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표 Ⅳ-3-8. 특수교사, 일반교사, 관리자의 통합교육 어려운 점에 대한 인식 차이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①	특수교사	2.57(0.82)	10.0	34.0	44.7	11.3	100.0(309)	23.163**
	일반교사	2.30(0.81)	18.4	36.8	41.3	3.6	100.0(223)	
	관리자	2.31(0.82)	17.5	39.0	38.2	5.2	100.0(251)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특수교사	2.59(0.82)	10.0	32.4	46.0	11.7	100.0(309)	
②	일반교사	2.35(0.94)	21.5	32.7	35.0	10.8	100.0(223)	25.242***
	관리자	2.40(0.79)	12.4	42.2	38.6	6.8	100.0(251)	
	특수교사	1.83(0.81)	39.2	43.0	13.9	3.9	100.0(309)	
③	일반교사	1.64(0.75)	50.2	37.7	9.9	2.2	100.0(223)	20.584**
	관리자	1.54(0.68)	55.8	35.1	8.4	0.8	100.0(251)	
	특수교사	2.23(0.88)	21.7	41.7	28.5	8.1	100.0(309)	
④	일반교사	2.03(0.92)	32.3	41.3	17.9	8.5	100.0(223)	17.676**
	관리자	2.26(0.86)	19.5	42.2	30.7	7.6	100.0(251)	
	특수교사	2.19(0.79)	18.8	47.9	28.8	4.5	100.0(309)	
⑤	일반교사	1.89(0.79)	35.0	43.0	19.7	2.2	100.0(223)	25.733***
	관리자	2.01(0.74)	25.9	47.8	25.5	0.8	100.0(251)	
	특수교사	**2.28(0.85)**	19.1	41.1	33.0	6.8	100.0(309)	
⑥	**일반교사**	**1.75(0.80)**	44.8	37.7	14.8	2.7	100.0(223)	57.284***
	관리자	2.00(0.80)	28.3	47.4	20.7	3.6	100.0(251)	
	특수교사	**2.21(0.86)**	20.1	46.9	24.6	8.4	100.0(309)	
⑦	**일반교사**	**1.77(0.82)**	43.9	38.6	13.9	3.6	100.0(223)	46.700***
	관리자	1.86(0.80)	37.1	42.2	18.3	2.4	100.0(251)	
	특수교사	2.45(0.86)	13.3	39.5	36.2	11.0	100.0(309)	
⑧	일반교사	2.38(0.96)	23.3	26.0	39.9	10.8	100.0(223)	15.421*
	관리자	2.39(0.89)	17.9	33.9	39.0	9.2	100.0(251)	
	특수교사	2.47(0.83)	12.0	39.2	38.8	10.0	100.0(309)	
⑨	일반교사	2.22(0.90)	26.5	30.0	38.1	5.4	100.0(223)	30.806***
	관리자	2.20(0.81)	20.3	43.8	31.5	4.4	100.0(251)	
	특수교사	3.01(0.87)	6.5	17.8	44.0	31.7	100.0(309)	
⑩	일반교사	2.83(0.96)	9.9	26.0	35.4	28.7	100.0(223)	19.881**
	관리자	2.70(0.94)	13.1	24.3	41.8	20.7	100.0(251)	
	특수교사	2.88(0.88)	6.8	24.6	42.1	26.5	100.0(309)	
⑪	일반교사	2.65(0.93)	12.1	29.6	39.0	19.3	100.0(223)	37.457***
	관리자	2.54(0.84)	13.9	26.7	51.0	8.4	100.0(251)	
	특수교사	2.66(0.95)	11.3	33.7	33.0	22.0	100.0(309)	
⑫	일반교사	2.64(0.92)	13.0	27.4	42.2	17.5	100.0(223)	8.006
	관리자	2.68(0.90)	10.8	29.1	41.8	18.3	100.0(251)	
	특수교사	2.31(0.92)	17.8	47.2	21.0	13.9	100.0(309)	
⑬	일반교사	2.43(0.90)	14.8	39.9	32.3	13.0	100.0(223)	27.759***
	관리자	2.51(0.84)	12.0	35.9	41.4	10.8	100.0(251)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⑭	특수교사	3.07(0.78)	3.9	15.5	50.5	30.1	100.0(309)	7.189
	일반교사	**3.14(0.84)**	5.4	13.0	**43.5**	**38.1**	100.0(223)	
	관리자	3.08(0.77)	4.4	13.1	53.0	29.5	100.0(251)	
⑮	특수교사	2.84(0.77)	4.5	25.6	51.5	18.4	100.0(309)	18.709**
	일반교사	2.79(0.87)	9.9	21.1	49.3	19.7	100.0(223)	
	관리자	2.74(0.71)	4.4	28.3	56.6	10.8	100.0(251)	

* 주: 1) p<.05, **p<.01, ***p<.001
2) 〈별권 부록표 1-6〉부터 〈별권 부록표 1-21〉 참조
3) ①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장애에 대한 인식 문제 ② 비장애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 간의 관계, 괴리감 ③관리자의 무관심 또는 비협조적 태도 ④학부모의 갈등 및 민원 ⑤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전문성 부족 ⑥통합교사와 특수교사와 소통 및 협업 기회 부족 ⑦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불명확한 업무 범위 ⑧특수교육대상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평가 학습 방법 지원 ⑨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 ⑩통합교육을 진행하기에는 과다한 학생수 ⑪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⑫통합교육에 필요한 인력부족 ⑬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의료 및 편의 시설 부족 ⑭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간의 성적 및 학습능력 격차 ⑮장애학생과 의사소통

(2) 통합교육 지원 요구

〈표 Ⅳ-3-9〉은 통합교육 지원 요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통합교육 환경 조성 영역에 대하여 약간 더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통합학급 학생 수의 소규모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8%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편적 인권 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환경 구축'에 대해서는 94.5%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95.4%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표 Ⅳ-3-9. 통합교육 지원 요구

(단위: %(명))

문항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통합교육 환경 조성	장애와 통합교육에 대한 전국민 인식 전환	3.32 (0.60)	0.8	4.9	56.1	38.3	100.0 (783)
	성적과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 변화	3.14 (0.79)	3.7	13.9	47.0	35.4	100.0 (783)
	보편적 인권 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환경 구축	3.35 (0.60)	0.6	4.9	**53.4**	**41.1**	100.0 (783)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통합학급 학생 수의 소규모화	3.40 (0.67)	1.0	7.2	**42.5**	**49.3**	100.0 (783)
	학부모 대상 통합교육 관련 연수 및 교육	3.29 (0.60)	0.3	6.9	56.6	36.3	100.0 (783)
교사 역량 지원	모든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 역량 강화 연수	3.13 (0.70)	1.8	13.5	54.7	30.0	100.0 (783)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방안 안내 (통합학급 운영 매뉴얼, 우수사례 보급)	3.26 (0.62)	0.4	8.3	56.7	34.6	100.0 (783)
	특수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수업나눔, 수석교사 등을 통한 수업 지원	3.14 (0.67)	0.8	13.7	56.1	29.5	100.0 (783)
	통합교육에 맞춘 교수 학습자료 개발과 지원	3.32 (0.62)	0.8	6.1	53.5	39.6	100.0 (783)
수업 및 학교 생활 지원	통합교육 지원 기구와 역할 확대 (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거점센터 등)	3.23 (0.61)	0.9	6.9	60.2	32.1	100.0 (783)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인력 증원 및 역량 강화	3.30 (0.65)	1.3	6.6	52.6	39.5	100.0 (783)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3.39 (0.59)	0.5	4.1	**51.0**	**44.4**	100.0 (783)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체제 정비 (관련서비스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3.26 (0.70)	1.9	9.1	50.6	38.4	100.0 (783)
	학교 내 필요 학생 맞춤형 의료지원 및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3.18 (0.72)	1.9	12.6	51.0	34.5	100.0 (783)
	장애학생 유형에 따른 보조 공학 기기 지원 및 활동	3.23 (0.63)	0.9	8.2	57.5	33.5	100.0 (783)
기타		3.75 (0.48)	0.0	2.0	21.6	76.5	100.0 (51)

* 주: 〈별권 부록표 1-29〉부터 〈별권 부록표 1-44〉까지 참조

(3) 연수의 효과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수들이 운영되고 있다. 연수의 효과와 관련하여 연수 경험, 연수 시간, 도움 정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가 다음 〈표 IV-3-10〉부터 〈표 IV-3-13〉까지 제시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도 16.1%나 되었으며 가장 많은 연수 형태는 '온라인 연수 및 시청각 자료 영상'(73.8%) 이었다. 중복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는 다른 비대면 연수와 함께 들었다 하더라도 비대면 연수 경험의 비율과 비춰보면 약 50% 정도는 대면 연수만 참여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비대면 연수의 효과와 관련하여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Ⅳ-3-10. 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단위: %(명))

구분	경험 없음	오프라인 외부 전문가 초청 교육	오프라인 교내 특수교사 강연	오프라인 교육청, 외부기관주최 연수 참가	온라인 연수 및 시청각 자료 상영	전체(N)
통합교육 연수 경험	16.1	11.1	15.7	17.8	73.8	100.0 (783)

* 주: 〈별권 부록표 1-23〉 참조

아래 〈표 Ⅳ-3-11〉의 통합교육 관련 연수시간을 보면 10시간 미만부터 120시간 이상까지 응답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통합교육 관련 연수를 전혀 듣지 않은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16%나 된다. 표 아래의 내용은 통합교육 담임 경력에 따른 연수 시간을 분석한 자료인데 흥미로운 것은 통합학급 담임 경력이 있는 응답자들도 연수시간이 없는 경우도 약 12%에서 21%까지 분포하고 있다. 통합학급 담임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30시간 이상 연수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교사들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응답 결과이다. 특히 그 아래 〈표 Ⅳ-3-12〉를 보면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의 85.0%는 연수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3-13〉는 연수가 도움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인데 '이론 중심' 과 '온라인 연수 방식의 한계'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연수 방식과 내용의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

표 Ⅳ-3-11. 통합교육 관련 연수 시간

(단위: %(명))

구분		없음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 120시간 미만	120 시간 이상	전체 (N)
전체		16.0	24.2	10.3	23.7	16.7	7.3	1.7	100.0 (532)
통합 학급 담임 경력	없음	60.0	20.0	0.0	20.0	0.0	0.0	0.0	39.463*
	1년 미만	21.1	39.5	10.5	26.3	2.6	0.0	0.0	
	1~3년 미만	15.0	18.8	15.0	28.8	18.8	2.5	1.3	
	3~5년 미만	13.6	22.0	8.5	16.9	25.4	13.6	0.0	
	5년 이상	12.2	17.1	9.8	26.8	17.1	14.6	2.4	

* 주: 1) p<.05, **p<.01, ***p<.001
2) 〈별권 부록표 1-25〉 참조

표 Ⅳ-3-12. 통합교육 관련 연수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었다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체(N)
연수 도움정도	3.00 (0.58)	0.9	14.1	69.6	15.4	100.0 (447)

* 주: 〈별권 부록표 1-26〉 참조

표 Ⅳ-3-13. 통합교육 관련 연수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연수 기간과 시간이 짧아서	업무에 도움이 될 내용이 없어서	이론 중심이어서	연수강사의 역량과 전문성 부족	온라인 연수 방식의 한계	기타	전체(N)
도움되지 않은 이유	6.0	34.3	94.0	9.0	38.8	1.5	100.0 (67)

* 주: 〈별권 부록표 1-27〉 참조

3) '정다운 학교' 운영 성과

통합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서 통합학급 교육과정에 실제적으로 통합되는 수준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통합학급의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로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에서의 수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3년 전부터 '정다운 학교' 운영을 통해서 특수교사와 통합교사의 협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협력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

'정다운 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특수교사와 통합교사의 공동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초·중·고 특수 및 일반교사의 FGI 결과와 관련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공동협력을 통해 수업을 개발하고 실행했을 때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통합학급의 수업에 참여하면서 자존감과 교육성취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보여주었으며 둘째,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및 통합학급 수업 역량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성취에 대해 책무성을 가지게 되면서 학교 전체에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문화가 확산될 뿐 아니라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 등 교육적 요구가 높은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존감 및 교육성취 제고

'정다운 학교'가 운영되면 특수교육대상자와 비장애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통합적인 교육활동은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특수학급을 넘어서서 좀 더 풍부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 기회를 통해 더 많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특수학급으로 일정시간 분리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주류에서 배제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활동은 배제의 기분을 확연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자신이 잘 하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을 때는 자존감을 향상 시켜주기도 한다. K교사의 면담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교육적 성취를 이루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 OOO 카페라고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통합반에서 자격증 딴 아이들이 같이 카페를 운영을 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것들이 모든 생활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업을 들어봤을 때 다른 수업에서도 절대 위축이 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 주시죠.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전반적으로 모든 생활에 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우리 아이가 그 전에 아이와 지금의 아이는 완전히 많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어눌했던 발음이 훨씬 더 연습을 많이 시키니까 전달을 해야 되니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통합반에서의 수업이라는 것도 알건 모르건 무조건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저희 OO라는 학생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되게 유명 인사예요. 특수 학생인데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OO없으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수업에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다 인정받고, 저희 아이들은 모든 부모님들이 인정할 정도로 정말로 모든 일상이나 학교 수업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긍정적으로. (K교사)

비장애학생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대단한 학습동기나 도전의식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며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교사들도 이런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도 한다. 학습동기나 기대수준 그 자체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존감과 교육적 성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B교사와 G교사는 통합 활동과 협력수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자신들의 기대수준을 계속 높이는 것을 보여준다. '정다운 학교' 재직 교사들의 면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참여 동기와 교사의 기대가 시너지를 일으켜 특수교육대

상자의 교육적 성취를 높이는 선순환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으로 토론을 했었는데 여기 사회보는 친구가 저희 특수학생이에요. 미리 대본을 줘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했었구요. 그리고 배심원으로 저희 특수학생들 두명 더 참여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누가 더 잘했는지, 왜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줬었는데 (중략) 우리 아이들도 저희가 특수교사가 한번을 준비를 해주면 충분히 토론에 참여가능하겠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었고 항상 학교에서 대회를 하면 자기들은 참여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대회에 참여를 해봄으로써 우리도 가능하겠네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B교사)

'정다운 학교'에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공동협력과 협력수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성취가 높아진 사례는 면담에 참여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언급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가 너무 심해서 참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교사도 협력적 시도를 통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굉장히 고무되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더 하게 된 사례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아래 G교사, F교사, J교사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FGI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들을 수 있었다.

> 올해는 장애 학생이 그런 자폐 학생이 체육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체육을 시작했는데 그 협력교수가 아니었으면 그 학생이 아마 그 수업에서 쫓겨났을 것 같아요. 도움반에서 이 시간에 올려보내지 마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진짜 뭘 해도 안 됐었는데, 협력교수를 하면서 그 학생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았어요. 올해 1년은 크게 막 엄청 좋아진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학생이 쭉 참여를 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체육 활동을 했다는게 대단하죠. (G교사)

> 우리 학교 도움반 아이는 작년에 영어 과목의 협력교수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거의 그림자 교수였어요. 연구자 선생님이 교수 수정 자료를 엄청 잘 만들어 오셔서 얘 옆에서 하셔서 얘가 영어가 많이 늘어있는 거예요. 영어의 흥미도 많이 생기고 쓰는 것도 좋아지고. (F교사)

1학년 친구가 자폐성 장애에, 저희 지금 통합되어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애가 제일 심한 친구였거든요. 그랬더니 첫 시간에 한 번 하시고, 오히려 저희 애가 체육은 더 잘한 거예요. 통합학급의 다른 친구들보다. 자폐가 조금 심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그 반에서 어울리는 과정, 수용되는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과 정말로 수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조정 내에 가끔 참여하기도 했는데, 체육수업에 같이 참여한 효과가 엄청난거예요. 저희 자폐성 장애 친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에 녹아들었거든요. 아이도 되게 너무나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고 이런 면이 크게 도움이 됐고. (J교사)

'정다운 학교'에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수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참여를 높였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존감에도 교육적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2)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공동협력 및 통합학급 수업 역량 향상

'정다운 학교'에서 이루어진 가장 핵심적인 노력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수업 실행이다. 〈표 Ⅳ-3-14〉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교수의 필요정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이 표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의 93.8%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교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단 1.3%에 불과하다.

표 Ⅳ-3-14.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교수 필요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N)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교수 필요	3.53 (0.65)	1.3	5.0	33.5	60.3	6.3	**93.8**	100.0 (783)

* 주: 〈별권 부록표 1-49〉 참조

〈표 Ⅳ-3-15〉를 보면 협업이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협력교과수업운영을 지목한 응답자가 가장 많다(40.0%). 그만큼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렵기도 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경변인에 따라 어려운 영역이 조금씩 다르지만 '정다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은 협업이 어려운 영역으로 ②수업(44.4%)과 ③생활지도(29.1%)를 꼽은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④ 도전행동 지도(23.8%)와 ⑧학생평가 및 기록(23.8%)을 꼽았다.

협업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응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 있는 것은 '정다운 학교'(정다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이(44.4%) 또 협력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46.8%)이 그리고 통합학급 담임 경력이 높을수록 협력수업이 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마도 협력을 실행해 본 사람들이 실행과정의 어려움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Ⅳ-3-15. 교사들의 협업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N)
전체		29.5	**40.0**	34.1	20.9	18.8	12.6	8.3	20.8	3.3	1.4	100.0 (783)
직책	특수교사	40.1	48.9	27.5	25.9	17.2	9.1	5.2	15.9	1.9	1.0	100.0 (309)
	일반교사	24.7	27.4	38.1	14.3	17.5	13.5	11.2	29.1	5.8	2.7	100.0 (223)
	관리자	20.7	40.2	38.6	20.7	21.9	16.3	9.6	19.5	2.8	0.8	100.0 (251)
교직 근무 경력	5년 미만	32.2	27.0	38.3	20.9	25.2	9.6	9.6	20.0	4.3	1.7	100.0 (115)
	5~10년 미만	37.6	39.0	32.6	17.0	15.6	10.6	9.2	22.7	2.8	2.1	100.0 (141)
	10~15년 미만	30.5	45.3	28.4	22.1	18.9	9.5	5.3	25.3	4.2	0.0	100.0 (95)
	15~20년 미만	30.4	50.6	31.6	22.8	11.4	11.4	6.3	19.0	2.5	2.5	100.0 (79)
	20년 이상	24.9	40.8	35.4	21.8	19.5	15.6	8.8	19.5	3.1	1.1	100.0 (353)
통합 학급 담임 경력	없음	16.1	42.9	32.1	16.1	16.1	23.2	10.7	26.8	3.6	3.6	100.0 (56)
	1년 미만	15.9	25.0	36.4	6.8	34.1	9.1	15.9	27.3	11.4	0.0	100.0 (44)
	1~3년 미만	22.1	27.5	38.9	20.8	18.8	17.4	10.1	24.2	6.0	2.0	100.0 (149)
	3~5년 미만	25.0	37.9	44.8	18.1	14.7	11.2	10.3	23.3	2.6	1.7	100.0 (116)
	5년 이상	26.6	**38.5**	34.9	18.3	22.9	13.8	8.3	22.0	0.9	0.9	100.0 (109)
정다운 학교	운영	29.8	**44.4**	29.1	**23.8**	18.5	14.6	5.3	**23.8**	1.3	0.7	100.0 (151)
	미운영	29.4	38.9	35.3	20.3	18.8	12.2	9.0	20.1	3.8	1.6	100.0 (632)
협력 수업	참여	38.7	**46.8**	21.0	24.2	12.9	9.7	4.8	25.8	3.2	1.6	100.0 (62)
	미참여	30.3	36.4	33.3	21.2	27.3	18.2	6.1	18.2	0.0	0.0	100.0 (33)

* 주: 1) ①교육계획 수립(개별화교육계획, 협력교수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등), ②협력교과 수업 운영, ③생활지도(또래 관계, 규칙 등), ④도전행동 지도, ⑤학급운영 및 자치활동, ⑥진로지도, ⑦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 현장체험학습 등, ⑧학생평가 및 기록, ⑨잘 모르겠음, ⑩기타
2) 〈별권 부록표 1-5〉 참조

협력을 통해 통합교육의 효과를 경험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응답자 변인과 관계없이 ②특수교사(또는 일반교사)의 적극적인 협력 태도와 요청이라고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64.4%) 두 번째로는 ⑤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긍정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합의체 운영(46.7%)이었다. 그 뒤를 잇는 항목은 ⑥통합교육을 위한 지원교사 배치 및 효과적 역할 분담(20.7%)이었다(〈표 Ⅳ-3-16〉). 설문조사를 통해 협력의 주체들이 긍정적인 태도로 임했을 때, 그리고 공식적인 협의 기구가 적절히 운영되었을 때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통합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알 수 있다.

표 Ⅳ-3-16. 협력을 통해 통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N)
전체		16.1	**64.4**	12.0	9.2	**46.7**	**20.7**	18.5	0.5	2.8	100.0 (783)
학교급	초등학교	15.9	63.0	12.3	8.7	49.3	22.1	15.9	0.6	2.8	100.0 (497)
	중학교	14.8	67.8	12.0	10.9	43.2	17.5	20.2	0.5	3.3	100.0 (183)
	고등학교	19.4	65.0	10.7	8.7	40.8	19.4	28.2	0.0	1.9	100.0 (103)
직책	특수교사	22.0	55.3	9.1	10.0	46.3	12.3	33.0	1.0	2.9	100.0 (309)
	일반교사	10.8	68.2	15.7	9.0	43.0	31.8	4.5	0.4	3.1	100.0 (223)
	관리자	13.5	72.1	12.4	8.4	50.6	21.1	13.1	0.0	2.4	100.0 (251)
교직 근무 경력	5년 미만	21.7	63.5	13.0	10.4	39.1	16.5	20.0	0.9	3.5	100.0 (115)
	5~10년 미만	22.7	56.0	12.1	10.6	41.8	14.2	24.1	0.0	5.0	100.0 (141)
	10~15년 미만	15.8	62.1	11.6	7.4	45.3	28.4	20.0	2.1	1.1	100.0 (95)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N)
	15~20년 미만	13.9	59.5	11.4	8.9	50.6	21.5	20.3	0.0	2.5	100.0 (79)
	20년 이상	12.2	69.7	11.9	8.8	50.7	22.4	15.0	0.3	2.3	100.0 (353)
통합 학급 담임 경력	없음	17.9	71.4	10.7	8.9	51.8	19.6	16.1	0.0	1.8	100.0 (56)
	1년 미만	11.4	65.9	15.9	15.9	40.9	22.7	4.5	0.0	6.8	100.0 (44)
	1~3년 미만	12.1	69.1	15.4	6.0	44.3	27.5	5.4	0.0	4.7	100.0 (149)
	3~5년 미만	9.5	69.8	15.5	6.0	47.4	31.9	10.3	0.9	0.9	100.0 (116)
	5년 이상	12.8	73.4	11.0	11.9	50.5	22.9	11.0	0.0	0.9	100.0 (109)
정다운 학교	운영	17.9	68.9	8.6	7.9	51.7	17.2	21.2	0.0	0.7	100.0 (151)
	미운영	15.7	63.3	12.8	9.5	45.6	21.5	17.9	0.6	3.3	100.0 (632)
협력 수업	참여	12.9	66.1	8.1	9.7	46.8	17.7	25.8	0.0	1.6	100.0 (62)
	미참여	30.3	54.5	6.1	9.1	54.5	15.2	30.3	0.0	0.0	100.0 (33)

* 주: 1) ①관리자의 관심과 지지, ②특수교사(또는 일반교사)의 적극적인 협력 태도와 요청, ③학부모의 관심과 요청, ④통합교육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변화 목적, ⑤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긍정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합의체 운영, ⑥통합교육을 위한 지원교사 배치 및 효과적 역할 분담, ⑦통합교육을 옹호하는 학교 제도와 교직원들의 태도, ⑧기타, ⑨통합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된 경험 없음
2) 〈별권 부록표 1-28〉 참조

설문조사를 통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수업의 중요성과 어려움이 드러났다고 하면 FGI를 통해서 협력수업의 실질적인 과정과 효과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정다운 학교' 운영의 핵심 영역으로 협력수업이 계획되고 실행되었는데 그 과정에 참여한 교사들은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동협력 역량과 협력수업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아래 J교사와 D교사의 면담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임할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파트너로 성장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실질적인 통합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에 특수 선생님이랑 같이 협력교수하면서 그런 부분이 그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그 경중에 따라서 과학 수업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을 잘만 고려한다면 일반 학생들이랑 똑같은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과학 수업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의미 있게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그리고 특수 선생님 들어오셔서 개별적으로 또 지도도 가능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과학 조금 해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반에서도 좀 위치가 올라가는 것 같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감을 좀 가져서 협력교수 하지 않는 그냥 저 혼자 하는 수업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 변화들을 저는 발견했거든요. (J교사)

실제로 협력교수가 되게 좋은 점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도 이 아이한테 어떤 수업을 해야되겠다 내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몇 번만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금방 얻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일 년 내내 하지 않아도 학기 초에 이 학생에 대한 수업 지원 방식들 이런 것에 논의만 충분히 된다면 일 년 동안 특수교사가 더군다나 있는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통합학급 선생님이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지원하면 되지만 사전에 그 부분들이 몇 번만 연습이 되면 담임 선생님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D교사)

교사들은 협업수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면서 통합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참여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있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급의 수업에 통합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수업 참여를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이유들 중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교육과정에 참여하기에는 학습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었다(김순희, 이은주, 2020). 말하자면 교사들이 생각하기에 통합학급 수업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너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정다운 학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수업을 진행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격차도 물론 존재하지만 그들을 수업에 포함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것도 통렬히 자각하게 된 것이다. H교사와 C교사의 면담은 시도가 있어야지 역량이 향상됨을 잘 보여주고, '정다운 학교'에서 그런 시도를 통해 교사들의 역량이 향상되었음도 잘 보여준다.

저는 이게 경험해 본 선생님들하고 협력교수를 경험 안 해본 선생님들하고는 확실히 앞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아요. 뭐 교수적 수정 당연히 고민하실 것 같고, 해봤냐 안 해봤냐에 따라서 차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모르고 그냥 넘어가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그 기저에는 약간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겠지? 이런 생각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하고는 뭐 국어 수학 이런 거는 어차피 잘 안 되니까 특수학급 가서 배우고 오겠지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책임을 여기에 넘긴다고 해야 되나 학급이 두 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협력교수 그리고 교수적 수정 이런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계기가 협력교수를 경험하고 나서부터였거든요. 그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특수 학생들의, 특수 아이들의 수업에 대해서 약간 한 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걸 경험해 보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이제 협력교수였거든요. (H교사)

아무래도 통합학급 학생들의 소프트 스킬 신장이다 보니 그리고 협력수업이다 보니 장애 학생들도 고려하고 그 한 반에서도 눈에 띄는 학생들이나 좀 눈길이 많이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UDL적인 요소를 전부 다 고려를 하게 되는 거 같은데요.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어서 통합학급 선생님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이게 협력교수가 주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다운 학교 운영에 대해서 되게 책임감을 많이 가지시고 일반학급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을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아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우리 반 아이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더 이렇게 품을 수 있을까요 하는 의문들을 저한테 또 가져주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협력교수가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C교사)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협력수업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교수적 수정'이나 'UDL(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보편적 학습설계)'과 같은 특수교육 학술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개념을 협력수업에 응용해서 활용하고 있었다. '정다운 학교'의 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면에서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협력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교사 자신의 통합학급에서의 협력수업에 관한 전문성이 향상되는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수업 역량의 향상은 특수교육대상자 뿐 아니라 학급에서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역량으로 전이되고 있었다. 다음의 I교사와 D교사의 면담은 협력교수를 통해 교사들의 수업 역량이 향상되고 장애 비장애학생 모두의 참여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학생 뿐만이 아니라 그 반 전체가 조금 체육적으로 애들이 역량이 부족했어요. 그랬더니 첫 시간에 한 번 하시고 체육이 1학기에 3단위였는데 3단위를 다 들어오면 안 되겠냐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장애 학생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고 그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조금 적절한 수업의 질을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이 체육과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I교사)

모든 선생님이 UDL을 고려한 지도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수업 지도안 양식을 드렸어요. 그 양식에 맞춰서 그 반마다 특수학급 학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오라고 했고 담임선생님들이 그걸 다 작성하고 계시고. 우리 반에는 예를 들어서 외국어가 더 선호되는 학생이 있다 이렇게 안내하시면 그 학생을 위해서 국어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사회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하세요. 그러니까 UDL 부분은 누군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다 같이 우리가… (D교사)

한 두 번의 협력수업의 계획과 성공은 반드시 협력수업을 하는 교과가 아니어도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되는 다른 수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뿐만 아니라 개별화된 요구가 있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일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른 학생들도 더 잘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학생들을 고려해서 수업을 만드는 것은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일임을 알게 되기도 한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지도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화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냥 협력교수 지도안과 함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 지도안도 같이 전학급에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H교사)

특수교과나.. 이렇게만 전학공(*주 : 전문적 학습공동체) 했을 때보다 올해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만족도가. 왜냐하면 저희에 대해서 어필을 더 많이 하고 다 같이 교과 네가지에서 다섯 교과가 한번에 융합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맞출 수 있는 게 주로 특수 쪽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니까 일반교과 선생님들도 특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또 특수 관련 수업 제재로 융합교육을 많이들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 학교 안에서 특수교과가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A교사)

(3) 통합교육의 의미 재인식 및 소수자 포용에 대한 통찰

'정다운 학교'는 말 그대로 통합교육의 질적 제고가 1차 목표였다. 통합교육의 질적 제고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을 배제하고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며 일반교사가 통합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시도들의 효과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수업 참여를 높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통합교육의 의미를 성찰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까지 확장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학급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포용하는 것까지도 넓어지고 있었다.

C교사의 면담내용을 보면 '정다운 학교'를 운영하기 전에는 일반교사의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대한 책무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었고 특수교사가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확실히 '정다운 학교'에서 협력수업 참여 이후에는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교사의 면담은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한 두 번 하다보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몇 가지 수정들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보여주며 교사들의 공동협력 과정이 학교의 문화로 자리잡게 되는 것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변화는 협력수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에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음도 보여준다.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가까이서 목격하는 것만으로 그 결과를 전체가 공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협력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이런게...담임선생님들마다 특수학생을 바라보는 자세라고 해야 되나 책임감이 조금 다 달라지는 거 같아 가지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특수학생을 특수 교사에게 일임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어떤 선생님께서는 특수학생을 쓸 때도 계속 물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특수교사에게 계속 물어보시고 하셨든데 .. 그런데 이거 정다운 학교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도 특수학생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교육한다는 느낌이 좀 생기고요. (C교사)

> 사전에 이 아이의 지도를 위한 UDL적 요소들을 많이 협의하고 연습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지도할 때는 이런 배려가 필요하구나 이런 지원이 필요하구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되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지도안을 짠다든가 몇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몸에 체득이 되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특수교사 선생님이랑 협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익히게 되고요.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수업 보다는 생활지도의 협력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행동은 줄어들고 사실 특수교사가 안 들어가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도 훨씬 더 높아지고 이런 경험을 한거죠. (E교사)

'정다운 학교'의 운영과 협력수업의 실행을 통해 학교의 통합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문화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개별화된 요구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고, 일반학급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급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는 일반교사 이외에 특수교사나 특수교육실무원, 자원봉사자 등이 일반학급에서 일정 시간 머무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학급을 여는 것이 부담스러워 통합교육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다. 협력수업의 실행 경험은 교사들이 학급을 여는 것을 덜 부담스럽게 느끼게 하며 결과적으로 학교 전체가 통합교육의 실행 과정을 공유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한다. F교사와 D교사의 면담은 통합의 문화가 확산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교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경험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열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오신다기보다 약간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고 안 계시면 오히려 더 힘들 아이도 많거든요. 특수교육대상자 전체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생님하고 일반 선생님하고 특수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디테일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제일 좋아지는 거 같습니다. (F교사)

저희 학교는 제가 들어가든 누가 들어오든 수업 시간에 아무도 안 쳐다봐요. 담임 선생님 조차도 안 쳐다봐요.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통합교육은 이 문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문화가 자기 교실을 닫아 놓는 게 아니라 항상 열려 있어서 어쨌든 교사가 들어가도 되고 그런 문화가 사실 협력교수를 하면 자연스러워 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수학급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닌 거 같아요. 그 반에서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내지는 수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 우리 반 아이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 줄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반 수업이 훨씬 더 원활하게 그래서 특수교사도 우리 반 아이 하나만이 아니라 그 반 전체의 그런 수업적인 지원 내지는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같고 1, 2학년 아이들은 더군다나 저한테 와서 이제 자기 필요한 것들 잘 얘기해요. 저는 1, 2학년 아이들한테 특수학급 선생님을 소개하는 수업을 했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특수교사라고 말을 하지 않았고 저희는 한빛반이라는 학교 교실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빛반 선생님 뭐예요 뭐 가르쳐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스페셜 티처 이렇게 써서 보여줬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아 특별한 선생님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이 아이들한테 선생님은 특수교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이들 스스로 아 선생님은 특별한 선생님이시군요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D교사)

G교사와 D교사의 면담을 보면 경험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 수업에 함께 의미 있게 참여하는 모습은 교사들 뿐 아니라 비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동료로서 또는 학습자로서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통합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 이게 저희 반 학생들은 도움반 친구가 같이 수업에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서로 같이 수업을 하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같이 수업에서 같이 서로 사회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학급 전체가 특수학생 뿐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도 좀 수용적인 되는 거 같아요. (G교사)

> 일반학생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특수학생을 배려라는 개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특수학생에 대한 당연히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또 특수학생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일반학생들이 조금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급 구성원으로서도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통합반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아 하고, 선생님이 한 반에 두 명 있는 거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D교사)

'정다운 학교'가 교사들과 학생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도 중요한데 더 흥미로운 것은 학교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소수자학생들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은 교사들의 개별화된 요구에 대한 민감도를 요구하고 교육과정이나 교수자료를 수정(adaptation)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역량을 요구하는데 협력수업의 과정에서 이런 자질이 개발되는 것이다. 이런 자질과 역량의 향상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개별화된 요구가 있는 다른 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시도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아래 E교사와 J교사의 면담은 학급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로 시선이 확장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 지금 정다운 학교에 있으니까 위해서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부분을 잘 하는가 이렇게 아이들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장애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가지게 된다 이런 변화도 협력교수의 효과라고 봐요. 그다음에 저희 특수학급을 좀 어렵게 멀게만 느꼈었는데 통합학급 학생들도 좀 가까이 느끼게 되면서 서로 교류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저한테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그러면서 사회적인 효과도 생각보다 큰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E교사)

이 단원을 수업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학생뿐만 아니라 수업에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일반학생들까지 수업에 좀 흥미를 느끼게끔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하게 되지요. 근데 저는 교과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업에 좀 잘 못 따라오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협력교수가 저는 잘 몰라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협력교수를 한다 그래서 협력교수라는 교습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J교사)

(4) FGI 참여자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제언: 학급 당 학생수 하향 조정 및 통합교육 지원교사제도 도입

'정다운 학교'에서 협력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은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다양한 제언을 하였다. 첫째는 특수학급의 학급 당 학생수를 줄이고 학년 군으로 특수학급을 나누어야 한다고 했다. 특수교사는 특수학급에서 수업도 하지만 통합학급도 지원할 수밖에 없다. 특수학급 당 학생수 정원은 학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6명인데 실제로는 학급의 학생들이 학년이 다른 경우 학생 수 만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업을 기준으로 하면 몇 개의 학년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통합학급의 지원도 특수교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통합학급의 요구는 수업에만 머물지 않고 생활지도나 학생들간의 사회적 관계 지원까지 광범위하다. 아래 E교사, I교사, J교사의 면담 내용은 이런 내용을 잘 보여주는데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마다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보통 이게 통합반은 교육과정이 평균화된 교육과정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특수반 학생들은 만약에 6명이면 6명 전부에 대한 교육과정을 짜야 하니까 특수교사가 그 전부를 짜는 게 과연 가능한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협력교수의 유형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했었는데 팀티칭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특수반 수업을 하면서 통합반 올라가 팀티칭을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유발만 담당하자 아니면 어떤 특정 활동만 담당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통합반 수업에 참여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수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고민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특수반 수업을 하면서 통합반 수업까지 준비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대1 교수 지원을 제외한 협력교수 유형을 따져가면서 협력교수를 준비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E교사)

제가 특수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그럴 수 없었다라는게 좀 아쉬운 점. 그래서 아까 체육 보조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인원 보충이 되면서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지만 인력 보충이 가장 시급할 것 같아요. 이런 행정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J교사)

저가 약간 번아웃이었어요. 그니까 제가 제 수업이 17시간인데 제 지금 현재 주당 횟수는 3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교시부터 모든 시간을 제가 다 개입을 해야만 뭔가가 해결이 되고 뭔가가 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아무튼 늘 저를 찾고 거기다가 부장 업무에 또 부장 일은 부장 일대로 해야 되고 특수교사로 지금 제가 3학년 담임인데 취업도 시켜야 되잖아요. 진로도 제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는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I교사)

이와 비슷하게 특수학급을 학년 군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특수학급의 학생 학년이 너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수업의 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학년 군으로 특수학급이 운영될 때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통합학급의 수업에 관한 지원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C교사의 학교는 특수학급이 학년군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통합교육의 내실화가 가능한 사례이다.

저희가 지금 특수학급이 세 학급인데 학년 군별로 지금 특수학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매주 한 학급당 몇 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가 협력교수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계가 되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도 학년 군별로 지금 소모임 같은 경우에 학년 군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다 함께 모이면 저희가 특수학급도 학년 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C교사)

둘째는 앞의 면담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공동협력을 잘 할 경우, 더욱이 협력수업까지 가능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의 질은 훨씬 높아짐에도 현실적으로 특수교사에게 협력수업까지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정다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중 협력수업을 하는 경우는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배치되었는데 그 효과가 상당하였다. 통합학급의 협력수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와 특징이 파악되어야 하고 본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특수교육대상자를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을 특수교사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통합교사와 협력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렵다. 통합학급의 수업을 지원하는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J교사와 B교사의 면담은 지원 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는 특수교사 한 명의 역량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교과 선생님의 역량 한 명으로도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두 사람 다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협력교수나 보편적 학습...에 대해서 원격 연수라도 우리가 각자 찾아봐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딱 그것만 메인으로 되서 개설되어 있는 연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디서 배워야 되지, 우리 둘이 짜매고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할 수 있으려면 그런 우리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J교사)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인원 수에 비례해서 특수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학교의 상담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적으니까 한 명 많으면 두 명 이렇게 학생들과 비례해서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정 있고 많이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없는 시간 쪼개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보충이나 아니면 행정 업무의 간소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B교사)

셋째는, 학교의 시스템이 통합교육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 때문에 통합교육이 상당부분 훼손되는 면도 있고, 특수교육대상자와 비장애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기대도 낮다. 그러다 보니 학교 활동에서도 분리가 자연스러워 지기도 한다. 통합교육 환경에서 분리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더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통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통합하도록 해야하며 애초에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참여를 전제로 해야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분리는 특수교사의 분리를 초래하기도 한다. 분리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B교사의 제안은 흥미롭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같은 기회가 부여되고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교사에 허용된 과목 개설 권한을 특수교사에게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교사가 만든 과목에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다. 과목의 개설 보다 핵심적인 내용은 학교 시스템이 교사든 학생이든 하나의 체제로 통합을 지원해 주도록 여러 가능성을 탐색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입시에서 그 수행평가와 그런 평가에 짓눌려 있는 선생님들에게서 그 틈바구니를 들어가는 건 사실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강시간에 협력을 진행하는게 어떨까 해서 보강을 다 들어가서 한번 수업을 이미지 메이킹에 관련한 수업을 한번 들어가보자. 그랬는데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보강을 들어갈 수 있는거에 대한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하루에도 거의 정말 많은 시간이 보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얽힌 문제, 교무에서 돌리는 프로그램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건 탈락. 그럼 2번, 진로와 자율. 그러면 이 진로와 자율을 선생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서 수업을 저희가 들어가게 됐고 같이 함께 수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찬성, 반대, 좋네 어쩌네 강사가 어쩌네 저쩌네 정말 많은 말도 있었고 학생들도 이 수업이 이러네 저러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K교사)

특수교사 시수나 통합교육 시수를 아예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기당 1회 이런게 아니고 앞으로는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하고 저희 경기도는 올해부터 전면시행인데 그럴 때 특수교사가 만들 수 있는 시수나 이런 것들을 좀 정치쪽으로 연결이 되서 정다운 학교까지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통합교육 아니면 특수교사가 만드는 고교학점제 수업은 몇 명 이하로도 만들 수 있으며 몇 차시 확보 지원 이런식으로 해서... (B교사)

4. 소결 및 제언

2022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 연구의 목적은 통합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집중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학생과 교사들의 장애와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사들이 생각하는 통합교육의 어려운 점과 지원 요구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다운 학교'의 운영 성과는 어떠한가? 3개의 조사내용이 설정되었고 그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첫째, 학생과 교사들은 대체로 장애가 보편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같이 수업을 듣고 생활하는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은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문항에서 교사들에 비해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다.

셋째, 교사들의 통합교육의 실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통합교육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이나 학업성취를 보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이었다.

넷째, 교사응답자의 96.2%는 장애이해교육을 들은 경험이 있으며 학생들은 67.3%만 장애이해교육을 수강하였다.

다섯째, 장애이해교육을 들은 교사들은 대부분은 장애이해교육이 장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학생들 중에는 16.3%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 통합교육 현황, 어려움 및 지원요구

통합교육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는 교사들을 대상으로만 조사하였다. 그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참여자의 83.9%는 통합교육 관련 연수를 들은 경험이 있고 그중에 85.0%(도움되는 편 69.6%, 매우 도움 15.4%)는 연수가 효과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 연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통합교육의 어려운 점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비장애학생의 큰 학습격차'이며 두 번째는 '통합교육을 진행하기에 과다하게 많은 학급 당 학생 수' 그리고 '지원 인력의 부족'을 들었다.

셋째, 통합교육의 어려운 점에 대하여 특수교사, 일반교사, 관리자 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특수교사, 일반교사, 관리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과 정도는 달랐다.

넷째, 일반교사는 '특수교육대상자와 비장애학생의 학습격차'에 대해서ㅠ 특수교사는 '교사들 간의 협업과 업무 범위'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관리자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통합교육 지원 과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통합교육 환경 조성', '교사 역량 지원', '수업 및 학교생활 지원'의 3영역 모두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통합학급의 학급 당 학생 수 축소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 환경 구축,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하여도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요구가 높았다.

3)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다운 학교' 운영 성과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추진한 '정다운 학교'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정다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11명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대상의 FGI를 통해 조사하였고 설문 조사의 배경 정보로 '정다운 학교' 재직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였다. '정다운 학교' 운영의 성과는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존감 및 학업 성취 향상 둘째, 특수교사의 일반교사의 공동협력 및 통합학급 수업 역량 향상 셋째, 통합교육의 의미 재인식 및 소수자 포용에 대한 성찰로 정리할 수 있다. 각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존감 및 학업 성취 향상

첫째, 교사들은 '정다운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장애 학생과 동등하게 함께 참여하는 통합 활동이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자연스럽게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으며 비장애학생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협력수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급 구성원으로서 정체감이 형성되고 자존감이 높아졌음을 확신하였다.

셋째, 협력수업이 실행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수업 참여는 극적으로 향상되었으며 당연하게도 이전과 비교해서 학업 성취는 향상되었다. 특히 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또 조금만 지원해 주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

(2)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공동협력 및 통합학급 수업 역량 향상

첫째, 설문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에서 더 잘 적응하려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업영역에서의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설문결과를 보면 모든 영역에서 협력은 중요하지만 실제로 수업과 생활지도, 평가 및 기록에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하는 교사들이 꽤 있다. 즉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행에 대한 인식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셋째, 설문 결과 다른 집단에 비하여 통합교육 경력이 높고, '정다운 학교'에서 협업을 경험해 본 교사들이 협력수업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교사들이 더 많다. 협업을 경험해 본 교사들은 협력수업의 과정에 투여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의지와는 별개로 협력수업을 잘하려면 우수한 역량이 요구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넷째, FGI 결과 '정다운 학교'에서 협력수업을 경험한 교사들은 협력수업이 어렵지만 통합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게 되었고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협력수업 실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배치되었을 때 협력수업이 가능하고 의미있게 운영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정다운 학교'에서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공동협력 및 협력수업의 기회가 많고 그 과정에서 통합교육 역량이 높아질 수 있었다. 교사들의 통합교육 역량 신장이 통합교육의 내실화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이 밝혀졌다.

(3) 통합교육의 의미 재인식 및 소수자 포용에 대한 통찰

첫째, 교사들은 '정다운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진정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와 비장애학생의 관계가 좋아지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통합교육이 특수교육대상자와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의미 있음을 다시 한 번 성찰하게 되었다.

둘째, 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없지만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거나 학교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 포용하는 것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는 방법들을 통해 학교에서 소외 되고 있는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정다운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교사들 간의 대화가 활발해지고 학교의 모든 활동에 통합을 고려하게 되는 통합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었다.

4) 후속 정책과제에 대한 제언

통합교육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연구를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후속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학급에서 협력수업이 가능하도록 '통합교육 지원교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수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에서 수업 참여를 높일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와 비장애학생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일반교사의 보편적 학습 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나 교수적 수정과 같은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되어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된다. 반드시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라도 학생 요구가 다양해지고, 개별화된 요구가 있는 학생이 점점 늘어나는 현재의 학교 환경을 고려하면 협력수업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다운 학교'에서 협력수업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배치해 주었기 때문이며 교사의 업무 양과 책무의 범위를 고려할 때 협력수업을 위한 인력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은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설문과 면담을 통해 밝혀진 것은 특수교사가 통합학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학급에서 일반교사가 개별화된 요구가 높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수준으로 학급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즉 교사들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방치하지 않고 질 높은 통합교육을 실행하려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학생 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70% 정도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다(교육부, 2022).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집중적인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교사에게 책무성을 소환한다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많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심리적 지원 체계는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며 심리 지원 체제와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제5장 정책 제언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과제

5 정책 제언[60]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모니터링 개요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성과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진단하고 정책 개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국내 이행 노력에 대한 진단을 위해 29명의 현장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2021년도와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별 권고사항에 대해 '진전노력 정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하고, 부여 점수에 대해 추진된 성과나 부족한 점 등 응답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5점으로 전년도 2.3점 대비 0.2점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점수이다. 영역별 점수로는 일반이행조치 1.8점('21년 2.1점), 일반원칙 2.2점('21년: 2.2점), 시민적 권리와 자유 2.6점('21년 2.3점), 아동에 대한 폭력 3.1점('21년 3.0점),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2.6점('21년 2.5점),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2.6점('21년 2.4점),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2.8점('21년 2.4점), 특별보호조치 1.8점('21년 1.5점)으로 폭력 및 학대 분야 협약이행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별보호조치 영역의 이행 노력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진전 노력이 있다고 평가된 권고사항은 일반이행조치 영역 자원의 할당(2.3점), 일반원칙 영역의 교육환경의 공기 질 모니터링(3.0점), 시민적 권리 영역의 선거연령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화(3.9점), 폭력 영역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4.0점), 가정환경

60) 5장 1절 1)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1절 2)와 2절은 3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을 집필한 김영지 선임연구위원, 최홍일 전문연구원, 유성렬 교수, 이은주 교수가 3장과 동일 영역을 집필하였다.

영역의 양육비 이행 촉진(3.0점), 보건복지 영역의 약물남용 예방(3.3점), 교육여가 영역의 교사훈련 강화 및 학교시설 개선 등(3.6점), 특별보호조치 영역의 아동 근로조건 개선정책(3.5점) 등이다.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권고사항은 일반이행조치 영역의 유보조항, 법 제정과 조정, 일반원칙의 비차별, 시민적 권리의 정체성의 권리(베이비박스), 특별보호조치의 난민아동, 인신매매, 소년사법 분야 등이다.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 사안들을 양적 점수로 단순화하여 판단하기에 한계는 있겠으나 2019년 제5·6차 유엔 권고 이행 성과 점검 의미를 담고 있어 이후 보다 적극적인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과제 도출에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가 의견조사지에 기술한 점수 부여 근거는 협약 성과와 방해요인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적 견해로서 본 장의 협약이행 분석 시사점과 정책과제 개발에 참고하였다.

표 V-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결과

구분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평균	순위
전 체			2.5	
A. 일반이행 조치			1.8	-
유보	6	제40조 (2)항 (b)(v)조 유보철회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	1.0	14
법제정	7	낙태 관련 개정 법률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	1.6	10
		사법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의 협약에 대한 자식을 높이고, 그들이 재판절차에 협약을 인용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	1.4	12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8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아동 관련 정책 및 전략이 협약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할당을 보장할 것.	2.2	2
조정	9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할당, 영구적 사무국 설치 및 아동권리 조정기구로서 위원회의 인지도 증진을 통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것.	1.8	6
		조정에 관한 이전 권고를 상기하며, 아동권리 사안을 다루는 모든 관계 기관들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1.3	13
자원의 할당	10	(a)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정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 하는 제도를 실행할 것. (b)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c)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할 것. (d)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 수립 과정에서 아동참여를 강화할 것. (e)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부문의 재화 및 용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고, 뇌물수수나 특혜, 불규칙한 지급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공공조달 절차에서 책무성을 제고할 것.	2.3	1

구분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평균	순위
자료 수집	11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연령, 성별, 장애(disability status), 지리적 위치, 출신 민족 및 출신 국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화 된 시스템(centralized system) 구축할 것.	1.8	6
독립 모니터링	12	(a)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할 것. (b) 아동권리위원회의 진정 접수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할 것. (c) 정부 당국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할 것. (d) 정책권고의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 (e)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것.	2.2	2
보급, 인식 제고 및 훈련	13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 교육 및 인권교육을 보장할 것.	2.2	2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할 것.	2.2	2
국제협력	14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한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할 것.	1.7	8
		공적개발원조가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아동권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당사국 및 해당 개발 협력 상대국에 대한 본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국제개발원조 정책과 프로그램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적절히 통합할 것.	1.7	8
아동 권리와 기업 부문	15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child protect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아동권리 실현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할 것.	1.5	11
B. 일반원칙			**2.2**	
비차별	16–17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이 출신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	1.5	13
		(a)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략을 시행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할 것.	1.6	12
		(b)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 등)이 동등하게 출생 시 등록되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2.0	9
		(c)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할 것.	1.7	11
		(d) 양육비 접근 등에 있어 모든 가정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 및 관행을 점검할 것.	2.9	2
아동 최상의 이익	18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관련된 재판절차, 의사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며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 (a) 폭넓은 아동 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확장할 것. (b)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고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할 것.	2.3	4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19–20	포괄적 정책,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조치, 아동 및 가족, 나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통해 아동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2.4	3
		(a)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하는 건강상 피해를 조사할 것. (c)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동에게 충분한 구제와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	2.0	9

구분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평균	순위
		고, 화학물질 관리 및 유해물질 관련 사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b) 모든 보육환경 및 교육환경의 실내 공기 질 및 유해물질 노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	3.0	1
아동의 견해 존중	21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의 견해가 그들과 관련된 가정, 학교, 법원 및 관련 행정 절차와 기타 절차에서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2.2	6
		(a)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학교 내 모든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2.2	6
		(b)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도록 보장할 것.	2.1	8
		(c) 발의된 가사소송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	2.3	4
C. 시민적 권리와 자유			**2.6**	
출생 등록	22	(a)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c)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2.7	2
정체성에 대한 권리	23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	1.7	5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24	모든 아동이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	2.3	4
		아동참여를 증진하고, 현재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을 고려할 것.	3.9	1
사생활에 대한 권리	25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실제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	2.7	2
D. 아동에 대한 폭력			**3.1**	
체벌을 포함한 폭력	26-27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 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할 것. (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 (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 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2.7	5

구분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평균	순위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성적 착취 및 학대	28-29	(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3.0	4
		(b)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	3.9	2
		(c)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4.0	1
		(d)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된("대상 아동") 모든 아동, 다시 말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 "보호처분" 폐지,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 제공,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3.6	3
		(e)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2.4	8
		(f)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2.6	7
유해한 관행	30	당사국이 예외 없이 조혼(child marriage)을 금지하고, 출신국과의 협력, 이민자 및 난민을 위한 공적 등록 절차(civil registration procedures) 개설 등 이러한 관행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2.7	5
E.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2.6**	
가정 환경	31	(a)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하여,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적절한 유연성을 늘리고,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및 재정적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2.5	8
		(b) 부(父)의 육아휴직 접근성 및 이용을 보다 촉진할 것.	2.8	3
		(c) "면접교섭센터" 설치 확대 및 기타 대안적인 해결책 마련을 포함하여, 이혼 가정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할 것.	2.6	5
		(d) 양육비에 대한 접근 및 양육비 이행을 촉진 및 보장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	3.0	1
		(e)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양육비 지원 자격도 그에 따라 개정할 것.	2.6	5
가정 환경 상실 아동	32	(a)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2.0	12
		(b)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2.6	5
		(c)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 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 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2.8	3
		(d) 보호자 보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강화할 것.	2.4	9
입양	33	(a)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모든 연령대에 있는 아동을 위한 입양절차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입양에 있어 미혼모의 자발적인 동의가 의무적일 것.	2.4	9

구분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평균	순위
		(b)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입양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할 것. (c) 절차상 불필요한 지연 방지 및 입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들의 활동이 적절히 규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d) 파양된 사례를 포함하여,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를 강화할 것. (e) 입양아동이 그들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도록 보장할 것. (f)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	34	"부모책임 및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관할,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 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2.2	11
수용자 자녀	35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 및 이들 아동의 접견권을 보장할 것.	3.0	1
F.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2.6**	
장애 아동	36	(a)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장애아동을 포용하도록 보장할 것.	2.4	11
		(b)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	2.4	11
		(c) 모든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기반시설 및 체육·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통학 지원,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실시할 것.	3.0	2
		(d) 장애아동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	2.6	8
건강 및 보건 서비스	37	보건예산을 늘리고 지역 병원을 강화하라는 이전의 권고를 상기시킬 것.	2.7	6
		(a)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및 이주아동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것.	2.4	11
		(b) 이주 아동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개선할 것.	2.7	6
		(c) 당뇨 및 비만 아동 등을 위한 어린이집 및 학교의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할 것.	3.0	2
정신 건강	38	자살예방과 그것의 근본원인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정신적 웰빙(well-being)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2.4	11
청소년 보건	39	알코올 광고 규제 강화, 금연 공간 확대, 스포츠 및 신체활동 촉진, 약물 남용 예방에 대한 생활 기술 교육에 아동참여 독려 등 비만, 흡연, 음주 예방과 관련한 이전의 권고들을 상기시킬 것.	3.3	1
		(a)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 지원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의 역량을 구축하여 문제적이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	2.8	4
		(b) 학교 내 성교육, 임신 중 및 출산 지원 서비스, 산후 관리 강화와 육아지원 보장 및 부모의 동등한 육아 촉진을 포함하여, 청소년 임신을 효과적으로 다룰 것.	2.5	10
생활 수준	40	(a)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2.4	11
		(b) 빈곤층 아동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빈곤층 아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알리고 채택하며 시행할 것.	2.8	4

구분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평균	순위
		(c) 아동의 주거 빈곤 및 아동의 시간제 고용률을 사정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것.	2.6	8
G.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2.8**	
교육 및 교육의 목표	41-42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진로상담 강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 완화라는 목표하에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2001)에 부합하게 공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	2.6	6
		(a)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것. 공립 및 사립학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	2.0	11
		(b) 모든 아동이 출신, 주거지, 사회경제적 및 이주 지위, 이주민으로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할 것. 부정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입학 정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2.6	6
		(c)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강화할 것.	3.0	5
		(d) 학교를 중퇴하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현상의 규모를 평가할 것.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고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에 머무를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대안교실 및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	3.1	2
		(e) 훈련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포함한 교사의 훈련 강화, 학교 기반시설 개선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	3.6	1
		(f) 청소년 임신 및 HIV/AIDS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 그리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	2.4	9
		(g) 특히 학교 밖 아동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진로상담과 자유학기제를 강화 및 다양화하고, 아동의 견해가 진로 선택의 기초가 되도록 보장할 것.	3.1	2
		(h)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할 것. 차별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다룰 것.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훈련을 제공할 것.	2.5	8
		(i)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여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것: 예방, 조기 발견 메커니즘, 아동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중재 절차, 사례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통일된 지침	3.1	2
		(j)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이러한 시설은 안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금연구역이며, 연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2.4	9
H. 특별보호조치			**1.8**	
난민 신청 아동 및 난민 아동, 이주 아동	43	(a)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할 것. 비구금형 대안을 보장할 것. 난민과 가족 재결합 문제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1.0	16
		(b) 난민 및 무국적 아동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지위를 규정할 것.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난민신청아동,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	2.7	3

구분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평균	순위
		(c)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 보건의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여가, 학대 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	1.7	8
		(d)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권리협약과 부합하는 「이주아동권리법」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1.7	8
		(e) 난민신청자 및 난민 중 특히 아동에 대한 혐오발언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것.	1.7	8
		(f)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것.	2.0	4
		(g) 난민아동, 난민신청아동 및 이주아동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	1.7	8
아동 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44	책무성과 사회복귀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조치(일하는 아동의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 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할 것.	3.5	1
매매, 거래, 약취 유인	45	(a)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법에 맞게 정비하여, 강요, 대가, 피해자의 초국가적 이동 요건을 삭제할 것.	1.0	16
		(b) 경찰, 출입국관리소, 노동청,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계층 피해아동의 식별 및 위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이행할 것.	-	-
		(c) 아동의 인신매매, 불법거래 및 탈취가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부과되도록 하며, 인신매매 방지 전담조직과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를 위한 팀을 구성할 것.	-	-
		(d) 인신매매 또는 불법거래의 아동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형사적 제재,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삼거나, 폐쇄된 시설에 절대로 구금하지 말 것.	1.0	16
		(e) 남자아동, 외국인 아동,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	2.0	4
소년사법 운영	46-47	(a) 적절한 자원을 지원받아, 법에 저촉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아동사법 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아동 전담 법관 및 법 위반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c) 협약 제40조에 따라 공정한 재판 보장을 준수할 것. 아동 관련 사건의 공판에서 일반 청중을 배제하고, 재판 시작단계부터 아동의 법정 후견인 참여를 보장할 것. 침해(violations)를 보고함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는 경로를 제공·증진하고; 아동 관련 사건을 위한 언론보도 지침을 수립할 것.	2.0	4
		(b)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d) 법적·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 구조 제도를 수립할 것. (e)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폐지할 것. (f) 다이버전 제도(diversion programmes)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구금형을 촉진할 것. (g) 「소년법」에 구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할 것. 구금은 중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보호처분" 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최종 형기에 산입되도록 보장할 것. 구금에 항소할 권리 및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배상권을 보장할 것. (h) 일시구금을 포함하여, 구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개인 공간,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음식, 교육, 신체적·심리적 건강 서비스, 운동, 여가, 가족과의 접견 및 진정 제도 등 제공);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설에 머물 수	1.3	14

구분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평균	순위
		있도록 할 것.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구금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i)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j) 근신실 및 이송을 징계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회복적 조치로 대체하고 촉진할 것. (k) 아동에 관한 무력 및 보호장비 사용을 규제할 것 및 그러한 사용이 특정한 상황에 제한되고, 비례적(proportional)일 것. (l) 구금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구금된 아동의 DNA 수집 및 HIV 검사를 금지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할 것. HIV 정보는 비밀을 보장할 것. HIV에 감염된 아동 구금자를 격리하지 않을 것.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계속적인 위생시설 촬영을 금지할 것. (m)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 조치를 강화할 것. (n)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적,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48	(a) 여행 및 관광에서의 아동 매매 및 아동 성착취를 포함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모든 행위 및 활동을 국내 형사법 하에서 완전히 포괄할 것.	1.7	8
		(b) 선택의정서에 따라 범죄자 인도가 이루어질 경우 쌍방가벌성 및 최소심각성(minimum gravity) 요건이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범죄자 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되어야 할 것.	1.5	13
		(c) 유죄를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이 여권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2.0	4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선택의정서 후속조치	49	(a) 만 18세 미만 아동을 군대나 비국가 무력단체에 징집하는 것 또는 적대행위에 가담시키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	3.0	2
		(b) 분쟁지역 출신 난민신청아동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자료를 구분하여 수집할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것.	1.3	14
		(c)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선택의정서 조항을 반영할 것.	-	-
I.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50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를 비준할 것.	2.0	-
J. 국제인권규범 비준				
	5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1.5	-
K. 지역 기구와의 협력				
	52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여성 및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위원회와 협력할 것.	-	-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및 협약 이행 분석 시사점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 영역은 아동권리협약 상 일반이행조치와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법·제도, 예산 등 인프라와 일반적 조치 등을 포괄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중안전, 참여, 폭력·학대, 보육, 보건·복지, 교육 분야 법령이 제·개정되었는데,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화, 보호종료아동 지원 확대 등의 개정과 국가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 대안교육, 원격교육 등 신규 법령 제정이 이루어졌다. 2021년도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 비율은 3.2%로 전년 대비 0.4%p 감소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22.4%), 학생인권조례(8.0%), 국가인권위원회(22.7%) 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인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생활영역별 인권 존중 정도는 가정(96.4%), 학교(94.6%), 우리나라 전체(82.9%), 사이버 공간(8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인권존중도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이나 전년도 대비 응답률은 우리나라 전체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미세하게 낮아졌다.

인권의식 및 태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결정 능력(69.5%), 아동·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85.7%), 자치조직의 의의(86.0%)에 긍정적 인식을 보였고, 의견표명권(96.3%), 경제적 이유의 차별금지(97.3%), 양성평등(96.4%), 이주배경주민 교육권(94.5%) 보장 등 차별금지 관련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50.7%로 전년도 48.0%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인권교육을 받은 곳은 학교 교과수업시간이 73.7%,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35.8%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인권교육의 목표별 도움정도는 '지식(91.6%) = 태도(91.6%) 〉 실천(86.5%)' 순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은 나이(21.6%)와 외모·신체조건(21.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별(21.3%)과 학업성적(20.6%)에 따른 차별이 많았다. '차별한' 경험은 외모·신체조건(9.9%), 학업성적(8.2%), 나이(8.1%), 성별(7.7%), 장애(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 모두 외모·신체조건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의 지표결과를 보면,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인권인식과 주관적 인권존중도는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비대면 시기에 줄어든 차별 경험률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확산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이행조치와 관련한 가장 시급한 협약 과제는 상소권 관련 유보조항 철회 등을 비롯하여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협약 이행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다. 2024년까지 제출해야 하는 제7차 국가보고서에 5년 간의 이행 성과와 한계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기 이행 과제의 아동에 대한 영향과 성과를 평가하고 미이행 과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시점부터라도 단기 및 중기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이행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발표된 후 지금까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한 체계적인 협약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만큼 제5·6차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작업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협약이행을 통한 성과와 영향을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의 체계적 생산이 토대가 되어야 하므로 아동·청소년 통계체계화 및 효율적인 자료원 생산 논의가 필요하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에서 의사결정 시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는 가정 중대사 90.3%, 진학 93.8%, 진로(직업) 94.1%, 공부시간이나 방법 90.5% 등 존중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생회 활동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 보장 45.2%, 임원후보 성적 제한기준 없음 35.3%, 학생회 활동 예산·장소·시간 보장 49.0%, 학생회 의견이 존중 및 반영 57.0% 등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0% 내외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응답은 28.5%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율은 80.6%로 전년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 및 정책 반영도로 참여기구 의제의 정책수용률을 살펴보면, 2021년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의 14개 정책과제 이행현황은 92.9%에 달했고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은 28개 과제 수용으로 93.3%의 높은 수용율을 보였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는 11.0%로 매년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청소년 정책 참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은 71.7%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에

전년도(72.6%)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 부족(31.7%),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29.6%), 참여활동정보 부족(23.2%),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11.9%), 부모님 반대(1.9%) 등으로 시간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장 정도는 전체 대상자의 91.4%가 보장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학교급에 따라 소폭의 차이를 보였다. 가정과 학교에서 보장 받는 종교의 자유는 가정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82.0%, 학교의 경우 50.8%가 종교의 자유에 대해 보장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참여활동의 경험은 전체 대상자의 14.0%가 모임이나 인터넷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고, 6.3%는 거리 집회나 문화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이다. 사회문제 관련 활동 참여로 인한 학교 상담, 경고, 징계 등의 피해도 5.0%로 전년도 대비 늘어났다.

사생활보호와 관련하여 용모검사(19.0%), 복장검사(29.8%), 소지품검사(6.9%)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고, 용모검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에 있어서 개인(민감)정보 공개(6.4%), 징계 사항 정보 공개(11.0%), 시험 성적 공개(13.5%)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31.6%, 중학생의 41.0%, 고등학생의 36.4%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만 10~19세 청소년의 디지털 사용 역량을 보면, 정보와 컨텐츠 검색 능력(83.7%)에 비해 비판적 수용 및 활용 능력(신뢰정보 판단 70.6%, 사회문제 인식·참여 58.4%)이 낮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식(51.2%)도 상대적으로 낮다.

전반적으로 시민적 권리 수준은 조금씩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학교 자치활동과 정책결정 참여, 사생활 보호 등 전반적으로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연령과 정당가입 연령 하향화로 아동·청소년의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중요하게 대두된 만큼, 아동·청소년의 참여역량과 시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치활동과 참여 경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3) 폭력 및 학대

2021년에 신고된 아동학대 접수 건은 53,932건으로 2020년 42,251건에 비하여 27.

6% 증가하였다. 신고건수 만큼 아동학대 판정 사례 역시 증가하였는데, 2021년 아동학대 판정 사례는 2019년 30,045건과 2020년 30,905건이 비하여 21.7% 증가한 37,605건으로 분석되었다.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 계부모 등을 포함하는 부모인 경우가 83.7%로 2019년 75.6%인데 비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요원 등 공적체계의 투입을 통해 아동보호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음에도 2021년 아동학대 증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시행 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시행 초기부터 인력 및 예산 부족과 업무 과다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국가 개입의 아동보호체계는 본 결과를 통해 보완 및 수정할 부분을 찾고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설립 및 운영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율이 턱없이 부족한 현 시점의 상황은 허울뿐인 제도로 여겨질 수 있다.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 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 배치)을 충족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17 곳 중 2곳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 2022.9.8). 본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의 경우 많은 지역은 1인당 94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 2022.9.8). 이에 더하여 업무 특성 상 다른 업무에 비해 특히 전문성을 더욱 필요로 하는 직무임에도 불구, 대부분이 일반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운영되어 근속연수가 짧으며, 전체 학대전담공무원의 약 12%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비정규 인력으로 구성되어 아동학대전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 2022.9.8). 이러한 문제는 제도가 시행 된 초기인 2020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로(연합뉴스. 2021.9.16) 2022년 10월에 인력 충원을 계획했지만 여전히 배치에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례 대비 부족한 전담공무원의 수를 충원함은 물론, 순환보직이 아닌 학대예방에 특화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para. 26)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학대가 과소보고 되고 있는 점, 신뢰할 수 있는 학대 관련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학대 피해 이주아동과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의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피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

는 취약계층을 위한 학대 현황 조사가 보다 면밀히 이행 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para. 27)은 모든 아동에게 발생하는 폭력 및 학대에 대하여 국가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건의 규모와 원인, 특성 등에 대해 포괄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전 분야에 걸친 주제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연령, 성별, 장애, 거주지, 출신국가,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화 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para. 11). 본 보고서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간하는 각 년도 아동학대 주요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본 자료는 보고 대상에 대한 인적사항을 통해, 장애 여부 또는 다문화 여부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대 관련 통계만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현황 집계 및 보고에 있어 이주배경 아동과 장애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을 구분, 조사하여 학대 발생과 예방 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각 대상집단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이 정책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본 연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3.6%는 가출을 경험해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출 후 어떤 기관을 이용해 보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89.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연간 12만명의 가출(학교 밖)청소년들이 발생하며, 이들 중 약 27%(연인원 기준)만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이수진 의원실, 보도자료, 2020.10.27). 가출 이후 보호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 특히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가정 밖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를 시도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안전한 기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흡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모든 가정 밖 청소년을 수용할 만큼의 기관이 없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소년쉽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등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입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물리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조사와 희망하는 서비스 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쉼터의 기능적 측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5)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7.1%로 보고되고 있다. 2017년 4.7%, 2018년 5.8%, 2020년 6.5%, 2021년 7.1%으로 매년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본 조사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 전체 대상자 중 33.5%가 가끔 또는 자주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학업에 대한 부담과 성적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가족 간의 갈등 등이 높은 원인으로 꼽혔다.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권고사항(para. 38)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자살 원인 파악과 예방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웰빙 향상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 전 부처, 범사회적 종합대책인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함과 동시에 국조실에 추진단을 설치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9.9.9). 또한 2019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 하고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진행하고 자살예방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청소년 자살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9.9).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자살 사례에 대하여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연구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알코올 광고 규제 강화, 금연공간 확대 등에 대한 권고(para. 39)와 함께 마약류 등의 약물 남용 예방에 대한 생활 기술 교육에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아동·청소년 흡연 및 음주 경험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치료목적을 제외한 습관적 약물 또는 물질의 남용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0.8%로 조사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펜타닐, LSD 등 청소년 대상 마약 및 약물 남용의 문제가 계속해서 기사에 오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올해 마약사범이 1만여 명 적발되었으며, 유명인들의 마약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으며, 클럽이나 유흥가를 통해 마약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헤럴드경제, 2022.10.20).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약물남용 교육은 음주와

흡연에 치중되어 있으며, 갖가지 신종마약이 생겨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약물의 종류, 위해성, 중독성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우리나라에서 교육에의 권리를 나타내는 교육기회 보장 정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초등 및 중등교육과정에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수준은 OECD 주요 국가의 평균보다 높았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경우 전년 대비 2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출하는 사교육비 액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교육이 가구의 경제수준을 밀접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교육 참여율 및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사교육 의존도가 밀접하게 연계됨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계층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7월에 제정되어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 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학교 및 대학 등의 입학전형 관리,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요 내용들이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 의존도를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지속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2021년 7월에 제정되어 2022년 7월에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 · 교원정책 · 대학입학정책 ·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특히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에의 의존도 경감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핵심적인 주제일 뿐 아니라 단순히 교육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고용 및 노동시장 정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주제이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라는 국가 교육의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의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18년 이후 평일과 주말의 여가활동 시간은 청소년집단에서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었으며, 청소년들의 평일 학습시간은 코로나19 시기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다소 나아짐에 따라 청소년의 여가시간은 줄어들고 학습시간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신체활동 강화 방안이, 중학교에서는 스포츠 클럽 활동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여가시간은 다시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 문화·예술 관람이나 참여, 사회활동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여가시간 중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바람직한 유형의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의 놀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우선 아동·청소년을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 수준의 여가시간을 보장받고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할 권리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여가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내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놀이 및 여가, 스포츠 활동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여가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7) 특별보호조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 정도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비해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그리고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경우와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 차별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외국인이라는 인식이 차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주체로 모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가까이서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친구로부터의 차별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다문화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정도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국내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가 정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주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도기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이주아동에게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지원 제공되고 있지 않음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난민 신청자 아동은 부모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의료혜택을 받는데 심각한 제한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가 될 수 없고,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아님으로 인해 여러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법적·제도적 차원에서국내 아동·청소년과는 매우 다른 처우를 받고 있음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주 아동이 배제되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이라고 결정된 바도 있어 이러한 법적·제도적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조치가 도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제도적 맥락에서 어떠한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러한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도의 개선,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의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건강보호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주아동을 차별하는 법 조항들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소년 사법과 관련하여 우선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의 신수용인원 규모 및 1일 평균 수용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과 관련하여 서울과 부산 소재 시설의 평균 수용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어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소년원의 경우에도 2015년 이후 2020년까지의 평균 수용률을 살펴보면, 전주와 청주의 소년원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기소유예 결정 가운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에 전년 수준의 절반 정도인 8.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감소 추세가 발생된 범죄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검찰의 소년사건에 대한 대응 기조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호관찰소의 선도위탁의 경우도 2017년 이후 선도대상자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착취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에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정도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르바이트 시의 부당경험 비율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는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2~'24)」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는 정도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고, 특히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2%로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대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의 사회과나 진로·직업과 관련한 정규교육과정에 노동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도입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플랫폼 노동의 확대에 따라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 조건 아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제5·6차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현황 모니터링, 협약 심층 주제 현황 분석과 모니터링, 정책과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61] 등을 통해 최종 14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V-2-1. 아동 · 청소년인권 정책과제 총괄표

과제명	추진일정			관련부처	제안배경		
	1단계	2단계	3단계		실태 분석	협약 이행	의견 조사
Ⅰ. 일반이행 조치							
과제1. 제5·6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강화 및 이행 성과 진단	제5·6차 협약이행 모니터링 및 제7차 국가보고서 작업 시스템 구축	제5·6차 협약이행 성과 분석 및 미이행 과제 추진	제7차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협약과제별 소관부처		●	●
과제2. 아동·청소년 통계작성 시스템 체계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정기적 생산 및 제공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효율적 운영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핵심 자료생산 기반으로 활용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	●
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1. 학생자치활동 내실화 및 활성화	학생자치활동 실태 파악 및 학생자치 우수사례 발굴·확산	학생 및 교사 자치역량 강화	학생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교육부 시도교육청	●	●	●
Ⅲ. 폭력 및 학대							
과제1. 통합적 아동학대 데이터 구축	국내 아동학대 관련 통계	다문화, 장애 등 통합적	통합적 아동학대 데이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	●	

61) 정책과제는 협약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한 29명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과제 세부내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 작성되었다. 정책과제 자문에는 김희진 변호사(민변), 류정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경숙 교수(평택대학교), 정미나 연구위원(세종시 사회서비스원) 등이 참여하였다.

과제명	추진일정			관련부처	제안배경		
	1단계	2단계	3단계		실태 분석	협약 이행	의견 조사
	취합 및 조정	아동학대 통계 구축을 위한 연구 설계	구축				
과제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적정 배치 및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 전담 별도 선발 계획 수립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 기관 설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전문성 강화 보수 교육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	●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과제1.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활성화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 및 가출 경험 있는 청소년 대상 욕구조사	아동·청소년 욕구조사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	가정 밖(가출) 청소년 쉼터의 역할 및 기능 변화에 따른 모델링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	●	
Ⅴ.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과제1.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도입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시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예산 확보 계획 수립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시범 운영	교육부	●	●	●
과제2. 장애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심리지원 체제 구축	장애아동 청소년 인권보호 및 심리지원 요구 실태 조사	장애아동 청소년 인권보호 및 심리지원 모델 개발	장애아동 청소년 인권보호 및 심리지원 체계 마련	교육부 보건복지부	●	●	●
과제3. 아동·청소년 자살률 감소 전략	아동·청소년 자살 현황 및 요인 조사 연구	아동·청소년 자살 영향요인 대상 대응방안 마련	아동·청소년 전용 자살예방 센터 설립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	
과제4. 아동·청소년 약물예방교육 현실화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약물예방교	신종약물의 종류, 영향, 유해성 등 반영한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 센터 설립	보건복지부 교육부	●	●	●

과제명	추진일정			관련부처	제안배경		
	1단계	2단계	3단계		실태 분석	협약 이행	의견 조사
	육 계획 수립	교육자료 제작					
Ⅵ.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1. 사교육 의존도 경감을 위한 조치 시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효과성 검토	동법 검토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보완 및 법령 개정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논의 전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	●	●
과제2.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 활성화 추진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지속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 확대	여가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통비 등 경비 지원 도입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	●
Ⅶ. 특별보호조치							
과제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제한 요건 및 개선 방안 연구	이주아동 관련 출생 등록제도 개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법무부 보건복지부	●	●	●
과제2.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조치 강화	고용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강화 조치 시행	플랫폼 노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노동인권 교육 정규 교육과정 도입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	●	

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주요내용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Ⅰ-1. 제5·6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강화 및 이행 성과 진단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인 한국은 2019년 10월에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결과 130여개 협약이행 과제를 권고 받음. 협약 이행 성과를 담은 제7차 국가보고서는 2024년 12월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이 공표된 2019년 10월부터 유엔심의 주기에 맞게 중장기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이행상황 정기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년 정기적 이행 점검과 평가를 진행했어야 함(김영지 외, 2021). ○ 그러나 제5·6차 유엔 권고사항 이행 추진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소관부처별 이행 목표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협약 권고사항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방대한 협약 권고사항을 포괄하지는 못함),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협약 이행 및 평가·조정 기능도 작동되지 않았음. 이에 2024년 12월까지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약 이행 성과 진단 등 세부 작업을 서둘러야 함.
세부과제	1 제5·6차 협약이행 모니터링 및 제7차 국가보고서 작업 시스템 구축 - 보건복지부, 25여개 협약 소관부서, 아동권리보장원, 국책연구기관 등 협업체계 구축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협약 이행 및 평가·조정 기능 가동 : 협약 이행 성과 점검 안건의 회의 개최, 2024년까지 성과분석 및 협약이행 작업 추진 계획 수립 - 2019. 10월 유엔권고 이후 신규 인권 이슈 및 소관부처/부서 발굴 및 현행화 - 협약 소관부처 담당자 워크숍 : 25여개 부처 담당자 협약 역량 강화 - 제7차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실무작업집단 구성 - 시민사회 및 아동·청소년 당사자 참여 구조 마련 2 제5·6차 협약이행 성과 분석 및 미이행 과제 추진 - 협약 관련 유엔 동향 파악 및 주요 문서 분석을 통한 이행 성과 진단 기준 마련 : 지침, 가이드라인, 결의문, 일반논평, 타 협약 자료 중 아동·청소년 전략 등 - 대한민국 비준 각종 협약 이행 상황 중 아동·청소년 관련 동향 및 권고사항 분석(예: 2022년 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중 아동·청소년 분야, 선택의정서 비준 동향 등), 주요 국가 심의자료 분석을 통한 최근 인권 이슈와 심의 주안점 분석 - 130여개 유엔 권고사항별 소관부처별 협약이행 실적 취합·분석 - 인권실태 진전사항 관련 통계자료 발굴, 생산, 정리 및 부처 행정통계 취합 - 협약 미이행 과제 추진 전략 수립 및 지속적 이행 노력 3 제7차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24. 12월 국가보고서 유엔 제출 (유엔 문서작성 지침 준수)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제10조의3 신설로 협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규정하는 조항 마련 검토(김영지 외, 2021)
관련부처	○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25여개 협약 소관부처

Ⅰ-2. 아동·청소년 통계 작성 시스템 체계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아동·청소년 관련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권고를 통해(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11)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주체들이 분산되어 통계의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조정 기능을 갖는 종합적 통계생산 시스템이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음. ○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별도 시행에 따른 비교의 어려움 -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작성하여 가장 최근 작성된 통계는 2018년이었으나, 2021.12.21.에 작성주기를 3년으로 변경 -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작성되고 있으나, 가장 최근 작성된 통계는 2020년임 - 두 조사의 작성시기가 상이하여 조사결과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음 ○ 아동·청소년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함 ○ 매년 실시하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와 아동·청소년 분야의 타 조사와의 내용 중복 발생
세부과제	1 아동·청소년의 삶의 모습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생산 및 제공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육아정책연구원 및 통계개발원 등 관계 기관이 공동 개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지속적 생산 및 결과 공개 창구 운영 ※ 통계청 또는 관련 정부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플랫폼 마련 검토 가능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지속적 생산을 위한 전담부처(통계청) 지정 및 예산 확보 2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수립 및 추진 - 조사 주기, 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및 비교가능성 제고 - 각 조사를 작성하는 부처(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간의 업무협의를 통한 통계작성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및 추진 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아동·청소년 분야의 핵심 자료생산 기반으로 활용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매년 작성되는 국가승인통계이므로 인권지표 및 조사내용 검토를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 삶의 핵심적인 영역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는 기본 체계로 설정 -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부가조사를 실시하는 방식 도입 - 지역별 데이터 생산 요구 증가에 따라 지자체 단위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역정보 변수 생성 검토로 데이터 활용도 및 정책기여도 제고
법개정 등 특이사항	○ 분야별 아동·청소년 통계 생산 근거 법률에서 통계작성 총괄기능 관련 조항 보완 검토(소관부처별 검토 협의 필요)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II-1. 학생자치활동 내실화 및 활성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이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UN, 1989),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과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1, 24). 미래교육체제로서 OECD 교육 2030이 강조하는 학습자 주도성과 변혁적 역량도 참여와 자치의 철학과 연결됨(교육부, 2019.10.23.). ○ 2022년 본 연구 일환으로 수행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45.2%만이 학생회 자치권을 보장받는다고 응답하였고,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경우는 28.5%에 불과함. 10여 년 전부터 제기되어온 학교운영에 학생참여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과제는 아직 진전이 없음. ○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18세로 하향되고 16세에 정당가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참정권 교육이 중요하게 대두됨. 학생자치활동과 학교운영 참여 활동은 학교 현장에서 시행 가능한 기본적인 참정권 교육이기도 함. ○ 아동·청소년의 중요한 삶의 공간인 학교에서 다양한 자치참여활동을 통해 자율적·주체적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나가는 경험을 쌓도록 함.
세부과제	1 학생자치활동 실태 파악 및 학생자치 우수사례 발굴·확산 - 학급회의, 학생회,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자치활동 현황, 자치활동 과정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 등을 파악 - 시도교육청별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계획의 추진 성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사업, 학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 학생과 교사 자치역량 강화 - 학급회 및 학생회 구성·운영, 학생회 공간 운영, 학생참여예산제, 자율 동아리 및 축제 기획·운영, 민주적 학교규칙 제·개정, 학생총회, 학교운영 의사결정과정 참여, 교육과정 및 수업참여 등 다양한 자치활동에 필요한 학생과 교사 역량 강화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연수 프로그램 (관리자 연수 포함) 3 학생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회 위상과 지원사항 규정 - 동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 대표 포함 - 동법 시행령 제59조의5(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의견 청취 의무 명시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동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 학생회와 자치활동 규정 ○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5(의견수렴) 학생대표 참여 및 학생 의견 청취
관련부처	○ 교육부, 시도교육청

(3) 폭력 및 학대

Ⅲ-1. 통합적 아동학대 데이터 구축	
제안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된 현황 통계는 장애인 학대 현황과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학대 현황 통계가 각각 집계되고 있어 중복 집계의 문제가 발생함. ○ 그 외에 이주배경 청소년, 빈곤가정 청소년,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청소년에 대한 학대 피해 집계는 파악하기 어려움. ○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고,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전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세분화하여 식별 가능한 대상별 학대 피해 현황 통계가 필요한 상황임.
세부과제	1 아동·청소년 학대 현황 자료의 일원화 - 현재 집계되고 있는 학대 피해 현황 자료 취합 및 공통요인과 개별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계 조사 설계 - 세밀한 표본설계를 통한 대표성 있는 조사 수행 2 조사결과의 활용 -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파악이 가능한 조사 결과를 통해 대상자 별 학대 위험요인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학대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 - 파악된 대상자 특성에 맞춘 지원방안 제공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소관부서 간 협력체계와 업무총괄 지정 필요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등 실무차원의 연계·협력사항 논의 필요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Ⅲ-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적정 배치 및 전문성 강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2021년 기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율은 권고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는 미충족 지역이 88.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됨(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 2022.9.8.). ○ 또한 배치된 전담 공무원의 약 12%는 임기제 공무원이며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도 일반직 공무원이 순환보직 형태로 되어 있어 업무의 개연성과 전문성을 답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학대전담공무원 업무 특성 상 업무과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대상자에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순환보직, 임기제 공무원의 변경 등은 업무의 지속성을 감소시켜 학대예방 업무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학대의심사례 수에 따른 전담공무원 배치 확대 및 순환보직이 아닌 전문직 배치, 정규직 배치 등을 통해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세부과제	1 학대의심 사례 수 대비 적정 전담공무원 배치 -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에 따라 학대 의심 사례 50건 당 1명의 전담공무원 배치하되, 주, 야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 특성 상 담당 사례 수를 더 감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학대의 경우 야간 시간에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담공무원 확대를 통한 주, 야간 교대 근무 시스템을 마련. 2 전문직 전담공무원으로 전환 - 현재 순환보직으로 배치되는 전담공무원의 사명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원직 또는 전문직으로 별도 선발 - 순차적으로 순환보직에서 지원직, 전문직 전담 공무원으로 배치 완료 3 정규직 전담공무원 배치 - 현재 12% 정도의 임기제 전담공무원의 경우 전환 또는 신규 배치를 통해 100% 정규직 배치 - 학대 예방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 강화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제22조 등 현행법의 전담공무원 관련 조항 개선 검토 ○ 전문직 지방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지자체 조례 작업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Ⅳ-1.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활성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아동·청소년의 3.6%가 가출을 경험해 본 것으로 보고됨. ○ 2020년 기준 연간 12만명의 가정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이수진 의원실 보도자료, 2020.10.27.). ○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전체 인원의 27%(연인원 기준)로 조사되며, 본 연구 조사 결과 6.1%만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됨. ○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우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생활유지를 위해 비행을 범하기 쉬운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청소년쉼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가정복귀, 자립 등이 가능하도록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 할 필요성이 제기됨.
세부과제	1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이용에 대한 욕구조사 - 재학중인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쉼터에서 제공했으면 하는 서비스, 원하는 쉼터의 역할 또는 대안적 주거 형태 등에 대한 조사연구 진행 - 청소년쉼터 실무자 FGI를 통한 청소년쉼터 개선사항과 활성화 방안 조사 2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쉼터 역할 변화(미래형 청소년쉼터 모델 개발) -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역할, 제공 서비스 내용 등 변화 되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쉼터 모델 개발 - 현장 실무자와 정부부처 협의체를 통한 청소년쉼터 모델 안내 및 서비스 프로그램 공유 3 우수사례 공유(새로운 쉼터 모델의 시범 운영 및 확산) - 변화된 청소년쉼터 모델을 활용 결과 높은 이용율과 효과적인 가정 복귀 및 자립 경험을 가진 청소년쉼터, 근무자, 이용자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법개정 등 특이사항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V-1.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도입	
제안배경 및 필요성	○ 학령기 장애아동 중 70% 정도가 일반학교(특수학급, 통합학급)에 배치되어 있음. ○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통합학급 수업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연구결과들은 장애학생이 실제 통합학급의 수업에서는 소외됨을 우려하고 있음. ○ 2019년부터 시행된 교육부 '정다운 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협력교수를 운영하는 학교에 일부 시범적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배치한 결과 성과가 우수했음.
세부과제	1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배치한 '정다운 학교'에 대한 심층 연구 및 타 국가의 특수교사 자격제도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통합교육 지원교사' 모델 확립 - '통합교육 지원교사' 역할 및 지원 범위 구체화 2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시행을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 '통합교육 지원교사' 자격 요건 정비 - '통합교육 지원교사' 양성 관련 제도 정비 -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기준 마련 3 '통합교육 지원교사' 실행 예산 확보 - 통합교육 관련 예산의 전반적인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자격요건이나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요건을 정비할 때 초·중등교육법 제2절 교원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여 안 마련 필요
관련부처	○ 교육부

V-2. 장애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심리지원 체제 구축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장애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내용은 대부분 비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난 후 사후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장애아동·청소년 응답자의 19.8%가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지적장애인 7.8%, 자폐성장애인 8.1%임(보건복지부, 2022.9.6.) ○ 장애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인권 보호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매우 취약함. ○ 장애아동·청소년 당사자에게 초점을 맞춘 인권 보호 시스템이 필요.함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는 장애아동·청소년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김성희 외, 2017)
세부과제	1 장애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심리지원 실태조사 실시 - 학교 상담 지원 실태 조사 포함 - 장애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조사 2 장애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심리지원 모델 개발 - 장애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전문가 양성 - 장애아동·청소년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심리지원 체계 마련 - 장애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시범 운영 - 장애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실행 예산 확보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매뉴얼에 장애 유형별 지원 체계 삽입 검토 필요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

V-3. 아동·청소년 자살률 감소 전략	
제안배경 및 필요성	○ 20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7년 4.7%, 2018년 5.8%, 2020년 6.5%, 2021년 7.1%(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 높은 자살률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이슈임. ○ 정부에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자살예방정책과,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자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이지만,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가 성장중인 청소년에게 더욱 취약한 문제가 될 수 있음.
세부과제	1 아동·청소년 자살 관련 요인 탐색 연구 - 아동·청소년의 자살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도 많이 있지만, 대상과 영향요인의 영역을 더욱 세분화하여 감소 방안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연구 수행 - 학교급별, 성별, 위기 상황별(학업중단,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범죄, 우울, 약물중독 등), 코로나19 영향 등 자살 실태 파악 - 자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자해 관련 구체적인 실태파악 필요 - 자살 영향 요인 파악에 중점을 둔 연구를 통한 자살 패널 데이터 구축 2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 수립 - 장애, 다문화, 한부모, 빈곤 등 세분화 된 대상별 자살 현황과 예측요인 등의 파악 후 이를 근거로 하는 자살예방 대책 수립 - 실태 조사에 따라 발견된 자살위험 대상자 집중 개입 3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센터 건립 -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자살예방센터 건립과 전문성을 갖춘 대응인력 배양 -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 자살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등 현 위기지원 자원간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스크리닝·조기발견(교육부), 청소년안전망(여성가족부), 자살예방센터(보건복지부) 등 관련 자원간 협력체계 마련
관련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V-4. 아동·청소년 약물예방교육 현실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들어 국내에 다양한 신종 약물이 반입되면서, 10대와 20대 청소년들이 약물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더하여, 각종 매스컴을 통해 연예인들의 약물 이용 사례와 관련 사건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약물 사용의 유해성 대한 민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임. ○ 정부에서 사후 조치로서, 마약 용어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욱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연령기 아동·청소년들에 약물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약물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할 필요성이 제기됨.
세부과제	1 약물 남용 현황 파악 및 약물 남용 예방에 대한 현실성 있는 교육 계획 수립 - 최근 새로 개발 및 반입되고 있는 다양한 환각성 약물에 대한 종류 및 남용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 각 약물에 대한 정리와 심리, 정서, 신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자료 제작 - 약물남용예방에 전문성을 가진 강사 인력 선발 및 교육 진행 - 아동·청소년들이 각종 약물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플 개발 및 교재 배포 2 약물 남용 예방 교육 연 2회 실시 의무화 - 개발된 교육자료와 강사진을 통한 약물 남용 예방 교육 실시 -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 - 약물 남용 예방 교육에 대한 법정교육 지정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약물 남용 예방 교육의 연 2회 실시 의무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이용 청소년에 대한 약물 남용 예방 교육 의무화
관련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Ⅵ-1. 사교육 의존도 경감을 위한 조치 시행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심의결과, 한국아동·청소년의 과도한 학업부담을 우려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정상화법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2). 본 연구일환으로 실시한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 해당 권고 이행 성과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지적됨.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심화 ○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가 위축되고 있고, 이는 곧 건전한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교육 문제는 단순히 입시제도를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필요.
세부과제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효과성에 대한 포괄적 검토 및 제도 개선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동법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 의존도를 경감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법제화 ※ 사교육 의존의 출발점인 영유아 및 초등돌봄체계 단계 보편적 아동돌봄 체계의 통합적 구축에 대한 의제 논의 병행 2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논의 전개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조정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2022년 9월 27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논의 개시 -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위한 시간표를 구축하여 이에 따라 체계적 논의 전개 - 국가교육위원회 내 전담조직 설치 및 대국민 보고회 실시
법개정 등 특이사항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효과성 검토에 따라 필요 시 개정 추진
관련부처	○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VI-2.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 활성화 추진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이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보장하라고 권고하였으나(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40.4%의 아동·청소년이 학교공부 외에 하루 3시간 이상을 학습에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놀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신체활동 강화 방안 제시, 중학교에서 스포츠 클럽 활동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평일 여가시간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 문화예술 관람이나 참여, 사회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전체 여가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으나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놀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움.
세부과제	1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각종 매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공익광고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 대상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2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를 위한 법적 담보 확보 -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교육기본법 등에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와 관련한 조항 추가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아동·청소년 여가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규정됨에 따라 후속 정책 개발 및 시행 모니터링 3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 확대 - 아동·청소년의 놀이, 여가,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내 시설의 지속적 확충 -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놀이, 여가, 스포츠 활동의 개발 및 보급 - 여가 및 스포츠활동과 관련한 교과시수 확대 및 수업운영 모델 연구·확산 -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통비 등 경비 지원 도입 - 아동·청소년 여가활동 바우처 지원 : 세종시 청소년 꿈끼카드,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카드 등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교육기본법 개정 필요 - "유아(아동, 청소년)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체육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예시)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아동의 여가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포함됨. - 제1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7) 특별보호조치

Ⅶ-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협약과제 이행 노력은 5점 만점에 1~2점대로 매우 낮게 나타남(본 연구 전문가 협약 모니터링 결과). ○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이주아동에게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 제공되지 않음. ○ 또한 난민신청자 아동은 부모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에 따른 수급권자가 될 수 없고,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가 될 수 없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 아동이 배제되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이라고 결정된 바 있음. ※ 본 연구 일환으로 실시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이행 모니터링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제안된 의견(김사강, 김진, 전경숙)을 토대로 구성함.
세부과제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일반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제한 요건 및 개선방안에 대한 포괄적 연구·검토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법령 개정 - 대한민국 국적인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인 외국인이 자녀 양육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안정적인 취업과 사회보장 제도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체류자격 개선 · 이주아동 출생등록제도 개선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이주배경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범위 보완사항 논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및 이주아동 출생등록 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법무부 지침·매뉴얼 개발 등 ·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하여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호법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의 관련 조항 개정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영유아보호법, 아동수당법, 국민건강보호법의 관련 조항 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특례규정 개정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특례규정 개정
관련부처	○ 법무부, 보건복지부

Ⅷ-2.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조치 강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여성가족부는 2022년 6월 29일,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2~'24)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함(여성가족부, 2022.6.29.). ○ 그러나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비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5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아르바이트 상황의 변화 양상 및 주요 주체별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개선 방향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1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 강화 -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사회과 또는 진로·직업과 관련한 정규교육과정에 관련 내용 도입 추진 - 교육기본법 등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2 고용주 대상 노동인권교육 강화 - 청소년을 노동자로 고용 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과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 의무화 및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강화 - 사업주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화 3 플랫폼노동의 확대에 따른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조치 강화 - 청소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근로여건 점검 및 보호 조치 강화 - 연소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예외 원천불가 원칙 적용을 통한 연소근로자 보호 조치 강화
법개정 등 특이사항	○ 교육기본법 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예시) 내용의 조항 추가 ○ 근로기준법 개정 - "사용자는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예시) 내용의 조항 추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하는 연소자는 법125조에 의한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예시) 내용의 조항 추가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승모, 임경원, 김주희, 오현준, 김수지, 김승지 (2021). '정다운 학교' 운영 교사의 통합 경험과 의미: 유치원, 초등학교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통합교육연구, 16**(2), 103-130.

강옥려, 손일지 (2021). 초등학교 통합교육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진로교육 실태 및 통합학급 교사의 인식. **한국초등교육, 32**(1), 371-386.

강윤아, 신현기 (2019). 초등학교 교사의 통합학급 운영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통합교육연구, 14**(1), 1-28.

강정은 (2018). **아동·청소년기본법의 제정: 주요내용과 쟁점**. 국가인권위원회 2018 아동인권보고대회 자료집.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 basicboard/view?currentpage=5&menuid=001003001004&pagesize=10&boardtypeid=19&boardid=7603756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2018 의료급여통계**.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2019 의료급여통계**.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2020 의료급여통계**.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2017~2019). **2017~2019 경찰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경찰청 (2020). **2020 경찰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경찰청 (2021). **2021 경찰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경찰청 (2022.6).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 서울: 경찰청.

경향신문 (2022.01.01.). **세상에 있지만 행정상 없는 '미명이'**.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1011451001#c2b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고용노동부 (2019.4).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2020.4).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2021.5). **2020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2022.5).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a).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b).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a).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b).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a).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b).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a).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b).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c).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a).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b).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부처합동 (2019.9.9).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https://www.op

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94247에서 2022년 10월 21일 인출.
교육과정평가원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서울: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원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서울: 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1998). **특수교육실태조사서**. http://www.nise.go.kr/ebook/site/20200915_143943에서 2022년 9월14일 인출.
교육부 (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교육부 (2018.3.15). **보도자료: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교육부 (2018~2020). **2018~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9).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교육부 (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9.3.26). **보도자료: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교육부 (2019.10.23.) **보도자료: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개막.**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78782 에서 2022년 9월 23일 인출.
교육부 (2020). **2020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교육부 (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0.7.23). **보도자료: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교육부 (2021a).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1b). **2021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교육부 (2021.2).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1.5.12.) **보도자료: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84387에서 2022년 9월 18일 인출.
교육부 (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2.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2.8.30). **2022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231&pWise=main&pWiseMain=C3에서 2022년 8월 31일 인출.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제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1).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교육부, 질병관리청 (2022).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질병관리청.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 **직업계고 취업통계**. https://kess.kedi.re.kr/stats/intro?menuCd=0112&survSeq=2020&itemCode=01#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a). **2021 간추린 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b). **2021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 후 상황.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5493&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A 2022년 8월 25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c). **2021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1&publSeq=2&menuSeq=0&itemCode=02#에서 10월 11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d). **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세부 분석 자료**. p.1, p,3.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0918&topic=에서 2022년 8월 25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21&lsiSeq=233989#searchId0에서 2022년 9월 14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0).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 아동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12.22.). **보도자료: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공백 심각**.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2&menuid=001004002001&pagesize=10&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C%BD%94%EB%A1%9C%EB%82%98&boardtypeid=24&boardid=7606132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1.07.08.).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외국국적 미취학 아동의 평등권 보장해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6932&menuid=001004002001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1.07.28.). **보도자료: 미등록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보완해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069&menuid=001004002001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2). **병원의 외국인에 대한 선별진료 강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 결정례집(2016-2022.3.)

국가인권위원회 (2022.4). **2021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2.05.03.). **보도자료: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C%95%84%EB%8F%99&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7929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2.07.19.). **보도자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C%95%84%EB%8F%99%EC%96%91%EC%9C%A1%EC%8B%9C%EC%84%A4&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8176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국무조정실 (2022.03.31.). **[보도자료]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https://www.opmgo.kr/opm/news/press1.do?mode=view&articleNo=144100&article.offset=250&articleLimit=10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국제아동인권센터 (2019.09.2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 기록**. 국제아동인권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ildrights/221661175709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1.11.09.). **제391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classCode=2&daeNum=21&commCode=AB&outConn=Y#none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기획재정부 (2017-2020). **나라살림예산**. 세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21-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세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사이트(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index)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8). **2018 기금사업활동**.

김경열 (2020). 초등학교 교사의 특수교육학 전공 선택이 통합교육에서의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에 미치는 태도 변화.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3), 189-205.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민경, 권효원, 김나라, 박나실, 방혜진, 안유진 (2021).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2021)**.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봉세 (2019). 통합학급 교사가 통합교육에서 직면하는 학습지도에 대한 어려움 요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799-817.

김선숙, 김시아, 김아래미, 안현미 (2022). 2021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분석 연구. **아동권리 ISSUE & FOCUS, Vol.1**, 50-55.

김성희, 이연희, 오욱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오다은,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순희, 이은주 (2020). 초등학교 완전통합학급의 운영 현황 및 담임교사의 지원 요구. **통합교육연구, 15**(2), 1-27.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5-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연구보고 17-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연구보고 19-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보고 21-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황세영,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보고 20-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은경, 이숙정 (2018). 초등 통합학급교사의 장애학생 과학수업 인식 및 지원요구에 대한 초점집단면담 연구.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1**(4), 125-157.
김은영 (2017). 초임 초등 통합교사의 발달장애아동 행동문제 중재 실태 분석. **발달장애연구, 21**(1), 151-168.
김진애 국회의원 (2020.10.19.). **보도자료: 미성년자 ·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구속률 급감**.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space406&logNo=222119760258&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김혜리, 백유미 (2017). 초등학교 통합학급 교사의 통합교육 실천 경험. **발달장애연구, 21**(1), 127-152.
김희진, 김상원 (2020).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공동(편.),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pp. 413-457). 경인문화사.
김희진, 임희진, 정윤미 (202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연구보고 20-R5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 (2022.9.8). **아동학대 증가하는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미충족 88%**.
달빛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jsessionid=E637543A5301B29307DE6C3234DB57F8.egenlb?infoDiv=03에서 2022년 10월 11일 인출.
대검찰청 (2018.10). **2018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9.10). **2019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20.10). **2020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21.10). **2021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 (2021.8.26.).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 (2022.9.29.).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세종: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 (2022a).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075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대한민국정부 (2022b). **제2·3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보완보고서**.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RPD%2fAIS%2fKOR%2f49683&Lang=en에서 2022년 9월 18일 인출.
류연규, 백승호 (2011). **복지국가 아동가족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 한국아동복지학.
문화체육관광부 (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8b). **2018년도(20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9a).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9b). **2019년도(2018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0a).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0b).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453&pDataCD=0417000000&pType=에서 2021년 9월 14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2020c). **2020년도('19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a).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b).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563&pData

CD=0417000000&pType=02에서 2022년 8월 26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2021c).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d). **2021년('20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박미혜, 권순우 (2019).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8**(3), 135-163.
박준태, 민천식, 김용욱, 이태형 (2020). 통합체육 수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수업을 바라는가?: 초등교사 중심 질적 분석. **한국스포츠학회, 18**(2), 89-102.
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정유나 (2021).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수탁보고 2021-03). 세종: 교육부.
배상률 (2021).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연구보고 21-R2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무부 (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19). **2018 법무연감.**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21).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22).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22.01.05.). **보도자료: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 https://www.moj.go.kr/bbs/moj/182/555239/artclView.do에서 2022는 9월 5일 인출.
법무부 (2022.01.20.). **보도자료: 법무부,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https://www.moj.go.kr/bbs/moj/182/555674/artclView.do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법무부 (2022.05.03.). **보도자료: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https://www.moj.go.kr/bbs/moj/182/558819/artclView.do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법무부 (2022.06.14.). **보도자료: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 https://www.moj.go.kr/bbs/moj/182/560241/artclView.do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법무부 (2022.07.26.). **보도자료: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https://www.moj.go.kr/bbs/moj/182/561494/artclView.do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법무부 (2022.7). **2022 교정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 (2022.9.26.). 소년보호사건 국선 보조인 조력 횟수 참고자료,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 참고자료,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 (2021.8.26.).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 (2022.9.23.).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법무연수원 (2020). **2019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21). **2020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22). **2021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원행정처 (2020). **2020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1). **2021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2). **2022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법제처 (2008.10.27.).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7922&lawCd=2000000126126&lawType=TYPE5&currentPage=4&keyField=lmNm&keyWord=%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법제처 (2022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22년 8월 30일 인출.

법제처 (2022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22년 8월 30일 인출.

법제처 (2022c).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22년 8월 30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0-2021).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0-202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2-2021).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2-2

02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4-2020).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014-202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_N005&conn_path=I2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5~2020). **2015~2020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2.15.). **보도자료: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 (2018a).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7.12.31.기준)**.
보건복지부 (2018b).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9a). **2019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8.12.31.기준)**.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9.05.24.).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522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9.12.31.현재)**.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2020c).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2020d).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401121&conn_path=I2에서 2021년 10월 12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3.31.). **보도자료: 2019년도 사회복지지설(1,258개소)평가 발표**.
보건복지부 (2021a). **2021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연도별).**
보건복지부 (2021b). **2021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20.12.31.현재).**
보건복지부 (2021c).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2021d).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보건복지부 (2021e).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통계청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1f).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2020년 12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2021.08.02.). **[별첨]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703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1.09.16.). **2021 아동복지시설 현황**(2021.12.31. 기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2a).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2b). **2021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2c). **2022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2d).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2022e).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보건복지부 (2022f).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22g). 내부자료: 소아전문응급센터 사업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2h). 내부자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현황.
보건복지부 (2022.8.9.). **보도자료: 세상을 바꾸는 아동의 목소리-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 개최(8.9-8.1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2539&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에서 2022년 9월 30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2.9.6.). **보도참고자료 별첨: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주요 지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2831에서 2022년 10월 1일 인출.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9).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책무 –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수립 준비** -. 2019 아동인권증진사업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자료집.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20).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a).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b).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c). **2021 입양실무매뉴얼**. 아동권리보장원 웹사이트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177&bbsId=1014&nttSn=2680&cataGori=da06&tabName=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a).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b). **2022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c). 제1회: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 **아동을 권리주체로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기본법 제정 릴레이 아동권리포럼 자료집.**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2021). **2021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 다함께돌봄 소식지**.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2022)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생활시설 평가지침.**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 **2021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2014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2015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2016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2017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2018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 **2019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2). **2022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 지침**.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2022 자살예방백서**. 서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2022.04.01.). **활동소식: [기자회견] 출생통보제의 조속한 도입과 보편적 출생등록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http://www.ubrkorea.org/#none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2022.09.16.). **활동소식: [성명]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을 지지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http://www.ubrkorea.org/#none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복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bokgwon.go.kr/fund/02_01.jsp에서 2021년 10월 14일 인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22). **202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https://www.koreahana.or.kr/home/kor/promotionData/information/ researchData/index.do?ptSignature=QnrvtOekxiPklgsn74dfsSedjLSUYFR60gbfDUsymjQ%3D&menuPos=110에서 2022년 8월 27일 인출.

비마이너 (2022.1.4.). "**장애학생도 집 앞 학교 다니고 싶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01에서 2022년 9월 18일 인출.

비마이너 (2022.08.26.). **대구 달서구에서도 '발달장애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45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사회보장위원회 (202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세종: 사회보장위원회.

서선진, 박경옥 (2019). 초등 일반교사가 인식하는 시간제 통합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실태 및 개선방안. **특수교육학연구, 54**(1), 1-2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한국아동복지학회, 아동탈시설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 장혜영 (2022.1.27.). **아동탈시설 국회 토론회 '아동의 시설 보호를 넘어, 변화를 위한 모색' 자료집**. 서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서정아, 조아미 (2021)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권리보장원 (2021.12.02.). **[보도자료]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책의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첫 1년.**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055&bbsId=1022&nttSn=3150&cataGori=&tabName=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2022.09.02.). **[보도자료: 복지부 공동배포]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 – 연속 공개토론회 제5차(최종) 토론회 개최**.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055&bbsId=1022&nttSn=4220&cataGori=&tabName=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2022). 내부자료: 아동정책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영향평가 홈페이지. https://child.ncrc.or.kr/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dadol.or.kr/board/center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양옥수 (2018). 인권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정다운 학교' 탐색. **한국통합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18,** 3-12.

엄선희 (2019). 아동의 놀 권리와 통합놀이터- 법적 관점에서 본 통합놀이터의 필요성과 의의. 국회의원 김영호,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 더 도시연구소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23-38.

엄선희 (2022).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살펴본 장애인교육권 정책안. 장애인교육아올다 토론회 자료집: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57-64.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8). **2018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9b). **2019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0a). **202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0b).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0c).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 (2020.3.31.).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9.12.31.기준).
여성가족부 (202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 (2021.3.2.).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20.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91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2a). **202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2b).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2c). **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2d).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2.3.7.). **2021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21.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2년 8월 25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2.4). **2021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에서 2022년 8월 29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2.05.25.). **보도자료: 2022 청소년 통계.**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72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여성가족부(2022.6.29.). **보도자료: 새로운 불법·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안전 지킨다-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7&bbtSn=708635에서 2022년 10월 1일 인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내부자료 (2022.10.05.). 아동청소년지원센터 현황.
여유진 (2018).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8**(5), 25-39.
여유진, 허은솔, 이원진 (2021). **2021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합뉴스 (2021.9.16.). **아동학대 즉각분리 6개월간 940건 분리보호…즉각분리는 하루 1.1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 =sec&sid1=100

&oid=001&aid=0012667854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오연희, 김라경 (2018). 소규모 초등학교 특수교육서비스에 대한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 연구. **통합교육연구, 13**(1), 29-55.
원혜옥, 강정은, 마한얼, 김재희 (2021).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지도.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에서 2022년 10월 17일 인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6).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9호. 국가인권위원회 (편.), (2021),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021년 개정판. (pp.158-188).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정책자료 2011-04) (pp. 467-489).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정부 공식 번역본). 세종: 보건복지부.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TreatyID=5&DocTypeID=11에서 2022년 10월 17일 인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2019.9.20.).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VsY46ayTjgukPStoprqZw0NPVVILwflrbt4rCWdoe8/edit?usp=sharing에서 2022년 9월 18일 인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14).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정부 공식 번역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대한민국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2fC%2fKOR%2fCO%2f2-3&Lang=en에서 2022년 9월 18일 인출. (정부 공식 번역문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901&CONT_SEQ=374445)

유엔최고대표사무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ohchr.org/en/documents/ general -comments-and-recommendations/draft-general-comment-no-26-childrens-rights-and에서 2022년 10월 14일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검색: 상세검색 - "제안대수: 제21대(2020-20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처리결과: 가결" 검색 결과 참조(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Detail.do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2008.12.31.). [1803397]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P0R8G1Q2B3A1W1X7G4H8Y5D1M2X6K5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2022.03.04.). [211486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I2N2C0K3K0U4T1R5P3T1I4K9N2C4H8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2022.06.08.). [211616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등 38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P2E0H6K1U4E1N6I5H7F4C7A8V2V8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2022.06.29.). [21162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S2G2R0G6W2J9N1V7T5N4H3Y8F7B7A5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이대식, 김광백, 정가희 (2022). 일반학교, 혁신학교, '정다운 학교'에서의 통합교육 경험과 인식: 인천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6**(4), 251-277.

이수진 의원실 보도자료 (2020.10.27). **가출 청소년 12 만 명 中 청소년 쉼터 27%만 이용**. https://blog.naver.com/sjl2778/222127726421에서 2022년 10월 21일 인출.

이윤경 (2021).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Nabo Focus 2021.2. 제30호**. 국회예산정책처.

이현주, 박은혜 (2018). 청각장애 초등학생을 담당한 통합학급 교사의 인식과 경험 연구. **특수교육, 17**(3), 127-155.

인천 서구청 새소식. (2022.05.30.). 출생 미신고아동 집중발굴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main/bbs/bbsMsgDetail.do?msg_seq=26333&bcd=notice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장애인교육아울다 (2022).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 중간결과,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및 법 개정 초안 개발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전연주, 강영심, 옥혜숙 (2022). '정다운 학교'에서 협력교수를 실행한 초등 특수교사와 통합학급교사의 경험 분석. **통합교육연구, 17**(1), 1-30.

정동영, 박윤아 (2020). 일반교육 교사의 통합교육 실행 지원요구와 자원활용 경험: 초등학교과정을 중심으로.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3**(2), 31-49.

정선욱 (2022). **보호아동의 시설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아동탈시설 국회토론회 자료집:** 10-36.

정운선 (2017). 통합교육연수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교사의 인식. **질적탐구, 3**(2), 63-100.

정효철, 전혜인 (202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특수교사와 통합교사의 인식과 운영실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5), 117-134.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2021). **202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현황 조사 결과**. 서울: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질병관리청 (2022). **2020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청주: 질병관리청.

청소년수련시설포털 (2022.8.26.). 시설현황 통계, 지역별 현황(2022년 8월 26일 기준). 청소년수련시설포털 웹사이트. http://youthnet.or.kr/?page_id=80&page=2에서 2022년 8월 26일 인출.

최승원 (2022). **아동기본법 제정 기본방향. 제5회: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방향.** 아동을 권리주체로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기본법 제정 릴레이 아동권리포럼 자료집.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0). 2020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2020년 4월 기준). https://www.hub4u.or.kr/usr/portal/board/146/commonBbsDetail.do?p_pageno=2&p_listscale=10&p_bbs_id=146&p_srch_type=p_srch_pst_title_cntnt&p_pst_id=1398&p_srch_text=에서 2022년 9월 15일 인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1). 2021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2021년 4월 기준). https://www.hub4u.or.kr/usr/portal/board/146/commonBbsDetail.do?p_pageno=1&p_listscale=10&p_bbs_id=146&p_srch_type=p_srch_pst_title

_cntnt&p_pst_id=1471&p_srch_text=에서 2022년 8월 27일 인출.
통계청 (2012, 2014, 2016, 2018, 2020). 2012-2020 사회조사.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통계청 (2018.3.15). **보도자료: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통계청 (2018~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https://kostat.go.kr/ 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34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2년 8월 24일 인출.
통계청 (2019.3.12). **보도자료: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통계청 (2019.9.24). **보도자료: 2018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2020.3.11). **보도자료: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통계청 (2020.9.22). **보도자료: 2019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2021.9.28). **보도자료: 2020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2022).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통계청 (2022.3.11). **보도자료: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통계청 (2022.7.19). **보도자료: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2022.9.27.). **보도자료: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각 연도). e-나라지표.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738&board_cd=INDX_001에서 2022년 8월 27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2021).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51&board_cd=INDX_001에서 2022년 8월 25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2에서 2021년 9월 2일, 2022년 10월 5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1에서 2022년 8월 29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영아사망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

=DT_1B34E08&vw_cd=MT_ZTITLE&list_id=F_27&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2&path=%252Fcommon%252Fmeta_onedepth.jsp에서 2022년 10월 11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장애아전문, 통합 어린이집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5#quick_02;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지난 1년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당한 경험(2017~202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7&tblId=DT_ 43701N_194&vw_cd=MT_ZTITLE&list_id=D2_437001_00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1년 8월 21일 인출.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에서 2022년 8월 29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7~2021) 학교급별 방과후 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비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501&vw_cd=MT_ZTITLE&list_id=H1_10_00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2년 10월 16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6~2021)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2년 10월 11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7~2021)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2년 10월 11일 인출(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서 2레벨 선택).

통계청 KOSIS.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01&conn_path=I2에서 2022년 11월 11일 인출.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

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SelectStatsBoxDiv에서 2022년 10월 5일 인출.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교원 1인당 학생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6에서 2022년 9월 15일 인출.

통일부 (2022.3). **2022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통일부 (2022.6).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2022.6월 기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22년 8월 26일 인출.

한겨레 (2022.06.16.). **세 대통령과 세월호 참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7292.html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한겨레 (2022.08.10.). **폭우에 반지하 가족 3명 숨져…버스정류장에 깔려 사망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4006.html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한국리서치 (2022).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결과보고 자료**. 서울: 한국리서치.

한국보육진흥원 (2018). **장애아 통합보육 컨설팅 매뉴얼**.

한국성폭력상담소 (2022.3).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https://www.sisters.or.kr/consult/stat/6214에서 2022년 8월 29일 인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에서 2022년 10월 5일 인출

한국일보 (2022.05.03.). **"주린이·요린이" 이런 말 이젠 못 하나…인권위 "아동 비하 우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9149?cds=news_media_pc&type=editn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한준, 정병은, 장미혜, 김대훈, 이수현 (2021).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2019.11).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18년 11월 1일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0.11).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19년 11월 1일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1.1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0년 11월 1일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GrK7W-FqVupq+xriLgQUMwRY.node5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8648에서 2022년 8월 26일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에서 2021년 9월 12일 인출.

헤럴드경제 (2022.10.20.). **'댈'에 빠진 10대, 2030여성은 '물뽕' 걱정…'마약민국'이 현실? [청정국? 마약민국?]**.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20000184에서 2022년 10월 21일 인출.

황유정, 이동성 (2021). 통합학급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 지도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종합연구, 19**(3), 1-20.

황현주, 김효정 (2022). 초등교사와 학부모의 학교환경 언어재활 지원 요구에 대한 질적 연구. **언어치료연구, 31**(1), 113-124.

흥사단 (2008.11.11.). [서울흥사단 성명] **아동청소년법률 통합 반대 성명.** https://www.yka.or.kr/html/alim/statement.asp?no=10201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사)탁틴내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2022.09.07.).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간담회 자료집**. https://m.sc.or.kr/mobile/news/reportView.do?NO=71486에서 2022년 9월 5일 인출.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2010.02.04.). **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적인 아동정책의 추진의지를 밝히고 아동기본법을 신설하라**. http://grouphome.kr/pages/page_88.php?sn=5478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Duroo-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et al. (2022). NGO Thematic Alternative Report on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Migrants with Disabilities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RPD%2fCSS%2fKOR%2f49538&Lang=en에서 2022년 9월 18일 인출.

Mcleskey, J., Waldron, N. L., Spooner, F., & Algozzone, B. (2014). What are effective inclusive schools and why are they important? In J. Mcleskey, N.

L. Waldron, F. Spooner, & B. Algozzone. Handbook of effective inclusive schools: Research and practice (pp.1-14). New York: NY Routledge.

OECD. stat.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rate. https://stats.oecd.org에서 2022년 10월 10일 인출.

OECD. stat. Family database. Total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families as a % of GDP. https://stats.oecd.org/에서 2022년 10월 10일 인출.

Theytaz Bergman, Laura, Fegan, Roisin, Myers, Lisa (2014). The reporting cycle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Geneva: Child rights Connect.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UNCESCR) (1991). General comment No. 4: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rt. 11 (1) of the Covenant). Retrived September 5, 2022, from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ESCR%2fGEC%2f4759&Lang=en.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UNCRPD) (2022).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CRPD/C/KOR/CO/2-3). Retrived Sepember 10, 2022, from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2FC%2FKOR%2FCO%2F2-3&Lang=en.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03). General Comment No. 5(20003):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GC/5). Retrived August 30, 2022, from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GC%2f2003%2f5&Lang=en.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05). General comment No. 7 (2005):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CRC/C/GC/7). Retrived September 1, 2022, from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GC%2f7%2fRev.1&Lang=en.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3). General

comment No. 14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 (art. 3, para. 1)(CRC/C/GC/14). Retrived September 1, 2022, from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GC%2f14&Lang=en.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5).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ro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d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9). General comment No. 24 (2019) on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 (CRC/C/GC/24). Retrived Sepember 5, 2022, from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GC%2f24&Lang=e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GA) (2010).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A/RES/64/142). Retrived September 5, 2022, from https://undocs.org/A/RES/64/142.

United Nations(UN)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ES/44/25). 외교통상부 역(1991). 유엔아동권리협약(정부 공식 국문번역본).

United Nations(UN) (200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S/61/106).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문번역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22년 10월 11일 인출.

Wee 웹사이트.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2에서 2022년 10월 11일 인출.

부 록

1.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초등용. 중등용)
2. 2022 특별조사 : 특수교육 대상자 통합교육 현황과 지원과제(교사용)
3.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부록

1.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초등용·중등용)

승인번호 제402001호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2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초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 참여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설문지 작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ankook Research
※ 담당자 : 김영지 선임연구위원 044-415-2136 최홍일 전문연구원 044-415-2187	※ 담당자 : 박종경 차장 ※ 문의전화 : 080-430-1000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가족 구성, 부모의 학력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별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 남자 ☐ 여자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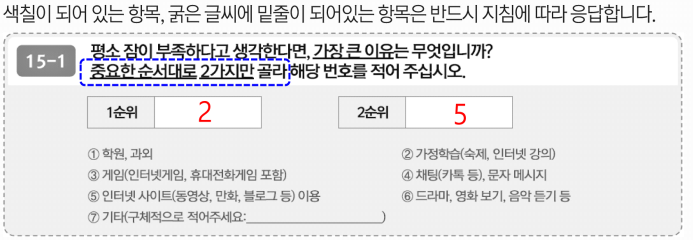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04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Ⅰ. 참여활동

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다음은 학교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교의 규칙(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서 학생의 동의없이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대한 개인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이 잘못한 일로 벌(징계)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3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란, 아동정책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시청,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아동·청소년의회,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4 우리 사회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5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아동을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II. 가정 및 학교 환경

6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이나 무시하거나 욕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2)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4)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7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맞아 본 경험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몸을 만짐)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8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9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이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불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1번 문항으로

10-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 부담, 성적 등)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 때문에(불화, 폭행, 간섭 등)
③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Ⅲ. 복지 및 보호

11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2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13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나요?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나요?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14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각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 (예: 21시 30분, 22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 (예: 09시 0분, 22시 0분)

① 일어나는 시각 보통 [ ][ ] 시 [ ][ ]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보통 [ ][ ] 시 [ ][ ] 분

15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예 → **15-1**

② 아니오 → 16번 문항으로

15-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① 학원, 과외
②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③ 게임(인터넷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④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⑤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⑥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6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치(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17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17-1**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 18번 문항으로

17-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 부담, 성적 등)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8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삶의 만족도 낮음		중간							삶의 만족도 높음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9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선생님(예: 청소년 전화 1388)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0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20-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② 없다 → 21번 문항으로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Ⅳ. 교육 및 여가·문화

21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21-1**로

② 없다 → 22번 문항으로

21-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하기 싫어서
⑥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2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23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해 보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23-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24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25 평일 학교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나요?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V. 인권 일반

26 다음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27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28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도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아동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전교학생회 등)은 학교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9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① 있다 → ② 없다 → 30번 문항으로

29-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9-2 인권교육이 각각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인권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①	②	③	④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①	②	③	④

30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1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최근 1년 동안 장애이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장애이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편견과 차별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인식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입니다.

① 있다 → ② 없다 → 33번 문항으로

32-1 장애이해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33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장애를 가진 친구가 일반학교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3) 장애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 ][ ][ ][ ] 년도에 태어남

배문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⑩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4 여러분과 부모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1) 나	① 대한민국	② 북한	③ 그 외 다른 나라
2) 아버지	① 대한민국	② 북한	③ 그 외 다른 나라
3) 어머니	① 대한민국	② 북한	③ 그 외 다른 나라

배문5 학생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배문6 학생의 학업 성적(2022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7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인번호
제402001호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2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 참여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설문지 작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김영지 선임연구위원 044-415-2136
최홍일 전문연구원 044-415-2187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 박종경 차장
※ 문의전화 : 080-430-1000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가족 구성, 부모의 학력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별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 남자 ☐ 여자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9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 ② 아니오 → 10번 문항으로

9-1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04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21-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 2순위 5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Ⅰ. 참여활동

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다음은 학교의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4) 선생님은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	①	②	③

3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학교운영위원회'란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학교규칙, 현장학습,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

4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5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 참여기구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아동·청소년의회,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6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7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8 다음은 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부당한 간섭 없이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 **9-1**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② 아니오 → 10번 문항으로

10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	①	②	③	④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10-1 (위 문항에서 ③번 또는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경고 및 훈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가정 및 학교 환경

12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2)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4)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14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15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7번 문항으로

16-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6-2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이용해 본 적 없다 → 17번 문항으로

② 청소년 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6-3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Ⅲ. 복지 및 보호

17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8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19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20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각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 (예: 22시 30분, 23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 (예: 09시 0분, 22시 0분)

① 일어나는 시각 보통 [ ][ ] 시 [ ][ ]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보통 [ ][ ] 시 [ ][ ] 분

2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22번 문항으로

21-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2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23번 문항으로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

22-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3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4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 25번 문항으로

24-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u>하나만</u>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5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삶의 만족도 낮음			중간						삶의 만족도 높음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6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u>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u> 선택해 주십시오.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선생님(예: 청소년 전화 1388)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7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28번 문항으로

27-1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없다	1-2번	3번 이상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①	②	③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①	②	③
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①	②	③
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①	②	③
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①	②	③
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①	②	③
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①	②	③
9) 최저임금(2021년 기준 시간 당 8,720원, 2022년 기준 시간 당 9,16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①	②	③

28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29번 문항으로

28-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7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28번 문항으로

27-1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없다	1-2번	3번 이상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①	②	③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①	②	③
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①	②	③
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①	②	③
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①	②	③
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①	②	③
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①	②	③
9) 최저임금(2021년 기준 시간 당 8,720원, 2022년 기준 시간 당 9,16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①	②	③

28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29번 문항으로

28-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Ⅳ. 교육 및 여가·문화

29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30번 문항으로

29-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하기 싫어서
⑥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0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31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31-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32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33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V. 인권 일반

34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35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36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도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7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① 있다 ② 없다 → 38번 문항으로

37-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7-2 인권교육이 각각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①	②	③	④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①	②	③	④

38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9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0 최근 1년 동안 장애이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장애이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편견과 차별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인식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입니다.

① 있다 → ② 없다 → 41번 문항으로

40-1 장애이해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41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장애를 가진 친구가 일반학교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3) 장애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 ][ ][ ][ ] 년도에 태어남

배문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⑩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4 여러분과 부모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1) 나	① 대한민국	② 북한	③ 그 외 다른 나라
2) 아버지	① 대한민국	② 북한	③ 그 외 다른 나라
3) 어머니	① 대한민국	② 북한	③ 그 외 다른 나라

배문5 학생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배문6 학생의 학업 성적(2022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7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2년 특별조사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현황과 지원과제(교사용)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현황과 지원과제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 참여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며 설문지 작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으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응답대상 : 1) 관리자(교장 또는 교감), 2) 특수교사, 3) 일반교사(통합학급 담임교사) 각 1인 등 학교당 총 3인

2022년 6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 044-415-2136
최홍일 전문연구원 044-415-2187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박종경 과장
※ 문의전화: 02-3014-0988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현황과 지원과제〉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Ⅰ. 응답자 배경문항

배경문항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배경문항 3. 현재 재직 중인 학교급은 무엇입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배경문항 4. 현재 직책은 무엇입니까?

① 특수교사(특수학급 교사 등)
② 일반교사(통합학급 담임교사)
③ 관리자(교장 또는 교감)

배경문항 5. 전체 교직 근무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배경문항 6. **(일반교사 및 관리자 대상)** 전체 교직 경력 중 통합학급 담임교사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경험 없음
② 1년 미만
③ 1년 이상 3년 미만
④ 3년 이상 5년 미만
⑤ 5년 이상 7년 미만
⑥ 7년 이상 10년 미만
⑦ 10년 이상

배경문항 7. **(일반교사 대상)**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특수학급 배치(시간제 특수학급)
② 일반학급 배치(완전통합 또는 전일제 통합학급)
②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배치학생 모두 있음

배경문항 8. 귀교는 현재 '정다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네 **(문항 8-1로)**
② 아니요 **(문항 9로)**

* '정다운학교'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모델학교로 전국 104개교가 운영 중이며, 명칭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예: 서울시교육청 '더공감교실')

배경문항 8-1.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대상)** 현재 선생님께서는'정다운학교* 협력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요

배경문항 9. **(일반교사 및 관리자 대상)** 전체 교직 경력 중'정다운학교'운영교에서 협력교수에 참여한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경험 없음
②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배경문항 10. **(특수교사 대상)** 전체 교직 경력 중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근무한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Ⅱ. 통합교육 현황

문1. 귀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급, 통합학급 운영 방식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문2. 귀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급, 통합학급 운영 방식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문3. 귀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급, 통합학급 운영 방식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성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문4. 귀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급, 통합학급 운영 방식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사회적 통합**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문5.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협업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통합교육 영역 중에서 협력이 어려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교육계획 수립(개별화교육계획, 협력교수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등)
② 협력교과 수업 운영
③ 생활지도(또래관계, 규칙 등)
④ 도전행동 지도
⑤ 학급운영 및 자치활동
⑥ 진로지도
⑦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 현장체험학습 등
⑧ 학생평가 및 기록
⑨ 잘 모르겠음
⑩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6. 통합교육 운영 시 어려운 점에 대해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주십시오.

영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통합교육 인식	1)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장애에 대한 인식의 문제	①	②	③	④
	2) 비장애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 간의 관계, 괴리감(소외, 따돌림 등)	①	②	③	④
	3) 관리자의 무관심 또는 비협조적 태도	①	②	③	④
	4) 학부모와의 갈등 및 민원	①	②	③	④
교사 관계 및 역량	5)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의 통합교육 전문성 부족	①	②	③	④
	6)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와의 소통 및 협업 기회 부족	①	②	③	④
	7)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불명확한 업무 범위	①	②	③	④
	8) 특수교육대상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학습, 평가, 지원	①	②	③	④
	9)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장애특성, 도전행동 중재 어려움 등)	①	②	③	④
통합교육 지원	10) 통합교육을 진행하기에는 과다한 학생수(통합학급의 정원 감축 필요)	①	②	③	④
	11)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움(NEIS 시스템, 수업시수 등의 특수교육대상자 특성 고려 미흡)	①	②	③	④
	12) 통합교육에 필요한 인력의 부족(통합교육 지원교사, 특수교육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등)	①	②	③	④
	13)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의료 및 편의시설 지원 부족	①	②	③	④
학생 관련	14)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성적 및 학습능력 격차	①	②	③	④
	15) 특수교육대상학생과의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기타	1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7. 최근 2년간 귀하가 경험한 특수교육 관련 연수 형태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문 항	경험 없음	오프라인 연수			온라인 연수, 시청각 자료 상영
		외부 전문가 초청 교육	교내 특수교사가 강연	교육청, 외부기관 주최 연수 참가	
1) 장애이해(인식개선) 교육	①	②	③	④	⑤
2) 통합교육 역량강화 교육(협력교수 연수 등)	①	②	③	④	⑤

문8.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이해교육은 교사와 비장애 학생이 장애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문9.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대상**) 귀하는 <u>최근 2년간</u> 통합교육 관련 교사연수를 총 몇 시간 들었습니까?

① 없음
② 10시간 미만
③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④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⑤ 3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⑥ 60시간 이상 120시간 미만
⑦ 120시간 이상

문9-1. (문9에서 ②~⑦번에 응답한 경우)통합교육을 위한 교사연수는 통합학급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었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9-2. (문9-1에서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u>우선순위대로 2가지</u>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연수 기간과 시간이 짧아서
②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어서
③ 현장 사례보다 이론 중심이어서
④ 연수 강사의 역량과 전문성 부족
⑤ 온라인 연수 방식의 한계로 효과 미흡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_)

Ⅲ. 통합교육 지원과제

문10.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협력을 통한 통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관리자의 관심과 지지
② 특수교사(또는 일반교사)의 적극적인 협력 태도와 요청
③ 학부모의 관심과 요청
④ 통합교육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변화 목격
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긍정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협의체 운영
⑥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교사 배치 및 효과적 역할 분담
⑦ 통합교육을 옹호하는 학교 제도와 교직원들의 태도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⑨ 통합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된 경험 없음

문11.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대해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주십시오.

영 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통합교육 환경 조성	1) 장애와 통합교육에 대한 전국민 인식 전환	①	②	③	④
	2) 성적과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 변화	①	②	③	④
	3) 보편적 인권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환경 구축	①	②	③	④
	4) 통합학급 학생 수의 소규모화	①	②	③	④
	5) 학부모 대상 통합교육 관련 연수 및 교육	①	②	③	④
교사 역량 지원	6) 모든 교사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 역량 강화 연수	①	②	③	④
	7)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방안 안내(통합학급 운영 매뉴얼, 우수사례 보급 등)	①	②	③	④
	8) 특수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수업나눔, 수석교사 등을 통한 수업지원	①	②	③	④
	9) 통합교육에 맞춘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지원	①	②	③	④
수업 및 학교생활 지원	10) 통합교육 지원 기구와 역할 확대(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거점지원센터 등)	①	②	③	④
	11)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인력 증원 및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12)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13)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체계 정비(관련서비스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등)	①	②	③	④
	14) 학교 내 필요 학생 맞춤형 의료지원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15) 학생 장애유형에 따른 보조 공학기기 지원 및 활용	①	②	③	④
기타	1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2. 귀하는 장애 및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장애가 있는 학생이 일반학교의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3)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을 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통합학급에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교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13. 귀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합교육의 방향과 모습, 통합교육 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할 점, 정책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정부 공식 번역본)

유엔(United Nations) CRC/C/KOR/CO/5-6

아동권리협약

배포 : 일반
2019년 10월 24일
원본 : 영어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62]

I. 개요

1. 위원회는 2019년 9월 18일과 9월 19일 열린 제2416차 및 2417차 회의(CRC/C/SR. 2416 및 2417 참조)에서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CRC/C/KOR/5-6)를 심의하였고, 2019년 9월 27일 열린 제2430차 회의에서 본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2.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환영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당사국 대표단과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

II. 당사국이 취한 후속조치 및 성과

3. 위원회는 다음을 환영한다.

(a) 2015년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62) 제82차 회기(2019년 9월 9일~9월 27일)에서 채택됨.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

(b) 2012년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

4. 위원회는 다음의 조치를 감사히 여긴다.

(a)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b)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c) 아동영향평가제도

(d)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e)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지급제도 도입

Ⅲ. 주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

5. 위원회는 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의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을 상기하며,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모든 권고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비차별(para. 17),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para. 20), 체벌을 포함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para. 27), 성적 착취 및 학대(para. 29), 교육 및 교육의 목표(para. 42), 그리고 소년사법 운영(para. 47) 등의 분야에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원회의 권고에 당사국이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A. 일반이행조치 (협약 제4, 42, 44(6)조)

유보

6.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21조 (a)항의 유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하며, 제40조 (2)항(b)(v)조의 유보철회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법 제정

7. 낙태 금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선언하며 2020년까지 낙태 관련 법률 검토를 정부에 요청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위원회는 해당 법률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사법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의 협약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그들이 재판절차에 협약을 인용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8.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채택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이러한 아동 관련 정책 및 전략이 협약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할당을 보장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조정

9. 위원회는 당사국이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할당, 영구적 사무국 설치 및 아동권리 조정기구로서 위원회의 인지도 증진을 통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이전 권고(CRC/C/KOR/CO/3-4, para. 13)를 상기하며, 아동권리 사안을 다루는 모든 관계 기관들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자원의 할당

10. 교육, 영유아기 및 아동복지 사업 영역의 예산 증가와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아동 관련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 수립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9호(2016)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a)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정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실행할 것
    (b)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c)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할 것
    (d)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 아동참여를 강화할 것
    (e)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부문의 재화 및 용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고, 뇌물수수나 특혜, 불규칙한 지급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공공조달 절차에서 책무성을 제고할 것

자료 수집

11.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2003)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연령, 성별, 장애(disability status), 지리적 위치, 출신민족 및 출신국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화된 시스템(centralized system) 구축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독립 모니터링

12.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 인권 기구의 역할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2002년)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할 것
    (b) 아동권리위원회의 진정 접수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할 것
    (c) 정부 당국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할 것
    (d) 정책권고의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
    (e)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것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13.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협약에 대한 인식도가 특히 아동들에게 낮다는 점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인권교육을 보장하고,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국제협력

14. 위원회와 당사국간 대화에서 제공된 정보로서, 당사국이 향후 10년간 공적개발원조(ODA)를 증액할 계획이라는 점을 환영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17.2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한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한 원조가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아동권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당사국 및 해당 개발 협력 상대국에 대한 본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국제개발원조 정책과 사업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적절히 통합할 것을 권장한다.

아동권리와 기업부문

15. 위원회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국내외 경영활동으로 인해 아동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 영역의 영향 관련 국가 의무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6호(201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이전의 권고(CRC/C/KOR/CO/3-4, para. 27)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child protect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아동권리 실현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B. 일반원칙 (협약 제2, 3, 6, 12조)

비차별

16. 위원회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조치를 환영하나,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안 채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려한다.
    (a) 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 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이 출생신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이용,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복지, 여가 및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 접근에 차별을 경험하는 것
    (b)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이 학교에 만연해 있는 것
    (c) 한부모 가정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
    (d)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과 당사국이 성소수자(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persons) 관련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인정한 상황인 것 (CRC/C/KOR/5-6, para. 36).

17.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0.3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 법이 출신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략을 시행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할 것

(b)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출생시 등록되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할 것

(d) 양육비 접근 등에 있어 모든 가정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 및 관행을 점검할 것

아동의 최선의 이익

18.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제도 수립을 환영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2013)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관련된 재판 절차, 의사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며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이전의 권고들을 당사국에 상기시킨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폭넓은 아동 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확장할 것

(b)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고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할 것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19. 위원회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수립에 주목하는 한편, 대한민국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인 높은 아동 자살률, 특히 가정 문제, 우울증, 학업 부담,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현상 및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예산이 부재하다는 점과 함께,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우려한다.

(a)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한 건강상 피해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b) 학교 및 보육환경(childcare settings)의 미세먼지 및 석면에 대한 불충분한 모니터링

(c)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수많은 건강 피해 및 피해자들에 대한 불충분한 구제와 배상.

20. 위원회는 앞서 권고했듯, 포괄적 정책,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조치, 아동 및 가족, 나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통해 아동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다음을 권고한다.

(a)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하는 건강상 피해를 조사할 것

(b) 모든 보육환경(childcare settins) 및 교육환경의 실내 공기 질 및 유해물질 노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

(c)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동에게 충분한 구제와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화학물질 관리 및 유해물질 관련 사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아동의 견해 존중

21. 위원회는 현재 발의된 가사소송법안(2017)이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도 의견진술권을 확대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아동의 참여는 여전히 선택적이고, 특정 주제에 제한되며, 학업 성적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동이 의견을 진술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2호(2009)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견해가 그들과 관련된 가정, 학교, 법원 및 관련 행정 절차와 기타 절차에서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며, 이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학교 내 모든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b) 이전에 권고했듯이(CRC/C/KOR/3-4, para. 35(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도록 보장할 것

(c) 발의된 가사소송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제7, 8, 13-17조)

출생등록

22. 위원회는 온라인 출생신고 및 통보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9를 감안하여,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c)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정체성에 대한 권리

23.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24. 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당사국에 재차 권고한다. 또한 아동참여를 증진하고, 현재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

25. 위원회는 학교가 학업성적, 징계조치와 같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에 주목한다. 이에 위원회는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실제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D. 아동에 대한 폭력 (협약 제19, 24(3), 28(2), 34, 37(a), 39조)

체벌을 포함한 폭력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증가, 심리치료사 전문인력 증원은 환영하지만,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한다.
    (a) 온라인 폭력 및 학교폭력을 포함한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
    (b) 가정 내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부재로 인한 높은 재학대 발생률
    (c)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이라는 점
    (d) 아동학대의 과소보고
    (e) 아동학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
    (f)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및 전략의 부재
    (g)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심리학자,

변호사의 부족

(h) 학대 피해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지원 부족

27.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2011), 신체적 체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06),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 종식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2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 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할 것

(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

(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28.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성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조치, 그리고 재범 감소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a) 성폭력 및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온라인 아동 성매매 및 그루밍과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급증하였다는 점

(b) 만 13세 이상인 아동은 동의능력 있다고 간주되어,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점

(c)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고려되는 아동("대상아동")이 범죄자로 취급되며, 법적 조력 및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금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성적 착취를 당해도 신고를 단념하게 된다는 점

(d)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을 포함한 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

(c)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d)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된("대상 아동") 모든 아동, 다시 말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 "보호처분" 폐지,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 제공,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e)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f)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유해한 관행

30. 위원회는 이민자 공동체 내에서 아동의 결혼이 부모 동의만으로 승인될 수 있고, 그러한 이주 여아 및 외국인 여아의 결혼사례가 보고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예외 없이 조혼(child marriage)을 금지하고, 출신국과의 협력, 이민자 및 난민을 위한 공적 등록 절차(civil registration procedures) 개설 등 이러한 관행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협약 제5, 9-11, 18(1) 및 18(2), 20-21, 25, 27(4)조)

가정환경

31. 위원회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무상보육, 맞벌이 부모의 유연근무제, 부(父)의 육아휴직 및 한부모가족 지원이 확대된 것을 환영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하여,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적절한 유연성을 늘리고,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및 재정적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부(父)의 육아휴직 접근성 및 이용을 보다 촉진할 것
   (c) "면접교섭센터" 설치 확대 및 기타 대안적인 해결책 마련을 포함하여, 이혼 가정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할 것
   (d) 양육비에 대한 접근 및 양육비 이행을 촉진 및 보장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
   (e)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양육비 지원 자격도 그에 따라 개정할 것

가정환경 상실 아동

32. 당사국이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b)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c)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d) 보호자 보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강화할 것

입양

33. 법원허가제 도입을 포함하여 입양을 규제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다시 한 번 당사국에 반복한다.

(a)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모든 연령대에 있는 아동을 위한 입양절차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입양에 있어 미혼모의 자발적인 동의가 의무적일 것

(b)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입양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할 것

(c) 절차상 불필요한 지연 방지 및 입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들의 활동이 적절히 규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d) 파양된 사례를 포함하여,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를 강화할 것

(e) 입양아동이 그들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도록 보장할 것

(f)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34. 위원회는 "부모책임 및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관할,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 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을 권고한다.

수용자 자녀

35. 위원회는 수용자 자녀 및 이들 아동의 접견권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F.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제6, 18(3), 23, 24, 26, 27(1)-(3), 33조)

장애아동

36. 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교육, 훈련영역에서 전문 인력과 예산이 증가하였음에 주목한다.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9호(2006)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장애아동을 포용하도록 보장할 것

(b)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

(c) 학교 기반시설 및 체육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통학 지원과 개별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역량 강화 연수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할 것

(d) 장애아동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

건강 및 보건 서비스

37. 위원회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를 환영한다.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5호(2013) 및 재정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험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8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보건예산을 늘리고 지역 병원을 강화하라는 이전의 권고를 상기시키며, 다음의 사항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a)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및 이주아동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것

(b) 이주 아동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개선할 것

(c) 당뇨 및 비만 아동 등을 위한 어린이집 및 학교의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할 것

정신 건강

38. 당사국이 아동 자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정신 건강과 웰빙(well-being) 증진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4를 감안하여 자살예방과 그것의 근본원인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정신적 웰빙(well-being)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반복하여 권고한다.

청소년 보건

39.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2003) 및 청소년기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0호(2016), 모든 형태의 영양결핍 근절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2.2, 마약류와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5, 성과 생식보건, 생식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5.6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알코올 광고 규제 강화, 금연 공간 확대, 스포츠 및 신체활동 촉진, 약물 남용 예방에 대한 생활 기술 교육에 아동참여 독려 등 비만, 흡연, 음주 예방과 관련한 이전의 권고들을 상기시킨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 지원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의 역량을 구축하여 문제적이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

(b) 학교 내 성교육, 임신 중 및 출산 지원 서비스, 산후 관리 강화와 육아지원 보장 및 부모의 동등한 육아 촉진을 포함하여, 청소년 임신을 효과적으로 다룰 것

생활수준

40.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을 환영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빈곤층 아동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빈곤층 아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알리고 채택하며 시행할 것

(c) 아동의 주거 빈곤 및 아동의 시간제 고용률을 사정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것

G.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제28, 29, 30, 31조)

교육 및 교육의 목표

41. 위원회는 선행학습 관행(예 : 진학을 위해 취학 전에 사교육을 받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약계층 아동의 입학 정원 확대,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 밖 아동 지원을 환영한다. 그러나 당사국 아동자살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부담, 이로 인한 수면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과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a)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치원에서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

(b)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 낮은 수준의 학교통합(school integration), 높은 학교 중퇴율

(c) 한국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반면, 난민아동, 이주아동 및 미등록아동의 학교 입학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등록아동의 제한적인 교육 서비스 접근성

(d)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지배적인 점을 비롯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기회 및 편의제공 부족과 장애아동이 직면한 사회적 낙인

(e) 학교 밖 아동 및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f) 농촌과 도시 지역 간 교육 격차

(g) 청소년 임신과 HIV 발생률 증가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의 부족

(h)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은 불충분한 진로상담으로 중퇴에 대한 취약성 증대

(i) 널리 퍼져있는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학업성적 등과 관련된 차별

(j) 학업으로 뛰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함께, 아동의 여가, 놀이 및 운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안전한 무료시설 충분하지 않아 여가 시간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기여한다는 것

42.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서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4.5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진로상담 강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 완화라는 목표 하에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2001)에 부합하게 공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것, 공립 및 사립학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신, 주거지, 사회경제적 및 이주 지위, 이주민으로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할 것, 부정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입학 정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c)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및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하고,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강화할 것

(d) 학교를 중퇴하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현상의 규모를 평가할 것,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고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에 머무를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대안교실 및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

(e) 훈련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포함한 교사의 훈련 강화, 학교 기반시설 개선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

(f) 청소년임신 및 HIV/AIDS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 그리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

(g) 특히 학교 밖 아동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진로상담과 자유학기제를 강화 및 다양화하고, 아동의 견해가 진로 선택의 기초가 되도록 보장할 것

(h)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할 것, 차별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다룰 것,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훈련을 제공할 것

(i)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여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것: 예방, 조기 발견 메커니즘, 아동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중재 절차, 사례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통일된 지침

(j)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이러한 시설은 안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금연구역이며, 연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H. 특별보호조치 (협약 제22, 30, 32-33, 35-36, 37(b)-(d), 38, 39-40조)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43. 위원회는 2012년 「난민법」 제정을 환영한다. 국제이주 맥락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공동의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호와 제4호(2017) /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 및 제23호(2017)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할 것, 비구금형 대안을 보장할 것, 난민과 가족 재결합 문제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b) 난민 및 무국적 아동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지위를 규정할 것,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난민신청아동,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

(c)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 보건의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여가, 학대 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

(d)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권리협약과 부합하는 「이주아동권리법」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e) 난민신청자 및 난민 중 특히 아동에 대한 혐오발언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것

(f)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것

(g) 난민아동, 난민신청아동 및 이주아동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44. 위원회는 일하는 아동의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 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일하는 아동의 수가 여전히 많고, 그들의 노동권 침해 및 언어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그리고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책무성과 사회복귀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매매, 거래, 약취유인

45.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매우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온라인 모집을 통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 인신매매의 발생지이자 경유지 그리고 도착지로 여전히 보고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한 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를 상기시키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법에 맞게 정비하여, 강요, 대가, 피해자의 초국가적 이동 요건을

삭제할 것

(b) 경찰, 출입국관리, 노동 및 사회복지 공무원의 훈련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계층 피해아동의 식별 및 위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이행할 것

(c) 아동의 인신매매, 불법거래 및 탈취가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부과되도록 하며, 인신매매 방지 전담조직과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를 위한 팀을 구성할 것

(d) 인신매매 또는 불법거래의 아동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형사적 제재,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삼거나, 폐쇄된 시설에 절대로 구금하지 말 것

(e) 남자아동, 외국인 아동,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

소년사법 운영

46. 위원회는 소년원 송치기간을 최종 결정의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소년법」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다음을 우려한다.

(a) 법에 저촉된 아동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와 처우의 두 가지 병렬 시스템의 존재

(b)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과 만 10세 이상부터 「소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는 것

(c)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의 구금을 규정하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d) 조사단계부터 보조인 개입을 보장받지 못 하거나, 자백을 강요당하거나, 증거 및 항소에 대한 접근성이 부재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이 지켜지지 않거나, 재판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법률구조(法律救助)를 조건부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고들

(e) 성인에 비해 높은 아동 구금율

(f) 과밀 수용, 불충분한 의료 지원, 교육, 훈련, 여가, 식사 제공, 특히 여아에게 적게 제공되는 식사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구금 환경, 접견, 진정 및 야외활동 제한, 소수자 아동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부재, 구금된 성소수자 아동(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children)에 대한 차별,

(g) 성인과 아동을 혼거수용하는 사례

(h) 구금된 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DNA 및 HIV 의무검사, HIV 아동 구금자의 격리, 구금된 아동에게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지속적인 위생시설 촬영,

(i) 독방 감금, 가족방문 제한 및 원거리 징계이송과 같은 재량에 따른 징계조치 남용,

(j) 수갑, 포승, 기타 보호장치의 사용 및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것

(k)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형 조치의 부족.

47.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적절한 자원을 지원받아, 법에 저촉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아동사법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아동 전담 법관 및 법 위반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b)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c) 협약 제40조에 따라 공정한 재판 보장을 준수할 것, 아동 관련 사건의 공판에서 일반 청중을 배제하고, 재판 시작단계부터 아동의 법정 후견인 참여를 보장할 것, 침해(violations)를 보고함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는 경로를 제공·증진하고, 아동 관련 사건을 위한 언론보도 지침을 수립할 것

(d) 법적·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 구조 제도를 수립할 것

(e)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폐지할 것

(f) 다이버전 제도(diversion programmes)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구금형을 촉진할 것

(g) 「소년법」에 구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할 것, 구금은 중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보호처분" 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최종 형기에 산입되도록 보장할 것, 구금에 항소할 권리 및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배상권을 보장할 것

(h) 일시구금을 포함하여, 구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개인 공간,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음식, 교육, 신체적·심리적 건강 서비스, 운동, 여가, 가족과의 접견 및 진정 제도 등 제공),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구금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i)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j) 근신실 및 이송을 징계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회복적 조치로 대체하고 촉진할 것

(k) 아동에 관한 무력 및 보호장비 사용을 규제할 것 및 그러한 사용이 특정한 상황에 제한되고,

비례적(proportional)일 것

(l) 구금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구금된 아동의 DNA 수집 및 HIV 검사를 금지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할 것, HIV 정보는 비밀을 보장할 것, HIV에 감염된 아동 구금자를 격리하지 않을 것,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계속적인 위생시설 촬영을 금지할 것

(m)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 조치를 강화할 것

(n)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적,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48. 위원회는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2008년 최종견해(CRC/C/OPSC/KOR/CO/1) 이행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하며 다음을 권고한다.

(a) 여행 및 관광에서의 아동 매매 및 아동 성착취를 포함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모든 행위 및 활동을 국내 형사법 하에서 완전히 포괄할 것

(b) 선택의정서에 따라 범죄자 인도가 이루어질 경우 쌍방가벌성 및 최소심각성(minimum gravity) 요건이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범죄자 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되어야 할 것

(c) 유죄를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이 여권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49. 위원회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2008년 최종견해(CRC/C/OPAC/KOR/CO/1) 이행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위원회 이전 권고를 상기시키며 특히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만 18세 미만 아동을 군대나 비국가 무력단체에 징집하는 것 및 적대행위에 가담시키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

(b) 분쟁지역 출신 난민신청아동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할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것

(c)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선택의정서 조항을 반영할 것

I.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50.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비준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J. 국제인권규범 비준

51.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고려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K. 지역 기구와의 협력

52. 위원회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여성 및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Ⅳ. 이행 및 보고

A. 후속조치 및 보급

53.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들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제5·6차 국가보고서 및 본 최종견해가 당사국의 언어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B. 차기 보고서

54. 위원회는 2024년 12월 19일까지 본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제7차 국가보고서는 2014년 1월 31일 채택된 위원회의 협약별 보고지침(CRC/C/58/Rev.3)을 준수해야 하며, 21,200자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유엔총회 결의안 68/268, para. 16 참조). 보고서가 단어 수 제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당사국은 앞서 언급한 결의안에 따라 보고서 분량 축소를 요청받게 될 것이다. 당사국이 보고서를 재검토하여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조약기구 심의를 위한 번역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55. 위원회는 또한 최신의 핵심문서 제출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공통핵심문서 및 특정 조약 문서에 관한 지침(HRI/GEN/2/Rev.6, chap. I 참조), 유엔총회 결의안 68/268의 제16항을 포함하여, 각종 국제 인권 조약이 규정하는 보고지침에 포함된 공통핵심문서의 요건에 따라 단어 수는 42,400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정부 공식 번역본)

유엔(United Nations) CRPD/C/KOR/CO/2-3

장애인권리협약

배포 : 일반
2022년 10월 6일
원문 언어: 영어

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1)]

I. 서론

1.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2년 8월 24일과 25일 개최된 제598차 및 제599차[2)]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3)]를 심의하였고, 2022년 9월 5일에 개최된 제614차 회의에서 본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2. 위원회의 보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된 대한민국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환영한다.[4)]
3. 위원회는 다양한 관계부처의 대표로 구성된 당사국 대표단과의 유익하고 진실된 대화에 대해 감사한다.

1) 위원회의 27차 회기(2022년 8월 15일~2022년 9월 9일)에서 채택함.
2) CRPD/C/SR.598 및 CRPD/C/SR.599 참고.
3) CRPD/C/KOR/2-3.
4) CRPD/C/KOR/QPR/2-3.

II.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특히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다음의 입법적 조치를 환영한다.
   (a) 2021년 12월, 2008년 협약 비준 시 제25조(e)항에 대한 유보 조치에 대한 철회
   (b) 2016년, 한국수어를 당사국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인정한 「한국수화언어법」 채택
   (c) 2017년, 점자를 한글과 함께 당사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자 한글과 동일한 지위임을 규정한 「점자법」 채택
   (d) 2018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채택
   (e)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채택

III. 주요 우려 및 권고 사항

A. 일반 원칙 및 의무(제1조~제4조)

5.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복지법」 상 수정된 장애 정의 등 장애 관련 법과 정책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시청각장애인과 HIV/AIDS가 있는 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의 특정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b) 최근 장애등급제가 6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내에서 장애등급제를 포함하여 여전히 장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c) 협약이 인정하는 권리에 대해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의사, 보건 및 기타 장애인 관련 전문 업무 종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함.

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기존의 장애인 관련 국내법과 정책들을 검토하여 이를 협약의 조항과 부합하도록 하고, 모든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HIV/AIDS가 있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장애의 개념을 채택하여, 이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장애의 의학적 모델의 요소를 장애의 인권적 모델의 원칙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환경적 장벽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완전한 사회 포용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장애판정제도의 방향을 재설정할 것;

(c)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의사, 보건 및 기타 장애인 관련 전문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국의 협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7.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선택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9. 위원회는 장애 관련 법,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가 부족함을 우려한다.

10.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7호(2018)를 상기하며, 당사국은 장애인이 대표 단체를 통해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이행하며, 장애아동, 지적 및/또는 심리사회적 장애인, 간성(intersex) 장애인, 여성장애인, 이주 장애인 및 난민, 자폐성장애인, 장애가 있는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성별이 다양한 사람, 높은 수준의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 등 모든 유형의 장애인단체와 의미 있는 협의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B. 구체적 권리(제5조~제30조)

평등 및 비차별(제5조)

11.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특히 장애여성, 이주 장애인, 성소수자 장애인 및 HIV가 있는 장애인이 직면하는 다중적인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인지하지 않고 있음;

(b)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보편적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로부터 배제하고 있다는 것;

(c)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형태라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

(d)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 부담으로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

12.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6호(2018)와 지속가능발전목표 10.2 및 10.3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현행 차별금지 법령,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하고,

장애에 기반한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과 그것이 연령, 성별, 인종, 민족, 성정체성, 성적지향 또는 어떠한 다른 지위에 기반한 차별과 교차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b)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협약에 부합하도록 검토하여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보편적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

(c)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은 상대 법무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면제시키고, 추가적 비용 또는 행정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가능하고 정당한 상환 제도를 보장할 것;

(d) 합리적 편의 제공 거부를 장애에 기반한 차별로 인식하고, 그러한 차별에 대한 보고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보장할 것.

장애여성(제6조)

13.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여성 및 여아의 차별, 소외, 배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장애 관련 법 및 정책에 관하여 젠더 관점의 부재와 젠더 관련 법 및 정책에 관한 장애 관점의 부재;

(b)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성 인지적 예산 편성의 부재;

(c) 국내 법률 체계에서는 장애여성 및 여아에 대한 교차적 차별을 명백히 다루지 않으며, 장애여성 및 여아가 직면한 여러 가지의 교차적인 차별에 대한 데이터와 연구가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고안하는 관점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음;

(d) 고용, 공적·정치적 생활, 의사결정 그리고 사법적 영역에 있어 장애여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부재.

14.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3호(2016)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5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모든 젠더 관련법에 장애여성 및 여아의 권리를 주류화하고, 특히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8)과 장애 관련 의제를 비롯한 장애인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주류화함과 동시에, 젠더 및 장애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와 이행에 있어 장애여성 및 여아와 협의하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일반적 장애 문제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이 성 평등 관점에 의건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c) 장애여성 및 여아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입법 과정에서 인식하고, 젠더 관점과 교차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입법과 전략을 도입할 것;

(d) 모든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여성과 여아의 참여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들의 역량강화 및 완전한 포용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당사국은 정부기관과 사법부를 포함하여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정치적 영역에서 장애여성이 대표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

장애아동(제7조)

15.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아동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장애아동과 협의하고 이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의 부재;

(b) 장애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부족;

(c) 놀이터의 0.03%만이 접근 가능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놀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점.

16. 아동권리위원회와 장애아동 권리에 관한 공동성명(2022)을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구성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동의 발달 능력을 존중하며, 이러한 견해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히 고려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

(b)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생활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아동을 포용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

(c) 놀이터가 모든 장애아동에게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검토할 것.

인식 제고(제8조)

17.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사회와 미디어에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및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며,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동반한 장기적인 전략 부재;

(b) 정치권과 소셜미디어에서 자폐성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 부정적 고정관념, 편견 및 널리 퍼져있는 증오와 비하 표현의 지속.

1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편견에 맞서는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 결과를 모니터링 할 것;

(b)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능력 및 기여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입안자, 사법부, 법집행관, 언론인, 정치인, 교육자, 장애인과 함께 혹은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 그리고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인식개선 교과목을 교육의 전 단계에서 모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입할 것.

접근성(제9조)

19.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물의 규모 및 건축 연도와 관련한 일부 면제 조항이 있어 공공건물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저해되고 있음;

(b) 정보통신기술 및 시스템의 부족을 비롯하여, 협약에 따른 모든 범위의 접근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부족;

(c) 2022년 1월 특별교통수단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가 제외되었다는 점과 버스 번호 및 노선, 탑승안내 등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여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버스 이용을 저해함;

(d)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에 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디지털 업무 환경의 장벽.

20. 일반논평 제2호(2014)와 지속가능발전목표 9 및 세부목표 11.2와 11.7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건물의 규모, 수용가능 범위 및 건축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무 규정을 포함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할 것;

(b) 협약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접근성을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c)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특히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와 관련하여,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버스의 수량을 늘리고, 버스 번호와 경로, 탑승안내 등의 정보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될 것을 보장한다. 환경과 공공장소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d) 공공·민간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모든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이 교육시설과 가정 양쪽에서 디지털 기술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생명권(제10조)

21.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매우 우려한다.

(a) 자폐성장애인과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높은 자살률 및 실종률과, 장애인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례;

(b) 거주시설에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동안의 장애인들의 사망.

22.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 자살 및 실종 방지를 위한 국가적 전략을 자폐성장애인과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채택하고 시행하며, 장애인 대표 단체들을 통해 장애인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b) 지역사회 내 안전한 자립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의 긴급 탈시설화를 개시하는 조치를 장애인단체 및 독립적 모니터링 기구와 협의하여 개발할 것.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상황(제11조)

23.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2018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장애인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재난위험 감소 계획과 정책 및 절차규정이 부족함;

(b)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의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Make the Right Real) 인천전략 목표 7의 국가적 차원의 이행과 보고 과정에 있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의 참여가 저조함.

24.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모든 장애인, 특히 아동, 여성,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 및 감각 장애인에게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재난위험감소 계획을 채택하는 것을 가속화할 것;

(b)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11 및 13에 따라, 국가 및 지역수준의 모든 재난 위험 경감과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설계하고 이행할 때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단체를 통해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할 것.

25.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장애인이, 특히 아직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아 왔으며, 비상상황 정보 및 기기에 접근하는 데 장애인이 장벽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26. 위원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장애포괄적 대응에 관한 지침과 정책 브리핑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백신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 계획과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기타 경제적·사회적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주류화할 것;
(b) 장애인의 비상 시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내 생활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할 것;
(c)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과 그 대표단체들을 참여시킬 것;
(d) 위기 및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에서 모든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접근 가능한 방식과 적절한 기기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법 앞의 동등한 인정(제12조)

27. 위원회는,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 손상을 근거로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제도와 대체 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해 가는 데 있어 진전이 부족하고, 이 제도를 의사결정지원 제도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일정계획이 부족함을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가능한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이전 권고사항[5]을 일반논평 제1호(2014)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후견제와 피후견제를 포함한 대체 의사결정제도를, 개별화된 지원 제공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율성,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 제도로 대체할 것;
(b)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인식 및 의사결정지원 제도에 관한 개혁 과정 및 관계자 훈련에서 장애인이 그 대표 단체들을 통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정보를 점자, 수어, 알기 쉬운 버전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배포할 것.

5) CRPD/C/KOR/CO/1, para. 22

사법에 대한 접근(제13조)

29. 위원회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온전히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약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30. 위원회는 이전 권고사항[6]과 2020년에 준비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국제원칙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6.3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을 위한 사법 접근에 관한 행동계획과 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막는 모든 제약을 철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및 사법적 조치를 협약에 부합되게 채택할 것;
   (b) 장애인이 법적 절차의 다양한 측면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지원 제공 등 절차적인 조정을 취할 것;
   (c)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점자, 수어, 알기 쉬운 버전, 음성 및 화면해설과 같은 정보 및 의사소통의 보완 대체 수단을 개발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적용하고, 모든 사법 시설에 대해 접근 가능한 교통 수단 등 물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할 것;
   (d) 법관과 법 집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협약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e)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개별화된 지원을 보장할 것.

신체의 자유 및 안전(제14조)

31. 위원회는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장애인이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는 법의 적용을 받으며, 감금을 포함한 임의적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한다.

32. 위원회는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인지된 자타해위험과 손상을 근거로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한민국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 조항들을 폐지하고, 손상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시설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예를 들어 심문 및 구금할 때를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절차상 편의제공과 같은 비차별을 보장하는 법률을 도입하며,

6) Ibid., para. 24.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회복시킬 것;

(b)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이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치료, 특히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제15조)

33. 위원회는 가정 환경, 정신 병원, 병원, 교도소 및 교육 서비스에서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격리, 정신적, 화학적, 기계적 구속 및 기타 형태의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34. 위원회는 당사국에 향정신성 약물사용과 신체적 구속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a) 사법, 교육, 보건, 심리사회적 시설 및 노인 요양 시설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 모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것과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b) 아직 시설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진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가해자를 조사하고 제재하여 행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할 것.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제16조)

35.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일반 대중과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가족, 학교 및 직장을 비롯한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장애인 착취, 폭력 및 학대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이 부족한 점;

(b)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은 점과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정보 및 통계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점;

(c)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포함하여,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여아를 위한 접근 가능한 보호시설의 부족;

(d)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 인식을 위한 종사자, 돌봄제공자, 장애인 가족, 간병인 및 사법종사자 대상 훈련의 부족.

3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장애인과 시설거주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한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하며, 장애인이 학대를 피하고 인식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갖도록 보장할 것과 착취, 폭력 및 학대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진정 절차에 접근할 수 있고 재활을 포함하여 보상 및 충분한 배상과 같은 적절한 구제방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효과적 이행 및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내외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근절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개발 및 실행할 것;

(c) 지원센터와 긴급 쉼터 등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인 장애여성과 여아를 위한 서비스가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

(d) 장애인 가족과 돌봄제공자, 간병인 및 사법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인식하고, 폭력의 피해자인 장애인과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인의 완전함 보호(제17조)

37. 위원회는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당사국이 실시한 조사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여성과 여아,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과 여아의 강제 불임과 동의 없는 임신 중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국이 명시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례를 파악, 조사 및 후속 조치하고 해당 사례에 대해 완전한 시정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강제 불임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 및 국적의 자유(제18조)

39. 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이주 장애인의 기본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40. 위원회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이주 장애인이 기본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권고한다.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제19조)

41.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한 예산 및 다른 조치를 포함한 노력의 부족,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 및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

(b) 기존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여성 및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화 전략의 미진한 실행과, 장애인, 특히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의 재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함.

42.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호(2017)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7]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자립지원 로드맵을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검토하고 충분한 예산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할 뿐 아니라, 생활 환경에 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 특정 생활 환경에서 살 의무가 없는 권리,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포용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해당 로드맵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할 것;

(b)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있는 성인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탈시설화를 위한 탈시설화 전략의 실행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제21조)

43.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공공 및 민간 매체 모두, 특히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 및 읽기 쉬운 버전, 평이한 언어, 자막, 수어, 점자, 음성해설,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제공이 불충분하며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함;

(b)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들이 읽기 쉬운 버전과 기타 접근 형식, 방법 및 통신 수단을 통해 적절하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못함.

44.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7) CRPD/C/27/3

(a) 점자, 시청각장애인 통역, 수어, 읽기 쉬운 버전, 평이한 언어, 음성해설, 자막과 같은 접근 가능한 의사 소통 형식의 개발, 홍보, 사용을 위한 적절한 자금을 할당하여 텔레비전 및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 정보가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다양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것;
(b)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읽기 쉬운 형식과 기타 접근 형식, 방법 및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적절하게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기준을 포함하도록 할 것.

사생활의 존중(제22조)

45. 위원회는 실종예방 목적의 추적장치가 자폐성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에게 사전 동의와 자유 없이 발부되며, 그 결과 이들의 사생활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4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 특히 자폐성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 신경 다발성 장애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동의에 따라 추적 장치가 발급되도록 조치할 것;
(b) 협약 및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부합하는 실종 방지 정책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제23조)

47.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 후견제도 하에 있는 지적장애인의 가족, 부모, 관계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 내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음;
(b) 장애아동과 그 가족 및 장애인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지원이 부족함.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여성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의 책임을 수행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
(b) 장애인 가족이 가정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및 정책적 조치를 도입할 것.

교육(제24조)

49.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당사국은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지하고 있고, 특수학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폐성 장애아동, 지적, 심리사회적 장애아동 또는 중복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아동의 수가 많음;

(b) 점자, 수어 및 접근 가능한 교수법으로 훈련된 교사와 지원인력의 수가 부족하고 통합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에 대한 교사 훈련 수준이 불충분함;

(c)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교육부 지원을 받지 못함.

50.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4호(2016)와 지속가능발전목표 4.5를 상기하고, 이전 권고안[8]을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a) 교육 시 필요 사항 및 필요한 편의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 교육의 포용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종합적인 포용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포용적 교육에 대해 교사 및 비교육 인력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

(b) 장애학생에게 포용적 디지털 접근과 같은 대안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의 보조기구 및 학습자료, 그리고 읽기 쉬운 자료, 의사소통 보조장치, 보완적 정보 통신기술을 포함한 의사소통 방식과 수단을 제공할 것;

(c) 보건복지부 산하 분리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으로 편입되도록 보장할 것.

건강(제25조)

51. 위원회는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는 「상법」 제732조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계약을 인정하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의 건강권은 임신, 분만, 출산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52. 위원회는 협약 제25조와 지속가능발전목표 3.7과 3.8의 관계를 고려하고, 이전 권고사항[9]을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상법」 732조를 폐지하고 성·재생산 건강관리 서비스 및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8) CRPD/C/KOR/CO/1, para. 46
9) Ibid., para. 48.

접근을 포함하여 여성 건강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구체적 사업을 개발 및 실행할 것;

(b) 기술, 지원 조치, 의사소통수단 및 방법을 포함하여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개발하고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장애여성 및 여아를 위해 점자, 수어 및 읽기 쉬운 버전을 포함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

가활 및 재활(제26조)

53. 위원회는,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지원이 당사국 국민 외에 장기 거주자 및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만 가능하며, 장애인은 등록이 필요하여 외국인 장애인은 의료 및 재활 치료, 직업훈련 및 활동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활 및 재활 시스템을 확장하고 국적과 체류 상태에 관계없이 장애인이 각자 필요 사항에 따라 가활 및 재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근로 및 고용(제27조)

55.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노동 시장에서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률이 존재함;

(b) 「최저임금법」은 장애인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많은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음;

(c)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지속적인 분리 및 이러한 작업장에서 개방된 노동 시장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점진적으로 이동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함.

56.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8.5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개방된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차별적 법률을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특히 광고, 채용 절차, 합리적 편의제공, 재교육, 승진 등 업무 및 고용과 관련된 기타 권리에 관련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

(b) 「최저임금법」을 검토하여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하고,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것;

(c) 탈시설화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청각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개방된 노동 시장에서의 근로와 고용에 대한 접근성과 포용적 근로 환경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d) 장애인이 보호 고용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개방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의 참여 증대를 위한 할당제를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특정적으로 고안된 적극적 우대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보장할 것.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제28호)

57.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 소득 및 사회보장 정책 하에 당사국에서 높은 생계비용을 보전할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액수가 불충분함;

(b)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에도 일부 장애인은 여전히 연금제도에서 제외됨;

(c) 이주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을 마친 후에도 장애인 연금 등 필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음.

58. 위원회는 협약 제28조와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역량강화와 경제적 포용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0.2의 관계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및 빈곤감소 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장애수당 금액을 검토할 것;

(b)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여 장애인 연금 제도의 자격을 확대할 것;

(c) 이주 장애인 및 난민이 기초 생활 보장 또는 장애인 혜택과 같은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제29조)

59.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치료과정 중에 있는 장애인 및 구금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선거과정에서 제외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조항;

(b) 과소 대표되는 청각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부족함;

(c) 장애인의 효과적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공개 선거 토론, 선거 프로그램, 온라인 또는 인쇄된 선거 자료를 포함한 선거 정보뿐만 아니라 투표소, 투표 절차, 시설 및 자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

60.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모든 차별 조항을 폐지하고 선거 과정과 정치 및 공적 생활에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

(b) 대표로 선출되었을 경우를 포함해, 농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 시청각 장애인, 여성장애인 등 소외된 장애인 집단의 평등과 참여를 보장하고, 입후보한 장애인 후보자, 특히 소수정당에 입후보한 장애인 후보자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할 것;

(c) 선거 및 투표 절차, 투표시설, 온라인 또는 인쇄된 선거 자료를 평이한 언어와 알기 쉬운 버전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여 모든 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제30조)

61. 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부족과 특히 장애아동을 비롯한 장애인의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체육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62.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 대표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라케시 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C. 구체적 의무(제31~33조)

통계와 자료 수집(제31조)

63. 위원회는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할 때 직면하는 장벽에 대한 분리통계 수집 및 결과 공표에 국가 차원의 일관된 조치가 부족함에 대해 우려한다.

64. 위원회는 워싱턴 그룹 간이질문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의 장애인 포용 및 역량강화에 관한 정책마커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연령, 성별, 성적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상태, 교육수준, 고용 상황, 거주지별로 분리된 장애인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것. 시스템과 절차는 기밀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b) 장애인의 권리 이행에 대한 장벽 파악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산을 할당할 것. 당사국은 장애인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구축해야 할 것;

(c)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장애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알리기 위해 양적 및 질적 방법을 아우르는 독립적이고 참여적인 연구를 지원할 것.

국제협력(제32조)

65. 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개발협력 노력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특히 여성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의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에 우려한다.

66.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다루는 지역단위의 프레임워크로서 인천전략을 비롯한 국제협력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개발과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이들 단체가 참여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국내적 이행 및 감독(제33조)

67.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1년에 최대 3회까지만 소집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함;

(b)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가 2021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재승인 시 권고한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와 재정적 자율성 보장에 대한 이행 진전이 부족함.

6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개최 주기를 보다 짧게 하여,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할 것;

(b) 국가인권위원회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직위에 관련된 원칙(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의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 및 재정적 자율성 보장에 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인적자원을 강화할 것.

Ⅳ. 후속 조치

정보의 배포

69.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모든 권고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긴급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여성에 관한 문단 14번과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에 관한 문단 42번의 권고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70.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당사국은 정부와 국회의원, 관계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법조인, 언론인 등 관련 직군 구성원에게 본 최종견해를 숙고하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현대의 사회적 의사소통 전략을 활용하여, 배포할 것을 권고한다.

71.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기보고서 준비에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킬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72.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를 비정부기구 및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 수어를 포함한 자국어와 소수자 언어 및 읽기 쉬운 버전 등 접근 가능한 형태로 널리 배포하고, 이를 인권 관련 정부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다음 정기 보고

73. 당사국은 정기보고와 관련하여 간소화된 보고 절차를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보고 전에 쟁점목록을 작성하고, 당사국이 쟁점목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당사국은 2031년 1월 11일까지 답변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4~6차 병합 정기보고서가 될 것이다.

Abstract

국문초록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목적을 가짐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이 강화된 제3기 인권 연구의 6차년도 과제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현황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그 진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도록 체계적인 자료 수집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시작되어 추진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모니터링은 아동권리협약을 기초로 개발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행정통계 및 타 분야 조사통계 등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진행된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승인통계로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인권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한다. 조사 결과는 115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항목 중 42개 지표 항목의 결과를 제시하는 데 활용된다.

2022년에는 협약 모니터링 특별주제로 '장애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선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현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인권데이터를

활용한 심화분석 주제로는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와 워크숍, 정부부처와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제5·6차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였으며, 협약이행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등을 종합 분석하여 14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매년 실시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데이터는 시계열 자료로 축적되어 본원 데이터 아카이브 사이트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등에 탑재된다.

주제어 : 아동인권/권리, 청소년인권/권리, 인권지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 모니터링

ABSTRACT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22 Review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 Right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Korea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such rights by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t presents the results of the sixth year of the third research project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the goal of which is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of the UNCRC.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party to the UNCRC, must strive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as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Meanwhile, the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Korea is being monitored by the UNCRC.

This study began when the UNCRC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a data collection system to ensure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status of and progress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This monitoring is carried out based on indicator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produced using the results of the

Children's and Youth Rights Survey (CYRS),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survey statistics in other fields in accordance with the child/youth rights indicator system developed under the UNCRC.

The Children's and Youth Rights Survey (CYRS) provides Official statistics on the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in Korea from the fourth year of elementary school to the final (third) year of high school. The CYRS data are used to present results on 42 of the 115 indicators of the child/youth rights indicator system.

In 2022, the "right to education of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was selected as a special theme for monitoring conducted under the UNCRC, further examining the status of inclusive education for those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For in-depth analysis using CYRS data, the impact of the human rights environment of schools on students' intention to drop out of school was studied.

Through expert opinion surveys, workshops, and policy consultations with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5th and 6th UNCRC recommendations were reviewed, and 14 major policy initiatives were proposed based on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sults of UNCRC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the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The results and data of the CYRS, which is conducted annually, are accumulated as time-series data and uploaded to the data archive sites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and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MDIS).

Key words: children's rights, human rights of youth, human rights indicators, Children's and Youth Rights Survey(CYR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human rights monitoring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황여정·임희진·오승근
연구보고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연구보고2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연구보고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연구보고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연구보고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연구보고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연구보고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연구보고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희·송현주
연구보고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연구보고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서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연구보고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서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연구보고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연구보고22-일반03-01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1)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6)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7)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박광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1)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박환보·최종학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3)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4)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01)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 홍성효·장수명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연구보고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연구보고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연구보고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연구보고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수 탁 과 제

〈 일 반 〉

연구보고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연구보고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연구보고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연구보고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연구보고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연구보고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연구보고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옥·오욱찬

연구보고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연구보고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채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윤미·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연구보고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내실화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연구보고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연구보고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연구보고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연구보고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연구보고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연구보고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연구보고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

연구보고22-중앙01 2022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보고서 / 백혜정·문호영

자 료 집

〈 세 미 나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워 크 숍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포 럼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22.9.2.)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콜 로 키 움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37호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138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39호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140호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141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14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43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144호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

64호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65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66호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67호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6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69호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70호 디지털 성범죄
71호 아동 · 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72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73호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 · 활용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김 신 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교수)
김 희 진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변호사)
엄 선 희 (사단법인 두루·변호사)

◈ 자 문 진 ◈

강 미 경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본부·본부장)
강 미 정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권리옹호부·부장)
강 정 은 (사단법인 두루·변호사)
강 종 구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교수)
고 완 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팀장)
구 정 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교수)
권 순 정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연구위원)
권 용 덕 (송파공업고등학교·교사)
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교수)
김 진 (사단법인 두루·변호사)
김 미 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김 민 진 (공릉중학교·교사)
김 사 강 (이주와 인권연구소·연구위원)
김 서 란 (국립특수교육원·교육연구사)
김 선 숙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통상복지학부·교수)
김 성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애인정책연구센터·센터장)
김 양 숙 (공릉중학교·교사)

김 주 홍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교육연구사)
김 진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교수)
김 현 랑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본부 아동권리기획부·대리)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김 형 욱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팀장)
노 하 나 (아동보호본부 입양제도개선추진단·부장)
류 정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실장)
박 계 신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학부·교수)
박 미 나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교사)
박 선 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교수)
박 소 은 (금성초등학교·교사)
박 영 실 (통계개발원·사무관)
박 은 혜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교수)
배 건 이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
서 효 정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교수)
성 치 웅 (청운초등학교·교사)
성 태 훈 (경기세종고등학교·교사)
신 기 훈 (문현초등학교·교사)
안 예 지 (경일대학교 상담심리학과·교수)
양 영 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주무관)
오 동 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유 경 민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기획팀·팀장)
유 고 은 (경남산청초등학교·교사)
윤 상 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교수)
이 미 숙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교수)
이 민 희 (前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교수)
이 영 수 (청운초등학교·교사)
이 은 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위원장)
이 은 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이 혜 진 (한국아동단체협의회·사무총장)
이 홍 규 (숭곡중학교·교사)
임 경 원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교수)
임 송 이 (연당초등학교·교사)
장　　미 (중화고등학교·교사)
장 화 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본부장)
전 경 숙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교수)
전 명 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기획조정본부·본부장)
전 이 삭 (충청북도특수교육원·교사)
정 다 혜 (장애인법연구회·변호사)
정 미 나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연구위원)
정 병 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권리정책팀장)
정 병 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연구원)
정 예 설 (부산덕문중학교·교사)
정 원 호 (충북제천제일고등학교·교사)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정 진 자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교수)
조 경 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운영지원국·국장)
조 소 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과장)
조 정 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과장)
지 은 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교육연구사)
최 진 혁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교수)
편 태 광 (대구범물초등학교·교사)
하 창 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주무관)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교수)
허 창 영 (광주광역시교육청·주무관)
홍 미 화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교수)
홍 정 아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교사)

연구보고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044-868-7451~2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979-11-5654-360-2 94330
979-11-5654-359-6 (세트)

연구보고 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94330
9 791156 543602
ISBN 979-11-5654-360-2
ISBN 979-11-5654-359-6(세트)